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

2004. 6.

장 근 호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미국 조세제도의 근간은 자발적 신고와 성실납부에 있다. 미국 국민으로서 조세납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중한 의무이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미국이 다양한 인종이 모인 연방국가로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가 중요하며 미국 국민이 되려면 납세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사회적 합의로서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된 보스턴 차 사건이 정치적 대표성이 없는 납세의무를 항의하는 데서 시작되었음을 상기하면 조세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을 이해하기 쉽다.

미국에서 성실납부 정신이 안착하게 된 것은 미국정부가 합리적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과세행정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사이의 공조, 특혜조항의 폐지 그리고 유산세와 증여세의 연계가 합리적 조세정책의 예이며 현금거래나 거래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나 포상금제도 등이 엄격한 법 집행의 예이다.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로서 건국 초기에는 주정부의 과세권이 강조되었으나 점차 연방세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된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방정부는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와 유산 및 증여세 그리고 일부 제한된 소비세를 과세하며 지방정부는 소비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기타 항목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조세체계는 상당히 복잡 다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복잡한 미국의 조세제도를 한 권에 요약 정리함으로써 국내 독자가 미국 조세제도의 큰 모습을 쉽게 이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세제 및 세법체계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도 및 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미국 조세제도의 소개서이며 이를 통하여 미국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를 시도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책 담당자들은 국내 조세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홍익대학교 장근호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본원의 홍범교 박사와 초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준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04년 6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목 차

제1편 총론	21
I. 경제 및 사회환경	21
II. 조세체계	24
1. 미국 조세체계 연혁	24
2. 미국 연방세	25
가. 연방세법의 근거	25
나. 연방세의 기원	26
다. 연방세 세목 구성	27
라. 연방세 신고 동향	28
3. 미국 지방세	33
가. 지방세의 기원	33
나. 현행 지방세 구조	36
III. 세수구조 및 세입	43
1. 정부 총수입 동향	43
2. 연방정부 수입 동향	46
가. 연방정부 수입	46
나. 연방정부 세목별 세수 동향	49
3. 지방정부 수입 동향	59
가. 수입동향	59
나. 주정부의 세목별 세수	62

제2편 개별 세법	65
-----------------	----

I. 조세절차법	65
1. 서론	65
2. 조세의 부과	68
가. 신고납부 원칙	68
나. 납세의무	70
다. 수정신고	71
라. 조세기일	72
마. 시효	73
바. 개인사업자	73
3.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74
가. 원천징수: 납세자	75
나. 원천징수: 고용업체	76
다. 추정세액	80
4.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81
가. 납세자 권리헌장(Declaration of Taxpayer Right)	81
나. 과세 과정에서의 권리	82
5. 조세의 징수	84
가. 징수절차 및 현황	84
나. 미납/체납에 관한 처분	89
다. 시효	92
라. 환급금과 납세자 채무의 상쇄(Treasury Offset System)	93
6. 세무조사제도	94
가. 세무조사	94
나. 세무조사 현황	96
7. 조세불복제도	101
8. 가산세(금)와 조세법 처벌	102

가. 가산금 종류와 징수현황	102
나. 미신고 및 미납에 대한 가산금	106
다. 조세범 처벌	108
9. 회계방식과 과세연도	109
가. 과세연도(tax year)	109
나. 회계방식	110
10.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15
II. 개인소득세	122
1. 서론	122
가. 배경	122
나. 과세근거	122
다. 연방소득세 신고 및 내역	123
라. 지방정부 소득세	152
2. 총칙	155
가. 신고 및 납세의무자	155
나. 원천징수와 연방세 예탁금	158
다. 과세소득의 정의	160
라.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	162
3. 과세소득	166
가. 과세소득: 총소득(Gross Income)	166
나. 조정된 총소득 전 공제(deduction for AGI)	179
다. 손실 공제(loss deduction)	197
라. 조정된 총소득 후 공제(deduction from AGI)	200
마. 최저한세와 자영고용세	207
바. 세액공제(tax credit)	211
4. 비과세소득	217
가. 비과세소득	217

나. 비과세소득의 유형	218
다. 과세상 특별대우 소득	223
5. 자산소득의 과세	224
가. 양도손익	224
나. 조정된 장부가액(adjusted property basis)	227
다. 손익의 불인정	230
라. 자본자산과 Sec. 1231 자산(사업용 자산)	234
마. 보유기간과 양도소득 세율	244
6. 소득세 세율과 세액결정	246
7. 신고와 납부	249
가. 소득세 신고와 납부	249
나. 사업소득	250
다. 자녀 및 부양자의 소득신고	251
라. 신고위반과 제재조치	253
8.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255
가. 비거주 외국인	255
나. 과세소득	256
다. 세율과 신고방식	259
9.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60
가. 소득세와 실질세율	260
나. 소득신고	261
다. 양도소득	264
III. 법인세	266
1. 서론	266
가. 사업체 형태와 소득신고	266
나.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여타 세목	270
다. 법인세 통계	276

2. 총칙규정	282
가. 납세의무	282
나. 과세소득의 범위	283
다. 사업연도	283
3. 과세소득	284
가. 과세표준	284
나. 익금 및 손금 (불)산입	290
다. 준비금/충당금	295
라. 회계방식	295
4. 비과세소득	297
가. 해외무역소득(Extraterritorial Income)	297
5. 법인세 세율, 신고 및 납부	298
가. 법인세 세율	298
나. 법인세의 결정	300
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03
라. 면세단체와 자료 신고	305
6. 기업 매수·합병 및 분할	306
가. 기업 매수	306
나. 기업합병과 분할 등	310
다. 합병/분할에 따른 과세와 신고	316
7. 양도소득	317
8. 파트너십(Partnership)	318
가. 개요	318
나. 출자지분과 과세상의 대우	320
다. 과세소득과 신고방식	322
라. 소득 신고	326
9. S 주식회사	327
가. 개요	327

나. 과세소득 신고	328
다. S 주식회사 세금 신고	331
10. 배당과 청산소득	331
가. 자산 배분(non-liquidating distribution)	331
나. 기업의 청산(liquidating distribution)	335
11. 연결납세제도	339
가. 개요	339
나. 과세소득의 산정	340
다. 법인세 산정	345
라. 신고 및 납부	346
12. 이중과세방지제도	346
가. 개요	346
나. Sec. 1311~1314(Mitigation Provisions)	347
다. 사업체 형태와 이중과세	348
1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49
가. 기업조직의 과세상 특성	349
나. 법인세	350
다. 매수·합병·분할·청산	352
IV. 소비세	354
1. 미국의 소비세 체제	354
가. 미국 소비세 체제	354
나. 판매세의 개념	354
2.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es)	355
가. 주별 일반판매세 비교	355
나. 뉴욕주의 일반 판매세	385
다. 판매세 간소화와 균일화를 위한 주정부 협약(SSTP)	396
3. 기타 지방정부 소비세	404

가. 개요: 개별 판매세	404
나. 주세	409
다. 유류세	413
라. 담배세	418
마. 뉴욕주 기타 소비세	422
4. 연방정부 소비세	424
가. 개요	424
나. 연방소비세 과세행정	430
다. 소매세(Retail Taxes)	434
라. 제조업자 세(Manufacturers Taxes)	440
마. 시설 및 서비스(Facilities and Services)	454
바. 주류 및 담배세(Alcohol and Tobacco Taxes)	457
사. 환경세(Environmental Taxes)	461
아. 기타세	463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67
가. 소비세의 종류	467
나. 지방정부 소비세	468
다. 연방정부 소비세	470
V. 미국의 유산 제세와 관련 소득세	472
1. 서언	472
가. 유산 관련 제세 개요	472
나. 유산 관련 제세의 통계	474
2. 유산세(Estate tax)	483
가. 개요	483
나. 총칙	483
다. 과세방식 및 세율	492
라. 유산가치의 평가	501

마. 신고와 납부	505
3. 증여세(Gift tax)	506
가. 개요	506
나. 총칙	506
다. 과세방식 및 증여세 세율	508
라. 평가방식	513
마. 비과세 및 감면	514
바. 신고 및 납부	515
4.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GST) Tax)	516
가. 개요	516
나. 총칙	516
다. 세대생략세 세율	518
라. 과표 면·공제조항	519
5. 유산과 유산신탁기금 소득세(Estate and Trust Income Tax)	519
가. 총칙	519
나. 과세방식과 세율	520
다. 과표 면·공제	522
라. 유산과세(estate taxation)	524
마. 유산 신탁기금 과세(trust taxation)	526
바. 신고 및 납부	527
사. 유산과 유산 신탁기금을 이용한 세금 회피	528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29
가. 유산 관련 세금	529
나. 유산세	530
다. 증여세	531
라. 세대생략세와 유산소득세	532
VI. 재산세	534

1. 개요	534
가. 기본 절차	534
나.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535
다. 자산의 평가	539
라. 재산세 세율과 신고/납부	545
마. 이의신청	548
바. 연도별 및 주별 재정규모와 재산세 비중	548
2. 뉴욕시 재산세	552
가. 서론	552
나. 총칙규정	553
다. 과표, 과세등급(tax class) 및 세율	554
라. 재산의 평가	558
마. 비과세 · 감면	560
바. 신고와 납부	566
사. 이의신청	567
3. 매릴랜드주 재산세	568
가. 총칙규정	568
나. 과표, 과세등급 및 세율	569
다. 재산의 평가	572
라. 비과세 · 감면	575
마. 신고와 납부	581
바. 이의신청	582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83
가. 기본원칙	583
나. 지방정부 사례	584
VII. 국제조세	586
1. 개요	586

2. 미국인 등에 대한 해외소득 과세	586
가. 기본원칙	586
나. 사회보장세와 자영업자 고용세	587
다. 이중과세 방지규정	587
라. 기타 면·공제	589
3. 비거주 외국인(회사)	590
가. 기본원칙	590
나. 미국소득과 실질적 연관성	591
다. 비과세소득	594
라. 원천징수	595
마. 신고방식과 공제	597
4.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제도	598
5.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과세제도	599
6. 국제조세협약	600
가. 개요	600
나. 1996년 미국 모델협약	601
다. 조세협약 혜택의 적용	602
7. 기타	608
가. 외국 지배기업(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608
나. 해외판매 주식회사(Foreign Sales Corporation)	609
다. 외국 개인지주 기업(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610
8.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10
VIII. 결론	612
1. 미국의 조세체계	612
2. 세목별 특성	613
3. 중요 시사점	616
참고문헌	617

표목차

제1편

<표 I- 1> 2003년 경상 국내총생산과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변화	2
<표 I- 2> 국내총생산, 국민소득과 항목별 구성(2001~2003)	3
<표 II- 1> 미국 주요 연방세 유형과 과표	8
<표 II- 2> 유형별 소득세 신고건수(1997~2002)	9
<표 II- 3> 소득세 유형과 양식별 신고서수(1975~2002 Calendar Years)	3
<표 II- 4> 개인소득세 신고 전자신고 유형별 건수(1998~2002)	3
<표 II- 5> 미국 주정부 세목별 수입 추이(1902~2000)	5
<표 II- 6> 미국 기초자치단체 세목별 수입 추이(1902~1996)	6
<표 II- 7> 미국 지방정부 주요 세목의 유형과 과표	7
<표 II- 8> 주정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8
<표 II- 9> 지방정부 세목 분포	4
<표 III- 1> 행정부 총수입과 부문별 수입(1990~2002년)	4
<표 III- 2> 국내총생산과 단위 정부별 총수입(Fiscal Years 1959~2001)	4
<표 III- 3> 연방정부 부문별 수입(1980~2002)	4
<표 III- 4> 연방정부 재정수입 내역(1980~2002)	4
<표 III- 5> 내국세 세목별 징수액(Fiscal Years 1972~2002)	5
<표 III- 6> IRS 내국세 징수내역 (1998~2001)	5
<표 III- 7> 정부단위별 간접세 내역(1980~2002)	4
<표 III- 8> 기능별 조세지출예산 추계	5
<표 III- 9> 지방정부 부문별 수입(state and local government 1980~2002)	9
<표 III-10> 지방정부 재정수입 내역(1980~2002)	6
<표 III-11> 주정부 세입과 세목별 구성비중(2002)	6

제2편

<표 I-1> 연방세법의 근거와 권위	6
<표 I-2> 미국 주요 세목의 유형과 과표	8
<표 I-3>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항목	7
<표 I-4> IRS 내국세 징수액 및 세수 대비 비용 (1971~2002)	8
<표 I-5> 체납신고에 관한 IRS 징수활동 내역(1997~2002)	9
<표 I-6> 세목별 신고조사 및 추가세액 부과 권고 내역(2001)	9
<표 I-7> 세목별 신고조사 및 추가세액 부과 권고 내역(2002)	9
<표 I-8> 내국세법 위반에 따른 각종 가산금과 형벌	13
<표 I-9> 민사 벌금 부과금액, 경감액 및 각 사유별 비중(2002)	104
<표 II-1> 개인소득세 징수액과 GDP 대비 비중(Fiscal Years 1972~2002)	123
<표 II-2> 소득세 유형과 양식별 신고서수 (1975~2002 Calendar Years)	125
<표 II-3> 개인소득 대비 조정된 총소득(AGI), 소득세수 및 세율 비교 (1950~2002)	126
<표 II-4> 연방소득세 인적 공제액과 최고·저 한계세율 및 구간 (1913~2003)	129
<표 II-5> 개인소득세 표준·상세공제 신고수 및 금액의 변화(1950~2001)	133
<표 II-6> 조정된 총소득(AGI), 소득세 및 평균 세율의 추이(1986~2000)	137
<표 II-7> 소득구간별 조정된 총소득, 소득세 비중 및 평균세율(1986~2000)	139
<표 II-8> 개인소득세 소득구간별 공·면제, 세액비중 및 평균세율(2001)	141
<표 II-9> 소득구간별 공·면제, 세액비중 및 평균세율(2000)	142
<표 II-10> 소득구간별 공·면제, 세액비중 및 평균세율(1999)	143
<표 II-11> 사유별 소득세 환급 거부건수와 금액	145
<표 II-12> 소득세 신고 및 공제내역 비중(1990~2001)	146
<표 II-13> 주정부 소득세 주요 지표(2003)	154
<표 II-14>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예탁 지연시 벌금	160
<표 II-15> 개인소득세 과세방식	163
<표 II-16>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유형의 예(2003)	167
<표 II-17> 조정된 총소득(AGI) 산정을 위한 공제항목(2003)	181

<표 II-18> 표준공제액과 노령자와 맹인을 위한 추가 표준공제액(2001~2003)	20
<표 II-19> 상세공제가 허용되는 항목과 그 한도(2003)	23
<표 II-20> 최저한세(AMT) 산정방식	29
<표 II-21> 세액공제(tax credit) 항목의 예(2003)	212
<표 II-22>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환산표(2003)	213
<표 II-23> 초과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감축(2003)	214
<표 II-24> 비과세소득의 예(2003)	218
<표 II-25> 신고자 자격에 따른 세율 및 과세구간(2000~2003)	247
<표 II-26> 신고가 필요 없는 최대 소득(2002~2003)	249
<표 II-27> 자녀 및 부양자의 소득신고가 필요한 기준 소득(2002)	252
<표 II-28> 소득의 성격과 발생지 기준	27
<표 III- 1> 기업 형태와 과세상의 장·단점	29
<표 III- 2> 주정부 법인세 세율 (2003)	25
<표 III- 3> 법인세 징수액과 GDP 대비 비중(Fiscal Years 1972~2002)	27
<표 III- 4> 총수입 규모에 따른 사업소득 신고서(1980~2001)	28
<표 III- 5> 법인세 대차대조표와 소득세 내역(1980~2000)	29
<표 III- 6>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주요 차이점	28
<표 III- 7> 법인세 과세소득의 결정	28
<표 III- 8> 미국 법인세 세율(2003)	29
<표 III- 9> 법인세 납부 의무액의 일반적 결정방식	31
<표 III-10> 당해연도 수익(E&P)의 산정에 필요한 과세소득의 조정	333
<표 III-11> 통합 법인세 신고를 위한 과세소득 산정방식	31
<표 IV- 1> 주정부 총세수 및 일반 판매세 비중과 1인당 세수(2002)	37
<표 IV- 2>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과세기준과 기타 감면	32
<표 IV- 3> 임대 서비스·비정규적 판매·기계에 대한 과세 여부	35
<표 IV- 4> 주별 판매세 면제대상 제품	39
<표 IV- 5> 주별 판매세 경감세율과 품목·산업	32
<표 IV- 6> 주별 판매세 세율·과표기준과 감면율(액)	36

<표 IV- 7> 각종 사례의 판매세 과표의 포함 여부	39
<표 IV- 8> 뉴욕주 과세대상 재화와 서비스의 예	37
<표 IV- 9> 뉴욕주 면세대상 재화와 서비스	38
<표 IV-10> 주정부 개별판매세와 기타 세 비중과 1인당 세수(2002)	45
<표 IV-11> 주정부 개별판매세의 세목별 비중(총세입 대비: 2001)	407
<표 IV-12> 주류 관련 지방소비세 세율과 일반판매세 부과 여부	40
<표 IV-13> 주정부 (자동차) 유류세 세율(2003. 1.)	414
<표 IV-14> 주정부 담배세 세율(2003. 1.)	419
<표 IV-15> 주정부 여타 담배세 세율(2002. 1.)	420
<표 IV-16> 연방정부 소비세 분류 및 관련 법규정	45
<표 IV-17> 연방정부 소비세 세수실적과 대표세율	45
<표 IV-18> 미국 사치세(Luxury Taxes) 연도별 과세액	44
<표 IV-19> 연방정부 소비세 면세단체·용도 및 면세 제외 품목	42
<표 IV-20> 과세대상 연료와 세율 및 특성	45
<표 IV-21> 휘발유 소비세 세수와 세율(1933~2002)	447
<표 IV-22> 타이어 제조세	40
<표 IV-23> Gas Guzzler Tax 세율	41
<표 IV-24> 미국 연방소비세 주세율	45
<표 IV-25> 주류 관련 영업세	45
<표 IV-26> 각종 담배 관련 제품 연방소비세 세율	40
<표 IV-27> 미국 환경 관련 소비세의 과세액	42
<표 IV-28> 트럭 및 버스 도로 사용세	45
<표 IV-29> 1993년 연방소비세와 2001년 당시 준폐 여부	47
<표 V- 1> 연도별 각종 세목의 제출된 신고서 및 제반 양식 규모 (제출 예정 포함, 1975~2002 Calender years 기준)	476
<표 V- 2> 내국세 세목별 징수액과 GDP 대비 비중 (Fiscal Years 1972~2001)	477
<표 V- 3> 유산세와 증여세 징수액과 비중(1998~2001 fiscal year)	48

<표 V- 4> 유산세 신고인, 건 및 납세 의무액과 비중(1975~2000)	49
<표 V- 5> 유산세 과세대상 신고인 비율과 실효세율(1934~1999)	40
<표 V- 6> 2001년 유산세 과세 결정 내역	41
<표 V- 7> 유산형태별 신고건수와 금액(2001)	42
<표 V- 8> 미국 유산·증여 관련 잠정세(tentative tax) 세율구조(2002)	495
<표 V- 9> 미국 유산·증여세의 연도별 세액공제 및 면세액	46
<표 V-10> 유산 내역과 유산세의 결정의 예	47
<표 V-11> 미국 유산·증여 관련 잠정세(tentative tax) 세율구조(2002)	511
<표 V-12> 2002년 이후 유산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표준공제 및 면세액	52
<표 V-13> 유산기금과 유산소득세의 한계세율과 과세구간	52
<표 VI- 1> 부동산 이외 주별 재산세 과세 재산의 유형	57
<표 VI- 2> 주별 재산세 각종 과세기일과 평가방식	54
<표 VI- 3> 주별 부동산 재산세 최고·최저세율 및 부동산 평가기준	56
<표 VI- 4> 연도별 지방정부 세입과 각 세목 비중 (1988~2002)	59
<표 VI- 5> 지방정부 세입과 세목별 구성(state·local government 2000)	50
<표 VI- 6> 뉴욕시 부동산 시장가치와 과세평가액 및 세율(2002)	53
<표 VI- 7> 뉴욕시 부동산세 과세등급과 세율(2003)	55
<표 VI- 8> 연도별 뉴욕시 부동산세율(1982~2003)	56
<표 VI- 9> 뉴욕시 부동산 시장가치와 과세평가액 및 세율(2002)	57
<표 VI-10> 연도별 뉴욕시 부동산세 총과세액과 등급별 비중(1988~2002)	58
<표 VI-11> 뉴욕시 부동산 총평가액과 등급별 비중 및 시장가치 대비 비중	59
<표 VI-12> 뉴욕시 부동산세 감면 프로그램과 감면규모(2002)	51
<표 VI-13> 뉴욕시 노령자 부동산세 감면 기준(65세 이상, 1998)	52
<표 VI-14> 매릴랜드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세율(100달러당)과 평가비율	51
<표 VI-15> 매릴랜드주 거주주택 소득별 재산세 한도	56
<표 VI-16> 매릴랜드주 임차인 재산세 세액공제 지침(60세 이상과 불구자)	57
<표 VI-17> 매릴랜드주 임차인 재산세 세액공제 지침(60세 이하)	58
<표 VI-18> 매릴랜드주 소득 대비 납부 가능한 재산세	59

<표 VII- 1> 소득의 성격과 발생지 기준	52
<표 VII- 2> 원천징수세율	57
<표 VII- 3> 미국에서 제공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미국 소득세와 원천징수 면세 요건	603
<표 VII-4> 개인서비스를 제외한 소득의 조세협약 (원천징수) 서울(2003)	606

그림목차

제2편

[그림 II-2] 공제신고 건수의 연도별 변화추이 (1950~2000)	132
[그림 II-3] 총소득(AGI) 대비 공제액의 연도별 변화추이 (1950~2000)	135
[그림 V-1] 유산세 세금 산출	493

제1편 총론

I. 경제 및 사회환경

미국의 인구는 약 2억 9,034만명으로 백인 77.1%, 흑인 12.9%, 아시안 4.2% 등의 다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미국은 1776년 13개 주(州)로 이루어진 독립국가로 출발하여 이후 37개 주가 추가된 국가이다. 또한 헌법에 기초한 연방공화제 국가로서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 사모아 등 다수의 자치령이 있다. 의회는 각각 100명과 435명으로 구성된 상·하원이 있고 대법원은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갖는다.

국내 총생산(GDP)은 2003년을 기준으로 약 10조 9,839억달러에 달하며 1인당 GDP는 37,600달러이다. 1994~2000년 사이에 미국 경제는 소위 IT산업의 성장에 따른 신경제를 경험하여 경상 GDP가 7조 543억달러에서 9조 8,246달러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5% 이내로 하락하는 장기 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신경제가 퇴조하면서 경제성장률이 0.5%대로 하락하고 회계부정과 9.11 사태 등으로 주식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바 있다. 2002년 이후 성장률은 2.5%대를 회복하는 등 최근 경제가 성장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감세와 이라크 등 전쟁비용 지출에 따른 대규모 정부적자, 무역적자,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 의료비의 증가 그리고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1-1> 2003년 경상 국내총생산과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변화

(단위: 십억달러, %)

	2003년 경상 GDP(비중)	2003년 실질 GDP	2002년 실질 GDP	2001년 실질 GDP
국내총생산	10,983.9	105.9	102.7	100.5
민간소비	7,752.3 (70.6)	109.2	106.0	102.5
민간 총투자	1,667.5 (15.2)	94.3	90.6	91.7
수출	1,048.1 (9.5)	94.3	92.5	94.8
수입	1,539.6 (14.0)	104.3	100.6	97.4
순수입	491.5 (4.5)			
정부지출	2,055.7 (18.7)	110.3	106.7	102.8
연방정부	757.2 (6.9)	121.7	112.0	103.7
지방정부	1,298.5 (11.8)	104.6	104.0	102.2

주: 실질 GDP는 2000년 대비 기준임.

2003년 당시 국내총생산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6%, 민간투자는 15.2%이고 무역적지는 4,915억달러(4.5%)에 달한다. 정부지출은 총 2조 557억달러로 전체 GDP의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연방정부 지출은 7,572억달러(6.9%) 그리고 지방정부 지출은 1조 1,985억달러(11.8%)에 달한다.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이다.

미국 경제구조는 생산 측면에서 볼 때 농업 2%, 제조업 18% 그리고 서비스산업 80%로 서비스산업에 편향된 모습을 보인다. 노동인구는 약 1억 4,200만명으로 관리 및 전문분야 31%, 기술, 영업 및 행정지원 분야 13.6%, 제조업·광산·교통 분야 24% 그리고 농수산업 분야에 2.4%의 노동인구가 종사하고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10조 4,808억달러에 달하는 국내총생산에서 해외 이전지급을 합하여 조정하고 1조 2,886억달러의 고정자본 소모를 제하고 국민소득은 9조 2,908억달러에 이른다. 국민소득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보면 노동자 보수가 64.8%(6조 191억달러), 사업자 소득 8.6%(7,977억달러), 임대소득 1,730억달러(1.9%), 주식회사 이윤 9,042억달러(9.7%), 이자 등의 지급금 5,824억달러(6.3%) 그리고 간접세 세금

7,218억달러(7.8%) 등에 이른다.

<표 1-2> 국내총생산, 국민소득과 항목별 구성(2001~2003)

(단위: 십억달러)

	2003	2002	2001
GDP	10,983.9	10,480.8	10,100.8
+ 해외소득	-	299.1	319.0
- 해외지급	-	277.6	283.8
= 국민총생산	-	10,502.3	10,135.9
국민소득		9,290.8	8,981.2
노동자 보수	6,185.6	6,019.1	5,940.4
임금	5,084.5	4,974.6	4,942.9
기타수당	1,101.0	1,044.5	997.6
사업자 소득	846.5	797.7	770.6
임대소득	163.9	173.0	163.1
주식회사 이윤	-	904.2	770.4
이자 및 기타 지급	582.3	582.4	568.4
간접세 세금-보조금	738.8	721.8	674.5
GDP deflator	105.6	103.9	102.4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II. 조세체계

1. 미국 조세체계 연혁

독립전쟁 이전 식민지 시대의 세금은 연방 차원에서는 관세와 소비세가 주된 세원이었고 12개 주(州) 식민지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세목을 활용하였다. 즉 남부에서는 수출입품에 대한 소비세, 중부에서는 청년 이상 남성에게 대한 인두세와 재산세 그리고 북부 지역은 부동산세, 소비세 그리고 직업세가 세원으로 도입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1765년 프랑스와의 전쟁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인지세와 차세는 미국 식민지에 처음으로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서 대표성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독립전쟁을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781년에 제정된 연방헌정(the Article of Confederation)은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주정부가 정치권력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중앙정부가 가진 의무도 많지 않아 국가 차원의 세금이 필요 없었고 중앙정부는 주정부의 기여금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특히 연방헌정은 각 주정부가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독립주체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789년 연방헌법이 제정되면서 의회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다만 세금 징수는 주정부가 하도록 하여 연방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연방의회는 독립전쟁으로 인한 부채 상황을 위하여 주류, 담배, 설탕, 경매로 판 재산 그리고 법문서에 대한 소비세를 처음 부과하였다. 이후 1790년대에 연방정부는 주택, 토지 그리고 노예 등의 자산 소유주가 그 가치에 따라 직접 세금을 내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직접세'에 대한 저항으로 1802년 이 세금은 폐지되었다. 또한 1812년 전쟁 당시 의회가 추가적인 소비세를 제정하고 채권을 발행하였으나 이 또한 1817년에 폐지되면서 그후 44년간은 연방정부 재정은 관세와 토지 매매에 따른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1861년 남북전쟁은 연방세 부과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이전의 소비세가 부활되고 일시적으로 연 8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한 3%의 소득세도 도입된다. 이후 1862년에 1만달러 이상의 소득에는 3% 그 이상의 소득에는 5%의 소득세가 정식으로 부과되고 600달러의 표준공제 이외 상세공제 그리고 원천징수제도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소득세는 1872년에 폐지되었고 연방정부 재원은 주로 주류와 담배세로 충당되었다.

소득세가 영구적으로 도입된 것은 1913년 미국 헌법 16조의 개정(16소 Amendment)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13년 재정법(the Revenue Act of 1913)이 전면 실시되었다. 이전에는 연방헌법이 각 주의 인구 비율에 따라 직접세를 걷도록 규정하고 있어 1894년 소득세 다시 도입되었을 때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관세와 소비세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대체 세원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우려한 남부 지역의 지지로 1913년 연방헌법 16조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인구에 비례한 직접세 규정이 폐지되고 1%의 법인세와 1~7%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한편 대공황을 겪으면서 1935년 사회보장세가 도입되었다(Social Security Act). 동법은 실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노인, 장애인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재원은 종업원 임금의 3,000달러에 대하여 2%의 세금으로 종업원과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보험세(Medicare tax)가 1965년에 제정되었다. 이외 1939년에는 각종 연방세가 하나의 법으로 처음 조문화되었다(Internal Revenue Code of 1939).

2. 미국 연방세

가. 연방세법의 근거

미국 내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은 다양한 연방세를 통합, 과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무성은 법 해석과 이행을 위하여 법과 거의 동등한 권한(authorities)을 지닌 재무성 규정(Treasury Regulation)을 마련한다. 한편 미국 국세청

(IRS)도 법 해석을 위하여 상당수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재무성 규정 수준의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친 결정이 아니므로 재무성 규정보다 법적 비중이 떨어진다.

세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쟁은 IRS 내부의 이의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되며 그 결과는 전례(precedent)가 된다. 하위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등법원(US Circuit Court of Appeals) 그리고 이후 대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헌성 여부 등 매우 중요한 사안과 상충되는 판례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나. 연방세의 기원

1923년 이전에는 미국의 주요한 세원이 관세와 소비세였고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는 1861년 남북전쟁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되었다. 전쟁 이후 폐지되었던 연방 소득세는 1894년에 다시 도입되었으나 소득세가 인구에 따라 주별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13년 미국 헌법 16조의 개정을 거쳐 재정법(the Revenue Act of 1913)이 전면 실시되었는데 이 당시 법인세는 1%, 개인소득세는 1~7%의 세율이 적용된 바 있으나 3,000달러에 이르는 인적 공제(부부는 4,000달러)로 인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하였다.

이전의 다양한 세법들이 내국세법으로 통일된 것은 1939년이다(Internal Revenue Code of 1939). 또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체 인구의 7%가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의 세수비중도 국내총생산(GDP)의 2% 이내이었으나 1940년대에 공제 소득을 대폭 줄이면서 연방 소득세가 GDP의 8%를 차지하는 등 대중화되었다. 1943년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처음 개시되었고 1945년에는 인구의 약 74%가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1954년 내국세법이 다시 정리, 조문화되었고 최근의 큰 변화는 1986년에 이루어졌다.

1940년대 연방 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동안 최고 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8% 내외로 큰 변화가 없다. 즉, 1944~1945년 사이에 94%에 이르던 최고 세율은 2003년 38.6%까지 하락하였으나 소득세 비중은 GDP 대비 8% 내외로 2000년대

에는 오히려 9%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한편 법인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남북전쟁 당시 잠깐 부과된 바 있으나 영구적으로 국세의 일부가 된 것은 1909년이다. 이후 법인세도 소득세와 유사하게 1939년 GDP 비중이 1.4%에서 1943년 7.1%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 내외로 감소하는데 이는 세율 인하보다는 과세대상인 법인세 소득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즉 공제가 허용되는 이자비용과 관대한 감가상각 허용 그리고 투자세액 공제가 법인세를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86년 조세개혁법(the Tax Reform Act of 1986)은 내국세법을 대폭 개정하여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다양한 공면제 항목을 폐지 내지는 제한하여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50%에서 28%로 인하되었고 법인세 최고 세율도 46%에서 34%로 인하되었다. 그 대신 양도세 세율은 20%에서 28%로 인상되었다. 또한 지방세와 주택 이외 이자비용 공제가 폐지되었고 IRA, 의료 및 사업비용에는 제한이 가해졌다. 법인세 차원에서 감가상각 공제에 제한이 가해지고 투자세액 공제는 폐지되었으며 최저한세(AMT)는 강화되었다.

다. 연방세 세목 구성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과되는 주요 세목은 소득세에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일반 근로자 이외에도 자영업자, 파트너십의 동업자 그리고 S 주식회사 등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연방세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이다.

한편 사회보장세(FICA)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도 개인소득세 다음으로 세수가 많지만 이들 세목은 목적세이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반세가 아니라 사회보장기금에 가깝다. 사회보장성 세금에는 이 밖에도 실업보험세와 연방정부 공무원연금도 포함된다.

소득 관련 세금 이외 연방정부는 소비세를 징수하는데 대상 품목에는 주류, 담배, 유류 등의 기호제품 이외 전화, 환경 파괴 화학품, 항공 및 항만 시설, 도박, 총기류, 대형 자동차, 타이어 그리고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품목들이 있다. 그러나 연방소비세 비중은 GDP의 0.6%에 달하여 연방세의 주요 세목은 아니며 대신 소비세는 지방정부 차원

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들 소비세 가운데 공항세, 도로 유류세, 유해물질 부담금, 석유 누출 그리고 폐병 관련 석탄세 등은 목적세로서 기금에 포함된다. 이외 관세는 2002년 당시 세수가 199억달러로 여타 연방소비세(677억달러)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표 II-1> 미국 주요 연방세 유형과 과표

세목	세율구조	과 표
개인소득세	누진	세법상 예외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공,면제한 금액(AGI)
법인소득세	누진	입법규정은 해석 규정보다 상위
유산세	누진	연간 과세대상 증여의 공정한 시장가치(FMV)
증여세	누진	사망시 유산과 1976년 이후 과세대상 증여의 공정한 시장가치(FMV)
소비세 및 관세	일률	국산 및 수입품의 판매가격(제품별 차등화된 세율)
FICA/자영업	역진	임금 및 자가소득(FICA: 6.2% on 84,500달러+1.45%, 15.3%)
실업세	역진	임금의 7,000달러

한편 유산·증여세의 경우 상당한 면세금액으로 인하여 그 비중이 GDP 대비 0.3%에 불과하다. 유산세의 경우 특히 면세금액이 점차 늘어나면서 2010년에 한시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지방정부에서도 유산 및 증여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재산세를 이용,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연방세 신고 동향

소득세를 위시한 전체 세목별 신고건수는 <표 II-2>와 <표 II-3>에 제시되어 있다. 2001년 당시 총 신고건수는 약 2억 3천만건에 이르는데 이 중 소득세 신고가 약 1억 8천만건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소득세에서도 개인소득세 신고가 약 1억 3천만건으로 전체 소득세 신고 가운데 72.2%를 차지한다. 이외 유산(3.9백만건, 2.2%)과 파트

너십(2.1백만건, 1.2%) 등의 신고를 포함하면 법인 이외 소득세 신고에서 건당 약 8,7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법인세 신고는 2001년 당시 약 5.5백만건(3.1%)에 달한다. 법인세의 경우 건당 세금은 3.4만달러이다. 이외 소득세 관련 신고에는 추정 소득세 신고나 유산과 상속에서 분배된 소득을 신고하기 위한 것이 있다.

<표 11-2> 유형별 소득세 신고건수(1997~2002)

(단위: 천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미국 전체	216,510	224,453	224,305	226,130	227,929	226,609
소득세 ¹⁾	170,431	176,966	176,128	178,747	179,631	177,022
개인소득세	120,745	123,000	125,227	127,590	129,783	130,905
Forms 1040, 1040A, 1040EZ, 1040PC	11,9656	115,039	118,194	127,041	129,150	130,285
1040	68,345	71,246	74,878			
1040A	22,715	22,721	23,078			
1040EZ	20,896	21,072	20,238			
Forms 1040NR, 1040SS, 1040PR, C ²⁾				550	633	670
1040 other ²⁾	8,789	7,962	7,032			
개인 추정소득세	38,634	42,413	39,228	39,230	37,470	33,817
유산 및 상속 신탁기금	3,310	3,388	3,390	3,530	3,868	3,684
유산 및 상속 추정세	815	1,028	914	892	885	670
파트너십 (Form 1065, 1065-B)	1,770	1,826	1,966	2,048	2,134	2,236
주식회사 (Form 1066, 1120)	5,158	5,311	5,403	5,458	5,491	5,711
상속세	97	109	117	121	122	121
증여세	251	258	286	305	304	279
자영업 고용세 (Form 940)	28,918	29,274	29,048	28,911	28,899	29,141
면세기관 ³⁾	607	676	677	707	715	748
근로자 수혜 프로그램 ⁶⁾	1,337	1,662	1,414	1,164	883	-
연방소비세 ⁴⁾	821	815	762	916	765	885
추가 서류 ⁵⁾	14,048	14,695	15,873	15,260	16,609	18,413

주: 1) 비과세 사업단체는 제외

2) Form 1040NR와 C는 비영주권자, PR, SS는 푸에토리코 등의 자영업 고용세 신고임.

3) Form 990, 990EZ, 990C, 4720, 5227, 5500, 포함.

4) Form 720, 730, 2290, 11C, 관세청과 알코올, 담배, 총기국에 제출한 신고서는 제외.

5) Form 1040X(수정신고, 개인) 1041A(기금 기부), 1120X(수정신고: 주식회사), 4868 2688, 7004(신고연장 신청서), 8752(파트너십 환급) 포함.

6) 노동부에서 처리하는 근로자플랜 신고서는 제외.

자료: IRS Data Book, FY 2002 Publication 55b

한편 2002년을 기준할 때 상속 및 증여세 신고는 각각 약 1.2만건, 3.0만건 0.07%, 0.17%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국세 세수비중은 1.4%로 신고건수에 비하여 금액 비중은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건당 납부세액은 약 6.9만달러에 달한다. 이외 자영업 고용세(self-employment tax)의 신고는 약 2890만건으로 전체 소득세 신고건수의 16.1%에 달하는데 세수비중은 약 32%로서 자영업자의 신고건당 세수 부담이 약 2.4만 달러로 일반 개인소득세에 비하여 큰 편이다.

<표 II-3> 소득세 유형과 양식별 신고서수 (1975~2002 Calendar Years)

(단위: 천개, %)

신고서/양식 유형	연도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1]
개인소득세	84,027	93,196	99,704	112,596	116,467	123,050	125,390	127,657	130,094	131,248
Forms 1040, 1040A 1040EZ, and 1040PC	(99.86)	(99.85)	(99.82)	(99.74)	(99.65)	(99.59)	(99.60)	(99.56)	(99.50)	(99.53)
서면신고	(99.86)	(99.85)	(99.82)	(96.01)	(89.51)	(79.62)	(76.21)	(71.83)	(68.59)	(63.87)
전자신고	N/A	N/A	N/A	(3.73)	(10.14)	(19.98)	(23.39)	(27.73)	(30.91)	(35.65)
영업 신고	(11.99)	(12.24)	(14.18)	(14.36)	(15.51)	(15.47)	(15.29)	(15.16)	(15.12)	(15.34)
Schedule C or C-EZ	(8.85)	(9.60)	(11.80)	(12.57)	(13.87)	(13.96)	(13.86)	(13.76)	(13.76)	(14.01)
Schedule F	(3.13)	(2.64)	(2.38)	(1.80)	(1.63)	(1.50)	(1.43)	(1.39)	(1.35)	(1.33)
비영업신고	(87.88)	(87.61)	(85.65)	(85.38)	(84.15)	(84.13)	(84.31)	(84.40)	(84.39)	(84.19)
Forms 1040C, 1040NR, 1040PR, and 1040SS	(0.14)	(0.15)	(0.18)	(0.26)	(0.35)	(0.41)	(0.40)	(0.44)	(0.50)	(0.47)
법인소득세	2,133	2,676	3,437	4,320	4,818	5,241	5,398	5,470	5,561	5,717
Form 1120	(82.66)	(79.06)	(70.76)	(54.05)	(45.60)	(42.12)	(40.80)	(39.52)	(38.28)	(37.10)
Form 1120A	N/A	N/A	(5.81)	(7.69)	(6.62)	(5.20)	(4.83)	(4.49)	(4.24)	(3.95)
Form 1120S	(17.22)	(19.74)	(21.44)	(35.56)	(44.85)	(49.60)	(51.26)	(52.78)	(54.35)	(55.80)
기타	(0.12)	(1.20)	(1.99)	(2.70)	(2.92)	(3.08)	(3.11)	(3.20)	(3.13)	(3.14)
파트너십 Forms 1065 and 1065B	1,133	1,402	1,755	1,751	1,580	1,861	1,975	2,067	2,165	2,258
유산 및 신탁기금 소득세, Forms 1041 and 1041S	1,564	1,882	2,125	2,681	3,191	3,398	3,403	3,529	3,919	3,711
유산세										
Forms 706, 706NA, 706GS(D), and 706GS(T)	226	147	81	61	81	110	116	124	122	125
증여세, Form 709	273	215	98	148	216	261	292	309	304	255
면세단체	404	443	454	487	572	618	731	699	724	749
Forms 990 and 990EZ	(85.83)	(81.92)	(80.49)	(73.80)	(70.97)	(66.63)	(62.69)	(66.04)	(66.42)	(66.12)
Form 990-PF	(7.33)	(7.48)	(7.05)	(9.17)	(8.96)	(10.00)	(8.88)	(10.01)	(10.12)	(10.10)
Form 990-T	(4.88)	(5.31)	(5.77)	(8.02)	(8.70)	(8.12)	(8.59)	(7.52)	(6.66)	(6.56)
Forms 990C, 4720, and 5227	(1.96)	(5.29)	(6.69)	(9.01)	(11.37)	(15.25)	(14.60)	(16.44)	(16.80)	(17.23)

<표 II-3>의 계속

(단위: 천개, %)

신고서/양식 유형	연도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r]
고용세	24,738	26,387	27,409	28,911	28,655	29,106	28,974	28,841	28,936	29,053
Forms 940, 940EZ, 940PR	(16.78)	(17.82)	(17.56)	(18.57)	(19.13)	(18.84)	(18.91)	(18.94)	(19.16)	(18.91)
Forms 941, 941PR/SS/M	(68.82)	(71.45)	(74.08)	(74.82)	(77.54)	(79.36)	(79.33)	(79.37)	(79.21)	(79.51)
Forms 943, 943PR	(1.85)	(1.60)	(1.46)	(1.33)	(1.24)	(1.14)	(1.09)	(1.06)	(1.01)	(0.97)
기타	(12.55)	(9.13)	(6.91)	(5.28)	(2.09)	(0.67)	(0.67)	(0.63)	(0.62)	(0.60)
소비세	865	875	1,161	852	789	822	822	853	815	851
Form 2230	(50.59)	(50.74)	(61.11)	(51.73)	(62.17)	(68.44)	(70.27)	(71.65)	(72.22)	(73.79)
Form 720	(36.27)	(41.83)	(35.86)	(39.80)	(28.57)	(23.60)	(22.35)	(20.49)	(20.23)	(19.09)
기타	(13.14)	(7.43)	(3.02)	(8.47)	(9.26)	(7.96)	(7.38)	(7.87)	(7.55)	(77.12)

자료: 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Fall 2002 Pub. 1136

<표 II-4>는 신고건수를 보다 유형별로 제시한 표이다. 한 예로 개인소득세에서 1040은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서이나 1040A나 1040EZ는 상세공제(itemized deduction)¹⁾가 필요 없는 등 소득세 신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신고서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전자신고로서 미국의 경우 전자신고가 처음 도입된 1990년 이후 전자신고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의 경우 전체 신고에서 약 35.7%가 전자신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제시된 전자신고 비중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전자신고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1) 상세공제는 우리나라 세법에서 특별공제에 해당한다.

<표 II-4> 개인소득세 신고 전자신고 유형별 건수(1998~2002)

(단위: 천건, %)

	1998	1999	2000	2001	2002
전화신고(TeleFile) ¹⁾	-	5,690.5	5,161.3	4,419.4	4,176.5
인터넷신고 ²⁾	-	2,468.9	5,026.4	6,838.0	9,428.0
대리인 전자신고 ³⁾	-	21,229.2	25,235.8	28,988.0	33,286.3
총 전자신고(A)	24,599.9	29,388.5	35,423.6	40,245.5	46,890.8
전체 신고(B)	123,000	125,227	127,590	129,783	130,905
전자신고 비중(A/B)	9	0	4	8	0

주: 1) 전화신고는 연방 및 주정부 TeleFile System을 이용한 건수.

2) 인터넷 신고는 인터넷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프로그램을 구입 및 작성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를 의미.

3) 대리인 신고는 회계사 등 인증된 전자신고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자료: IRS Data Book, FY 2002, Publication 55b.

3. 미국 지방세

가. 지방세의 기원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 있었던 당시 지방세는 각 지방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졌다. 뉴잉글랜드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인두세(poll tax) 이외에도 토지의 양과 질에 따라 토지로부터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이 밖에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직업 종류에 따라 일종의 인두세인 직업세(faculty tax)도 도입되었다.

반면 귀족적 계층이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남부에서는 토지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노예제로 인하여 인두세도 유지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남부에서는 수출입품에 대한 소비세가 주요 세목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 이후 19세기에 이르면 연방 헌법에 따라 교역제품에 대한 소비

세가 연방정부의 세목으로 지정되면서 남부 지역은 토지세와 함께 농업 이외 각종 직업에 대한 등록세 및 사업세가 재정 수요를 담당하였다. 반면 북부의 경우 재산세 이외에 산업 발전에 따라 사업체의 순소득에 부과되는 영업세(franchise tax)가 도입되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자산에 대하여 일반 재산세를 대체하는 세목이 개발되었다. 우선 전기나 철도 등 여러 지방에 걸쳐 자산이 분산된 업체에게는 공공서비스세(public utilities), 천연자원이 많은 지방은 자원세(severance tax)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세 혹은 일부 지방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미국 지방정부 세수의 주요 수입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정부의 경우 재산세는 1902년 당시 주(州) 세수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1940년대에 이르러 그 비중이 8% 이내로 떨어지고 2000년에는 겨우 1.8%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대신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이 된다. 재산세를 대체하는 세목으로 주정부는 소득세(위스컨신, 1911년), 자동차세(뉴욕 1901년), 유류세(1919년) 그리고 1930년대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담배, 주류와 일반 판매세를 이용하게 되었다.

<표 II-5> 미국 주정부 세목별 수입 추이(1902~2000)

(단위: 백만달러)

	1902	1913	1922	1927	1932	1936	1945	1955	1975	2000
총세입	156	301	947	1,608	1,890	2,618	4,349	11,597	80,141	541,787
일반판매세					7	364	776	2,637	24,780	176,190
유류세			13	259	527	687	696	2,353	8,256	29,195
담배류세					19	44	145	459	3,286	7,945
주류세		2			1	166	368	550	2,106	3,995
자동차세		5	152	301	335	360	414	1,184	3,937	15,936
개인소득세			43	70	74	153	357	1,094	18,819	200,435
법인세			58	92	79	114	453	737	6,642	33,878
재산세	82	140	348	370	328	228	276	412	1,451	9,662
상속증여세			66	106	148	117	136	249	1,418	2)
천연자원세					19	34	83	306	1,741	2)
기타	74	154	207	410	353	354	643	1,616	7,705	64,551

주: 1) 기타는 보험, 전기 등 공공서비스, 경주세, 주식회사 등록세 등을 포함. 2) 기타에 포함.

자료: J. Hellerstein and W. Hellerstein, *State and Local taxation: Cases and materials*, West Group, 2001.

현재 주정부의 가장 주요한 세목은 소득세로 개인소득세의 경우 1932년 당시 전체 세수의 3.9%를 차지하던 것이 2000년에는 37%를 차지하며 법인세 비중은 1932년 4.2%에서 2000년에 6.3%가 되었다. 주 소득세의 납세대상은 거주지 원칙으로 거주가 확정되면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과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하다²⁾. 두 번째 주요 세목은 일반판매세로 1932년 0.4%에서 2000년 32.5%의 세수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 자동차와 유류 관련 세금은 비록 세수 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8.3%의 세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는 변함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수요에 비하여 자치단체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자 1940년대 이후 각 자치단체들은

2) *Compania Gen. de Tabacos v. Collector*, 275 U. S. 87, 100, 48 S.Ct. 100

재원 발굴에 나서 호텔 숙박, 음식점, 담배, 휘발유, 유흥업소 등의 다양한 제품과 사업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타 세금과 수수료 등이 전체 세수의 3분의 1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반 제품에 대한 판매세 도입이 활발해져 그 이전에는 뉴욕시(1934년)와 뉴올린스(1941년)만이 부과하던 판매세가 이제는 7,500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판매세를 부과한다.

<표 11-6> 미국 기초자치단체 세목별 수입 추이(1902~1996)

(단위: 백만달러)

	1902	1913	1922	1932	1940	1950	1954	1965	1980	1996
재정수입	914	1,755	4,148	6,192	7,724	16,101	22,402	53,815	258,298	803,737
고유수입	858	1,658	3,827	5,381	5,792	11,673	16,468	38,583	155,872	533,257
총세입	798	1,540	3,545	4,879	5,007	9,586	13,629	32,703	130,027	438,736
재산세	624	1,192	2,973	4,159	4,170	7,042	9,577	22,152	65,607	199,467
개별판매세		3	20	26	130	484	703	2,059	8,160	42,832
소득세					18	64	122	433	4,990	15,989
등록세	80	113	76	89	179	394	576	807	7,630	12,313
기타	94	232	476	605	510	1,602	2,651	7,251	43,640	168,135
공공서비스	60	116	266	463	704	1,808	2,403	4,908	21,055	67,674
주류업세					13	94	119	177	435	573
보험세		2	16	39	68	185	317	795	4,355	26,273
주정부	52	91	312	801	1,654	4,217	5,635	14,077	81,289	243,574
연방정부	4	6	9	10	178	211	298	1,155	21,136	26,906

주: 재정수입은 주 및 연방정부 이전금 포함.

자료: J. Hellerstein and W. Hellerstein, *State and Local taxation: Cases and materials*, West Group, 2001.

나. 현행 지방세 구조

현재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주정부는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을 포함한 소득세 그리고 일반판매세를 위주로 유류세, 자동차 등록세 이외 주류, 담배 등 기호식품에 대한 소비

세 등을 부과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를 위주로 하여 담배 및 주류 등에 대한 개별판매세와 함께 등록세, 호텔숙박, 경마, 공공서비스, 보험업 등 다양한 상품과 사업에 대한 세금 혹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표 II-7> 미국 지방정부 주요 세목의 유형과 과표

세목	세율구조	과표
일반판매세	일률	유형 개인자산이나 서비스의 소매가격
개별판매세	일률	소매가격(제품별 차등화된 세율)
개인소득세	누진	연방정부 조정된 총소득(AGI)이나 과세소득을 과표로 조정
주 영업세	일률	순가치, 소득 혹은 판매가액의 가중치(franchise tax)
재산세	일률	개인 혹은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가치(FMV)
법인세	일률/누진	연방정부 법인세 과세소득 등을 과표로 조정
유류세	일률	종량세
담배세	일률	종가세(판매가격) 및 종량세
주세	알콜도수	종량세
기타		상속세, 보험세, 공공서비스(public utility), 경마, 유흥, 등록세

개인소득세의 경우 41개에 달하는 주정부에서 부과한다. 소득세를 부과하는 41개 주³⁾ 가운데 5개 주를 제외한 주정부는 연방소득세상의 소득을 주정부 소득세 과표로 한다. 또한 노스 다코다(14%), 로드 아일랜드(25%) 그리고 버몬트(24%)는 연방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주 소득세로 징수하는 단순한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외 다른 주들은 연방소득세상의 조정된 총소득(AGI)이나 과세소득을 과표로 다양한 증감 항목을 적용한다.

6개 주가 균일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누진과세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최고세율은 5~9%이고 5개 주의 최고세율은 10%를 초과한다. 이외 13개 주

3)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다, 텍사스, 워싱턴과 와이오밍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뉴햄프셔와 테네시는 일부 개인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의 지방정부(주로 시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한다.

미국에서 네바다, 워싱턴 그리고 와이오밍을 제외한 주는 법인세를 부과하며 미시간과 텍사스는 이와 유사한 사업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46개 주 가운데 13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누진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은 1개 주를 제외하면 25만달러 이하이다. 주정부의 법인세율은 대부분의 주에서 6~9% 사이에 있고 10% 이상은 2개 주에서 부과된다(<표 II-8> 참조). 하위 지방정부의 경우 법인세가 허용되는 주는 켄터키, 미시간, 미주리, 뉴욕, 오하이오, 오리건 등 6개 주이며 세율은 0.5%(미주리)에서 8%(뉴욕시)에 이른다.

<표 II-8> 주정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단위:%)

최고세율	개인소득세	법인세
0~5%	7	4
5~6%	6	5
6~7%	12	10
7~8%	5	6
8~9%	5	9
9~10%	3	9
10% 이상	5 ²⁾	2

자료: ECO/WKP(2001)39, OECD.

주정부 법인세 과표는 연방정부 법인세상의 총소득 혹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일정한 항목을 추가 내지는 제외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의회가 정하는 연방세법이 주정부 법인세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알라바마, 아칸사스 그리고 미시시피를 제외한 주정부에서는 주(州) 법인세 산정을 연방정부의 과세소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밖에 <표 II-9>는 각 지방정부가 이용하고 있는 세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전술한

대로 각 지방 고유의 정치 및 경제적 환경에 따라 세목이 다른데 다만 유류나 담배 등 기호식품은 모든 주에서 과세를 한다. 소득세의 경우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다, 텍사스, 워싱턴 그리고 와이오밍 주가 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판매세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뉴햄프셔 그리고 오레건주가 과세를 하지 않는다.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혹은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 그리고 와이오밍이며 이외 주는 법인세가 아니면 영업세 등을 부과한다. 이외 개인유형자산을 과세하는 주도 상당하며 무형자산 대신 재산세를 부과하는 주는 많지 않다. 이 밖에 주식의 양도나 증권 등의 서류 등록 그리고 유흥세와 광산 및 목재에 과세하는 주도 많다.

<표 II-9> 지방정부 세목 분포

	영업세	법인세	소득세	판매세	사용세	개인자산	무형자산	주식이전	증권등록
Alabama	○	○	○	○	○	○	○	○	○
Alaska		○		△	△	○			
Arizona		○	○	○	○	○			○
Arkansas	○	○	○	○	○	○			○
California		○	○	○	○	○			○
Colorado		○	○	○	○	○			○
Connecticut	○	○	○	○	○	○			○
Delaware	△	○	○	△	△				○
Florida		○		○	○	○	△	○	○
Georgia	○	○	○	○	○	○	○		○
Hawaii		○	○	○	○				○
Idaho	○	○	○	○	○	○			
Illinois	○	○	○	△	○				○
Indiana		○	○	○	○	○			
Iowa		○	○	○	○		△		○
Kansas	○	○	○	○	○	○	△		△
Kentucky	○	○	○	○	○	○	△		○
Louisiana	○	○	○	○	○	○	△		
Maine		○	○	○	○	○			○
Maryland		○	○	○	○	○	△		△
Massachusetts	○	○	○	△	△	○			○
Michigan		△	△	○	○	○	△		○
Minnesota		○	○	○	○	○			○
Mississippi	○	○	○	○	○	○	△		
Missouri	○	○	○	○	○	○			
Montana		○	○			○			
Nebraska	○	○	○	○	○	○			○
Nevada				○	○	○	△		○
New Hampshire	○	△	△	△		○			○
New Jersey		○	○	○	○	○			○
New Mexico		○	○	○	○	○			
New York	○	○	○	○	○			△	△
North Carolina	○	○	○	○	○	○	△		○
North Dakota		○	○	○	○	△	△		
Ohio	○	○	○	○	○	○			○
Oklahoma	○	○	○	○	○	○			△
Oregon		○	○			○			
Pennsylvania	○	○	○	○	○		△		○

<표 11-9>의 계속

	영업세	법인세	소득세	판매세	사용세	개인자산	무형자산	주식이전	증권등록
Rhode Island	○	○	○	○	○	○	△		
South carolina	○	○	○	○	○	○			○
South Dakota		△		○	○	△	△		○
Tennessee	○	○	△	○	○	○	△		○
Texas	○			○	○	○	△		
Utah		○	○	○	○	○			
Vermont		○	○	○	△	○			○
Virginia		○	○	○	○	○			○
Washington				○	△	○			○
West Virginia	○	○	○	○	○	○	△		○
Wisconsin		○	○	○	○	○			○
Wyoming	○			○	○	○			○
	유산세	증여세	상속세	유류세	유홍세	연쇄점	담배세	광산	목재
Alabama	△			○	△	○	○	○	○
Alaska	○			○			○	○	○
Arizona	△			○	△		○	○	○
Arkansas	○			○	△		○	○	○
California	△			○			○	○	
Colorado	△			○			○		
Connecticut	○	△	△	○	○		○		○
Delaware	○	△	△	○	○		○		
Florida	△			○	△		○	○	○
Georgia	○			○	△		○		
Hawaii	△			○	△		○		
Idaho	△			○	△		○	○	○
Illinois	△			○			○		
Indiana	△		○	○	△		○	○	
Iowa	△		○	○	△		○		
Kansas	△		○	○	△		○	○	
Kentucky	○		○	○	△		○	○	
Louisiana	○	○	○	○	△	○	○	○	○
Maine	○			○			○		
Maryland	△		○	○	○	○	○	△	
Massachusetts	△			○			○		
Michigan	△			○			○	○	○
Minnesota	○			○	△		○	○	○

<표 11-9>의 계속

	유산세	증여세	상속세	유류세	유흥세	연쇄점	담배세	광산	목재
Mississippi	○			○	△		○	○	○
Missouri	△			○	△		○		○
Montana	△		○	○			○	○	
Nebraska	△		○	○	△		○	○	
Nevada	△			○			○	○	
New Hampshire	○		○	○			○		
New Jersey	○		△	○	△		○		
New Mexico	○			○	△		○	○	○
New York	△	△		○	△		○		○
North Carolina	△	○	△	○	○		○	○	○
North Dakota	○			○	△		○	○	
Ohio	△			○			○		
Oklahoma	○			○	△		○	○	
Oregon	○			○			○	○	○
Pennsylvania	○		○	○			○		
Rhode Island	△			○	○	○	○		
South Carolina	△			○	○	○	○		
South Dakota	○		○	○	△		○	○	
Tennessee	△	○	○	○	○		○	○	
Texas	△		○	○	△		○	○	
Utah	○			○	△		○	○	
Vermont	○			○	△		○		
Virginia	△			○	△		○		○
Washington	△			○	△		○		○
West Virginia	○			○	△	△	○		
Wisconsin	○			○	△		○	○	○
Wyoming	○			○	△		○	○	

Ⅲ. 세수구조 및 세입

1. 정부 총수입 동향

연방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총정부 수입은 2002년 당시 약 2조 8,721억달러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27.5%에 달한다. 이와 같은 비중은 1990년대 말을 전후한 GDP 대비 비중이 3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간 감소한 것이나 조세 비중은 27%를 유지해 왔다. 이 가운데 개인세 등의 수입은 1조 1,119억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38.7%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판매세 등을 포함한 간접 상업세가 8,004억달러 (27.9%), 사회보장세(FICA 등)가 7,465억달러(26%) 그리고 법인세가 2,133억달러 (7.4%)를 차지한다. 이러한 동향은 1990년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

<표 III-1> 행정부 총수입과 부문별 수입(1990~2002)

(단위: 십억달러,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GDP	5,803.2	7,400.5	7,813.2	8,318.4	8,781.8	9,268.6	9,872.9	10,208.1	10,442.1
총수입	1,607.7	2,117.1	2,269.1	2,440.0	2,613.8	2,780.3	3,000.6	2,992.3	2,872.1
총수입/GDP	27.70	28.61	29.04	29.33	29.76	29.90	30.39	29.31	27.51
개인세 등	609.3	778.3	869.7	968.8	1,070.4	1,159.1	1,286.4	1,292.1	1,111.9
법인세	140.6	211.0	223.6	237.2	238.8	247.8	259.4	199.3	213.3
간접 상업세	447.3	594.6	620.0	646.2	681.3	712.9	753.6	774.8	800.4
사회보장세	410.1	533.2	555.8	587.8	623.3	660.4	701.3	726.1	746.5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www.bea.doc.gov/bea/dn/nipaweb/

<표 Ⅲ-2>에서 보듯이 정부 수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9년 24.1%에서 증가하여 2000년을 전후한 시점이 되면 거의 30%를 육박한다. 정부 비중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인데 같은 시기에 연방정부 수입은 17.1%에서 19.9%로 증가한 것을 보면 GDP 대비 약 5~6%에 이르는 수입 증가에서 절반 정도는 연방정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정부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수입이 7.7%에서 12.5%로 약 4.8%p 증가하였는데 그 중 2%는 연방정부 지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III-2> 국내총생산과 단위 정부별 총수입(Fiscal Years 1959~2001)

(단위: 십억달러, %)

	국내총생산	총정부 수입	연방정부 수입	지방정부 수입
1959	507.4	122.1 (24.1)	87.0 (17.1)	38.9 (7.7)
1960	527.4	131.2 (24.9)	92.8 (17.6)	42.4 (8.0)
1961	545.7	135.8 (24.9)	94.4 (17.3)	45.9 (8.4)
1962	586.5	147.0 (25.1)	102.3 (17.4)	49.7 (8.5)
1963	618.7	157.9 (25.5)	110.2 (17.8)	53.4 (8.6)
1964	664.4	162.1 (24.4)	110.2 (16.6)	58.4 (8.8)
1965	720.1	175.4 (24.4)	119.3 (16.6)	63.3 (8.8)
1966	789.3	197.8 (25.1)	136.3 (17.3)	71.5 (9.1)
1967	834.1	212.1 (25.4)	144.9 (17.4)	78.9 (9.5)
1968	911.5	245.3 (26.9)	168.5 (18.5)	89.5 (9.8)
1969	985.3	276.3 (28.0)	190.1 (19.3)	100.7 (10.2)
1970	1,039.1	279.6 (26.9)	184.3 (17.7)	114.6 (11.0)
1971	1,128.6	295.6 (26.2)	189.8 (16.8)	129.3 (11.5)
1972	1,240.4	338.1 (27.3)	217.5 (17.5)	152.3 (12.3)
1973	1,385.5	380.3 (27.4)	248.5 (17.9)	166.6 (12.0)
1974	1,501.0	419.6 (28.0)	277.3 (18.5)	178.5 (11.9)
1975	1,635.2	430.5 (26.3)	276.1 (16.9)	199.6 (12.2)
1976	1,823.9	492.6 (27.0)	318.9 (17.5)	224.5 (12.3)
1977	2,031.4	552.8 (27.2)	359.9 (17.7)	249.5 (12.3)
1978	2,295.9	626.0 (27.3)	417.3 (18.2)	274.3 (11.9)
1979	2,566.4	702.7 (27.4)	478.3 (18.6)	290.8 (11.3)
1980	2,795.6	767.1 (27.4)	522.8 (18.7)	316.6 (11.3)
1981	3,131.3	877.6 (28.0)	605.9 (19.3)	344.4 (11.0)
1982	3,259.2	890.3 (27.3)	599.5 (18.4)	360.3 (11.1)
1983	3,534.9	944.5 (26.7)	623.9 (17.6)	392.1 (11.1)
1984	3,932.7	1,047.8 (26.6)	688.1 (17.5)	436.4 (11.1)
1985	4,213.0	1,135.8 (27.0)	747.4 (17.7)	469.2 (11.1)
1986	4,452.9	1,206.7 (27.1)	786.4 (17.7)	507.9 (11.4)
1987	4,742.5	1,322.5 (27.9)	870.5 (18.4)	536.0 (11.3)
1988	5,108.3	1,410.9 (27.6)	928.9 (18.2)	573.7 (11.2)
1989	5,489.1	1,530.9 (27.9)	1,010.3 (18.4)	618.9 (11.3)
1990	5,803.2	1,607.7 (27.7)	1,055.7 (18.2)	663.4 (11.4)
1991	5,986.2	1,656.6 (27.7)	1,072.3 (17.9)	716.0 (12.0)
1992	6,318.9	1,744.4 (27.6)	1,121.3 (17.7)	772.2 (12.2)
1993	6,642.3	1,857.9 (28.0)	1,197.3 (18.0)	823.2 (12.4)
1994	7,054.3	1,993.0 (28.3)	1,293.7 (18.3)	873.8 (12.4)
1995	7,400.5	2,117.1 (28.6)	1,383.7 (18.7)	917.9 (12.4)
1996	7,813.2	2,269.1 (29.0)	1,499.1 (19.2)	960.4 (12.3)
1997	8,318.4	2,440.0 (29.3)	1,625.5 (19.5)	1,011.3 (12.2)
1998	8,781.5	2,613.8 (29.8)	1,749.7 (19.9)	1,074.4 (12.2)
1999	9,274.3	2,780.3 (30.0)	1,867.2 (20.1)	1,144.1 (12.3)
2000	9,824.6	3,000.6 (30.5)	2,033.9 (20.7)	1,214.2 (12.4)
2001	10,082.2	2,992.3 (29.7)	2,008.4 (19.9)	1,261.3 (12.5)

주: 1. 괄호안은 GDP 대비 비율임.

2. 연방정부 지원금(federal grants)이 지방정부 수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방 및 지방정부 수입의 합이 총수입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03*, US Printing Office, 2003.

2. 연방정부 수입 동향

가. 연방정부 수입

<표 III-3>과 <표 III-4>는 연방정부의 수입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⁴⁾. 우선 <표 III-3>은 최근의 부문별 수입을 정리한 것인데 2002년을 기준하면 연방정부 수입은 1조 9,461억달러로 GDP의 18.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일반 세수가 1조 9,255억달러(GDP 18.4%)로 총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방정부 수입에서 주요 세목의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세 9,429억달러(49.3%), 사회보장세 7,080억달러(36.8%), 법인세 2,014억달러(10.5%) 그리고 소비세 669억달러(3.5%)이다.

사회보장세는 고용 및 생존 배우자 연금과 의료보험(Medicare) 이외에도 실업보험, 철도연금 그리고 연방 공무원연금 수입을 모두 포함하는데 물론 이 가운데 일반 은퇴 연금과 의료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소비세는 일반세 이외 기금 관련 세금으로 나뉘는데 일반 소비세에서는 담배와 주류의 비중이 각각 76억달러, 80억달러로 가장 크고 이외 전화, 유류 그리고 오존 파괴 화학품에 대한 소비세가 있다. 기금의 경우 2002년 당시 422억달러의 수입이 있었는데 도로세(319억달러) 이외에 공항세, 폐병(석탄)세 등이 있다.

이외 <표 III-4>는 연방정부 재정수입을 주요 세목 이외 여타 수입을 모두 합한 자료이다. 2002년을 기준할 때 재정수입 1조 8,607억달러에서 사회보장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1조 8,174억달러로 총재정수입의 97.7%에 이르고 여기서 사회보장금을 제외한 순세입은 1조 807억달러로 재정수입의 58%에 이른다. 2002년의 경우 세입이 전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는데 원래 1980년의 약 67%에서 약간 감소하여 주로 62% 수준을 넘나들었다.

주요 세목의 수입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세입 이외 수입을 보면 연방은행으로부터의 수입이 245억달러, 이자 및 임대료 등 자산소득 269억달러 그리고 이전수입이 231억달러이고 공기업 잉여는 대부분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2002년 31억달러 손실). 이 밖에도 해외로부터의 세입은 5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4) 자료 출처에 따라 정부 수입의 규모는 약간씩 다를 수 있다.

<표 III-3> 연방정부 부문별 수입(1980~2002)

(단위: 십억달러, %)

	1980	1990	1995	1999	2000	2001	2002
국내총생산(GDP)	2,795.6	5,803.2	7,400.5	9,274.3	9,824.6	10,082.2	10,442.1
연방정부 총수입 (%GDP)	517.1 18.50	1032 17.78	1,351.8 18.27	1,827.5 19.70	2,025.2 20.61	1991 19.75	1,946.1 18.64
일반세수 (%GDP)	490.8 17.56	975.7 16.81	1,289.2 17.42	1,746.4 18.83	1,933.6 19.68	1,905.5 18.90	1925.5 18.44
소득세	244.1	466.9	590.2	879.5	1,004.5	994.3	949.2
법인세	64.6	93.5	157	184.7	207.3	151.1	201.4
사회보장세	157.8	380	484.5	611.8	652.9	694	708
소비세	24.3	35.3	57.5	70.4	68.9	66.1	66.9
사회보장세	157.8	380	484.5	611.8	652.9	694	708
고용및일반연금	138.7	353.9	451	580.9	620.5	661.4	673.1
노령자및생존자	96.6	255	284.1	383.6	411.7	434.1	442.1
장애	16.6	26.6	67	60.9	68.91	73.5	75.1
의료보험	23.2	68.6	96	132.3	135.5	149.7	151.7
철도연금	2.3	2.3	2.4	2.6	2.7	2.7	2.6
실업보험	15.3	21.6	28.9	26.5	27.6	27.8	30.3
기타 연금	3.7	4.5	4.6	4.5	4.8	4.7	4.6
연방공무원연금	3.7	4.4	4.5	4.4	4.7	4.6	4.6
소비세	24.3	35.3	57.5	70.4	68.9	66.1	66.9
연방기금	15.6	15.6	26.9	19.3	22.7	24.1	24.7
주류	5.6	5.7	7.2	7.4	8.1	7.6	7.6
담배	2.4	4.1	5.9	5.4	7.2	7.4	8.0
전화	b	3.0	3.8	5.2	5.7	5.8	6.0
오존파괴물질	b	0.4	0.6	0.1	0.1	a	a
교통연료	b	b	8.5	0.8	0.8	1.2	1.1
기금(Trust fund)	8.8	19.8	30.5	51.1	46.2	41.9	42.2
도로	6.6	13.9	22.6	39.3	35.0	31.5	31.9
공항	1.9	3.7	5.5	10.4	9.7	9.2	8.9
폐병(석탄)	0.3	0.7	0.6	0.6	0.5	0.5	0.6
내국운하	b	0.1	0.1	0.1	0.1	0.1	0.1
유해물질	b	0.8	0.9	a	a	0	0
석유누출 부담금	b	0.1	0.2	0	0.2	0	0
수산자원	b	0.2	0.3	0.4	0.3	0.4	0.4
백신평해 보상	b	0.2	0.1	0.1	0.1	0.1	0.1

주: 1. 2002년은 추정치. 2. a: 5천만달러 혹은 이하. 3. b: 적용 대상이 아님.

자료: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3.access.gpo.gov/usbudget/fy2003/pdf/hist.pdf

<표 III-4> 연방정부 재정수입 내역(1980~2002)

(단위: 십억달러)

	총수입	세금	개인세	상품세			법인세	연방은행	기타
				소비세	관세				
1980	532.1	355.9	250.0	34.0	26.9	7.2	70.3	11.7	57.6
1981	619.4	408.1	290.6	50.3	41.7	8.6	65.7	14.0	51.7
1982	616.6	386.8	295.0	41.4	32.8	8.6	49.0	15.2	33.8
1983	642.3	393.6	286.2	44.8	35.7	9.1	61.3	14.2	47.1
1984	709.0	425.7	301.4	47.8	35.9	11.9	75.2	16.1	59.2
1985	773.3	460.6	336.0	46.4	34.3	12.2	76.3	17.8	58.5
1986	815.2	479.6	350.1	44.0	30.3	13.7	83.8	17.8	66.0
1987	896.6	544.0	392.5	46.3	30.7	15.5	103.2	17.7	85.4
1988	958.2	566.7	402.9	50.3	33.9	16.4	111.1	17.4	93.8
1989	1,037.4	621.7	451.5	50.2	32.7	17.5	117.2	21.6	95.6
1990	1,081.5	642.8	470.2	51.4	33.9	17.5	118.1	23.6	94.5
1991	1,101.3	636.1	461.3	62.2	45.3	16.8	109.9	20.8	89.2
1992	1,147.2	660.4	475.3	63.7	45.4	18.3	118.8	16.8	102.0
1993	1,222.5	713.4	505.5	66.7	46.9	19.8	138.5	16.0	122.5
1994	1,320.8	781.9	542.7	79.4	57.9	21.4	156.7	20.5	136.3
1995	1,406.5	845.1	586.0	75.9	56.1	19.8	179.3	23.4	155.9
1996	1,524.0	932.4	663.4	73.2	54.0	19.2	190.6	20.1	170.5
1997	1,653.1	1,030.6	744.3	78.2	58.6	19.6	203.0	20.7	182.3
1998	1,773.8	1,116.8	825.8	81.1	61.5	19.6	204.2	26.6	177.7
1999	1,891.2	1,195.7	893.0	83.9	64.7	19.2	213.0	25.4	187.6
2000	2,053.8	1,313.6	991.1	87.8	66.7	21.1	219.4	25.3	194.1
2001	2,017.8	1,254.9	1,000.0	86.0	65.3	20.6	161.8	27.1	134.7
2002	1,860.7	1,080.7	831.1	87.6	67.7	19.9	154.8	24.5	130.3
	해외 세금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자산 소득	이자 수입	임대료 로열티	이전 수입	사업 이전수입	개인 이전수입	공기업 잉여
1980	1.6	162.6	13.7	11.3	2.3	3.5	3.3	0.2	-3.6
1981	1.5	191.8	18.3	14.8	3.5	3.8	3.5	0.3	-2.5
1982	1.4	204.9	22.2	18.3	3.8	5.2	4.5	0.7	-2.4
1983	1.2	221.8	23.8	20.4	3.5	6.0	5.0	1.0	-2.9
1984	1.3	252.8	26.6	22.8	3.9	7.3	6.2	1.0	-3.4
1985	1.9	276.5	29.1	25.7	3.5	9.4	8.2	1.2	-2.4
1986	1.7	297.5	31.4	29.0	2.4	8.2	6.9	1.3	-1.5
1987	2.0	315.6	27.9	25.6	2.3	10.7	8.7	2.0	-2.0

<표 III-4>의 계속

(단위: 십억달러)

	해외 세금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자산 소득	이자	임대료	이전 수입	사업	개인	공기업 잉여
				수입	로열티		이전수입	이전수입	
1988	2.4	353.1	30.0	28.0	2.0	10.8	8.0	2.8	-2.3
1989	2.7	376.3	28.6	26.5	2.1	12.4	9.3	3.1	-1.6
1990	3.0	400.1	30.2	27.6	2.6	13.5	10.1	3.4	-5.1
1991	2.6	418.6	30.1	27.4	2.8	17.9	14.1	3.9	-1.4
1992	2.6	441.8	25.7	23.1	2.6	19.4	15.3	4.1	-0.1
1993	2.7	463.6	26.2	23.5	2.7	21.1	16.1	5.0	-1.8
1994	3.1	493.7	23.4	20.6	2.7	22.3	16.7	5.6	-0.4
1995	3.9	519.2	23.7	21.2	2.5	19.1	13.0	6.1	-0.6
1996	5.2	542.8	26.9	23.0	4.0	23.1	16.0	7.1	-1.2
1997	5.1	576.4	25.9	21.4	4.5	19.9	12.0	7.9	0.3
1998	5.7	613.8	21.5	17.7	3.8	21.5	12.9	8.6	0.1
1999	5.9	651.6	21.5	18.0	3.5	22.7	12.9	9.8	-0.3
2000	7.3	691.7	25.2	20.1	5.1	25.7	14.9	10.8	-2.3
2001	7.2	715.4	24.4	17.9	6.5	27.4	15.9	11.5	-4.1
2002	7.2	736.7	20.6	15.9	4.7	25.8	14.1	11.7	-3.1

자료: Federal Current Receipts and Expenditure(www.bea.doc.gov/bea/dn/nipaweb)

나. 연방정부 세목별 세수 동향

연방정부 내국세 징수 동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방세 GDP 대비 비중은 그간 꾸준히 증가하여 1972년 16.9%에서 2002년에는 19.3%에 달한다. 특히 이러한 증가 추세는 1995년 이후 두드러진 현상인데 이는 미국이 신경제 활황을 경험하면서 세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소득세의 추이에서 보듯이 누진과세적 성격이 세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균일과세되는 자영업 고용세의 GDP 대비 비중이 1990년대에 크게 변화하지 않은 사실에서 입증된다(<표 III-5> 참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영업자 고용세의 비중은 1972년 3.5%에서 2002년 6.5%

로 증가하여 개인소득세를 제외한 여타 세목과 달리 GDP 대비 비중이 3%p 정도 크게 증가하였다. 개인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8.8%에서 11.3%로 2.5%p 증가한 바 있다. 따라서 내국세 비중이 약 2.4%p 증가한 것은 대략 개인소득세의 GDP 비중 증대와 유사하고 고용세에서 세입이 증가한 부분은 대략 다른 세목의 세입 감소로 상쇄되었다.

즉,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은 최고 2.8%에 달하던 1970년에 비하여 2002년에는 1.8%로 감소한 측면이 있고 유산 및 증여세 비중은 0.2~0.3%로 과거 30년간 큰 변화가 없다. 물론 이러한 세목별 동향은 같은 세목을 과세하는 지방정부의 세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외 연방소비세의 비중도 그간 꾸준히 감소하여 1972년 GDP 대비 비중이 1.4%에서 2002년에는 0.5%로 감소한 바 있다.

<표 III-5> 내국세 세목별 징수액(Fiscal Years 1972~2002)

(단위: 억달러, %)

	전체 내국세 징수액	소득세			자영업 고용세	유산증여세	연방소비세
		총징수액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1972	2,098.6(16.9)	1,438.0(11.6)	349.3(2.8)	1,088.8(8.8)	437.1(3.5)	54.7(0.4)	168.5(1.4)
1973	2,377.9(17.2)	1,641.6(11.8)	390.5(2.8)	1,251.1(9.0)	520.8(3.8)	49.8(0.4)	165.7(1.2)
1974	2,689.5(17.9)	1,846.5(12.3)	417.4(2.8)	1,429.0(9.5)	620.9(4.1)	51.0(0.3)	171.1(1.1)
1975	2,938.2(18.0)	2,021.5(12.4)	457.5(2.8)	1,564.0(9.6)	701.4(4.3)	46.9(0.3)	168.5(1.0)
1976	3,025.2(16.6)	2,057.5(11.3)	467.8(2.6)	1,589.7(8.7)	742.0(4.1)	53.1(0.3)	174.0(1.0)
1977	3,581.4(15.6)	2,468.1(10.7)	600.5(2.6)	1,867.6(8.1)	860.8(3.7)	74.3(0.3)	178.3(0.8)
1978	3,997.8(15.6)	2,784.4(10.8)	653.8(2.5)	2,130.6(8.3)	972.9(3.8)	53.8(0.2)	186.6(0.7)
1979	4,604.1(16.5)	3,229.9(11.6)	714.5(2.6)	2,515.5(9.0)	1,128.5(4.0)	55.2(0.2)	190.5(0.7)
1980	5,193.8(16.6)	3,599.3(11.5)	723.8(2.3)	2,875.5(9.2)	1,283.3(4.1)	65.0(0.2)	246.2(0.8)
1981	6,068.0(18.6)	4,065.8(12.5)	737.3(2.3)	3,328.5(10.2)	1,528.9(4.7)	69.1(0.2)	404.2(1.2)
1982	6,322.4(17.9)	4,186.0(11.8)	659.9(1.9)	3,526.1(10.0)	1,687.2(4.8)	81.4(0.2)	367.8(1.0)
1983	6,272.5(15.9)	4,114.1(10.5)	617.8(1.6)	3,496.3(8.9)	1,738.5(4.4)	62.3(0.2)	357.7(0.9)
1984	6,804.8(16.2)	4,370.7(10.4)	741.8(1.8)	3,628.9(8.6)	1,992.1(4.7)	61.8(0.1)	380.2(0.9)
1985	7,428.7(16.7)	4,740.7(10.6)	774.1(1.7)	3,966.6(8.9)	2,252.1(5.1)	65.8(0.1)	370.0(0.8)
1986	7,822.5(16.5)	4,974.1(10.5)	804.4(1.7)	4,169.6(8.8)	2,439.8(5.1)	71.9(0.2)	336.7(0.7)
1987	8,862.9(17.3)	5,683.1(11.1)	1,028.6(2.0)	4,654.5(9.1)	2,770.0(5.4)	76.7(0.2)	333.1(0.7)
1988	9,351.1(17.0)	5,833.5(10.6)	1,096.8(2.0)	4,736.7(8.6)	3,180.4(5.8)	77.8(0.1)	259.3(0.5)
1989	10,133.2(17.5)	6,327.5(10.9)	1,170.1(2.0)	5,157.3(8.9)	3,456.3(6.0)	89.7(0.2)	259.8(0.4)
1990	10,563.7(17.6)	6,502.4(10.9)	1,100.2(1.8)	5,402.3(9.0)	3,672.2(6.1)	117.6(0.2)	271.4(0.5)
1991	10,868.5(17.2)	6,604.8(10.5)	1,136.0(1.8)	5,468.8(8.7)	3,844.5(6.1)	114.7(0.2)	304.5(0.5)
1992	11,208.0(16.9)	6,756.7(10.2)	1,179.5(1.8)	5,577.2(8.4)	4,000.8(6.0)	114.8(0.2)	335.7(0.5)
1993	11,766.9(16.7)	7,173.2(10.2)	1,315.5(1.9)	5,857.7(8.3)	4,115.1(5.8)	128.9(0.2)	349.6(0.5)
1994	12,764.7(17.2)	7,740.2(10.5)	1,542.0(2.1)	6,198.2(8.4)	4,438.3(6.0)	156.1(0.2)	430.0(0.6)
1995	13,757.3(17.6)	8,502(10.8)	1,744.2(2.2)	6,757.8(8.6)	4,654.1(6.0)	151.4(0.2)	449.8(0.6)
1996	14,865.5(17.9)	9,343.7(11.2)	1,890.5(2.3)	7,453.1(9.0)	4,923.7(5.9)	175.9(0.2)	422.2(0.5)
1997	16,232.7(18.5)	10,295.1(11.7)	2,044.9(2.3)	8,250.2(9.4)	5,286.0(6.0)	203.6(0.2)	448.1(0.5)
1998	17,694.1(19.1)	11,413.4(12.3)	2,132.7(2.3)	9,280.7(10.0)	5,578.0(6.0)	246.3(0.3)	456.4(0.5)
1999	19,041.5(19.4)	12,185.1(12.4)	2,163.2(2.2)	10,021.9(10.2)	5,986.7(6.1)	283.9(0.3)	585.9(0.6)
2000	20,969.2(20.8)	13,727.3(13.6)	2,356.5(2.3)	11,370.8(11.3)	6,396.5(6.3)	297.2(0.3)	548.1(0.5)
2001	21,288.3(20.4)	13,649.4(13.1)	1,867.3(1.8)	11,782.1(11.3)	6,822.2(6.5)	292.5(0.3)	524.2(0.5)
2002	20,166.3(19.3)	12,491.7(12.0)	2,114.4(1.8)	10,377.3(11.3)	6,880.8(6.5)	272.4(0.3)	521.4(0.5)

주: 1. ()안의 수치는 GDP 대비비율임. 2. 알콜 및 담배세(1988년 이후)와 총기류 세(1991년 이후)는 제외. 3. 법인소득세에서 면세 대상 영업소득세 포함. 4. 개인소득세는 유산 및 기금 소득세 포함. 5. 고용세는 노년자, 생존 배우자, 상해 및 의료보험(OSADHI) 세금과 실업보험세, 철도연금세 등 포함.

자료: IRS Data Book, FY 2001, Publication 55b.

<표 III-6>은 최근 미국 국세청(IRS)의 국세 징수상황을 세목별로 보여준다. 2002년의 경우 2조 166억달러를 징수하였지만 이 가운데 2,839억달러(14.1%)를 환급해주었고 순징수액은 1조 7,327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114억달러를 징수하였지만 이 가운데 668억달러(31.6%)를 환급하였다. 이에 비하면 개인소득세의 환급 비중은 약 20.3%에 이른다. 이외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 비중은 2002년 당시 72.4%에 달한다.

<표 III-6> IRS 내국세 징수내역 (1998~2002)

(단위: 십억달러, %)

	1999				2000			
	총징수	환급	순징수	구성비	총징수	환급	순징수	구성비
총세수	1,904.2	187.3	1,716.8	100.0	2,096.9	196.6	1,900.3	100.0
법인세	216.3	34.1	182.3	10.6	235.7	30.4	205.3	10.8
일반	215.5	-	-	-	235.0	-	-	-
면세기관 사업소득세	0.8	-	-	-	0.7	-	-	-
개인소득세	1002.2	147.0	855.2	49.8	1137.1	158.7	978.4	51.5
사용자 원천징수	694.0	-	-	-	780.5	n.a.	n.a.	n.a.
기타	308.2	-	-	-	356.5	n.a.	n.a.	n.a.
고용세	598.7	4.0	594.7	34.6	639.7	4.9	634.7	33.3
고령, 생존자, 장애보험(OASDHI)	587.5	3.9	586.0	34.1	627.9	4.8	623.1	32.8
연방보험기여법(FICA)	555.3	-	-	-	593.3	-	-	-
자영업 보험기여법(SECA)	32.2	-	-	-	34.6	-	-	-
실업보험	6.7	0.1	6.5	0.4	7.0	0.1	6.9	0.3
철도은퇴	4.5	0.0	4.5	0.3	4.8	0.0	4.8	0.2
유산·증여세	28.4	0.7	27.7	1.6	29.7	0.7	28.9	1.5
유산세	23.6	0.6	23.0	1.3	25.6	0.7	24.9	1.3
증여세	4.8	0.1	4.7	0.3	4.1	0.1	4.0	0.2
소비세	58.6	1.7	56.9	3.3	54.8	1.8	53.0	2.8
	2001				2002			
	총징수	환급	순징수	구성비	총징수	환급	순징수	구성비
총세수	2,128.8	253.9	1,902.1	100.0	2,016.6	283.9	1,732.7	100.0
법인세	186.7	37.9	148.8	7.8	211.4	66.8	144.7	8.3
일반	186.1	-	-	-	210.9	-	-	-
면세기관 사업소득세	0.7	-	-	-	0.5	-	-	-
개인소득세	1,178.2	206.8	998.6	52.5	1,037.7	210.2	827.6	47.8
사용자 원천징수	795.1	n.a.	n.a.	n.a.	750.8	n.a.	n.a.	n.a.
기타	383.1	n.a.	n.a.	n.a.	286.9	n.a.	n.a.	n.a.
고용세	682.2	6.3	675.9	35.5	688.1	3.9	684.1	39.5
고령, 생존자, 장애보험(OASDHI)	670.5	6.1	664.3	34.9	676.8	3.8	673.0	38.8
연방보험기여법(FICA)	634.2	-	-	-	639.7	-	-	-
자영업 보험기여법(SECA)	36.3	-	-	-	37.1	-	-	-
실업보험	7.1	0.1	6.9	0.4	6.7	0.1	6.6	0.4
철도은퇴	4.7	0.0	4.7	0.2	4.5	0.0	4.6	0.2
유산·증여세	29.2	0.9	28.3	1.5	27.2	0.8	26.4	1.5
유산세	25.3	0.8	24.4	1.3	25.5	0.7	24.8	1.4
증여세	4.0	0.1	3.9	0.2	1.7	0.1	1.6	0.1
소비세	52.4	1.9	50.5	2.7	52.4	2.2	49.9	2.9

자료: IRS Data Book FY 2002 Pub. 55b

<표 III-7> 정부단위별 간접세 내역(1980~2002)

(단위: 십억달러)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9	1990	1991
총 간접세	200.7	236.0	241.3	263.7	290.2	308.5	323.7	347.9	399.3	425.5	457.5
연방정부	34.0	50.3	41.4	44.8	47.8	46.4	44.0	46.3	50.2	51.4	62.2
소비세	26.9	41.7	32.8	35.7	35.9	34.3	30.3	30.7	32.7	33.9	45.3
휘발유	4.1	4.1	4.1	7.9	8.9	8.9	9.2	9.0	9.5	10.0	15.2
주류	5.5	5.6	5.4	5.5	5.2	5.1	5.6	5.7	5.6	5.7	7.4
담배류	2.5	2.6	2.5	5.0	4.6	4.5	4.6	4.6	4.3	4.2	5.0
경유	0.5	0.6	0.6	1.2	1.9	2.6	2.6	2.7	3.2	3.3	4.3
공항	1.5	1.1	1.4	2.1	2.3	2.4	2.6	2.6	3.2	3.5	4.7
원유	9.3	24.3	15.7	9.9	8.3	5.2	0.4	-	-	-	-
기타	3.4	3.5	3.1	4.0	4.5	5.5	5.3	6.1	7.0	7.1	8.6
관세	7.2	8.6	8.6	9.1	11.9	12.2	13.7	15.5	17.5	17.5	16.8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방정부	166.7	185.7	200.0	218.9	242.5	262.1	297.7	324.6	349.1	374.1	395.3
판매세	82.9	90.7	96.2	107.7	121.0	131.1	139.9	162.4	172.3	184.3	190.7
주정부	70.0	76.5	80.3	90.0	100.9	109.0	115.8	135.1	142.3	152.5	157.5
일반	44.8	49.0	51.2	58.2	66.5	72.3	76.8	91.2	96.3	103.4	105.0
휘발유	9.6	10.1	10.5	11.6	12.9	14.0	14.9	17.6	18.6	20.1	21.4
주류	2.5	2.7	2.7	2.8	3.0	3.1	3.1	3.1	3.1	3.3	3.5
담배류	3.8	3.9	4.1	4.0	4.2	4.4	4.6	4.8	5.4	5.8	6.1
공기업	3.7	4.6	5.4	5.9	5.9	6.2	6.0	6.1	6.1	6.7	7.0
보험수입	3.2	3.4	3.5	4.0	4.2	4.8	5.9	7.3	7.3	7.5	7.9
기타	2.4	2.7	3.0	3.5	4.1	4.3	4.4	5.1	5.2	5.7	6.6
자치단체	12.8	14.3	15.9	17.7	20.1	22.1	24.1	27.2	30.1	31.8	33.2
일반	8.8	9.8	10.8	12.2	14.0	15.5	16.9	18.8	21.0	22.2	23.0
공기업	2.6	2.8	3.2	3.5	3.8	4.0	4.1	4.5	4.8	5.1	5.6
기타	1.6	1.7	1.8	2.0	2.3	2.6	3.1	3.9	4.2	4.4	4.6
재산세	68.8	77.1	85.3	91.9	99.7	107.5	116.2	136.5	149.9	161.5	176.1
자동차등록	2.0	2.1	2.1	2.1	2.3	2.6	2.7	3.2	3.4	3.6	3.7
자원세	5.0	7.5	7.8	7.1	7.3	7.0	5.0	4.1	4.4	5.2	5.1
특별평가	1.3	1.5	1.6	1.8	2.0	2.1	2.3	2.4	2.4	2.4	2.5
기타세	6.8	6.8	7.0	8.4	10.1	11.8	13.6	16.0	16.8	17.1	17.4

<표 III-7>의 계속

(단위: 십억달러)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간접세	483.8	503.4	545.6	558.2	581.1	612.0	639.8	674.0	708.9	729.8	760.1
연방정부	63.7	66.7	79.4	75.9	73.2	78.2	81.1	83.9	87.8	86.0	87.6
소비세	45.4	46.9	57.9	56.1	54.0	58.6	61.5	64.7	66.7	65.3	67.7
휘발유	15.5	16.0	21.3	21.2	22.3	22.1	23.4	23.4	23.4	23.3	23.3
주류	7.6	7.5	7.0	7.3	7.5	7.3	7.4	7.7	7.8	7.9	8.0
담배류	5.4	5.7	5.8	5.9	5.8	5.9	5.6	5.6	6.7	7.1	7.5
경유	4.2	4.1	7.1	6.6	7.8	7.4	7.7	8.3	8.6	8.6	8.9
공항	4.8	5.0	5.5	5.7	2.5	6.5	8.3	8.8	9.9	9.1	10.2
원유	-	-	-	-	-	-	-	-	-	-	-
기타	7.9	8.5	11.2	9.4	8.2	9.4	9.1	10.9	10.2	9.3	9.7
관세	18.3	19.8	21.4	19.8	19.2	19.6	19.6	19.2	21.1	20.6	19.9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방정부	420.1	436.8	466.3	482.4	507.9	533.8	558.8	590.2	621.1	643.8	672.5
판매세	204.3	216.4	231.4	242.7	256.2	268.7	283.9	301.6	316.6	322.7	328.8
주정부	169.7	179.4	191.7	200.5	211.8	221.3	233.3	245.9	255.5	259.5	264.0
일반	112.1	118.2	127.9	135.1	143.8	151.4	159.5	169.1	177.8	179.3	180.7
휘발유	22.9	24.0	25.2	25.7	26.6	27.7	28.6	29.6	30.4	31.5	32.4
주류	3.6	3.6	3.6	3.6	3.7	3.7	3.8	4.0	4.1	4.2	4.3
담배류	6.1	6.5	7.0	7.3	7.5	7.5	8.1	8.2	8.5	8.6	10.2
공기업	7.9	8.0	8.5	7.9	8.9	8.9	8.8	9.4	8.8	9.6	9.6
보험수입	7.9	8.1	8.5	9.0	8.9	9.2	9.6	9.7	9.8	10.4	11.2
기타	9.2	10.9	11.0	11.9	12.5	12.9	14.8	16.0	16.0	16.0	15.7
자치단체	34.6	37.0	39.7	42.2	44.4	47.4	50.6	55.6	61.1	63.2	64.8
일반	23.9	25.5	27.5	29.3	30.6	32.8	35.4	39.5	43.5	44.5	45.1
공기업	6.0	6.5	6.8	7.2	7.5	7.9	8.2	8.5	9.2	9.7	10.1
기타	4.7	5.0	5.4	5.7	6.2	6.7	7.0	7.6	8.4	9.0	9.6
재산세	184.7	187.3	199.4	202.6	212.4	223.5	231.0	242.8	254.6	269.6	291.0
자동차등록	4.0	4.5	4.9	5.5	5.4	5.8	6.1	6.3	6.7	6.6	6.8
자원세	4.8	4.4	4.4	4.0	4.5	4.7	3.6	3.5	5.3	5.7	4.2
특별평가	2.8	2.9	3.1	3.1	3.4	3.7	3.7	3.8	3.9	4.0	4.1
기타세	19.6	21.4	23.1	24.4	26.0	27.4	30.6	32.2	34.0	35.4	37.5

자료: Tax on Products and Imports(www.bea.doc.gov/bea/dn/nipaweb)

간접세의 경우 미국에서는 주로 지방정부가 일반판매세와 개별판매세 혹은 재산세 등으로 과세하고 연방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정책목표를 위하여 혹은 목적세 형식으로 과세를 한다. 이는 2002년 당시 총간접세 세입 7,601억달러 중에서 지방정부의 간접세 세입이 6,725억달러로 88.5%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연방정부 간접세 세입은 876억달러에 불과하다. 연방정부 간접세는 특히 소비세가 주종이며 이 가운데에서도 휘발유, 주류, 담배 및 경유세가 대부분이고 공항세도 일부를 차지한다. 반면 관세 세입은 199억달러로 휘발유세보다 적다. 보석 등의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1993년 폐지되기 이전까지 기타세로서 역할을 하였다. 지방정부 간접세에서 판매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288억달러(48.9%)이고 재산세가 2,910억달러(43.3%)에 이른다. 판매세는 일반판매세(1,807억달러)와 담배와 주류 등 기호품에 부과되는 개별판매세가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인 주정부에서 징수하는 판매세는 2,640억달러로 전체 판매세의 80.3%에 달하고 나머지 648억달러(19.7%)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기초자치단체 판매세는 대부분 일반판매세의 형태로 징수된다.

<표 III-8> 기능별 조세지출예산 추계

(단위: 억달러, %)

	1995	1998	2001	2002	2003(순위)
군관련 종사자에 대한 혜택 면제	20.1	21.0	21.6	21.9	22.1(43)
국제관계		110.4	131	183.4	189.1
미국국민 해외소득 면제		19.9	24.5	25.4	26.6(37)
외국주재 연방공무원 면제			7.6	8.0	8.4(59)
역외소득 면제 ¹⁾	14.0	21.5	44.9	48.2	51.5(23)
재고자산 판매	13.0	15.0	14.0	14.7	15.4(48)
CFC 이연소득	17.0	55.0	66.0	70.0	74.5(17)
항공과학기술				84.4	71.6
연구실험경비	23.9		20.2	17.8	23.8(39)
연구활동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53.7	60.1	45.9(26)
에너지	9.2	15.4	16.3		
천연자원 및 환경		14.6	16.2		
농업 양도소득			9.9	10.4	11.0(56)
주택 및 사업활동		2193	2451	2667	2778.1
신용협동조합 소득 면제			10.0	10.7	11.5(53)
생명보험 이자소득의 면제	103.7	134.7	162.9	177.1	192.5(14)
주택					
소유자 거주 대출 지원채권 이자소득	17.8		8.0	8.3	8.7(58)
소유자 거주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512.7	517.0	645.1	641.9	661.1(2)
소유자 거주 재산세 소득공제	148.5	177.7	224.1	226.8	235.8(11)
1987 분할판매 소득 이연			10.4	10.5	10.8(57)
주택매매 양도소득 ²⁾	171.4	174.8	190.9	196.7	202.6(12)
임대손실(passive loss rule)	42.6	47.3	48.0	44.0	40.7(30)
저소득주택 투자공제	22.6	31.2	32.2	33.3	34.6(33)
임대주택(조기 감가상각)	12.9	24.1	51.9	54.4	57.1(21)
사업					
양도소득(농업, 목재 및 광산제외)	61.4	382.8	678.0	618.1	602.0(3)
양도소득(step-up basis)	283.1	245.7	265.4	276.1	287.1(9)
건물 조기 감가상각 (임대주택제외)	49.2	62.7	45.4	45.6	42.4(28)
기계설비(조기 감가상각)	194.0	288.9	378.6	371.3	364.8(7)
특정 소액투자 비용			16.7	14.3	14.2(49)
누진 법인세율	39.6	54.0	49.4	55.9	62.1(19)
교통					
종업원 주차비용 보상 면제	19.3	15.6	19.8	20.9	21.9(44)
교육, 고용, 사회서비스		298.9	420.3	387.7	404.1
장학금, 연구장학금 소득 면제			12.1	12.0	12.1(51)
HOPE(고용) 세액공제		2.0	41.3	41.1	35.2(32)
평생교육 세액공제		1.1	23.7	22.9	23.6(40)
고등교육 비용 소득공제			0	4.3	22.9(41)

<표 III-8>의 계속

(단위: 억달러, %)

	1995	1998	2001	2002	2003(순위)
19세 이하 학생자녀 인적공제			10.1	10.7	11.2(55)
교육기부금 소득공제	17.1	28.8	38.3	39.8	42.0(29)
고용 및 사회서비스					
종업원 음식숙박비 면제			7.1	7.4	7.8(60)
자녀 공제		35.3	198.4	197.6	196.8(13)
자녀 및 부양자 부양비용공제	29.0	24.9	26.7	26.1	26.7(36)
기부금 소득공제(교육/보건 제외)	189.1	185.8	301.5	308.1	320.8(8)
의료보험		805.5	978.9	1086	1177.5
건강보험료 고용주 부담금 면제	606.7	679.2	828.0	909.1	992.6(1)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15.2	17.3	24.2(38)
종업원 보상 보험료		42.6	47.3	48.7	50.8(24)
의료비용 소득공제	36.6	36.2	49.9	52.6	55.3(22)
병원건설 채권 이자소득 면제 ³⁾	15.0		11.0	11.3	11.9(52)
보건기부금 소득공제	22.1	25.6	40.1	41.8	44.2(27)
소득보장		1179	1386	1591	1656.8
종업원 보상혜택 면제	44.8	51.4	55.6	58.1	60.7(20)
연금기여 순면제					
고용인 연금	555.4	822.2	420.7	480.7	530.8(5)
401(k) 연금			440.8	529.6	595.1(4)
개인은퇴기금	62.5	105.7	186.8	180.9	186.6(15)
저소득층 소득 저축신용			0	5.5	19.6(45)
Keogh 연금	44.4	39.3	61.6	65.2	44.2(27)
기타 종업원 혜택 면제					
단체생명 보험료	28.8	20.3	17.5	17.8	18.0(47)
특정 ESOP	18.3		12.9	13.4	14.2(50)
노인 추가 소득공제	14.9	16.9	19.7	18.9	19.5(46)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51.1	63.5	49.4	43.7	48.0(25)
사회보장		257.6	259.4	309.7	323.1
은퇴자 사회보장 혜택 ⁴⁾	168.8	167.8	178.3	180.0	181.8(16)
장애인 사회보장 혜택	19.0	22.7	26.9	29.3	32.4(35)
부양자/생존자 사회보장 혜택	36.1	37.3	37.2	38.7	40.6(31)
퇴역군인 사망혜택·불구보상 면제	19.9	28.2	31.5	31.9	33.0(34)
일반재정지원		568.1	641.4	748	783.4
지방정부 채권 이자소득 면제	123.5	200.5	231.0	236.8	242.7(10)
비사업 지방세 소득공제(주택제외)	272.5	328.0	455.2	461.6	481.5(6)
미국 역내 상업소득 법인 세액공제	26.3	39.6	21.9	22.4	22.4(42)

주: 1. foreign sales corporation 소득. 2. 주택매매 양도차익 이연 부분 (이외 55세 이상 납세자 면제는 1995년 46.9억달러). 3. 비영리보건시설을 위한 지방정부 부채이자소득. 4. OASI benefit.

자료: US OMB(www.whitehouse.gov/omb/budget/fy2003/pdf/spec.pdf)

<표 III-8>은 연방정부 조세지출 예산을 보여주는데 이 가운데 비중이 큰 항목은 주택구입, 일부 양도소득, 건강보험료 그리고 연금 공·면제로 나타나며 이외 해외소득, 교육경비 그리고 정부채권 이자 공·면제 등이 있다.

3. 지방정부 수입 동향

가. 수입동향

전술한대로 지방정부 총수입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대로 2002년에 1조 3,045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GDP 대비 비중은 1959년 7.7%에서 2002년 12.5%까지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순수입으로 보면 같은 기간에 약 7.5%에서 9.6%로 2%p 증가하였다.

<표 III-9> 지방정부 부문별 수입(state and local government: 1980~2002)

(단위: 십억달러, %)

	1980	1990	1993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GDP	2,795.6	5,803.2	6,642.3	7,400.5	8,781.5	9,268.6	9,872.9	10,208.1	10,442.1
총수입	316.6	663.4	823.2	917.9	1,074.4	1,144.8	1,223.6	1,293.3	1,304.5
총수입/GDP	11.32	11.43	12.39	12.40	12.23	12.35	12.39	12.67	12.49
자체수입	244.3	552.0	660.6	733.4	864.1	914.3	975.2	1019.1	998.8
자체수입/GDP	8.74	9.51	9.95	9.91	9.84	9.86	9.88	9.98	9.57
개인세/비조세 수입	53.9	136.0	164.7	186.5	235.5	255.9	278.7	296.1	266.1
소득세	42.6	107.7	126.0	142.5	182.7	200.0	219.8	234.1	200.3
비조세수입	5.0	15.6	23.4	27.1	33.7	35.9	38.1	40.6	45.1
기타	6.3	12.8	15.3	17.0	19.6	20.0	20.7	21.3	20.7
법인세	14.5	22.5	26.9	31.7	34.6	34.8	36.8	29.4	33.5
간접 상업세	172.3	383.4	454.8	501.6	583.9	612.5	651.5	683.0	689.8
판매세	82.9	183.2	216.0	243.6	284.2	300.6	321.5	336.8	333.5
재산세	68.8	161.1	191.1	203.5	230.3	239.5	248.4	258.3	267.8
사회보험	3.6	10.0	14.1	13.6	10.1	10.1	10.0	10.6	9.4
연방정부 지원금	72.3	111.4	162.6	184.5	210.3	230.5	248.4	274.2	305.7

주: 자체수입=총수입-연방정부지원금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2002.

www.bea.doc.gov/bea/dn/nipaweb/

지방정부 세입에서 주요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판매세(3,335억달러, 33.4%)가 가장 높고 재산세(2,678억달러, 26.8%), 소득세(2,003억달러, 20.1%), 비조세 수입(451억달러, 4.5%), 그리고 법인세(335억달러, 3.4%)의 순이다. 또한 연방정부 지원금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6%로 연방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다. 한편 일반 세금 이외에 여타 수입은 <표 II-10>에 나타나 있는데 자산소득이 955억달러로 가장 많고 이전수입에서는 개인과 사업자로부터의 수입(796억달러)이 있다.

<표 III-10> 지방정부 재정수입 내역(1980~2002)

(단위: 십억달러)

	총수입	세금	개인세			상품세	판매세	재산세	기타
			소득세	기타	기타				
1980	338.2	230.0	48.9	42.6	6.3	166.7	82.9	68.8	15.0
1981	370.2	255.8	54.6	47.9	6.7	185.7	90.7	77.1	17.9
1982	391.4	273.2	59.1	51.9	7.3	200.0	96.2	85.3	18.5
1983	428.6	300.9	66.1	58.3	7.8	218.9	107.7	91.9	19.4
1984	480.2	337.3	76.0	67.5	8.6	242.5	121.0	99.7	21.8
1985	521.1	363.7	81.4	72.1	9.2	262.1	131.1	107.5	23.5
1986	561.6	389.5	87.2	77.4	9.8	279.7	139.9	116.2	23.7
1987	590.6	422.1	96.6	86.2	10.6	301.6	150.3	126.4	24.9
1988	635.5	452.8	102.1	90.6	11.5	324.6	162.4	136.5	25.7
1989	687.3	488.0	114.6	102.3	12.4	349.1	172.3	149.9	26.9
1990	737.8	519.1	122.6	109.6	13.0	374.1	184.3	161.5	28.3
1991	789.2	544.3	125.3	111.7	13.6	395.3	190.7	176.1	28.6
1992	845.7	579.8	135.3	120.4	14.9	420.1	204.3	184.7	31.1
1993	886.9	604.7	141.1	126.2	14.8	436.8	216.4	187.3	33.1
1994	942.9	644.2	148.0	132.2	15.7	466.3	231.4	199.4	35.5
1995	990.2	672.1	158.1	141.7	16.4	482.4	242.7	202.6	37.0
1996	1,043.3	709.6	168.7	152.3	16.3	507.9	256.2	212.4	39.4
1997	1,097.4	749.9	182.0	164.7	17.3	533.8	268.7	223.5	41.6
1998	1,163.2	794.9	201.2	183.0	18.2	558.8	283.9	231.0	43.9
1999	1,236.7	840.4	214.5	195.5	19.0	590.2	301.6	242.8	45.8
2000	1,319.5	893.2	236.6	217.3	19.4	621.1	316.6	254.6	49.9
2001	1,382.7	917.7	243.7	224.1	19.6	643.8	322.7	269.6	51.6
2002	1,424.7	925.5	221.9	201.7	20.2	672.5	328.8	291.0	52.6

	법인세	사회보장 기여금	자산 소득	이전		이전 수입	연방 보조	사업· 개인	공기업 잉여
				이자· 배당	임대료 로열티				
1980	14.5	3.6	26.3	23.2	3.1	79.5	72.3	7.2	-1.2
1981	15.4	3.9	32.0	28.6	3.3	81.0	72.5	8.6	-2.4
1982	14.0	4.0	36.7	33.3	3.5	79.1	69.5	9.6	-1.6
1983	15.9	4.1	41.4	37.2	4.3	82.4	71.6	10.8	-0.2
1984	18.8	4.7	47.7	42.8	4.9	89.0	76.7	12.3	1.5
1985	20.2	4.9	54.9	49.6	5.4	94.5	80.9	13.6	3.2
1986	22.7	6.0	58.4	52.2	6.2	105.0	87.6	17.3	2.8
1987	23.9	7.2	58.1	52.8	5.3	100.0	83.9	16.1	3.1

<표 III-10>의 계속

(단위: 십억달러)

	법인세	사회보장 기여금	자산 소득	이자·	임대료	이전 수입	연방 보조	사업· 개인	공기업 잉여
				배당	로열티				
1988	26.0	8.4	60.5	56.1	4.4	109.0	91.6	17.4	4.8
1989	24.2	9.0	65.7	61.6	4.1	118.1	98.3	19.9	6.5
1990	22.5	10.0	68.4	64.3	4.2	133.5	111.4	22.0	6.7
1991	23.6	11.6	68.0	63.4	4.5	158.2	131.6	26.6	7.1
1992	24.4	13.1	64.8	60.1	4.8	180.3	149.1	31.1	7.7
1993	26.9	14.1	61.4	56.8	4.5	197.7	163.7	34.0	9.0
1994	30.0	14.5	63.2	58.7	4.5	211.9	174.7	37.2	9.0
1995	31.7	13.6	68.4	63.9	4.5	224.1	184.1	40.0	12.0
1996	33.0	12.5	73.3	68.7	4.6	234.1	191.2	43.0	13.9
1997	34.1	10.8	77.8	73.0	4.8	246.6	198.6	48.0	12.3
1998	34.9	10.4	80.9	75.3	4.6	266.8	212.8	54.0	10.2
1999	35.8	9.8	85.3	80.2	5.1	290.8	232.9	57.9	10.4
2000	35.5	11.0	92.2	85.9	6.3	315.4	247.3	68.0	7.7
2001	30.2	13.2	95.6	88.7	7.0	350.8	276.3	74.5	5.4
2002	31.1	13.5	95.5	88.1	7.4	384.2	304.6	79.6	5.9

자료: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ceipts and Expenditure(www.bea.doc.gov/bea/dn/nipaweb)

나. 주정부의 세목별 세수

주정부 단계에서 지방세 수입구조를 보면 2002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볼 때 1인당 세입은 약 1,850달러 수준으로 소득의 약 6.1%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소득세 비중이 34.7%로 가장 크고 일반판매세 33.5%, 개별판매세 15.4% 그리고 법인소득세 4.9%이며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주정부 차원의 과세 비중은 크지 않다.

한편 이러한 통계는 평균적 수치이며 주별로는 세목별 의존도에 있어서 편차가 크다. 플로리다, 네바다, 워싱턴 등의 주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일반판매세에 대한 의존도가 큰 반면 오레건은 일반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세에 많이 의존한

다. 그러나 일반판매세를 도입하지 않은 주의 경우 알래스카나 몬태나처럼 천연자원에 대한 세금이 많은 주도 있다. 이외 텍사스는 소득세 대신 일반 및 개별판매세에 많이 의존한다.

<표 III-11> 주정부 세입과 세목별 구성 비중(2002)

(단위: 억달러, %)

	총세입	1인당 세입	소득세	일반 판매세	개별 판매세	재산세	법인 소득세	기타
미국 평균	5,334.3	1,853	34.7	33.5	15.4	1.8	4.9	9.8
Alabama	68.8	1,533	34.9	25.4	23.8	2.8	4.7	8.4
Alaska	10.9	1,692	0	0	13.0	4.6	24.7	57.7
Arizona	84.8	1,554	24.7	50.6	12.6	3.9	4.1	4.2
Arkansas	50.3	1,858	29.6	38.1	13.3	9.7	3.2	6.1
California	777.6	2,214	42.5	30.6	8.9	2.5	6.9	8.6
Colorado	69.2	1,536	50.2	27.5	13.5	0	3.0	5.9
Connecticut	90.3	2,620	40.8	33.7	16.4	0	1.7	7.5
Delaware	21.7	2,693	33.0	0	14.9	0	11.6	40.6
Florida	248.2	1,485	0	58.1	18.2	1.7	4.9	17.1
Georgia	137.7	1,609	47.1	35.1	8.6	0.4	4.1	4.7
Hawaii	34.2	2,748	32.5	47.1	14.8	0	1.5	4.0
Idaho	22.7	1,694	37.1	35.0	14.1	0	3.4	10.4
Illinois	224.6	1,782	30.9	28.6	20.8	0.3	9.2	10.3
Indiana	100.0	1,623	35.4	38.0	15.4	0	6.7	4.4
Iowa	50.1	1,705	35.3	34.9	15.8	0	1.8	12.2
Kansas	48.1	1,770	38.6	37.4	13.2	1.1	2.5	7.2
Kentucky	79.8	1,948	33.6	29.0	17.9	5.5	3.8	10.2
Louisiana	73.5	1,639	24.2	31.7	25.4	0.5	3.6	14.7
Maine	26.3	2,030	40.8	31.8	15.3	1.8	2.9	7.3
Maryland	108.2	1,983	43.5	24.9	18.6	2.5	3.3	7.3
Massachusetts	148.2	2,306	53.4	24.9	10.2	0	5.5	6.0
Michigan	218.6	2,176	28.0	35.6	10.5	8.6	9.4	7.8
Minnesota	129.4	2,577	42.1	28.9	15.7	0.1	4.2	9.1

<표 III-11>의 계속

(단위: 억달러, %)

	총세입	1인당 세입	소득세	일반 판매세	개별 판매세	재산세	법인 소득세	기타
Mississippi	47.3	1,647	20.8	49.5	17.8	0	4.1	7.7
Missouri	86.8	1,530	41.7	32.9	14.8	0.2	3.5	6.9
Montana	14.4	1,587	35.9	0	25.7	12.6	4.7	21.1
Nebraska	29.9	1,731	38.5	35.7	14.6	0.2	3.6	7.3
Nevada	39.5	1,816	0	52.5	32.1	2.9	0	12.5
New Hampshire	18.8	1,478	3.8	0	32.1	26.6	20.0	17.4
New Jersey	183.3	2,134	37.3	32.7	15.2	0	6.0	8.8
New Mexico	36.3	1,956	27.1	36.9	13.4	1.5	3.4	17.8
New York	432.6	2,258	59.1	19.9	10.4	0	5.2	5.3
North Carolina	155.4	1,867	46.8	20.7	21.6	0	4.3	6.7
North Dakota	11.1	1,762	17.9	30.0	25.5	0.1	4.5	22.1
Ohio	196.2	1,718	42.5	32.6	12.3	0.1	3.9	8.6
Oklahoma	60.5	1,732	37.8	25.3	12.3	0	2.9	21.8
Oregon	51.4	1,459	71.5	0	12.7	0	3.8	12.0
Pennsylvania	221.4	1,795	30.4	33.1	16.3	0.2	5.4	14.5
Rhode Island	21.3	1,988	38.7	34.4	20.2	0.1	1.3	5.4
South Carolina	57.5	1,400	34.0	40.6	14.3	0.2	3.8	7.1
South Dakota	9.8	1,283	0	53.6	26.0	0	4.2	16.3
Tennessee	78.0	1,345	1.9	60.0	17.6	0	6.5	14.1
Texas	286.6	1,316	0	50.8	31.5	0	0	17.7
Utah	39.3	1,695	40.9	38.2	13.3	0	2.8	4.7
Vermont	15.3	2,486	24.4	14.0	20.5	31.6	2.4	7.1
Virginia	127.8	1,752	52.5	21.9	15.5	0.2	2.4	7.5
Washington	126.3	2,081	0	62.6	16.2	11.5	0	9.7
West Virginia	35.5	1,971	29.1	27.1	27.0	0.1	6.2	10.5
Wisconsin	118.1	2,171	42.1	31.3	14.7	0.8	4.4	6.8
Wyoming	10.9	2,193	0	40.7	9.0	13.2	0	37.2

자료: US Census of Bureau, Governmental Finances(www.census.gov/govs/estimate)

제2편 개별 세법

I. 조세절차법

1. 서론

연방세법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물론 의회가 제정하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Title 26 of the United State Code)이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과 거래에 내국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세법의 행정 및 법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재무성의 규정(Treasury Regulation)과 미국 국세청의 규칙(IRS rulings) 그리고 각종 법원의 판례가 연방세법의 근간을 이룬다.

재무성 규정은 법과 유사한 권한(authorities)을 갖지만 국세청의 각종 규칙과 지침은 재무성 규정보다 법적 비중이 떨어진다. 세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쟁은 IRS 내부의 이의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되며 그 결과는 전례(precedent)가 된다. 하위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등법원(US Circuit Court of Appeals) 그리고 이후 대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헌성 여부 등 매우 중요한 사안과 상충되는 판례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표 1-1> 연방세법의 근거와 권위

법적 근거	핵심내용	권위
입법		
내국세법	소득, 유산, 고용, 소비세법	세법상의 최고 권위
행정		
재무성 규정	재무장관의 내국세법 해석 제안, 해석, 입법적 규정으로 구분	입법규정은 해석 규정보다 상위
국세청 규칙	규칙, 행정절차, 공고, 기술적 메모	IRS의 법해석, 재무부 규정의 하위
사법		
사법원칙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원칙	IRS, 납세자, 하위법원이 준수
사법해석	하위법원 등의 판례	항소법원 판정은 하위법원이 준수

현재의 내국세법(IRC)은 1986년에 정리되어 소득세(Subtitle A, Chapter 1~6), 유산·증여세(Subtitle B, Chapter 11~13), 고용세, 연방 주세, 담배세 등 소비세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는 Subtitle F(Chapter 61~80)에 제시되어 있다. Subtitle A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Chapter 1('Normal Taxes and Surtaxes')로서 법인세는 Chapter 1에서 더욱 세분되어 Subchapter C~K에 나타나 있다.

재무성 규정(Treasury Regulation)은 내국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재무성 규정은 우선 새로 제안된 규정, 임시 규정 그리고 최종 규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재무성 규정은 우선 제안된 형태로 공개되어 이에 대한 자문을 거쳐 최종 규정화된다. 처음 제안된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나 최종규정은 내국세법과 거의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최종규정은 의회가 규정을 만들 권한을 재무성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불합리하거나 법과 배치되는 내용 등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⁵⁾. 이 밖에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재무성이 즉시 임시규정을 발표하는데 법 7805조에 따라

5) 법원은 재무성 규정이 귀속되는 법을 의회가 개정할 때 해당 부문을 수정 없이 개정하면 의회가 재무성 규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적 효력을 부과한다(legislative reenactment doctrine).

이 규정은 발표 후 3년간 유효하다.

한편 규정의 내용에 따라 해석적인 규정(Interpretative regulation)과 입법적 규정(Legislative regula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법을 쉽게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며 입법적 규정은 의회가 재무성에게 규정을 만들 권한을 재무성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여 만들어진 규정을 말한다. 재무성 규정에서 소수점 이전의 숫자는 관련 분야(소득세 1, 유산세 20, 증여세 25, 행정규정, 301)를 그 이후 숫자는 내국세 조문 등을 의미한다.

이외 미국 국세청(IRS)은 다양한 행정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재정규칙(revenue ruling)은 일반 납세자가 수행하는 거래에 대한 과세 측면을 논하고 있다. 이 규칙은 재무성 규정이나 판례와 같은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납세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가산금을 부과받지는 않으나 국세청의 공식 견해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특정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안에만 적용되는 질의회신(letter ruling)이 있는데 일반에게 공개되어 국세청 입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한다. 또한 일선 국세청 직원이 분청에 자문을 요청한 사안도 기술적 자문메모(Technical Advice Memorandum)의 형태로 질의회신의 양식으로 공개된다.

소득세 납부는 납세자 본인에 의한 신고와 자발적인 법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 가운데 연방세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유산·증여세, 소비세 및 관세와 함께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세, 의료보험세 그리고 실업세 등이 있다. 특히 정규 C 법인 주식회사를 제외한 사업체는 자료 신고를 하고 세금신고는 이들 업체의 소유주(주주)가 개인소득세로 한다. 소비세의 경우 주류, 유류, 담배 등에 연방세가 적용되고 이외 일부 제품에 목적세로서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크게 보면 소비세와 유산세를 제외한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다시 주정부가 부과하는 일반판매세와 주류 등 특정 제품에 대한 개별판매세로 나뉘고 주정부 차원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외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를 주로 부과하며 판매세를 주정부 승인을 받아 부과하기도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정치 및 경제적 환경에 따라 자원세, 등록·취득세, 관광 관련 세금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표 1-2> 미국 주요 세목의 유형과 과표

세목	세율구조	과표
연방세		
개인소득세	누진	세법상 예외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공·면제한 금액(AGI)
법인소득세	누진	입법규정은 해석 규정보다 상위
유산세	누진	연간 과세대상 증여의 공정한 시장가치(FMV)
증여세	누진	사망시 유산과 1976년 이후 과세대상 증여의 공정한 시장가치(FMV)
소비세 및 관세	일률	국산 및 수입품의 판매가격(제품별 차등화된 세율)
FICA/자가고용	역진	임금 및 자가소득(FICA: 6.2% on 84,500달러+1.45%, 15.3%)
실업세	역진	임금의 7,000달러
지방세		
일반판매세	일률	유형 개인자산이나 서비스의 소매가격
개별판매세	일률	소매가격(제품별 차등화된 세율)
지방소득세	누진	일반적으로 연방소득세의 조정된 총소득(AGI)
주 영업세	일률	순가치, 소득 혹은 판매가액의 가중치(franchise tax)
재산세	일률	개인 혹은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가치(FMV)

2. 조세의 부과

가. 신고납부 원칙

1) 세금 신고(filing of tax return)

세금 신고와 납부는 납세자 본인에 의한 신고와 자발적인 법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self assessment). 다만 임금 등의 경우 고용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예탁할 책임이 있다. 원천징수되지 않는 세금, 즉, 법인세와 연방소비세 등은 납부세액을 미리 추정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예탁하고 세금 신고시 결산을 한다

(pay-as-you-go system). 한 예로 일반 주식회사(C 법인) 혹은 S 주식회사나 유산 신탁기금 등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연간 소득세액을 추정하여 주기적으로 예탁한다.

임금 이외의 상당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납세자는 분기별로 같은 금액의 추정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전년도 조정된 총소득이 15만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다음의 방식으로 추정세액을 산정하여 이를 4월 15일부터 분기별로 똑같이 납부한다 (Sec. 6654): 1. 금년도 일반 소득세와 고용세의 90%와 작년도 일반 소득세와 고용세의 100% 중 적은 금액 2. 금년도 세액공제, 임금 원천징수 세액 그리고 작년도 추가 납부세액 중 금년도 세금의 공제를 위하여 유보한 금액의 합 3. (1번 금액-2번 금액) \times 0.25

작년도 조정된 총소득이 15만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부부별도 신고는 7.5만달러)는 금년도 세금의 90%나 작년도 세금의 110% 이상을 납부하면 추정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물 필요가 없다(safe harbour). 이외소득이 있는 피부양자(dependent) 등은 독신자로서 신고하여야 한다.

Sec. 501에 의하여 신고가 면제된 자선 혹은 교육기관을 제외한 모든 주식회사는 Form 1120을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다. 이외 총매출, 소득 그리고 총자산이 50만달러 이하인 기업은 Form 1120-A로 간단한 법인세 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세 신고는 해당 법인의 과세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

4월 30일부터 분기별로 신고하는 연방소비세는 Form 720으로 신고하는데 연방소비세 신고는 신시내티 지방국세청으로 하여야 한다. 연방소비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각 업체의 예상 납부세액에 따라 주기적으로 추정 세액을 미리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연간 11,000달러 이상을 동일인에게 기증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조건부 증여를 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Form 709) 유산세는 사망 당시 전체 유산이 100만달러를 초과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Form 706). 이 밖에 유산 혹은 유산 신탁기금 등도 소득, 손실, 공제 등을 신고하거나 상속인에게 유산의 소득을 분배할 때 이를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Form 1041).

2) 자료신고(information return)

사업을 하면서 대금을 지불하거나 지급받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료신고상의 정보와 납세자의 소득신고를 비교하여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한다. 이와 같은 소득 신고는 10달러 이상의 이자 지급, 배당 등의 지급, 연금 등의 분배, 일부 보험금 수혜의 지급을 포함한다.

이외 사업자가 다음의 기타 소득을 지급하면 Form 1099-Misc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업체 외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600달러 이상을 지급한 경우 ② 부동산 업체 이외 사람에게 지불한 600달러 이상의 임대료 ③ 600달러 이상의 상금 ④ 10달러 이상의 로열티 사용료 ⑤ 어업용 보트 승무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이외 고정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5,000달러 이상의 물품을 판 경우 이를 판매업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한번 이상의 서로 관련된 거래에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급 받으면 Form 8300으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나. 납세의무

원래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배우자나 양수인(transferee)이 이차적인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배우자가 모든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이 있으며 따라서 잠재적인 납세 의무액의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Sec. 6015).

다만 부부합산 신고에서 한 배우자의 오류신고로 결손이 발생하고 다른 배우자가 이러한 결손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주변 상황과 사실을 고려할 때 연대책임이 불공평하면 다른 배우자의 책임이 전부 혹은 일부 면제될 수 있다(innocent spouse relief). 단, 해당 배우자는 국세청의 세금징수가 개시된 후 2년 내에 이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g, Sec. 1.6012-1(a)(5)). 다른 배우자가 세금 결손에 대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액의 일부만이 경감된다.

또한 납세자 각각의 과세항목에 따른 결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비례책임(proportional liability)도 부부합산의 경우 가능한데 이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부부합산 신고자가 국세청의 세금징수가 개시된 후 2년 이내에 비례책임을 선택하고 그 당시 이혼 혹은 별거중이며 부부가 그 이전 12개월간 같이 거주하지 않았으며 비례책임을 선택한 배우자는 결혼 사안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어야 한다. 해당 배우자는 자신이 비례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선택 직전에 배우자 사이의 자산 양도는 이러한 선택을 무효화한다.

이외 내국세법 6901조는 납세자 이외에 납세의무가 있는 개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산의 양수인(transferee)과 대리인(fiduciaries)이다. 양수인은 피증여자, 상속인, 유산 수령인, 부동산 수증자(devisee), 상속권자, 해체된 주식회사의 주주, 재조직 당사자 등이다(Reg. Sec. 301.6901-1(b)). 대리인은 유산의 집행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에 관한 시효는 양도인의 시효가 경과한 후 1년이다.

다. 수정신고

소득세 신고를 수정하거나 납부세액을 변경할 때에는 Form 1040X를 이용하고 수정 신고한다. 수정신고는 소득세 신고를 한 후 3년 또는 세금을 납부하고 2년 가운데 늦은 날까지 할 수 있다. 단, 악성부채나 증권이 휴지화된 경우에는 7년이 기한이다. 이외 순영업손실과 일반 사업공제 이월과 관련된 수정신고는 당해 항목의 과세연도로부터 3년이 기한이다.

법인세의 경우 수정신고는 Form 1120X로 하며 이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조사에 따른 수정신고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는 원래 신고기한 이후 3년 또는 실제 신고한 날로부터 3년 가운데 늦은 날까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영업손실, 양도손실 그리고 일반 사업경비 이월을 제외한 다른 항목의 경우 이러한 기한 이외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정신고는 원래 법인세 신고를 한 국세청 지청으로 한다.

소비세의 경우 수정신고는 Form 720X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는데 신고 기한은 소비세 신고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는 소득세와 같다. 신고지는 소득세가 지역 관할 국세청에 하는 것과 달리 소비세는 신시내티 지방국세청으로 한다.

라. 조세기일

1) 신고기일

개인, 대리인(fiduciaries) 그리고 파트너십의 세금 신고는 해당 주체의 과세연도 종료 후 4개월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Sec. 6072(a))⁶⁾. 정규 C 법인 혹은 S 주식회사는 당해 업체의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15일이 만기이다. 주식회사 이외 개인과 대리인은 총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Sec. 6012(a)(2), 6031(a)).

한편 신고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다만 납세자가 외국에 있지 않는 한 최대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다(Sec. 6081(a)). 개인의 경우 Form 4688을 제출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신고가 4개월 연기된다. 또한 Form 2688을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신고 연장이 가능한데 이 때는 그 사유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는 Form 7004를 제출하여 자동적 연기를 받을 수 있는데 재무부 규정에 의하면 6개월 신고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신고연기는 없다(Reg. Sec. 1.6081-3(a)).

2) 납세기일

신고기일의 연기가 납세기일의 연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원래 신고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Sec. 6151(a)). 또한 국세청이 세금을 산정하도록 선택한 납세자⁷⁾는 국세청이 금액을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Sec. 6151(b)(1)). 원래 신고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가산되며 따라서 신고를 연기한 기간에도 이자가 붙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를 연기하는 납세자는 최선으로 추정세액을 산출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고 연기신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외국인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15일까지 연장된다(Sec. 6072(C)).

7) 정규 C 법인 주식회사 혹은 S 주식회사와 유산 및 그 신탁기금에 해당한다.

마. 시효

납세자는 신고기일이나 실제 신고일 중 나중 날짜로부터 3년간 제출된 세금신고서에 대하여 수정을 할 수 있다(Sec. 6501(a), (b)). 또한 신고일로부터 3년이나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중 늦은 날짜까지 납세자가 초과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Sec. 6511(a)). 다만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납세자의 경우 환급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바. 개인사업자

법인화하지 않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sole proprietor)는 중소기업체 소유주로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사업비용을 공제받는다(Form 1040, Schedule C).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는 종업원과 자신의 고용 관련 세금 등 일련의 사업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혹은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번호(SSN)가 납세인명 번호이지만 종업원이 있거나 연방소비세를 납부하면 고용주 인명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도 국세청(IRS)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개인소득세로 신고하는 것 이외에 만약 소득세 신고시 자영고용세(Self-Employment Tax)를 포함하여 1,000달러 이상 납세 의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정세액을 연중에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자영고용세(SE Tax)는 고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세이다(FICA Tax and Medicare Tax). 자영업자도 자영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Form 1040 Schedule SE에 신고하고 고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영고용세의 세율은 사회보장성 세금 12.4%와 의료보장성 세금 2.9%를 포함한 총 15.3%이다. 단 사회보장성은 자영업자 소득 중 87,000달러에만 적용된다.

<표 1-3>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항목

세목	신고양식(Form)	신고기한
개인소득세	1040 및 Schedule C	4월 15일
자영업고용세	Schedule SE	Form 1040과 함께 신고
추정 세액	1040-ES	분기별 신고(과세연도별)
사회보장세(FICA)/의료보험세(Medicare)	941, 8109	분기별 신고(4월 30일)
종업원 소득세 원천징수	W-2	1월 31일
사회보장세 원천징수	W-3	2월 마지막 일
연방실업세(FUTA)	940, 940-EZ, 8109	1월 31일(분기별 납부: 월 30일 개시)
거래 관련 자료 신고	자료신고(1099, 5498)	신고서별
연방소비세	720, 2290	분기별

자료: 「Tax Guide for Small Business」, Form 334, IRS, 2003.

일부 상품을 제조 혹은 판매하거나 일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일부 시설 및 상품을 사용하거나 혹은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연방소비세를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환경세, 교통 및 유류세, 대형 상업용 자동차와 일부 제조업 제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는 Form 720으로 신고하고 이외 대형 상업자동차가 도로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소비세는 Form 2290으로 신고한다. 자영업자는 연방소비세를 신고와 관련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한편 종업원과 관련해서는 종업원의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그리고 종업원의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지정 금융기관 등에 예탁해야 하고 신고하여야 한다(Form W-2). 또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방실업세(FUTA)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세금 신고는 자발적이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그 당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한다(pay-as-you-go system, Sec. 3402).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에는 고용주에

의한 원천징수제도(tax withholding)와 추정세액 납부제도(estimated tax payment)가 있다.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와 원천징수로 충분한 세금을 신고 이전에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추정세액을 납부한다. 특히 배당, 이자, 양도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추정세액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이들 제도를 통하여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 납세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이자, 배당, 임대료, 로열티, 커미션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 만약에 사태에 대한 예비로 원천징수될 수 있다(backup withholding).

가. 원천징수: 납세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은 보너스와 커미션을 포함한 임금, 팁, 질병 수당, 과세대상 부가급부, IRA, 생명보험 등의 연부금, 도박 수익금, 실업수당 그리고 사회보장금 등의 연방정부 지급금 등이 있다. 대상이 되는 세금은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 그리고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이다.

자격이 되는 납세자는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에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전 연도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이번 과세연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 시간제로 일하는 학생, 65세 이상의 저소득 납세자 등도 원천징수에서 면제된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소득수준과 개인적인 공제항목(allowance)에 따라 다르다. 면제항목은 납세자가 작성한 W-4 신고서에 따라 결정되는데 독신 혹은 부부인지의 신고 신분과 가족 수 등의 인적 공제와 일반공제 항목 등에 따라 결정된다.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이들 공제항목은 부부가 모두 사용할 수 없고 나누어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캐나다나 멕시코 국민 그리고 배우자가 미국민인 사람을 제외한 납세자는 다수의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공제항목 가운데 인적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에 따라 결정되고 일반 공제는 이전 연도의 공제금액 이하로 납세자가 작성한다. 그 결과 실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납부해야 할 금액과 되도록 유사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작성한 원천징수 신고서(W-4)를 기준으로 종업원 소득에서 세

금을 원천징수하며 일반적으로는 신고서를 고용주가 간직하지만 공제항목이 10개를 초과하거나 소득이 매주 200달러 이상인 종업원이 원천징수에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 W-4를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

비영주권 거주자는 임대, 로열티, 월급, 임금, 연부금, 보상, 이자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30% 원천징수된다. 다만 미국과 소득세협약을 맺은 나라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원천징수를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 원천징수: 고용업체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종업원 임금과 기타 보수 그리고 과세되는 부가급부로부터 개인소득세와 연방고용세 즉,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예탁 및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외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방실업세도 신고하여야 한다(Pub 15).

1) 임금 등 기타 보수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팁, 각종 수당과 부가급부는 모두 개인소득세와 연방고용세의 원천징수 대상이며 이는 현금 등의 지급방식과 관계가 없다. 임금 이외 보너스, 커미션, 질병 수당, 상금 등도 원천징수된다. 시간제 종업원도 원천징수 대상이다. 다만 이전 연도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금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은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사회보장세 등 연방고용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급부도 총임금에 포함되고 소득세를 비롯한 연방고용세의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다만 일부 부가급부는 비과세 대상이며 이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서비스 제공, 학자금 지원, 종업원 할인, 이사 비용,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업경비로 공제 가능한 자산 혹은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 밖에 출장 등 기타 비용도 종업원이 적시에 영수증 등으로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경비나 사전 지급된 경비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고용주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비(non accountable reimbursement or advance payment)는 임금에 포함된다.

수당과 부가급부 등의 보수를 임금과 함께 지급하면 이를 합하여 원천징수하고 수당 등을 따로 명시하여 지급하면 수당 등의 25%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아니면 일반 임금과 합하여 소득세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 세액공제(EIC)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Form W-5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소득세 신고 이전에 이들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종업원에게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원천징수방식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종업원이 제공한 Form W-4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Form W-4는 납세자의 신고자격, 인적 공제 그리고 여타 개인 정보를 담고 있고 고용주는 종업원의 희망 원천징수금액과 Form W-4를 기초로 원천징수금액을 결정한다. 외국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고용세로부터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본인 이외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연간 약 397.5달러의 추가 원천징수가 필요하다(월 33.1달러). 만약 외국인이 조세협약에 의거하여 원천징수로부터 면제를 받으려면 Form 8233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종업원 부담 그리고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를 예탁하여야 한다(사전 지급한 근로소득 세액공제금 즉 EIC는 제외). 예탁금은 사전에 지정된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고용주는 전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한 분기에 2,5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납부해야 할 고용주는 사전 예탁하지 않고 Form 941과 함께 원천징수 신고시 이를 납부해도 된다. 금액이 2,500달러를 초과하여도 월별 예탁하는 고용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탁하지 않고 신고시 원천징수금액 등을 납부해도 된다.

고용주는 원천징수한 금액과 고용주 부담 고용세를 언제 예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전 연도 7월 1일 이후 4개 분기 전체 예탁금액이 50,000달러를 초과하면 1주에 두 번 수요일 및 금요일에 예탁하고 그렇지 않은 납세자는 익월 15일까지 월별로 예탁한다. 그러나 예탁기간중에 10만달러를 초과하면 그 다음 날 즉시 예탁하여야 한다.

이전 연도 예탁금이 20만달러 이상이거나 전자 예탁하도록 지정된 고용주는 원천징수한 금액, 고용세, 소비세 그리고 법인세 등 예탁 대상인 세금을 모두 전자연방세 지급시스템(EFTPS)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 고용주는 Form 8109(Deposit Coupon)와 함께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예탁시 부족금액이 예탁하여야 할 금액의 2%나 100달러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부족금액을 예탁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탁 기한이 지나서 예탁을 할 경우 1~5일 늦으면 2%, 6~15일은 5%, 16일 이상 늦으면 10%가 벌금이 부과되며 정부가 예탁 고지를 한 후 10일 이내 예탁하거나 전자 예탁 대상인 고용주가 늦게 예탁하면 벌금이 10%이며 고지 후 10일이 지난 후 예탁하면 1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3) 신고

4월 30일부터 시작하여 분기별로 소득세나 연방고용세를 원천징수하는 모든 고용주는 분기 종료 익월 마지막 날까지 Form 941(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을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가사를 위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납세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Form 1040(Schedule H)에 신고한다. 국세청은 종업원 신고자격과 봉급, 인적 공제 등에 따라 원천신고할 금액을 표로 만들어 제공한다.

고용주는 Form 941에 종업원 수와 지급 임금 등의 전체 보수 등을 신고하고 원천징수 소득세, 사회보장세 그리고 의료보험세에 대하여 신고금액을 조정하여 예탁금과 비교한다. 만약 예탁한 금액이 신고금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은 환급된다.

만약 신고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5%, 최고 2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매월 세금의 0.5%, 최고 25%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미신고 및 미납 벌금이 동시에 적용되면 미납 벌금이 미신고 벌금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근로자소득세와 연방고용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예탁 또는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 혹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trust fund recovery penalty). 이 세금은 원천징수 및 예탁 신고해야 할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부과된다.

4)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연방보험기여법(FICA)은 노인, 생존 배우자,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세로 그리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세(Medicare)로 충당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이들 세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며 고용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들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달리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사회보장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와 조세협약을 맺고 대상 임금에는 세금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⁸⁾.

사회보장세 세율은 근로자 부담이 6.2%, 고용주 부담이 6.2%로 총 12.4%인데 2004년의 경우 임금의 87,900달러(2003년 87,000달러)까지 사회보장세가 적용된다. 의료보험세는 근로자 1.45%, 고용주 부담이 1.45%로 총 2.9%이며 사회보장세와 달리 금액의 한도 없이 전체 임금에 적용된다.

5) 연방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 FUTA)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실업세로부터 실업보험금이 지급된다. 실업세는 고용주 부담이므로 종업원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아니며 대부분의 고용주는 실업세를 Form 940을 작성, 신고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주는 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용세로 납부한다. 1) 금년을 포함한 2년 중 한 분기라도 1,5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거나 20 주일 이상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자(농장노동자와 가사노동자 고용주 제외) 2) 한 분기라도 1,000달러 이상 임금을 가사노동자에게 지급한 고용주 3) 현금 임금을 2만달러 이상 지급하거나 10명 이상을 20 주일 이상 고용한 농장주.

실업세는 Form 940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신고한다. 단, 실업세를 적기에 예탁하는 고용주는 3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공제전 연방실업세 세율은 6.2%이다. 단, 연방실업세는 종업원 임금의 7,000달러에만 적용되며 주정부 실업기금에 납부한 실업

8) www.socialsecurity.gov/international

세는 과세소득의 5.4%까지 공제된다. 따라서 5.4%를 공제할 수 있다면 연방소득세는 0.8%가 된다.

연방실업세는 4월 30일부터 분기별로 환산, 예탁한다. 만약 분기별 실업세가 100달러 이하이면 해당 분기에 예탁을 하지 말고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100달러가 초과될 때 예탁한다. 분기 종료 후 익월 마지막 날까지 예탁을 하는데 4분기의 예탁금이 100달러를 초과하면 실업세 신고기일(Form 940)까지 예탁하고 100달러 이하이면 Form 940 신고시 납부한다. 예탁은 연방 전자예탁을 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다. 추정세액

추정세액은 전술한 대로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과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을 때 적용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는 자영업, 이자, 배당, 위자료, 임대소득, 자산매매 소득, 상금 등이 있다. 이외 유산(estate)과 신탁기금(trust)도 추정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Form 1041-ES).

추정세액을 납부시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충분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록 정식 세금신고 당시 환급을 받더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분기별로 기한이 된 날로부터 추정세액이 납부된 날까지 일별로 이자가 가산되는데 2003년 1분기의 경우 연 이자율 5%가 적용되었다.

원천징수된 세금과 세액공제를 제외한 세금이 최소 1,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원천징수금과 세액공제가 이전 연도 전체 세금의 일정액을 초과하지 못하면 추정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원천징수금과 세액공제가 금년도 세금의 90%와 이전 연도 세금의 100% 중에서 적은 금액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추정세액의 납부가 필요하다⁹⁾. 단 모든 소득이 원천징수되거나 이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없거나 또는 원천징수액을 늘리면 추정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추정 납부하려면 이전 연도 금액을 참고로 조정된 소득, 과세소득, 공제 등을 추정하여야 한다(Form 1040-ES). 납부해야 할 추정세금은 일반적으로 금년도 예상

9) 농부와 어부의 경우 90%가 아닌 66⅔%를 적용하고 조정된 총소득이 15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100% 대신 110%가 적용된다.

세금의 90%와 이전 연도 세금의 100%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된다. 단, 소득이 15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과 농부 등에게는 각각 100% 대신 110% 그리고 90% 대신 66⅔% 등이 적용된다.

추정세액은 1년에 네 번 4월, 6월, 9월과 이듬해 1월 15일에 납부하며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는 법인 등은 회계연도 4번째 달 15일 등 네 번에 걸쳐서 납부한다. 대개 1년 세금을 4등분하여 분할 납부하지만 1년 동안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는 납세자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4.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가. 납세자 권리헌장(Declaration of Taxpayer Right)

국세청 직원은 납세자와 접촉하는 동안 납세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보호하여야 한다(제 I 장). 1974년 개인비밀보호법(The Privacy Act of 1974)에 따라 국세청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업무상 취득한 개인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제 II 장). 납세자는 요청 받은 정보에 대하여 요청 사유와 용도 그리고 요청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대신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진술할 의무가 있다(Sec. 6001, 6011, 60129(a)). 즉, 국세청은 조세법과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세금에 대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세청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정부나 법무부 등의 연방 부처 그리고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정부와 납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외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주변 인물들과도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만약 국세청 직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대우를 하지 않으면 이를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청장에게 항의할 수 있다. 세금이나 징수행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납세자는 국세청이나 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납세자 대변 프로그램(taxpayer advocate program)에 따라 납세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지방 국세청 조직과는 독립된 별도의 국세청 담당자와 상의하고 납세와 관련된 문제를

신속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서면(Form 2848)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들 대리인은 국세청과 업무를 협의할 자격을 가진 변호사, 회계사 혹은 국세청에 등록된 대리인이어야 한다(제IV장). 국세청 직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납세자가 대리인을 요구하면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은 즉시 면담을 종료하고 면담 날짜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국세청과의 면담시 변호사 이외에도 증인 등 제3자를 동반할 수 있고 면담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면담 과정을 음성 녹취할 수 있다. 국세청도 10일 전 통보하고 면담 내용을 녹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사본을 납세자에게 주어야 한다.

납세자는 법이 정한 납부 의무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으면 월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합리적이고 선의적인(bona fide) 의도로 행동하였거나 국세청 직원에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행동하였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국세청은 벌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 납세자의 오류나 국세청의 행정적 지연에 의하여 이자가 발생하면 이 또한 면제된다(제VIII장).

나. 과세 과정에서의 권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조사 과정(examination)에서 국세청은 우편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신고의 오류 및 사유를 지적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우편으로 회신하거나 조사관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서면 답변 후 국세청은 납세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면담이 필요할 경우 납세자와 국세청 양측이 모두 편리한 장소와 시간을 심사를 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납세자에게 있다. 만약 조사관이 제시한 신고 정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자의 감독관과 면담을 할 수 있다. 과거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도 신고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조사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관의 정정 요청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면 납세자는 국세청 항소관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Office of Appeal). 만약 이의 제기에 따른 심의를 원하지 않거나 항소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세 법원, 거주지역 법원 혹은 연방배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정 민사소송에서는 만약 납세자가 납세 의무액에 대한 적정 수

준의 자료를 보존 및 제시하고 국세청에 협조를 하였으며 이외 기업의 경우 순자산이 700만달러 이하이면 국세청에게 사실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Sec. 7491).

법원이 납세자 입장의 대부분에 동의하면 소송비용의 일부를 국세청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송비용을 보상받으려면 납세자가 국세청에서의 이의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했었어야 하며 국세청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어야 한다. 이외 순자산이 개인 200만달러, 법인 700만달러 등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만약 국세청이 소송비용 부담을 거부하면 고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세자는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 의무액을 초과하는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처음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나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중 늦은 날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세금신고와 납부 그리고 세금의 환급 시효는 대개 3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신청하면 시효를 연장할 수 있고 시효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시효 연장에 동의할 때 납세자는 일부 사안에서만 시효 연장을 하거나 혹은 시효 연장 시한을 정할 수 있다.

특정 거래나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사안에 따라 45~2,5000달러에 이르는 사용료를 내고 국세청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letter ruling). 이러한 서면판정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나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자문메모(Technical Advice Memorandum)와 다르다. 또한 서면판정은 대중에 공개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전례가 되지 않는다. 서면판정은 어떤 거래의 잠재적 세금부담이 상당하고 확립된 규정이 없거나 법이 불명확할 때 유용하다.

5. 조세의 징수

가. 징수절차 및 현황

1) 체납고지와 조세채무

가) 체납고지와 분할납부 등

만약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을 제출하지 않으면 즉, 국세 채무(tax debt)가 발생하면 국세청이 체납통지서(Notice of Tax Due and Demand for Payment)를 고지한다. 통지서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그 사유 및 가산금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다.

만약 고지액을 전부 납부할 수 없으면 납부 가능한 금액과 이 사실을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 납세자는 징수자료서(Collec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작성하고 국세청은 이를 기초로 납세자의 소득과 경비를 감안하여 분할납부나 납세액에 대한 타협 혹은 납세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분할납부는 주로 월별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은행으로부터의 매월 자동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또한 국세청과 합의하여 다른 분할납부 방식을 조율할 수 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잔액은 매일 이자가 부가되며 1개월마다 벌금이 부과된다. 체납액이 2,500달러 이하이면 전화 통화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국세청에 징수자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선취특권 고지서(Notice of Federal Tax Lien)가 나갈 수 있지만 분할납부에 동의하면 압류는 실행되지 않는다.

분할납부 방식에 참여할 수 없는 납세자는 국세청과 벌금을 포함한 세금 금액에 대한 타협을 할 수 있다(offer in compromise). 국세청은 일정 조건 아래 연방세 납부 의무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Pub. 594, The IRS Collection Process). 이러한 권한은 첫째, 부과세액의 정확성이 문제시 될 때 둘째, 징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셋째,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사유는 비록 미래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기타 상황에서 국세청이 납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조정된 납세액은 최소 징

수 가능한 금액(RCP, reasonable collection potential)¹⁰⁾ 보다는 많아야 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일시적으로 세금징수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납부와 마찬가지로 가산금과 벌금은 계속 부과된다.

나) 조세채무의 강제징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합의가 안되면 국세청이 납세자의 은행계좌나 임금 혹은 재산 등을 압류하여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체납고지서가 발부되고 납세자가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90일)이나 항소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법적으로 국세청은 세금부과 이후 10년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파산의 경우 이러한 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체납액의 강제징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연방세 선취특권 고지(Notice of Federal Tax Lien)는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세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을 말한다 (Sec. 6325). 즉, 정부가 채무자로서 납세자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로서 부동산 매매나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다른 채무자보다 먼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선취특권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통지서를 보낸 후 10일 이내에 납세자가 모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된다. 국세청은 선취특권이 고지되고 난 후 5일 이내에 이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납세자는 재심이나 국세청 항고심에 이의를 청구할 수 있다(collection due process). 항고심에서 고지가 취소되지 않으면 항고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지는 분할납부 방식에 합의하거나 고지 취소가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된다.

일단 고지가 통보되면 취소되지 않는 한 세금을 포함한 벌금 등 관련 금액이 모두 납부될 때까지 고지가 해제되지 않는다. 가산금과 벌금 등을 포함한 조세채무를 납세

10) RCP는 실현 가능한 납세자의 부동산, 개인 자산과 미래 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자가 모두 지불한 이후 30일 이내 혹은 납세자가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는 보증채권(bond)을 제출하고 난 후 30일 이내에 국세청은 선취특권의 고지를 해제한다. 세금부과 후 10년이 경과하고 국세청이 다시 제기하지 않으면 선취특권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두 번째로 압류고지가 나갈 수도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및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Notice of Levy). 압류는 대개 체납고지 발부 이후에도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않고 국세청이 강제징수에 들어가기 30일 전에 징수(압류) 통지서를 발부한 후 들어간다. 납세자는 선취특권 고지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압류되는 자산은 납세자가 직접 보유한 임금, 예금 그리고 사회보장금 등 이외에도 납세자가 소유권을 가진 그러나 제 3자가 보유한 자산도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자산으로도 세금징수가 불충분하면 납세자의 자동차나 부동산도 압류된다. 단, 6,780달러에 상당한 기구와 개인용품, 실업수당, 일부 연금 그리고 3,390달러 상당의 사업용 도구 및 책 등은 압류될 수 없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임금이나 사회보장금 등 납세자가 받아야 할 연방정부 지급금을 압류한 경우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납부하거나, 압류가 해소되거나 혹은 징수 시효가 지나게 되면 압류가 소멸된다. 은행계좌의 경우 납세자가 압류 후 21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은행이 예금 등을 국세청에 보낸다. 압류는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납부에 합의하거나 국세청이 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하거나 등의 이유가 있을 때 해제된다. 이외 압류자산의 매매 이전에 보증채권(bond)을 제출하거나 국세청과 합의하면 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

압류자산의 판매는 그 사실을 신문 등에 공지하고 납세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10일이 지나면 개시된다. 압류자산의 판매대금은 우선 판매경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이 체납액에 적용된다. 판매대금이 조세채무보다 적으면 잔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납세자에게 계속 있게 된다.

2) 징수 현황

자발적 납세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 국세의 징수비용을 보면 2002년을 기준으로 약 90억달러가 소요되었고 징수액 대비 비용은 약 0.45%에 이른다. 이러한 비율은 1971년 0.51%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이나 2000년대에 이르러 전체적으로달러당 징수비용이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표 1-4> IRS 내국세 징수액 및 세수 대비 비용 (1971~2002)

(단위: 백만달러, 달러, 명, 만달러)

연도	운영비용	총 징수액	\$100당 비용	1인당 세수	평균 인원	
					인원	징수액 대비비용
1971	981.1	191,647.2	0.51	925.6	68,972	2.78
1972	1,127.4	209,855.7	0.54	1,004.8	68,549	3.06
1973	1,162.0	237,787.2	0.49	1,130.1	74,170	3.21
1974	1,312.9	268,952.3	0.49	1,269.2	78,921	3.41
1975	1,584.7	293,822.7	0.54	1,375.8	82,339	3.57
1976	1,667.3	302,519.8	0.55	1,406.1	84,264	3.59
1977	1,790.6	358,139.4	0.50	1,647.9	83,743	4.28
1978	1,962.1	399,776.4	0.49	1,825.2	85,329	4.69
1979	2,116.2	460,412.2	0.46	2,083.3	86,168	5.34
1980	2,280.8	519,375.3	0.44	2,275.7	87,464	5.94
1981	2,465.5	606,799.1	0.41	2,631.2	86,156	7.04
1982	2,626.3	632,240.5	0.42	2,713.9	82,857	7.63
1983	2,968.5	627,246.8	0.47	2,666.6	83,603	7.50
1984	3,279.1	680,475.2	0.48	2,865.7	87,635	7.76
1985	3,601.0	742,871.5	0.48	3,099.0	92,259	8.05
1986	3,842.0	782,251.8	0.49	3,232.5	95,880	8.2
1987	4,365.8	886,290.6	0.49	3,627.2	102,189	8.67
1988	5,035.5	935,106.6	0.54	3,796.2	114,875	8.14
1989	5,198.5	1,013,322.1	0.51	4,062.8	114,758	8.83
1990	5,440.4	1,056,365.7	0.52	4,222.0	111,962	9.44
1991	6,097.6	1,086,851.4	0.56	4,288.5	115,628	9.40
1992	6,536.3	1,120,799.6	0.58	4,374.4	116,673	9.61
1993	7,078.0	1,176,685.6	0.60	4,542.9	113,460	10.41
1994	7,245.3	1,276,466.8	0.57	4,884.2	110,665	11.53
1995	7,389.7	1,375,731.8	0.54	5,216.7	112,024	12.28
1996	7,240.2	1,486,546.7	0.49	5,584.1	106,642	13.94
1997	7,163.5	1,623,272.1	0.44	6,039.4	101,703	15.96
1998	7,564.7	1,769,408.7	0.43	6,521.5	98,037	18.05
1999	8,269.4	1,904,151.9	0.43	6,957.8	98,730	19.29
2000	8,258.4	2,096,916.9	0.39	7,595.2	97,074	21.60
2001	8,771.5	2,128,831.2	0.41	7,448.9	97,707	21.79
2002	9,063.5	2,016,627.3	0.45	6,967.4	100,229	20.12

주: 1. 1988년 이후는 주세 및 담배세 제외.

2. 1991년 이후는 총기류세 제외.

자료: IRS Data Book, FY 2002, Publication 55b and Chief Financial Officer, Strategic Planning and Budgeting, Budget Execution, Operations N:CFO: SPB:X:O

이에 비하면 1인당 세수는 1970년 기준 약 926달러서 2002년 6,967달러까지 증가하였고 국세청 인원도 1970년에 비하여 약 45%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인원 1인당 징수액은 1970년 약 2.8백만달러에서 2002년에는 약 20.1백만달러로 증가, 거의 7배로 증가하였다.

나. 미납/체납에 관한 처분

납세자와 국세청이 신고서의 정확도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세무당국의 고지가 있는 후 30일 이내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체납고지서를 보낸다(Statutory Notice of Deficiency, 90-day letter). 체납고지서에는 체납액과 그 사유가 명시되고 납세자가 발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법원에 청원하지 않으면 당국은 체납액을 과세한다(Sec. 6213(a)).

연체 혹은 추가세금이나 납세자가 환급받는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적용된다(Sec. 6621). 단, 환급의 경우 신고기일로부터 45일까지 환급되면 이자가 없다. 다음의 경우 원래 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이자가 가산된다(Sec. 6601(a), (b)(1)): 첫째, 신고를 늦게 하고 납부도 늦게 한 경우 둘째, 신고 연기신청을 하였지만 납부한 추정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적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셋째, 제 때 신고를 하였지만 세금을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넷째, 세무조사 후 추가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

미납액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리에 대한 규정은 내국세법 Sec. 6621에 규정되어 있다. 이자율은 1% 단위로 반올림되는 분기별 연방 단기금리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식회사가 아닌 납세자는 연방 단기금리에 3%p가 추가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과다 납부액에는 연방금리+0.5%p, 그리고 10만달러 이상의 과소 납부액에는 일정 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방금리+5%p가 부과된다. 이러한 금리는 매일 복리로 계산된다.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는 신고기일로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한다. 다만, 원래의 신고기일이나 납세자가 제 때 신고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국세청이 이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지 못할 경우 이자가 유예된다¹⁾. 이러한 유예는 18개월이 지난날

로부터 국세청이 고지한 날에서 21일이 경과한 기일 동안 적용된다¹²⁾. 두 번째로 납세자가 Form 870을 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세금징수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고지일까지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Sec. 6601(c)).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가 세금을 기탁하면 이에 상당한 추가 세금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자를 면제할 수도 있다.

11) 2004년부터는 1년으로 축소된다(Sec. 6404(g)).

12) 이러한 유예는 세금신고를 정시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이외 신고서상의 벌금, 가산금이나 추가세금이 있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위적 신고 또는 형사처벌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 1-5> 체납신고에 관한 IRS 징수활동 내역(1997~2002)

(단위: 천건, 백만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체납징수액:	29,913	29,907	29,167	29,936	32,187	32,558
1차 체납징수액	9,239	9,451	9,969	11,467	12,474	13,429
2차 체납징수액	11,415	12,109	12,201	11,234	11,683	10,506
추가 조치에 의한 징수액	9,260	8,346	6,997	7,234	8,029	8,623
체납건수:						
시작건수	5,766	5,579	5,831	6,500	5,861	5,419
고지/수취건수	4,829	4,654	4,314	4,076	4,319	4,849
처분건수	5,016	4,302	3,745	4,715	4,761	4,581
종결:						
건수	5,579	5,931	6,500	5,861	5,419	5,687
납세고지액, 벌금, 이자	32,979	33,607	39,608	38,848	40,381	44,823
체납신고 고지액	10,804	9,754	13,380	9,399	10,175	11,578
체납신고 조사:						
시작건수	2,174	2,144	2,623	3,154	3,350	2,126
고지/수취건수	1,618	1,860	2,279	1,642	1,310	1,422
처분건수	1,648	1,381	1,748	1,446	2,534	1,410
종결건수	2,144	2,623	3,154	3,350	2,126	2,138
술선 이행 프로그램(건)	1,208	28	24	--	--	--
기타 조사종결 건수(건)				3,108	3,364	
합의요청건수	114	105	97	109	125	124
합의건수			31	33	39	29
합의금액				316.2	340.8	300.3
소액 조사 종결건수	13,185	9,155	4,581			
강제 집행:						
선취특권(liens) 고지	544	383	168	288	428	492
제3자에 대한 징수 고지	3,659	2,503	504	220	674	1,284
압류(건)	10,090	2,259	161	174	234	296

주: 1차 체납징수액은 분할납부를 포함.

자료: IRS Data Book, FY 2003, Pub. 55b, IRS

<표 I-5>에 제시된 체납 관련 통계를 보면 2002년 시작건수를 기준으로 체납건수는 약 5,419천건으로 전체 1,71,140.6천건의 약 3.2%에 이르고 체납징수액은 약 325.6억 달러로 총징수액의 1.6%에 달한다. 이외 가산금과 이자를 합치면 고지액 기준으로 약 448.2억달러로 2.2%가 된다.

이외 합의를 요청한 건수는 약 124천건으로 시작건수의 2.3%에 이르지만 합의에 이른 건수는 29천건(0.5%)에 불과하며 합의로 인하여 징수한 금액은 약 3억달러(0.9%)이다. 이 밖에 압류와 제3자에 대한 징수고지 등 강제집행은 1,776천건(32.7%)으로 전체 체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다. 시효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 신고기일이나 실제 신고일 가운데 나중 날짜로부터 3년간 제출된 세금신고서에 대하여 수정을 할 수 있다(Sec. 6501(a), (b)). 따라서 3년이 경과하면 국세청이 추가로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고 납세자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단, 신고된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소득을 누락하면 시효가 6년으로 늘어난다. 한편 사업자의 경우 총소득의 기준이 순이익이 아니라 판매수입이다(Reg. Sec. 1.61-3(a)). 만약 해당 소득이 신고서 등에 공표되면 이는 누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거나 이의 신청을 원하거나 환급을 받으려면 시효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과 납세자가 합의하는 시효 연장은 유산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에 적용된다. 시효가 다가오면 납세자는 시효 연장을 거부하거나 일부 사안에만 시효 연장을 하거나 혹은 시효 연장 시한을 정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때 기준은 유산이나 증여가치가 된다. 또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락된 유산 등의 내역과 규모에 대하여 신고서에서 이를 밝히면 유산 등의 누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산의 과소한 평가도 누락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나 사기의 신고인 경우에는 시효가 없다. 이 밖에 국세청과 납세자가 합의하여 시효를 결정할 수도 있다(Sec. 6501(c)(4)). 한편 형사처벌의

경우 기소시효는 신고일이 아닌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이며 따라서 그 동안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Sec. 6531).

라. 환급금과 납세자 채무의 상쇄(Treasury Offset System)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면 개인은 Form 1040X, 일반 주식회사(C 법인)는 1120X를 작성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환급 또는 공제의 요청은 세금신고일로부터 3년 혹은 납세일로부터 2년 중 늦은 날짜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 단, 악성부채, 외국세액 납부, 영업손실이나 일부 세액공제의 이월 등의 항목으로 인한 환급신청은 이러한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환급금을 지급하는 재무성 산하 금융관리처(Financial management Service)는 납세자가 연체한 자녀 부양금, 연방정부에 대한 부채 혹은 주정부 소득세¹³⁾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납세자가 받아야 할 연방세 환급을 거부할 수 있다(Treasury offset system). 환급금은 그 대신 납세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로 지급되어 해당 부채와 전부 혹은 일부 상쇄된다.

납세자가 정부에 진 채무와 환급금이 상쇄되는 순서는 연체된 연방소득세, 자녀 부양금, 연방기관에 진 부채, 연체된 주정부 소득세 그리고 미래 소득세 납부 의무액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금융관리처는 환급했어야 할 금액과 상쇄된 금액, 관할 부처의 연락처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13) 연체된 주정부 소득세를 연방소득세 환급금으로 대신 받으려면 주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납세자가 주정부 소득세를 연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60일)을 주고 연체된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6. 세무조사제도

가. 세무조사

자발적인 신고에 따른 법 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미국 국세청은 먼저 컴퓨터 추출 방식(DiF, Discriminant Function System)에 의한 신고서 심사를 수행한다. 이 체제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필요한 신고를 가리는 데 주목적이 있으며 DiF 체제에서 추출된 신고를 국세청 요원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한다¹⁴⁾. 이 밖에 제3자가 제공한 정보 등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조사에 따른 추가 세금과 벌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줄 수 있다(Reg. Sec. 301.7623-1(c)). 평균적으로 보면 조사가 이루어진 신고서는 전체 신고의 약 0.5% 이하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사전에 세무조사 방식을 통보한다. 세무조사는 편지교환에 의한 조사(correspondence audit) 이외 대부분 국세청 사무실에서 소득과 공제에 대한 사실 확인이 행해지는 사무실 조사(office audit)가 있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경우 종종 현장조사(field audit)가 있다. 현장조사는 납세자나 담당 회계사의 사무실에서 면담으로 이루어지며 조사범위가 사무실 조사보다 넓다.

동일한 항목에 대한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과거 2년 동안 최소한 한 번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둘째, 이러한 조사가 납세 의무액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special relief rule).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조사요원의 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속한 합의중개 절차(Fast Track Mediation)¹⁵⁾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와 상급자가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면 Form 870(Waiver of Statutory Notice)에 서명을 한다. 동 신고서는 국세청의 과세 및 징수권에 대한 그 어떠한 제한도 납세자가 포기함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만약 서명과 동시에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이에 대한 이

14) 최근에는 IRS가 산업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Program).

15) 신속합의 절차는 제3자인 중개인이 납세자와 조사관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양측이 중개인의 제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

자는 신고일로부터 납세일까지의 이자로 제한된다. 만약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Form 870에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¹⁶⁾.

조사관이 전문성이 없는 상세한 분야의 경우 조사관이 국세청 본청에 자문을 구하도록 납세자가 요청할 수 있는데 답변은 서면의 형식(letter ruling)으로 공개된다(Technical Advice Memorandum). 만약 그 내용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조사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납세자가 Form 870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당국은 납세액에 대한 국세청 의견과 납세자의 권리를 담은 내용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30-day letter). 납세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 항소관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세무조사가 현장조사이고 추가 세금과 벌금 및 이자가 1만달러를 초과하면 30일 기간 동안 항의서(protest letter)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 과세기간의 세금과 벌금 등을 합한 금액이 2.5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간단한 서면 진술서로 족하다. 이 밖에 사무실 조사의 경우 추가세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구두항의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 과세기간의 세금과 벌금 등을 합한 금액이 2.5만달러를 초과하면 공식적인 서면 항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트너십, S 주식회사 혹은 면세단체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서면으로 항의하여야 한다.

항의서에는 이의 내용과 근거자료 및 이를 뒷받침하는 해당 법이나 판례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항의서 내용은 위증에 따른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가 대신 작성할 경우 대리인은 그 내용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항소관(appeal officer)은 세무 조사관과는 달리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납세자와 타협을 할 수도 있다. 합의권은 사실과 법적 문제까지 적용되어 한 예로 소송시 40%의 승소 판결 확률이 있으면 해당 세액의 40%로 타협을 할 수 있다. 단, 중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안(appeals coordinated issue)은 국세청의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상부로부터 자문이나 동의를 받아 타협하여야 한다(Internal Revenue Manual 8774(14)). 항소관의 의견에 납세자가 동의하면 Form 870에 서명하며 만약 타협으로

16) 조사 이후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납세자는 이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자가 가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납부 형태는 현금 예탁이나 세금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부과금보다 세금이 감소하면 Form-AD를 작성한다.

납세자와 항소관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세무당국의 공지 후 30일 이내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체납고지서를 보낸다(Statutory Notice of Deficiency, 90-day letter). 체납고지서에는 체납액과 그 사유가 명시되고 납세자가 발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법원에 청원을 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체납액을 과세한다(Sec. 6213(a)).

나. 세무조사 현황

<표 I-6>과 <표 I-7>은 각각 2001년과 2002년의 세목별 세무조사 그리고 조사후 추가 세액을 권고한 내역을 분류한 표이다. 2002년 당시 세무조사가 된 신고는 약 827천건으로 총신고 대비 비중은 0.48%에 달한다. 세무조사의 1차 책임을 지는 일선 담당관들의 조사건수는 약 162천건에 이르며 심사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건수는 약 545천건에 이른다.

세목별로 보면 유산세 신고의 조사비중이 5.84%로 가장 높고 이 가운데 유산액이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가 26.9%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소비세 1.03% 그리고 법인세 0.97%로 법인세에서도 자산이 큰 대기업이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이에 비하면 개인소득세의 경우 평균 조사비율이 0.57%이며 사업자가 아닌 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0.71% 그리고 사업자는 이보다 조사비중이 더 높다.

한편 세무조사 후 추가로 부과한 세금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210억달러로 전체 징수액의 1.04%에 이른다. 그 중 대부분은 법인세로서 금액이 147.4억달러로 전체 추가세액의 70.2%에 달한다. 반면 개인소득세에서는 약 36.4억달러, 유산세는 14.3억달러, 증여세 4.1억달러 그리고 소비세에서는 1.4억달러가 추가로 부과되었다.

<표 1-6> 세목별 신고조사 및 추가세액 부과 권고 내역(2001)

(단위: 천건, %)

	2000년 신고	조사 건수						
		총건수	조사 비중	조사주체 ¹⁾		감사관	조사관	심사 센터
				CEP	CEP외			
전체	168,184.4	815.1	0.48	6.4	145.0	120.0	8.8	534.9
소득유산증여세	138,465.3	789.3	0.57	3.3	126.7	115.9	8.6	534.7
개인소득세 신고	127,097.4	731.8	0.58	0.2	77.8	115.9	8.6	529.2
비사업자 신고								
1040A TPI 25,000달러 이하 이외 TPI ²⁾ 규모별 신고:	41,716.8	358.0	0.86	0.0	8.9	21.8	1.8	325.4
~25,000달러	13,948.8	55.6	0.40	0.0	4.8	9.5	0.7	40.6
25~5만달러	30,108.9	67.1	0.22	0.0	8.4	23.8	1.3	33.5
5~10만달러	23,377.6	53.4	0.23	0.0	9.8	18.7	1.6	23.3
10만달러 이상	9,326.3	64.3	0.69	0.1	20.0	13.9	1.2	29.1
사업자 신고								
Schedule C 신고 TGR ³⁾ 규모:								
~25만달러	2,553.3	69.3	2.72	0.0	3.2	10.6	1.2	54.3
25~10만달러	3,399.4	34.7	1.02	0.0	6.9	11.7	0.5	15.4
10만달러 이상	2,012.2	24.1	1.20	0.0	12.9	5.4	0.2	5.6
Schedule F 신고 TGR 규모:								
~10만달러	382.1	2.1	0.55	0.0	0.9	0.3	0.0	0.9
10만달러~	272.0	3.2	1.18	0.0	2.0	0.2	0.0	1.1
법인세 (Form 1120S ⁴⁾ 제외)	2,453.0	23.3	0.95	2.6	19.3	0.0	0.0	1.4
회계장부 없는 신고	294.6	1.9	0.66	0.1	1.1	0.0	0.0	0.7
회계장부상의 총자산:								
~25만달러	1,432.5	3.6	0.25	0.0	3.4	n.a.	0.0	0.2
0.25~1백만달러	424.2	3.3	0.78	0.0	3.2	0.0	0.0	0.1
1~5백만달러	191.7	3.9	2.04	0.0	3.8	n.a.	0.0	0.1
5~10백만달러	29.9	1.6	5.33	0.0	1.5	n.a.	0.0	0.1
10~50백만달러	31.8	3.1	9.66	0.1	2.8	n.a.	0.0	0.1
50~100백만달러	7.9	1.0	12.32	0.1	0.9	n.a.	0.0	0.0
100~250백만달러	7.8	1.4	17.55	0.2	1.2	n.a.	0.0	0.0
250백만달러~	10.3	3.3	32.09	2.0	1.2	n.a.	0.0	0.1
Form 1120F 신고 ⁵⁾	22.3	0.2	0.98	0.0	0.2	n.a.	0.0	0.0
유산 및 유산신탁기금 소득신고	3,528.9	7.1	0.20	0.1	5.0	0.0	0.0	2.0
유산세 신고:	123.5	7.7	6.24	0.0	7.6	n.a.	0.0	0.2
총유산 1백만달러 이하	60.2	1.6	2.70	0.0	1.6	n.a.	0.0	0.1
1~5백만달러	57.8	4.5	7.78	0.0	4.4	n.a.	0.0	0.1
5백만달러 이상	5.5	1.6	28.87	0.0	1.6	n.a.	0.0	0.0
증여세 신고	308.6	2.0	0.65	0.0	2.0	n.a.	0.0	0.0
고용세 신고	28,866.6	14.0	0.05	1.7	11.2	0.7	0.0	0.3
고용세 조사관	n.a.	3.2	n.a.	n.a.	0.0	3.2	n.a.	n.a.
소비세 신고	852.5	8.2	0.96	1.1	6.9	0.1	0.1	0.0
기타 과세대상 신고		0.4		0.2	0.2	0.0	0.0	0.0
비과세 대상 신고	-	-		0.0	0.0	0.0	0.0	0.0
파트너십 신고, Form 1065	2,066.8	5.1	0.25	0.5	3.3	n.a.	0.0	1.2
S 주식회사, Form 1120S	2,887.1	12.4	0.43	0.0	11.7	0.0	0.0	0.6
기타 비과세 신고		0		0.0	0.0	n.a.	0.0	0.0

<표 1-6>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천달러)

	추가 세액 권고						신고건당 평균	
	총액	조사주체		감사관	조사관	이행센터	CEP	CEP외
		CEP	CEP외					
전체	19761.4	12704.6	5201.7	431.3	42.4	1381.4	-	-
소득유산증여세	18869.5	12212.3	4840.4	393.7	42.4	1380.8	3652.0	38.2
개인소득세 신고	3301.9	12.1	1521.8	393.7	42.4	1331.9	80.4	19.6
비사업자 신고								
1040A TPI 2.5만달러 이하	10198	0.1	123.2	52.5	5.4	838.6	25.3	13.9
이외 TPI ²⁾ 규모별 신고:								
~2.5만달러	2345	-	73.2	39.7	2.5	119.1	0.2	15.4
2.5~5만달러	176.6	0.0	72.8	42.8	4.2	56.7	0.3	8.6
5~10만달러	193.1	-	88.6	53.7	8.0	42.7	0.0	9.0
10만달러 이상	897.3	10.9	657.3	86.7	9.6	132.8	92.0	32.9
사업자 신고								
Schedule C 신고 TGR ³⁾ 규모								
~2.5만달러	189.3	-	68.1	24.3	3.3	93.6	0.0	21.5
2.5~10만달러	149.4	-	70.0	48.5	5.3	25.6	0.0	10.1
10만달러 이상	403.8	0.9	334.3	43.4	3.9	21.2	65.0	25.9
Schedule F 신고 TGR규모								
~10만달러	32	-	22	0.5	0.1	0.4	0.0	2.3
10만달러~	34.9	0.3	32.1	1.4	0.0	1.1	27.7	16.3
법인세 (Form 1120S ⁴⁾ 제외)	14235.7	12183.9	2029.1	0.0	0.0	22.7	4778.0	105.3
회계장부 없는 신고	436.8	314.4	106.4	n.a.	-	16.1	4248.3	93.6
회계장부상의 총자산:								
~25만달러	59.2	0.1	58.7	n.a.	-	0.4	25.2	17.2
0.25~1백만달러	71.0	0.1	70.6	0.0	-	0.3	10.0	22.0
1~5백만달러	108.4	17.8	89.8	n.a.	0.0	0.7	1049.8	23.8
5~10백만달러	53.1	0.2	52.7	n.a.	-	0.2	9.7	34.9
10~50백만달러	240.2	22.4	215.9	n.a.	-	1.9	176.4	76.4
50~100백만달러	93.2	16.6	76.0	n.a.	-	0.7	201.9	88.2
100~250백만달러	203.8	46.6	156.3	n.a.	-	0.9	253.4	135.7
250백만달러~	12773.0	11743.5	1028.1	n.a.	-	1.4	5895.3	828.4
Form 1120F 신고 ⁵⁾	196.9	22.2	174.7	n.a.	-	0.1	584.0	1134.4
유산 및 유산신탁기금 소득신고	159.5	15.0	119.8	n.a.	-	24.7	155.0	23.9
유산세 신고:	829.2	1.2	826.4	n.a.	-	1.6	1207.6	109.5
총유산 1백만달러 이하	122.5	1.2	121.1	n.a.	-	0.2	1207.6	77.0
1~5백만달러	238.9	0.0	238.1	n.a.	-	0.8	-	54.1
5백만달러 이상	467.8	0.0	467.2	n.a.	-	0.6	-	296.8
증여세 신고	343.3	0.0	343.3	n.a.	-	0.0	-	171.4
고용세신고	491.5	276.7	209.9	4.2	0.0	0.7	159.5	18.7
고용세 조사관	33.4	n.a.	n.a.	33.4	n.a.	n.a.	n.a.	0.0
소비세 신고	206.9	74.3	132.6	0.0	-	-	69.9	19.3
기타 과세대상 신고	160.1	141.3	18.8	-	-	-	611.6	109.4
비과세 대상 신고	n.a.	n.a.	n.a.	n.a.	n.a.	n.a.	n.a.	n.a.

주: 1) CEP(Coordinated Examination Program)는 일반 담당자이며 감사 및 조사관 등은 전문성이 더 높은 조사관을 의미함. 2) Total Positive Income 3) Total Gross Receipt 4) 주주를 통하여 법인을 과세함. 5) 외국법인.
 자료: IRS Data Book FY 2002, Pub. 55b, IRS

<표 1-7> 세목별 신고조사 및 추가세액 부과 권고 내역(2002)

(단위: 천건, %)

	2001년 신고	조사 건수						
		총건수	조사비중	조사주체 ¹⁾		감사관	조사관	심사센터
				CEP	CEP외			
전체	171,140.6	827.0	0.48	6.7	155.1	112.2	4.9	545.2
소득유산중역세	141,399.7	800.8	0.57	3.5	136.5	111.7	4.6	544.8
개인소득세 신고	129,444.9	743.9	0.57	0.1	88.8	111.7	4.5	538.7
비사업자 신고								
1040A TPI 25,000달러 이하 이외 TPI ²⁾ 규모별 신고:	40,560.6	289.1	0.71	0.0	8.1	15.0	1.3	264.8
~2.5만달러	14,106.1	90.8	0.64	0.0	4.9	7.5	0.3	78.1
2.5~5만달러	30,720.5	72.0	0.23	0.0	11.9	20.2	0.9	38.9
5~10만달러	24,702.6	69.6	0.28	0.0	13.4	21.6	0.8	33.8
10만달러 이상	10,602.9	80.5	0.75	0.1	23.1	16.7	0.5	40.0
사업자 신고								
Schedule C 신고 TGR ³⁾ 규모:								
~2.5만달러	2,541.7	67.9	2.67	0.0	2.5	8.8	0.3	56.3
2.5~10만달러	3,425.9	40.5	1.18	0.0	7.4	14.3	0.3	18.6
10만달러 이상	2,059.1	29.8	1.45	0.0	16.2	7.1	0.1	6.4
Schedule F 신고 TGR 규모:								
~10만달러	367.4	1.7	0.47	0.0	0.3	0.5	0.0	0.9
10만달러~	268.1	1.9	0.72	0.0	0.8	0.2	0.0	0.9
법인세 (Form 1120S⁴⁾ 제외)	2,412.0	23.4	0.97	2.7	18.5	0.0	0.0	2.2
회계장부 없는 신고	294.0	2.7	0.93	0.1	1.0	0.0	0.0	1.6
회계장부상의 총자산:								
~25만달러	1,395.5	3.3	0.24	0.0	3.2	n.a.	0.0	0.1
0.25~1백만달러	418.0	3.2	0.76	0.0	3.1	0.0	0.0	0.1
1~5백만달러	191.5	4.0	2.08	0.0	3.9	n.a.	0.0	0.1
5~10백만달러	30.6	1.4	4.63	0.0	1.4	n.a.	0.0	0.0
10~50백만달러	32.6	2.5	7.80	0.1	2.4	n.a.	0.0	0.1
50~100백만달러	8.1	0.9	10.74	0.1	0.8	n.a.	0.0	0.0
100~250백만달러	8.1	1.3	15.98	0.2	1.1	n.a.	0.0	0.0
250백만달러~	10.9	3.7	34.37	2.2	1.5	n.a.	0.0	0.1
Form 1120F 신고 ⁵⁾	22.9	0.3	1.36	0.1	0.2	n.a.	0.0	0.0
유산 및 유산 신탁기금 소득신고	3,918.9	7.2	0.18	0.1	5.0	0.0	0.0	2.2
유산세 신고:	122.4	7.2	5.84	0.0	7.2	n.a.	0.0	0.0
총유산 1백만달러 이하	56.7	1.2	2.19	0.0	1.2	n.a.	0.0	0.0
1~5백만달러	60.0	4.4	7.28	0.0	4.4	n.a.	0.0	0.0
5백만달러 이상	5.7	1.5	26.93	0.0	1.5	n.a.	0.0	0.0
증여세 신고	303.8	1.9	0.63	0.0	1.9	n.a.	0.0	0.0
고용세 신고	28,935.8	17.2	0.06	1.4	11.2	0.5	0.3	0.3
소비세 신고	815.1	8.4	1.03	1.6	6.8	0.0	0.0	0.0
기타 과세대상 신고		0.5		0.3	0.2	0.0	0.0	0.0
비과세 대상 신고	-	-		0.0	0.0	0.0	0.0	0.0
파트너십 신고, Form 1065	2,165.0	5.5	0.26	0.6	3.8	n.a.	0.0	1.1
S 주식회사, Form 1120S	3,022.6	11.6	0.39	0.0	11.1	0.0	0.0	0.6
기타 비과세 신고		0		0.0	0.0	n.a.	0.0	0.0

<표 1-7>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천달러)

	추가 세액 권고						신고건당 평균	
	총액	조사주체		감사관	조사관	이행센터	CEP	CEP외
		CIC	CIC외					
전체	20998.5	13408.0	5666.9	440.1	25.5	1423.6	-	-
소득유산중여세	20310.3	12990.0	5435.6	436.8	25.2	1422.8	3718.9	39.9
개인소득세 신고	3636.5	219.6	1560.4	436.8	24.8	1394.9	1579.6	17.6
비사업자 신고								
1040A TPI 25,000달러 이하	819.4	0.0	60.5	43.0	5.8	710.2	-	7.5
이외 TPI ²⁾ 규모별 신고:								
~2.5만달러	323.2	-	53.4	23.9	1.1	244.7	-	10.8
2.5~5만달러	174.5	0.0	64.1	46.3	2.1	62.0	-	5.4
5~10만달러	220.6	0.3	108.0	56.7	3.1	52.4	54.2	8.0
10만달러 이상	1,070.8	102.7	787.8	96.2	5.1	159.0	997.1	30.6
사업자 신고								
Schedule C 신고 TGR ³⁾ 규모								
~2.5만달러	167.4	-	27.0	24.7	0.9	114.9	0.0	10.9
2.5~10만달러	193.4	0.1	84.9	76.1	3.1	29.1	34.3	11.5
10만달러 이상	638.0	114.5	433.2	68.5	3.6	18.0	4978.1	26.7
Schedule F 신고 TGR규모								
~10만달러	43	-	29	0.6	0.0	0.8	0.0	9.2
10만달러~	24.9	1.9	18.5	0.6	0.0	3.9	955.1	21.3
법인세 (Form 1120S ⁴⁾ 제외)	14738.4	12769.8	1950.0	0.0	0.3	18.3	4800.7	105.1
회계장부 없는 신고	67.9	16.4	49.5	n.a.	-	1.9	254.6	47.9
회계장부상의 총자산:								
~25만달러	40.1	0.0	40.1	n.a.	-	0.1	-	12.4
0.25~1백만달러	57.2	0.0	56.8	0.0	-	0.4	1.7	18.2
1~5백만달러	96.7	0.0	95.0	n.a.	0.0	1.8	-	24.5
5~10백만달러	53.9	0.9	52.3	n.a.	0.3	0.5	43.4	38.7
10~50백만달러	257.0	18.8	235.2	n.a.	-	2.9	254.6	99.2
50~100백만달러	106.1	9.1	95.9	n.a.	-	1.1	164.8	123.3
100~250백만달러	295.8	60.5	233.0	n.a.	-	2.3	358.1	214.9
250백만달러~	13668.2	12590.8	1070.0	n.a.	-	7.4	5812.9	709.6
Form 1120F 신고 ⁵⁾	95.5	73.4	22.1	n.a.	-	0.0	712.3	114.1
유산/유산 신탁기금 소득신고	98.3	0.6	88.7	n.a.	-	9.0	8.5	17.9
유산세 신고:	1432.1	-	1431.6	n.a.	-	0.5	-	200.3
총유산 1백만달러 이하	33.9	-	33.9	-	-	-	-	27.3
1~5백만달러	422.1	-	422.1	n.a.	-	-	-	96.7
5백만달러 이상	976.1	-	975.7	n.a.	-	0.5	-	631.9
증여세 신고	405.0	-	405.0	n.a.	-	0.1	-	213.4
고용세신고	357.9	181.5	137.8	3.4	0.2	0.7	130.2	11.5
소비세 신고	130.6	43.3	87.1	0.0	0.1	-	27.8	12.8
기타 과세대상 신고	199.7	193.2	6.3	-	-	0.2	641.9	32.1
비과세 대상 신고	n, a,	n.a,	n.a,	n.a,	n.a,	n.a,	n.a,	n.a,

주: 1) CEP(Coordinated Examination Program)는 일반 담당자이며 감사 및 조사관 등은 전문성이 더 높은 조사관을 의미함. 2) Total Positive Income 3) Total Gross Receipt 4) 주주를 통하여 법인을 과세함. 5) 외국법인.
 자료: IRS Data Book FY 2003, Pub. 55b, IRS

7. 조세불복제도

납세자는 조세법원(U.S. Tax Court)이나 지방법원(district court) 혹은 연방배상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어디에 소송을 제기하는가는 각 법원의 관례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우선 조세법원에서는 소득세와 유산 및 증여세 그리고 연금과 자선단체 등의 소비세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체납고지서가 사전에 발부되어야 조세법원에서의 소송이 가능하며 체납고지서의 발부 이후 9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조세법원 심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세청과 다시 합의에 도달하기 하여 노력할 수 있다. 조세법원은 세금이 과세되고 납부되기 이전에도 심리를 진행하므로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간 체납액이 5만달러 이하이면 다른 법원과 달리 비공식적인 소액공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소액공판의 결정은 최종적이므로 항소할 수 없다.

지역법원이나 연방배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하기 이전에 체납액 등을 먼저 납부하고 환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세청이 환급을 거부하면 그 이후 혹은 환급을 요청한 후 6개월이 된 날짜 중 빠른 날짜에 납세자는 국세청의 환급소송을 이들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환급이 거부되고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두 법원 중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는 납세자가 결정하는데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벌금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연방배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누가 패소를 하든지 당사자는 항소심에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데 조세법원이나 지역법원의 심리는 납세자의 관할 순회법원이 담당한다.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거가 관할 기준이며 주식회사인 경우 회사의 주된 사업지(혹은 본사)가 그 기준이 된다. 그러나 연방배상법원의 관정에 대한 항소는 연방 항소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나 정부가 대법원에 항소법원의 판정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납세자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의 결정과 관련된 사실적 사안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게 있다(Sec. 7491). 첫째, 납세자가 재판

의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믿을만한 증거(credible evidence)를 제시하고 둘째, 납세자가 내국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기록보존과 사실증명에 충실하였고 셋째, 증인, 정보, 자료, 회의나 면접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합리적 요청에 납세자가 협조를 하였고 넷째, 납세자가 주식회사 등 기업이면 순자산이 700만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8. 가산세(금)와 조세범 처벌

가. 가산금 종류와 징수현황

세금의 연체 이외 내국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민사처벌과 형사처벌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납세자가 회계나 신고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후자는 고의적 혹은 악의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된다. 민사상 처벌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¹⁷⁾나 자신의 입장에 대한 성실성(good faith)을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일부 사안의 경우 이를 신고서에서 미리 밝혀야 두어야 한다(disclosure requirement). 각종 가산금의 유형과 내용은 아래 <표 I-8>에 정리되어 있다.

<표 I-9>에 근거하여 2002년 당시 민사상의 가산금 부과 내역을 보면 건수로는 약 28.3백만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187.3억달러에 이른다. 또한 합리적 사유 등의 이유로 가산금을 경감하고 난 후 순가산금은 24.2백만건, 95.7억달러이다. 총가산금을 기준으로 세목별 내용을 보면 개인소득세가 18.5백만건으로 가장 많고 금액은 약 50.7억달러에 달한다. 또한 고용세의 경우 7.8백만건, 62.2억달러이고 법인세는 약 0.8백만건, 15.8억달러이다.

가산금은 주로 체납과 추정세액의 부족한 납부로 발생한다. 이외 결제가 되지 않는 약성 수표나 사기 및 과실의 경우 가산금이 많지 않다. 또한 가산금은 신원 미확인이나 소득 미신고 등 세법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부과되기도 한다.

17) Reg. sec. 301.6651-1(c)(1)

<표 1-8> 내국세법 위반에 따른 각종 가산금과 형벌

처벌사유	법조항	규정	번호·면제
납세자: 민사			
미신고	6651(a)	5%/매월 25% 한도, 60일 이상 미신고:100달러, 100% 중 소액, 부정한 이유의 미신고: 15%/월, 75% 한도	합리적 사유
미납	6651(a)	0.5%/매월 25% 한도	합리적 사유
추정세액 미납(개인)	6654	결손에 적용되는 금리 부과(Sec. 6621)	비정상적 상황
추정세액 미납(회사)	6655	결손에 적용되는 금리 부과(Sec. 6621)	-
과실	6662(c)	과실에 의한 결손분에 20%	합리적 사유, 성실
상당한 과소납부	6662(d)	상당한 과소납부분에 대한 20%	합리적 사유, 성실, 공표
민사 사위행위	6663	사기로 인한 과소납부분의 75%	합리적 사유, 성실
납세자: 형사			
고의적 납세기피 시도	7201	10만달러(회사, 50만달러) 그리고/또는 최고 5년형	-
고의적 징세 등 기피	7202	1만달러 그리고/또는 최고 5년형	-
고의적 납세/신고기피	7203	2.5만달러(회사, 10만달러) 그리고/또는 최고 5년형	-
고의적 허위진술	7206	2.5만달러(회사, 10만달러) 그리고/또는 최고 1년형	-
작성자: 민사			
축소 신고	6694(a)	250달러	합리적 사유, 성실, 공표
고의적 축소신고	6694(b)	1,000달러	-
신고사본 미제공 등	6695(a)	50달러: 2.5만달러 한도	합리적 사유
고의적 부정확한 신고	6695(e)	항목별 50달러: 2.5만달러 한도	-
과소신고 지원, 교사	6701(b)	1,000달러(회사, 1만달러) aid	-

주: 합리적 사유는 대개의 경우 고의적 과실이 아니어야 하며 성실성은 good faith를 의미함.
 자료: Rhomas R. Pope (eds), *Federal taxation 2003, Comprehensive*, Prentice Hall 2003.

<표 1-9> 민사 벌금 부과금액, 경감액 및 각 사유별 비중(2002)

(단위: 천건, 백만달러, %)

	민사 벌금 부과액		경감: 합리적 사유 ¹⁾		경감:기타 사유		경감후 순 벌과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벌금(민사상)	28,299.0	18,728.7	448.3	992.9	3,661.5	8,163.0	24,189.2	9,572.9
개인소득세	18,525.4	5,065.2	126.2	134.6	2,029.0	924.8	16,370.2	4,005.9
체납	11.17	35.22	38.09	64.35	18.39	61.69	10.06	28.14
추정세액	31.01	27.47	11.24	7.78	7.73	11.07	34.05	31.92
미납	56.70	34.72	47.04	25.91	73.29	23.22	54.71	37.67
약성 수표	1.09	0.27	3.49	1.47	0.34	0.26	1.16	0.23
사기	0.01	1.49	0.02	0.22	0.03	1.47	0.00	1.54
과실	0.00	0.73	0.09	0.25	0.09	1.40	-0.00	0.59
기타 ²⁾	0.03	0.19	0.03	0.00	0.13	0.88	0.02	-0.08
법인세	751.5	1,576.7	11.6	58.1	114.2	1,183.3	625.7	335.3
체납	16.43	51.08	41.05	56.44	13.26	58.20	16.55	25.04
추정세액	40.49	22.78	9.07	13.80	17.86	16.89	45.20	45.11
미납	42.46	20.87	48.25	25.79	68.64	24.59	37.58	6.85
약성 수표	0.40	0.25	1.59	3.29	0.16	0.01	0.42	0.27
사기	0.02	1.08	0.00	0.00	0.00	0.07	0.02	4.82
과실	0.00	0.29	0.00	0.47	0.00	0.00	0.00	1.27
기타	0.02	3.66	0.03	0.20	0.07	0.16	0.23	16.64
고용세	7,763.6	6,216.1	237.9	584.7	1,253.9	2,863.7	6,271.8	2,767.8
체납	18.62	13.01	17.19	10.14	11.32	6.54	20.13	20.31
추정세액	46.60	8.16	23.80	3.67	50.99	4.54	46.59	12.86
연방세 예탁	33.42	78.34	57.43	85.54	37.36	88.76	31.72	66.03
약성수표	1.34	0.27	1.56	0.63	0.32	0.12	1.54	0.35
사기	0.00	0.09	0.00	0.00	0.00	0.00	0.00	0.20
과실	0.00	0.05	0.00	0.00	0.00	0.02	0.00	0.09
기타	0.01	0.068	0.02	0.01	0.01	0.02	0.01	0.16
소비세	455.7	464.9	36.4	119.9	72.4	172.6	346.8	172.4
체납	30.17	5.59	10.08	2.45	9.97	2.37	36.50	11.01
일일 체납	15.87	45.06	77.26	89.56	39.99	33.00	6.26	26.20
추정세액	1.51	0.45	0.03	0.00	0.76	0.51	1.83	0.70
미납	49.89	3.03	10.33	0.82	55.66	2.74	53.84	4.86
연방세 예탁	1.43	44.95	2.09	6.20	2.41	60.21	1.17	56.62
약성수표	1.01	0.33	0.22	0.97	0.16	0.13	1.35	0.09
사기	0.00	0.11	0.00	0.00	0.03	0.60	0.00	-0.31

<표 1-9>의 계속

(단위: 천건, 백만달러, %)

	민사 벌금 부과액		경감: 합리적 사유 ¹⁾		경감:기타 사유		경감후 순 벌과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과실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기타	0.04	0.47	0.00	0.00	0.00	0.43	0.05	0.83
유산증여세	28.9	301.2	4.1	42.4	14.6	197.8	10.2	61.0
체납	32.39	66.75	39.82	71.67	28.44	66.77	35.02	63.30
미납	65.52	30.05	57.60	27.18	70.51	30.66	61.59	30.06
약성수표	1.22	0.25	2.20	1.06	0.23	0.07	2.23	0.25
사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3
과실	0.00	0.05	0.00	0.00	0.00	0.00	0.00	0.22
기타	0.87	2.90	0.39	0.09	0.82	2.50	1.14	6.14
기타 세 ³⁾	362.9	279.9	32.1	53.3	94.6	188.3	235.1	38.3
체납	40.165	52.73	77.38	74.35	56.05	46.76	28.73	51.97
추정세액	21.58	9.76	1.76	1.00	7.12	5.18	30.05	44.45
미납	36.87	8.17	19.87	6.43	35.18	5.58	39.88	23.34
약성수표	0.99	0.08	0.00	1.31	0.64	0.60	1.25	0.12
과실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5
서류 미비	0.22	25.45	0.98	18.08	0.71	40.11	-0.01	-36.41
기타	0.17	2.54	0.00	0.11	0.22	2.29	0.16	16.47
미신고 세금 ⁴⁾	411.2	4,824.7	0	0	82.8	2,632.5	328.4	2,192.2

주: 1. 세목에서의 수치는 금액 혹은 건수를 그리고 세목 아래 각 사유별 통계는 세목별 비중을 의미함.

- 1) 일부 경감세액은 규정에 의한 IRS 직원 직권의 경감액이며 기타 경감은 해당 세액의 감소로 이루어짐.
- 2) 신원 미제공 혹은 팁 등의 기타 소득 미신고에 의한 벌금.
- 3) Forms 1041(유산증여 소득세), 1065(파트너십), 개인은퇴기금 등과 연관된 세금임.
- 4) Tax reform Act of 1984, 1986 등과 연관된 벌금으로 Form W2 미제출이나 Form 1099 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 미신고 혹은 세금공제의 남용에 대한 벌금임.

자료: IRS Data Book FY 2002, Pub. 55b, IRS.

나. 미신고 및 미납에 대한 가산금

1) 세금 미신고

기일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납부의무가 있는 순세액에 대하여 최대 25%를 한도로 매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Sec. 6651(a))¹⁸⁾. 여기서 순세액은 총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나 기일까지 납부한 금액 그리고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Sec. 6651(b)(1)). 만약 사기 등의 부정한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은 월 15%, 최대 75%로 증가한다. 또한 미신고에 따른 가산금은 최소한의 벌금이 적용되어 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은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와 100달러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이 된다(minimum penalty).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납세자는 미신고에 의한 가산금에서 면제되며 합리적 사유를 증명한 납세자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산금이 납부되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신고에 의한 가산금은 신고기일로부터 납부기일까지 이자가 붙는다(Sec. 6601(e)(2)(B)).

2) 세금 미납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금은 최대 25%를 한도로 매월 0.5%가 부과된다(Sec. 6651(a)).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는 신고기일에 발생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기일을 연장한 납세자는 이러한 가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를 연기 받은 납세자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총납세 의무액의 10%를 넘지 않으면 가산금에서 면제된다(Reg. Sec. 301.6651-1(c)(3)).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징수를 고지하고 10일이 경과한 날과 국세청이 세금징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납부를 요청한 날 가운데 먼저 도달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는 0.5%의 가산세가 매월 1%로 증가한다.

미신고에 의한 가산금이 미납에 따른 벌금보다 10배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8) 가산금을 부과할 때 1개월의 일부는 단 1일이라도 1개월로 간주된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신고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많은 경우 세금 미신고와 미납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에 따른 가산금이 월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미신고에 의한 가산금에서 미납에 의한 가산금을 제외하고 미신고 4.5% 그리고 미납 0.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Sec. 6651(c)(1)).

3) 추정세금 과소신고

임금 이외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분기별로 추정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추정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산금은 6621조에 따라 연체된 세금에 대한 이자와 같으며 분기별로 부과된다(Form 2210). 그러나 추정세의 분기별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으며 그 대신 신고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이자가 붙는다(Sec. 6601(h)). 가산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각 분기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실제 납부금과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밖에 납세자의 세금이 원천징수분을 1,000달러 이하로 초과하면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로서 전년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 장애인 그리고 새로 은퇴한 납세자도 벌금을 적용받지 않는다(Sec. 6654(e)).

4) 과실(negligence)

좀더 심각한 가산금으로는 정확성과 관련된 벌금으로서 과실, 신고세액의 중대한 누락 혹은 심각한 오류 등에 대하여 20%의 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다(Sec. 6662(a), (b)). 우선 의도적인 사기는 아니지만 내국세법령에 대한 태만이나 경시 등으로 세금을 과소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이러한 과실¹⁹⁾로 인한 결손세액에 대하여 20%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과소납부에 적용되는 이자가 과실에 따른 가산금에도 적용된다(Sec. 6601(e)(2)(B)).

19) any failure to make a reasonable attempt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IRC

5) 신고세액의 중대한 누락(substantial understatement)

내국세법에 의하면 신고세액의 10%나 5,000달러(정규 C 주식회사는 1만달러)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의 중대한 누락으로 간주한다(Sec. 6662(d)(1)). 이에 대한 가산금은 결손액의 20%이다. 이외 과실과 마찬가지로 과소납부에 적용되는 이자가 신고기일로부터 발생한다.

다. 조세범 처벌

1) 민법상의 사위행위(civil fraud)

고의적으로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즉, 자료의 위조나 파괴 등을 동반한 체계적이거나 상당한 소득의 누락 또는 가공의 공제 등은 사위행위(fraud)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결손액의 75%가 가산금으로 부과되고 이자도 붙는다(Sec. 6663). 결손액의 일부가 사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납세자가 사실과 다름을 증빙하지 않는 한 결손액 전부가 사위행위로 인한 금액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가산금은 소득, 유산 및 증여세에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과실 등에 의한 다른 가벼운 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형법상의 사위행위(criminal fraud)

민사 및 형사 사위행위는 사실을 오도하려는 의도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유죄판결을 위한 입증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민사상의 사위행위는 증거의 우열(preponderance of evidence)로 가려지지만 형사상의 사위행위는 합리적 수준의 의혹을 초월하는 증거(beyond reasonable doubt)가 필요하다(Sec. 7201~7216).

형사상 처벌에는 크게 세 종류의 처벌이 있는데 우선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고 기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달러(주식회사는 50만달러)의 벌금과 혹은/그리고 5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다(Sec. 7201). 두 번째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나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고 2.5만달러(주식회사는 10만달러)의 벌금과 혹

은/그리고 1년의 징역형이 적용된다(Sec. 7203). 세 번째로 세금신고 등의 작성이나 제출에서 악의적으로 허위나 부정행위를 교사 혹은 지원하는 자에게는 최고 10만달러(주식회사는 50만달러)의 벌금과 혹은/그리고 3년의 징역형이 적용된다(Sec. 7206).

9. 회계방식과 과세연도

가. 과세연도(tax year)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 신고하여야 한다(Sec. 441). 대개의 경우 과세연도는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역년(calendar year)이나 납세자가 선택한 회계연도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납세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세청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개인 납세자는 국세청의 허가 없이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개인 납세자는 역년을 납세연도로 하여야 한다²⁰⁾. 자영업체(sole proprietorship)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개인장부를 보관하지 않는 한 사업소득과 개인소득을 역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밖에 법으로 역년을 회계연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파트너십²¹⁾은 사업상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본 및 이익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파트너들의 과세연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들 파트너의 과세연도가 서로 다르면 주 파트너(principal partner)²²⁾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파트너십은 파트너 소득이 가장 적게 다음 연도로 이연되는 과세연도를 선택하여야 한다(Reg. Sec. 1.706-1T). 이러한 규정과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하려면 사업 주기와 일치하는 등의 정당한 사업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국세청의 사전 허가도 필요하다.

새로 발족한 일반 주식회사(C 법인)는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

20) 예외적으로 농부의 경우 3년간 소득을 평균화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Sec. 1301).

21) 파트너십은 우리나라 동업 혹은 조합기업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합자회사는 미국 유한 파트너십에 해당한다.

22) 5% 이상의 자본 혹은 이익에 대한 지분을 가진 파트너를 말한다.

다. 그러나 S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역년이 과세연도이며 이와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하려면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어야 한다. 유산(estate)의 경우 유산 집행인은 사전 허가 없이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고 신탁기금(trust)은 자선단체와 면세단체를 제외하면 역년을 사용한다(Sec. 644).

과세연도와는 별도로 소득이 언제 과세되는지는 납세자의 회계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자신의 회계연도를 바꿀 경우 국세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상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으면 회계연도의 변화가 용인된다(Form 1128). 이 때 소득 신고의 왜곡이 심각하지 않도록 납세자와 국세청이 사전 협의하여 변경 조건과 조정을 합의할 수 있다(Reg. Sec. 1.442-1(b)).

나. 회계방식

내국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장부를 기록하는 데 사용하는 회계방식과 부합하게 과세소득을 산정해야 한다(Sec. 446(a)). 회계방식은 또한 명백하게 소득을 반영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선택한 회계방식이 명백히 소득을 반영하는 한 납세자는 발생주의(accrual basis), 현금주의(cash basis) 그리고 혼합방식(hybrid method) 등의 수용 가능한 다양한 회계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현금주의 방식에는 약간의 제약이 가해지고 또한 회계방식이 소득을 명백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회계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득은 현금, 자산 그리고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데 납세자나 그 대리인이 수령한 소득에서 자산이나 서비스 형태로 받은 소득은 수입 당시 공정시장 가치에 준하여 소득으로 포함된다. 발생주의 원칙에서는 소득과 경비의 공제가 일치하지 않아 사전에 지급받은 소득(prepaid income)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국세청은 재무부 규정으로 사전소득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1) 현금주의 회계방식

대부분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는 간편함 때문에 현금주의 회계

방식(cash method)을 이용한다. 또한 장부기록을 유지하지 않거나 발생주의 원칙을 사용하기에는 장부가 적정하지 않으면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금주의 아래서는 실제 지출이 이루어질 때 공제가 가능하므로 납세자가 상황에 따라 공제를 연기하거나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금주의 원칙 아래서는 납세자가 소득을 창출한 때가 아닌 실제로 또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수령한 연도에 세금을 납부한다(Reg. Sec. 1.446-2(a)). 따라서 매출채권(account receivable)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경비는 실제로 지출한 때 공제된다. 수표나 신용카드의 경우 금액이 청구된 당시가 아니라 지급된 당시가 실제 지출로 간주된다. 따라서 단순한 지불약속이나 어음(note)의 지급은 현금주의에서 지출로 간주되지 않는다. 소득으로 신고한 후 나중에 일부 혹은 전부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경우 이를 환급해준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3,000달러를 초과하면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현금주의 아래서는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수령하였다고 간주되는 연도에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constructively receipt). 이는 납세자가 단순히 소득의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납세자가 항상 인출할 수 있도록 소득이 제공된 경우로 조건부로 혹은 사용이 제한된 상태로 자산 등의 소득이 제공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채권이자 만기가 되었지만 이를 현금화하지 않은 경우나 저축성 예금에 지급된 이자소득이 실질적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Reg. Sec. 1.451-2(b)). 또한 제3자가 납세자 대신 소득을 지급 받으면 이는 납세자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외 납세자의 부채를 제3자가 대신 갚거나 취소되면 해당 부채도 실질적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금주의 원칙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는 Series E와 EE US 저축형 증권에 대한 이자로 최대 만기 이후 1년 이내에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 농장주가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자신의 수확물이나 축산물을 예정보다 일찍 판매한 경우에도 신고를 1년 연장할 수 있고 전술한 대로 영세사업자도 현금주의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주의 회계방식에서는 경비는 실질적 지급이라는 개념이 없고 실제 지불한 연도에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의 인정 시점과 경비의 공제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정자산과 사전 지급경비 등 일부 경비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화되어 감가

상각된다.

그러나 재고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면 발생주의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외 현금주의를 채택한 납세자도 자본장비 구입, 대량구입 물품의 경비, 사전 지출된 이자나 임대료는 발생주의 원칙 아래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1년 기한을 넘지 않는 임대료는 경비지출이 요구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사전 지출된 이자경비는 해당 부채의 상환기간에 걸쳐서 공제되어야 한다(Sec. 461(g)). 이에 비하여 할인된 부채는 사전 지불된 이자로 간주되지 않고 이자는 부채가 상환될 때 지불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주 거주주택의 매입이나 신축을 위하여 빌린 부채에 사전 지불된 이자(point)는 상황에 따라 지금 공제가 되기도 한다.

일반 주식회사(C 법인)와 C 주식회사가 파트너인 파트너십 그리고 조세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tax shelter) 그리고 관련이 없는 사업 소득만을 창출하는 신탁기금은 현금주의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자격이 있는 개인서비스 주식회사, 농장과 목재관련 회사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500만달러 이하인 영세업체는 현금주의를 이용할 수 있다.

2) 발생주의 회계방식

발생주의 회계방식(accrual method)에서는 소득이 창출된 연도에 이를 신고한다. 소득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상황이 모두 발생하였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득금액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을 때 소득이 창출된 것으로 간주된다(Reg. Sec. 1.451-1(a)). 자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양도될 때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²³⁾.

발생주의 원칙 아래서도 사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예외적으로 수령 당시 과세된다(Pub. 538). 즉, 사전에 받은 소득 중 일부를 미래에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소득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상품의 경우 회계방식이 일관되면 또는 서비스의 경우 지급받은 해의 다음연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전 지급금

23) 단, 일관된 원칙으로 운용된다는 기준 아래서는 재고의 매매에 있어서 제품이 발송되거나 수령될 때 혹은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Reg. Sec. 1.446-1(c)(1)(iii)).

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Reg. Sec. 1.451-5, Rev. Proc. 71-21).

발생주의에서는 현금 지불과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 확정될 때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경비가 발생한다(Reg. sec. 1.461-1(a)(2), Sec. 461(h)).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법적인 지불의무가 확립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불의무가 있는 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사건의 발생요건, all-events test). 따라서 보증으로 인한 경비(warranty expense)는 실제 보증 서비스가 제공될 때 경비처리된다. 두 번째로 경비가 공제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거래행위가 실제 발생하여야 한다(경제적 행위의 요건, economic performance test). 경제적 거래행위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거래유형에 따라 거래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재산 혹은 서비스가 납세자에게 실제로 제공되는 시기나 납세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 혹은 납세자가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시기, 납세자가 지불약속을 하였으면 실제로 금액이 지불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Sec. 461(h)). 그러나 경비가 지급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자산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면 지불한 때가 거래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되며 또는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비용을 실제 지출하면 그 때가 거래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된다(Reg. Sec. 1.461-4(d)(6)(ii), 4(d)(4)(i)).

재발하는 지불의무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발생요건이 성립하고 과세연도의 종료 후 8개월 혹은 합리적 기간 이내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재발되는 경비로서 매년 일관되게 처리되며 또한 거래행위가 발생할 때 경비 처리하는 것보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거나 혹은 해당되는 거래가 사소하면 경제적 거래행위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은 위약이나 위법으로 납세자가 제3자에게 지불하는 경비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관련자(related parties) 거래

특수 관련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현금주의를 사용하는 관련자에게 지불한 사업경비와 이지는 납세자가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관련자가 이를 총소득에 포함할 때까지 공

제가 허용되지 않는다(Sec. 267). 세법에 의하면 관련자는 1) 개인과 그 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자녀, 손 자녀, 부모, 조부모) 2) 개인과 개인이 50% 이상을 보유한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3) 한 쪽이 양 조직의 소유권을 50% 이상 보유한 주식회사와 파트너십 4) 신탁기금 수혜자와 시혜자의 관계 혹은 기타 신탁기금, 회사, 개인간의 복잡한 관계로 정의된다.

4) 균일한 자본화 규정(Uniform Capitalization Rule)

균일한 자본화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납세자는 생산 혹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간접비용 중 배분이 가능한 비용과 직접비용을 자본화하여야 한다(Sec. 263A). 이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은 납세자가 생산한 사업용 부동산과 유형 개인자산, 판매용 부동산과 유형 개인자산 그리고 재판매를 위하여 납세자가 취득한 부동산과 개인자산이다. 단 이 규정은 이전 3년간 연간 판매액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납세자가 보유한 재고를 포함한 자산의 취득 혹은 생산에 소요된 경비는 자본비용으로 자본화된다. 직접비용은 재료 및 노동비용이며 간접비용은 직접비용 이외 비용으로 해당 자산의 경비로 배분이 가능한 비용이 자본화된다. 단, 광고 및 판매비용 등은 자본화되지 않는다. 일부 부동산과 유형개인자산의 생산, 제조, 개발, 개선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생산기간 동안 지급하거나 발생한 부채의 이자비용은 자본화된다(Sec. 263A(f)). 해당 자산은 사용기간이 20년 이상이거나 추정된 생산기간이 2년을 넘거나 혹은 생산기간이 1년 이상이며 비용이 100만달러를 초과하여야 한다. 자산이 부동산이면 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간주된다.

5) 기타

혼합방식(hybrid method)은 재고의 매매는 발생주의 원칙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다른 소득과 경비는 현금주의 원칙 아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 신고를 현금주의 회계방식으로 하면 경비신고에서도 현금주의를 사용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재고를 관리할 때 재고의 매매 등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Reg. Sec. 1-446-1(c)(2)(i)). 다만 과거 3년간 연간 총수입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주된 사업이 재고의 판매가 아닌 사업자는 1천만달러)는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주식회사(C 법인)와 주식회사 파트너(corporate partner), 조세기피 투자업체(tax shelters) 그리고 일부 유산 신탁기금은 발생주의를 이용하여야 한다(Sec. 448). 다만 일부 개인서비스 주식회사, 농장 그리고 연간 총수입이 5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업체는 예외이다.

10.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미국에서 세금신고는 자산의 평가가 필요한 재산세를 제외하면 자발적인 신고 및 세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신고납부 원칙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서는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제도가 있으며 이외 자영업 소득과 법인세 등 원천징수되지 않는 세금 등에는 주기적인 추정세액 납부제도가 적용되는데 납세자는 나중에 정산신고를 한다(pay-as-you-go system). 나아가 개인도 임금 이외의 소득이 15만달러를 초과하면 추정세액을 세금신고 이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자발적 신고납부를 위한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는 세금 선납 이외 사업자가 지급하는 각종 소득과 신상명세 등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information return). 특히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수취자가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혹은 탈세거래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필요한 제도이다. 이 밖에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1차 납세 의무자 이외 자산을 양도받은 개체나 재화/서비스의 판매자에게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납세자가 충분한 여유와 자료를 확보한 후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과세연도 종료 후 약 4½ 개월이 지나야 신고기한이 된다. 또한 신청만 하면 자동적인 신고 연기가 약 6개월간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물론 자발적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세금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내 납부되어야 하며 연체하면 가산금

이 부과된다. 이외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며 국세청도 누락 소득이 25%(6년)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금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사위행위(fraud)의 신고에서는 시효가 없다.

개인의 경우 회계장부를 따로 기록하지 않는 한 대개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역년을 과세연도로 하여야 하며 소유주 차원에서 과세하는 파트너십이나 개인회사도 역년이 아닌 과세연도를 선택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C 주식 회사는 그러나 제한 없는 선택이 가능하다. 이 밖에 회계방식은 소득을 명백하게 반영하는 조건 아래서 선택이 가능한데 자본의 감가상각이나 사전 지급된 소득(경비) 그리고 비용의 자본화 등에는 과세상의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납세자권리헌장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상당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국세청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는 국제협약 등 법이 허용한 상황을 제외하면 누설할 수 없다. 또한 국세청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이유와 용도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면담 내용을 납세자가 녹취할 수 있다. 대신 납세자는 세금 관련 사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이외 세금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tax advocate)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과세행정의 선진성과 신뢰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납세자가 국세청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는 직원 면담, 국세청 상부기관에 대한 항소 그리고 법원 소송이 있다. 특히 과거 2년 동안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오류나 탈세 사실이 없었으면 조사 종결을 납세자가 요구할 수 있어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납세자가 국세청의 요구에 협조를 하였고 적정하고 믿을만한 자료를 제시하면 입증 책임은 국세청에게 있다.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오류는 컴퓨터 추출을 거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평균 신고에 대하여 0.5%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2002년의 경우 세금조사로 추정된 세금은 210억달러로 총징수액의 약 1%인데 그 중 법인세가 70%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제3자가 제공한 정보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추가 세금 등의 10% 이하의 금액이 포상금으로 주어질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일정 조건 아래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납세자와 타협을 할 수 있다.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90일이 지나면 국세청이 체납액을 과세하며 가산세가 붙는다. 강제징수는 선취특권 고지(lien)와 압류가 있는데 압류는 제3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납세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자산에도 부과된다. 한편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자녀 부양금이나 연방정부 채무 혹은 지방정부 소득세를 연체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세금을 이들 채무를 관장하는 부처로 보낼 수 있다.

법원 소송은 조세법원, 지역법원 그리고 연방배상법원에 할 수 있지만 조세법원을 제외하면 체납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소송이 가능하다. 또한 조세법원에서는 소액 심판이 가능하다. 조세심판은 3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연방 대법원의 경우 위헌성이 있는 사건이나 서로 상충되는 하위법원의 판례만을 심의한다.

가산금을 비롯한 벌금은 세금신고나 회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민사처벌과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형사처벌이 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민사상 가산금은 최대 25%를 한도로 순세액의 5%가 매월 부과되는 데 비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월 0.5%가 부과되므로 세금납부는 하지 못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신고시 최소 가산금이 부과되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와 100달러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이 가산금이 된다. 이외 추정세액 과소신고, 과실, 상당한 금액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상 사위행위에는 최고 5년의 징역형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국세청의 징수비용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약 2조 166억달러를 징수하기 위하여 운영비용으로 90.6천만달러를 사용하여 징수액 대비 비용이 약 0.45%에 달한다. 국세청 인원은 약 10만명으로 직원 1인당 세수는 약 20.1백만달러에 달한다.

2002년 당시 전체 신고서의 약 0.48%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중 개인소득세는 0.57%, 법인세 0.97% 그리고 유산세는 5.84%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법인세와 유산세의 경우 고소득 신고에 대하여 10~30%까지 세무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약 210억달러의 추가 세액이 권고되었고 체납, 과소 신고, 악성 수표, 사기나 과실 등의 이유에 의한 벌금은 187억달러가 부과되었는데 각종 이유로 인한 벌금 경감액은 약 90.5억달러에 달한다.

요컨대 자발적 신고 원칙하에서 거래 혹은 소득 관련 자료를 본인 이외 거래 당사자

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성실 신고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또한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의 신고 및 제3자의 정보 제공에 따른 포상금 제도 등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대신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면담내용의 녹취권 허용 또는 재조사의 제한 등도 선진 세무행정을 위하여 국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제도들이다.

<부록> 미국 내국세법 목차(Title 26 - Internal Revenue Code)²⁴⁾

- 1장: 일반세금 및 부가세
- 2장: 자가영업 소득세
- 3장: 외국인 및 외국기업 원천징수
- 4장: 폐지
- 5장: 폐지
- 6장: 통합신고(연결납세)
- 11장: 유산세
- 12장: 증여세
- 13장: 세대생략세
- 14장: 특별 평가규정
- 21장: 연방 사회보장법
- 22장: 철도은퇴세
- 23장: 연방실업세
- 23A장: 철도실업 지급세
- 24장: 노동임금 원천징수
- 25장: 고용세 관련 일반규정
- 31장: 연방소매세
- 32장: 제조업 소비세
- 33장: 설비 및 서비스
- 34장: 외국 보험계약

24) uscode.house.gov/title_26.htm

- 34장: 도박세
- 36장: 기타 소비세
- 37장: 폐지
- 38장: 환경세
- 39장: 등록 의무
- 40장: 직업세 관련 일반규정
- 41장: 공공 자선기부
- 42장: 면세단체
- 43장: 연금
- 44장: 투자단체
- 45장: 폐지
- 46장: Golden Parachute Payments
- 47장: 단체 건강보험
- 51장: 주류
- 52장: 담배제품
- 53장: 총기류
- 54장: 주식매점(Greenmail)
- 55장: Structured Settlement Factoring Transaction
- 61장: 자료 및 신고서
- 62장: 기한 및 납세지
- 63장: 평가
- 64장: 징수
- 65장: 감면, 공제 및 환급
- 66장: 제한규정
- 67장: 이자
- 68장: 가산금 및 벌금
- 69장: 우편 관련 일반 규정
- 70장: Jeopardy and Receivership

- 71장: Transferee and Fiduciary
- 72장: 면허 및 등록
- 73장: 보증증권
- 74장: 확정 합의 및 타협
- 75장: 형사범 및 기타 위법사항
- 76장: 사법재판
- 77장: 기타 규정
- 78장: 의무 확인 및 법집행
- 79장: 정의
- 80장: 일반규정
- 91장: 의회 위원회(joint committee) 조직 및 구성
- 92장: 위원회 권한과 의무
- 95장: 대통령 선거기금
- 96장: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 98장: 기금
- 99장: 석탄산업 건강 수혜
- 100장: 단체 건강보험 요건
- 기타

II. 개인소득세

1. 서론

가. 배경

1861년 남북전쟁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되었던 연방소득세는 그후 우여곡절을 거쳐 1913년 미국 헌법 16조의 개정을 거쳐 전면 실시되었다. 미국에서는 연방소득세 이외에도 다수의 지방정부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7개 주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 지방정부의 소득세는 연방정부 소득세 과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연방소득세는 2003년 현재 소득을 6개 구간으로 나누어 10~38.6%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율을 2~3.6%p 낮추어 한계세율을 10~35%로 인하하고 이에 따라 소득구간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 소득세 납부는 납세자 본인에 의한 신고와 자발적인 법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과세근거

연방소득세는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하여 징수된다. 또한 재무성은 법 해석과 이행을 위하여 법과 거의 동등한 권한(authorities)을 지닌 재무성 규정(Treasury Regulation)을 마련한다. 한편 미국 국세청(IRS)도 법 해석을 위하여 상당한 수의 판례와 절차 및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지 않으므로 재무성 규정보다는 법적 비중이 떨어진다. 세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쟁은 IRS 내부의 이의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되며 그 결과는 전례(precedent)가 된다. 하위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등법원(US Circuit Court of

Appeals) 그리고 이후 대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헌성 여부 등 매우 중요한 사안과 상충되는 판례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다. 연방소득세 신고 및 내역

1) 연방소득세 세수·세율 및 신고 추이

<표 II-1>에서 보듯이 미국 연방정부가 내국세로 걷은 세금은 2002년의 경우 약 2조 166억달러로 전체 GDP의 19.3%를 차지한다. 이 중 개인소득세는 약 1조 377억달러로 전체 내국세에서 51.5%에 달하며 GDP에서는 11.3%를 차지한다. 이외 개인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고용세가 6,800억달러(34.1%)로 개인소득세 다음으로 중요하다.

<표 II-1> 개인소득세 징수액과 GDP 대비 비중(Fiscal Years 1972~2002)

(단위: 억달러, %)

	내국세 총징수액	개인소득세	자영업 고용세		내국세 총징수액	개인소득세	자영업 고용세
1972	2,098.6 (16.9)	1,088.8 (8.8)	437.1 (3.5)	1987	8,862.9 (17.3)	4,654.5 (9.1)	2,770.0 (5.4)
1973	2,377.9 (17.2)	1,251.1 (9.0)	520.8 (3.8)	1988	9,351.1 (17.0)	4,736.7 (8.6)	3,180.4 (5.8)
1974	2,689.5 (17.9)	1,429.0 (9.5)	620.9 (4.1)	1989	10,133.2 (17.5)	5,157.3 (8.9)	3,456.3 (6.0)
1975	2,938.2 (18.0)	1,564.0 (9.6)	701.4 (4.3)	1990	10,563.7 (17.6)	5,402.3 (9.0)	3,672.2 (6.1)
1976	3,025.2 (16.6)	1,589.7 (8.7)	742.0 (4.1)	1991	10,868.5 (17.2)	5,468.8 (8.7)	3,844.5 (6.1)
1976[5]	754.6 (3.7)	397.6 (2.0)	198.9 (1.0)	1992	11,208.0 (16.9)	5,577.2 (8.4)	4,000.8 (6.0)
1977	3,581.4 (15.6)	1,867.6 (8.1)	860.8 (3.7)	1993	11,766.9 (16.7)	5,857.7 (8.3)	4,115.1 (5.8)
1978	3,997.8 (15.6)	2,130.6 (8.3)	972.9 (3.8)	1994	12,764.7 (17.2)	6,198.2 (8.4)	4,438.3 (6.0)
1979	4,604.1 (16.5)	2,515.5 (9.0)	1,128.5 (4.0)	1995	13,757.3 (17.6)	6,757.8 (8.6)	4,654.1 (6.0)
1980	5,193.8 (16.6)	2,875.5 (9.2)	1,283.3 (4.1)	1996	14,865.5 (17.9)	7,453.1 (9.0)	4,923.7 (5.9)
1981	6,068.0 (18.6)	3,328.5 (10.2)	1,528.9 (4.7)	1997	16,232.7 (18.5)	8,250.2 (9.4)	5,286.0 (6.0)
1982	6,322.4 (17.9)	3,526.1 (10.0)	1,687.2 (4.8)	1998	17,694.1 (19.1)	9,280.7 (10.0)	5,578.0 (6.0)
1983	6,272.5 (15.9)	3,496.3 (8.9)	1,738.5 (4.4)	1999	19,041.5 (19.4)	10,021.9 (10.2)	5,986.7 (6.1)
1984	6,804.8 (16.2)	3,628.9 (8.6)	1,992.1 (4.7)	2000	20,969.2 (20.8)	11,370.8 (11.3)	6,396.5 (6.3)
1985	7,428.7 (16.7)	3,966.6 (8.9)	2,252.1 (5.1)	2001	21,288.3 (20.4)	11,782.1 (11.3)	6,822.2 (6.5)
1986	7,822.5 (16.5)	4,169.6 (8.8)	2,439.8 (5.1)	2002	20,166.3 (19.3)	10,377.3 (11.3)	6,880.8 (6.5)

주: 1. 개인소득세는 유산 및 신탁기금 소득세 포함.

2. 고용세는 노년자, 생존 배우자, 상해 및 의료험(OSADHI) 세금과 실업보험세, 철도연금세 등 포함.

자료: IRS Data Book, FY 2001, Publication 55b.

내국세 비중은 누진 과세적 특성과 1990년대 미국 경기호황으로 1972년 약 17%에서 2002년 19~20%까지 증가한 바 있고 특히 개인소득세는 같은 기간에 약 8%에서 11%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면 고용세도 약 3~4%에서 6%까지 증가하였고 그 대신 법인세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소득세를 위시한 전체 세목별 신고건수는 <표 II-2>에 제시되어 있다. 2002년 당시 총 신고건수는 약 2억 2,661만건에 이르는데 이 중 소득세 신고가 약 1억 7,702만건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소득세에서도 개인소득세 신고가 약 1억 3,125만건으로 신고 가운데 57.9%를 차지한다.

<표 11-2> 소득세 유형과 양식별 신고서수 (1975~2002 Calendar Years)

(단위: 천건, %)

신고서/양식 유형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¹⁾
개인소득세	84,027	93,196	99,704	112,596	116,467	123,050	125,390	127,657	130,094	131,248
Forms 1040, 1040A 1040EZ, and 1040PC	(99.86)	(99.85)	(99.82)	(99.74)	(99.65)	(99.59)	(99.60)	(99.56)	(99.50)	(99.53)
서면신고	(99.86)	(99.85)	(99.82)	(96.01)	(89.51)	(79.62)	(76.21)	(71.83)	(68.59)	(63.87)
전자신고	N/A	N/A	N/A	(3.73)	(10.14)	(19.98)	(23.39)	(27.73)	(30.91)	(35.65)
영업 신고	(11.99)	(12.24)	(14.18)	(14.36)	(15.51)	(15.47)	(15.29)	(15.16)	(15.12)	(15.34)
Schedule C or C-EZ	(8.85)	(9.60)	(11.80)	(12.57)	(13.87)	(13.96)	(13.86)	(13.76)	(13.76)	(14.01)
Schedule F	(3.13)	(2.64)	(2.38)	(1.80)	(1.63)	(1.50)	(1.43)	(1.39)	(1.35)	(1.33)
비영업신고	(87.88)	(87.61)	(85.65)	(85.38)	(84.15)	(84.13)	(84.31)	(84.40)	(84.39)	(84.19)
Forms 1040C, 1040NR, 1040PR, and 1040SS	(0.14)	(0.15)	(0.18)	(0.26)	(0.35)	(0.41)	(0.40)	(0.44)	(0.50)	(0.47)
법인소득세	2,133	2,676	3,437	4,320	4,818	5,241	5,398	5,470	5,561	5,717
Form 1120	(82.66)	(79.06)	(70.76)	(54.05)	(45.60)	(42.12)	(40.80)	(39.52)	(38.28)	(37.10)
Form 1120A	N/A	N/A	(5.81)	(7.69)	(6.62)	(5.20)	(4.83)	(4.49)	(4.24)	(3.95)
Form 1120S	(17.22)	(19.74)	(21.44)	(35.56)	(44.85)	(49.60)	(51.26)	(52.78)	(54.35)	(55.80)
기타	(0.12)	(1.20)	(1.99)	(2.70)	(2.92)	(3.08)	(3.11)	(3.20)	(3.13)	(3.14)
파트너십 Forms 1065 and 1065B	1,133	1,402	1,755	1,751	1,580	1,861	1,975	2,067	2,165	2,238
유산 및 신탁기금 소득세, Forms 1041 and 1041S	1,564	1,882	2,125	2,681	3,191	3,398	3,403	3,529	3,919	3,711
면세단체	404	443	454	487	572	618	731	699	724	749
Forms 990 and 990EZ	(85.83)	(81.92)	(80.49)	(73.80)	(70.97)	(66.63)	(62.69)	(66.04)	(66.42)	(66.12)
Form 990-PF	(7.33)	(7.48)	(7.05)	(9.17)	(8.96)	(10.00)	(8.88)	(10.01)	(10.12)	(10.10)
Form 990-T	(4.88)	(5.31)	(5.77)	(8.02)	(8.70)	(8.12)	(8.59)	(7.52)	(6.66)	(6.56)
Forms 990C, 4720, and 5227	(1.96)	(5.29)	(6.69)	(9.01)	(11.37)	(15.25)	(14.60)	(16.44)	(16.80)	(17.23)
고용세	24,738	26,387	27,409	28,911	28,655	29,106	28,974	28,841	28,936	29,053
Forms 940, 940EZ, 940PR	(16.78)	(17.82)	(17.56)	(18.57)	(19.13)	(18.84)	(18.91)	(18.94)	(19.16)	(18.91)
Forms 941, 941PR/SS/M	(68.82)	(71.45)	(74.08)	(74.82)	(77.54)	(79.36)	(79.33)	(79.37)	(79.21)	(79.51)
Forms 943, 943PR	(1.85)	(1.60)	(1.46)	(1.33)	(1.24)	(1.14)	(1.09)	(1.06)	(1.01)	(0.97)
기타	(12.55)	(9.13)	(6.91)	(5.28)	(2.09)	(0.67)	(0.67)	(0.63)	(0.62)	(0.60)

주: 1) 예상치임.

자료: 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Fall 2002, Pub. 1136.

개인소득세에서 Form 1040은 표준적인 소득세 신고서이나 Form 1040A나 1040EZ는 상세공제(itemized deduction)가 필요 없는 등 소득세 신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신고서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전자신고로서 미국의 경우 전자신고가 처음 도입된

1990년 이래 전자신고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의 경우 전체 신고에서 약 35.7%가 전자신고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개인소득세에서 신고된 소득은 2000년을 기준할 때 약 8조 4,066억달러에 이르고 이 가운데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조정된 총소득(AGI)은 약 7조 1,224억달러에 이르러 전체 소득의 약 85%에 달한다. 조정된 총소득의 비중은 1950년(88%)에 비하면 감소하는 추세였고 다만 1990년대에 이르러 80%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표 II-3> 개인소득 대비 조정된 총소득(AGI), 소득세수 및 세율 비교
(1950~2002)

(단위: 십억달러, %)

	개인소득	조정된 총소득(AGI)		과세소득		소득세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부담률 ¹⁾
1950	229.9	202.3	88.0	84.3	36.7	18.4	8.0	21.8
1951	258.7	228.8	88.4	99.2	38.3	24.2	9.4	24.4
1952	276.1	241.1	87.3	107.2	38.8	27.8	10.1	25.9
1953	292.6	255.4	87.3	114.3	39.1	29.4	10.0	25.7
1954	295.2	256.6	86.9	115.3	39.1	26.7	9.0	23.2
1955	316.8	278.8	87.8	128.0	40.4	29.6	9.3	23.1
1956	340.0	298.8	87.9	141.5	41.6	32.7	9.6	23.1
1957	359.3	312.2	86.9	149.4	41.6	34.4	9.6	23.0
1958	370.0	314.8	85.1	149.3	40.4	34.3	9.3	23.0
1959	394.0	339.1	86.1	166.5	42.3	38.6	9.8	23.2
1960	412.7	351.4	85.1	171.6	41.6	39.5	9.6	23.0
1961	430.3	365.8	85.0	181.8	42.2	42.2	9.8	23.2
1962	457.9	387.8	84.7	195.3	42.7	44.9	9.8	23.0
1963	481.0	409.2	85.1	209.1	43.5	48.2	10.0	23.1
1964	515.8	442.2	85.7	229.9	44.6	47.2	9.2	20.5
1965	557.4	479.8	86.1	255.1	45.8	49.6	8.9	19.4
1966	606.4	521.7	86.0	286.3	47.2	56.1	9.3	19.6
1967	650.4	555.4	85.4	315.1	48.4	63.0	9.7	20.0
1968	714.5	609.3	85.3	352.8	49.4	76.7	10.7	21.7
1969	780.8	663.3	85.0	388.8	49.8	86.6	11.1	22.3
1970	841.1	699.3	83.1	401.2	47.7	83.9	10.0	20.9
1971	905.1	744.8	82.3	414.0	45.7	85.4	9.4	20.6
1972	994.3	825.5	83.0	447.6	45.0	93.6	9.4	20.9
1973	1,113.4	926.1	83.2	511.6	46.0	108.1	9.7	21.1
1974	1,255.6	1,005.4	82.0	573.6	46.8	123.6	10.1	21.5
1975	1,331.7	1,048.0	78.7	595.5	44.7	124.5	9.3	20.9
1976	1,475.4	1,169.1	79.2	674.9	45.7	141.8	9.6	21.0
1977	1,637.1	1,297.6	79.3	733.8	44.8	159.8	9.8	21.8

<표 11-3>의 계속

(단위: 십억달러, %)

	개인소득	조정된 총소득(AGI)		과세소득		소득세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부담률 ¹⁾
1978	1,848.3	1,469.6	79.5	846.4	45.8	188.2	10.2	22.2
1979	2,081.5	1,658.5	79.7	926.6	44.5	214.5	10.3	23.2
1980	2,323.9	1,831.6	78.8	1,045.2	45.0	250.3	10.8	23.0
1981	2,599.4	2,016.3	77.6	1,170.1	45.0	284.1	10.9	24.3
1982	2,768.4	2,094.7	75.7	1,231.9	44.5	277.6	10.0	22.5
1983	2,946.9	2,225.7	75.5	1,300.2	44.1	274.2	9.3	21.1
1984	3,274.8	2,473.3	75.5	1,447.0	44.2	301.9	9.2	20.9
1985	3,515.0	2,629.9	74.8	1,550.5	44.1	325.7	9.3	21.0
1986	3,712.4	2,838.3	74.7	1,665.6	44.9	367.3	9.9	22.1
1987	3,962.5	3,125.4	79.9	1,850.6	46.7	369.2	9.3	20.0
1988	4,272.1	3,415.8	80.0	2,070.0	48.5	412.9	9.7	19.9
1989	4,599.8	3,658.6	79.5	2,173.3	47.2	432.9	9.4	19.9
1990	4,903.2	3,813.2	77.8	2,263.7	46.2	447.1	9.1	19.8
1991	5,085.4	3,864.4	76.0	2,284.1	44.9	448.4	8.8	19.6
1992	5,390.4	4,108.3	76.2	2,395.7	44.4	476.2	8.8	19.9
1993	5,610.0	4,260.0	75.9	2,453.5	43.7	502.8	9.0	20.5
1994	5,888.0	4,485.7	76.2	2,598.0	44.1	534.9	9.1	20.6
1995	6,200.9	4,766.4	76.9	2,813.8	45.4	588.4	9.5	20.9
1996	6,547.4	5,151.6	78.7	3,089.7	47.2	658.2	10.1	21.3
1997	6,937.0	5,594.3	80.6	3,429.1	49.4	731.3	10.5	21.3
1998	7,426.0	6,123.7	82.5	3,780.8	50.9	788.5	10.6	20.9
1999	7,786.5	6,562.4	84.3	4,136.1	53.1	877.4	11.3	21.2
2000	8,406.6	7,122.4	84.7	4,544.2	54.1	980.6	11.7	21.6
2001	8,853.3	n.a.	n.a.	4,283.0	49.3	892.3	10.3	20.8
2002	8,922.2	n.a.	n.a.	n.a.	n.a.	n.a.	n.a.	n.a.

주: 1) 세부담률은 과세소득 대비 소득세 세수를 의미함.

자료: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Summer 2003」, pub. 1136, IRS.

각종 공·면제를 제외하고 실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은 2000년 당시 약 4조 5,442억달러로 전체 소득의 54%에 달한다. 이러한 과세소득의 비중은 1950년 37% 수준에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비과세되는 소득이 점차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소득세가 개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당시 11.7%로 1950년의 8%에서 약 2.7%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1996년 이후 조정된 총소득과 과세소득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과세소득 대비 평균 세부담률은 1950년 21.8%에서 2000년 21.6%로 큰 차이가 없다.

2) 연도별 법정세율 및 공제

연도별 인적공제액과 연방 개인소득세의 최고·저 한계세율 및 해당구간은 <표 II-4>에 제시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에서 개인소득세가 보통세(mass tax)가 된 것은 1940년대로 이 때 소득세가 일반적 의미에서 대부분의 국민에게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하면 처음 연방 개인소득세가 도입된 1913년 당시에는 세율(1~7%)이 낮고 과표(20,000~500,000달러)는 높아 소득세가 주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4> 연방소득세 인적 공제액과 최고·저 한계세율 및 구간 (1913~2003)

(단위:달러, %)

과세 연도	인적공제액			한계세율			
				최저구간		최고구간	
	독신	부부	부양가족	세율	~과세소득	세율	과세소득~
1913	3,000	4,000	n.a.	1.0	20,000	7.0	500,000
1914	3,000	4,000	n.a.	1.0	20,000	7.0	500,000
1915	3,000	4,000	n.a.	1.0	20,000	7.0	500,000
1916	3,000	4,000	n.a.	2.0	20,000	15.0	2,000,000
1917	1,000	2,000	200	2.0	2,000	67.0	2,000,000
1918	1,000	2,000	200	6.0	4,000	77.0	1,000,000
1919	1,000	2,000	200	4.0	4,000	73.0	1,000,000
1920	1,000	2,000	200	4.0	4,000	73.0	1,000,000
1921	1,000	2,500	400	4.0	4,000	73.0	1,000,000
1922	1,000	2,500	400	4.0	4,000	58.0	200,000
1923	1,000	2,500	400	3.0	4,000	43.5	200,000
1924	1,000	2,500	400	1.5	4,000	46.0	500,000
1925	1,500	3,500	400	1.125	4,000	25.0	100,000
1926	1,500	3,500	400	1.125	4,000	25.0	100,000
1927	1,500	3,500	400	1.125	4,000	25.0	100,000
1928	1,500	3,500	400	1.125	4,000	25.0	100,000
1929	1,500	3,500	400	0.375	4,000	24.0	100,000
1930	1,500	3,500	400	1.125	4,000	25.0	100,000
1931	1,500	3,500	400	1.125	4,000	25.0	100,000
1932	1,000	2,500	400	4.0	4,000	63.0	1,000,000
1933	1,000	2,500	400	4.0	4,000	63.0	1,000,000
1934	1,000	2,500	400	4.0	4,000	63.0	1,000,000
1935	1,000	2,500	400	4.0	4,000	63.0	1,000,000
1936	1,000	2,500	400	4.0	4,000	79.0	5,000,000
1937	1,000	2,500	400	4.0	4,000	79.0	5,000,000
1938	1,000	2,500	400	4.0	4,000	79.0	5,000,000
1939	1,000	2,500	400	4.0	4,000	79.0	5,000,000
1940	800	2,000	400	4.4	4,000	81.1	5,000,000
1941	750	1,500	400	10.0	2,000	81.1	5,000,000
1942	500	1,200	350	19.0	2,000	88.0	200,000
1943	500	1,200	350	19.0	2,000	88.0	200,000
1944	500	1,000	500	23.0	2,000	94.0	200,000
1945	500	1,000	500	23.0	2,000	94.0	200,000
1946	500	1,000	500	19.0	2,000	86.5	200,000
1947	500	1,000	500	19.0	2,000	86.5	200,000
1948	600	1,200	600	16.6	4,000	82.1	400,000
1949	600	1,200	600	16.6	4,000	82.1	400,000
1950	600	1,200	600	17.4	4,000	84.4	400,000
1951	600	1,200	600	20.4	4,000	91.0	400,000
1952	600	1,200	600	22.2	4,000	92.0	400,000
1953	600	1,200	600	22.2	4,000	92.0	400,000
1954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55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56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57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표 II-4>의 계속

(단위:달러, %)

과세연도	인적공제액			한계세율			
				최저구간		최고구간	
	독신	부부	부양자	세율	~ 과세소득	세율	과세소득~
1958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59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60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61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62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63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64	600	1,200	600	14.0	1,000	77.0	400,000
1965	600	1,200	600	14.0	1,000	70.0	200,000
1966	600	1,200	600	14.0	1,000	70.0	200,000
1967	600	1,200	600	14.0	1,000	70.0	200,000
1968	600	1,200	600	14.0	1,000	75.25	200,000
1969	600	1,200	600	14.0	1,000	77.0	200,000
1970	625	1,250	625	14.0	1,000	71.75	200,000
1971	675	1,350	675	14.0	1,000	70.0	200,000
1972	750	1,500	750	14.0	1,000	70.0	200,000
1973	750	1,500	750	14.0	1,000	70.0	200,000
1974	750	1,500	750	14.0	1,000	70.0	200,000
1975	750	1,500	750	14.0	1,000	70.0	200,000
1976	750	1,500	750	14.0	1,000	70.0	200,000
1977	750	1,500	750	14.0	3,200	70.0	203,200
1978	750	1,500	750	14.0	3,200	70.0	203,200
1979	1,000	2,000	1,000	14.0	3,400	70.0	215,400
1980	1,000	2,000	1,000	14.0	3,400	70.0	215,400
1981	1,000	2,000	1,000	13.825	3,400	69.125	215,400
1982	1,000	2,000	1,000	12.0	3,400	50.0	85,600
1983	1,000	2,000	1,000	11.0	3,400	50.0	109,400
1984	1,000	2,000	1,000	11.0	3,400	50.0	162,400
1985	1,040	2,080	1,040	11.0	3,540	50.0	169,020
1986	1,080	2,160	1,080	11.0	3,670	50.0	175,250
1987	1,900	3,800	1,900	11.0	3,000	38.5	90,000
1988	1,950	3,900	1,950	15.0	29,750	28.0	29,750
1989	2,000	4,000	2,000	15.0	30,950	28.0	30,950
1990	2,050	4,100	2,050	15.0	32,450	28.0	32,450
1991	2,150	4,300	2,150	15.0	34,000	31.0	82,150
1992	2,300	4,600	2,300	15.0	35,800	31.0	86,500
1993	2,350	4,700	2,350	15.0	36,900	39.6	89,150
1994	2,450	4,900	2,450	15.0	38,000	39.6	250,000
1995	2,500	5,000	2,500	15.0	39,000	39.6	256,500
1996	2,550	5,100	2,550	15.0	40,100	39.6	263,750
1997	2,650	5,300	2,650	15.0	41,200	39.6	271,050
1998	2,700	5,400	2,700	15.0	42,350	39.6	278,450
1999	2,750	5,500	2,750	15.0	43,050	39.6	283,150
2000	2,800	5,600	2,800	15.0	43,850	39.6	288,350
2001	2,900	5,800	2,900	10.0	12,000	39.1	297,350
2002	3,000	6,000	3,000	10.0	12,000	38.6	307,050
2003	3,050	6,100	3,050	10.0	12,000	38.6	31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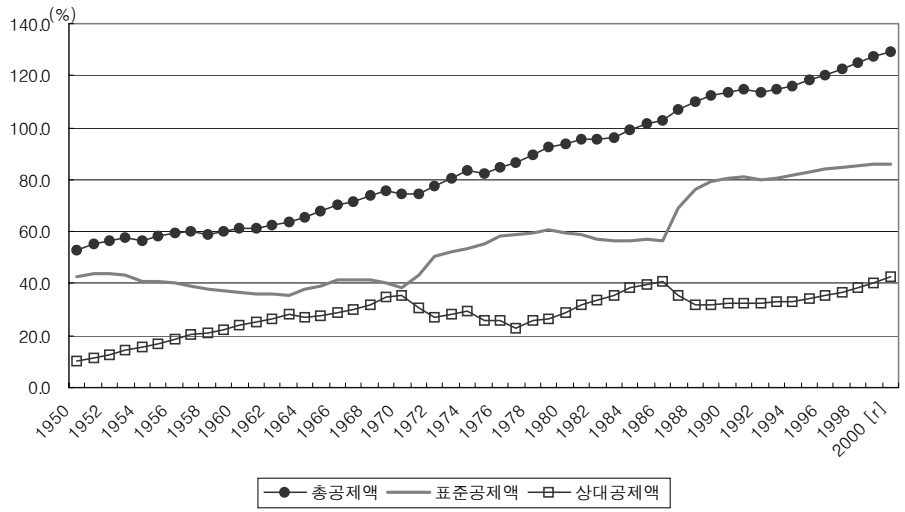
자료: SOI, Summer 2003, IRS.

현대적 개념의 소득세 세율과 구간이 정립된 것은 1941년도로서 이 당시 인적공제(독신, 750달러)와 함께 과세소득이 2,000달러를 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10%의 세율이, 그리고 최고 81.1%의 세율이 500만달러 이상의 소득 신고자에게 적용되었다. 이후 1960년대 초에 최고·저 세율이 각각 20%, 91%까지 치솟은 적도 있지만 지난 50년간 소득세 세율은 최저세율뿐만 아니라 최고세율도 점차 하락하여 2002년을 기준으로 하면 10%의 최저세율은 과세소득이 12,000달러 이하인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되며 과세소득이 307,050달러를 초과하면 세율은 38.6%가 적용된다.

한편 주지하다시피 소득세에서는 총소득에서 감면과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감면을 제외한 공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정부가 일정 금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납세자가 항목별로 공제를 신청하는 상세공제(itemized deduction)²⁵⁾가 있다. <표 II-5>는 연도별 공제유형별 신고건수와 공제액 그리고 조정된 총소득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림 II-1]과 [그림 II-2]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건수로 보면 표준공제신고가 상세공제신고보다 더 많다. 1970년 당시 상세공제신고가 35.4백만건으로 표준공제신고 38.4백만건에 근접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표준공제신고가 상세공제신고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25) 상세공제는 우리나라 세법에서 특별공제에 해당한다.

[그림 11-1] 공제신고 건수의 연도별 변화추이 (1950~2000)



<표 11-5> 개인소득세 표준·상세공제 신고수 및 금액의 변화(1950~2001)

(단위: 십억달러, 백만건, %)

과세연도	총신고 건수	총공제		표준공제		상세공제	
		금액	총소득(AGI) 대비 비율	신고건수	금액	신고건수	금액
1950	53.1	21.9	12.2	42.7	12.0	10.3	9.9
1951	55.4	25.2	12.5	43.9	13.3	11.6	11.9
1952	56.5	27.3	12.7	43.7	13.7	12.8	13.6
1953	57.8	29.8	13.0	43.4	14.2	14.4	15.6
1954	56.7	30.7	13.4	41.0	13.3	15.7	17.4
1955	58.3	33.6	13.5	40.9	13.6	16.9	20.0
1956	59.2	36.4	13.6	40.3	13.8	18.5	22.6
1957	59.8	39.5	14.1	39.3	13.8	20.2	25.7
1958	59.1	40.7	14.5	37.9	13.2	20.8	27.5
1959	60.3	45.4	14.9	37.3	13.4	22.5	32.0
1960	61.0	48.4	15.3	36.5	13.1	24.1	35.3
1961	61.5	51.3	15.6	35.8	12.9	25.3	38.4
1962	62.7	54.8	15.7	35.8	13.1	26.5	41.7
1963	63.9	59.2	16.1	35.4	13.1	28.2	46.1
1964	65.4	67.0	16.9	38.0	20.2	26.9	46.8
1965	67.6	71.4	16.6	39.3	20.6	27.9	50.7
1966	70.2	76.4	16.3	41.2	21.8	28.6	54.6
1967	71.7	81.7	16.2	41.5	22.1	29.8	59.6
1968	73.7	91.3	16.5	41.3	22.1	32.0	69.2
1969	75.8	101.8	16.9	40.5	21.6	34.9	80.2
1970	74.3	120.5	19.1	38.4	32.4	35.4	88.2
1971	74.6	139.9	20.8	43.5	48.1	30.7	91.9
1972	77.6	166.4	22.3	50.2	69.8	27.0	96.7
1973	80.7	180.6	21.8	52.2	73.6	28.0	107.0
1974	83.3	195.5	21.6	53.2	76.1	29.6	119.4
1975	82.2	233.2	24.6	55.5	100.9	26.1	122.3
1976	84.7	247.6	23.5	58.2	113.8	26.0	133.9
1977	86.6	276.2	23.8	58.8	137.7	22.9	138.5
1978	89.8	304.3	23.4	59.5	139.8	25.8	164.4
1979	92.7	333.0	22.7	60.7	148.8	26.5	184.2
1980	93.9	364.0	22.6	59.5	146.0	29.0	218.0
1981	95.4	401.2	22.6	58.7	144.7	31.6	256.4
1982	95.3	425.2	23.0	56.9	140.2	33.4	284.5
1983	96.3	448.7	23.1	56.2	138.5	35.2	309.6
1984	99.4	499.6	23.3	56.7	139.5	38.2	358.9

<표 11-5>의 계속

(단위: 십억달러, 백만건, %)

과세연도	총신고 건수	총공제		표준공제		상세공제	
		금액	총소득(AGI) 대비 비율	신고건수	금액	신고건수	금액
1985	101.7	554.7	24.1	57.0	145.0	39.8	405.0
1986	103.0	611.3	24.6	56.5	151.0	40.7	447.1
1987	107.0	607.2	21.9	69.1	215.2	35.6	392.0
1988	109.7	686.0	22.3	76.5	289.6	31.9	395.2
1989	112.1	740.4	22.7	79.3	309.4	32.0	431.0
1990	113.7	789.9	23.2	80.6	331.5	32.2	458.5
1991	114.7	818.8	23.6	81.3	351.1	32.5	467.7
1992	113.6	848.5	23.4	80.1	366.5	32.5	481.9
1993	114.6	872.5	23.4	80.8	382.1	32.8	490.4
1994	115.9	890.8	22.8	81.9	397.1	33.0	493.7
1995	118.2	941.0	22.5	83.2	413.6	34.0	527.4
1996	120.4	998.6	22.0	84.0	426.1	35.4	572.5
1997	122.4	1,062.5	21.4	84.8	441.7	36.6	620.8
1998	124.8	1,135.9	21.0	85.6	459.5	38.2	676.5
1999	127.1	1,205.3	20.6	85.8	464.0	40.2	741.4
2000	129.4	1,293.2	20.3	85.7	470.8	42.5	822.4
2001	130.3	1,366.4	22.1	84.2	467.0	44.6	884.5

- 주: 1. 총공제는 상세공제와 표준공제를 합한 수치(1982~86년 사이에는 표준공제에 신고된 기부금 포함)이며 1957년 이전 자료는 추정치임.
- 2. 조정된 총소득(AGI)의 정의는 1987년 변경됨.
- 3. 1977~1986년 사이에 상세공제는 zero bracket amount를 제외하기 이전 금액이며 1991년 이후에는 제한금액으로 환산한 공제금액임.

자료: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Summer 2003」, pub. 1136, 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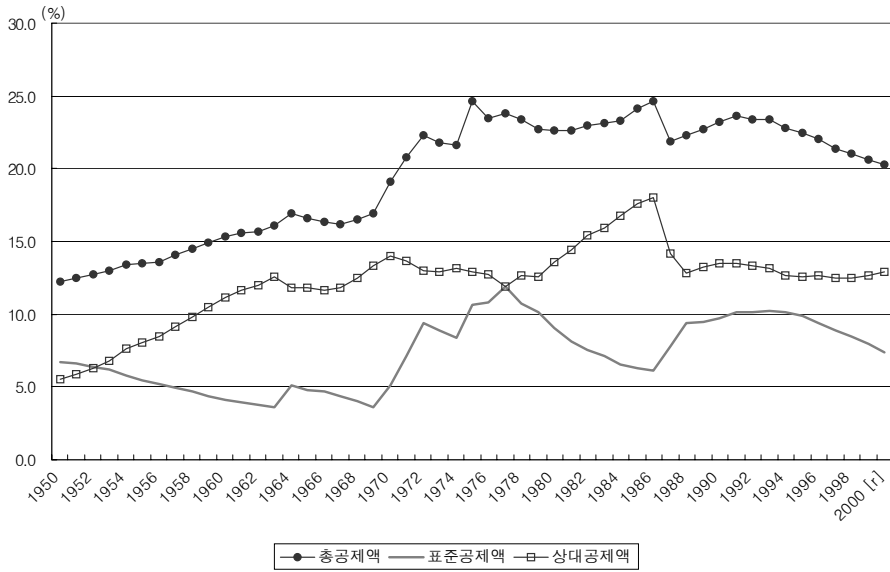
2001년을 기준하면 표준공제신고는 84.2백만건, 상세공제신고는 44.6백만건으로 전자가 약 1.9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86년 표준공제신고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상세공제신고가 감소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1995년 이후 상세공제신고건이 점차 증

가하고는 있으나 신고유형의 비중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1970년 이전까지는 상세공제신고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표준공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연후 1970년을 기점으로 상세공제 신고가 감소하면서 격차가 벌어졌으나 다시 1977년 이후 상세신고가 증가하면서 1986년 당시 상세신고 40.7백만건, 표준신고 56.5백만건으로 표준신고가 상세신고보다 약 39% 더 많았으나 그 이후 이러한 격차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상대적으로 어느 유형의 신고가 더 납세자에게 유리한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공제액수와 그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II-2]는 금액 기준으로 조정된 총소득(AGI) 대비 공제액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공제액 비중은 약간의 등락을 있었지만 198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조정된 총소득(AGI)에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당시 12.2%에서 1975년 24.6%에 이르기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1975~1986년 사이에는 22~24%에 이르렀고 그후 약간씩 하락하여 20%대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총공제액 비중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그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던 상세공제의 비중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II-2]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세공제는 약간의 등락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총소

[그림 II-2] 총소득(AGI) 대비 공제액의 연도별 변화추이 (1950~2000)



득 대비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1980년대에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총소득 대비 약 18%까지 증가하다가 198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AGI 대비 약 13%를 상회하게 된다. 반면 표준공제의 비중은 상세공제와 반대의 경향을 보이면서 1970년대 중후반을 제외하면 10% 이하에서 1990년대에 10%까지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1986년 이후 공제 비중이 감소한 부문은 상세공제로서 대신 총소득 대비 표준공제가 증가하였다. 이는 1986년 세법 개정으로 일부 유형의 개인경비가 공제를 더 이상 허용받지 못하면서 발생하였다. 그 결과 1986년 총소득(AGI) 대비 공제액은 24.6%로 정점을 이루고 이후 점차 감소, 2001년에는 그 비중이 21.2%에 달하게 된다. 또한 이 당시 약 6,110억달러에 이르는 총공제액에서 표준공제와 상세공제의 상대적 비중은 각각 24.7%와 75.3%로 상세 공제액이 신고건수는 표준공제의 약 70%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금액은 오히려 약 3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1년이 되면 총공제액 13,664억달러 가운데 상세공제는 8,845억달러, 표준공제는 4,670억달러로 상세공제가 표준공제액의 1.9배 정도에 이르고 신고건수는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

3) 소득세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

<표 II-6>에서 보듯이 소득세 신고에서 납세를 한 신고비율은 1986년 당시 81.5%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9년에 이르면 74.4%가 된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율은 약 25.6%에 이른다. 이와 달리 평균 세율 즉, 조정된 총소득(AGI)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당시 15.1%에서 약간 증가, 1999년 15.7%가 된다.

<표 II-6> 조정된 총소득(AGI), 소득세 및 평균 세율의 추이(1986~2000)

(단위: 십만건, %, 십억달러, 달러)

과세 연도	과세대상 신고서									
	총신고 십만건	과세 신고서 십만건	과세 신고 비율 %	AGI 십억\$	소득세 십억\$	평균 세율 %	평균수치			
							경상금액		불변금액	
							AGI	소득세	AGI	소득세
\$	\$	\$	\$							
각 연도 조정된 총소득(AGI) 기준										
1986	1,030.5	839.7	81.5	2,440	367	15.1	29,062	4,374	26,516	3,991
1987	1,070.0	867.2	81.1	2,701	369	13.7	31,142	4,257	27,414	3,747
1988	1,097.1	871.4	79.4	2,990	413	13.8	34,313	4,738	29,005	4,005
1989	1,121.4	891.8	79.5	3,158	433	13.7	35,415	4,855	28,560	3,915
1990	1,137.2	898.6	79.0	3,299	447	13.6	36,711	4,976	28,088	3,807
1991	1,147.3	887.3	77.3	3,337	448	13.4	37,603	5,054	27,609	3,711
1992	1,136.0	867.3	76.3	3,484	476	13.7	40,168	5,491	28,603	3,914
1993	1,146.0	864.4	75.4	3,564	503	14.1	41,233	5,817	28,535	4,026
1994	1,159.4	876.2	75.6	3,737	535	14.3	42,646	6,104	28,776	4,119
1995	1,182.2	892.5	75.5	4,008	588	14.7	44,901	6,593	29,463	4,326
1996	1,203.5	909.3	75.6	4,342	658	15.2	47,750	7,239	30,433	4,614
1997	1,224.2	934.7	76.4	4,765	731	15.3	50,980	7,824	31,763	4,875
1998	1,247.7	930.5	74.6	5,160	789	15.3	55,458	8,475	33,836	5,171
1999	1,270.8	945.5	74.4	5,581	877	15.7	59,028	9,280	35,431	5,570
1979년 조정된 총소득(AGI) 정의 기준										
1986	1,030.5	839.7	81.5	2,703	367	13.6	32,194	4,374	29,374	3,991
1987	1,070.0	867.2	81.1	2,736	369	13.5	31,551	4,357	27,774	3,747
1988	1,097.1	871.4	79.4	3,011	413	13.7	34,556	4,738	29,210	4,005
1989	1,121.4	891.8	79.5	3,188	433	13.6	35,752	4,855	28,832	3,915
1990	1,137.2	898.6	79.0	3,335	447	13.4	37,108	4,976	28,392	3,807
1991	1,147.3	887.3	77.3	3,387	448	13.2	38,169	5,054	28,024	3,711
1992	1,136.0	867.3	76.3	3,553	476	13.4	40,964	5,491	29,198	3,914
1993	1,146.0	864.4	75.4	3,625	503	13.9	41,938	5,817	29,023	4,026
1994	1,159.4	876.2	75.6	3,796	535	14.1	43,322	6,104	29,232	4,119
1995	1,182.2	892.5	75.5	4,075	588	14.4	45,655	6,593	29,957	4,326
1996	1,203.5	909.3	75.6	4,418	658	14.9	48,582	7,239	30,964	4,614
1997	1,224.2	934.7	76.4	4,849	731	15.1	51,875	7,824	32,321	4,875
1998	1,247.7	930.5	74.6	5,299	789	14.9	56,947	8,475	34,745	5,171
1999	1,270.8	945.5	74.4	5,736	877	15.3	60,666	9,280	36,414	5,570
2000	1,293.7	968.2	74.8	6,294	981	15.6	65,012	10,129	37,754	5,882

주: 1. 신고비율은 과세 대상 신고서/총신고서 비율 2. 평균세율은 소득세를 조정된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임.
 3. 불변금액은 노동통계청(BLS)의 도시 소비자 가격지수를 이용함(CPI-U, 1982-84=100). 4. 조정된 총 소득(AGI)의 정의는 연도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1979년 기준으로 재환산함.
 자료: M. Parisi and D. Campbell,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Shares, 1999*, IRS SOI Buletin, 2002.

조정된 총소득의 기준이 연도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를 1979년 세법 기준으로 하여 정의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환산하여 보면 평균세율은 1986년 13.6%에서 1999년 15.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도 신고 1건당 총소득은 1986년 29,062달러에서 1999년 59,028달러로 약 2.03배 증가하였는데 소득세는 같은 기간에 평균 4,374달러에서 9,280달러로 증가하여 약 2.12배 정도가 되었다. 나아가 불변가격을 기준하면 총소득은 같은 기간에 1.34배 증가하였고 소득세는 1.4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표 II-7>은 조정된 총소득과 소득세를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소득 분포와 세 부담을 비교한 표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2000년 당시 조정된 총소득은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의 약 20.8% 그리고 5% 계층은 35.3%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거의 절반(46.0%)을 차지한다. 조정된 총소득을 기준할 때 소득분배가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1986년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조정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 상위 5%는 24.1% 그리고 상위 10%는 35.1%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계층의 소득비중은 그 동안 약 10% 정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1995년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상위 50% 계층이 조정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83.3%에서 2000년 87.0%로 약 4.7%p 정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소득의 편재로 인하여 상위 1% 계층이 1986년 약 25.8%의 소득세를 부담하였으나 2000년에는 37.4%를 부담하고 상위 5% 계층의 소득세 부담은 같은 시기에 약 42.6%에서 56.5%로 증가한다. 이 밖에 상위 10% 계층의 부담은 54.7%에서 67.3%로 증가하였다. 한편 상위 50% 계층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2000년 당시 96.1%로 그 이하 계층은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6~2000년 사이에 전체적인 평균세율은 같은 시기에 14.5%에서 15.3%로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소득의 편재와 평균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총소득 대비 고소득층의 평균세율은 같은 시기에 33.1%에서 27.5%로 하락한다. 이는 같은 시기에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39.6%로 감소한 사실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반면 상위 5%의 평균세율은 1986년 25.7%에서 2000년 24.4%로 약간 하락하였고 상위 10%는 같은 기간에 22.6%에서 22.3%로 감소하였다. 또한 상위 25%와 50% 계층의 소득세율은 각각 18.7%에서 19.1%로, 16.3%에서 16.9%로 증가하여 고소득층보다 중산층의 상대적

세부담이 더 많아졌다. 그 결과 1986년에는 상위 1%의 평균세율이 상위 50%의 세율보다 2배 더 높았지만 2000년에는 약 163%에 이르게 된다.

<표 II-7> 소득구간별 조정된 총소득, 소득세 비중 및 평균세율(1986~2000)

(단위: 천달러, 십억달러, %)

	AGI floor						AGI(조정된 총소득)					
	총합	상 1%	상 5%	상 10%	상 25%	상 50%	총합	상 1%	상 5%	상 10%	상 25%	상 50%
1986	-	118.8	62.4	48.7	32.2	17.3	2524.1	11.30	24.11	35.12	59.04	83.34
1987	-	139.3	68.4	52.9	34.0	17.8	2813.7	12.32	25.67	36.90	60.75	84.37
1988	-	157.1	72.7	55.4	35.4	18.4	3124.2	15.16	28.51	39.45	62.44	85.07
1989	-	163.9	79.1	58.3	36.8	19.0	3298.9	14.19	27.84	39.00	62.28	85.04
1990	-	167.4	82.7	60.3	38.1	19.8	3451.2	14.00	27.62	38.77	62.13	84.97
1991	-	170.1	82.7	61.9	38.9	20.1	3516.1	12.99	26.83	38.20	61.85	84.87
1992	-	181.9	85.1	64.5	40.4	20.8	3680.6	14.23	28.01	39.23	62.47	85.08
1993	-	185.7	87.4	66.1	41.2	21.2	3775.6	13.79	27.76	39.05	62.45	85.08
1994	-	195.7	91.2	68.8	42.7	21.8	3961.1	13.80	27.85	39.19	62.64	85.11
1995	-	209.4	96.2	72.1	44.2	22.3	4244.6	14.60	28.81	40.16	63.37	85.46
1996	-	227.5	101.4	75.0	45.8	23.2	4590.5	16.04	30.36	41.59	64.32	85.92
1995	-	250.7	108.0	79.2	48.2	24.4	5023.5	17.38	31.79	42.83	65.05	86.16
1998	-	269.5	114.7	83.2	50.6	25.5	5469.2	18.47	32.85	43.77	65.63	86.33
1999	-	293.4	120.8	87.7	53.0	26.4	5909.3	19.51	34.04	44.89	66.46	86.75
2000	-	313.5	128.3	92.1	55.2	27.7	6424.0	20.81	35.30	46.01	67.15	87.01
	소득세						평균 세율					
	총합	상 1%	상 5%	상 10%	상 25%	상 50%	총합	상 1%	상 5%	상 10%	상 25%	상 50%
1986	367.0	25.75	42.57	54.69	76.02	93.54	14.54	33.13	25.68	22.64	18.72	16.32
1987	369.0	24.81	43.26	55.61	76.92	93.93	13.12	26.41	22.10	19.77	16.61	14.60
1988	412.8	27.58	45.62	57.28	77.84	94.28	13.21	24.04	21.14	19.18	16.47	14.64
1989	432.8	25.24	43.94	55.78	77.22	94.17	13.12	23.34	20.71	18.77	16.27	14.53
1990	447.1	25.13	43.64	55.36	77.02	94.19	12.95	23.25	20.46	18.50	16.06	14.36
1991	448.3	24.82	43.38	55.82	77.29	94.52	12.75	24.37	20.62	18.63	15.93	14.20
1992	476.2	27.54	45.88	58.01	78.48	94.94	12.94	25.05	21.19	19.13	16.25	14.44
1993	502.7	29.01	47.36	59.24	79.27	95.19	13.32	28.01	22.71	20.20	16.90	14.90
1994	534.8	28.86	47.52	59.45	79.55	95.23	13.50	28.23	23.04	20.48	17.15	15.11
1995	588.3	30.26	48.91	60.75	80.36	95.39	13.86	28.73	25.53	20.97	17.58	15.47
1996	658.1	32.31	50.97	62.51	81.32	95.68	14.34	28.87	24.07	21.55	18.12	15.96
1995	727.3	33.17	51.87	63.20	81.67	95.72	14.48	27.64	23.62	21.36	18.18	16.09
1998	788.5	34.75	53.84	65.04	82.69	95.79	14.42	27.12	23.63	21.42	21.98	22.34
1999	877.3	36.18	55.45	66.45	83.54	96.00	14.85	27.53	24.18	21.98	18.66	16.43
2000	980.5	37.42	56.47	67.33	84.01	96.09	15.26	27.45	24.42	22.34	19.09	16.86

자료: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Unpublished data, IRS, September, 2002.

이 밖에 <표 II-8>~<표 II-10>은 2001년과 그 이전 2년간 소득구간별로 총소득과 감면, 소득세 그리고 평균세율을 제시하고 있어 소득세를 통한 소득세 부담과 재분배 효과를 알 수 있다. 2001년 당시 평균세율은 15.2%인데 조정된 총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계층의 세율(조정된 총소득 대비)은 29%를 초과하고 5만달러 이하인 계층의 세율은 평균세율이 10%를 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된 총소득 6조 1706억달러 가운데 면제·공액은 2조 940억달러로 면·공제 비중이 33.9%에 달한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공제 비중은 소득이 낮을수록 커서 한 예로 조정된 총소득이 25,000달러인 사람의 경우 감면비중이 약 53%에 이르지만 100만달러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그 비중이 11.5%에 불과하다. 한편 총소득 대비 과세소득의 비중은 약 69.2%인데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과세소득 비중은 88.7%에 달한다. 따라서 총소득 대비 과세소득도 고소득층일수록 높다.

<표 11-8> 개인소득세 소득구간별 공·면제, 세액비중 및 평균세율(2001년)

(단위: 백만건, 십억달러, 달러, %)

소득구간 (AGI)	신고 건수	총소득 (AGI) (a)	면·공제	과세소득	소득세	면세점 이하 소득(비율)	평균소득세 납부액 (b)	평균세율 (b/a)
전체금액	130.26	6,170.60	2,093.99	4,268.51	887.97	27.2	9,370	15.2
(구성비)								
~0	1.44	- 70.4	7.11	0	0.09	99.6	17,469	-
1~1,000	1.84	1.06	8.35	0.01	0.00	93.5	11	1.2
1,000~3,000	5.37	10.77	27.95	0.57	0.07	87.4	111	5.9
3,000~5,000	5.38	21.47	40.08	0.70	0.08	85.5	106	2.5
5,000~7,000	4.95	29.75	42.74	2.40	0.25	69.0	164	2.8
7,000~9,000	4.98	39.74	48.60	4.43	0.45	60.2	225	2.8
9,000~11,000	4.90	49.01	52.22	7.95	0.85	46.6	323	3.2
11,000~13,000	4.67	56.05	51.53	12.13	1.40	46.4	560	4.7
13,000~15,000	4.76	66.61	53.49	17.76	2.06	42.8	756	5.4
15,000~17,000	4.66	74.39	53.97	23.39	2.70	37.6	929	5.8
17,000~19,000	4.69	84.30	56.22	30.15	3.43	36.3	1,149	6.4
19,000~22,000	6.38	130.78	77.82	55.01	6.22	33.4	1,464	7.1
22,000~25,000	5.72	134.36	71.72	63.96	7.34	26.8	1,751	7.4
25,000~30,000	8.56	235.16	109.87	126.82	15.55	17.6	2,205	8.0
30,000~40,000	13.84	480.54	193.83	288.45	38.46	7.2	2,994	8.6
40,000~50,000	10.61	475.36	171.67	305.20	44.46	2.9	4,314	9.6
50,000~75,000	17.56	1074.48	343.60	731.94	114.05	1.0	6,558	10.7
75,000~100,000	8.90	764.12	217.97	546.50	98.75	0.3	11,124	13.0
100,000~200,000	8.47	1114.32	271.71	843.41	185.26	0.1	21,896	16.6
200,000~500,000	2.02	578.59	96.88	482.71	134.59	0.1	66,764	23.3
500,000~1,000,000	0.36	240.86	29.95	211.32	67.78	0.2	190,893	28.1
1,000,000~1,500,000	0.09	103.19	11.94	91.49	30.26	0.2	354,659	29.3
1,500,000~2,000,000	0.04	62.63	7.03	55.76	18.48	0.2	507,211	29.5
2,000,000~5,000,000	0.05	154.97	16.78	138.52	45.84	0.2	880,863	29.6
5,000,000~10,000,000	0.01	83.52	9.20	74.55	24.21	0.3	1,978,569	29.0
10,000,000 or more	0.007	174.99	21.74	153.37	45.33	0.2	6,642,108	27.4

주: 공·면제액이 조정된 총소득(AGI)보다 클 수 있으므로 조정된 총소득에서 공·면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Summer 2003, IRS.

<표 11-9> 소득구간별 공·면제, 세액비중 및 평균세율(2000년)

(단위: 백만건, 십억달러, 달러, %)

소득구간 (AGI)	신고 건수	총소득 (AGI) (a)	면·공제	과세소득	소득세	면세점 이하 소득(건비율)	평균소득세 납부액 (b)	평균세율 (b/a)
전체금액	129.37	6,365.38	1,983.29	4,544.24	980.65	25.2	10,129	16.1
~0	1.14	- 58.60	6.53	--	0.12	99.5	2,1673	-
1~1,000	1.82	1.07	7.43	0.03	0.00	89.5	17	2.0
1,000~3,000	5.38	10.85	26.20	0.90	0.13	82.4	134	6.9
3,000~5,000	5.60	22.28	38.00	1.38	0.21	79.2	179	4.2
5,000~7,000	5.18	31.15	41.99	3.42	0.52	66.6	297	5.0
7,000~9,000	4.97	39.65	44.63	5.56	0.77	53.0	331	4.1
9,000~11,000	5.09	49.01	51.59	9.43	1.31	45.2	470	4.7
11,000~13,000	4.86	56.05	50.65	13.81	1.90	44.4	704	5.9
13,000~15,000	4.81	66.61	51.77	19.43	2.56	39.6	883	6.3
15,000~17,000	4.78	74.39	53.61	25.20	3.19	36.6	1,052	6.6
17,000~19,000	4.63	84.30	52.93	32.09	3.86	34.8	1,297	7.1
19,000~22,000	6.50	130.78	75.58	59.13	7.08	30.4	1,565	7.6
22,000~25,000	5.74	134.36	66.65	67.33	8.24	20.9	1,815	7.7
25,000~30,000	8.37	235.16	102.79	127.60	16.40	12.8	2,248	8.2
30,000~40,000	13.55	480.54	182.52	289.47	40.23	4.0	3,094	8.9
40,000~50,000	10.41	475.36	160.77	305.18	45.74	1.6	4,462	10.0
50,000~75,000	17.08	1074.48	321.19	724.73	115.75	0.7	6,824	11.2
75,000~100,000	8.60	764.12	200.19	537.65	99.80	0.2	11,631	13.6
100,000~200,000	8.08	1114.32	245.00	821.71	184.03	0.1	22,783	17.3
200,000~500,000	2.14	578.59	92.30	521.94	146.45	0.1	68,628	23.9
500,000~1,000,000	0.40	240.86	29.90	239.35	76.02	0.1	192,092	28.3
1,000,000~1,500,000	0.10	103.19	12.04	108.73	35.15	0.1	353,561	29.2
1,500,000~2,000,000	0.05	62.63	7.18	69.60	22.52	0.1	505,605	29.4
2,000,000~5,000,000	0.07	154.97	17.76	181.76	58.23	0.1	873,054	29.2
5,000,000~10,000,000	0.02	83.52	10.78	109.91	34.33	0.1	1,951,599	28.5
10,000,000 or more	0.01	174.99	31.32	268.92	76.09	0.1	6,790,191	25.4

주: 공·면제액이 조정된 총소득(AGI)보다 클 수 있으므로 조정된 총소득에서 공·면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Summer 2003, pub. 1136, IRS.

<표 II-10> 소득구간별 공·면제, 세액비중 및 평균세율(1999년)

(단위: 백만건, 십억달러, 달러, %)

소득구간 (AGI)	신고 건수	총소득 (AGI) (a)	면·공제	과세소득	소득세	면세점 이하 소득(건비율)	평균소득세 납부액 (b)	평균세율 (b/a)
전체금액	127.08	5,855.47	1,874.58	4,136.12	877.40	25.6	9,280	15.7
총소득(AGI)=0	1.07	- 53.86	5.77	--	0.11	99.5	22,567	-
1~1,000	1.81	1.10	7.35	0.03	0.007	87.8	31	3.7
1,000~3,000	5.92	11.92	28.96	0.96	0.13	83.1	132	7.0
3,000~5,000	5.61	22.40	37.67	1.40	0.21	77.9	172	4.0
5,000~7,000	5.22	31.34	43.61	3.15	0.48	69.7	302	5.1
7,000~9,000	5.10	40.80	46.30	5.49	0.75	50.6	298	3.7
9,000~11,000	5.07	50.52	49.63	10.07	1.42	43.6	497	5.0
11,000~13,000	4.96	59.49	50.70	14.40	1.96	45.1	719	6.0
13,000~15,000	4.91	68.73	52.45	19.52	2.56	39.6	864	6.2
15,000~17,000	5.02	80.32	55.38	27.49	3.45	34.8	1,054	6.6
17,000~19,000	4.61	82.87	52.11	32.12	3.91	34.8	1,300	7.2
19,000~22,000	6.25	127.84	71.70	57.28	6.87	29.0	1,549	7.5
22,000~25,000	5.87	137.77	68.41	70.26	8.67	19.5	1,832	7.8
25,000~30,000	8.39	229.84	100.60	130.12	16.94	11.3	2,277	8.3
30,000~40,000	13.29	461.84	177.70	284.99	39.70	3.7	3,101	8.9
40,000~50,000	9.87	441.51	150.91	290.99	43.46	1.3	4,462	10.0
50,000~75,000	16.76	1023.71	313.55	711.04	113.20	0.5	6,788	11.1
75,000~100,000	7.81	671.22	180.19	491.12	91.82	0.1	11,767	13.7
100,000~200,000	7.10	934.77	213.18	721.99	162.22	0.1	22,855	17.4
200,000~500,000	1.88	542.45	79.11	463.54	130.27	0.1	69,465	24.0
500,000~1,000,000	0.35	235.70	25.94	209.91	66.96	0.1	192,426	28.4
1,000,000~1,500,000	0.09	106.00	10.44	95.63	31.11	0.1	354,914	29.4
1,500,000~2,000,000	0.04	65.12	6.35	58.84	19.19	0.1	507,694	29.5
2,000,000~5,000,000	0.06	168.98	15.51	153.59	49.49	0.1	875,150	29.3
5,000,000~10,000,000	0.01	97.60	8.57	89.11	27.80	0.1	1,945,630	28.5
10,000,000 or more	0.009	215.49	22.51	193.09	54.70	0.1	6,326,785	25.4

주: 공·면제액이 조정된 총소득(AGI)보다 클 수 있으므로 조정된 총소득에서 공·면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Summer 2003, pub. 1136, IRS.

미국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에서 초과 납부된 부분은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납세자가 정부 등에 납부해야 할 여타 세금이나 부채 혹은 기타 자녀부양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환급분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담당기관에 이전하는 제도

를 도입하고 있다(재무성 산하 Financial Management Service). <표 II-11>은 이와 같은 환급 거부를 사유별로 구분하여 건수와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1년의 경우 그 금액이 약 31억달러에 이르고 건수는 4.3백만건에 달한다. 그 중 가장 비중이 큰 사안은 자녀부양금으로 17.2억달러(2.2백만건)이며 다음은 학자금 융자를 환수하지 못한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 10.3억달러(1.2백만건)이고 이외 주택저당, 불량수표 등이 있다.

<표 II-11> 사유별 소득세 환급 거부건수와 금액

(단위: 천건, 백만달러)

	총계	자녀지원	사회보장	퇴역군인	교육	중소기업	주택	농업	식품, 소비자	국방	기타
1985	489.4	489.4	n.a	n.a	n.a	n.a	n.a	n.a	n.a	n.a	n.a
	231.7	231.7	n.a	n.a	n.a	n.a	n.a	n.a	n.a	n.a	n.a
1986	882.8	604.4	n.a	17.0	243.1	8.6	7.7	1.9	n.a	n.a	n.a
	457.0	307.8	n.a	8.2	127.6	6.5	5.6	1.3	n.a	n.a	n.a
1987	1,150.4	664.5	n.a	129.5	278.5	5.8	9.5	6.5	n.a	55.0	1.1
	566.2	342.5	n.a	54.3	137.4	4.0	6.6	3.4	n.a	17.6	0.3
1988	1,194.9	737.7	n.a	52.6	315.7	3.9	10.7	4.8	n.a	59.5	9.9
	637.5	407.8	n.a	23.3	168.0	2.5	7.9	2.7	n.a	18.2	7.0
1989	1,259.3	779.6	n.a	56.1	334.7	3.8	11.4	66.3	n.a	61.8	7.4
	708.5	449.6	n.a	27.2	191.9	2.6	8.6	24.2	n.a	21.6	4.3
1990	1,402.1	832.0	n.a	50.0	432.1	3.4	10.9	7.5	n.a	58.0	8.2
	804.9	483.5	n.a	23.3	257.4	2.3	8.1	6.1	n.a	19.8	4.6
1991	1,565.4	869.9	n.a	39.0	575.6	2.4	11.3	8.6	n.a	49.1	9.6
	946.2	524.0	n.a	17.7	364.0	1.6	8.4	7.6	n.a	18.1	4.9
1992	1,921.9	1,071.0	78.7	29.1	720.3	2.2	13.5	20.3	9.7	54.5	11.0
	1,262.6	683.7	40.4	13.1	516.2	1.6	10.8	12.0	3.1	19.2	6.0
1993	1,758.2	947.1	28.8	33.8	651.1	1.9	11.4	29.0	21.8	46.1	9.0
	1,160.4	619.6	13.9	10.9	472.9	1.4	9.0	13.1	7.2	14.8	4.8
1994	2,009.9	1,017.5	19.7	35.4	781.8	2.2	10.5	73.5	66.7	59.5	9.9
	1,379.7	701.5	10.3	10.0	582.7	1.8	9.1	33.4	27.6	25.3	5.6
1995	2,188.3	1,165.4	16.1	45.8	778.4	2.6	10.7	73.6	66.4	85.0	10.6
	1,505.7	828.6	8.7	11.8	571.3	2.4	9.7	30.3	24.2	36.0	6.9
1996	2,120.9	1,241.4	30.2	50.0	573.3	3.5	6.2	93.9	87.2	111.2	11.2
	1,678.5	1,019.6	18.0	12.7	517.2	3.6	6.7	42.5	35.8	53.4	4.7
1997	2,162.1	1,303.7	28.0	45.5	518.8	4.0	6.9	115.1	108.6	127.1	13.1
	1,758.2	1,108.1	17.6	12.5	482.2	4.2	7.6	53.7	47.2	63.1	9.2
1998	2,375.1	1,309.4	62.5	43.3	654.0	4.0	6.0	159.6	146.1	129.4	6.8
	1,963.8	1,130.9	39.3	11.4	623.9	4.5	7.7	78.1	65.5	62.8	5.3
1999	2,764.4	1,441.0	77.7	51.9	963.4	0.6	10.9	208.8	192.3	201.8	7.5
	2,606.4	1,479.6	52.1	15.5	1,084.9	0.8	15.4	103.3	86.9	100.3	5.1
2000	2,869.1	1,426.6	102.5	50.4	853.2	2.2	10.6	214.3	196.4	140.6	68.8
	2,763.5	1,479.6	81.9	16.1	932.6	3.8	16.0	120.2	97.4	71.0	36.8
2001	4,307.0	2,200.3	153.1	139.5	1,217.9	2.1	16.1	41.3	175.2	210.1	255.3
	3,101.5	1,715.0	100.8	33.7	1,029.5	2.5	16.6	37.3	80.4	100.7	118.9

주: 1. 상단의 통계는 건수 그리고 하단은 금액을 의미함. 2. 자녀지원금, 교육융자금 미지급, 주택저당, 불량수표, 과도한 이진지급 등에 따른 부채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IRS가 소득세 환급금을 각 부처에 지급한 액수를 의미함.

자료: Pub. 1136, SOI, Spring 2002, IRS.

<표 II-12>은 1990~2001년까지 소득과 각종 감면, 공제 등의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표는 각 항목의 통계 수치 이외에 다음절에 정리된 소득세 산정방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표이다.

<표 II-12> 소득세 신고 및 공제내역 비중(1990~2001)

(단위: 천건, 백만달러, %)

	1990	1995	1999	2000	2001
전체	113,717.1	118,218.3	127,075.1	129,373.5	130,255.2
Form 1040 신고	69,270.2	64,774.7	74,165.8	78,846.1	80,500.0
Form 1040A 신고	25,917.3	24,463.3	26,961.3	28,826.6	28,293.8
Form 1040EZ 신고	18,529.6	21,644.2	20,752.4	21,700.8	21,561.4
Form 1040PC 신고	n.a.	7,102.7	5,195.6	n.a.	n.a.
전자신고	8,755.0	14,724.2	35,495.3	40,078.6	46,861.5
신고자 지위					
부부합산 신고	48,377.4	49,036.4	49,900.0	50,268.2	51,034.4
부부별도 신고	2,195.5	2,628.0	2,385.6	2,486.7	2,441.5
가장	13,159.6	15,551.2	17,781.5	18,208.4	18,493.7
생존 배우자	111.5	115.4	80.9	63.8	74.2
독신	49,873.1	50,887.4	56,927.1	58,346.4	58,211.4
조정된 총소득 (AGI)	3,405,427.3	4,189,353.6	5,855,467.9	6,365,376.6	6,170,603.9
노동임금:					
신고비중	85.06	85.55	85.13	85.16	85.39
금액비중	76.33	76.42	70.57	70.01	73.98
과세대상 이자수입					
신고비중	61.88	56.70	52.90	52.60	51.80
금액비중	6.67	3.69	3.00	3.13	3.21
면세대상 이자수입					
신고비중	3.44	4.23	3.78	3.60	3.50
금액비중	1.18	1.16	0.90	0.85	0.90
조정된 총소득(AGI) 주식배당					
신고비중	20.14	22.17	25.36	26.39	25.04
금액비중	2.35	2.26	2.26	2.31	1.94
사업 혹은 전문인 순소득					
신고비중	9.87	10.33	10.36	10.29	10.45
금액비중	4.75	4.58	3.99	3.84	4.04

<표 II-12>의 계속

(단위: 천건, 백만달러, %)

	1990	1995	1999	2000	2001
사업 혹은 전문인 순손실					
신고비중	3.00	3.35	3.26	3.31	3.38
금액비중					0.53
조정된 총소득(AGI) 순양도이익					
신고비중	8.11	12.54	17.70	17.50	9.70
금액비중	3.63	4.30	9.44	10.12	5.64
조정된 총소득(AGI) 순양도손실					
신고비중	4.46	4.34	4.09	5.31	8.32
금액비중	0.28	0.23	0.17	0.22	0.37
자본 이외 자산의 판매이익					
신고비중	0.76	0.68	0.66	0.64	0.59
금액비중	0.18	0.14	0.11	0.12	0.12
자본이외 자산의 판매 손실					
신고비중	0.73	0.82	0.71	0.67	0.65
금액비중	0.14	0.21	0.14	0.13	0.15
조정된 총소득(AGI) 연금					
신고비중	14.96	15.58	16.80	16.82	17.09
금액비중	4.68	5.28	5.20	5.12	5.49
조정된 총소득(AGI) 실업급여					
신고비중	7.05	6.75	5.33	5.01	6.76
금액비중	0.45	0.46	0.30	0.27	0.44
조정된 총소득(AGI) 사회보장급여					
신고비중	4.47	5.58	7.44	8.20	8.27
금액비중	0.58	1.09	1.28	1.41	1.52
임대 순소득					
신고비중	3.46	3.69	3.43	3.25	3.24
금액비중	0.76	0.84	0.74	0.71	0.77
임대순손실					
신고비중	4.54	4.15	3.63	3.49	3.46
금액비중	0.98	0.65	0.48	0.48	0.50
로열티 순소득					
신고비중	1.03	0.93	0.88	0.85	0.87
금액비중	0.13	0.12	0.11	0.13	0.17

<표 II-12>의 계속

(단위: 천건, 백만달러, %)

	1990	1995	1999	2000	2001
로열티 순손실					
신고비중	0.04	0.03	0.04	0.03	0.04
금액비중	0.00	0.00	0.00	0.00	0.00
파트너십과 S 주식회사 순소득					
신고비중	2.82	3.02	3.27	3.23	3.34
금액비중	3.29	3.97	4.61	4.48	4.49
파트너십과 S 주식회사 순소득					
신고비중	2.43	1.74	1.67	1.64	1.64
금액비중	1.32	0.97	1.00	1.14	1.24
유산(신탁기금) 순소득					
신고비중	0.39	0.43	0.41	0.43	0.38
금액비중	0.14	0.16	0.19	0.19	0.20
유산(신탁기금) 순손실					
신고비중	0.07	0.03	0.03	0.03	0.03
금액비중	0.01	0.02	0.02	0.02	0.03
농업 순이익					
신고비중	0.88	0.61	0.57	0.54	0.50
금액비중	0.33	0.20	0.16	0.13	0.12
농업 순손실					
신고비중	1.16	1.26	1.04	1.05	1.04
금액비중	0.35	0.38	0.26	0.27	0.30
총 조정금액					
신고비중	14.64	15.40	17.83	17.93	18.04
금액비중	1.00	0.98	0.97	0.92	0.98
개인은퇴기금(IRA)					
신고비중	4.59	3.64	2.90	2.71	2.65
금액비중	0.29	0.20	0.13	0.12	0.12
학자금 대출금 이자 공제					
신고비중	n.a.	n.a.	3.26	3.46	3.38
금액비중	n.a.	n.a.	0.04	0.04	0.04
의료저축예금 공제					
신고비중	n.a.	n.a.	0.04	0.05	0.05
금액비중	n.a.	n.a.	0.00	0.00	0.00

<표 II-12>의 계속

(단위: 천건, 백만달러, %)

	1990	1995	1999	2000	2001
자영업자 은퇴기금(Keogh 등)					
신고비중	0.72	0.87	0.99	1.00	1.00
금액비중	0.20	0.21	0.20	0.20	0.21
자영업자 소득세 공제					
신고비중	9.68	10.87	11.04	11.05	11.19
금액비중	0.29	0.32	0.29	0.27	0.29
자영업자 의료보험					
신고비중	2.42	2.55	2.75	2.76	2.73
금액비중	0.05	0.06	0.12	0.12	0.13
면제					
총 면제건수	200.10	200.62	195.68	195.04	196.68
금액	13.68	13.95	11.43	10.84	11.79
총공제					
신고비중	99.19	99.16	99.15	99.10	98.88
금액비중	23.20	22.46	20.58	20.32	22.14
표준공제					
신고비중	70.90	70.40	67.48	66.22	64.67
금액비중	9.73	9.87	7.92	7.40	7.57
추가 표준공제 신고(맹인/65세)					
신고비중	9.63	9.14	8.81	8.76	8.53
금액비중	0.31	0.29	0.24	0.23	0.24
상세공제					
신고비중	28.29	28.77	31.67	32.88	34.21
금액비중	13.46	12.59	12.66	12.92	14.33
의료비					
신고비중	4.48	4.53	4.63	5.03	5.81
금액비중	0.63	0.64	0.60	0.62	0.76
세금					
신고비중	27.78	28.36	31.13	32.33	33.62
금액비중	4.11	4.50	4.53	4.63	4.99
지출이자					
신고비중	25.85	24.28	26.52	27.37	28.25
금액비중	6.12	5.13	4.98	5.07	5.67

<표 II-12>의 계속

(단위: 천건, 백만달러, %)

	1990	1995	1999	2000	2001
주택 대부금 이자					
신고비중	23.46	23.98	26.18	26.99	27.89
금액비중	5.56	4.85	4.65	4.71	5.36
자산단체					
신고비중	25.70	25.83	27.95	29.01	30.24
금액비중	1.68	1.79	2.15	2.21	2.26
과세대상 소득					
신고비중	81.91	80.03	80.93	81.36	79.98
금액비중	66.47	67.17	70.64	71.39	69.97
세액공제 이전 소득세					
신고비중	81.86	79.94	80.92	81.38	79.99
금액비중	13.31	14.23	15.49	16.00	15.13
세액공제					
신고비중	10.98	12.89	28.82	29.17	38.22
금액비중	0.20	0.24	0.61	0.59	0.74
자녀부양공제					
신고비중	5.40	5.05	4.86	4.92	4.75
금액비중	0.07	0.06	0.05	0.04	0.04
고령자 혹은 지체부자유 공제					
신고비중	0.30	0.21	0.14	0.12	0.11
금액비중	0.00	0.00	0.00	0.00	0.00
자녀 세금 공제					
신고비중	n.a.	n.a.	20.47	20.41	20.31
금액비중	n.a.	n.a.	0.33	0.31	0.36
교육 세액공제					
신고비중	n.a.	n.a.	5.07	5.27	5.54
금액비중	n.a.	n.a.	0.08	0.08	0.08
해외세 세액공제					
신고비중	0.68	1.46	2.57	3.04	3.03
금액비중	0.05	0.07	0.08	0.09	0.10
투자세액공제²⁾					
신고비중					
금액비중					

<표 II-12>의 계속

(단위: 천건, 백만달러, %)

	1990	1995	1999	2000	2001
일반영업 공제					
신고비중	0.23	0.23	0.23	0.21	0.21
금액비중	0.02	0.02	0.01	0.01	0.01
세액공제 후 소득세					
신고비중	79.01	75.48	74.37	74.83	72.75
금액비중	13.11	13.99	14.87	15.40	14.39
총 소득세					
신고비중	79.02	75.50	74.40	74.84	72.75
금액비중	13.13	14.05	14.98	15.41	14.39
최저한세(AMT)					
신고비중	0.12	0.35	0.80	1.01	0.86
금액비중	0.02	0.05	0.11	0.15	0.11
노동소득공제(EITC)					
신고비중	11.03	16.35	15.16	14.90	15.04
금액비중	0.22	0.62	0.54	0.51	0.54
소득세 공제용					
신고비중	5.01	6.64	4.21	4.19	3.39
금액비중	0.05	0.08	0.03	0.03	0.02
기타 세 공제용					
신고비중	1.19	2.46	2.47	2.43	2.69
금액비중	0.02	0.05	0.04	0.04	0.05
초과소득공제 (환급대상)					
신고비중	7.65	12.84	12.63	12.46	12.77
금액비중	0.15	0.50	0.47	0.44	0.47
소득세 납부					
신고비중	92.17	93.98	94.28	94.49	94.78
금액비중	14.56	16.00	16.76	17.04	17.45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비중	85.96	86.65	87.50	87.91	88.13
금액비중	11.35	11.83	11.88	12.00	12.53
초과 사회보장세 징수					
신고비중	0.82	0.87	1.08	1.27	1.10
금액비중	0.03	0.03	0.03	0.03	0.03

<표 II-12>의 계속

(단위: 천건, 백만달러, %)

	1990	1995	1999	2000	2001
추정 소득세					
신고비중	11.26	10.07	10.36	10.30	10.11
금액비중	2.69	2.92	3.36	3.48	3.57
납세 연기로 인한 소득세 납부					
신고비중	1.15	1.16	1.19	1.25	1.11
금액비중	0.49	0.60	0.92	1.00	0.69
신고시 납세의무 세액					
신고비중	23.73	25.15	22.98	23.67	18.87
금액비중	1.66	1.70	2.03	2.12	1.49
소득세 초과 납부총액					
신고비중	73.43	72.20	74.62	74.14	78.55
금액비중	2.60	2.85	3.11	3.08	3.84
초과 납부 환급					
신고비중	70.80	69.99	72.08	71.88	76.01
금액비중	2.29	2.50	2.66	2.63	3.28

주: 1. 신고 및 금액비중은 각각 전체 신고 대비 그리고 조정된 소득 대비 비중임. 2. 일반사업공제에 포함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1986년 폐지.

자료: IRS SOI, Summer 2003, Pub. 1136.

라. 지방정부 소득세

개인소득세는 연방정부 이외 41개 주에 달하는 주정부에서도 부과한다. 따라서 전체 소득세 부담은 이들 지방정부의 세부담을 합쳐서 생각하여야 한다. 주정부 소득세의 납세대상은 거주지 원칙으로 거주가 확정되면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과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하다²⁶⁾.

<표 II-13>는 주별 소득세의 세율과 소득구간 및 인적공제를 나타낸 표이다. 소득세를 부과하는 41개 주²⁷⁾ 가운데 5개 주를 제외한 주정부는 연방정부 소득세상의 소득

26)) *Compania Gen. de Tabacos v. Collector*, 275 U.S. 87, 100, 48 S.Ct. 100

27)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다, 텍사스, 워싱턴과 와이오밍이 소득세를 부과하

을 주정부 소득세 과표로 한다. 또한 노스 다코다(14%), 로드 아일랜드(25%) 그리고 버몬트(24%)는 연방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주정부 소득세로 징수하는 단순한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외 다른 주들은 연방소득세상의 조정된 총소득(AGI)이나 과세소득을 과표로 다양한 증감 항목을 적용한다. 이 가운데 연방정부 채권에 대한 이자는 공제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다(Sec. 3124).

지 않고 뉴햄프셔와 테네시는 일부 개인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표 II-13> 주정부 소득세 주요 지표(2003년)

(단위:달러, %)

	세율		구간수	소득구간		인적 공제			연방세 공제.
	최저	최고		최저	최대	독신	부부	자녀	
AL	2	5	3	500	3,000	1,500	3,000	300	×
AK	소득세 없음								
AZ	2.87	5.04	5	10,000	150,000	2,100	4,200	2,300	
AR	1	6.5	6	2,999	25,000	20	40	20	
CA	1	9.3	6	5,834	38,291	80	160	251	
CO	4.63		1	-----일률과세-----		-----없음-----			
CN	3	4.5	2	10,000	10,000	12,500	24,000	0	
DE	2.2	5.95	7	5,000	60,000	110	220	110	
FL	소득세 없음								
GA	1	6	6	750	7,000	2,700	5,400	2,700	
HA	1.4	8.25	8	2,000	40,000	1,040	2,080	1,040	
ID	1.6	7.8	8	1,087	21,730	3,000	6,000	3,000	
IL	3		1	-----일률과세-----		2,000	4,000	2,000	
ID	3.4		1	-----일률과세-----		1,000	2,000	1,000	
IO	0.36	8.98	9	1,211	54,495	40	80	40	×
KS	3.5	6.45	3	15,000	30,000	2,250	4,500	2,250	
KE	2	6	5	3,000	8,000	20	40	20	
LO	2	6	3	10,000	50,000	4,500	9,000	1,000	×
ME	2	8.5	4	4,200	16,700	4,700	7,850	1,000	
MD	2	4.75	4	1,000	3,000	2,400	4,800	2,400	
MA	5.3		1	-----일률과세-----		3,300	6,600	1,000	
Mil	4		1	-----일률과세-----		3,000	6,000	3,000	
MN	5.35	7.85	3	18,710	- 61,461	3,000	6,000	3,000	
MS	3	5	3	5,000	10,000	6,000	12,000	1,500	
MO	1.5	6	10	1,000	9,000	2,100	4,200	2,100	×
MT	2	11	10	2,200	75,400	1,720	3,440	1,720	×
NE	2.56	6.84	4	2,400	26,500	94	188	94	
NV	소득세 없음								
NH	이자 및 배당소득에만 적용								
NJ	1.4	6.37	6	20,000	75,000	1,000	2,000	1,500	
NM	1.7	8.2	7	5,500	65,000	3,000	6,000	3,000	

<표 II-13>의 계속

(단위:달러, %)

	세율		구간수	소득구간		인적 공제			연방세 공제.
	최저	최고		최저	최대	독신	부부	자녀	
NY	4	6.85	5	8,000	20,000	0	0	1,000	
NC	6	8.25	4	12,750	120,000	3,000	6,000	3,000	
ND	2.1	5.54	5	27,050	297,350	3,000	6,000	3,000	
OH	0.743	7.5	9	5,000	200,000	1,200	2,400	1,200	
OK	0.5	7	8	1,000	10,000	1,000	2,000	1,000	×
OR	5	9	3	2,500	6,250	145	290	145	×
PE	2.8		1	일률과세		없음			
RI	연방소득세의 25.0%				---	---	---	---	
SC	2.6	7	6	2,400	1,2000	3,000	6,000	3,000	
SD	소득세 없음								
TN	배당 및 이자소득에만 적용								
TX	소득세 없음								
UT	2.3	7	6	863	4,313	2,250	4,500	2,250	×
VT	3.6	9.5	5	27,950	307,050	3,000	6,000	3,000	
VA	2	5.75	4	3,000	17,000	800	1,600	800	
WA	소득세 없음								
WV	3	6.5	5	10,000	60,000	2,000	4,000	2,000	
WI	4.6	6.75	4	8,280	124,200	700	1,400	400	
WY	소득세 없음								
D.C.	4.5	8.7	3	10,000	40,000	1,370	2,740	1,370	

자료: The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www.taxadmin.org)

2. 총칙

가. 신고 및 납세의무자

1) 사업형태에 따른 납세자

미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소득세를 신고하는 주체와 납세자는 다를 수 있다. 한 예로 파트너십의 경우 소득세 신고는 파트너십이 하지만 소득은

개별 파트너에게 배정되고 파트너는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납세 개체(taxable entity)와 신고주체(conduit or flow through entity)를 구분할 수 있다.

납세 개체는 납세의무가 있는 주체로 개인, 일반 주식회사 즉, C 법인(Form 1120) 그리고 상속(estate) 혹은 유산 신탁기금(trust, Form 1041)²⁸⁾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면 후자는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 등을 다른 개체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신고의무만 있다. 이와 같은 예에는 자영사업자(Form 1040 C), 파트너십(Sec. 701, Form 1065), S 주식회사(Sec. 1366, Form 1120S)²⁹⁾, 유한회사와 유산신탁기금이 있다. S 주식회사와 유산 신탁기금은 중복된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예컨대 유산 신탁기금은 기금이 보유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세금을 납부한다.

1930년 미국 대법원은 각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자신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³⁰⁾. 이 판정의 중요성은 개인이 세금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자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채권의 이자소득을 자식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아버지가 납부하여야 한다³¹⁾.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미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resident alien)은 미국 시민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이에 비하면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창출한 소득 즉 미국 국내원천소득(US source income)과 제한적으로 외국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3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등 과세방식이 상당히 다르다.

28) 신탁기금 관리자(trustee)가 수혜자(beneficiary)를 위하여 자산을 운영하는 제도.

29) Subchapter S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이지만 국세청에 신청할 경우 소득세상으로는 파트너십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파트너십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Form 1065). 따라서 이들 회사들은 정규 C 법인과 달리 이중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30) Lucas vs Earl. 8 AFR 10287, 2 USTC ¶ 496(USSC, 1930)

31) Helvering vs Host., 24 AFR 1058, 40-2 USTC ¶ 9787(USSC, 1940)

영주권자나 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자는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특정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있는 등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있었으면 과세 목적상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된다(substantial presence test).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외국인은 당해연도에 최소 31일간 미국에 계속 있었던 사람은 거주 외국인 자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183일 이하로 미국에 있었고 외국을 세금 납세장소(tax home)로 하며 미국보다 납세지인 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³²⁾ 유지하면 비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된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거주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3) 납세자: 부부와 자식

연방소득세 과세 목적상 부부 간의 소득배분은 거주하는 주(州)에 따라 다를 수 있다. 42개 주는 일반재산(common law property)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 등 나머지 8개주는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전자의 법체계에서는 노동이건 자산이건 해당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공동 소유한 자산으로(jointly held property)부터의 소득은 공동소득(community income)으로 간주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부부가 같은 비율로 모든 소득을 배분받는다. 다만 결혼 전의 재산과 결혼 후 증여·유산으로 받은 소득은 개별 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개별 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을 공동소득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개별 소득으로 간주할지는 주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아이다호, 루지아나, 텍사스는 이러한 소득도 공동소득으로 간주하는 반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네바다, 워싱턴은 이를 개인소득으로 간주한다.

부부별도 신고의 경우 공동소득은 부부가 절반씩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한 쪽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존재를 모를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이를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32) 더 긴밀한 관계(closer connection)란 거주지로 지정한 장소와 W-9 등의 신고서 그리고 가족, 개인물품, 사회적 교제, 사업활동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판단되며 납세지(tax home)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고용활동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Sec. 66). 반면 미성년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신고에 이러한 소득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14세 이하의 자녀가 불로소득을 얻을 경우 소득 중 일부가 부모의 세율에 따라 과세될 수 있고 혹은 부모가 선택하면 자녀의 소득을 자신의 신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녀의 경우 소득을 창출한 측이 세금을 납부하며 부부의 경우 소득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 측이 세금을 납부한다.

나. 원천징수와 연방세 예탁금

1) 기본원칙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미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소득을 창출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이외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독신자로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납세자 본인의 자발적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self assessment). 그런데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낼 수 있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용인이 임금에서 원천징수한다(pay-as-you-go system, Sec. 3402). 연금과 일부 도박소득도 이를 지불하는 측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세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한다. 이외 이자와 배당소득 등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은 추정세액이 1,000달러 이상이면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Sec. 6654). 이 밖에 사회보장제도 원천징수된다.

비거주 외국인인 임대, 로열티, 월급, 임금, 연부금, 보상, 이자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30% 원천징수된다. 다만 미국과 소득세협약을 맺은 나라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원천징수를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자영업자 소득이나 거래 및 영업소득, 이자, 배당, 자산의 매매에 따른 소득 등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도 당해연도에 추정된 납세액의 일부로서 매분기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과 각종 기금은 4월, 6월, 9월과 이듬해 1월 15일에 세금을 납부하며 법인은 4월, 6월, 9월과 12월 15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연방세 예탁(Federal Tax Deposit)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인의 소득 가운데 소득세와 사회보장세(FICA와 Medicare)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재무성에 기탁하여야 한다(trust fund taxes). 한편 고용주가 부담하는 FICA도 마찬가지로 재무성의 연방세 예탁기금(Federal Tax Deposit)에 기탁된다.

만약 분기별 기탁금이 2,500달러를 이하이면 고용주는 분기 종료 다음달 마지막 날 까지 Form 941과 함께 신고 및 납부한다. 그러나 분기별 금액이 2,500달러 이상이면 원천징수된 금액을 미리 정해진 날짜까지 예탁하여야 한다. 예탁 날짜는 전년도 6월 30일 이전부터 1년간을 기준(lookback period)으로 총 원천징수 세액이 5만달러 이하이면 월별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예탁하며 5만달러를 초과하면 1주일에 두 번씩 예탁을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원천징수한 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면 그 다음 날 바로 예탁을 하고 다시 1주 2번 예탁으로 돌아간다.

한편 연방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의 경우 분기 종료시점에 다른 분기를 포함하여 예탁하지 않은 금액이 100달러를 초과하면 실업세도 분기 종료 후 다음 달까지 예탁되어야 한다. 실업세는 피고용자가 아닌 고용주에게 부과된다. 1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Form 941을 신고하면서 납부한다.

연방세 예탁은 정부가 지정한 은행이나 정부예탁금에 기탁쿠폰에 해당하는 Form 8109와 함께 예탁되며 거래은행으로부터 자동 예탁하는 방식(EFTPS)도 사용 가능하다. 이들 세금을 미리 예탁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미납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예탁을 지연한 기간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8일 동안 3,000달러를 예탁을 하지 않을 경우 150달러(3000×0.05)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 신고(Form 940)를 하지 않을 때는 별도로 최고 25%를 한도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5%가 매월 가산되고 늦게 납부할 경우 매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1/2%(압류 고지 후에는 월 1%)가 가산된다.

<표 II-14>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예탁 지연시 벌금

(단위: %달러)

지연기간	예탁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	3,000달러당 벌금
1~5	2	60
6~15	5	150
16~	10	300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후까지 미납	15	450

자료: 「Understanding Federal tax Deposit」, IRS, 2003(www.irs.gov).

다. 과세소득의 정의

1) 총소득(Gross Income)의 개념

총소득은 공제 이전의 과세소득을 의미하는 소득 개념으로 미국 세법에서는 법에서 명시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그 어떠한 출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으로 총소득을 정의한다(Sec. 61(a)).

미국 대법원은 ‘소득은 노동, 자본 혹은 양자가 혼합되어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으로 자산의 매매나 전환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포함한다(Income may be defined as the gain derived from capital, labor, or from both combined, provided it be understood to include profit gained through sale or conversion of capital asset..)’고 정의하고 있다³³⁾. 따라서 자산가치의 증가나 투자가치의 증대는 소득이 아니며 자산으로부터 받은 혹은 인출한, 교환가치가 있는 이익 혹은 그 무엇을 의미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소득을 좀더 포괄적으로 보아 ‘납세자의 통제 아래 있는.....명백히 현실화된 부정할 수 없는 부의 증대(undeniable accessions to wealth, clearly realized.....over which taxpayers have complete dominion)’로 정의하고 있다³⁴⁾.

33) Eisner v. Macomber, US 189, 40 S. Ct, 189(1920).

34) Glenshaw Glass v. Comm., 348 U.S. 426 at 430~431(1955). 이는 순자산이나 소비의 증대

내국세법 61조(a)에는 소득의 예로 다양한 소득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예이며 미국 세법에 명백히 제시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하면 불법소득을 포함한 그 어떠한 소득도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 세법에 의하면 현찰, 재산 그리고 서비스 등의 교환형태와 관계없이 그러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Reg. Sec. 1.61-1(a)). 한편 소득은 경제적 이익의 발생으로 거래과정에서 얻은 순이익에만 과세된다. 이 밖에 종업원을 위한 경비일지라도 그러한 지출의 중요한 목적이 사업상의 필요성으로 지출되었고 부가적으로 종업원에게 혜택이 발생하면 이는 부가급부이지만 종업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편 소득에 포함되는 보수와 그렇지 않은 증여의 차이가 간혹 불분명한데 미국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주변 상황과 관계자들의 의도를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있다(Bogardus). 특히 보답이나 보상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 호의나 관심 또는 자선적 의도로 지급된 자산 등은 증여로 본다. 또한 고용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실 자체가 증여를 의미하지 않으며 과거 혹은 장래의 서비스를 기대하며 지급한 자산도 보수에 해당한다(Sec. 102(c)).

2) 기본원칙

납세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보수는 그 형태가 어떠한든 총소득에 포함된다(economic benefit doctrine). 따라서 보수가 현금, 보너스, 이익 공유, 물질적 보상 혹은 여타 기발한 방식의 보수를 모두 포함한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거래가 발생하여 소득이 창출되었을 때 소득이 인정되지만 현금주의에서는 수입이 있어야 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현금주의 방식에서는 수입 시점의 조정을 통하여 소득신고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소위 실질적 수입원칙(constructive receipt doctrine)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고 납세자가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보수는 납세자의 총소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납세자 계좌에 지급되거나 납세자를 위하여 따로 준비되거나 납세자가 언제라도 인출

를 통한 부의 증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소득의 정의와 가깝다.

할 수 있는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수입을 통제하는 데 제한이 있으면 이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Reg. Sec. 1.451-2). control

세 번째로 소득배정 원칙(assignment of income doctrine)에 의하면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이나 서비스 등 재원(source)을 소유 혹은 통제하고 있는 납세자가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수입을 다른 3자에게 넘기면 이는 납세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고용주로 하여금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채무를 대신 갚게 하는 행위는 해당 직원이 그 임금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소득의 재원이 제3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얻은 소득은 소득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재원의 소유자에게 배정된다.

라.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

1) 신고방식과 소득세의 결정: 요약

개인소득세는 모든 사람의 과세대상 소득에 부과된다(Sec. 1).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표 II-15>에 요약된 방식에 의하여 Form 1040에 소득세를 신고한다. 다양한 소득을 신고하기 위하여 여러 신고서식이 이용되는데 한 예로 자영사업자의 경우 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신고서식 C를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다.

소득(income)은 과세 및 비과세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데 비록 세법이 소득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출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Sec. 61(a)). 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실업수당, 팁과 감사료, 이자, 배당, 연부금, 연금, 임대, royalties, 양도소득(capital gains), 위자료, 사회보장 혜택 중 일부(수혜자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이면 85%까지) 그리고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소득은 자본의 환수(return of capital)를 제외한 총수입(revenue)과 유사한 개념이다.

<표 II-15> 개인소득세 과세방식

종합소득(포괄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소득(exclusion)
총소득(gross in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I 산정을 위한 공제(deduction)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I로부터의 공제(deduction from AGI): 상세공제나 표준공제 중 최대금액 - 인적공제: 개인 및 부양자(individual and dependency exemption)
과세소득(taxable income)
소득세 = 과세소득×세율(세율스케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액(tax credit) - 사전 납세액
납세액

자료: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K. Murphy and M. Higgins, Thomson Co., 2003, US.

비과세소득(exclusion)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공공지원 수혜, 지방정부채권 등의 면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등인데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하면 신고가 필요없다. 비과세소득에는 일부 복지 수혜금, 상해보상금, 위자료, 숙식비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소득 등이 있다. 총소득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포괄주의적 종합소득을 의미한다(Sec. 61(a)). 따라서 세법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소득도 반드시 비과세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바, 한 예로 불법적인 소득도 과세될 수 있다.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총소득(gross income)이 된다. 즉, 총소득이 과세를 위하여 고려되는 소득인데 총소득은 그 어떠한 출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되며 단지 예시되지 않았다고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Sec. 61(a)). 한 예로 불법소득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이다.

소득세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과세소득을 간단하게 산정하면 조정된 총소득(AGI)-(인적공제 수×2800)-상세공제액(itemized

deduction) 혹은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소득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총소득에서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을 구하는 일이다. 조정된 총소득은 총소득에서 비용 등을 배제한 순소득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일부 지출의 한도로 이용되기도 한다.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조정된 총소득(AGI)을 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에서 맨 먼저 제외되는 항목(조정된 총소득 전 공제, deduction for AGI)과 이렇게 구해진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 공제되는 항목(조정된 총소득 후 공제, deduction from AGI)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배제되는 항목(deduction for AGI)은 세법상 허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항목은 공제될 수 없다(Sec. 62). 이렇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주로 영업/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사업 및 투자비용과 손실이 있고 이외에도 개인비용으로 위자료 등의 면제가 있다. 총소득을 위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제와 달리 신고자의 소득이나 공제금액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개인적 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나 기부금이나 의료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진다(Sec. 262). 이러한 공제는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 제외되는 조정 후 공제(deduction from AGI)가 된다(Sec. 63). 이와 같은 공제는 다시 표준 혹은 상세 공제와 개인 및 부양자의 인적공제로 구분된다. 개인은 상세공제(itemized deduction)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세공제에서 공제 가능한 개인비용은 법(Sec. 211)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과 의료비 그리고 주택대출 이자비용 이외에도 소득 창출과 관련된 금액, 이와 관련된 재산의 관리비용, 세금 관련 경비도 공제도 가능하다(Sec. 263). 한편 항목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금액은 조정된 총소득(AGI)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에 비하여 지출 금액이 적으면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표준공제는 의회가 허용하는 공제로서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련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데 2002년의 경우 독신자 4,750달러, 가장 7,000달러, 부부는 7,900달러이다. 표준공제는 소득배분의 형평성 제고와 납세 이행비용 및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공제가 허용되는 마지막 유형은 인적공제이다. 인적공제는 신고자 본인과 그 배우자

그리고 부양자에게 적용이 되며 각각의 개인에 대하여 3,05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조정된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Sec. 151). 부양자공제는 신고자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자녀, 신고자와 함께 기거하는 부모나 손자녀 등의 친척이 일반적이다.

과세소득은 조정된 총소득(AGI)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삭제한 금액이다. 과세소득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금이 총세금인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세금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일반공제에 비하여 혜택이 큰 세액공제(tax credit)는 사전납세와 같이 간주된다. 세액공제는 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나 사회보장세 등이 있고 EIC(earned income credit), 부양자 세액공제, 사업용 에너지 그리고 해외세금공제 등 특정한 정책 목표를 위하여 허용되는 항목이 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100% 환급 가능한 공제와 그렇지 않은 공제로 구분된다.

한편 다양한 감면 및 공제로 인하여 일부 고소득층이 소득세를 회피하는 경향에 맞서 모든 납세자가 최소한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AMT, alternative minimum tax).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소득세가 일부 면세와 공제를 포함한 산정체계하에서 산출된 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최저한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최저한세는 면세점이 부부합산의 경우 49,000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는 본인과 회사 부담의 사회보장성 세금을 자영업 고용세(self-employment tax)라는 이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Sec. 6017). 자영업자의 순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면 순소득의 15.3%가 자영업 고용세가 된다. 이 중 12.4%는 최고 87,000달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OASDI)이며 나머지 2.9%는 한도 소득 없이 부과되는 의료 보장성 세금이다(Medicare taxes).

3. 과세소득

가. 과세소득: 총소득(Gross Income)

1) 총소득의 개념

총소득은 납세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 이용되는 소득 개념이다. 전술한 대로 총소득의 개념은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서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총소득(gross income)은 과세에 포함되는 소득으로서 그 어떠한 출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으로 정의된다³⁵⁾. 다만 과세 목적상 소득이 납세자에게 실현되지 않는 단순한 가치의 변화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alization principle)³⁶⁾. 소득의 실현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이 변형되거나 변질되고(a severance of economic interest in the property) 다른 사람과 거래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소득의 정의는 결국 회계상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세 목적을 위한 소득은 회계상의 소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소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인과 거래가 종료될 때 소득이 실현된다. 즉, 소득이 실현되려면 그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이 금액이 수령되어야 한다(claim of right doctrine). 또한 소득이 납세자 계좌에 입금되거나 제한 없이 주어질 때 납세자가 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construct receipt principle, Reg. Sec. 1.446-1).

35)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ubtitle, gross income means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items:..... (Sec. 61)

36) Eisner v. Macomber 252 U.S. 189(1920)

<표 II-16>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유형의 예(2003)

수수료, 커미션, 부가급부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생명보험에서 지급되는 소득 연금
사업활동으로 과생되는 총소득	파트너십 총소득의 배분
재산거래로 얻은 이득	사망자 관련 소득
이자 및 임대료	유산 및 상속 신탁기금으로부터의 소득
로열티	부채 면제에 따른 소득
배당소득	실업수당
위자료와 별거금	사회보장 수혜 중 일부
연부금(annuities)	불법소득

자료: K. Murphy and M. Higgins,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Thomson Co., 2003, US.

미국 세법 61조는 다음을 소득의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 1) 사용료, 수수료 등 유사한 항목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 2) 영업활동으로 과생되는 총소득 3) 재산 거래로 얻은 이득 4) 이자 5) 임대료 6) 로열티 7) 배당 8) 위자료와 별거료 9) 연부금(annuities) 10) 생명보험과 기부금으로부터의 소득 11) 양로연금(pensions) 12) 부채소멸로 인한 소득 13) 파트너십 총소득의 배당 14) 고인에 대한 소득 15) 유산과 신탁기금(trust) 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소득(Sec. 61(a)).

세법 61조(a)에 제시된 소득의 예는 과세가 되는 소득만을 예시한 것은 아니다. 즉, 미국 세법에 명백히 제시된 항목의 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어떠한 소득도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except as otherwise provided). 따라서 어떤 소득이 예외인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세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다. 한 예로 불법소득도 소득세법에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하다³⁷⁾. 그러나 증여나 유산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과세된다.

미국 세법에 의하면 현찰, 재산 그리고 서비스 등의 교환형태와 관계없이 그러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Reg. Sec. 1.61-1(a))³⁸⁾. 따라서 음

37) Reg. Sec. 161-15

38) realized in any form, whether in money, property, or services.

식, 숙박, 주식 또는 여타 자산의 형태로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장가치에 따라 평가 및 과세된다(cash-equivalent approach). 마지막으로 납세자 재산(권) 형태의 변화나 질적 변화와 함께 발생 과정에서 타자가 연루되어야 소득의 발생이 인정된다.

한편 소득은 경제적 이익의 발생으로 거래과정에서 얻은 순이익에만 과세된다. 이 밖에 종업원을 위한 경비일지라도 그러한 지출의 중요한 목적이 사업상의 필요성으로 지출되었고 부가적으로 종업원에게 혜택이 발생하면 이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종업원 할인과 같은 일부 부가급부(fringe benefit)는 과세되지 않는다.

2) 총소득의 유형

소득은 근로소득, 불로소득, 타인으로부터의 이전소득 그리고 암묵적인 귀속소득(imputed income)의 네 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Sec. 61(a)). 사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그 소유주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다만 상품 매매를 위한 비용 등 자본원금의 회수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근로소득은 개인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혹은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지불한 모든 금액, 즉 임금, 월급, 팁, 보너스와 커미션 그리고 수수료 등으로 법으로 정한 예외항목을 제외하면 이들 모두 과세된다. 만약 납세자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주식을 받으면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을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물론 고용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급부 가운데 단체생명 보험, 건강보험, 연금 가입비 그리고 종업원 할인 등은 비과세되기도 한다. 또한 제3자에게 이전된 소득은 소득의 실제 수령자와 관계없이 소득을 창출한 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음식의 경우 고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고 고용 장소에서 제공되면 비과세된다. 숙박도 고용조건에 근거하여 제공되어야 비과세된다.

두 번째로 사업소득(business income)도 소유주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서 사업 총소득(gross income)은 판매대금에서 판매비용을 제외하고 투자 및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제품 비용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판매비용이나 손실

등은 제외되어야 하며 비용 결정은 납세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에 근거한다(Reg. Sec. 1.61-3(a)). 파트너십과 S 주식회사의 과세소득은 회사 차원에서 과세되지 않고 해당 파트너나 주주 차원에서 과세된다. 이는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러하다.

불로소득은 투자수입, 매매, 교환 혹은 기타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의미하며 이자, 배당, 임대나 로열티와 연부금, S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등의 소득과 이러한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 자산의 매매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을 포함한다. 자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30개 항목에 이르는 예외조항을 제외하면 총소득에 포함된다. 이러한 예외조항에는 과세를 연기하거나 영구히 비과세하는 항목도 있다(Sec. 121).

양도소득은 자본의 환수를 제외한 소득이며 회수되지 않은 자본원금은 조정된 장부가액(혹은 기초가액)³⁹⁾의 근거가 된다(Sec. (Sec. 1001, 1016)). 자산의 매매로 입은 손실은 총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매 이득과 상쇄되지 않고 조정된 총소득에서 공제된다. 또한 개인의 경우 양도손실을 다른 유형의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연 3,000달러이다.

자산이나 서비스의 교환에 있어서는 받은 자산/서비스의 공정가격이 총소득에 포함된다. 이 밖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처분이나 매매에 따른 손실은 공제되지 않는다. 불로소득 가운데 과세되는 소득의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이자소득

이자란 현금 이용에 따른 보수이다. 은행예금, 주식회사 증권, 주택대출, 생명보험, 세금 환급금, 대부분의 연방정부 정부채권, 외국정부 채권에서 받은 이자소득은 과세된다. 과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은 지방정부의 채권(Sec. 103(a)(1)), 교육, 병원, 종교 등 비영리단체 채권(150백만달러 한도, Sec. 501(c)(3))이 있다. 이외 Series EE 채권을 구입하여 이를 본인, 배우자 혹은 자녀의 등록금 등의 교육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이자소득이 면세된다(Sec. 135(c)). 단 이 채권은 증여가 되지 않아야 하며 채권의 매입자는 24세 이상이어야 한다.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교육보다 적고 납세자의 조정된 총

39) property's adjusted basis는 우리나라 장부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미국에서는 그 의미가 더 포괄적이다.

소득이 58,500달러(부부합산 87,750달러) 이하이어야 이자소득의 100%가 면세된다. 소득이 이보다 높으면 이자소득의 일부가 비과세된다.

시장 이자율 이하로 대여된 부채의 경우 거래 내용에 따라 증여가 아닌 경우 이자율 차이가 소득에 포함된다. 이자율 차이는 연방정부의 단기 채권 이자율과 해당 부채의 이자율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연방금리는 국세청이 매월 조정하여 발표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리 차이는 채권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채무자는 이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증여성 부채의 경우 이자율 차이는 과세대상인 증여가 된다.

나) 임대 및 로열티 소득

임대료나 로열티 수입은 총소득에 포함되며 사전에 지급된 임대료는 지급한 때 세금이 부과된다. 보증금은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에게 되돌려주지 않을 때 과세된다. 대신 임대자산으로 인한 경비는 공제된다. 저작이나 발명권, 원유, 가스 그리고 광산권으로부터 나오는 로열티 소득도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 로열티는 소유주에게 소속된 권리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데 대한 보수이다.

임차인이 보수 등으로 임대자산의 가치를 향상시킬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임대료를 대신 하거나 임대료를 낮추는 결과를 유발할 때만이 임대료로 과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은 향상된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총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Reg. Sec. 1.109-1). 임대료 대신에 자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감가상각도 허용되지 않는다. 임대소득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의 가치가 향상된 부분에 대한 과세는 자산이 처분될 때 손익으로 처리된다(Reg. Sec. 1.1019-1).

다) 배당(dividends)

주주에게 지급된 현금 등의 자산은 주식회사의 소득이나 이익으로부터 지급될 때만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Sec. 316(a)). 자산은 현금과 함께 증권 및 기타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데 단 지급된 주식은 배당이 아니다. 현재 축적된 그러나 배당되지 않았던 소득/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지급금은 자본의 회수(return to capital)로서 소득

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장부가액(property basis)을 초과하는 지급금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된다.

단순한 주식배당은 소득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므로 1920년 대법원은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주주가 현금 혹은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될 경우 주식배당도 실질적 소득주의에 따라 현금배당과 같이 과세된다. 이처럼 최근에는 주식배당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주식배당이 총소득에 포함될 수도 있다(Sec. 1.305-4).

자본 양도소득 배당(capital gain dividends)은 규제되는 투자회사(일반적으로 상호투신회사)가 신탁기금에 포함된 투자자산의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배당은 투자회사 주주에게 안분된 그러나 지급되지 않은 양도소득도 포함한다(Sec. 852(b)). 자본소득배당은 주주가 해당 상호투신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장기 보유로 간주된다.

의제배당(constructive dividends)은 일반적으로 주주이자 종업원인 어떤 개인이 받은 보수가 실질적으로는 위장된 배당인 경우로서 보수금액이 비합리적인 경우 이는 배당으로 간주된다(Sec. 162(a)(1)). 의제배당을 받는 당사자는 반드시 종업원일 필요는 없으며 임대건물의 소유주나 채권자 등이 될 수도 있다.

의제배당은 대개 기업 입장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수혜자에게는 과세소득이 된다. 과도한 로열티나 임대료 지급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배당은 수혜자에게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이 아닌 형태로 지급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예에는 주주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채무형식을 띤 배당의 제공 그리고 종업원의 개인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이다.

생명보험과 연금계약에 대한 배당은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대신 보험계약의 비용 감소로 간주된다(Sec. 301). 그러나 보험료가 전부 지불된 계약이고 배당이 순보험료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또한 계약 수익금의 지급이 시작되면 배당금도 과세된다.

주식배당은 기업 소유 주식의 배분으로 간주되어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Reg. Sec. 1.305-1). 그러나 현금 대신 주주가 선택하여 받은 주식, 주주의 기존 지분율을 변화시키는 주식 배당, 일부 주주는 일반 주식 다른 주주는 우대주식을 받는 경우, 우대

주식에 대한 주식 배당 등은 과세된다.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stock right)를 받은 경우 주식 매입권의 가격에 따라 평가액이 조정되어야 한다(Sec. 307(b)(1)).

라) 연금과 연부금(pensions and annuities)

연금과 연부금은 일정 기한 혹은 수령자가 생존한 동안 정액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개 퇴직에 대비하여 본인 혹은 생존 배우자를 위한 보험제도이다. 여기서 연부금 비용 즉 자본의 회수는 과세되지 않고 그 이익만이 과세대상이므로 연부금의 어느 부분이 이익 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상되는 지불횟수(expected return multiple)를 연 단위로 추정하고 이를 지불금액으로 곱한다. 지불횟수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납세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는 연부금은 납세자 나이 등을 근거로 IRS가 제공하는 표에 의하여 지불횟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연후 연부금 배제비율(annuity exclusion ratio)을 산정하는데 이는 연금투자비용을 예상 지불금액으로 나눈 것이다. 이 비율을 금년도 지급금액으로 곱한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Sec. 72). 과세대상 지급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등이 이를 산정하여 수혜자에게 통지한다(Form 1099). 연부금의 비용이 환수가 이루어진 후에는 지급금의 100%가 과세된다.

연금과 퇴직기금은 일반적으로 연부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이 때 고용인과 종업원이 동시에 연금에 기여하는데 고용인이 기여한 금액은 비용으로서 환수될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가 면제되는 연금은 종업원의 기여금을 예상되는 지급횟수로 나눈 금액으로 간단하게 산정될 수 있다. 만약 정상적인 지급일 이전에 연금을 사전 인출하면 그 중 일부는 종업원 기여로 간주되어 비과세된다(Sec. 72(e)). 또한 납세자가 59.5세에 이르기 이전에 사전 인출하면 일반 소득세 세율과 함께 추가로 10%의 벌과금이 적용될 수도 있다.

마) 생명보험과 부채의 비과세

보험자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생명보험의 액면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 보험사에 지급금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된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부채의 상환 면제도 소득의 발생으로 간주되므로 신고하여야 한다.

바) 소득의 귀속(pass through of income)

일반적으로는 각 소득주체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납세를 해야 하지만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는 소득주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 소유주에게 소득이 귀속, 세금이 부과된다(flow-through entities). Sec. 61에 의하면 실제 소득에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파트너십의 소득과 비용은 지분율에 따라 파트너에게 배분되고 파트너는 그 대신 이를 개인소득세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Sec. 61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S 주식회사의 주주도 마찬가지이다.

사망한 자의 소득도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한 예로 배우자가 그 소득을 받을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 및 유산 신탁기금이 창출한 소득도 소득세에서 과세한다. 다만 그 중 일부가 수혜자에게 지급되면 그 부분은 기금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대신 수혜자가 수령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 신고를 한다.

사) 위자료와 별거비용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자금 지급은 이전소득(transfer)에 해당하며 이는 첫째, 자녀 부양의 목적이나 둘째, 단순한 소득의 공유, 즉 순수한 의미에서의 위자료(alimony) 셋째, 이혼에 따른 재산분배의 일부로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과세는 지급금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우선 자녀부양금은 수혜자가 실제로 이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과세대상이 아니다(Reg. Sec. 1.71-1). 또한 재산분배도 과세에 따른 과급효과가 없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에서의 위자료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조정된 총소득(AGI)의 공제대상이며 수혜자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과세 목적상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순수한 의미에서의 위자료는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혼합의서와 같은 서면으로 약속되어야 하며 2) 재산이 아닌 현금 지급이어야 하고 3) 자녀 부양과 같은 특정한 목적이 명기되지 않아야 하며 4) 지급 당시 양 당사자가 가족이 아니며 5) 수혜자 사망시 지급 의무가 종료되어야 한다.

재산분배(property settlement)에서 각 배우자는 결혼 이전에 자신의 소유이던 재산과 결혼 후 축적된 자산에 대한 일부를 소유할 권한이 있다. 결혼 후 습득한 자산의 배분은 양자의 합의나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재산분배는 소득세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자료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위자료 지급자가 재산분배를 위자료로 가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별거 후 처음 3년 동안 위자료 지급 당사자는 초과 공제금을 소득에 포함하고 위자료 수혜자는 소득으로 신고한 위자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recapture rule). 한편 공제를 받기 위하여 자녀 부양금을 위자료로 가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 지원과 관련하여 자녀의 성년 등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자료 금액의 삭감은 자녀부양금으로 간주한다(Reg. Sec. 1.71-IT).

아) (포)상금과 불법소득

상금, 실업수당, 사회보장 혜택, 위자료 수입 그리고 사망혜택 지불금 등은 근로소득이나 불로소득 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Sec 61(a)에 명기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부의 증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전소득(transfer)으로 간주되어 수혜자에게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장학금과 웰로우쉽 그리고 일부 과학, 종교, 자선단체 포상을 제외한 상금, 수상, 도박 상금 그리고 근로업적과 관련하여 고용자가 지급하는 상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Sec. 74, Reg. Sec. 1.74-1).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은 상품 혹은 서비스의 공정시장가치이다.

상금 가운데 학문 관련 수상과 같이 상금을 타기 위하여 납세자가 어떤 행위를 취하

지 않고 미래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수상 조건이 없는 경우, 이에 한하여 정부나 자선단체에 상금이 기부되면 면세된다(Sec. 74). 두 번째로 도박에서 얻은 상금은 모두 과세되며 다만 현 과세연도의 상금금액 한도 내에서 도박으로 인한 손실이 상제 공제될 수 있다(Sec. 165(d)). 세 번째로 고용기간이나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기여한 이유로 현금이 아닌 근로자 수상에서는 근로자 한 명당, 최대 연 400달러가 면세된다. 이외 서면으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수상하는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상금의 면세 한도는 1,600달러이다.

불법적 행위로 얻은 소득도 과세되어야 한다(Reg. 1.61-14(a)). 대부분의 범법자들이 불법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이를 위하여 개인이 불법소득을 얻었다고 증빙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사기, 도둑, 강도, 마약 매매, 뇌물 그리고 횡령 등으로 얻은 소득은 모두 소득세를 신고되어야 한다.

자) 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

1987년 이후 정부 프로그램 혹은 고용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지출하는 실업수당은 근로소득의 대체이므로 수혜자가 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Sec. 85). 반면 업무수행중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근로수당(worker's compensation)은 소득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망지급금(death benefit payments)은 근로자 사망시 고용인이 사망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1996년 이전에는 5,000달러까지 수혜자의 소득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러한 배제규정이 폐지되었다.

차) 사회보장 지급금(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과 부상지급금 그리고 1급 철도퇴직연금에 해당하며 의료수혜(Medicare)는 포함되지 않는다. 1984년 이전까지 사회보장금은 과세행정 편의상 면세되었다. 그러나 1984~1993년 사이에 최

대 사회보장금의 50%가 과세되었고 이후 1994년부터는 최소금액 방식(lesser-of formula)에 따라 최대 85%가 과세된다(Sec. 86).

과세되는 사회보장금은 납세자의 신고 신분과 기준소득(provisional income)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기준소득은 조정된 총소득(AGI)에 사회보장금의 50% 등 일부 항목을 추가한 금액이다⁴⁰. 과세되는 사회보장금은 신고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보장금이 과세되지 않으며 고소득층의 사회보장금은 최대 85%까지 과세된다.

한 예로 부부합산의 경우 기준소득이 32,000달러 이하면 비과세되고 기준소득이 32,000~44,000달러 사이면 사회보장금의 50%와 기준금액에서 32,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의 50% 가운데 적은 금액이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기준금액이 44,00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되는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금의 85%와 기준금액에서 44,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의 85%+(6,000달러와 사회보장금의 50% 중 적은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이 과세된다.

이에 비하여 독신의 경우 기준소득이 25,000달러 이하면 비과세되고 기준소득이 25,000~34,000달러 사이이면 사회보장금의 50%와 기준금액에서 25,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의 50% 가운데 적은 금액이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기준금액이 34,00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되는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금의 85%와 기준금액에서 34,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의 85%+(4,500달러와 사회보장금의 50% 중 적은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이 과세된다.

카) 보상금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재판 판정에 따른 보상금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상해 및 건강보험의 지급금과 생명보험의 액면 지급금은 과세되지 않는다(Sec. 104(a)(2)). 재산의 파손으로 보험사나 재판을 통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은 자산의 조정된 가치기준(property's adjusted basis)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총소득에 포함된다. 자격

40) 기준소득=사회보장금을 제외한 조정된 총소득(AGI) - 50% 사회보장금+비과세된 해외소득+비과세된 이자소득

이 되는 자산의 전환에 보상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면세될 수 있다(involuntary conversion). 또한 보상금이 자산의 조정된 가치기준보다 적으면 그만큼이 공제 가능한 손실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시장금리 이하의 부채, 타인이 대신 지불한 비용 그리고 염가 구매 등도 소득 처리되는 귀속적 보상에 해당한다(imputed income).

3) 주식옵션 플랜(Stock option plan)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고용주가 제공한 주식 등의 자산이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조건부로 지급된 경우 이를 총소득에 포함하여 일반소득으로 과세할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처리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Sec. 83). 일반적으로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된 주식 등의 자산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되며 무담보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지급 약속은 예외적으로 처리된다(Sec. 82(a)).

법에 명기되어 세제상 우대를 받는 주식옵션 플랜은 일반적으로 옵션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고 처분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법에 명기되지 않은 주식옵션은 종업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옵션을 받은 당시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Reg. Sec. 1.83-7(a)).

가) 조건부 주식 플랜

제공받은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substantially vested stock), 즉 주식 수령자가 이를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거나 소유권의 상실 위험성⁴¹⁾이 없으면 해당 자산은 부과된 여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되어 일반소득으로 과세되고 소유권이 확보된 이후 이를 박탈당하면 일반 손실로 간주된다(Sec. 83(a)(1)).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산이 이전되면 이는 누가 지급을 하였건 또는

41) 해당 주식의 완전한 소유권이 수령자의 장래 서비스 제공과 연계되어 있으면 실질적 소유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한 예로 기업 수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수령한 자산을 반환해야 하거나 성공적인 주식 시장이 전제된 경우이다(Sec. 83(c)).

누구에게 지급이 되었건 보수로 간주된다.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이전받았지만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주식 등(not substantially vested stock)의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공정가격을 일반소득에 포함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Sec. 83(b) election). 이러한 조건부 자산을 일단 일반소득으로 선언하면 번복할 수 없다. 선택 당시 주식 공정가격이 평가액으로 확정되고 보유기간도 이 때부터 시작된다. 이 경우 미래 주식가격의 상승은 양도소득으로 처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실질적 소유권을 확보하기 이전에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손실공제가 안 되는 단점이 있다.

나) 장려금형 주식옵션 플랜(incentive stock option: ISO)

장려금형 주식옵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를 말한다(Sec. 422A(d)). 종업원은 고용과 관련된 사유로 주식 매입권을 받고 매입권의 제공 시점으로부터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의 이전 3개월까지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매입권을 제공받고 이를 행사한 시점에 소득을 보고하지 않고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매입권을 받은 후 최소 2년간 그리고 매입권을 행사하고 난 후 1년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이전에 주식을 팔면 할인 금액(주식가격-행사가격)은 일반소득으로 신고되고 고용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보유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매매는 판매가격과 옵션가격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장기 양도소득이 실현된다. 이외에도 옵션가격이 매입권 제공 당시 해당 주식의 공정가격 보다 낮으면 안 되는 등 여러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Sec. 422a(c)(8)).

다) 종업원 주식옵션

할인가격으로 종업원에게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경우 과세상 우대를 제공받는다(employee stock purchase plan, Sec. 423). 종업원이 매입한 주식을 처분할 때 소득이 인정된다.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매입권을 제공한 시점의 공정시장 주식

가격이 옵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소득으로 처리되며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된다. 만약 주식 처분가격이 매입권을 제공한 시점의 주식가격보다 낮으면 처분가격이 옵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Sec. 423(b)).

4) 공제비용의 환수(recapture)

어떤 경우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이용하는 납세자가 공제한 항목이 그 이듬해 환수될 수 있다. 이러한 예에는 보험 지급금, 보상금, 악성부채로부터의 환수, 세금 환급 등이 있을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이들 항목은 비용으로서 회수된 해에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제 사실로 인하여 그 해 과세상 혜택을 입었을 때 그리고 그 부분만이 환수금을 소득으로 신고한다(tax benefit rule, Sec. 111).

한 예로 의료보험금을 늦게 지급받은 경우 납세자가 전년도에 7.5% 한도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상세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환수한 금액을 소득 신고되는 방식은 공제유형에 따라 다르다. 한 예로 단기 양도손실로 공제된 항목은 이듬해 단기 양도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또한 환수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은 과세되며 과세상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고객과 논쟁이 붙은 제품 등으로부터의 판매대금은 사용 제한이 없는 한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claim of right). 물론 이듬해 보상 지급된 금액은 공제 처리될 수 있는데 다만 소득으로 간주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공제로 인한 절약된 세금이 더 적어야 한다(Sec. 1341).

나. 조정된 총소득 전 공제(deduction for AGI)

1) 공제 원칙

가) 개요

공제가 가능한 경비와 손실은 미국 내국세법(IRC)에 명시된 항목만이 가능하지만

법이 모든 내용을 열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특히 미국 국세청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경비나 투자(소득 창출)를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하면 공제를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는 관련 활동에서 통상적이고 필요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ordinary, necessary and reasonable expense). 반면 개인, 생활 그리고 가족부양 경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공제될 수 없다(Sec. 262).

즉, 총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은 크게 ① 거래 혹은 사업공제(trade or business deduction, Sec. 162) ② 투자 또는 소득창출 공제(investment or production of income deduction, Sec. 212) 그리고 ③ 개인적 공제(personal deduction)의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이 가운데 거래나 사업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경비를 포함한 경비로서 사업 경비는 주식회사, 파트너십이나 개인회사 등 기업조직의 형태와 관계없이 특별히 제외된 항목을 무시하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Sec. 162).

소득창출을 위한 공제는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과 관련된 공제로 소득 창출이나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의 운영 및 유지 혹은 세금납부 등과 관련된 항목이어야 한다(Sec. 212). 개인적 공제는 법에서 허용된 개인경비이며 이 밖에 일부 손실(Sec. 165)에 대해서도 공제가 허용된다.

개인의 경우 공제가 가능하면 그 다음에는 해당 공제가 조정된 총소득 전 공제(deduction for AGI)인지 아니면 조정된 총소득 후 공제(deduction from AGI)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총소득에서 각종 경비나 손실을 제외하면 조정된 총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이 되는데 이 때 공제되는 항목을 조정된 총소득 전 공제(for)라고 부른다. 반면 조정된 총소득(AGI)으로부터 공제되는 비용/손실을 제외하면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되는데 이러한 공제 항목은 조정된 총소득 후 공제(from)라고 한다.

사업공제는 일부 변제되지 않은 종업원 관련 경비를 제외하면 총소득을 위한 공제로서 법이 따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사업공제는 공제금액의 전부가 총소득에서 배제되어 조정된 총소득(AGI)이 된다. 임대료와 로열티 경비를 제외한 소득창출 공제는 상세 공제로서 소득으로부터의 공제이다. 인적공제도 소득으로부터의 공제이다. 손실은 개인 손상손실을 제외하면 소득을 위한 공제이다. 이들 소득 창출 공제나 인적공제 등은 대개 소득 수준(특히 AGI)에 따라 공제금액의 제한을 받는다⁴²⁾. 이처럼 사업과 소득

창출의 구분은 공제 유형과 그 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주정부 소득세는 대개 조정된 총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으로부터의 공제되는 사업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표 II-17> 조정된 총소득(AGI) 산정을 위한 공제항목(2003)

거래 및 사업용 경비	자영업자 건강보험료와 고용세(1/2) ¹⁾
고용자가 환급해준 근로자 경비	위자료
자산매매나 교환으로 인한 손실	이사비용
임대료 및 로열티 소득 관련 비용	추가 실업보험 재지급금(일부)
재산 소득이나 거주(일부)	고용인에게 지불된 배심원 수당
퇴직연금(Keoghs, IRAs) 납부금과 일부 수혜	환경 관련 비용(식목과 연료)
정기예금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	고등교육비용과 교육부채 이자
자영업세(1/2) ¹⁾	의료저축 가입비

주: Sec. 62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Sec. 164(f)와 1629(I)에 의하여 사업용 비용으로 간주됨.
 자료: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K. Murphy and M. Higgins, Thomson Co., 2003, US.

조정된 소득을 위한 공제는 Sec. 62에 명기되어 있으며 이외 공제항목은 조정된 총소득 후 공제항목에 해당한다. 조정된 총소득 전 공제항목은 <표 II-17>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조정된 소득 전 공제는 대부분 사업이나 투자 관련 경비와 손실이며 개인경비는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 공제된다(from).

2) 공제 유형

가) 사업·거래비용 공제

원칙적으로 거래나 사업상 납세자가 필요한 통상 경비를 지출하거나 소요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원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업 형태나 신고양식과 관계없이

42) 이러한 한도는 그러나 2006년부터 철폐되기 시작하여 2009년에 완전히 철폐된다.

적용된다.

사업이나 거래비용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1) 사업/거래와 같은 활동과 관련 있고(즉, 개인비용이 아니며) 2) 통상적이며(ordinary) 3) 필요하며(necessary) 4) 합리적 수준의 금액으로(reasonable in amount) 5) 적절하게 기록되어 있고 6) 납세자의 비용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어도 자본경비나 면세소득과 관련된 경비 혹은 불법활동에 지출된 경비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사례 별로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상기 원칙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일부 허용되는 개인비용을 제외하면 모든 비용과 손실은 거래나 사업과 관련된 이윤 추구 행위나(Sec. 162) 소득 창출 혹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의 관리·유지활동(투자 행위, Sec. 212)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Reg. Sec. 1.183-2(b)). 또한 개인 생활이나 가족을 위한 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흥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용과 개인용의 구분이 쉽지 않다(Sec. 274).

사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납세자의 사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식투자는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지만 사업적 노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업이 아닌 투자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과세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행위와 투자행위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품 혹은 서비스 매매를 위하여 타인과 만나는 행위를 사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활동일지라도 단기이익을 위하여 자주 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사업행위로 간주한다. 정상적 사업활동에서 소요된 법리 및 회계비용은 총소득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법리 등 자문비용은 공제되지 않고 자본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행위와 투자행위의 구분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사업행위에서 자산의 매각에 따른 손실은 일반손실(Sec. 1231)로 처리되는 반면 투자행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양도손실로 따로 과세된다. 두 번째로 사업행위와 관련된 경비는 조정된 총소득 전 공제인 반면 임대와 로열티소득을 위한 경비를 제외한 투자경비는 조정된 총소득 후 공제에 해당한다. 이 때 투자경비는 조정된 총소득의 2%를 넘는 금액 이내에서

상세 공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유형 개인자산은 당해연도에 25,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투자를 위하여 매입한 자산은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활동과 개인(취미)활동의 구분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법에서는 5년 연속된 기간에서 3년간 이윤을 창출하면 사업활동으로 간주한다(Sec. 183(d)).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활동이 사업행위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개인적 취미활동에 따른 경비는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으로부터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공제가 가능한 취미활동 경비는 조정된 총소득의 2%로 제한된다.

통상적인 비용만이 공제가 허용된다(ordinary expense). 비용이 통상적이려면 금액이 합리적이며 소득창출을 위한 활동이나 자산과 ‘합리적이고 근접한(reasonable and proximate)’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는 비용과 장래 소득 사이에 간접적인 연관 이상의 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또한 해당되는 산업 혹은 사업공동체에서 관례적이고 평상적인(customary and usual) 비용으로 간주될 때 통상적 비용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⁴³⁾. 이 밖에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활동에서 지출된 경비는 단 한 번만 지출하여도 통상적인 경비이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자본화(capitalize)할 수 없고 지금 공제해야 하는 경비를 통상적 경비로 정의한 바 있다.

공제되는 경비는 필요한 지출이어야 한다(necessary expense). 대법원은 납세자의 사업활동에서 ‘적절하고도 도움이 되는(appropriate and helpful)’ 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 합치되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경비일 필요는 없으며 합리적이거나 신중한 사업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똑같은 경비를 지출할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⁴⁴⁾.

합리적 수준의 경비는 비공개 주식회사에서 종업원인 주주에게 지불되는 보수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reasonable in amount). 이 때 보수는 제공된 서비스에 따라 합리적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미국 의회는 좋지 않은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위 경영층

43) Thomas H Welch v. Helvering, 12 AFTR 1456, 3 USTC ¶1164(USSC, 1933) and Pierre S. Dupont, 23 AFTR 808, 40-1 USTC ¶9161(USSC, 1940).

44) Thomas H Welch v. Helvering, 12 AFTR 1456, 3 USTC ¶1164(USSC, 1933).

에 과도한 보수가 지급되는 경향을 지양하기 위하여 연봉 100만달러 이상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제를 불허하고 있다(Sec. 162(m)). 단 이러한 예외조항은 실적과 연계된 보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건물 및 복구 등을 위한 자본경비는 자본화되어 감가상각으로 공제를 받아야 한다(Sec. 263(a)). 다만 2001년의 경우 유형 개인자산에 대해서는 2.4만달러까지 즉시 공제가 가능하다(Sec. 179). 이외 벌금, 뇌물(FCPA of 1977) 또는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손해 보상금 등도 공공정책에 위반되는 경비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Sec. 162). 또한 면세소득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Sec. 265).

마지막으로 피고용인 관련 경비에서 자영업자가 본인인 경우 관련 경비는 총소득을 위한 공제로 금액의 제한 없이 경비가 공제된다. 그러나 이외 피고용인의 경비는 고용주가 변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총소득 2%로 제한되는 기타 공제에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고용 관련 경비는 종업원 소득신고에서 상세공제되는데 다만 이들 경비는 노동의무와 직접 연관이 있거나 고용계약에 명시된 경비이어야 한다(Sec. 62). 그러나 기부금, 벌금, 정치 기여금 그리고 개인 회원비는 개인소득세의 사업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나) 소득창출 공제

전술한 대로 소득창출을 위한 공제는 소득창출이나 소득의 수집 혹은 소득창출을 위하여 보유한 자산의 관리 유지나 보수 혹은 세금 납부 등과 관련된 항목이어야 한다(Sec. 212). 소득창출성 경비는 사업용 경비가 아니지만 공제가 가능한 경비를 말하며 이는 투자경비를 포함한다. 투자경비는 투자 자문비나 사무실 임대비 등으로 연간 투자 관련비용 공제는 순투자소득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ec. 163(d)).

이들 경비는 사업경비와 마찬가지로 앞서 논의된 공제 가능한 조건이 똑같이 부과되어 합리적 수준의 필요한 일반경비 등이어야 한다. 소득창출용 경비는 조정된 총소득을 위한 경비(전 공제)로 간주되는 임대료와 로열티 비용을 제외하면 기타 조정된 총소득 후 공제로서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 공제되며 AGI의 2%로 제한된다(Sec. 62(a)(4)).

다) 개인적 공제

개인적 공제는 법에서 허용된 개인경비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 밖에 일부 손실(Sec. 165)에 대해서도 공제가 허용된다(Sec. 262). 개인적 공제는 위자료나 의료비처럼 비자발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또는 기부금처럼 특정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이외 지방정부 세금은 이중과세 문제로 공제가 되기도 한다.

개인적 공제에서 총소득을 위한 경비 공제에는 위자료, 개인은퇴연금(IRA), 이사비, 교육용 부채에 대한 이자비, 저축예금 조기인출에 따른 벌금 등이 있고 총소득으로부터 공제되는 경비는 기부금, 일반 이자비, 손상손실, , 지방세, 취미성 경비 등이 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비에는 입양과 자녀 및 불구 부양가족을 위한 경비가 있다.

라) 손실의 공제

일반적으로 과세연도에 발생한 보험 등으로 보상받지 않은 손실은 공제가 가능하다 (Sec. 165(a)). 특히 사업용 손실은 법에서 따로 제한하지 않은 손실은 모두 공제된다. 그러나 개인 손실은 ① 사업상 발생한 손실 ② 사업 목적은 아니지만 이윤을 위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③ 천연재해나 절도 혹은 기타 손상으로 입은 자산의 손실로 공제가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으로 결국 공제가 가능한 개인손실은 사업 및 투자손실과 개인 손상과 절도 손실이다. 공제가 가능하려면 손실이 실현되어야 한다.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손실은 영업 순손실 이월금, 사업이나 투자 관련 손상, 절도, 사업 및 투자 자산의 거래나 교환으로 입은 손실 그리고 채권의 가치 증발이며 조정된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손실은 도박과 취미활동으로 입은 손실 그리고 개인 손상과 절도가 있다. 비용의 공제와 마찬가지로 이들 손실도 공제한도에서 일부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마)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공제 경비는 납세자 자신의 경비나 손실이어야 하며 제3자를 위한 경비나 손실일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본인이나 제3자 모두 공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부양자를 위한 의료비나 총소득의 제한으로 부양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의료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Sec. 213).

공제항목이나 손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가끔 영수증 등 자료가 없어도 경비가 지출된 것이 확실하면 공제가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 때 공제금액은 모든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Cohan rule). 그러나 여행, 사업용 선물, 접대비, 컴퓨터, 운송수단 경비에 대해서는 금액, 시간과 장소, 사업목적과 사업관계 등에 대한 관련 기록이 충분하여야 한다(Sec. 274, 280F).

2) 회계방식과 공제시기

납세자는 장부기록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Sec. 446(a)). 그러나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회계방식과 장부 회계방식은 약간 다를 수도 있다. 단, LIFO 방식으로 재고를 회계처리하면 소득세 신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현금주의 회계방식(cash method)에서는 경비는 실제로 지출한 때 공제된다. 수표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금액이 청구된 당시가 아니라 지급된 당시가 실제 지출로 간주된다. 그러나 단순한 지불약속이나 어음(note)의 지급은 현금주의에서 지출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금주의를 채택한 납세자도 자본장비 구입, 대량구입 물품의 경비, 사전 지출된 이자나 임대료는 발생주의 원칙 아래서 공제해야 할 수 있다. 다만 1년 기한을 넘지 않는 임대료는 경비지출이 요구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사전 지출된 이자경비는 해당 부채의 상환기간에 걸쳐서 공제되어야 한다(Sec. 461(g)). 이에 비하여 할인된 부채는 사전 지불된 이자로 간주되지 않고 이자는 부채가 상환될 때 지불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주 거주주택의 매입이나 신축을 위하여 빌린 부채에 사전 지불된 이자(point)는 상황에 따라 지금 공제가 되기도 한다.

현금주의 아래서는 실제 지출이 이루어질 때 공제가 가능하므로 납세자가 상황에 따라 공제를 연기하거나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고의 경우 소규모 사업

자를 제외하면 발생주의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주식회사(C 법인)와 일반 주식회사가 파트너인 파트너십 그리고 조세회피 항목(tax shelter)은 현금주의를 이용할 수 없다. 단 개인서비스 주식회사, 농장과 목재관련 회사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500만달러 이하인 영세업체는 현금주의를 이용할 수 있다.

발생주의 회계방식(accrual method)에서는 현금 지불과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 확정될 때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경비가 발생한다(Reg. sec. 1.461-1(a)(2), Sec. 461(h)).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지불의무가 확립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불의무가 있는 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사건의 발생요건, all-events test). 따라서 보증으로 인한 경비(warranty expense)는 실제 보증 서비스가 제공될 때 경비처리된다. 두 번째로 경비가 공제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거래행위가 실제 발생하여야 한다(경제적 행위의 요건, economic performance test). 경제적 거래행위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거래유형에 따라 거래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재산 혹은 서비스가 납세자에게 실제로 제공되는 시기나 납세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 혹은 납세자가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시기, 납세자가 지불약속을 하였으면 실제로 금액이 지불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Sec. 461(h)). 그러나 경비가 지급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자산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면 지불한 때가 거래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되며 또는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비용을 실제 지출하면 그 때가 거래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된다(Reg. Sec. 1.461-4(d)(6)(ii), 4(d)(4)(i)).

재발하는 지불의무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발생요건이 성립하고 과세연도의 종료후 8개월 혹은 합리적 기간 이내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재발되는 경비로서 매년 일관되게 처리되며 또한 거래행위가 발생할 때 경비 처리하는 것보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거나 혹은 해당되는 거래가 사소하면 경제적 거래행위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은 위약이나 위법으로 납세자가 제3자에게 지불하는 경비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공통 사업공제 항목

가) 광고비

공통으로 공제되는 경비에는 광고, 악성부채, 임금, 부가급부, 이자, 세금, 임대료, 보험료 그리고 변호 및 회계 자문비가 있다. 납세자가 영업중인 사업활동 혹은 소득창출 활동과 합리적 수준에서 관련된 광고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안에 대한 영향력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공제되지 않는다(Reg. Sec. 1.162-20).

나) 악성부채

상환이 불가능해진 부채는 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된 장부가액(adjusted basis)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Sec. 166(a)). 악성부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부채가 본연의 채무-채권자 관계에서 증여가 아닌 정당하고 강제 집행이 가능한 채무상환 의무가 있어야 한다. 한편 상환 불가능성은 채무자의 사망, 파산 혹은 법원의 부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입증될 수 있다(Reg. Sec. 1.166-2(b)).

사업성 부채는 채무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상환 불가능한 시점에 언제나 공제가 가능하고 총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측면에서 개인용 부채와 다르다. 개인용 부채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 혹은 창출된 부채로 부채 전액이 상환 불가능할 때 공제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사업용 부채와 달리 일반 손실이 아닌 단기 자본손실로 취급되며 따라서 연간 3,000달러에 이르는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다) 임금

종업원에 대한 임금, 보너스 그리고 부가급부도 공제된다. 다만 미래의 서비스를 담보로 사전 지급되는 임금은 현재 공제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에게 지급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는데 다만 친척이나 미성년 자식 등의 관련자(related party)⁴⁵⁾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공제된다. 부가급부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추면 종업원

연금, 보험, 교육지원, 건강 관련 경비는 공제된다.

라) 이자비용

사업용 이자비용은 납세자 자신의 부채를 위한 비용인 이상 조정된 총소득을 산출하는 데 공제된다. 그러나 사전 지급된 이자비용은 납세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과 관계 없이 이자가 적용되는 시점에 공제되어야 한다(Sec. 461(g)). 면세 채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자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Sec. 265).

마) 세금과 변호·회계비

사업으로 인하여 지불한 세금은 연방소득세를 제외하면 경비로 공제된다. 그러나 종업원 임금에서 원천징수된 연방 및 지방정부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는 원래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이외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과 관련된 사업 혹은 투자행위로 발생한 지방정부 소비세도 공제할 수 없다. 그 대신 이들 비용은 취득자산의 비용이나 실현된 이익의 감소로 반영된다. 변호료 등도 공제가 되지만 자본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법정경비는 자본경비로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바) 임대료

사업용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임대료도 공제되는데 다만 사전 지급된 임대료는 이자비용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발생주의 원칙이 적용된다(Sec. 162(a)(3)). 실제로는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대료는 구입대금의 분할납부로 간주된다.

45) 특수 관계자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 element of self dealing through a set of related party(Sec. 267): 특수 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공제는 제한되는데 관련자는 1) 개인과 그 가족: 가족은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2) 개인과 개인이 50% 이상을 보유한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3) 한 쪽이 양 조직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을 포함한다.

사) 보험료

화재 등 천연재해에 대비한 보험료나 종업원을 위한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종업원이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도 그 직·간접적인 수혜자가 회사이면 공제대상이 아니다(Sec. 264). 이는 보험으로 인한 수혜가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4) 자본경비와 감가상각 공제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은 경비 지출이 이루어진 연도에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추정된 사용 기간에 걸쳐서 공제된다(Sec. 263). 자본지출은 자산의 사용을 변경하거나 생명을 연장하거나 자산가치를 추가하는 경비로서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빌딩, 기계, 장비, 가구나 이와 유사한 자산의 매입 혹은 건설비용과 자산 매입과 관련된 상호 등 영업권도 이에 해당한다(Reg. Sec. 1.263(a)-2((h)).

비료, 토지와 용수 유지비용, 광산개발, 노령자와 불구자를 위한 경비나 연구관련 비용 등 일부 자본지출은 납세자가 선택하면 현재 비용으로 공제가 허용되기도 한다. 자본화될 수 있는 비용에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재산세, 주택대부금 이자, 수수료와 개발되는 시점까지의 재산세, 이자, 고용세와 기타 개발에 필요한 경비 등이 있다.

자본경비는 이로 인하여 1년 이상 혜택을 입는 경비로서 자산의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depreciation), 무형자산의 감가상각(amortization) 그리고 천연자원의 감모상각(depletion)으로 나뉜다. 그러나 토지, 주식, 파트너십 지분은 매각될 때까지 기다려서 비용을 회수한다.

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토지와 건물이나 증축물 등의 부동산과 사업용 기계, 설비 그리고 가구 등으로 나뉜다. 이 중 토지는 수명이 없으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이들 유형자산은 자산의 수명 동안 감가상각되는데 그 방식은 1981년 조기원가 회수제도(ACRS)의

로 단순화된 바 있다. 그 결과 1981년에서 1987년 사이에 사용 혹은 신축된 유형자산은 이 방식에 의하여 감가 상각되고 1986년 이후 사용되는 유형자산은 조정된 조기원가 회수제도(MACRS)의 적용을 받는다.

조정된 조기원가 회수제도(MACRS)에서는 감가상각 방식이나 비용환수기간의 적용을 위하여 그 수명에 따라 자산을 분류한다. 또한 공제금액의 산정에서 잔존가치(salvage-value)는 무시된다. 법이 정한 수명은 자산에 따라 다른데 ① 트랙터 부품과 소형 도구는 3년 ② 경트럭, 컴퓨터, 사무용품은 5년 ③ 대부분의 제조기계 및 가구는 7년 ④ 공공용 자산은 10~20년 ⑤ 주거용 임대자산은 27.5년 ⑥ 비주거용 부동산은 39년 ⑦ 철도와 터널은 50년의 수명을 배정받는다(Sec. 168(c)).

이 가운데 10년 이하의 수명을 지닌 자산은 200% declining balance 상각 방식을, 10년 이상 20년 이하 자산은 150% declining balance 상각 방식을, 그리고 이보다 더 수명이 긴 자산은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을 이용하여 비용을 환수한다. 만약 납세자가 선택하면 이러한 감가상각 방식이 아니라 각 자산에 따라 법이 정한 비율을 장부가액에 곱하여 상각공제를 할 수도 있다(MACRS depreciation table).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이용되는 자산, 면세대상 부채로 구입한 자산, 면세대상인 자산 등은 조정된 조기원가 회수제도(MACRS)에 의한 공제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된 공제를 받는다. 이를 대체 조기원가 회수제도(Alternative MACRS)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일률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이외 50% 이상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산과 납세자가 선택하는 자산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받는다(Sec. 168(g)).

또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개인 유형자산의 경우 연간 2.5만달러를 자본화하지 않고 현재 비용으로 즉각 공제할 수 있다(Sec. 179). 그러나 건물과 소득창출을 위한 자산은 이러한 즉각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2.5만달러의 공제 혜택이 1:1로 줄어든다. 또한 사업용 과세소득에 한정되어 공제되며 사용하지 않은 공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영구적으로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경비는 감가상각되며 자산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다만 자산의 유지에 쓰여진 경비는 경비지출 당시 공제된다. 사용하지 않은 공제는 그 이듬해에 공제받을 수 없지만 수정신고는 가능하다.

나) 무형자산의 감가상각(amortization)

한정된 사용기간을 지닌 사업용 무형자산은 합리적으로 추정되었다는 조건 아래 사용기한 동안 비용이 정액법으로 공제된다(Sec. 197). Sec. 197에 제시된 무형자산은 영업권, 정부기관이 허용한 등록 및 면허권, 상호, 발명 및 저작권 등으로 15년의 상각 기간이 허용된다. 이 밖에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정부가 오염통제설비와 같이 특정한 투자 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60개월 동안 감가상각을 하도록 허용하기도 한다(Sec. 169).

다) 연구·실험비용

연구·실험비(R&E)는 발명이나 개발 등을 위한 실험 및 실습비로서 상품 품질에 대한 일반조사 혹은 검사비나 광고, 판촉경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Reg. Sec. 1.174-2(a)). 이들 경비는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 가능한 일반 경비로 인정되는데 납세자가 원하면 이로 인한 혜택이 처음 발생하는 연도에 5년 이하 기간 동안 감가상각 공제할 수도 있다(Sec 174(a), (c)).

라) 천연자원의 감모상각(depletion)

천연자원의 소유자는 토지를 제외한 자원을 감모상각할 수 있다(Reg. Sec. 1.611-1(b)). 상각방식에는 비용상각(cost depletion)과 비율상각(percentage depletion)이 있는데 납세자는 각각의 두 가지 방식에 따른 공제금액을 구하고 보다 많은 금액이 허용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5) 공제의 제약

가) 공제되지 않는 사업경비

면세되는 소득과 관련된 경비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 예로 비과세되는 채권

을 매입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지불한 채무 이자는 되지 않는다. 또한 면세 채권을 보유한 개인이 나중에 개인적 목적으로 채무를 지고 이자를 지불하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투자를 위한 채무이자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채무의 이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출되었어도 뇌물과 같이 불법적인 지출이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혹은 수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Sec. 162(c)(1)). 외국 공무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FCPA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일상적인 지출이 아니어서 불법행위로 규정되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불법적인 상납(kickback)과 매입에 따른 할인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지불한 할인은 정상적인 매매가격의 조정으로 공제가 아닌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은 공제되지 않으며(Sec. 162(f)), 반독점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될 때 손실에 따른 보상금의 2/3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외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비에는 정치자금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부 로비성 경비도 공제되지 않는다(Sec. 162(e)).

납세자가 손실을 보고 매각한 주식이나 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 등을 매각한 날 이전 30일 이내나 매각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매입하는 경우이다(wash sales, Sec. 1091). 물론 주식을 매입한 후 30일 이내에 전부 혹은 그 일부를 단순히 매각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이면계약이나 배우자 등 관련자 이름으로 매입 혹은 매각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회사가 발행하였어도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채권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간주되지 않고 일반 주와 우선주도 마찬가지로이다.

관련자 간의 거래(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에서는 첫째, 자산매각에 따른 손실과 둘째, 과세연도의 종료 당시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채택한 관련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경비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Sec. 267). 한 예로 현금주의를 사용하는 관련자에게 지불한 사업경비와 이자는 납세자가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관련자가 이를 총소득에 포함할 때까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세법에 의하면 관련자는 1) 개인과 그 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2) 개인과 그 개인이 50% 이상을 보유한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3) 한 쪽이 양 조직의 소유권을 50% 이상 보유한 주식회사와 파트너십 4) 신탁기금 수혜

자와 시혜자의 관계 혹은 기타 기금, 회사, 개인 간의 복잡한 관계로 정의된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한 예로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사 주식을 가족 간에 분산하여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 소유권(constructive ownership)이 적용되어 제3자가 소유한 주식도 납세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가족이 분산 소유한 주식은 납세자 주식으로 간주되고 회사, 파트너십, 신탁기금 등이 소유한 주식은 비율적으로 당해 조직의 주주나 파트너 등에게 속한 주식으로 처리된다. 또한 파트너십의 개별 파트너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다른 파트너가 소유한 그 회사의 주식도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며 파트너에 관한 이러한 실질적 소유권의 적용은 주주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Reg. Sec. 1.267(c)).

나) 공제계약 규정

상기한 바 공제규정 이외에도 일부 거래는 추가적인 공제 제한이나 금지가 적용될 수 있다. 기존 사업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유사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start-up cost)는 지금 공제되지 않고 자본화되어야 한다. 납세자가 원하면 사업 개시후 60개월간 이 비용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Sec. 195). 이러한 사업비용은 사업 개시 이전에 조사와 관련된 비용,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출한 사업 취득 혹은 창업비용 및 사업용으로 예상되는 투자활동 관련 비용이다.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나 손실은 공제될 수 없다. 취미활동과 투자행위의 구분이 어려울 때는 활동내역과 전문성, 투입시간과 노력, 취미활동과 관련된 과거 손익실적,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다(Reg. Sec. 1.183-2(b)).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불분명할 경우 지난 5년 동안 3년간 이윤을 낸 활동은 투자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재고를 요구할 수 있다. 취미활동으로 간주되면 경비는 상제공제에서 기타 경비로 취급된다. 단, 취미활동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경비는 그러한 소득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Sec. 183). 그러나 손실은 다른 유형의 소득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

주거주지인 자택 이외 다른 집, 보트, 이동식 주택 등을 휴가시 사용하고 이외에는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임대 관련 경비가 제한된다(vacation home rules, Sec.

280A). 연간 14일 혹은 공정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임대해준 날짜 수의 10%를 초과하는 일수 가운데 더 많은 날짜를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그러한 주택은 거주지가 된다. 이 경우 주택비용은 개인용과 임대용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개인용 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단 주택 대부금 이자비용과 재산세는 이와 관계없이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공제된다. 임대용 경비는 임대로 인한 소득의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다음 해로 공제 이월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로 인한 손실은 공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외 주택의 일부를 사무실로 이용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무실 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내 사무실이 다른 근무처가 없이 사업을 위한 주된 사무처리 장소이거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고객을 만나는 장소이면 공제가 가능한데 단 이 때 고용인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에 사무실이 마련된 경우이어야 한다.

사업용 선물은 수령자 1인당 한 해에 25달러 이하인 경우 공제된다(Sec. 274(b)). 또한 이러한 선물은 수령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4달러 이하로 납세자 이름이 영구적으로 명기된 선물, 선물 수령자의 사업장소에서 사용되는 사인 등 관촉 물품 그리고 1인당 400달러 이하로 장기근속이나 안전의 이유로 종업원에게 수여하는 유형개인자산 등은 사업용 선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6) 공제 가능한 기타 경비

가) 교통 및 출장비용

이외 공제 가능한 경비의 예에는 교통, 출장, 접대, 이사 및 교육부채 이자비용이 있는데 우선 교통비용은 숙박이 없는 이전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출장비용과 다르다(Reg. Sec. 1.62-1(g)). 자영업자의 사업상 교통비용은 총소득을 위한 공제인 반면 피고용인이 종업원으로서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된, 고용주가 상환하지 않는 교통비용은 기타 공제로서 총소득으로부터 공제되며 따라서 공제 가능한 금액도 조정된 총소득(AGI) 2%의 한도가 적용된다. 직장으로부터의 출퇴근 교통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일시적인 근무처로 이동하는 비용은 고용주가 보상하지 않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된다. 이외 사업 목적의 자동차 비용이나 종업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불한 자동차

비용도 고용주가 보상하지 않으면 공제된다.

종업원으로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집에서 멀리 나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요한 경비는 출장비용으로 공제된다(Sec. 162(a)(2)). 출장비는 교통비 이외 숙박 및 기타 비용과 음식비 50%를 포함하며 이 가운데 숙박과 음식비는 상황에 비추어 호화스럽지 않아야 한다. 출장비도 교통비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게는 소득을 위한 공제이며 피고용인에게는 고용주가 보상해주지 않은 금액이 기타 공제로서 소득으로부터 공제된다. 1년 이하 기간 동안 임시직장에서 근무하기 위한 비용은 출장비로 간주된다.

출장 및 교통비는 금액, 장소, 시기, 사업목적 그리고 납세자와의 사업상 관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나 기록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교통비를 제외하면 75달러 이상의 숙박비나 여타 비용은 문서화된 자료가 필요하다.

나) 음식 및 접대비용

접대비는 납세자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연계되어야 공제된다(directly related to or associated with, Sec. 274(a)). 직접적인 연관성이라는 요건은 경비 지출로 소득이나 기타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접대하는 동안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충족된다. 혹은 접대받는 사람이 납세자가 접대를 하는 동기가 사업용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환경이라면 직접적 연관성이 충족된다. 상당 수준의 사업 이야기가 오간 직후 혹은 그 직전에 제공된 접대는 사업과 연계된 경비이다(Reg. Sec. 1.274-2(d)).

사업적 활동을 수행하기에 지장이 되는 스포츠 관람이나 나이트 클럽에서의 접대는 사업용 접대로 보기 어렵지만 단 상당 수준의 사업 논의가 오간 직후의 접대는 예외이다. 음식과 접대경비는 50%만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접대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수로 과세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제공된 전통적인 오락경비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제공된 견본이나 판촉제품은 전액 공제된다. 여기서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이 지불한 접대비는 50%를 한도로 출장비와 같은 방식으로 공제된다. 요트 등 접대시설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접대비로 공제될 수 없다. 또한 협회를 제외한 납세자가 지급하는 클럽 회원경비도 더 이상 공제되지 않는다.

접대금액, 시간, 장소 등에 관한 적절한 자료나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75달러 이상 지출한 경비는 영수증 등을 포함한 문서 자료와 함께 납세자가 회계장부나 경비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이사비용

새로운 일자리에 피고용인이나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사비용은 공제가 허용된다(Sec. 217). 이를 위하여 종업원의 경우 이사 후 새 직장에서 최소 39주일을 일하여야 하며 자영업자는 2년간 78주일 이상을 일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과세연도에는 이듬해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면 공제가 가능하고 그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옛날 거주지와 새로운 직장이 최소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공제가 허용된다.

이사비용은 개인용품의 이전비용과 음식비 이외 가족을 새 거주지로 이전하는 데 지출된 여행 및 숙박비로 구성된다. 이사비용은 경비가 지출된 해에 공제되는데 특히 이사비용은 조정된 총소득을 위한 공제(전 공제)로 인정된다(Sec. 62(a)). 고용주가 부담하는 이사비용도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라) 교육부채 등 기타비용

1997년 12월 이후 만기가 되는 교육부채에 대한 이자 경비는 공제방식과 상관없이 2,500달러까지 공제된다. 단, 소득이 4~5만달러인 독신과 소득이 6~7만달러인 부부부터는 공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교육 부채는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에 사용되어야 공제된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는 의료보험료의 60%까지 조정된 총소득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제되면 나머지 40%는 의료비로 상세공제된다.

다. 손실공제(loss deduction)

투자손실, 자산의 처분 혹은 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공제가 허용되는데 각각의 경우

제한 금액이나 공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손실이나 양도손실 및 투자 손실은 조정된 총소득을 위한 공제(전 공제)이며 손상이나 절도 등 개인용 자산으로부터 입은 손실은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 공제된다(후 공제).

1) 사업 및 투자손실

개인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손실에는 ① 상거래에서 입은 손실 ② 상거래는 아니지만 이윤 창출을 위한 거래에서 입은 손실 ③ 사업상 자산의 손실은 아니지만 재해로 인한 손상이나 횡령 혹은 절도로 인한 손실이 있다(Sec. 165(c)).

가) 재해 손상 및 절도 손실

이 가운데 납세자의 고의적 행위 등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하면 사업상의 또는 투자상의 손상이나 절도 손실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재해로 인한 손상은 재해가 발생한 연도에 공제되고 횡령이나 절도는 그런 행위가 발견된 연도에 공제된다. 그러나 보험이나 이외 방식으로 보상이 예상되는 손실은 예상 손실에서 예상 보상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된다.

부분적으로 손상된 자산은 조정된 장부가액(기초가액, property basis)과 해당 자산의 공정가격 하락분 가운데 적은 금액이 공제된다. 물론 공제금액은 보험보상금만큼이 제외된다. 반면 완전 손상된 자산은 조정된 장부가액에서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나) 운영업손실(NOLs: Net Operating Loss)

1997년 이후 한 과세연도의 운영손실은 일반적으로 이전 2년간 이월되어 당해 연도 과세소득을 줄이거나(상쇄하거나) 이후 20년간 이월되어 당시 과세소득을 상쇄할 수 있다(Sec. 172). 운영업손실의 공제는 경기 순환에 비하여 인위적인 12개월의 과세연도로 인한 문제점을 중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운영업손실은 물론 개인 손실이 아

년 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의미한다.

순영업손실은 향후 20년으로 이월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전 2년 전부터 이월이 가능하며 이 경우 2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이월 공제된다. 이전 연도로 이월되면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영업손실은 조정된 소득 전 공제항목이므로 조정된 소득(AGI)이 변하면 조정된 총소득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세공제도 수정되어야 한다. 단, 기부금은 이러한 수정 작업에서 면제된다(Sec. 170(b)).

내국세법에서 순영업손실(NOLs)은 총소득을 초과하는 공제금액으로 정의한다(Sec. 170(c)). 단, 이렇게 초과하는 금액에서 사업상 손실로 순영업손실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과세소득(손실)에서 다른 연도에 이월된 순영업손실과 인적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액, 비사업 순양도손실 그리고 비사업 소득을 초과하는 비사업 공제를 합하면 당해연도 순영업손실이 산출된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이 비사업소득으로 배당, 이자소득을 포함하며 단, 여기서는 임금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2) 조세기피 투자와 수동적 손실(tax shelter and passive loss)

조세기피 투자활동(tax shelter)은 투자에 허용되는 (세액)공제를 이용하여 다른 출처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한 예로 유한 파트너십의 손실은 파트너들의 개인소득세 산정에 이전되어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납세자들이 단순히 소득세 납부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통한 비경제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76년 당시 미국 의회는 세금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필요한 투자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납세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는 법을 도입하였다(at risk rule, Sec. 465). 위험성이 없는 투자는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는 채무(nonrecourse debt), 손실액이 정해진 계약, 보장성 투자나 채권자가 지분을 보유한 채무를 말한다.

1986년 조세개혁법은 조세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에 대한 추가 입법을 하였는데 이 규정은 개인, 비상장 주식회사, 유산, 신탁기금 그리고 개

인 서비스 회사에 적용된다. 파트너십과 S 주식회사는 기업 차원이 아닌 파트너나 주주 개인 차원에서 소득세 납부시 적용된다.

동법의 주 내용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업, 임대 자산 그리고 유한 파트너십 투자로 야기되는 손실(passive loss)을 일반 소득이 아닌 그러한 수동적 투자/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 수동적 활동으로 인한 세액공제도 수동적 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공제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수동적 손실은 다음 해 등으로 이월되어 당시 수동적 소득과 상쇄된다(Sec. 469(b)).

수동적 소득이란 수동적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다. 임금·커미션 등 노동소득을 수동적 소득이 아니며 일반적인 사업으로부터 얻은 배당·이자 등의 투자소득도 수동적 소득에서 배제된다. 한편 실질적 참여란 납세자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상당 수준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Sec. 469(h)(1)). 그러나 부동산 임대는 대개 경영 참여 수준과 관계없이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된다(Sec. 469(c)(2), (4)). 다만 부동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납세자는 수동적 소득의 적용에서 벗어나며 조정된 총소득이 10만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2.5만달러 한도 내에서 일반소득과 수동적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

라. 조정된 총소득 후 공제(deduction from AGI)

여기에 제시된 공제항목은 조정된 총소득(AGI)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과세소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항목이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소득과 관련 없는 납세자를 위한 기본적 혜택이다. 개인적 비용이나 생활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세공제(itemized deduction)로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상세공제는 표준공제 보다 금액이 많을 때 표준공제를 대신하여 납세자가 선택하는데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조정된 총소득(AGI)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1) 표준공제

표준공제는 의회가 결정하는 공제금액으로 납세자의 신고신분, 나이, 시력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이 다르다. 표준공제는 상세공제를 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 소득으로 소득배분의 형평성 제고와 납세 이행비용 및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은 주택 대출금의 이자비용과 재산세를 공제받아도 이러한 혜택이 표준공제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위하여 표준공제가 제공되는 것이다.

표준공제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데 2003년의 경우 독신자는 4,750달러, 부부는 7,900달러 그리고 가장은 7,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시 표준공제는 2005~2009년까지 독신자 수준의 표준공제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부부의 경우 2003년 당시 맹인이거나 65세 이상인 노인은 950달러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65세 이상의 맹인 노인은 총 1,900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만약 미혼자가 맹인이거나 노인이면 1,150달러를 추가 공제를 받는다.

<표 II-18> 표준공제액과 노령자와 맹인을 위한 추가 표준공제액(2001~2003)

(단위:달러, %)

	표준공제			추가 표준공제		
	2001	2002	2003	2001	2002	2002
독신	4,550	4,700	4,750	1,100	1,150	1,150
부부합산	7,600	7,850	7,950	900	900	950
생존 배우자	7,600	7,850	7,950	900	900	950 ¹⁾
가장	6,650	6,900	7,000	1,100	1,150	1,150 ¹⁾
부부별도	3,800	3,925	3,975	900	900	950

주: 1. 노령자임과 동시에 맹인이면 금액이 \$2,300, \$1,900임.

2. 다른 납세자의 부양자로 신고된 사람의 표준공제액은 750달러로 제한됨.

자료: K. Murphy and M. Higgins,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Thomson Co., 2003, US.

일부 납세자의 경우 이러한 표준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Sec. 63(c)(6)). 이러

한 부류의 납세자는 회계방식의 변경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대상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사람과 부부 별도의 신고에서 다른 배우자가 상세공제를 하는 사람 그리고 비영주 외국인이다. 또한 다른 납세자에 의하여 부양자로 신고된 사람의 표준공제 금액은 부양자의 근로소득+250달러와 750달러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 규정은 부모가 자식에게 이자나 배당소득을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 상세공제⁴⁶⁾

가) 상세공제 항목

미국 의회는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일부 특정한 개인 비용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비나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주택 마련에 필요한 대출금의 이자비용, 상해 및 절도손실 그리고 피고용인으로 지출하는 경비 등 개인적 비용(Sec. 211)이 있고 비사업용 소득 창출과 관련된 비용(Sec. 263) 그리고 세금신고와 관련된 비용이 있다(<표 II-19>). 그러나 전술한 대로 상세공제에서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은 항목에 따라서 납세자의 조정된 총소득(AGI)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될 수 있다(AGI floor).

46) 상세공제는 우리나라 세법에서 특별공제에 해당한다.

<표 II-19> 상세공제가 허용되는 항목과 그 한도(2003)

총소득 7.5% 이상의 의료비용(치과 포함) 지방정부와 외국정부의 소득 및 재산세 주택 부채 이자 및 투자 이자(일정 한도) 자선기부금(일정 한도) 상해 및 절도손실(총소득의 10% 이상) 기타 공제: 연방상속세에서 고인의 소득에 대한 상속세 도박으로 인한 손실(이긴 금액의 한도) 채권 프리미엄의 감가상각 권리소송에 의하여 돌려받은 보상금	기타 공제(총소득의 2% 이상) 피고용자 경비 - 노동조합가입비, 출판, 여행 교통, 전문의류, 주택사무실, 교육, 직업탐색, 협회가입비, 1/2의 접대비 투자소득 창출을 위한 경비 - 회계 및 법률 자문비, 임대료 등 세금 자문 및 세무사비
---	--

주: 여기서 총소득은 조정된 총소득(AGI)을 의미한다.

자료: K. Murphy and M. Higgins,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Thomson Co., 2003, US.

2003년 현재 고소득층에 허용되는 상세 공제금액의 일부가 삭감되고 있다. 즉, 부부 합산의 경우 조정된 총소득이 139,500달러(2002년 137,3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3%를 총상세공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부가 별도로 신고할 때에는 소득기준이 69,750달러(2002년, 68,650달러)이다. 이러한 제한은 2006~201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총상세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의료비, 투자이자비용, 상해손실을 제외한 전체 공제 가능한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80% overall limitation).

나) 상세공제 항목별 내용

상세 공제의 주된 항목에는 ① 의료비 지출(Sec. 213) ② 연방정부 이외 지방정부나 외국 정부 납세액 ③ 이자비용(Sec. 163) ④ 자선단체 기부금(Sec. 170) ⑤ 손상 및 도난손실(Sec. 165) ⑥ 기타 공제(Sec. 67) 등이 있다. 이외 고용자가 변상하지 않은 피고용인의 사업비용, 투자 관련 비용, 소득신고 준비, 계획, 조사와 관련된 비용이 공제된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에서 변제되지 않아 개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에서 조정된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 가능하다(Sec. 213). 의료비 지출은 개인 차원에서만 공제가 가능한데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를 포함한다. 의료비는 진단료, 의료보험료, 의사, 병원, 안경, 콘택트렌즈와 치료를 위한 교통비 기타 다양한 항목의 비용을 포함한다. 입원비와 입원 당시 숙식비 그리고 병원 이외 장소의 간호비는 환자의 상태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공제가 허용된다. 진단서가 있는 약품비도 공제된다.

의료보험료도 의료비에 포함된다. 자영업 고용세에서 Medicare 프로그램의 일부로 지불한 병원보험료는 공제가 안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건강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60%가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 공제되며 나머지 40%는 상세공제된다. 의료비 공제는 AGI 7.5%의 공제 한도로 중병이 있어 상당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발생한다. 의료비는 경비가 소요된 연도에 공제되며 추후에 보험에서 변제가 되면 공제되었던 변제금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해나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절도손실은 사업용이나 투자용이 아닌 개인용 자산의 경우 상세공제로, 기업은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의 공제(후 공제)가 가능하다(Sec. 165(c)(3)). 공제 가능한 액수는 자산의 손상 직전 시점에 공정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감정액과 자산의 장부상 조정된 평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개인의 경우 각 자산의 손상 손실에서 100달러를 제외한 후 이렇게 산정한 모든 순손실의 합이 조정된 총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보험이나 보상대상인 손실은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만이 공제가 가능하고 손상을 입은 연도가 아닌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확실해진 연도에 공제한다.

주정부, 지방정부와 외국 소득세 납부액, 부동산세(real estate tax) 그리고 지방정부 개인재산세도 공제가 가능하다(Sec. 164). 이 가운데 개인재산세는 최소한 일부라도 증가세이어야 한다.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데 나중에 환급된 소득세는 다시 총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용 부채에 대한 이자는 면세채권을 구입하기 위한 부채가 아닌 이상 조정된 총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공제된다. 그러나 개인 이자비용은 조정된 총소득에서 공제하고 공제도 일부 용도로 제한되어 소비를 위한 부채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Sec. 163). 공제 가능한 개인 이자경비는 우선 고등교육 부채 이자로 2,500달러(2001년)까

지 공제된다. 또한 거주 주택을 위한 이자경비는 100만달러에 상당한 주택매입 부채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또한 주택 매입 후 주택을 담보로 얻은 용도의 제한이 없는 일반 부채는 부채가 10만달러 이하인 경우 그 이자가 공제된다(home equity loan).

개인 부채에서 공제되는 세 번째 이자경비는 투자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얻은 채무에 관한 이자 비용인데 단, 이는 투자소득을 공제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공제가 되지 않는 투자 이자경비는 그러나 이월이 가능하다. 여기서 투자자산은 이자나 배당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개인과 기업이 자격 있는 국내 자선단체(Sec. 501)에 기부된 금액과 물품 등은 공제된다(Sec. 170). 단, 특정 개인을 위한 기부금으로 조건이 붙으면 공제가 안 된다. 현금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 당시 시장 공정가격이 기부금이 되며 서비스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인의 경우 공공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조정된 총소득(AGI)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된다. 공공자선단체에 기부한 양도소득 자산과 현금 기부 그리고 민간자선단체에 기부한 일반소득 자산의 공제는 조정된 총소득의 30%로 제한된다. 이외 총자선기부금 공제금액은 조정된 총소득의 50%로 제한된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세자는 3,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전달된 자선단체의 명의를 신고하고 현금 이외 500달러 이상의 자산을 기부하면 공정가격 산정방식을 밝히고 5,000달러 이상이면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은 기부받은 자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갖추어야 한다.

기타 공제(miscellaneous expense)는 포괄적인 분류로서 회원가입비, 노동조합 가입비 혹은 투자비용으로서 납세자 AGI의 2% 초과분에만 적용된다(Sec. 67). 투자경비는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의 유지, 관리, 보수경비나 소득 창출을 위한 경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임대와 로열티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의 경비는 조정된 총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공제된다(Sec. 62(a)(4)). 즉,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임대소득 또는 저작, 특허권 혹은 천연자원과 관련된 로열티 소득을 위하여 소요된 감가상각, 보수, 관리, 이자, 보험비는 상세공제가 아닌 조정된 총소득 전 공제이다.

이외 기타 공제에 포함되는 경비는 고용자가 변상하지 않은 종업원 사업비용으로 교통, 출장, 접대 및 일부 교육비가 있고 용구 및 장비비도 포함된다. 특정 직업의 탐색비

용, 교육비용 그리고 소득신고 준비, 계획, 조사와 관련된 비용이 있다. 이외 도박손실은 도박소득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3) 인적공제

개인 납세자는 개인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개인비용을 지출하는 납세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일인당 3,050달러(2002년 3,000달러)의 소득이 공제된다(Sec. 151). 이러한 공제액은 전년도 물가에 연동된다. 개인 공제는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부양자로 신고되면 자신의 소득신고에서는 개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공제 이외에도 납세자는 자신의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할 수 있다. 공제가 가능한 피부양자 자격은 다음의 5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대부분 납세자의 자녀, 납세자와 함께 기거하는 부모나 손 자녀 등의 친척이 이에 해당한다(Sec. 152). ① 납세자가 피부양자를 위한 경비의 50% 이상 지출하고 ② 피부양자의 총소득이 인적공제액(3,050달러)을 초과하지 않고(24세 이하의 학생이나 19세 이하는 제외) ③ 결혼한 사람이 피부양자이면 부부합산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④ 피부양자가 납세자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동거하여야 하며 ⑤ 미국 시민/영주권자이거나 캐나다 혹은 멕시코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현재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즉, 부부합산의 경우 조정된 총소득이 209,250달러를 초과하면 2,500달러(혹은 그 일부분)당 인적공제금액의 2%가 감소한다. 따라서 소득의 증가분이 122,500달러에 이르러 총소득이 331,750달러가 되면 인적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Sec. 151(d)). 독신자의 경우 인적공제가 축소되기 시작하는 소득 수준이 139,500달러이며 가장은 174,400달러이다(부부별도 104,625달러). 그러나 이러한 고소득층에 관한 공제 불허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2010년이면 완전히 폐지된다.

부양 경비는 음식주거비와 의료, 의류 및 교육비 등을 의미한다(Reg. Sec. 1-152-1(a)(2)(i)). 또한 부양비용은 이외에도 판례에 따라 TV, 휴가비, 장난감, 전화, 의료보험료, 자녀위탁 등을 포함하며 세금, 장례비용, 생명보험 수수료, 청구입비용 등

은 제외된다. 이 밖에 납세자가 피부양자를 위하여 제공한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양비용의 가치는 구입비용과 같지만 주거 제공과 같은 서비스는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결정된다.

몇 사람이 단체로 다른 사람의 부양경비 가운데 50% 이상을 부담하지만 개인별로는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부양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해당 납세자가 부양경비를 최소 10% 이상 지출하였고 다른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다 (multiple support declaration, Form 2120, Sec 152(c)).

한편 이혼 혹은 별거한 부부의 경우 50% 이상의 부양경비를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더 오랜 기간 자녀 등과 같이 지내는 사람이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다(Sec. 152(a)). 단 이 경우 부부가 최근 반년 이상 동안 이혼 혹은 별거하면서 50% 이상의 부양비용을 부담하였고 부부가 합쳐서 최소한 반년 이상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등의 자격이 필요하다(Sec. 152(e)). 이외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배우자도 부양하는 배우자가 서면으로 양해하면 부양면제를 받을 수 있다(Form 8332).

일반적으로 피부양자의 총소득은 3,05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총소득은 소득세상의 총소득으로 장학금,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 그리고 면세 대상인 사회보장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에서 예외는 19세 이하의 납세자 자녀와 24세 이하의 학생 자녀이다. 또한 납세자와 피부양자는 납세자 어느 한 쪽과 직계 인척관계에 있거나 혹은 과세연도 전 기간에 걸쳐서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녀, 형제부모, 조부모, 손자녀, 삼촌, 이모 그리고 조카의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Sec. 152(b)(5)).

개인, 신탁기금(trust), 상속(estate)은 면제액(exemptions)에 해당하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최저한세와 자영고용세

1)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소득세는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되지만 소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

요한 정책수단이다. 과거 다양한 면·공제(tax shelter)로 인하여 상당수 고소득층의 납세자가 소득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발생함에 따라서 1969년 미국 의회는 모든 납세자가 최소한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지금과 같은 개념의 최저한세(AMT, alternative minimum tax)는 1978년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최저한세 체계하에서 산출된 소득세와 비교, 그 중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최저한세는 개인 납세자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파트너십 그리고 각종 신탁기금에 모두 적용된다. 최저한세는 면세점이 부부합산의 경우 49,000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 최저한세 산정방식

최저한세를 산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Sec. 55(b)(1)). 우선 정상적으로 산출된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과세상 우대되는 항목과 부양자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를 합한다. 여기에다가 상세공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표준공제액을 합친 후에 상세공제 중 최저한세에서 제한되는 일부 항목을 가감하는 등 조정하면 최저한세 과세소득(AMTI)이 된다. 연후 과세소득에서 면제액을 빼고 나면 최저한세 과표(AMT tax base)가 되고 여기에 최저한세 세율을 곱하면 최저한세를 구할 수 있다.

면제액은 신고자의 신분에 따라 다른데 부부합산 49,000달러, 독신자 35,750달러 그리고 부부별도 신고는 24,500달러이다(Sec. 55(d)(3))⁴⁷⁾. 그러나 최저한세 과세소득 수준이 신고자 신분에 따라 일정액을 초과하면 상기 면제액의 75%만이 면세된다⁴⁸⁾. 최저한세 과표에서 처음 175,000달러에 해당되는 소득에는 26%, 그 이상의 소득에는 28%의 한계세율⁴⁹⁾을 곱하면 잠정 최저한세가 산출되며 정상 소득세를 잠정 소득세에서 빼고 난 후 그래도 잠정소득세가 양의 값을 가지면 이 금액이 최저한세(AMT)가 된다.

47) 2005년 이후에는 면제액이 200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 부부합산의 경우 45,000달러, 독신자는 33,750달러 그리고 부부별도 신고는 22,500달러가 된다.

48) 부부합산의 경우 150,000달러, 독신자는 112,500달러 그리고 부부별도 신고는 75,000달러이다.

49) 순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 10%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표 II-20> 최저한세(AMT) 산정방식

정상적 과세소득(taxable income)
- 과세상 우대항목(tax preference items)
- 인적, 부양자공제(personal, dependency exemption)
<u>± 조정항목(상세공제항목에 대한 최저한세상의 제한 등)</u>
최저한세 과세소득(Alternative Minimum Tax taxable income)
<u>- 면제액(부부합산: 49,000달러, 독신 35,750달러 등)</u>
최저한세 과표액(Alternative Minimum Tax tax base)
잠정 최저한세 = 과표액×세율(첫 175,000달러 26%, 이상 28%)
<u>- 정상소득세</u>
최저한세(AMT)

자료: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K. Murphy and M. Higgins, Thomson Co., 2003, US.

원래는 면세되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한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과세상 우대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감가상각분에서 조기원가 회수제도의 사용으로 정액 감가방식을 초과하는 상각분 둘째, 개인사업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에서 면세되는 이자소득 셋째, 조정된 자산과표에서 초과된 감모상각, 일부 중소기업 주식(small business stock) 중 면세된 양도소득(Sec. 1202).

나) 최저한세 조정항목

원래 정상적인 소득세를 산정할 때 상세공제되지만 최저한세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기타 공제, 지방정부 소득세와 재산세 등이 있다. 또한 여타 항목에서도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축소된다. 즉, 상해손실과 의료비는 조정된 총소득의 10%, 기부금과 주택대출금 중 일부 등은 공제금액이 제한된다. 이 밖에도 회계방식에 따라 소득과 경비 인정으로 과세가 이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저한세에서는 이를 현재 소

득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외 실제보다 빨리 감가상각하여 소득을 축소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세액공제에 있어서도 최저한세에서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해외소득세 공제와 자녀부양과 노령자 공제 등 환급되지 않는 개인공제로 한정된다. 다만 이러한 소득 혹은 경비 조정으로 인하여 과거 최저한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이후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과거 납부한 최저한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Sec. 53).

2) 자영업고용세(Self-Employment Tax)

대부분의 개인 신고자는 피고용자로서 고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본인과 고용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연방 사회보장세(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가 소득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반면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대신 자영업고용세가 부과된다(Schedule SE, Form 1040). 따라서 자영업고용세는 제3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이다.

자영업자는 자가 고용으로 인한 순소득(net earnings)이 400달러를 초과하면 고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Sec. 6017). 자영업이란 개인사업이나 파트너십 혹은 자신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정상적인(원천징수된) 사회보장세 이외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고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을 통한 순소득 이외에도 연구비와 파트너십의 배당소득 등이 포함된다. 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미국 시민 등도 자영업고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다만 미국과 조세협약을 맺는 국가들 중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에 납부한 사회보장세로 자영업고용세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다.

순소득에 부과되는 고용세 세율은 총 15.3%인데 이 중 12.4%는 노령·불구 등에 대비한 보험세(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로서 최고 87,000달러의 소득까지 부과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나머지 2.9%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의료보험세(Medi-care taxes)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율은 일반 근로자

가 사회보험세로 본인이 납부하는 7.65%의 두 배로 근로자의 경우 회사 부담분이 제외된 반면 자영업자는 회사 부담분까지 본인이 납부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러한 고용세의 절반은 자영업자가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Sec. 164(f)).

자영고용세의 과세소득인 순소득(net earnings)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자영 소득을 정해야 한다. 총소득은 개인사업자, 파트너, 농부 등 사업 영역에 따라 Form 1040에 제시된 각 양식을 이용한다. 연후 순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일반 방식과 농업용 방식 그리고 농업용이 아닌 선택방식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후자는 사회보장이나 부양자 등의 공제를 받고 싶을 때 이용한다. 일반 방식은 사업소득을 0.9235로 곱하여 순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다.

바. 세액공제(tax credit)

1) 개요

세액공제는 고용 증대, 환경보존, 연구 장려, 형평성 제고 및 이중과세 방지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위하여 사용된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1:1로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율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일반적 공제에 비하여 혜택이 훨씬 크다.

세액공제는 환급이 가능한 공제와 그렇지 않은 공제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공제액이 과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정부가 납세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반면 후자는 공제액이 납세자의 과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는 또한 여타 공제의 환수를 상쇄하는 데 이용될 수 없고 소득세 이외 다른 세금을 상쇄할 수도 없다.

환급이 가능한 항목은 극히 일부로 기납부한 세금과 근로소득 세액공제(EIC)와 추가 자녀 세액공제가 이에 해당하며 나머지 항목은 환급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또한 개인공제와 기타 및 사업공제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공제는 다른 공제에 앞서서 과세액에서 제외되는데 이들은 주로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공제항목이다.

<표 II-21> 세액공제(tax credit) 항목의 예(2003)

환급 가능 세액공제	환급 불가능 세액공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전년도 과대 납부세액(소득 및 사회보장세) 신고 연기시 납부한 세액 기납부한 세액 Earned Income Tax Credit	개인공제: 입양비(Sec. 23) 노령자와 불구자 (Sec. 22) 자녀세((Sec. 24) HOPE 및 평생교육(Sec. 25A) 자녀 및 부양자(Sec. 21) 주거용 자택(Sec. 25) 일부 은퇴저축 기여금(Sec. 25B) 기타공제: 해외소득세(Sec. 27) 사업공제: 사업 연료(Sec. 48) 전기 자동차(Sec. 30) 연구 및 실험개발(Sec. 41) 저소득층 주택(Sec. 42) 빌딩 재건축(Sec. 47) Empowerment zone 고용(Sec. 1396) 재활(Sec. 47), 복지·근로(Sec. 51, 51A)
투자사 공제(규제 투자사) 비고속도로용 휘발유세	

자료: K. Murphy and M. Higgins,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Thomson Co., 2003, US.

2) 환급되는 세액공제

가) 환급공제 유형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EIC)와 유류세 공제의 세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을 창출하는 납세자는 분기별로 자영고용세 등을 추정하여 세금을 납세하는데 이렇게 납부된 추정세액도 실제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된다. 휘발유 및 기타 특정 유류에 부과되는 소비세도 도로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환급이 가능하다(Sec. 34). 사업용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한 휘발유 구입 또는 농업용 유류가 이에 해당한다.

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의 근로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공제금의 환급이 가능한 형태를 띤다(negative income tax). 근로소득(earned income)은 임금과 팁 그리고 종업원 보수를 의미하며 자영업자의 순소득도 포함된다.

공제 혜택은 근로소득과 조정된 총소득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개인과 일부 독신자에게 주어진다(Sec. 32(c)). 자녀는 납세자의 자녀나 손자녀로 납세자와 반년 이상 같이 거주하며 19세 이하이어야 한다. 학생의 경우 나이가 24세까지 허용되며 불구자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다.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 미국 내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고 25~64세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과도한 투자소득을 가지면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배당, 이자, 순임대 혹은 순양도소득이 2,600달러 이상이면 과도한 투자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 하려면 우선 <표 II-22>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을 찾아야 하는데 이들 지표는 자녀수에 따라 변한다. 한 예로 자녀가 1명인 납세자의 경우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가운데 최고 7,490달러의 34%가 세액공제 금액에 해당한다.

<표 II-22>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환산표(2003)

(단위:달러, %)

자녀수	한계비율	공제 가능한 최대근로소득	잠정세액공제
0	7.65	4,990	382
1	34.0	7,490	2,547
2~	40.0	10,510	4,204

자료: K. Murphy and M. Higgins,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Thomson Co., 2003, US.

연후 이러한 세액공제 금액에서 일부는 납세자의 조정된 총소득⁵⁰⁾과 근로소득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큰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데 그 기준은 <표 II-23>에 나타나 있다(Sec. 32(b)(1)). 한 예로 값이 15,400달러의 근로소득과 3,600달러의 위자료 수입이 있으면 조정된 총소득은 19,000달러이다. 따라서 값의 자녀가 1명이면 잠정 세액공제는 2,547달러($0.34 \times 7,490$)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842달러($0.1598 \times (19,000 - 13,730)$)는 초과소득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머지 1,705달러($2,547 - 842$)가 최종 세액공제 금액이 된다.

<표 II-23> 초과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감축(2003)

(단위:달러, %)

자녀수	감축 출발점	감축비율	감축 종료점
부부합산			
0	7,240	7.65	12,230
1	14,730	15.98	30,666
2~	14,730	21.06	34,692
기타 납세자			
0	6,240	7.65	11,230
1	13,730	15.98	29,666
2~	13,730	21.06	33,692

주: 초과소득에 따른 출발 및 종료점은 근로소득과 조정된 총소득 중 큰 금액임.

자료:K. Murphy and M. Higgins,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Thomson Co., 2003, US.

3)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

가) 개인 세액공제(personal tax credit)

개인세액공제 가운데 우선 자녀세액공제가 있다(child tax credit). 즉, 납세자는 17세 이하의 미국 시민 자녀 1인당 최고 600달러에 이르는 공제를 받는다(Sec. 24). 이러

50) 수정된 조정 총소득은 조정된 총소득(AGI)을 순양도손실, 순비사업용 임대손실, 사업 순손실의 75%, 면세 이자소득과 연부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한 자녀공제는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10년에는 1,000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과거 자녀세액공제는 환급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근로소득이 10,5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까지 환급을 해준다(2004년은 15%).

자녀공제액은 일정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일부 조정된 총소득⁵¹⁾에 대하여 1,000달러(혹은 그 일부분)당 50달러씩 혜택이 주어진다. 일정 소득은 부부합산의 경우 110,000달러이고 독신자는 75,000달러이다. 이 금액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다. 자녀는 17세 이하의 납세자 자녀로서 피부양자 기준에 합치되는 자녀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일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녀나 부양자를 위하여 지불하는 보육비 등 위탁비용은 세액공제된다(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Sec. 21).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13세 이하의 자녀나 일할 능력이 없는 부양자와 가족을 구성해야 한다(household: 즉, 납세자가 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최소 50%의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 비용은 납세자의 집에서 행한 가정관리, 간호, 요리, 탁아 비용 등이나 혹은 6명 이상을 돌보는 탁아소 위탁비용이다.

공제가 허용되는 최대 위탁비용은 부양가족 1인 3,000달러, 2인 이상은 6,000달러이다. 단, 근로자의 고용인이 자녀위탁을 위하여 지원한 금액 중 최대 5,000달러가 총소득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따로 있다(exclusion, Sec. 129). 따라서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소득에서 제외된 지원금액만큼은 세액공제를 위한 위탁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성인인 친족에게 지불하는 위탁비용도 공제가 허용된다(Sec. 21(e)(6)). 또한 공제대상인 최대 위탁비용은 근로소득보다 많을 수 없고 부부의 경우 이 제한은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금액은 전술한 3,000달러(혹은 6,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위탁비용의 35%이다. 이 비율은 조정된 총소득이 1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소득의 2,000달러당 1%씩 감소한다. 단, 최소 공제비율은 20%로서 조정된 총소득이 43,000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20%를 적용받는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의

51) Modified AGI로서 이는 조정된 총소득에 해외소득 등 Sec. 911, 931 그리고 933에 따라 총소득에서 제외된 소득을 포함한다.

15%를 독신은 5,000달러, 부부합산은 7,500달러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elderly and disabled persons credit). 공제 가능한 금액은 사회보장 등 비과세연금이 있으면 감소된다(Sec. 22(c)). 또한 조정된 총소득이 일정금액(독신 7,500달러, 부부 10,000달러)을 초과하면 조정된 총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한편 개인과 기업은 외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foreign tax credit, Sec. 27(a)).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외국 납부세액을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인데 이는 세액공제에 한도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Sec. 164).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납부세액과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즉, 미국에서의 납세액을 전체 과세소득 대비 외국에서 창출한 과세소득 비율로 곱한 금액이 한도금액이다(Sec. 904(a)). 한도에 걸려 사용되지 않은 외국세액은 이전 2년 그리고 이후 5년간 이월된다.

이 밖의 개인공제에는 저소득 혹은 중산층 납세자나 그 가족이 부담하는 중등교육 이상의 학비에 대하여 교육과정 첫 2년간 최고 1,500달러에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프로그램(HOPE Scholarship)이 있고 HOPE 프로그램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학비 중에서 1만달러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Lifetime Learning Credit). 마지막으로 자녀 입양에 따른 경비가 최고 5,000달러까지 세액공제되기도 한다(Sec. 23).

나) 일반사업공제(General Business Credit)

특정 사업경비를 세액공제할 때 공제금액의 균등한 한도와 이월 기준을 위하여 다음의 13개 항목의 경비가 일반 사업공제로 통합되어 총금액이 공제된다: 투자⁵²⁾, 취업기회, 알콜 유통, 연구, 저소득층 주택, 원유 복구, 장애인용 출입 제공(access to business), 전기 재생산, 낙후지역 고용, 인디안 고용, 음식점 등의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 희귀성 약품개발(orphan drug), 낙후지역 개발투자(New Market).

사업공제가 허용되는 최고 금액은 순소득세에서 임시 최저한세(tentative minimum

52) 투자공제는 역사적 건물이나 1936년 이전에 건립된 건물의 복구나 삼림 복구 또는 에너지 자산의 투자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10~20%)을 세액공제 해준다(Sec. 47, 48).

tax)나 2.5만달러를 초과하는 정상적인 납세 의무액의 25%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Sec. 38(c)). 순소득세는 정상세금과 최저한세를 합한 금액에서 환급되지 않는 기타 세액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순정상세금은 정상적인 납세 의무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한도를 초과하는 일반사업공제금은 우선 해당 과세연도 이전 1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후 20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이월된 공제부터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해당연도 공제를 사용한다(FIFO, Sec. 39).

이외 일반사업공제는 아니지만 2005년 이전에 자격이 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하여 투자를 한 납세자는 최고 4만달러에 이르는 투자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할 수 있다(Sec. 30).

4. 비과세소득

가. 비과세소득

법에 따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모두 총소득에 포함되어 일반소득세로 과세된다. 이외 자본 원금의 회수이거나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 자가주택 등 개인용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가치 그리고 이윤이 아닌 총수입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101조에서 139조에 명시된 비과세소득은 <표 II-24>에 예시되어 있다. 물론 이들 비과세소득 가운데 증여나 주택양도소득 등은 증여세나 자본양도세로 따로 과세된다.

<표 11-24> 비과세소득의 예(2003)

증여 및 유산(Sec. 102)	의료경비 지급금
생명보험 지급금(Sec. 101)	부양자경비(Sec. 129)
사회보장 및 일부 복지 이전지출금(Sec. 86)	일부 해외소득(Sec. 911)
회사자본 기여금(Sec. 118)	지방정부채권 이자(Sec. 103)
부상, 사고 및 개인상해보상금(Sec. 104, 5)	일부 Series EE 채권이자
임차인에 의한 임대부동산 개축(Sec. 109)	노동자 수당
일정 한도내 거주주택 양도소득(Sec. 121)	음식·숙박 지원(Sec. 119)
일부 종업원 부가급부(Sec. 132)	자녀부양 지원금(Sec. 129)
회사 부담 건강, 생명보험 가입료(Sec. 106)	이혼에 따른 재산 취득
종업원 할인(Sec. 132)	파산 등에 의한 부채 면제(Sec. 108)
고등 교육비를 위한 연방채권 소득(Sec. 135)	일부 군인에 대한 수혜금(Sec. 134)
cafeteria plan (Sec. 125)	교육지원금/ 장학금(Sec. 117, 127)
입양비용(Sec. Sec. 137)	일부 업적 포상금(Sec. 74(b))

주: 부가급부는 Sec. 79, 105, 106, 124, 125, 129, 132에서 규정됨.

나. 비과세소득의 유형

1) 생명보험 지급금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지급되면 일종의 증여로 간주되어 비과세되지만 수혜자에게 액면가 이상으로 지불된 금액은 이자로 처리, 과세된다. 생명보험료는 공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혜금도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생명보험이 제 3자에게 매매된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Sec. 101(a)(2)). 즉,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매각된 생명보험도 지급금이 매입금액을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과세되며 만기 이전에 처분되면 손실로 처리될 수 없다(Sec. 72(e)(2), 137). 그러나 만성적으로 아픈 피보험자에게 지불된 보험금은 실제 병원비용과 일 220달러 중 큰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보험 가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된다.

2) 피해 보상금

병이나 물리적 부상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된다(Sec. 104(a)). 단 명예훼손에 따른 보상금이나 처벌적 보상금(punitive damage)은 과세된다. 예외적으로 사고 및 건강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보전적 성격이라도 비과세된다(Sec. 104(a)(3)). 만약 보험 가입비의 일부를 고용인이 지급하였다면 이는 부가급부(fringe benefit)로 간주되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과세된다. 하지만 업무 관련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각 주에서 마련된 법에 따라 지불되는 보상금은 물리적 부상이 아닌 경우이거나 혹은 소득보전적이어도 비과세된다(Sec. 104(a)).

3) 장학금과 저축채권 이자소득

장학금 등은 등록금과 수강을 위한 책 등을 위한 각종 경비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며 숙식 등을 위한 장학금은 과세된다(Sec. 117). 또한 각종 상금도 자선단체나 정부에 기부할 경우 비과세된다(Sec. 74).

24세 이상의 납세자가 매입한 정부 저축채권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을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그 부양가족이 고등교육 등록금과 학위 프로그램의 일부로 지출되는 숙식비 등에 사용할 경우 비과세된다. 채권이자 등은 고등교육비가 소요되는 연도에 회수되어야 한다.

4) 부가급부(fringe benefit)

가) 일반원칙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그 형태와 관련 없이 과세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일부 부가급부는 과세에서 면제되는데 이러한 부가급부에는 근로자보험, Sec. 132 부

가급부, 숙박, 부양자 지원급여 등이 있다. 고용자가 지불한 건강, 부상 그리고 사고 단체보험 가입비는 면세된다(Sec. 106). 그러나 고용자가 지불한 단체 생명보험 가입비는 보험 지급금 중 50,000달러에 해당하는 가입비만 비과세되며 나머지는 과세된다(Sec. 79(a)).

고용자가 지불한 보험 가입비는 대개 공제가 허용되는데 자영사업자의 경우 공제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다(Sec. 162(1), 213(d)(10)). 또한 사업자나 파트너를 위한 생명보험 가입비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한편 건강, 병원 그리고 생명보험 지급금도 면세된다. 그러나 부상보험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과세되며 다만 노인과 부상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외 Sec. 132는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음의 여섯 가지 항목의 비과세 부가급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은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비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자 경비로 공제된다. 1)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서비스 혜택(호텔 빈방을 호텔 종업원이 이용) 2)자사 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 판매 3)근로조건 혜택(전문가단체 가입비 제공) 4)기타 소액 혜택(de minimis benefit, 커피 제공) 5)교통비용 제공(대중교통 월 100달러 이하, 주차비 월 190달러 이하) 6)운동시설 제공. 이들 부가급부는 비차별적이고 특히 임원이나 주주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비과세 부가급부 항목

상당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고용주의 일반 상거래에서 고객에게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종업원 등에게 무상 혹은 할인으로 지급하면 비과세된다(Reg. Sec. 1.132-2). 이러한 혜택은 자산의 형태를 띠면 안되고 서비스 형태이어야 하며 종업원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은퇴한 종업원이나 동일 직종의 타회사 직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reciprocal basis).

종업원 할인은 서비스의 경우 정상가격 20% 이하로 할인이 가능하며 상품 등 자산의 할인 판매는 회사 총이익의 일부로 제한된 금액에 대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투자상품을 할인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과세된다. 이러한 종업원 할인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 안 된다.

종업원 포상은 현금이 아닌 형태로 안전이나 근무년수에 기준한 포상으로 매년 종업원 1인당 4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급여로 위장되지 않아야 종업원의 소득에서 제외되며 고용인도 이를 공제할 수 있다(Sec. 74(c)). 이외 사전에 문서화된 규정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종업원 포상은 대상 종업원의 10% 이하가 수여받고 1인당 평균 비용은 400달러 이하라는 조건에서 비과세가 허용된다.

무상 혹은 할인으로 제공되는 숙식은 고용인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고용장소(혹은 그 부근)에서 제공되며 특히 숙박의 경우 종업원이 이를 근로조건의 일부로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면세될 수 있다(Sec. 119, Reg. Sec. 1.119-11(c)(1)). 무상으로 제공되는 숙박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을 선택권이 있다면 숙박 서비스는 면세대상이 아니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음식비용은 과세된다. 이외 회사 직원이 고객과 함께 식사를 한 경우 접대비의 50%가 공제되며 회사 직원에 해당하는 음식값도 과도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Rev. Rul. 63-144).

근로자 사망시 그 가족에게 지불된 위로금은 이를 단순한 증여로 볼지 아니면 보수로 간주할지에 따라 과세상 대우가 다르다. 과거에 제공된 노동 서비스에 대한 보답이라면 이는 노동자 가족에게 소득세가 적용되고 고용인에게는 공제가 허용된다. 고인의 사망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라면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고용인의 의도로서 증여로 간주되면 고용인 입장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반면 수혜자는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의 자녀나 이외 부양자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비차별적인 자녀 부양프로그램은 근로자 1인당 매년 5,000달러 이내에서 비과세된다(Sec. 129). 또한 근로자 교육을 위하여 고용인이 지불한 학비 등 교육 지원비도 5,250달러까지 비과세 될 수 있다(Sec. 127). 그러나 5,250달러를 초과하는 지원금은 근로자 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지원한 부가급부에서 현금과 면세가 허용되는 단체생명보험, 사고 및 건강보험, 부양가족 지원, 휴가, 치과보험 등 다양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cafeteria plan). 이 경우 종업원이 보험가입 대신 현금을 선택하면 이는 과세되는 반면 부가급부를 선택하면 비과세된다(Sec. 125). 나아가 근로자를 위한 무이

자 대부분은 1984년 법개정으로 더 이상 면세되지 않는다.

5) 해외소득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신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된다(foreign tax credit). 그러나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근로소득은 80,000달러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Sec. 911(b)(2)). 단, 전액 면제가 가능하려면 해당 국가(들)에서 연속 12개월간 최소 330일 거주하였거나 선의의 뜻에서(bona fide) 그 국가의 거주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율적으로 산정된 부분만 면제된다. 비과세를 선택한 후 그 다음 해에 세액공제로 바꿀 수도 있는데 다만 이러한 선택을 한 후 6년이 되기까지는 국세청의 허가가 없으면 세액공제에서 비과세로 바꿀 수 없다(Sec. 911(e)(2)).

6) 자영업자 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 및 자본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에는 순사업 이익의 30% 이상을 면제받을 수 없다(Sec. 911(d)(2)(B)). 또한 미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득, 연부금, 이연된 보수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된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80,0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가 공제된다.

7) 소규모 사업 주식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를 제외한 납세자는 1993년 8월 이후 일부 자격이 되는 소규모 사업 주식(small business stock)을 5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Sec. 1202(a)). 이외 나머지 양도소득은 최고 28%로 과세되므로 실제 세율은 14%이다. 단 혜택은 회사당 1,100만달러로 제한된다. 이러한 주식을 발생하려면 일부 서비스 업종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C 법인)로서 총자산이 5

천만달러 이하로서 80% 이상의 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Sec. 1202(a))

비과세소득은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공제와 달리 제한금액이 없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상세 공제를 하지 않아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한편 고용인 입장에서는 현금 지급이던 부가급부이건 공제가 가능하면 별 다른 차이가 없지만 사회보장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과 사회보장 지급금을 제외하면 비과세 되는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면제되는 부가급부의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다. 이에 비하면 과세되는 부가급부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고용인을 이를 W-2 form에 신고하여야 한다(예외: 단체생명보험과 의료비 환급). 이 밖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가급부에는 사회보장제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 과세상 특별대우 소득

개인저축플랜 중 연금과 생명보험 납입금, 고용자가 제공하는 연금이나 생명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은 세제 혜택이 없다. 그러나 피고용자가 IRA에 지출하는 부담금은 연 2,0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가정주부가 있는 부부는 일정 제한과 함께 4,000달러까지 공제). 공제한도는 소득에 따라 감소한다(독신자 32,000~42,000달러, 부부합산인 경우 52,000~62,000달러). IRA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납세자가 59.5세가 되기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10%의 벌금이 적용된다.

납세자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이를 총소득에 포함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감면이 증여인지 아니면 계약조건의 재조정인지가 중요하다(Sec. 61(a)(12)). 다만 납세자가 파산하여 채무가 탕감되면 이는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Sec. 108).

5. 자산소득의 과세

가. 양도손익

1) 개요

총소득은 자산 취득과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포함하며 자산의 교환·매각으로 발생한 일부 유형의 손실은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하기 전에 공제될 수 있다(Sec. 61(a)(3), 62(a)(3)). 그 중 자본투자의 손실과 이익 즉, 양도손익은 1922년부터 다른 일반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아 왔다.

즉, 1997년 이후 개인 납세자의 순양도이익(NCG, net capital gain)에 부과되는 세율은 8~20%로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38.6%)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Taxpayer Relief Act of 1997). 나아가 2003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세금 감면법(JGTRRA of 2003)에서는 일부 납세자의 양도소득세율을 5~15%로 인하한 바 있다.

여기서 순양도이익(NCG)은 장기 순양도이익(NLTCG)에서 단기 순양도손실(NSTCL)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에 비하여 양도이익과 양도손실은 서로 상쇄될 수 있지만 순양도손실은 공제에 한도가 있으므로 손실은 자본손실보다 일반손실로 처리되는 것을 선호한다.

양도손익은 실현된 매각대금에서 조정된 장부가액과 매각 비용을 제하고 난 후 양도이익의 경우 이연되거나 비과세되는 이익을 제하면 인정된 즉, 과세대상 이익이 된다. 반면 양도손실의 경우 이연 혹은 공제되지 않는 손실을 제하면 인정된 즉, 공제 가능한 손실이 된다.

2) 손익의 결정

가) 손익의 결정

어떤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실현된 매각대금이 그 자산의 조정된 장부가액보다 많으

면 이익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Sec. 1001(a)). 양도손익은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시 발생하며 실현되지 않은 손익은 과세되지 않는다(Reg. Sec. 1.1001-1(c)(1)). 또한 납세의무는 매각 혹은 처분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을 때 발생한다. 처분이란 폭넓게 해석되어 구형과의 교환(trade-in), 손상, 절도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적인 목적의 강제 보상물수 등을 포함한다(Reg. Sec. 1.1001-1(c)).

실현된 이익(realized gain)은 자산의 처분이나 매매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즉, 매각 대금에서 판매 당시 조정된 장부가액(adjusted basis)을 제외한 금액이다. 매각대금은 현금 그리고 자산을 받은 경우 그 자산의 공정시장가치(FMV) 및 매입자가 대신 책임진 부채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반면 수수료 등 매각비용은 공제된다. 매각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많으면 이익이 되고 아니면 손실이 된다.

나) 조정된 장부가액(기초가액)의 개념

조정된 장부가액(adjusted basis)은 자산에 투자된 원금의 증감을 포함한, 회수되지 않은 원금을 의미한다(Sec. 1016). 양도손익은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대개 발생하지만 교환, 상해, 폐기, 주식회사 자본금 배분 등의 처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비용의 감가상각이 허용되는데 이에 따라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분 만큼 감소하고 남은 부분이 자산 매매시 판매대금에서 조정된 장부가액으로 제외되어 환수되며 그 차액이 실현된 이익이 된다.

조정된 장부가액은 납세자의 투자원금으로서 대개 매입비용을 의미하지만 증여나 유산 등 해당 자산이 처음에 취득하게 된 방식에 따라 일부 사례에서는 공정가격 혹은 대체 장부가액(substituted basis)을 의미하기도 한다. 매입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매입 비용이 장부가액이 되지만 유산 등의 경우 고인의 사망 당시 혹은 사망 후 6개월이 되는 날의 공정 시장가격이 장부가액이 된다.

조정된 장부가액은 매입비용에서 연후 자산의 사용, 생명 연장 혹은 가치에 도움이 되는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⁵³⁾을 합치고 감가상각, 비용회수 그리고 손상에

53) Reg. Sec. 1.461-1은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의한 공제 등 자본회수(capital return)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납세자는 자산에 투자된 자본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covery of basis doctrine, Sec. 1001, 2).

자본증액은 자산의 유지를 위한 일반 사업비용과 구분되어야 한다. 한 예로 지붕보수 비용은 현재 공제 가능한 비용이지만 지붕을 신축하는 것은 자본증액으로 부분적으로만 공제된다. 자본회수는 감가(모) 상각, 비과세 배당, 공제되는 손실 그리고 비용회수 등이 있다. 1980~1986년 사이에 서비스가 개시된 자산은 조기원가 회수제도(ACRS,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에 의하여 비용 공제가 되지만 그후 서비스가 개시된 대부분의 유형자산에는 조정된 조기원가 회수제도(MACRS)가 적용된다. 만약 납세자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허용되는 감가상각은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을 따른다(Sec. 1016).

현금주의 회계방식 아래서도 자본증액이 실제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모든 자본지출을 공제할 수 없다(Sec. 263). 빌딩처럼 자본이 지출된 과세연도보다 장기간 유용한 자본의 경우 감가상각방식으로 비용이 공제된다. 특히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은 과세 목적상 정해진 기간(taxable life)에 상각되고 그렇지 않은 자산은 사용기간 동안 상각된다(amortization, Sec 167).

다) 손익의 인정

실현된 이익이나 손실 중에서 세법상 과세소득 혹은 손실이지만 공제항목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손익이 있을 수 있다(recognized gain or loss). 일반적으로 손익의 인정은 자산의 매매나 교환시 발생한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실현된 손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종 자산의 교환에서는 발생한 손익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비자발적인 자산의 대체나 거주자산의 이익도 전부 혹은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외 실현된 이익은 인정되지만 손실은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한 예로 자동차 등 개인용 자산 매각으로 얻은 이익은 인정되어 과세소득이 되지만 손실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손상 및 절도로 입은 손실은 개인용 자산이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인정되며 공적인 목적의 강제 보상몰수에 의한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조정된 장부가액(adjusted property basis)⁵⁴⁾

조정된 장부가액은 손익과 감가상각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장부가액은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원래 매입비용으로 자산 취득과 이용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를 포함한다(Sec. 1012). 다른 자산과 교환하면 그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을 포함한다. 자산 구입을 위하여 사용된 채무액도 장부가액에 포함되고 구입자가 매각자의 채무를 대신 책임지면 그 금액도 장부가액에 포함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납세자가 일부 경비를 자본화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Sec. 266).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자산을 지급받으면 교환 당시 공정가격이 장부가액이 된다. 따라서 할인된 교환거래에서 할인된 금액은 장부가액에 포함되고 다른 이유로 포함된 금액은 장부가액에서 제외된다.

1) 장부가액 배분방식

가) 장부가액의 배분

한 번의 거래를 통하여 동시에 취득한 자산의 일부를 각각 다른 기간에 매각하면 장부가액의 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여러 종류의 자산을 같이 매입하였다면 각 자산의 상대적인 공정가치(FMV)에 따라 장부가액이 분배되어야 하며 이렇게 배분된 금액이 매입 장부가액이 되어 감가상각과 손익을 결정한다(basket purchase, Reg. Sec. 1.61-6(a), 1.167(a)-5).

이러한 장부가액의 배분은 일부 자산이 감가상각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 예로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고 자산이 처리될 때 장부가액이 회수된다. 그러므로 매입가격의 많은 부분을 감가상각되는 건물에 부여하려는 동기가 발생하지만 이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배분한다. 또한 자산 매입 시 발생한 공동비용은 회계방식대로 자본화되어 각 자산에 배분되어야 한다. 영업권

54) 조정된 장부가액은 일반 장부가액 개념보다 미국이 더 포괄적이어서 조정된 기초가액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goodwill)이 있는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도 특별한 장부가액 배분방식이 이용된다 (Sec. 1060).

나) 주식 장부가액의 배분

비과세되는 주식배당에서 원주식의 장부가액은 신규 주식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Sec. 305(a), 307). 일반 주식배당의 경우 원 주식 장부가액은 전체 주식수에 따라 분배되며 보유기간은 원 취득시점으로부터 시작한다. 일반주에서 우선주가 배당되면 상대가격에 따라 장부가액이 배분된다. 과세되는 주식배당에서는 배당 당시 공정가격이 과세소득이 되고 보유기간도 배당 당시 시점이다. 따라서 장부가액도 공정가격이며 원 주식의 장부가액은 변함이 없다.

비과세되는 주식권을 배당받을 경우 그 당시 주식권의 공정가격이 원주식 공정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식권의 장부가액은 소유자가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영(0)으로 처리되고 15%를 초과하면 주식권이 행사되거나 매매될 때 장부가액 배분이 필요하다. 배분 방식은 주식권 배당시 상대적인 공정가격이다. 매매되는 비과세 주식권의 보유기간은 원주식의 취득시점부터 시작하지만 권리가 행사된 주식권의 보유기간은 권리의 행사 시점이다(Sec. 1233(5)). 이 밖에 과세되는 주식권의 배당도 주식배당과 유사하다.

주식과 같이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할 경우 어느 부분이 매각자산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 납세자가 일정 날짜에 일정가격으로 구입한 주식을 매입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판매된 주식은 납세자가 가장 먼저 매입한 주식이 된다(FIFO, Reg. Sec. 1.1012-1(c)(1)). 예외적으로 상호투자 기금의 경우 이에 추가하여 평균비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Reg. Sec. 1.1012-1(e)).

주식이나 채권의 매각 시점에서 이전 30일 그리고 이후 30일간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각에 따른 손실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Wash sales, Sec. 1091(a)). 그러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새로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나중에 상환받는다.

2) 증여 및 유산의 장부가액

1921년 이후에 기증받은 자산의 경우 납세자의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장부가액과 같다(Sec. 1015(a)). 그러나 증여받은 사람의 장부가액은 기증한 사람의 장부가액과 증여 당시 자산의 공정 시장가격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자산의 공정가격이 기증자 장부가액보다 많으면 장부가액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가격이 기증자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추후에 발생하는 손익에 따라 장부가액이 달라진다. 우선 수혜자가 자산을 처분할 때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장부가액은 증여 당시 공정가치가 된다(basis for loss). 반대로 처분시 이익을 보면 기증자의 장부가액이 수혜자의 장부가액이 된다(basis for gain).

이러한 이중적 장치는 납세자가 손실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 예로 소득이 낮은 납세자가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고소득 납세자에게 증여를 하면 고소득의 수혜자는 나중에 이 자산을 손실로 처분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자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이 수혜자의 장부가액이 되므로 손실 매각으로 공제받으려는 유인이 적어진다.

보유기간도 일반적으로는 기증한 사람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하지만 공정가격이 기증자의 장부가액보다 적고 손실을 입고 자산을 판매하면 보유기간은 증여시점으로부터 시작한다(Sec. 1223(2)).

기증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 일부가 수혜자의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증여 당시 자산의 공정가치가 기증자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times (공정가치-기증자 장부가액)/과세대상 증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혜자의 장부가액에 추가된다(Sec. 1015(d)(6)). 여기서 과세대상 증여금은 공정가치에서 연간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Sec. 1015(d)(2), 2503(b)).

고인의 사망에 따른 유산의 장부가액은 사망 당시나 대체평가일(AVD) 당시 공정 시장가치 중 하나가 된다(Sec. 1014(a)).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자본 평가액의 상승을 유발하며 고인이 소유한 기간 동안 가치가 상승한 자산은 소득과세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유발한다(step-up basis). 대체 평가일은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데 만약 대체 평가일이 선택되면 모든 유산이 이 날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체평가일 이전에 분배된 유산이나 매각된 유산은 그 날의 공정가격이 장부가액이 된다(Sec. 2032(a)). 사망 당시가 아닌 대체 평가일은 유산과 유산세 금액이 모두 감소할 때만 선택할 수 있다.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한 자산의 경우 전체 자산 중에서 고인의 유산에 포함된 부분은 고인으로부터 생존자가 취득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유산에 포함된 부분의 장부가액은 사망(또는 대체 평가일) 당시 공정가격이 된다(joint ownership, Sec 2040). 그러나 공동자산(community property)은 장부가액이 사망당시 공정가격으로 평가된다(Sec. 1014(b)(6)). 마지막으로 고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은 고인이나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처분에 따른 손익은 장기 보유로 간주된다.

3) 기타 규정

분할납부방식으로 판매한 자산은 매매 차익이 1년 이상 분산되어 지급될 수 있다(installment sales). 이 경우 각년도에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매각대금에서 장부가액과 판매비를 제외한 이익을 매각대금으로 나눈 비율(gross profit percentage)을 각년도 지급금으로 곱한 금액이다(Sec. 453(b), (c)).

관련자 사이의 직·간접 자산거래로 얻은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허용되지 않은 손실은 처음 자산을 인수한 자가 추후 자산의 매매에 따른 이익을 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Sec. 267(a), (d)). 이 경우 보유기간은 매입자가 해당 자산을 보유한 기간이다.

다. 손익의 불인정

자산의 매매나 처분시 손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영구히 인정되지 않는 상황과 잠시 유예되는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대체 자산의 장부가액에 손익이 포함되어 이연된다. 즉, 대체 자산의 비용에서 이익은 차감되며 손실은 포함되는 방식으로 장부가액이 조정된다. 이처럼 과세가 이연되는 이유는 정책적 목적 이외 거래 이후 투자자의 경제적 입장이 변하지 않았거나 납세 대금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자가 거주주택

1997년 이후 거주주택의 매매나 교환으로 발생한 이익⁵⁵⁾은 부부의 경우 50만달러, 독신은 25만달러까지 면세된다(Sec. 121(b))⁵⁶⁾. 50만달러를 초과하는 이익은 개인소득이 아닌 양도차익으로 과세된다(capital gain tax). 거주주택은 판매 이전 5년간 최소 2년은 납세자의 주된 거주지이어야 하며 이러한 면세규정은 매 2년간 1번의 매매에만 적용된다. 양쪽 배우자 중 한 쪽이 집을 소유하고 양 배우자가 주택을 실제 이용하였고 어느 한 쪽도 면세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면세가 허용된다.

만약 주택이 임대 혹은 사업용 주택으로 전환되면 매매 이전 5년간 최소 2년 동안 자가 거주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세대상 부분이 배분되어야 한다. 건강, 근무처의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 변동으로 주택을 매각하게 되었지만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년 거주기간 대비 사용기간 등의 비율로 면세금액이 조정된다(Sec. 121(c)).

2) 유사자산의 교환

사업용이나 투자용으로 보유한 유사자산의 맞교환은 이로 인한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Sec. 1031(a)). 다만 이러한 교환시 현금이나 기타 유사자산이 대금으로 지불되면 이 부분은 이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boot)⁵⁷⁾. 이외 개인용과 사업용이 혼재되어 있는 자산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만이 비과세 된다.

주식, 채권, 매매를 위하여 보유한 자산 등은 사업용이나 투자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55) 이익은 매각대금에서 조정된 장부가액과 매각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된 장부가액은 구입비용에서 개축비용을 합한 후 공제대상인 손상손실, 보험 지급금 등을 제한 금액이다.

56) 법개정 이전에는 주택 매매 후 2년 안에 조정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차익 신고가 이연되었고 또한 55세 이상의 납세자는 평생 동안 12.5만달러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Taxpayer Relief Act of 1997).

57) boot는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되는 예외적인 자산을 의미한다.

비과세되는 유사자산에서 제외되며 파트너십 지분, 이성의 동물 교환도 이에 해당한다. 유사자산은 또한 품질 등이 아닌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정의된다(Reg. Sec. 1.1031(a)-1(b)). 부동산의 교환 이외에 개인자산의 경우 국세청이 정의한 자산분류에 따라 유사자산이 정의된다(Rev. Proc. 87-56, 1987-2 CB 674). 한 예로 컴퓨터와 사무용품은 자산분류가 다르므로 면세되는 유사자산이 아니다.

유사자산 이외 현금이나 여타 자산을 대금으로 받으면 이는 과세대상 대금(boot)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인정되며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Sec. 1031(b), (c)). 한 예로 장부가액이 2.8만달러이고 공정가격이 4만달러인 자산을 가격이 3.5만달러인 자산과 현금 0.5만달러로 교환하면 실현된 이익은 1.2만달러이고 인정된 이익은 현금 부분에 해당하는 0.5만달러이다.

한편 과세대상 대금을 준 경우, 일반적으로 손익이 인정되지 않지만 만약 대금이 자산이고 지급한 자산의 공정가격과 장부가액이 다르면 해당 자산에 대한 손익은 인정된다(Reg. Sec. 1.1031(d)-1(e)). 또한 자산 인수자가 양도자의 부채를 대신 책임지면 이 또한 인정해야 하는 과세대상 대금이 되며 부채는 현금 같이 취급된다.

자산의 맞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대신 지급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지급한 과세대상 대금과 인정한 양도차익을 더하고 수령한 과세대상 대금과 인정한 손실 그리고 양수자가 대신 책임지는 부채를 제하면 된다(Sec. 1031(d)). 또 다른 방법은 수령한 자산의 공정가격에 이연된 손실을 더하고 이연된 이익을 제하면 장부가액이 된다.

취득자산이 자본자산이거나 사업용 자산이면 보유기간은 양도자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며 과세대상 대금이면 이를 양도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된다(Sec. 1223(1)). 이러한 보유기간은 자발적이지 않은 자산의 대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Sec. 1033).

3) 자산의 비자발적인 전환(Involuntary conversion)

절도나 손상 그리고 공공 목적의 강제 수용⁵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2

58) 자산의 수용(condemnation)은 공적 목적으로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자산을 강제 몰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년) 이내에 충분한 금액의 대체 자산을 구입하고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실현된 이익은 이연된다(Sec. 1033(a)). 만약 유사한 자산이나 서비스나 사용용도와 관련된 자산으로 직접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장부가액도 대체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같다. 그러나 실현된 손실이 있고 인정되면 전환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입비용과 같다.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업용 자산의 불가피한 대체로 발생한 손실과 손상 혹은 절도로 인한 개인용 자산의 손실은 인정되지만 개인용 자산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은 인정될 수 없다.

대체 자산의 구입비용이 실현된 수입대금을 초과하면 납세자는 실현된 이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체 자산의 장부가액은 비용에서 이연된 이익을 제한 금액이 된다(Sec. 1033(a)(2), (b)). 이 경우 보유기간은 대체된 자산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Sec. 1223(1)(A)). 대체자산의 비용이 수입대금보다 적으면 초과분에 한하여 납세자가 선택하면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고 장부가액은 전자와 같이 조정된다.

비자발적으로 자산을 전환하는 경우 대체하는 자산은 대체되는 자산과 유사하거나 사용용도 혹은 서비스에 있어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 때의 유사 혹은 관련성은 유사 자산의 맞교환(Sec. 1031)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Sec. 1033). 투자 혹은 사업용 부동산의 수용인 경우 예외적으로 유사자산의 교환시 기준이 적용된다.

4) 손익의 불인정: 이외 사례

주식이나 파트너십 지분과 교환되는 자산의 경우 손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Sec. 351, 721). 두 번째로 주주 사이에 혹은 주주와 회사 사이에 동일한 회사의 일반 주식이 서로 교환되거나 우선 주식이 서로 교환되어도 손익을 신고하지 않는다(Sec. 1039(a)). 생명보험 계약을 다른 생명보험계약이나 기부금 혹은 연금계약으로 전환할 때 혹은 기부금 계약(연금계약)을 다른 기부금 계약(연금계약)으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이다(Sec. 1035(a)). Title 31의 Chapter 31(공공부채)에 의거하여 발행된 정부채권의 교환에서도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Sec. 1037(a)). 마지막으로 담보가 있는 부동산을 팔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재구입 조건에 따라 다시 보유하면 재구입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익은 현금과 대금으로 받은 여타 자산에서 처음

의 매매거래에서 소득에 포함된 이익을 제외한 금액만이 인정된다(Sec. 1038).

라. 자본자산과 Sec. 1231 자산(사업용 자산)

1) 자본자산의 거래

가) 개요

1997년 이전에는 자본자산(capital)의 거래에 따른 이익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어 1년 이상 보유한 장기 양도이익은 우대세율인 최고 28%로 과세되고 단기 양도이익은 개인소득세 세율로 과세되었다. 그러나 1997년 납세자 경감세법(Taxpayer Relief Act of 1997)이 제정되면서 장기 양도이익은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되어 각각 28%, 25% 그리고 2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이익 자산은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자산이어야 하며 개인소득세에서 15% 과세구간에 속한 납세자는 이보다 낮은 10%의 양도세 세율을 적용받는다(2003년 기준). 25%의 세율은 소위 Sec. 1250 자산에서 환수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된다(상각자산 매각익 중 미환수 소득). 여기서 미환수 이익이란 Sec. 1250 자산이 Sec. 1245 자산으로 취급되었다면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었을 양도이익을 의미한다.

한편 28% 세율이 부과되는 자산은 Sec. 1202에 정의된 양도이익으로 다양한 종류의 수집품에 해당한다(예술품, 골동품, 우표, 동전, 주류, Sec. 408(m)). 그러나 정부가 주조한 일부 동전은 수집품에 해당하지만 20% 양도세가 적용되기도 하며 1202조에 제시된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이익은 28%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이익의 절반은 면세된다.

한편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세율이 28%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양도세 세율이 18%, 소득세 세율이 15%인 납세자의 경우 양도세 세율이 8%로 경감되기도 한다. 15% 납세자와 달리 28% 납세자에게는 일반적으로 2001년 이후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만 경감세율이 적용되며 다만 그 이전에 구입한 자산은 2001년 당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2001년 이전에 구입한 자산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2003년 5월 이후에는 20% 세율이 15%로 경감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10% 세율은 5%로 경감된다. 그 대신 8% 우대세율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5%가 적용된다. 이외 Sec. 1(h)(11)에 적용되는 일부 배당소득에도 이와 같은 양도세 세율이 적용된다.

나) 자본의 정의

Sec. 1221은 자본자산(capital asset)을 정의하는 대신 자본자산이 아닌 자산(properties)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자산은 Sec. 1221에 제시되지 않은 자산을 의미한다. 자본자산이 아닌 자산은 첫째, 일반적 상거래에서 매매를 위하여 보유한 자산과 채고 들째, 사업용 자산으로 Sec. 167에 의하여 감가상각되는 자산이나 사업용 부동산(Sec. 1231 assets) 셋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매매로 취득한 매출채권(trade receivables)이나 채권 넷째, 납세자를 위하여(납세자가) 제작된 서류나 기타 유사 자산,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 예술품 등 납세자에 의하여 제작된 자산, 판매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은 정부가 제공한 정부간행물 중 일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 건물, 기계나 설비 등의 사업용 부동산과 채고는 자본자산이 아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되는 사업용 자산과 토지는 비록 자본자산이 아니지만 자산 매각이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양도이익은 Sec. 1231에 따라 장기보유 양도이익(LTCG)으로 간주되고 손실은 일반적인 손실로 처리되어, 과세된다.

대부분 투자자산은 자본자산이며 개인용 자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이 된다. 한 예로 주식, 채권, 기타 투자용 자산과 주택, 토지, 가구, 자동차 등 개인용 자산은 자본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술인이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면 이는 개인소득이며 투자나 개인용으로 판매한 예술품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이 된다. 이 밖에 특허권과 가맹권(franchise)도 자본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외 사업용 자동차는 자본자산이 아니지만 개인용 자동차는 자본자산이다.

한편 투자용 자산과 개인용 자산은 손실의 처리에서 세법상 달리 취급된다. 투자용 자산의 매매로 얻은 이익과 손실은 양도손익으로 간주된다. 개인용 자산의 매매

로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지만 그 손실은 절도나 손상이 아니면 공제되지 않는다.

다) 자본자산과 일반자산

Sec. 1221의 정의에 따른 자산의 구분 이외에 개별 자산이 어떤 자산으로 간주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대법원은 제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취득한 선물계약을 다시 파는 경우 이를 자본손익으로 판정하지 않고 일반 손익으로 판정한 바 있다(1955년 Corn Products Doctrine). 이는 회사의 안정적 생산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기본적 거래이므로 이에 따른 손익은 일반적인 성격이라는 입장에 기초한다. 그러나 1988년에는 거래의 동기와 관련 없이 해당 거래가 Sec. 1221에 포괄적으로 정의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를 자본손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정한 경우도 있다(Arkansas Best). 이처럼 1988년 판정으로 투자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매입한 자산도 구입 목적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자본자산에 해당하면 더 이상 이들 자산의 거래로 인한 손실을 일반손실로 인정받거나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로 자영업체(sole proprietorship)를 파는 경우 사업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고 사업상의 개별 자산이 각각 일반자산 혹은 자본자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파트너십 지분의 매매도 자본자산으로 간주되며 다만 실현되지 않은 매출채권(account receivable)이나 가격이 상당히 오른 재고물품과 관련된 손익만이 일반소득으로 대우받는다(Sec. 741, 751(a)). 한편 주식은 판매자에게 자본자산으로 존재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다.

세 번째로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의 양도에서 일부는 자본자산으로 우대 세율을 적용받는다(Sec. 1235). 발명자가 증여나 유산이 아닌 방식으로 모든 권리를 양도하면 특허권 사용이 끝날 때까지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나 특허권 사용이나 생산성을 조건부로 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자본자산의 매매로 간주된다. 다만 특허권이 지역적 혹은 기한으로 제한되거나 사용한도가 있거나 하면 자본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Reg. Sec. 1.1235-2(b)).

가맹권(franchise)의 경우 양도자가 상당 수준의 권리나 지분 혹은 조건⁵⁹⁾을 전제하지 않아야 자본자산으로 간주된다. 또한 생산성, 사용 혹은 처분을 조건부로 하는 가맹권의 양도나 판매도 자본자산으로 취급될 수 없다(Sec. 1253). 대부분의 경우 가맹권 양도시 상당한 조건이 전제되므로 가맹권은 대개 일반자산으로 과세되며 가맹권 사용을 전제로 한 양수대금 또한 사업용 경비로 공제된다(Sec. 197(g)).

임대계약의 취소로 임차인이 받은 금액은 임대계약의 교환으로 인한 수입으로 간주된다(Sec. 1241). 이로 인한 손익은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감가상각되지 않는 계약(개인 주택용)은 자본자산으로 간주되고 그렇지 않은 계약(사업용)은 일반자산이나 사업용 자산(Sec. 1231 자산)으로 간주된다. 계약 취소로 인한 수입은 임대인에게 일반 소득에 해당한다. 자산 매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option)의 판매(교환)나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옵션의 성격도 결정된다(Sec. 1234(a)).

라) 보유기간

장기 보유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Sec. 1222).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 다음 날로부터 처분일까지다. 하지만 자산의 맞교환인 경우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이 교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전부 혹은 일부 같으면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대신 인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Sec. 1223(1)). 또한 교환 자산은 자본 자산이거나 Sec. 1231 자산(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자산의 비자발적인 전환(involuntary conversion)도 교환자산처럼 취급된다.

증여로 받은 자산도 증여자나 피증여자의 장부가액이 전부 혹은 일부 같으면 증여된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사람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Sec. 1223(2)). 그러나 증여 당시 자산의 공정가격이 증여자의 조정된 장부가액보다 낮고 자산을 팔 때 손실을 입으면 증여 당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시작한다. 유산의 매매에 따른 손익은 그러나 보

59) 지분 배정을 사전 승인제로 하거나 임의로 가맹권을 취소하거나 양도자의 제품/서비스만을 팔도록 하는 조건, 혹은 양도자의 원료만을 팔도록 하거나 제품 품질 기준을 지정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Sec. 1253(b)(2)).

유기간과 상관없이 장기 보유 자산으로 간주된다(Sec. 1223(11)).

3) 특정 자본에 대한 예외규정

가) 비사업용 악성부채와 무가증권

사업용이 아닌 악성부채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가치가 완전히 없어진 시점에 단기 양도손실로 처리된다(Sec. 166(d)(1)). 또한 과거 부채의 일부를 돌려받았어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으면 그 시점에 양도손실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당하고 채무상환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채무자 관계에서 발생한 선의의 악성 부채만이 공제대상이 된다(Reg. Sec. 1.166-1(c)).

자본자산인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면 해당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에 발생한 양도손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간에 가치가 없어져도 보유기간이 연장되어 단기손실도 장기손실로 취급될 수 있다(Sec. 165(g)(1)).

나) 중소기업 주식

개인 납세자는 일부 중소기업 주식(Sec. 1244 stock)의 매매나 교환 혹은 가치가 없어진 이러한 주식으로부터 얻은 손실을 일반 손실로 간주할 수 있다(Sec. 1244(a)). 공제한도는 개인의 경우 5만달러이고 부부는 10만달러이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손실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주식은 현금과 여타 자산을 대가로 발행된 주식으로 회사의 다른 채권과 교환이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Reg. Sec. 1.1244(c)-1). 중소기업은 주식 발행 당시 투자금 등으로 받은 현금과 여타 자산이 1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이 밖에 총수입의 구성에 대한 제한도 적용된다(Sec. 1244(c)).

일반손실로 간주받으려면 원소유자이거나 처음 취득 당시 파트너십 파트너이어야 하며 따라서 매입이나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주식과 자산의 교환 당시 자산의 조정된 장부가액보다 공정가격이 낮으면 일

반손실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주식평가액은 공정가격이다.

두 번째로 주식회사가 아닌 투자자가 1993년 이후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5년 이상 소유한 원보유자이면 이들 주식의 매매로 인한 양도이익 중 50%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50%는 28%로 과세되며 다만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면세된 양도이익의 42%를 세금우대항목으로 포함한다(Sec. 1202). 면세금액은 동일한 회사 주식의 매매로 인한 이익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지 않거나 이보다 많으면 판매된 주식의 조정된 장부가액 10배 이내에서 가능하다.

다) 기타 자산

중개인이 보유한 주식 등 증권은 재고로 간주되어 일반소득으로 취급되지만 취득한 날 투자용으로 기록한 증권의 매매로 발생하는 손익은 양도손익으로 취급될 수 있다. 분할된 개발 부동산을 매매하는 납세자는 개발업자로 간주되어 일반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이전에 판매용으로 보유하지 않은 토지가 일정 수준 이하(10%)로 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다만 일정 규모(5 lots)를 초과하는 토지 판매는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Sec. 1237).

3) 과세소득의 결정

가) 개인

양도소득은 Schedule D에 신고되는데 1997년 이후 매매에 따른 장기 양도소득은 최고 20%(15% 과세구간 납세자는 10%)의 양도세율이 부과된다. 즉, 20%(10%) 세율은 조정된 순양도 이익(장기 순양도 이익-단기 순양도 손실)에 적용되는데 이 때 조정된 순양도 이익은 수집품, Sec. 1202 매매 이익 그리고 Sec. 1250의 미환수 이익을 제외한 양도이익이다.

환언하면 일부 정부 동전 수집품을 제외한 일반 수집품은 20%가 아닌 28%가 과세되며 일부 중소기업 주식(Sec. 1202)은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이익의 절반은 면세되

는데 이 경우 나머지 절반은 28%로 과세된다. 이외 Sec. 1250에 따라 일반소득으로 과세되었을 장기 양도이익도 제외된다(unrecaptured Sec. 1250 gain: 상각자산 매각이익 중 미환수 통상소득).

과세되는 양도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손익을 네 가지 부류로 구분한다. 첫째 부류는 단기 양도 이익과 손실 그리고 단기 양도손실 이월금을 포함한 단기 손익이다(short term basket). 나머지 부류는 장기 손익으로 둘째, 수집품 손익, Sec. 1202 이익 그리고 장기 양도손실 이월금이 있고(28 percent term basket) 셋째, 납세자 개인소득세 세율로 과세된 이익을 초과하는 Sec. 1250 이익이며(25 percent basket) 넷째, 장기 양도이익과 손실 그리고 환수되지 않은 Sec. 1231 장기 이익이다(20 percent basket).

그 다음으로 ② 단기 양도손실은 먼저 단기 양도이익에서 공제되고 그 다음 28% 부류의 장기 양도 순이익에서 공제되며 다음 25% 이익을 공제하며 마지막으로 20% 순이익에서 공제된다. ③ 28% 부류의 순손실은 먼저 25% 이익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20% 부류의 순이익을 공제한다. ④ 20% 부류의 순손실은 28% 이익 다음 25% 이익을 공제한다. ⑤ 여기서 잔존하는 각 부류의 순양도 이익은 각각의 한계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⑥ 잔존하는 손실은 3,000달러(부부별도신고 1,500달러)까지 공제가 허용되며 나머지는 이월된다.

만약 양도손실이 제한 금액을 초과하면 연도에 제한 없이 이월되어 미래 과세연도에 발생한 양도손실로 간주되어 그 연도의 양도이익과 상쇄된다. 단기와 장기손실이 모두 제한금액을 초과하면 단기 손실이 먼저 적용되며 만약 장기 손실이 있으면 이는 다음 연도에 28% 과세부류에 적용된다.

나) 주식회사

주식회사 양도손익은 개인 납세자와 달리 순양도 이익 즉, 장기 순양도 이익에서 단기 순양도손실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되지 않고 최고 35%의 일반 법인세율로 양도이익이 과세된다. 또한 당해연도 양도이익과 상쇄된 양도손실에서 남은 순손실은 당해연도에 공제되지 않는다. 그 대신 이전 3년 그리고 이후 5년간 이월되어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이익에서 공제되는데 이월된 손실은 단기 손실로 취급된다.

4) Sec. 1231 자산(사업용 자산)

가) Sec. 1231 자산(사업용 자산)

사업 혹은 거래용으로 취득,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감가상각 자산과 토지의 매개로 얻은 순이익은 양도소득으로 처리되고 순손실은 일반손실로 간주되어 양도손실에 적용되는 제한금액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 자산은 주로 기계설비, 사업용 자동차, 토지 그리고 빌딩이며 사업(거래)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산도 포함한다. 즉, Sec. 1231 자산에는 ① 목재, 석탄 그리고 Sec. 631이 적용되는 국산 광물 ② 24개월 이상 보유한 말과 소 그리고 12개월 이상 소유한 가축 ③ 추수하지 않은 작물을 토지와 함께 파는 경우 그리고 ④ 장기 보유한 사업용 자산과 자본의 불가피한 자산 대체 등이 있다. 또한 Sec. 1231 사업용 자산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자산에는 ① 과세연도 종료시점의 재고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판매용으로 소유한 자산 ② 저작권, 예술작품 그리고 개인서류 ③ 판매용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고 정부가 제공한 정부 출판물 등이 있다. 손상이나 절도로 불가피하게 대체되는 자산의 경우 인정되는 순손실(recognized net loss)은 Sec. 1231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손익과 별도로 합산되어 일반손실로 처리된다.

나) 산정방식

대금으로 지급받은 자산의 공정가격을 조정된 장부가액으로 차감하여 실현된 이익(혹은 손실)을 가장 먼저 결정한다. 연후 일반소득으로 환수(재신고)해야 할 이익을 산정한다. 실현된 손실이 있으면 환수가 필요 없다. 세 번째로 12개월 이상 소유한 자산의 손상이나 절도로 발생한 손익을 서로 비교하여 순손익을 결정한다. 이들 손익은 보험 지급금에서 완전히 파기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부분 손상의 경우 피해입은 금액을 의미한다.

만약 손상 혹은 절도로 발생한 이익이 이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과 Sec. 1231 손익을 비교하여 상쇄하거나 합친다. 반대로 손실이 이익을 초과하면 각각의 이익과 손실은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거나 공제된다. 마지막으로 전자의 경우 Sec. 1231 손익과 손상 등으로 인한 순이익은 합쳐져서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⁶⁰⁾. 우선 이익이 손실을 초과하면 순이익은 지난 5년간 환수되지 않은 Sec. 1231 순손실의 한도 내에서 일반소득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은 장기 양도이익으로 인정된다(Sec. 1231(a), (c)). 그러나 만약 손실이 이익을 초과하면 모든 이익과 손실은 일반손익으로 손실은 총소득에서 공제된다.

다) 개인용 자산의 손상과 절도에 의한 손익

손상이나 절도로 개인용 자산을 소득 처리할 때 발생하는 손익은 Sec. 1231의 사업용 자산들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합산된다. 만약 이익이 손실을 초과하면 순이익은 양도이익으로 간주되고 각각의 손실은 조정된 총소득의 10%라는 공제 제한금액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Sec. 165). 손실이 이익을 초과하면 이들 금액은 일반손실로 취급된다. 손실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순손실은 총소득의 10%라는 공제 제한에 적용을 받는다(Sec. 165(h)).

5) 감가상각 공제의 환입(depreciation recapture)

가) 감가상각 공제의 환입: Sec. 1245

Sec. 1245는 납세자가 일반 감가상각 공제를 하고 난 후 사업용 자산(Sec. 1231 자산)의 판매시 이익이 장기 양도이익으로 간주되어 저율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2년에 도입되었다. 이들 자산의 판매로 이익이 실현되면 감가상각분은 일반소득으로 환입된다. 그러나 손실이 실현되면 감가상각의 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60) 이 과정에서 장기 보유한 사업용 자산을 수용 즉, 공공 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몰수하면 이로 인한 손익도 함께 포함한다(condemnation).

Sec. 1245에 귀속되는 자산은 Sec. 1231 자산 중에서 감가 혹은 감모상각되는 개인 자산(개인용이 아님)으로 ① 건물과 그 구조물을 제외한 사업상 중요한 유형자산 ② 특허권과 Sec. 1245 자산의 임차권 등 감모상각 자산 ③ 단일 목적의 농업 구조물 ④ 석유제품 저장설비(건물 제외) ⑤ 철도 경사설비 및 채굴기 등이다. 이외 ⑤ Sec. 179에 따라 경비 처리된 감가상각 자산 ⑥ 장애인을 위한 구조물 제거 경비 ⑦ 환경오염 설비로 조기 원가회수되는 자산(Sec. 169) ⑧ 자녀관리 설비(Sec. 188) ⑨ 정액법이 아니라 조기 원가회수제도(ACRS)에 의하여 법정 비율로 경비가 환입되는 비거주용 부동산도 포함된다.

Sec. 1245 자산의 처분 당시 인정된 이익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으로 기 처리한 금액⁶¹⁾은 일반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일반소득으로 환수한 금액을 초과하는 인정 이익은 Sec. 1231의 이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손실이 인정되면 일반소득으로의 환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감가상각 공제의 환입: Sec. 1250

Sec. 1250 자산은 사업용 자산(Sec. 1231) 중에서 Sec. 1245에 속하지 않는 감가상각 부동산으로 건물 및 그 구조물과 여타 감가상각 부동산을 포함한다. 또한 토지와 Sec. 1250 자산의 임차권 등 무형 부동산도 포함한다.

1964년에 도입된 Sec. 1250의 목적은 Sec. 1245와 달리 전체 감가상각분을 환수하지 않고 정액 대비 조기 감가상각으로 인한 과도한 공제를 환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상각자산 매각이익 중 미환수 소득). 동 조항의 규정을 받는 자산은 인정된 이익과 초과 감가상각분 가운데 적은 금액을 일반소득으로 신고하고 이렇게 환입되지 않은 부분만 Sec. 1231의 양도이익으로 신고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물론 Sec. 1231 자산의 일반 손실로 처리된다.

초과 감가상각분은 실제로 감가상각한 금액에서 정액방식을 도입하였을 때 얻는 감가상각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자산의 보유기간과 형태에 따라 일정 비율이 초과분에

61) Sec. 179상의 비용도 포함하여 환입한다.

적용된다. 1997년 이후 법령의 변화로 이렇게 환입되지 않은 이익은 25%의 장기 양도 이익으로 과세되고 나머지 금액은 Sec. 1231의 이익으로 20%에 과세된다. 1년 이하로 보유한 자산은 물론 일반소득으로 처리된다.

다) 감가상각 공제의 환입: 기타

자산을 증여하면 감가상각분은 피증여자에게 전가되어 자산 매매시 이전에 증여자가 공제한 감가상각도 환입하여야 한다(Sec. 1245(b)(1), (d)(1)). 그러나 상속받은 자산은 감가상각 금액을 환입할 필요가 없다. 유사자산을 교환할 경우 손익을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자산(boot)을 받으면 이는 환입이 적용되는 일반소득으로 취급된다. 또한 Sec. 1245나 1250 자산을 자선 기부하면 공제기부금에서 감가상각의 환입금은 제외된다(Sec. 1245(b)(4)). 대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 환입금은 판매 당시 과세연도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Sec. 453(i)).

마. 보유기간과 양도소득 세율

자본자산의 처분에 따라 자본손익이 실현 및 인정되면 이러한 손익이 장기 혹은 단기 손익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만약 자산을 1년 이하 보유하였으면 손익은 단기가 되며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손익은 장기 손익이 된다. 단기 양도이익은 개인소득세 세율로 과세된다.

2002년 당시 과세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 순이익(NCG)은 장기 순이익에서 단기 손실실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된다(Sec. 1222(11)). 양도 순이익은 8%, 10%, 18%, 20%, 25%, 28%의 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양도 순이익의 일부나 전부는 조정된 양도 순이익(ANCG)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율은 10%와 20%이다. 나아가 2001년 이후에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양도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이 최저 8% 혹은 18%가 될 수 있다(Sec. 1(h))⁶²⁾.

62) 2003년 5월 이후에는 20% 세율이 15%로 경감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10% 세율은 5%로 경감된다. 그 대신 8% 우대세율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

우선 단기 양도 순이익(NSTCG)의 경우 한 과세연도의 총단기 양도이익이 총단기 양도손실을 초과하면 이를 단기 양도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이를 장기 양도 순손실과 상쇄할 수 있다. 장기 양도 순이익(NLTTCG)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정의되는데 양도 순소득은 전술한대로 장기 양도 순이익에서 단기 양도 순손실을 제외한 금액이다.

1997년 이후 매각으로 인정된 조정된 양도 순이익(ANCG)에 대하여 주식회사를 제외한 납세자는 20%의 세율로 과세되며 나아가 납세자의 한계세율이 15% 혹은 그 이하이면 10%로 과세된다(Sec. 1(h)). 조정된 양도 순이익은 양도 순이익에서 1) 예술품, 동전, 고서화, 우표 등 수집용 자산의 양도이익 2) Sec 1202에 의하여 소기업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이익의 일부(50%) 그리고 3) Sec. 1250 미환수 이익(unrecaptured gain)을 제외한 이익이다. 이들 중 처음과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양도 이익은 최고세율이 28%이므로 28% 이익으로 불린다. 이에 비하여 세 번째 이익은 최대 25%로 과세된다.

양도손실(CL)은 조정된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본자산을 처리할 때 발생한다. 양도손실도 양도이익과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다.

우선 만약 특정 연도의 단기 양도손실이 단기 양도이익을 초과하면 단기 양도 순손실(NSTCL)이 되는데 이 금액은 우선 양도 순이익(NCG)을 얻기 위하여 장기 양도 순이익(NLTTCG)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만약 단기 양도 순손실이 장기 양도 순이익을 초과하면 이때 발생하는 양도손실은 주식회사를 제외한 납세자의 경우 매년 3,000달러를 한도로 다른 일반 소득과 1:1로 상쇄, 즉 공제될 수 있다(Sec. 1211(b), 부부별도 신고는 1,500달러). 3,000달러를 초과하는 단기 양도 순손실은 납세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이 추후에 이월되어 장기양도소득과 상쇄되고 일반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한편 만약 단기 양도 순이익(NSTCG)과 장기 양도 순손실(NLTCL)이 공존하면 장기 양도 순손실은 단기 양도 순이익과 1:1로 서로 상쇄된다. 또한 장기 양도 순손실이 단기 양도 순이익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매년 3,000달러를 한도로 일반소득으로부터 1:1로 공제된다. 만약 개인이 동시에 장기와 단기 양도 순손실을 갖게 되면 단기 양도

에는 5%가 적용된다. 이외 Sec. 1(h)(11)에 적용되는 일부 배당소득에도 이와 같은 양도세 세율이 적용된다(JGTRRA of 2003).

순손실이 우선 일반소득에서 공제된다.

거래손실(transaction loss)은 과세목적상의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이 매매되는 별개의 두 상황이 있을 때 발생한다. 한 과세연도에 공제 가능한 손실은 제한되며 이는 개인, 영업 그리고 자본손실로 구분되어 한도가 적용된다. 특히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인손실은 공제되지 않고 자본손실은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제한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영업 손실은 발생하는 대로 모두 공제된다.

두 번째 손실은 초과손실(annual loss)로서 한 과세연도에 공제 가능한 손실이 당해 연도에 보고된 소득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이에 대한 과세상의 대우는 손실이 발생한 활동에 따라 변한다.

6. 소득세 세율과 세액결정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되면 과세표(tax table)에서 소득세 금액을 찾을 수 있다. 2002년 당시 연방소득세 소득구간은 6개구간으로 나누어져 10, 15, 27, 30, 35, 38.6%의 한계세율이 각각 적용되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10%와 15% 구간을 제외한 중·고 소득층 세율을 2~3.6%p 인하하여 한계세율을 10~35%로 조정하였다.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신고자의 과세신고 자격(filing status)에 따라 다르다. 신고 자격은 부부합산, 부부별도, 독신, 가장 그리고 생존한 배우자 신고로 구분되는데 생존한 배우자의 경우 부부합산과 같은 수준에서 과세된다. 이외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독신자로 처리된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부합산과 생존 배우자가 가장 높고 가장 그리고 독신의 순서이므로 부부로서 신고할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부부합산 신고(joint return)를 하려면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에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어야 하며 양쪽이 모두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모든 소득을 미국측 배우자 신고서에 신고한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부부합산이 가능하다(Sec. 6013(g)). 한편 부부일지라도 절세가 가능하다면 부부합산이나 부부별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표 II-25> 신고자 자격에 따른 세율 및 과세구간(2000~2003)

(단위:달러, %)

한계세율	독신자	부부별도	부부합산	가장
2000:				
15	0~26,250	0~21,925	0~43,850	0~35,150
28	26,250~63,550	21,925~52,975	43,850~105,950	35,150~90,800
31	63,550~132,600	52,975~80,725	105,950~161,450	90,800~147,050
36	132,600~288,350	80,725~144,175	161,450~288,350	147,050~288,350
39.6	288,350 이상	144,175 이상	288,350 이상	288,350 이상
2001:				
15	0~27,050	0~22,600	0~45,200	0~35,250
27.5	27,050~65,550	22,600~54,625	45,200~109,250	36,250~93,650
30.5	65,550~136,750	54,625~83,250	109,250~166,500	93,650~151,650
35.5	136,750~297,350	83,250~148,675	166,500~297,350	151,650~297,350
39.1	297,350 이상	148,675 이상	297,350 이상	297,350 이상
2002:				
10	0~6,000	0~6,000	0~12,000	0~10,000
15	6,000~27,950	6,000~23,350	12,000~46,700	10,000~37,450
27	27,950~67,700	23,350~56,425	46,700~112,850	37,450~96,700
30	67,700~141,250	56,425~85,975	112,850~171,950	96,700~156,600
35	141,250~307,050	85,975~153,525	171,950~307,050	156,600~307,050
38.6	307,050 이상	153,525 이상	307,050 이상	307,050 이상
2003:				
10	0~7,000	0~7,000	0~14,000	0~10,000
15	7,000~28,400	7,000~28,400	14,000~56,800	10,000~38,050
25	28,400~68,800	28,400~57,325	56,800~114,650	38,050~98,250
28	68,800~143,500	57,325~87,350	114,650~174,700	98,250~159,100
33	143,500~311,950	87,350~155,975	174,700~311,950	159,100~311,950
35	311,950 이상	155,975 이상	311,950 이상	311,950 이상

자료: T. Pope, K. Anderson and J. Kramer, *Prentice Hall's Federal Taxation 2004*, Prentice Hall, 2003, US 및 IRS 1040 Return

미망인 등 생존한 배우자(surviving spouse)는 상대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로부터 2

년간 생존한 배우자의 자격으로 신고가 가능하다⁶³⁾(Sec. 2(a)). 그러나 이와 같은 자격을 유지하려면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최소 1명의 피부양자가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주택비용의 절반 이상을 신고자가 부담했어야 한다.

가장으로서의 신고(head of household)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미혼 상태로 생존 배우자가 아니며 피부양자인 가족이 절반 이상의 기간을 같이 사는 주택의 가장으로서 주택비용의 최소 절반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Sec. 2(b)). 단 피부양자인 부모는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혹은 같이 거주하는 미혼 직계자녀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피부양자일 필요가 없다. 방기된(abandoned) 배우자는 최근 6개월간 상대 배우자와 별거 상태로서 반년 이상 피부양자 자녀와 같이 사는 주택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였으면 가장으로서 신고가 허용된다(Sec. 152(e)). 마지막으로 생존 배우자가 아니며 가장도 아닌 미혼자는 독신의 자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세율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비용(cost of living)과 연계되어 있다(Sec. 1).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소득은 변화가 없어도 명목소득이 부풀려져 세금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부 소득에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로소득⁶⁴⁾이 있는 피부양자는 소득세상 특별관리를 받는다. 이는 과거 고소득층이 자녀나 기타 부양자에게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피부양자는 자신의 소득세 신고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표준공제액은 750달러와 4,750달러를 한도로 피부양자의 근로소득+250달러에서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 또한 14세 이하 자녀의 순불로소득(net unearned income)이 1,500달러를 초과하면 이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는 자녀의 한계세율로 나머지는 부모의 한계세율에 따라 결정된다(Form 8615, kiddie tax).

자녀의 세금은 다음의 3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1) 자녀의 과세대상 소득 2) 순불로소득 = 불로소득 - \$750 표준공제액 - (\$750 혹은 불로소득의 창출에 직접 관련된 상세 공제액 중 큰 금액) 3) 자녀의 총세금 = 순불로소득×부모의 한계세율 + (과세

63)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에는 부부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64) 불로소득은 배당, 과세대상 이자, 자본이득, 임대료, 로열티 등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소득을 의미한다(Sec. 1(g)(4)).

대상소득 - 순불로소득)×자녀의 한계세율. 한 예로 14세 이하의 어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900달러를 벌고 배당소득이 2,000달러이면 과세대상 소득은 1,750달러이다(2,900-900-250). 한편 불로소득은 500달러(2000-750-750)이다. 따라서 이 자녀의 총세금은 순불로소득 500달러에 부모의 한계세율(0.27)을 곱한 135달러와 과세대상소득에서 순불로소득을 제외한 1,250달러(1,750-500)에 자녀의 한계세율(0.10)을 곱한 125달러를 더한 260달러이다.

부모는 14세 이하의 자녀가 벌어들인 이자, 일반 배당 그리고 양도소득 등의 불로소득을 모두 자신의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는 대신 자녀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Form 8814, Sec. 1(g)(7)). 그러려면 자녀의 소득이 모두 불로소득으로 7,5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7. 신고와 납부

가. 소득세 신고와 납부

소득세 신고는 자발적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self assessment). 그러나 전술한 대로 근로소득, 연금 등은 원천징수되고 자영업자 소득, 거래 및 영업소득, 이자 그리고 배당 등은 추정세금을 매분기에 납부하므로 소득세 신고시 정산이 이루어진다.

<표 II-26> 신고가 필요 없는 최대 소득(2002~2003)

(단위:달러)

	2002	2003		2002	2003
독신	7,700	7,800	생존배우자(65세 이상)	15,650	15,950
독신 (65세 이상)	8,850	8,950	부부별도	3,000	3,050
부부합산	13,850	14,050	부부별거	3,000	3,050
부부합산 (65세 이상)	15,650	15,950	가장	9,900	10,050
생존배우자	10,850	11,000	가장 (65세 이상)	11,050	11,200
생존배우자(65세이상)	15,650	15,950	부부별도	900	950

자료: T. Pope, K. Anderson and J. Kramer, *Prentice Hall's Federal Taxation 2004*, Prentice Hall, 2003, US.

일정 수준 이하의 총소득⁶⁵⁾을 창출한 사람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는데 그 기준은 납세자 자격(filing status)에 따라 다르다(<표 II-26> 참조). 일반적으로 총소득이 인적공제와 표준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총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EIC(Earned Income Credit)를 받은 사람과 순 자가소득(self employment)이 400달러 이상인 사람 그리고 다른 납세자의 피부양자로 신고된 사람으로서 불로소득이 750달러 이상이거나 총소득이 표준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소득액수와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과 유산, 상속신탁기금 그리고, 파트너십의 신고기일은 매년 4월 15일이다 (Sec. 6072(a)). 신고기일 이전에 신청하는 사람(Form 4868)에게는 자동적으로 4개월간 소득세 신고가 연장된다. 그러나 세금의 납부는 연장되지 않고 추정된 세금을 연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g. Sec. 1.6081-4(a)(1)-(5)). 나아가 2개월간 추가 신고 연장도 가능하다. 신고서식은 소득규모와 신고 내용이 얼마나 상세한가에 따라 1040, 1040A 그리고 1040EZ가 있다.

나. 사업소득

65)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거주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해외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총소득의 개념이다(Sec. 6012(c)).

사업소득이 신고되는 방식은 소득주체에 따라 다르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을 Form 1040 양식 C에 다른 소득과 함께 개인소득세로 신고한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인 유형인 C 주식회사(C 법인)와 flow through entity인 S 주식회사로 구분된다⁶⁶⁾. S 유형은 과세 목적상 독립된 주체로 간주되지 않고 그 대신 주주들은 S 주식회사의 (일반)소득을 비록 배당이 되지 않았어도 소유 주식비율에 따라 자신의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S 주식회사의 양도소득, 손실, 그리고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개별 주주들의 소득신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S 주식회사는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Form 1120S로 신고하여 비용을 제외한 잔여소득(일반소득)을 산정, 보고하고 이외 각종 양도소득, 손실, 그리고 기부금도 보고하여야 한다. 매년 약 300만개에 이르는 S 주식회사가 소득신고를 하며 파트너십은 200만개에 이른다. 파트너십도 소득신고에 있어서는 S 주식회사와 같이 간주되어 세금이 소유주에게 전가되며 보고내용이나 소득의 배분방식이 동일하다.

다. 자녀 및 부양자의 소득신고

1) 부양가족 소득신고

부모 등의 소득신고시 부양자로 신고될 수 있는 자녀 등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기준은 부양가족의 나이와 근로 및 비근로소득 규모에 달려 있다. 한 예로 <표 II-27>에서 보듯이 만약 어떤 부양자가 65세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4,000달러에 이르면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소득이 4,700달러를 초과하면 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⁶⁷⁾. 다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7,500달러 이하의 배당 및 이자소득을 얻으면 이 소득은 부모의 소득과 합하여 부모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밖에 근로소득과 비근로

66) S 주식회사로서 간주되려면 모든 주주가 동의하여야 하며 주주의 수가 75명을 초과할 수 없다.

67) 이 밖에 소득이 기준치에 못 미쳐도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 이상이거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이 있거나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한다거나 등의 이유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소득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공식에 의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표 11-27> 자녀 및 부양자의 소득신고가 필요한 기준 소득(2002)

(단위:달러)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독신		독신	
65세 이하	4,700	65세 이하	750
65세 이상 또는 맹인	5,850	65세 이상 또는 맹인	1,900
65세 이상 그리고 맹인	7,000	65세 이상 그리고 맹인	3,050
혼인		혼인	
65세 이하	3,925	65세 이하	750
65세 이상 또는 맹인	4,825	65세 이상 또는 맹인	1,650
65세 이상 그리고 맹인	5,725	65세 이상 그리고 맹인	2,550

자료: 「Tax Rules for Children and Dependents」, Pub. 929. IRS, US.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어린 자녀 등의 경우 부모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어도 된다. 만약 자녀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부모 등의 소득신고에서 부양자로 신고될 수 있는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신고시 750달러와 250달러를 근로소득에 합한 금액에서 보다 큰 금액을 표준공제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금액이 일반 표준공제(2002년 4,700달러)보다 많을 수는 없다. 그러나 결혼한 부양자의 경우 배우자가 상세공제를 하면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고 외국인 신고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부양자로 신고되는 사실과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14세 이하 자녀의 투자소득

14세 이하의 자녀가 1,500달러 이상의 이자 및 배당 등 투자 소득을 받으면 그리고

자녀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투자 소득의 일부가 본인이 아닌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Form 8615).

또한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14세 이하 자녀의 투자소득을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부모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즉, 자녀 소득이 이자와 배당소득(양도소득 포함)만으로 구성되고 소득이 7,500달러 이하이며 자녀 이름으로 추정 납부한 세액이 없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Form 8814).

라. 신고위반과 제재조치

1) 신고 심사와 조사

미국 국세청은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이상 징후를 발췌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심사한다(Discriminant Function System). 이외에도 신고서 중 일부를 확률적으로 추출하여 자세히 조사하며(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신고 자료의 누락 여부를 조사하기도 하고(Program document perfection program), 최근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심사기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신고와 대조해 보는 것이다(information matching program). 한편 주기적으로 바뀌는 기준에 따라 특별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special audit program).

심사방식은 첫째, 우편을 통한 문답과 증빙자료 요청 등 일상적인 성격의 문답심사(Correspondence examination)가 있다. 둘째, IRS 지역 세무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실 심사(Office examination)는 중간층 소득, 비영업소득과 소규모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를 주 대상으로 한다. 심사 개시전 서면으로 조사날짜와 시간 그리고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가 통보되는데 사무실 조사는 대개 비공식적이며 세무공무원이 법과 규정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이러한 심사는 대개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조사하기보다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종결된다.

현장조사(Field examination)는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심사는 납세자의 영업장이나 납세자의 회계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후 세무요원은 보고서(revenue agent's report

RAR)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 동의서(Form 870; a waiver of restrictions on assessment)를 작성한다. 이들 문서와 함께 납세자 권리에 대한 IRS 문서가 납세자에게 보내진다(30-day letters). 납세자는 Form 870에 사인을 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등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는데 동의 사실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에 법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공소 기한

미국 소득세 신고의 연장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4개월(신탁기금, 파트너십 3개월)이 연장되는데 신고 연기가 세금 납부를 지연시킬 수 없고 추정된 납세 의무액을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나 국세청은 제한된 기일 내에는 납세신고에서 발생한 오류를 정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정정이 가능하지 않다(stature of limitations). 일반적으로 신고한 날이나 신고만기일 중 나중 일자로부터 3년이 공소기한이다(Sec. 6501(a), (b)(1)). 이에 대한 예외는 납세자가 총소득의 25% 이상을 누락 신고하였을 때로 공소기한은 6년으로 늘어나며 고의적 오류(fraudulent)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기한이 없다(Sec. 6501(e), (c)).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자가 가산된다(Sec. 6621(a)). 또한 납세자가 환급을 받을 경우 국세청이 신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면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서 환급을 하지 않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환급금에도 이자가 붙는다(Sec. 6611(e)).

한편 벌금은 위법 내용에 따라 다른데 우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 한도 25% 이내에서 순납세 의무액의 5%(혹은 그 일부)가 매월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Sec. 6611(e)). 두 번째로 납세 만기일까지 연체된 세금은 최고 한도 25% 이내에서 순납세 의무액의 0.5%(혹은 그 일부)가 매월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Sec. 6611(a)(1)). 이 두 가지 처벌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연체에 따른 벌금이 경감되지만 국세청이 납세자의 자산에 벌금을 부여한다는 통보가 있는 후에는 벌금이 1%로 증가한다(Sec. 6651(c)(1)). 한편 Sec. 6651(f)에 따라 고의적 오류에 의한 신고의 경우 최고

75% 한도 내에서 월 15%로 벌금이 증가한다.

무지나 일반적 오류 혹은 실질적인 과소 신고와 잘못된 평가는 과소 신고액의 20%가 벌금으로 부과되며(Sec. 6611(e)) 사기에 의한 신고는 75% 그리고 납세 의무액의 과소납부에는 현행 이자율에 기초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Sec. 6662, 3, 6654). 이러한 벌금에 추가하여 미국 정부는 민·형사상의 사위행위에 대하여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형사상의 사위행위에는 최고 10만달러 혹은 5년형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 징벌이 동시에 가해질 수 있다.

3) 이의신청

조사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IRS (Appeals Division)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해 기관은 소송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나 법 해석이 애매하면 IRS 보고서에 문제점이 없더라도 이의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추가 부과금이 2,500달러를 상회하면 납세자는 항의서(protest letter)를 제출해야 하며 이하의 금액이나 문답조사와 사무실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항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과정에서 IRS와 합의에 도달하거나 더 이상 이의절차를 밟기 싫은 납세자는 Form 870(Form 870-AD: IRS가 일부 결정에 대하여 양보한 경우)에 사인하고 잔금과 벌금 및 이자(의무가 있는 경우)를 납부한다.

합의에 이루지 못한 납세자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잔금예정고지서(statutory notice of deficiency)가 보내지며 소송을 원치 않을 경우 납세자는 그 후 90일 이내에 통보된 잔금을 지불하면 된다. 납세자가 자신이 선택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단 잔금을 내고 법원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잔금을 납부하기 싫은 납세자는 고지서의 수령 후 90일 이내에 미국 국세심판소(Tax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8.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가. 비거주 외국인

앞에서 논의한대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non-resident alien)의 경우 과세방식이 상당히 다르다. 거주 여부는 국제조세협약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법에서 정한 거주 외국인이 아닌 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된다. 거주 외국인은 영주권자나 특정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있는 등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머무른 자는 과세목적상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된다(substantial presence test).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183일 이내 동안 미국에 있었고 외국을 납세지국(tax home)으로 하며 미국보다 납세지인 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비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된다.

나. 과세소득

1) 발생지 원칙(국내원천소득, US source income)

비거주 외국인은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발생지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창출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 등의 보수와 임금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미국 역내와 역외지역에서 번갈아 서비스를 제공하면 날짜 기준으로 배분한다. 선박이나 비행기의 사용 혹은 이와 관련된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미국에서 출발하여 미국에 도착하는 교통 서비스는 전부 미국 소득이며 한 쪽만 미국에서 발생하면 50%가 미국 소득이다.

이자소득의 경우 지급장소나 방식과 관계없이 미국인, 미국기업 그리고 미국에서 거래나 사업을 영위한 외국기업이 지급한 이자는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 3년간 80% 이상의 총소득을 미국 이외 지역에서 창출한 미국기업 등이 지급한 이자, 상업은행의 외국지사 계좌에 지급한 이자 등은 예외이다. 배당소득의 경우 외국기업이 지급한 배당은 역외소득으로 비과세되지만 지난 이 기업의 3년 동안 총소득 가운데 25% 이상이 미국 내 사업이나 거래와 실질적인 연관이 있으면 배당 가운데 일부는 과세된다.

<표 II-28> 소득의 성격과 발생지 기준

소득의 성격	발생지 기준
임금 및 보수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
사업소득	
개인 서비스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
재고판매(매입)	판매된 장소
재고판매(매출)	분배
이자소득	지급자의 거주지
배당소득	미국 혹은 외국기업: 외국기업도 미국내 사업과 관련 있으면 예외
임대료, 부동산 매매	자산의 위치
로열티	
천연자원	자산의 위치
특허저작권	자산의 사용 장소
개인자산의 매매	판매자의 납세지(예외 존재)
연금	연금소득을 창출한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
천연자원 판매	수출지에서의 공정가격으로 분배(Sec. 1.863-1(b))

자료: 「US Tax Guide for Aliens」, Pub. 519, IRS, 2004.

미국에 위치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료나 로열티도 미국 소득이며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무형자산의 사용료 등도 미국소득이다. 부동산 소득도 미국내 자산은 미국소득이며 미국 이외 지역에 위치한 광산, 농장, 원유매장, 목재 등도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일부가 과세된다.

기구나 기계 등 개인자산의 경우 납세지(tax home)⁶⁸⁾가 미국이면 미국 소득이다. 재고는 구매장소와 관계없이 판매장소에 따라 소득 발생지가 결정되지만 미국에서 생산, 해외에서 판매한 재고는 일부는 국내 소득으로 본다. 이외에도 미국이 납세지가 아니지만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자산의 판매 수익은 미국 소득이다. 그러나 미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하며 외국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판매는 미국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지가 미국이면 외국 사업장에서 판매

68) 납세지는 가족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주된 사업 혹은 고용장소를 말한다. 주된 사업장이 없으면 가족의 거주지가 납세지이다.

된 자산의 경우 외국에서 판매수익의 10% 이하를 과세하면 미국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재고, 감가상각 자산, 무형자산 제외).

미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되는 무형 개인자산에 대한 로열티 혹은 국내 금융활동으로 발생한 배당과 이자 등의 경우 비록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외 원천소득(foreign source income)이라도 다음의 상황에서는 미국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첫째, 관련 소득이 사실상 미국내 사업장의 소득으로 귀착되는 경우 둘째, 미국 사업장이 소득 창출에 실질적 요인이 된 경우, 셋째, 미국 사업장의 일반 사업활동으로 창출된 경우.

2) 비과세소득

미국내 사업이나 거래와 관계없는 그러나 미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은행이나 보험사 이자소득이면 비과세된다(일부 채권투자 이자 포함). 외국 고용주가 지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도 다음의 경우 면제된다. 첫째,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기업이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한 보수로 미국에 90일 이내 일시 체류하는 동안 3,000달러 이상 지급된 보수, 일시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선박 등의 승무원 보수, 외국기업이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된 보수. 주택의 경우 독신은 25만달러, 부부는 50만달러까지 판매이익이 면제된다.

3) 연관성과 미국내 사업(거래)

비거주자 소득세 과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첫째, 미국 국내거래 혹은 사업이며 두 번째로는 그러한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 여부이다. 우선 미국 국내 사업이나 거래는 미국에서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단, 중개인을 통하여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내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실질적 관련성(effective connection)이란 납세자가 국내 사업이나 거래를 영위하는 상태에서 미국 역내에서 취득한 손실, 소득 등은 미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소득

으로 취급된다. 이는 미국내 사업과 소득 사이에 관련성 여부를 떠나 적용된다. 다만 투자소득은 예외적으로 자산의 사용이나 사업활동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실질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고 실질적 연관이 없으면 30% 원천징수를 한다. 즉, 사업활동을 통하여 직접 창출된 소득이 아니면 미국내 사업을 위하여 사용 혹은 사용을 위하여 보유한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인지를 검토한다(asset use test). 두 번째로 미국내 사업활동으로 직접 창출한 투자소득은 중개인 등을 통하여 얻은 배당이나 이자와 특허권 거래의 사용료 등이다(business activities test).

다. 세율과 신고방식

1) 세율

미국에서 과세되는 비거주자 소득은 미국 국내원천소득(US source income)으로서 국내소득일지라도 실질적 연관성 여부에 따른 두 부류로 나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우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 국내거래나 국내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은 일부 공제를 한 후 미국시민과 같은 일반세율로 누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미국에서 사업이나 거래를 영위하면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미국 국내소득은 누진과세되지 않고 총소득의 30%가 일률세율로 원천징수되거나 또는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30% 세율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액수가 사전에 고정되거나 결정된 혹은 주기적인 이윤이나 소득에 부과된다. 비거주자가 받은 사회보장 수혜의 85%도 이러한 범주에 해당되어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 국내사업이나 거래와 실질적인 연관이 없는 미국내 양도소득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연도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였으면 순양도차익에 대하여 30%로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183일 이내 거주한 납세자는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이나 광산 등의 사용료 혹은 임대료 그리고 목재나 석탄 등의 판매로 얻은 이익은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간주할 수 있다.

2) 신고방식

비거주 외국인인 Form 1040-NR이나 1040-EZ를 작성, 소득을 신고하는데 미국 국내소득은 전술한 대로 실질적 연관성에 따라 구분된다. 비거주 외국인도 공제를 거주 외국인과 같이 받지만 그러한 공제는 인적공제와 일부 상세공제 항목을 제외하면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소득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 예로 미국에서의 사업으로 발생한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비는 미국내 사업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공제되며 손실도 마찬가지이다.

개인공제(2002년 3,000달러)는 일반적으로 본인만이 가능하며 다만 조세협약으로 캐나다나 멕시코 주민은 배우자 그리고 한국과 일본 주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독신으로 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조정된 소득이 137,300달러를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하향 조정된다. 비거주 외국인인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세공제의 경우 실질적 연관성이 있으면 거주 외국인과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조정된 소득이 137,300달러보다 많으면 공제가 제한된다. 한편 세액공제의 경우 미국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이 있고 미국 이외 지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며 자녀 관리비, 퇴직연금 등도 세액공제된다.

9.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소득세와 실질세율

미국에서 소득세 과세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지방정부의 경우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연방정부 과표를 이용하거나 연방정부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징수한다.

연방소득세는 미국 세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2002년 당시 전체 내국세 징

수액의 51.5%를 차지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세를 포함하면 그 비중은 약 86%에 이르게 된다. 소득세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 이외에 파트너십, 개인회사, S 주식회사 그리고 유산신탁기금 등의 소득이 업체 차원이 아닌 소유주 차원의 개인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세의 단순화와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은 미국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과제이다.

연방소득세의 결정은 포괄적 의미의 종합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난 총소득의 산정에서 출발한다.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사업 및 일부 투자경비 등의 사업공제(business deduction)를 제하면 조정된 총소득(AGI)이 되는데 이 것이 일반적인 개념의 소득이다. 조정된 총소득(AGI)에서 개인경비와 인적공제 등의 개인공제(personal deduction)를 제하면 과세소득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공제 이전의 소득세가 된다.

미국의 경우 2002년을 기준으로 소득세 명목세율은 0~38.6%에 이르지만 과세소득 대비 평균세율은 대략 21%에 달한다. 또한 전체 개인소득 대비 실질세율은 10%를 상회하여 각종 사업 및 개인공제가 실질세율을 절반 정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개인소득에서 조정된 총소득의 비중은 약 85%에 이르고 과세소득의 비중은 50%를 전후한다. 따라서 각종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절반에 이른다. 이외 각종 세법의 변화를 감안한 조정된 총소득(AGI)의 분포를 보면 1986년 당시 상위 10%(1%) 계층이 전체 조정된 총소득의 35.1%(11.3%)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이 되면 그 비중이 46%(24.1%)에 이르러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소득신고

미국에서 총소득(gross income)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면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을 포함한다. 어떤 납세자가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현금 혹은 자산 등은 해당 납세자의 소득이며 불법소득도 실현된 소득이라면 총소득에 포함된다. 또한 소득을 창출하는 재원을 보유한 납세자가 자식에게 이로 인한 소득을 주거나 채무의 대납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위장 처분하여도 해당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불로소득은 부모의 소득에 포

함되어야 할 수도 있다.

총소득은 포괄적 개념으로 근로소득, 사업비용을 제외한 사업소득, 투자소득 혹은 불로소득, 보험 지급금과 연금, 유산신탁기금으로부터의 지급금 그리고 위자료, 실업수당, 상금 등 이전소득을 포함한다. 어떤 소득이 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현금이 아닌 보상은 공정한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capital gain)은 양도세율로 달리 과세된다.

장부가액의 환수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 소득이 아닌 자금의 배당은 원금 회수이며 연금에서도 원금이 아닌 이익만이 과세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손상 보험금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된다. 이 밖에 공제받은 비용도 나중에 환수되면 과세신고해야 한다.

공제항목에는 조정된 총소득 전 공제(for)와 조정된 총소득 후 공제(from)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로 사업성 경비, 소득창출 경비 그리고 극히 제한된 개인경비이다. 대부분의 투자 등 소득창출 경비와 개인경비는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의 공제이다. 전자의 경우 공제의 제한이 없는 반면 후자는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중요하다.

사업비용은 제한 없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있고 통상적이고 필요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특히 사업경비는 납세자의 사업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주식투자 경비는 사업경비가 아닌 투자 혹은 소득창출을 위한 경비로 조정된 소득으로부터 공제된다(후 공제항목).

또한 사업손실은 일반손실(ordinary loss)로서 제한 없이 공제되지만 투자손실은 양도손실(capital loss)로 간주되어 과세상 처리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외 순영업손실은 이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납세자가 세금회피를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투자 혹은 사업 활동으로 입은 손실은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된다(passive loss).

자본성 경비는 일반 공제가 아닌 감가상각 공제되며 면세소득이나 불법소득 관련 경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 목적의 경비도 마찬가지이다. 이외 정치자금과 일부 로비성 경비 그리고 위장된 주식매매(wash sales)는 공제되지 않으며 특수 관계자 거래(related parties)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경비도 공제가 제한되고 특히 이 경우 위장 소

유와 거래를 막기 위하여 실질적 소유권(constructive ownership)을 고려한 공제를 한다. 선물은 1인당 25달러 이내에서 공제되며 출장비 등은 특히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비용의 50%가 공제된다. 이외 75달러 이상의 접대비는 영수증을 포함,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사업성 경비를 제외하면 조정된 총소득을 위한 공제(전 공제)에서 개인공제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교육용 부채이자, 위자료 지급, 연금)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지방세)의 공제가 있고 투자성 경비에서는 임대 및 로열티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경비의 공제만이 허용된다.

조정된 총소득 후 공제항목(from)에는 소득과 관련 없이 공제되는 표준공제(2003년 부부 7,950달러)와 소득수준에 따라 금액의 제한이 있는 상세공제로 나뉘는데 상세공제 항목은 주로 투자경비와 개인성 경비이다. 이 중 개인경비는 의료비, 외국세액, 재산세, 주택부채 이자, 자선기부금, 손상 및 절도손실 등 정책 혹은 정치적 목적의 일부 경비로 제한된다. 상세공제는 소득의 일부로 제한되거나 혹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어야 공제되기도 하고 고소득층의 경우 상세공제 금액을 제한하기도 한다. 한편 납세자와 부양가족도 1인당 3,050달러가 공제된다. 따라서 3인 가족의 경우 표준공제를 포함하면 총 17,100달러에 이르는 가족의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단, 총소득이 331,750달러에 이르면 인적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소득세와 상쇄되므로 일반공제에 비하여 혜택이 크다. 고용증대, 환경보존, 연구 장려, 자녀부양 그리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세액공제가 있다. 이들 항목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 되지 않는다.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일종의 소득 지원금(negative income tax)으로 비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욕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자녀수와 소득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이 변한다.

미국에서는 고소득층이 각종 공제나 감면세를 통하여 세금을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경비만 총소득을 위한 공제로 하고 또한 한도금액도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이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최저한세 제도(AMT)를 도입하고 있다. 납세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소득세와 과세소득과 일부 세금우대 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그 중 많은 쪽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고소득

층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연방소득세는 과세소득에 따라 10~35%의 6개 구간으로 나뉘어 과세된다. 미국에서는 과세구간과 공제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이외 전술한 대로 불로소득이 있는 자녀는 특별 관리를 받아 1,500달러를 초과하는 일부 소득은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되며 자영업이나 사업소득은 분기별로 추정세액 신고되며 나중에 정산된다.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면 신고가 필요 없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대상자,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 이상인 납세자, 불로소득이 750달러 이상이거나 총소득이 표준공제를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 양도소득

1922년부터 자본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일반자산의 거래로 인한 손익과 달리 취급된다. 이 때 자본손익은 자산의 거래로 인한 실현된 매각금액에서 조정된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자본은 대개 투자자산을 의미하며 특허권과 영업권도 자본으로 간주된다. 개인자산의 매매 이익은 양도이익이지만 손실은 양도손실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은 투자자산이 아니다. 다만 감가상각되는 사업용 자산과 토지는 장기 양도이익이나 일반손실로 취급받을 수 있다(Sec. 12131).

개인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순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일반세율보다 낮은 8~20%로 과세되며 일반 주식회사(C 법인)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순양도소득은 장기 순양도이익에서 단기 순양도손실을 제한 금액이다. 또한 5년 이상 장기로 보유한 자본의 처분에 따른 이익은 5~15%의 세율로 우대된다. 이외 15%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층은 10%의 우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1년 이하 보유한 단기 양도 순이익은 일반과세된다.

자본 손실도 일반소득으로부터 공제가 가능한데 일반손실에 비하여 공제의 한도가 있다. 즉, 단기(장기) 양도 손실이 장기(단기) 양도 순이익을 초과하면 3,000달러를 한도로 일반소득에서 1:1로 공제가 가능하다. 대신 초과하는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그 당시 양도이익과 상쇄가 가능하다. 이 밖에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손익, 악성부

채나 감가상각 부동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요컨대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출처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원칙 아래 각종 소득을 철저히 추적하여 과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미국의 경우 수표 등을 사용하는 거래 관행으로 소득 추적이 쉬운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지만 포괄과세야말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의 신뢰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탈루소득 추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다양한 공면제 조항을 단순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물론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공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광범위한 공제는 결국 소득세의 누진성을 해치고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각종 공제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함으로써 실질소득의 증대를 동반하지 않는 소득세 부담의 인상을 방지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 밖에 소득세에 있어서 최저한세는 공평과세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포괄과세를 위한 소득 추적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 미국이 주식 등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일반소득세율보다 낮게 하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므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Ⅲ. 법인세

1. 서론

가. 사업체 형태와 소득신고

미국에서 사업은 자영업체(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으로 조직되어 영위될 수 있다. 개인회사는 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소유한 경우로서 개인회사로부터의 소득과 손실을 개인소득세로서 신고하여야 한다(Schedule C 혹은 C-EZ 1040). 순이익이 있을 경우 이 소득은 소유주의 여타 소득과 함께 신고된다. 반면 사업손실이 있으면 소유주의 과세소득이 상쇄된다.

개인회사는 소유주의 개인소득세 한계세율로 과세되며 회사에 자금이나 자산을 투입 혹은 인출하는 행위가 과세상 의미 있는 결과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이익은 재투자 목적으로 회사에 유보하여도 과세되며 이자, 배당, 납세자의 임금 등 여타 소득은 손실과 상쇄된다. 개인회사 소유주는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고용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건강, 생명보험료 등 일부 부가급부(fringe benefit)도 과세된다. 또한 사업과 개인소득세 신고기간도 같아야 한다.

파트너십은 2인 혹은 그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조직한 법인화 되지 않은 사업체로서 세금을 신고하는 단체이지만 납세를 하는 단체는 아니다(conduit entity). 즉, 파트너십의 소득과 경비·공제 등은 파트너십의 파트너에게 이전되어 이들이 소득세를 신고한다. 파트너십은 매년 Form 1065에 운영 이익 등을 신고하며 이 때 각 파트너에게 할당된 소득, 경비, 손실 등을 Schedule K-1(Form 1065)에 신고하고 파트너들은 이를 여타 소득과 함께 개인소득세에서 신고 및 납세한다.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십과 유한 파트너십으로 나뉘는데 일반 파트너십에서는 파트너가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이 있고 유한 파트너십에서는 일반 파트너와 최소한 한 명의 유한책임 파트너로 구성된다. 유한책임 파트너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나 회사 부채에 대하여 자신의 투자와 사전에 약속한 부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파트너십의 과세상 특성은 개인회사와 비슷하여 회사 자체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사업이익은 파트너 단계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회사로부터 자산과 현금을 과세 목적상 제한 없이 기여 혹은 인출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파트너십의 과세연도를 대주주인 파트너의 과세연도와 달리하여 소득을 이연할 수 없다.

주식회사는 회사수익에 대하여 회사를 과세하고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주주를 과세하는 일반 주식회사 즉 정규 C 법인(C corporation)과 회사수익이 주주단계에서 과세되는 특수 주식회사(S corporation)로 구분된다. 정규 C 법인은 15~35%의 법인세 세율이 별도로 과세되는 납세주체이다. 회사는 Form 1120에 모든 소득과 경비를 신고하며 회사의 수익은 배당으로 분배되지 않으면 주주들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회사 차원과 주주 차원에서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⁶⁹⁾.

개인 서비스 주식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의 최저 법인세율은 15%이므로 회사에 유보된 수익(retained earning)을 통하여 절세가 가능하다⁷⁰⁾. 주주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공제대상인 급여와 부가급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서비스 회사(Sec. 441)를 제외한 주식회사는 역년과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을 이연할 수 있다.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5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매매나 교환시 50%의 양도이익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의 현금이나 자산을 양도받을 수 없다. 순영업 손실은 이전연도나 이후연도로 이전되어 소득과 상쇄될 수 있다(carry back or forward). 또한 자본손실은 발생한 연도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여타 손실과 달리 다른 연도에 발생한 자본이익과 상쇄되어야 한다.

S 주식회사는 내국세법 S장(Subchapter S)에 따라 정규 C 법인과 달리 납세주체가

69) 배당되지 않은 수익도 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이중과세될 수 있다.

70) 이러한 절세는 초과유보세(accumulated earnings tax)나 개인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로 인하여 제한된다.

아닌 전달주체(conduit entity)로 간주된다. S 주식회사로 간주되려면 선택을 하여야 하고 주주들이 동의하여야 한다. S 주식회사는 Form 1120S를 작성, 주주에게 할당된 회사수익, 경비, 공제 등을 신고한다.

S 주식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주주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며 손실도 주주들의 소득과 상쇄가 가능하다. 또한 현금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회사에 양도 혹은 회사로부터 양수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연도 회사수익은 배당이 되었건 아니면 내부에 유보되었건 소득세로 과세된다. 또한 종업원으로 고용된 주주에 대한 부가급부는 회사차원에서는 공제되지만 주주 차원에서는 과세된다.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S 주식회사도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없다.

유한책임 회사(LLC)는 파트너십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합친 형태로서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 적용되지만 세금은 파트너십처럼 처리된다. 유한회사는 S 주식회사와 달리 소유주(member) 수가 제한이 없고 무한책임이 있는 파트너가 없는 무한 파트너십과 유사하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으로 과세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표 III-1> 기업 형태와 과세상의 장·단점

기업형태	장·단점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아닌 사업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이중과세 부재) ◦ 기업투자는 과세상 사업주 자산으로 간주(회사내 유보된 이윤도 과세) ◦ 손실은 다른 개인소득으로부터 공제 가능 ◦ 사업주는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세 부과 ◦ 기업과 사업주 과세연도 동일, 보험료 등 일부 부가급부 과세
파트너십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 소득은 파트너 차원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이중과세 부재) ◦ 회사로부터 현금 등 자산 투자나 환수가 제한적으로 가능(비과세) ◦ 손실은 다른 개인소득으로부터 제한적으로 공제 가능 ◦ 파트너십 소유지분이 회사소득 지분만큼 증가: 지분의 양도차익에 영향 ◦ 사업주는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세 부과 ◦ 기업과 대주주의 과세연도 동일, 보험료 등 일부 부가급부 과세 ◦ 유한책임의 파트너 가능
일반 주식회사 (C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소득은 법인 차원에서 15~39%로 과세되고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은 주주차원에서 과세(이중과세: 배당은 기업수익이 충분한 경우) ◦ 회사내 유보된 소득은 주주의 소득세에서 비과세(초과유보세 등은 예외) ◦ 회사에 고용된 주주는 종업원 대우, 부가급부 비과세 ◦ 과세연도 선택 가능(개인서비스 회사 제외) ◦ 5년 이상 보유주식 양도차익은 50% 비과세 ◦ 양도손실은 소득과 상쇄되지 않고 이월되어 다른 연도 양도차익에 사용 ◦ 순영업손실은 다른 연도소득과 상쇄 ◦ 법인 양도차익은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20% 우대세율 부재)
S 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소득은 주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이중과세 부재) ◦ 손실은 주주 차원에서 다른 개인 소득으로부터 제한적으로 공제 가능 ◦ 양도차익은 개인소득세에서 우대세율(20%) 적용, 다른 양도손실과 상쇄 ◦ 현금 등 자산을 투자하거나 배분받으면 지분 한도 내에서 비과세 ◦ 파트너십 소유지분이 회사소득 지분만큼 증가: 주식 양도차익에 영향 ◦ 배당과 관계없이 회사소득 과세 ◦ 주주인 종업원에 대한 부가급부 과세(회사 차원에서 공제) ◦ 역년이 과세연도(사업상의 이유가 없는 경우)

유한책임 파트너십(LLP)은 회계법인과 같이 개인서비스 회사로 각 파트너는 자신의 행위에만 책임을 진다. 즉, 자신의 행위에는 무한책임이 있지만 다른 파트너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한책임이 있다. 이들도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나.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여타 세목

주식회사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방단계에서 법인세 이외에 최저한세(AMT)와 초과유보세(accumulated earning tax), 개인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 PHC)가 있고 지방정부, 특히 주정부 단위에서 따로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 가운데 최저한세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인세의 일부이므로 이를 제외한 세목에 대하여 논의한다.

1) 개인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 PHC)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세율이 차이가 나므로 납세자는 가능하면 소득을 회사 내부에 은신하기를 원한다⁷¹⁾. 개인지주회사세는 이처럼 납세자가 비상장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수동적인 소득에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2년 당시 분배되지 않은 개인소유 회사의 소득에는 38.6%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03년에 15%로 세율이 인하되었다. 개인지주회사세는 일반 법인세에 가산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처벌적 성격이 강하다.

5명 혹은 그 이하의 주주들이 과세연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한 때라도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조정된 일반소득의 60% 이상을 개인소유 회사 소득으로 보유하는 기업이면 개인지주회사(PHC)로 간주된다(Sec. 542(a)).

후자는 수동적 소득요건(passive income test)에 해당하는데 조정된 일반소득(AOGI)이란 과세소득에서 금융자산과 사업용 자산(Sec. 1231)의 판매수익을 제외한 금액(OGI)으로부터 임대소득 경비, 원유와 가스 로열티, 일부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인지주회사 소득(PHIC)은 배당, 이자, 연금수입, 임대소득 경비를 제외한 임대소득, 로열티, 25% 이상의 주식 소유자가 수행한 개인서비스 계약으로부터의 소득과 25% 이상의 주식 소유자가 사용한 회사 자산의 임대소득 그리고 유산신탁기금으로부터의 배당수입 등을 합한 금액이다(Sec. 543(b)).

71) 그러나 2006년에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35%로 같아진다.

개인지주회사세는 총소득이 아니라 배당되지 않은 개인지주회사 소득(UPHCI)⁷²⁾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즉, 회사 과세소득에서 배당수입공제와 순영업손실 등을 합하고 여기서 미국과 해외소득세, 초과 자선기부금 그리고 배당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배당되지 않은 회사소득이다.

개인지주회사세는 세수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기업 특히 비상장 회사가 배당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기업은 세금 납부 대신에 부족한 배당(deficiency dividend)을 하면 회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Sec. 547). 단, 이와 같은 추가배당을 하여도 회사세로 인한 여타 벌금이나 이자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국세청과 합의하여 회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당하고 120일 이내에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인지주회사세의 신고는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에 첨부된 Schedule PH를 작성함으로써 완료된다.

2) 초과 유보세(accumulated earning tax)

주식회사는 사업 확장이나 선의적인 사업상의 이유로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내부에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업상 필요의 이상으로 수익을 축적하면 주주의 개인소득세 납세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되어 초과 유보세가 부과될 수 있다(Sec. 532(a)). 초과 유보세는 명칭과 달리 해당 과세연도 당시 유보된 수익금에 추가된 금액에만 부과되며 세율은 개인지주회사세와 마찬가지로 38.6%에 이르던 세율이 2003년에 15%로 인하되었다.

초과 유보세는 소득세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 혹은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며 개인지주회사, 법인세 면세 회사(Sec. 501~504) 그리고 S 주식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동 세금은 여타 세금과 달리 기업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이를 조사, 통보한다⁷³⁾.

72) undistributed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73) 기업이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만약 초과 유보세가 부과되면 법인세 신고기일로부터 누적소득세 납부일까지 이자가 가산된다(Sec. 6601(b)).

합리적인 사업적 필요 수준 이상으로 배당되지 않고 축적된 수익금이나 이윤은 해당 기업이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없으면 세금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된다(Sec. 533(a)). 세금 기피 여부는 각 사례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법에 의하면 배당실적이 미미한 경우나 유보 수익금이 상당한 경우, 주식회사로부터 주주에게 공여된 부채 등 특정 거래 그리고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에 투자된 수익금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Reg. Sec. 1. 533-1(a)(2)).

주식회사를 위한 준비금, 불량상품 책임 보상금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상 필요한 준비금 등이 합리적인 필요자금이며 사업 확장이나 공장건설, 부채청산, 주식매입 회수 그리고 일반 운영자금도 마찬가지로 간주된다(Sec. 537). 주주의 사망시 유산신탁기금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회수할 목적으로 기업 수익을 축적할 수 있다(death tax redemption, Sec. 303). 또한 민간단체가 법이 정한 한도 이상으로 보유한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서도 준비금을 쌓을 수 있다(Sec. 4943). 마지막으로 법에서 따로 명기하지 않았지만 실제 혹은 잠재적 소송, 주고객의 상실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특정 손실에 대비한 보험성 준비금과 파업이나 종업원 퇴직 플랜에 대비한 준비금도 필요자금으로 해석한다.

합리적 사업상의 필요성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혹은 차후에 실제 계획의 수행 등으로 입증될 수 있다. 반면 주주나 그 친지 등에게 제공된 부채, 주주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지출된 경비, 동일한 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제공된 부채, 사업과 무관한 투자 등은 불합리한 유보 수입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초과 유보세는 과세소득에서 배당수입공제, 운영업손실과 전년에 이월되어 공제된 기부금을 합하고 국내외 소득세, 과세소득 10% 이상의 기부금, 순양도 손실이나 소득세 부분을 제외한 순양도 차익, 배당공제 그리고 유보 수익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포(누적과세소득)가 된다. 누적 수익공제(accumulated earnings credit)는 기업들이 초과 유보세를 부과받지 않고 내부유보할 수 있는 최대 수익금을 의미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이 금액은 25만달러이고 회계, 설계, 자문, 법률 등 개인 서비스회사에게는 15만달러가 적용된다. 단 이 공제는 여타 세액공제와 달리 초과 유보세에 대하여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과 상쇄된다.

3) 지방정부 법인세

가) 기본원칙

주정부도 역내 주식회사로 존재 혹은 사업할 수 있는 권리나 역외 주식회사가 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일찍이 재산세의 일종으로 자본금을 초과하는 사업가치에 과세를 시작된 자본 혹은 사업세(capital stock tax or franchise tax)가 현대적 의미의 법인세로 탈바꿈한 것은 1911년 위스콘신 주의 법인소득세이며 현재는 46개 주가 법인세를 도입하고 있다.

주정부 법인세 과세 문제는 주식회사가 여러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업체의 자산과 소득 등을 각 주에 배분하는 것이 문제이며 특히 자산의 위치, 서비스의 제공 장소 그리고 거래의 발생이나 판매물품의 행방이 문제가 된다.

나) 지방정부 법인세 현황

주정부 법인세 과표는 연방정부 법인세상의 총소득 혹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일정한 항목을 추가 내지는 제외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의회가 정하는 연방세법이 주정부 법인세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알라바마, 아칸사스 그리고 미시시피를 제외한 주정부는 주 법인세 산정을 연방정부의 과세소득에서 출발하고 있다.

연방정부 과세소득에서 추가하는 항목은 연방법에서 허용되는 면세된 이자소득(지방정부의 부채), 여타 주의 소득세, 연방정부의 과도한 감가상각 그리고 과거에 이월된 순영업 손실이다. 반면 삭제하는 항목은 연방정부가 지급한 이자소득과 일부 감가상각 항목이다. 주정부는 납세 의무액에 대하여 다양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를 공제해 준다. 사업구역 내 노동창출과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한다.

미국에서 네바다, 워싱턴 그리고 와이오밍을 제외한 주는 법인세를 부과하며 미시간과 텍사스는 이와 유사한 사업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46개주 가운데 13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누진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소득은 1개 주를 제외하면 25만달러 이하이다. 주정부의 법인세율은 대부분의 주에서 6~9% 사이에 있다(<표 III-2> 참조). 하위 지방정부의 경우 법인세가 허용되는 주는 켄터키, 미시간, 미주리, 뉴욕, 오키오, 오리건 6개 주이며 세율은 0.5%(미주리)에서 8%(뉴욕시)에 이른다.

<표 III-2> 주정부 법인세 세율 (2003)

(단위: %,달러)

	세율	구간	구간수	은행세세율	연방세공제
Alabama	6.5	----일률세----	1	6.5	*
Alaska	1.0 ~ 9.4	10,000 90,000	10	1.0 ~ 9.4	
Arizona	6.968	----일률세----	1	6.968	
Arkansas	1.0 ~ 6.5	3,000 100,000	6	1.0 ~ 6.5	
California	8.84	----일률세----	1	10.84	
Colorado	4.63	----일률세----	1	4.63	
Connecticut	7.5	----일률세----	1	7.5	
Delaware	8.7	----일률세----	1	8.7 ~ 1.7	
Florida	5.5	----일률세----	1	5.5	
Georgia	6.0	----일률세----	1	6.0	
Hawaii	4.4 ~ 6.4	25,000 100,000	3	7.92	
Idaho	7.6	----일률세----	1	7.6	
Illinois	7.3	----일률세----	1	7.3	
Indiana	8.5	----일률세----	1	8.5	
Iowa	6.0 ~ 12.0	25,000 250,000	4	5.0	*
Kansas	4.0	----일률세----	1	2.25	
Kentucky	4.0 ~ 8.25	25,000 250,000	5	---	
Louisiana	4.0 ~ 8.0	25,000 200,000	5	---	*
Maine	3.5 ~ 8.93	25,000 250,000	4	1.0	
Maryland	7.0	----일률세----	1	7.0	
Massachusetts	9.5	----일률세----	1	10.5	
Minnesota	9.8	----일률세----	1	9.8	
Mississippi	3.0 ~ 5.0	5,000 10,000	3	3.0 ~ 5.0	
Missouri	6.25	----일률세----	1	7.0	*
Montana	6.75	----일률세----	1	6.75	
Nebraska	5.58 ~ 7.81	50,000	2	---	
New Hampshire	8.5	----일률세----	1	8.5	
New Jersey	9.0	----일률세----	1	9.0	
New Mexico	4.8 ~ 7.6	500,000 1백만	3	4.8 ~ 7.6	
New York	7.5	----일률세----	1	7.5	
North Carolina	6.9	----일률세----	1	6.9	
North Dakota	3.0 ~ 10.5	3,000 50,000	6	7.0	*
Ohio	5.1 ~ 8.5	50,000	2	---	
Oklahoma	6.0	----일률세----	1	6.0	
Oregon	6.6	----일률세----	1	6.6	
Pennsylvania	9.99	----일률세----	1	---	
Rhode Island	9.0	----일률세----	1	9.0	
South Carolina	5.0	----일률세----	1	4.5	
South Dakota	---			6.0 ~ 0.25	
Tennessee	6.0	----일률세----	1	6.0	

<표 III-2>의 계속

(단위: %,달러)

	세율	구간	구간수	은행세세율	연방세공제
Utah	5.0	----일률세----		5.0	
Vermont	7.0 ~ 9.75	10,000	250,000	4	7.0 ~ 9.75
Virginia	6	----일률세----	1	6.0	
Washington	9	----일률세----	1	9.0	
West Virginia	7.9	----일률세----	1	7.9	

주: 미시간은 사업자 과세소득, 종업원 보상, 배당, 이자 등의 합에 대하여 1.9%의 사업세를 부과하며 텍사스는 4.5%의 영업세(franchise tax)를 부과함 2) 네바다, 워싱턴과 와이오밍은 법인세가 없음.

다. 법인세 통계

1972년 당시 GDP의 2.8% 그리고 내국세의 24.3%에 이르던 법인세 징수액은 1980년대부터 그 비중이 줄어들어 2002년이 되면 GDP의 1.8% 그리고 내국세의 16.9%를 차지했다.

<표 III-3> 법인세 징수액과 GDP 대비 비중(Fiscal Years 1972~2002)

(단위: 억달러, %)

	내국세	총 소득세	법인세		내국세	총 소득세	법인세
1972	2,098.6 (16.9)	1,438.0(11.6)	349.3(2.8)	1987	8,862.9 (17.3)	5,683.1(11.1)	1,028.6(2.0)
1973	2,377.9 (17.2)	1,641.6(11.8)	390.5(2.8)	1988	9,351.1 (17.0)	5,833.5(10.6)	1,096.8(2.0)
1974	2,689.5 (17.9)	1,846.5(12.3)	417.4(2.8)	1989	10,133.2 (17.5)	6,327.5(10.9)	1,170.1(2.0)
1975	2,938.2 (18.0)	2,021.5(12.4)	457.5(2.8)	1990	10,563.7 (17.6)	6,502.4(10.9)	1,100.2(1.8)
1976	3,025.2 (16.6)	2,057.5(11.3)	467.8(2.6)	1991	10,868.5 (17.2)	6,604.8(10.5)	1,136.0(1.8)
1976[5]	754.6 (3.7)	495.7(2.4)	98.1(0.5)	1992	11,208.0 (16.9)	6,756.7(10.2)	1,179.5(1.8)
1977	3,581.4 (15.6)	2,468.1(10.7)	600.5(2.6)	1993	11,766.9 (16.7)	7,173.2(10.2)	1,315.5(1.9)
1978	3,997.8 (15.6)	2,784.4(10.8)	653.8(2.5)	1994	12,764.7 (17.2)	7,740.2(10.5)	1,542.0(2.1)
1979	4,604.1 (16.5)	3,229.9(11.6)	714.5(2.6)	1995	13,757.3 (17.6)	8502(10.8)	1,744.2(2.2)
1980	5,193.8 (16.6)	3,599.3(11.5)	723.8(2.3)	1996	14,865.5 (17.9)	9,343.7(11.2)	1,890.5(2.3)
1981	6,068.0 (18.6)	4,065.8(12.5)	737.3(2.3)	1997	16,232.7 (18.5)	10295.1(11.7)	2,044.9(2.3)
1982	6,322.4 (17.9)	4,186.0(11.8)	659.9(1.9)	1998	17,694.1 (19.1)	11,413.4(12.3)	2,132.7(2.3)
1983	6,272.5 (15.9)	4,114.1(10.5)	617.8(1.6)	1999	19,041.5 (19.4)	12,185.1(12.4)	2,163.2(2.2)
1984	6,804.8 (16.2)	4,370.7(10.4)	741.8(1.8)	2000	20,969.2 (20.8)	13,727.3(13.6)	2,356.5(2.3)
1985	7,428.7 (16.7)	4,740.7(10.6)	774.1(1.7)	2001	21,288.3 (20.4)	13,649.4(13.1)	1,867.3(1.8)
1986	7,822.5 (16.5)	4,974.1(10.5)	804.4(1.7)	2002	20,166.3 (19.3)	12491.7(12.0)	2,114.4(1.8)

주: 법인소득세에서 면세 대상 영업소득세 포함.

자료: IRS Data Book, FY 2001, Publication 55b.

이러한 변화는 내국세의 GDP 비중이 그동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다. 반면 전체 소득세의 GDP 비중은 증가하여 개인소득세 비중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주식회사 신고건수도 1980~2001년 사이에 약 85% 정도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면 파트너십 신고는 약 54%, 그리고 개인회사 신고 건수는 82% 증가하였다. 물론 파트너십과 개인 주식회사의 소득은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로 과세된다.

<표 III-4> 총수입 규모에 따른 사업소득신고서(1980~2001)

(단위: 천건)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주식회사	2,710.5	3,277.2	3,716.7	4,474.2	4,848.9	4,935.9	5,045.3	-
2.5만달러 이하	557.0	710.8	878.7	1,030.0	1,168.1	1,188.7	1,220.0	-
2.5~5만달러	207.7	236.6	252.0	288.4	289.0	296.9	305.4	-
5~10만달러	322.7	330.2	358.9	446.8	459.9	486.5	477.4	-
10~25만달러	558.4	620.5	661.7	736.1	839.7	823.9	837.1	-
25~50만달러	367.3	489.2	500.0	623.6	645.5	676.1	677.5	-
50~100만달러	279.8	352.4	416.0	512.7	553.1	546.2	581.9	-
100만달러~	414.7	537.6	649.4	803.3	893.5	917.5	946.0	-
파트너십	1,379.7	1,713.6	1,553.5	1,580.9	1,855.3	1,936.9	2,057.5	2,132.1
2.5만달러 이하	638.0	840.1	962.6	931.3	1,037.6	1,036.3	1,105.1	1,129.9
2.5~5만달러	181.8	195.5	126.0	133.5	157.3	183.0	183.0	182.6
5~10만달러	183.6	199.5	133.4	142.3	156.8	187.3	187.3	192.1
10~25만달러	155.2	190.1	139.9	158.6	206.4	212.4	225.8	233.9
25~50만달러	135.6	165.5	82.5	86.5	113.6	125.8	127.0	139.4
50~100만달러	48.1	66.9	52.1	59.4	76.6	83.8	92.4	102.8
100만달러~	37.4	56.0	57.1	69.3	106.8	121.6	136.9	151.4
개인회사(농업 제외)	9,730.0	11,928.6	14,782.7	16,423.9	17,408.8	17,575.6	17,902.8	17,723.1
0.25만달러 이하	2,783.1	3,067.5	3,750.1	4,139.5	4,246.4	4,295.6	4,333.1	3,769.4
0.25~0.5만달러	1,158.6	1,444.6	1,714.5	1,954.1	2,055.6	1,972.6	1,933.9	1,989.3
0.5~1만달러	1,262.9	1,633.6	2,011.7	2,254.4	2,407.0	2,350.2	2,395.7	2,523.1
1~2.5만달러	1,711.8	2,104.6	2,719.8	2,969.3	3,058.3	3,202.2	3,334.0	3,448.4
2.5~5만달러	1,079.1	1,393.9	1,660.2	1,982.7	2,111.9	2,227.0	2,246.7	2,239.3
5~10만달러	835.6	1,094.1	1,282.1	1,392.6	1,590.1	1,558.5	1,644.8	1,704.0
10~50만달러	795.8	1,060.2	1,444.2	1,514.0	1,686.3	1,701.7	1,733.3	1,109.7
50~100만달러	73.9	89.3	142.7	147.4	175.1	182.2	189.5	197.8
100만달러~	29.2	40.7	57.3	69.9	78.1	85.7	91.7	92.9

자료: SOI, Summer 2003, IRS.

<표 III-5> 법인세 대차대조표와 소득세 내역(1980~2000)

(단위: 천건, 억달러)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총신고건수	2,710.5	3,277.2	3,716.7	4,474.2	4,848.9	4,935.9	5,045.3
순소득 건수	1,596.6	1,820.1	1,910.7	2,455.5	2,760.8	2,812.2	2,819.2
통합신고	57.9	79.6	71.7	65.6	60.8	57.1	56.6
S 주식회사	545.4	724.7	1,575.1	2,153.1	2,588.1	2,725.8	2,860.5
DISC 신고 ¹⁾	8.7	1.4	-	-	-	-	-
FSC 신고 ²⁾	n.a.	2.3	-	-	-	-	-
총자산	76,172.4	127,730.9	181,900.6	260,136.9	373,473.5	414,641.5	470,268.7
현금	5,289.1	6,832.0	7,710.9	9,620.8	13,364.2	15,965.2	18,197.9
채권및매출채무	19,846.0	33,176.4	41,980.2	53,065.7	70,615.5	77,449.6	87,544.3
-(악성부채공제)	500.6	615.8	1,100.6	1,213.5	1,281.3	1,396.0	1,482.9
재고	5,348.1	7,147.2	8,935.9	10,450.1	11,392.1	11,981.8	12,719.7
정부채권	2,655.4	9,165.5	9,211.9	13,634.5	13,656.5	13,404.8	12,362.3
면세증권	2,065.2	-	3,803.2	8,397.8	9,586.5	9,571.0	9,733.2
기타 현자산	3,101.8	6,291.4	11,645.8	18,350.5	27,384.4	26,397.6	32,066.9
주주제공증권	298.7	567.6	948.7	927.7	1,350.5	1,260.2	1,570.3
부동산	8,943.2	12,586.7	15,378.9	17,133.1	24,149.0	25,446.6	28,215.1
기타 투자	1,214.0	24,135.5	41,368.9	74,293.7	132,011.2	157,990.4	178,738.5
감가상각자산	21,070.3	31,741.9	43,177.8	55,711.4	65,412.8	59,355.0	72,920.0
-(누적상각)	7,678.4	12,320.7	18,480.2	26,005.5	30,316.3	32,772.4	33,692.1
감모상각	719.0	1,123.4	1,293.7	1,535.4	1,926.7	1,835.9	1,913.5
-(누적감모상각)	195.7	372.0	550.8	709.6	923.1	856.6	874.4
토지	929.3	1,414.5	2,095.8	2,423.4	2,714.9	2,865.0	3,028.3
무형자산	454.8	1,452.9	4,912.5	7,491.7	13,763.0	17,172.5	22,465.1
-(누적감모)	183.9	425.1	957.5	1,650.2	2,327.4	2,805.6	3,643.6
기타 자산	1,870.2	5,829.5	10,525.4	16,679.5	20,994.3	21,176.3	28,486.7
총부채	76,172.4	127,730.9	181,900.6	260,136.9	373,473.5	414,641.5	470,268.7
매입채무	5,421.7	8,915.7	10,940.0	17,495.7	25,012.9	27,923.3	37,581.8
1년미만부채	5,948.0	10,013.4	18,027.3	20,336.0	32,155.2	36,583.1	40,197.0
기타 현부채	27,068.0	42,349.8	51,976.8	67,827.0	88,100.0	91,031.9	103,073.6
주주지급부채	857.2	1,743.2	2,685.6	3,116.8	3,612.3	3,949.3	4,514.6
장기부채(>1년)	9,866.6	16,992.7	26,651.0	33,354.3	48,132.5	54,482.6	61,840.0
기타 채무	8,467.0	14,679.1	24,230.7	36,687.7	45,377.8	47,043.7	49,575.1

<표 III-5>의 계속

(단위: 천건, 억달러)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순가치	19,443.9	33,037.0	47,389.2	81,319.4	131,082.8	153,628.6	173,486.5
자본	4,171.5	9,201.8	15,848.4	21,943.7	32,440.2	35,219.9	39,662.8
추가자본지급	5,320.4	14,209.9	28,142.1	54,460.0	86,101.7	101,864.0	122,648.2
보유소득, 지급	414.6	540.7	609.8	1,056.8	1,851.6	2,107.9	1,818.4
보유소득, 미지급	10,279.0	13,115.1	13,490.3	20,857.1	31,874.0	37,590.0	34,453.5
주주자산조정	n.a.	n.a.	n.a.	n.a.	-30.1	171.1	-33.8
-(재무자본조정)	741.7	4,030.7	10,701.4	16,998.2	21,184.8	23,153.2	25,062.5
총수입	63,612.8	83,982.8	114,095.2	145,390.5	173,239.6	188,923.9	206,058.1
사업수입	57,316.2	73,695.4	98,604.4	127,858.0	150,102.6	163,139.7	176,365.5
지방정부채권이자	126.2	201.6	351.6	463.2	491.3	517.8	519.4
기타 이자	3,542.4	6,176.2	9,422.4	9,931.7	12,276.4	13,017.7	15,761.0
국내회사배당	186.5	169.7	134.1	228.4	200.1	206.8	208.7
외국회사배당	145.6	207.7	332.6	354.2	492.3	649.1	602.0
임대수입	413.7	897.0	1,006.4	871.2	1,066.0	1,176.4	1,313.0
로열티	124.5	152.4	321.4	579.8	936.0	1,057.4	1,225.1
단기양도순이익	20.1	70.3	41.1	400.8	373.0	949.1	850.0
장기양도순이익	249.1	527.7	509.4	608.5	1,250.1	1,465.2	1,737.6
비자산순이익	201.2	335.4	322.8	429.9	695.2	647.0	700.4
기타 수입	1,287.2	1,529.3	3,048.9	138212.8	5,355.6	6,097.6	6,775.3
총공제	61,253.4	81,581.4	110,325.7	138,212.8	164,894.3	179,669.7	196,915.9
판매비용	42,049.1	48,942.5	66,107.7	82,060.7	93,623.9	102,841.0	111,352.9
임원보상	1,089.7	1,707.4	2,054.0	3,036.4	3,568.5	3,737.4	4,014.2
고장수리	424.1	815.0	958.9	1,186.0	1,303.0	1,332.1	1,395.9
약성부채	187.7	433.3	836.9	677.7	863.7	1,002.0	1,076.8
임대료	719.9	1,346.6	1,847.7	2,321.0	3,083.2	3,472.5	3,800.8
세금	1,630.0	2,010.0	2,509.3	3,258.4	3,545.8	3,711.8	3,900.7
이자	3,446.1	5,686.5	8,253.7	7,447.6	9,666.6	10,189.7	12,716.8
기여	23.6	44.7	47.5	74.3	86.8	107.3	106.6
감가상각	13.7	61.3	315.0	460.0	743.4	861.2	983.3
감가상각	1,573.5	3,943.8	3,327.8	4,365.8	524.9	5,838.0	6,143.7
감모상각	77.7	77.8	96.5	100.0	96.9	98.0	102.4
광고	526.7	919.2	1,264.2	1,627.8	1,982.1	2,160.7	2,340.0
연금, 보너스 등	515.3	495.9	422.3	817.9	716.9	767.8	857.9

<표 III-5>의 계속

(단위: 천건, 억달러)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종업원 수혜	401.8	716.0	1,133.2	1,651.1	1,954.5	2,035.3	2,313.3
비자산손실	59.0	78.9	223.3	280.3	213.1	290.7	313.1
기타 공제	8,508.7	15,202.7	20,927.6	28,847.8	38,021.1	41,224.2	45,497.5
총수입-공제	2,359.2	2,401.3	3,769.5	7,177.7	8,345.3	9,254.1	9,142.2
관련외국기업소득	157.1	203.0	367.8	427.4	528.2	553.2	652.5
순소득-적자	2,390.1	2,401.2	3,706.3	7,141.9	8,382.2	9,289.6	9,275.3
순소득	2,967.9	3,638.7	5,525.3	8,806.5	10,911.5	12,293.0	13,366.2
적자	577.8	1,237.5	1,818.9	1,664.6	2,529.3	3,003.4	4,090.9
과세소득							
신고서수	1,131.9	1,219.4	846.1	912.9	894.4	858.8	828.5
금액	2,466.0	2,660.6	3,663.5	5,647.3	6,633.9	6,937.4	7,604.0
총소득세	1,051.4	1,113.4	1,281.9	1,987.9	2,314.0	2,419.9	2,662.8
일반/대체세금	1038.3	1091.1	1194.3	1935.6	2280.2	2387.3	2622.3
전년도투자공제환수	8.7	15.0	1.3	0.1	0.03	0.09	0.1
전년도WIN 공제환수	0.05	n.a.	n.a.	n.a.	n.a.	n.a.	n.a.
최저한세							
신고서수	9.2	7.8	32.5	25.8	18.4	14.9	13.1
금액	4.4	7.3	81.0	42.8	33.2	30.5	38.7
환경세 ³⁾	n.a.	n.a.	5.2	7.1	n.a.	n.a.	n.a.
총세액공제							
외국세액공제	421.9	479.9	317.8	423.6	498.0	489.6	622.4
신고서수	6.2	5.1	5.0	6.7	5.9	5.9	5.9
금액	248.8	242.6	249.9	304.2	383.4	383.9	485.1
국내세액공제	15.7	24.5	31.9	30.8	23.9	14.9	14.4
투자세액공제	151.0	-	-	-	-	-	-
WIN 공제 ⁴⁾	0.4	n.a.	n.a.	n.a.	n.a.	n.a.	n.a.
고용기회공제	6.0	-	-	-	n.a.	n.a.	-
특수연료공제	0.0	0.4	0.8	7.3	10.3	8.9	15.2
전기차공제	n.a.	n.a.	n.a.	0.0	0.0	0.0	0.01
알콜연료공제	0.0	-	-	-	-	-	-
연구활동공제	n.a.	16.3	-	-	-	-	-
종업원주주공제	n.a.	-	n.a.	n.a.	n.a.	n.a.	n.a.

<표 III-5>의 계속

(단위: 천건, 억달러)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회귀 약 개발 공제	n.a.	0.0	0.2	-	-	-	-
일반사업공제	n.a.	196.1	28.3	33.9	56.0	47.6	55.9
전년도최저제한세공제	n.a.	n.a.	60.7	48.0	34.3	34.3	51.7
학교구역채권공제	n.a.	n.a.	n.a.	n.a.	n.a.	0.02	0.1
공제후 소득세	629.5	633.5	964.1	1563.7	1816.0	1930.3	2040.4
세율⁵⁾	35.4	30.6	23.2	22.6	21.2	19.7	19.9
실질세율⁵⁾	21.2	17.4	17.4	17.8	16.6	15.7	15.3

주: 1) 수출을 장려할 목적으로 자회사(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의 이익이 모회사에 배당된 경우에만 과세.

2) 외국 자회사의 소득 중 일부만 과세하며 1984년 DISC를 대체.

3) 1996년 법인세에 포함된 환경소비세 폐지.

4) Work Incentive Program.

5) 세율은 순소득 대비 소득세를 실질세율은 순소득 대비 공제 후 소득세를 의미함.

자료: SOI Winter 2002~2003, Publication 1136, IRS.

이 밖에 <표 III-5>는 연도별로 법인소득 등 항목별 대차대조표상의 각종 항목과 공제 등과 함께 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실질세율은 21.2%에서 15.3%로 하락, 법인세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반증한다.

2. 총칙규정

가. 납세의무

일반 주식회사(C 법인)는 별도의 납세주체로서 내국세법(Subchapter C)에 따라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국내회사처럼 간주되며 주식회사처럼 과세되기를 선택한 사업체도 마찬가지이다(Check-in Box rule, Sec. 7701(a)(4)).

나.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 과세소득은 개인소득세에서 논의된 과세 사업소득과 유사하다. 미국 주식회사는 이윤의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연방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 자회사(subsidiary)가 주식배당을 하거나 청산될 때까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납세 연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외국 자회사의 소득 일부 혹은 전부가 미국법에 따라 과세되기도 한다. 이외 외국 주식회사의 지사는 미국의 상거래나 영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하여 대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회사가 미국과 조세협약을 맺는 국가에 거주할 경우 미국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과세한다.

다. 사업연도

일반주식회사(C 법인)가 창립되고 처음 세금신고를 할 때 과세연도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국세청의 허가 없이 과세연도를 바꿀 수 없다. 과세연도는 회계연도⁷⁴⁾와 같아야 하는데 주식회사는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일반 역년이나 매월 말일에 종료되는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Sec. 441).

반면 S 주식회사는 과세연도가 역년(달력 연도)이며 계열회사(affiliated group)⁷⁵⁾들은 모회사의 과세연도를 따라야 한다. 이외 개인 서비스 회사⁷⁶⁾의 경우에도 사업 목적상 여타 과세연도가 적절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역년이 과세연도이다. 이 밖에 소유주에게 최소한의 배당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Sec. 444).

74) 상당한 사업 목적이 있을 경우 주식회사는 국세청의 사전허가를 받고 회계연도를 바꿀 수 있다(Reg. Sec. 1.442-1(b)(1)).

75) 계열회사는 모회사가 최소한 한 자회사 주식의 80%(금액과 투표권) 이상을 보유하고 다른 계열회사가 소유한 각 회사의 주식을 80% 이상을 보유한 그룹을 의미한다.

76) 개인서비스 회사(PSC)는 10% 이상의 주식가액을 보유한 종업원-소유주에 의하여 수행되는 개인 서비스가 주사업인 주식회사를 의미한다(Sec. 441(i)).

3. 과세소득

가. 과세표준

1) 일반적 원칙

일반 주식회사(C 법인)는 개인과 같은 납세주체로서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 소득과 공제의 개념이 법인세에도 대부분 적용된다. 따라서 세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한 모든 소득이 총소득이 된다. 다만 과세상 소득과 공제의 개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아래 <표 III-6>에 정리되어 있다.

통상적이고 필요한 거래 혹은 영업비용(ordinary and necessary business expense)은 공제가 허용된다(Sec. 162). 다만 비과세 증권 매입에 사용된 이자, 뇌물, 벌금이나 주식회사가 수혜자인 직원의 생명보험료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Sec. 162).

회사 창업비용(organizational expense, Sec. 248)나 초기비용(start-up expense, Sec. 195)은 자본비용으로 간주되어 사업 개시 후 60개월간 할부 상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회사가 청산될 때만 손실로 공제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보수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면 과세연도의 종료 후 2½개월 이내에 지불하여야 의무가 발생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Sec 404(b)).

<표 III-6>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주요 차이점

항목	차이점
총소득	일반적으로 동일(차이-개인: 부가급부 면세, 주식회사: 자본기여금 면세)
공제	개인은 표준 및 인적공제와 조정된 총소득 산정 주식회사는 조정된 총소득이 없고 비용 공제는 통상적이고 필요한 사업비용
자선기부금	개인: AGI의 50%로 제한(자본수익자산은 30%), 실제 지불한 연도에 공제 주식회사는 배당수입공제(DRD)를 무시하고 과세소득의 10%로 제한 발생주의 회계방식에서는 이듬해 3월 15일 이전 기부금도 금년에 공제가능
감가상각의 환입 (Sec. 1250 자산)	개인: 부동산의 경우 정액법으로 MACRS 규정에서는 환입이 불가능 Sec. 1245에서의 환수금액이 Sec. 1250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20% 환수가능
배당수입공제	개인: 공제 불허, 주식회사는 주식소유에 따라 70, 80, 100% 특별공제 가능
순양도차익	개인: 최고 20% 세율로 과세(10, 20, 28% 가능), 주식회사는 법인세율로 과세
양도손실	개인: 순손실의 30%를 일반소득에서 공제, 제한 없는 이월 허용 주식회사: 일반소득의 상쇄 불허, 양도차익에 대한 상쇄는 전 3년, 후 5년
운영업손실 (NOLs)	개인: NOL에 대한 조정 가능, 제한 없는 이월 주식회사: NOL은 소득의 초과분인 공제, 전 2년 후 20년 이월 가능 등
세율	개인 10~38.6% 주식회사: 15~39% (2003)
최저한세	개인 26, 28% 주식회사: 20% (2003), 주식회사는 ACE에 의한 조정 대상
수동적 손실	passive loss: 개인, 파트너십, S 주식회사, 비상장 주식회사에 적용
상해손실	개인: 10% AGI로 제한, 100달러는 비공제, 주식회사는 사업경비로 전액 공제

자료: 「Federal Taxation 2003, Comprehensive 2003」, Prentice Hall, 2003.

2) 과세소득의 결정

총소득은 우선 총수입에서 판매경비를 제외하고 난 후 양도차익과 배당, 임대료, 이자수입 등 여타 소득을 합한 것이다(<표 III-7> 참조). 이러한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과세소득이 되며 이를 해당 법인세율과 곱하면 납세 의무액이 된다. 연 후 세액공제와 이미 납부한 추정세액을 빼고 가산금을 합하면 일반 법인세 납세액이 결정된다.

총수입은 모든 사업활동으로부터 얻은 판매금 혹은 수입금이며 사전에 지급받은 대금은 지급 당시 신고하여야 한다, 장기계약에 의한 사전 지급이나 분할 판매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Sec. 460, Reg. Sec. 1.451-5). 한편 판매비용은 과세연도 시작 시점의 재고⁷⁷⁾와 노동비, 제품구입비용 및 기타 비용에서 종료시점의 재고를 뺀 금액과 같다(Schedule A).

<표 III-7> 법인세 과세소득의 결정

분류	항목
소득	총(판매)수입 - 반환 및 면제(return and allowance) - 판매비(재고+매입경비+노동비용+기타비용-연말재고) 총이윤 + 배당 ¹⁾ +이자+임대료+로열티수입+양도수익+기타소득 총소득
공제	임원보상+임금+보상유지비+악성부채+임대료+세금 +이자비용+자선기부금+감가상각비+감모상각비+광고비 +연금, 이익배분+종업원 부가급부+기타공제 운영업손실(NOL) 및 특별공제 이전의 과세소득 - 운영업손실(NOL) - 특별공제 ²⁾
	과세소득

주: 1) 일반 배당수입은 일부만 공제될 수 있고 계열회사나 일부 외국기업,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100% 공제됨. 2) 특별공제는 배당수입공제를 의미함.

자료: 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IRS.

소득에 포함되는 배당수입은 국내회사로부터 지급된 배당으로 부채로 구입한 주식 이 아닌 주식배당이어야 하는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이 중 일부는 나중에 특별 공제된다. 임대료 수입은 총수입이며 이에 대한 고장수리, 세금, 감가상각은 해당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외 이자수입과 양도차익(capital gain), 사업자산으로부터의 양

77) 재고는 구입비용 혹은 구입비용과 시장가격 중 낮은 금액 혹은 국세청이 인정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다만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채택한 기업은 구입비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IRS Pub. 538)

도차익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는데 기타소득에는 이전에 공제된 항목이 더 이상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 이를 기타소득에 포함한다. 이러한 예에는 악성부채로 처리된 부채의 환수, 공제된 세금의 환급 등이 있을 수 있다.

3) 공제항목

가) 공제방식의 제약

내국세법 263A조에 따라 비금융 자산의 비용은 자본화하여 자산의 매각, 사용 혹은 처분시 공제하여야 한다(uniform capitalization rule). 이와 같은 자산에는 부동산과 판매를 위한 개인유형자산의 생산, 재판매를 위한 이들 자산의 생산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과 유형개인자산이 있다. 자본화되는 비용은 직접비용과 할당이 가능한 대부분의 간접비용이다(Reg. Sec. 1.263A(1)(e)(3)). 또한 이들 자산의 생산에 소요된 이자비용도 자본화되어야 한다(Reg. Sec. 1.263A-8, 15).

이와 같은 규정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이전 3년간 평균 총수입이 1천만달러 이하인 기업의 재판매용 개인자산, 목재, 장기계약으로 생산된 자산, 농업에서 생산된 일부 자산, 연구시험비(Sec. 173), 천연광물 탐사 및 개발비 등이다.

두 번째로 특수 관계자(related persons) 사이의 거래로 인한 경비와 이자는 납세자가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이용하면 이를 특수 관계자가 소득으로 처리하는 연도에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Sec. 163(e)(3), Sec. 267). 이외 광물의 감모상각, 금융기관의 일부 공제, 오염관리시설, 원유 등의 무형탐사비용 등도 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Sec. 291). 네 번째로 회사 중요인사(key personnel)에게 평소보다 더 많이 지급한 보수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Sec. 280G).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경영권이 바뀔 때에는 초과 지급금을 환불하도록 한 규정 등에서 발생한다(golden parachute payment).

다섯 번째로 사업 초기비용은 감가상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본화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ies)⁷⁸⁾에 의한 손실과 공제에 대한 제한은 개인서비

78) 기업이 과세연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업행위와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임대행위가 있다.

스 회사와 비상장 주식회사에 적용될 수 있다(Sec. 469). 마지막으로 세액공제가 허용된 항목을 위하여 지출한 일부 경비도 공제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업용 혹은 임대 및 로열티 소득 창출을 위한 이자 경비는 공제되지만 할인 채권의 이자 공제는 제한된다(Sec. 163(e)). 또한 등록되지 않은 채권은 이자경비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여타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얻은 부채의 이자는 500만달러까지 공제된다(Sec. 279). 이외 사전 납부한 이자에 대한 공제도 제한된다.

나) 일반공제

일반공제에는 우선 임원보수가 있는데 상장기업의 특정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100만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 이러한 보수는 기금 혹은 연금 등으로부터의 소득이나 부가급부는 포함하지 않으며 실적에 기초한 보수나 커미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종업원 임금은 취업 관련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공제된다.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이전에 이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으면 악성부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과 등록비의 경우 연방소득세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자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지역세금(도로개선),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 공제된 세금 그리고 세액공제되는 해외 소득세도 공제되지 않는다. 부채 대금이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이자공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이자 경비는 각각의 목적에 할당되어야 한다.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자나 판매 혹은 사용 목적으로 생산된 자산에 대한 부채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자선기부금도 일반공제에 포함되는데 기업의 기부금은 개인 기부금과 차이점이 많으므로 아래 익금산입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감가상각 이외에도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감모상각(depletion)이 허용된다. 종업원 연금과 이윤 공유 그리고 기타 보상 플랜과 보험 등에 지급한 경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는 기타 공제에 포함한다. 이들 경비는 보험료, 오염 관리시설의 감가상각, 변호사비 등, 일회용 사용품, 전기료 등과 종업원 주식보유 플랜에 따라 주식에 지급된 현금배당 등이다. 그러나 벌금이나 면제소득에 할당될 수 있는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Sec. 265(b)).

출장비, 식비 그리고 접대비에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Sec. 274). 사업활동에서 지출한 일반적이고 필요한 출장비 등은 공제할 수 있지만 선물, 스카이박스 임대, 사치성 수상관광, 입장비 등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부인과 자녀 등 종업원을 동반한 자에 대한 출장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식비와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50%만 공제된다. 식비는 고급이 아니며 식사중과 전후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종업원이 식사에 참여하여야 한다(Sec. 274(n)(3))⁷⁹⁾.

민간 혹은 공공서비스 단체에 가입하기 위한 회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단체의 목적이 오락, 유희, 사업 등으로 회원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제할 수 없다. 오락 등을 위한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공제가 안 된다. 연방 혹은 주법 제정이나 연방정부 관리의 공적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로비에 쓰여진 경비도 공제될 수 없다(Reg. Sec. 1.162-29).

다) 특별공제(special deduction)

특별공제에는 배당수입 공제와 운영업손실 공제가 있다. 이들 항목은 아래 손익금 산입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공제항목의 적용은 우선 일반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난 후 자선기부금, 배당수입공제 그리고 운영업손실(NOL) 공제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과 NOL, 양도손실의 전년이월 그리고 배당수입공제가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소득으로 규정되지만 배당수입공제의 산정시 기부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4) 세액공제

법인세 납부 의무액으로부터 다음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 비과세 목적으로 사용된 유류에 대한 연방세 공제 2) 전년도 최저한세 공제 3) 외국세액공제 4) 일반 사업

79) 이들 비용이 보수의 일부로서 종업원 소득으로 보고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5) 특수연료공제 6) 미국 속령 법인세 공제 7) 전기자동차 공제 8) 학술채권 공제 9) 오존파괴 물질에 대한 세금 공제.

이 가운데 일반 사업공제(general business credit)는 금년도 사업공제와 이전에 이월받은 사업공제를 합하여 결정된다. 일반 사업공제는 연료용 알콜공제, 지역개발주식회사 공제, 고용주 제공 탁아소 공제, 재개발 고용 공제, 투자세액공제, 저소득층 주택 공제, 연구공제, 취업기회 제공 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로 구성된다. 이들 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해당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여러 개의 공제가 있으면 Form 3800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 납부액이 없어 공제 제한에 걸리면 이전 1년, 이후 20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이월 순서는 먼저 1년 전의 법인세 환급에 먼저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정신고서(Form 1120X)나 환급신청서(Form 1045나 Form 1139)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투자세액공제는 건물 재개발, 에너지 절약 그리고 식목분야에 적용된다. 즉, 적격의 건축물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를 하면 투자비용의 10%를 공제하여 준다(Sec. 47). 또한 태양에너지나 지열을 이용하는 시설과 묘목 등 산림 육성 경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Sec. 46, 48). 이들 세액공제는 이전 1년 그리고 이후 20년간 이월이 가능하다(Form 3800).

5) 세액공제 환수(recapture taxes)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항목이 상황에 따라 다시 환수되어 납세자의 세금 납부액을 늘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예에는 고용주가 제공한 탁아소 공제, 투자세액공제, 저소득층 주택공제, 전기자동차 공제 등이 있다. 즉,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환수기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사용 용도를 바꾸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국세청에 돌려주어야 한다.

나. 익금 및 손금 (불산입)

개인소득세와 달리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자선기부금

주식회사의 자선기부금은 우선 원칙적으로 실제 기부금을 지불한 연도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부 의무가 발생한 연도에 실제 기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데 단 이사회가 기부를 추인하고 해당 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부를 하여야 한다(Sec. 170(a)).

납세자가 자산을 기부할 경우 공제금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FMV)이지만 가격이 오른 자산의 경우 특별규정이 적용된다(Sec. 170(e))⁸⁰⁾. 우선 장기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소득 자산⁸¹⁾의 경우 공제금액은 이들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에서 자산을 판매하였다면 인정되는 일반소득 혹은 단기 양도차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장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capital gain property)을 기부할 때에는 공제금액이 공정한 시장가치이다. 한편 양도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기부할 때에는 손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때에는 자산을 팔아 손실을 인정받고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한 해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에 조정된 과세소득의 10%로 제한된다. 여기서 조정된 과세소득은 기부금과 운영업손실(NOL) 및 양도손실 이월금 그리고 배당수입공제를 감안하지 않은 과세소득이다.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가 이루어진 연도에 공제되지 않고 이후 5년간 이월되어 공제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기부가 먼저 공제되며 이월한 기부금과 그 당시 기부금이 조정된 총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Sec. 170(d)(2)).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자선단체로부터 금액 등을 명시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현금이 아닌 500달러 이상의 자산을 기부하는 주식회사는 기부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한 방식을 신고서에 부연하여야 한다. 단 개인서비스 회사와 비상장 회사는 이 경우 Form 8283을 제출해야 한다. 모든 주식회사는 자산 기부금이 5,000달

80) 이 밖에 병약자, 유아를 위하여 제공된 기부금, 연구용 기구 및 교육용 컴퓨터 기술과 기구는 공정한 시장가치 이상으로 평가되어 공제된다(Sec. 170(e)).

81) ordinary income property: 1년 이내 보유한 투자자산이나 채고, Sec 1245 혹은 Sec. 1250에 의거하여 환입(recapture)이 적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러 이상이면 Form 8283을 작성한다.

2) 특별공제

일반 주식회사(C 법인)의 경우 배당수입공제와 운영업손실에 대한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가) 배당수입공제(dividend received deduction, DRD)

일반 주식회사(C 법인)가 다른 국내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이는 총소득에 포함이 되는데 배당받은 주식회사가 나중에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삼중의 과세가 발생한다. 이러한 다중과세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여타 국내 주식회사와 일부 외국회사로부터 배당 받은 금액 중 일정 비율은 배당수입으로 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이외 소규모 투자회사는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⁸²⁾.

처음 배당을 한 회사의 주식 중 20% 이내의 주식을 소유한 일반 주식회사는 배당받은 금액의 70%를 공제할 수 있고 주식가액과 투표권의 20% 이상 그리고 80% 이하를 소유한 주식회사는 배당금의 80%를 공제할 수 있다(Sec. 243(a), (c))⁸³⁾. 전자의 경우 그러나 배당금의 70%와 운영업손실 공제, 양도손실 전년 이월금 그리고 배당수입 공제를 무시한 과세소득의 70% 중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가 된다(Sec. 246(b)). 후자의 경우 각각의 80%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⁸⁴⁾.

82) 그러나 부동산투자기금(REIT), 면세 주식회사(Sec. 501, 521), 단기간 보유한 주식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기보유 주식이란 배당권을 상실한 시점에서 45일 이전으로부터 90일 동안 46일 이하로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Sec. 246(c)(1)). 이는 주식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주가가 하락한 주식을 팔아 배당공제와 양도손실 공제를 동시에 받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부채를 얻어 구입한 주식의 배당도 공제되지 않는다(Sec. 246(A)).

83) 그러나 운영업손실이 있으면 70(80)%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84) 70%와 80%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기업은 우선 80% 규정으로 과세소득을 산정(감소)한 연후 70% 규정을 적용한다.

계열회사는 과세소득으로 인한 제한 없이 다른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회사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미국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당수입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회사는 미국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공제가 허용된다(Sec. 245).

나)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 NOL)

배당수입공제를 포함한 공제액이 총소득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순영업손실(NOL)로 간주된다(Sec. 172(c))⁸⁵⁾. 어떤 과세연도에 순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른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과세소득의 산정을 위한 공제에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의 순영업손실은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배당수입은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고 개인소득세와 달리 조정금액이 없다.

해당 손실은 이전 2년, 이후 20년까지 이월이 가능한데 이월 순서는 우선 전년, 그 다음 전년 그리고 이후 20년이 연대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⁸⁶⁾. 그러나 개인서비스 회사는 순영업손실을 전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 이외 기업 소유권이 바뀌면 순영업손실의 이월도 달라진다.

또한 주식회사는 이월방식에 있어서 전년 이월은 포기하고 이후 20년 이월을 선택해도 된다. 이전 연도의 이월로 인한 환급을 받으려면 Form 1120X(법인세 수정신고)나 Form 1139(환급 요청신고)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후 연도로 이월한다면 이를 Form 1120에 명기하여야 한다.

3)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예외

비상장 주식회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의 일부 거래에

85) 특정 연도의 순영업손실을 산정할 때에는 전년이나 이후 연도 순영업손실의 이월금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86) 일부 책임손실(liability loss)은 10년 전까지, 은행 악성부채 손실을 10년 이전 그리고 5년 후까지, 부동산투자신탁(REIT)은 당해 기관이 운영을 개시한 연도 이전으로 순영업손실을 이월할 수 없다. 영농 손실은 5년 이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는 제한이 가해진다. 우선 주식회사와 지배주주⁸⁷⁾ 사이의 거래에서 어느 한 쪽의 매입자가 거래된 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으면 판매 수익은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Sec. 1239(a)). 두 번째로 이들 자산의 판매시 발생하는 손실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입자가 나중에 제3자에게 판매할 때 발생한 이득은 이전에 허용되지 않은 손실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익으로 인정된다(Sec. 267(d)).

지배주주와 주식회사가 다른 회계방식을 도입한 상황에서는 주식회사가 지배주주에게 갚아야 할 경비나 이자(혹은 역으로 지배주주가 회사로부터 빌린 이자나 경비)에 대하여 수취인이 이를 총소득에 포함할 때까지 지급인이 경비나 이자를 공제받을 수 없다(Sec. 267(a)(2)).

정규 C 법인 주식회사의 과세연도에서 나중 반년 사이에 한 때 5인 혹은 그 이하의 주주가 50% 이상의 주식가액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특정 행위로부터의 손실은 해당 행위가 과세연도 종료시점에 회사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at-risk rule, Sec. 465(a)). 이로 인하여 공제되지 못한 손실은 회사의 위험도가 증가한 이후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4) 특수 관계자 거래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이용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현금주의를 사용하는 관련자(related person)에게 지불의무가 있는 사업비용과 이자에 대하여 관련자가 이를 자신의 총소득에 포함할 때까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들 사이에 이루어진 자산의 매매나 교환으로 발생한 손실도 공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관련자는 같은 지배그룹에 속한 다른 회원사(Sec. 2267(f)), 거래 주식회사의 주식가액 50% 이상을 직·간접적⁸⁸⁾으로 보유한 자, 동일한 자가 해당 주식회사와 S 주식회사 주식가액 50% 이상을 보유한 S 주식회사, 동일한 자가 해당 주식회사의 주식가액 50% 이상 그리고 파트너십의 자본 50% 이상을 보유한 파트너십 그리고 개

87) 지배주주는 주식가액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Sec. 267(b)(2)). 50%는 직계가 족과 해당 주주가 소유하거나 수혜권리를 가진 단체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할 수 있다(constructive stock ownership, Sec. 267(e)(3)).

88) 직계가족 혹은 파트너가 보유한 주식도 직·간접적인 보유로 간주된다.

인 서비스회사의 경우 주식보유와 관계없이 종업원이자 소유주인 자.

5) 기타 항목

시장금리(연방금리) 이하의 이자율로 제공된 부채의 경우 금리 차이에 상당한 추가적인 부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거래의 내역에 따라 선물, 배당, 자본에 대한 기여금 혹은 기타 지불금으로 간주된다⁸⁹⁾. 이 밖에 광산물 감모상각(depletion), 오염관리 시설 그리고 광물개발비용에 대한 공제가 개인소득세와 다르다.

다. 준비금/충당금

초과 유보세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기업 수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주의 사망시 유산신탁기금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회수할 목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유보할 수 있다(death tax redemption, Sec. 303). 두 번째로 민간 단체가 법이 정한 한도 이상으로 보유한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서도 준비금을 쌓을 수 있다(Sec. 4943). 이외 불량상품 책임 보상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라. 회계방식

1) 개요

주식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회계방식에는 현금, 발생주의 및 혼합주의(hybrid) 방식이 있다(Sec. 446). 재무성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는 장부회계와 세무회계 기록에 있어서 사실상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자가 이 두 가지 회계방식을 연계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자료를 납세자가 유지하면 장부 및 세무회계에서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이 회계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이를

89) Below Market Loans, Pub 535. IRS

신고하여야 한다(Form 3115)

발생주의에서는 소득과 경비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하는데 기업은 대개의 경우 특히 평균 총수입이 500만달러 이상인 주식회사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Sec. 448). 다만 첫째, 자격이 있는 가족농장 주식회사 둘째, 건강, 법, 엔지니어, 건축, 회계, 자문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격이 되는 개인서비스 회사 셋째, 1985년 12월 이후 모든 과세연도 총수입이 500만달러 이하인 주식회사 넷째, S 주식회사는 상기 3가지 회계방식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에서는 소득을 받을 권한이 확정되는 모든 사건이 발생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소득금액의 규모가 정해지면 이는 소득에 포함된다. 사건 발생 시점은 필요한 작업이 수행된 시점, 보수 지급이 기한인 시점 그리고 지급받은 시점 중 먼저 도착하는 날이다. 지불의무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지급금액이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지고 경비와 관련된 작업이 수행되면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의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주의에서는 소득이 실제로 혹은 실질적으로(constructively) 들어왔을 때 그리고 경비는 실제로 지급되었을 때 신고한다. 만약 재고가 소득을 창출하는 요인이 되면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없다. 혼합주의는 소매상과 같이 재고가 있는 소규모 업체가 판매, 구입비용, 재고, 매출채권과 지급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를 사용하고 임대료, 종업원 보수, 세금 등의 여타 소득과 경비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를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

기업은 법인서 신고서 Form 1120에 과세연도의 시작과 종료시점 당시 대차대조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Schedule L). 또한 재무회계 소득과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며 수익금의 배당과 사내 유보내역도 신고하여야 한다(Schedule M-1, M-2).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장부소득에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방소득세 ② 순양도손실 ③ 과세대상인 소득이지만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소득: 사전 납부된 임대료나 이자수입 ④ 세법상 비공제대상 경비: 과세소득 10% 이상의 기여

금, 허용되지 않는 장부상의 감가상각, 출장 및 접대비 50%(사치성 접대비는 전액, Sec. 274), 회사가 수혜자인 보험료, 면세 채권매입을 위하여 빌린 부채에 대한 이자, 보증 서비스 추정비용, 정당 기부금, 25달러 이상의 사업상 선물, 400달러 이상의 종업원 포상금, 교육용 출장 경비

이와 반대로 장부상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금년에 과세 소득이 아닌 소득: 사전 납부된 임대료나 이자 수입 중 이미 신고된 금액, 보험 수혜 지급금, 면세 이자 ②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나 경비로 처리된 비용과 손실: 장부상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감가상각, 비용환수 공제, 경비 처리된 자본비용(Sec. 179), 이월 받은 기부금 중 금년에 공제된 금액, 이월 받은 양도손실 중 공제금액 등.

4. 비과세소득

가. 해외무역소득(Extraterritorial Income)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되는 적격의 자산(qualified foreign trade property) 판매, 교환, 임대 혹은 처분 및 이로 인한 서비스나 미국 이외 지역에서 수행되는 건설용 엔지니어링 및 설계 서비스 그리고 관리 서비스 등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에서 면제된다.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과 주식회사 그리고 파트너십 등을 포함하는데 단 외국판매회사(FSC)가 연루된 일부 거래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⁹⁰⁾.

적격의 자산이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 혹은 소비되기 위하여 소지한 물품으로 50% 이상의 공정한 자산가치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50% 이상이 미국 내 직접 노동 비용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이들 물품은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데 만약 미국 국내 주식회사나 미국 시민 등이 생산한 제품이면 미국 내 생산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무역소득 면제를 받으려면 이러한 거래의 주요한 과정이 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미국 이외 지역에서 납세자 혹은 그 직원 등이 광고 이외 제품 판매에 관여하

90) 이는 해외무역소득과 외국판매회사(Foreign Sales Corporation) 소득에 면·공제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고 해당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판매비용의 50% 이상이 해외비용이어야 한다. 단 해외무역으로 인한 총수입이 500만달러 이하이면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무역소득은 전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면제되면 과세소득이 외국무역소득의 15%, 해외무역 총수입의 1.2% 혹은 외국 판매 및 임대소득의 30% 중에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 금액을 의미한다(qualifying foreign trade income, Form 8873).

5. 법인세 세율, 신고 및 납부

정규 주식회사(C 법인)는 스스로 법인세를 산정 및 신고하여야 하는데 일반 법인세 이외에도 주식회사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와 함께 해당될 경우 초과 유보세(accumulated earnings tax)나 개인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도 납부해야 할지 모른다.

가. 법인세 세율

개인 서비스 회사와 계열회사를 제외한 일반 주식회사의 법인세 세율은 <표 III-8>과 같다. 미국 내에서 거래나 영업을 하는 외국 회사에도 이러한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15~3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는데 중간 부분에서 추가세율이 부과되기도 한다. 즉, 7.5~10만달러까지의 과세소득은 3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소득이 10만달러를 넘으면 33.5만달러까지 초과분에 대하여 5%의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최대 11,750달러(0.05×225,000)까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표 III-8> 미국 법인세 세율(2003)

(단위:달러, %)

과세소득	세율	한계세율 적용소득
0~50,000	15	0
50,000~75,000	7,500+25	50,000
75,000~100,000	13,750+34	75,000
100,000~335,000	22,250+39	100,000
335,000~10,000,000	113,900+34	335,000
10,000,000~15,000,000	3,400,000+35	10,000,000
15,000,000~18,333,333	5,150,000+38	15,000,000
18,333,333~	6,416,667+35	18,333,333

주: Internal Revenue Code Sec. 11.

자료: K. Murphy and M. Higgins,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Thomson Co., 2003, US.

그러나 과세소득이 33.5~1천만달러 사이에 있으면 다시 전체 과세소득에 일률의 세율(34%)이 적용된다. 과세소득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면 추가분 500만달러까지 한계세율은 35%가 된다. 소득이 1,500만달러를 넘으면 추가분에 3%의 추가 세율이 다시 적용되며 18,333,333달러의 과세소득부터는 35%로 일률 과세된다.

개인 서비스회사는 누진과세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35%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이로 인하여 개인서비스 회사는 S 주식회사로 법인세보다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동기가 발생한다. 세율 35% 적용을 위한 개인 서비스회사는 해당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모든 활동이 개인 서비스 제공이며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 퇴직 종업원 혹은 이들의 유산신탁기금 등이 직·간접적으로 주식가액의 95% 이상을 보유한 회사를 의미한다.

한 지배그룹(controlled group)⁹¹⁾에 속한 회사들의 경우 회사들간의 경비와 소득 배

91) 지배그룹은 주식보유 정도에 따라 모·자회사, 형제회사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대부분의 모자회사가 속한 계열그룹(affiliated group)은 통합신고할 수 있지만 형제회사는 통합신고를 할 수 없다.

분을 통하여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회사들은 통합신고를 하지 않고 각기 따로 신고할 경우 그룹 전체로서 누진과세의 적용을 받으며 5%, 3%의 추가 세율도 부과된다. 즉,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 전체 소득에 대하여 하나의 주식회사처럼 과세하는 것이다(Sec. 1561, 1563). 그러므로 이들 회사들의 전체 소득에서 처음 5만달러에 대하여 15%, 그 다음 2.5만달러에 25%, 그 다음 992.5만달러에 대하여 34% 등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밖에 지배그룹 회원사들은 유보수익 세액공제, 사업 세액공제, 대체 소득세의 면제, 경비 처리되는 감가상각 자산과 추가세율에 대한 면세소득 등 세제상 혜택을 서로 배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사 사이의 거래에 따른 손실은 공제되지 않고 이연되어 제3자에게 매매할 당시 손실이 공제된다(Sec. 267(a)(1)). 이 밖에 회원사 사이의 거래에는 특수 관계자 거래(related person)에 부과되는 일부 과세상 제약조건이 지배그룹에도 적용된다.

나. 법인세의 결정

1) 법인세액의 결정

전술한 대로 총수입에서 판매비용을 제외하고 양도차익과 배당, 임대료, 이자수입 등 여타 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여타 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한 후 과세소득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정된 납세 의무액에 각종 세액공제와 이미 납부한 추정세액을 제외하고 가산금을 합하면 주식회사가 납부해야 할 일반법인세가 된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이러한 일반법인세 이외에도 해당이 될 경우 최저한세 그리고 초과 유보세(accumulated earning tax)와 개인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 PHC)가 있을 수 있다. 최저한세는 법인세 산정과 다른 방식을 거쳐 계산된 잠정 대체세가 일반 법인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일반법인세와 함께 최저한세(AMT)로 납부하고 아니면 일반법인세만 납부한다.

<표 III-9> 법인세 납부 의무액의 일반적 결정방식

법인세	최저한세(AMT)
총소득 - 공제 및 손실 특별 공제 이전 과세소득 - 특별 공제	NOL 공제 이전 과세소득(A) ± 과세소득 조정항목 + 세금우대항목 - 대체세 NOL공제
과세소득 × 법인세 세율 일반 납세의무액 - 외국세액공제 및 보유 세액공제 일반 법인세액(A) - 기타 세액공제 + 이전에 신청한 세액공제 환수	대체 최소 과세소득 - 표준 면제
일반소득세 납부 의무액(B)	과표 ×0.2 공제 이전 잠정 최저한세 - 최저한세 외국세액공제 잠정 최저한세 - 최저한세 투자세액공제 - 일반소득세(B)
	최저한세 납부의무액(0보다 클 경우)(C)
일반소득세 납부 의무액(B) + 최저한세 납부의무액(C) + 초과 유보세 + 개인지주회사세 - 추정 납부세액	
순 납부세액(혹은 환급세액)	

주: 초과 유보세 등은 특별세임.

자료: 「Federal Taxation 2003, Comprehensive 2003」, Prentice Hall, 2003.

2) 최저한세(AMT)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는 개인소득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소득이 있는 주식회사가 각종 공제와 면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독자적인 감면 및 공제 규정이 있는 제도이다. 최저한세는 이전 3년간 평균 총수입이 7.5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ec.

55(e)).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도 과세소득에 대하여 4만달러의 표준 면제를 적용받는다(Sec. 55(d)(2)).

최저한세 산정방식을 보면 과세소득을 세금우대 항목과 합한 뒤 일부 금액을 조정 한 금액(AMTI)에서 규정상의 면제항목을 제외한 과표금액을 20%로 곱하여 잠정적인 최저한세를 계산한다. 만약 일반법인세가 잠정 대체세보다 많으면 일반법인세를 납부하고 잠정 대체세가 일반법인세보다 크면 그 차액을 일반법인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보다 상세히 대체 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대체 최소 과세소득(AMTI)은 일반 과세소득을 1) 세금우대 항목⁹²⁾과 합하고 2) 각종 여타 소득과 공제 및 손익을 가감 조정⁹³⁾하며 3) 조정 이전의 대체 최소 과세소득과 조정된 현행 수익(ACE)⁹⁴⁾의 차액 중 75%를 가감하고 4) 대체 영업순손실 공제액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된 대체 최소 과세소득은 다시 4만달러에 달하는 표준면제액을 적용 받는데 다만 표준면제액은 대체 최소소득이 1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25% 만큼 감소한다⁹⁵⁾. 표준면제액을 삭감한 대체 최소소득을 0.2로 곱한 뒤 최저한세에서 허용되는 외국세액공제⁹⁶⁾를 제외하면 잠정 최저한세가 되는데 이를 일반법인세에서 외국세액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과 비교하여 최저한세의 납부 여부가 결정된다⁹⁷⁾.

주식회사가 최저한세를 납부할 경우 향후 법인세 납부에 있어서 최저한세액공제(minimum tax credit)를 허용받을 수 있다. 동 공제는 먼저 최저한세로 그리고 이후 일반 법인세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Sec. 53). 한 해에 최소한

92) 감가(모)상각, 석유산업 등의 개발비용 그리고 중소기업 주식판매에 따른 비과세(Sec. 1202(a)) 등에서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항목이다(Sec. 57(a)).

93) 최저한세에서는 부동산을 제외한 각종 자산의 감가상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Sec. 56(a)). 따라서 자산의 양도손익도 일반 법인세 산정 때 계산된 금액과 달라진다. 이 밖에 최저한세에서는 순영업손실 등의 계산방식이 다르다.

94) Adjusted Current Earning: 주식회사의 이익 분배가 배당인지 아니면 자본의 반환인지를 구분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Sec. 56(g)).

95) 따라서 대체 최소 과세소득이 31만달러 $((31-15) \times 0.25)$ 가 되면 표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96) Sec. 59(a)

97) 이 밖에도 일반 사업공제(general business tax)도 법인세와 최저한세의 전액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없고 초과유보세와 개인지주회사세에서는 전혀 상쇄되지 않는다(Sec. 38(c)).

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86년 이후 납부한 모든 최저한세에서 최소세액 공제로 사용된 최저한세를 제외한 금액인데 다만 당해연도의 법인세가 잠정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최소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1) 법인세 신고

내국세법 501조에 의하여 면제된 법인(자선 및 교육 등 공공단체)을 제외한 국내 정규 C 주식회사는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소득이 없어도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Sec. 6012(a)(2)).

법인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Form 1120을 이용하며 총수입, 소득 그리고 총자산이 모두 50만달러 이하이면 축약신고(Form 1120-A)를 할 수 있다⁹⁸⁾. 또한 농업협동조합(Form 990-C), 외국기업(Form 1120-F), 외국판매회사(Form 1120-FSC), 생명보험회사(Form 1120-L), S 주식회사(Form 1120-S) 등 일부 주식회사는 다른 양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시 기업의 대차대조표(Schedule L) 그리고 장부상의 소득과 소득세 신고상의 소득을 조정한 표(Schedule M-1)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는 주식회사의 과세연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추정세액과 함께 Form 7004를 제출하면 신고가 자동적으로 6개월이 연장된다(Sec. 6072(b)). 신고를 연기하더라도 추정된 세금의 납부는 정시에 하여야 한다. 이외 청산된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청산 후 3개월 15일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정신고는 Form 1120X를 이용한다.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

98) 이 밖에도 최저한세에서 면제된 기업이나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며 일반사업공제와 전년도 최소한세 세액공제 이외 환급이 되지 않는 세액공제가 없고 외국회사를 소유하지 않는 등 다양한 조건이 있다.

다. 소득, 경비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기록은 신고기일이나 실제 신고일 중 나중 날짜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 관련 서류는 구입비용이나 대체비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한다.

2) 추정세액의 납부

해당 연도에 500달러 이상의 법인세를 예상하는 주식회사는 추정세액의 25%를 분기별로 분할납부하고 연말에 법인세 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Sec. 6655). 역년을 과세연도로 하는 주식회사는 연방은행과 지정된 금융기관에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12월 15일까지 추정세액을 납부한다⁹⁹⁾. 추정세액은 법인소득세와 세액공제를 초과하는 대체 소득세를 합친 금액이다.

대기업¹⁰⁰⁾이 아닌 주식회사가 납부해야 할 추정세액은 당해연도 납세액의 100%와 이전연도 납세신고액의 100% 중 적은 금액이다¹⁰¹⁾. 대기업의 경우 추정세액은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에 명기된 금액의 100%이며 이전 연도의 납세액을 기초로 추정세액을 산정할 수 없다¹⁰²⁾. 다만 첫 분기 추정세액은 이전연도를 기초로 납부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분기에 그 차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기일까지 추정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산금은 Sec. 6621에 따라 과소납부에 적용되는 금리(underpayment rate)¹⁰³⁾와 과소납부분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기간은 추정세액 납부기일로부터 추정세액이 납부된 날과 법인세 신고기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이다.

법인세 신고를 할 당시 잔여 납세 의무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

99) Form 8109를 작성, 추정세액을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탁하며 2002년 당시 예탁금이 20만달러 이상인 업체 등은 법인세와 원천징수 세금을 연방전자납부시스템(EFTPS)을 이용하여야 한다.

100) large corporation: 당해 과세연도 바로 이전 3년간 어느 한 해라도 조정된 과세소득(순영업손실이나 이월된 양도손실이 없는 소득)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면 대기업으로 간주된다.

101) 단, 이전 해에 납세액이 없었던 때를 기초로 추정세액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102) 추정세액의 산정은 annualized income method이나 adjusted seasonal income method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103) 일반적으로 재무성 장관이 정하는 단기 연방금리에 3%를 가산한 금리이지만 대기업의 경우 5%를 가산한다.

으면 합리적 사유를 증빙할 수 없는 한 가산금 이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연기신청서(Form 7004)에 명기된 납세액이나 원래 기일까지 납부한 법인세 금액이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에 신고된 금액의 90%를 초과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Reg. Sec. 301.6651-1(c)(4)).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정세액을 늦게 납부할 경우 제 I 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득세, 사회보장세 그리고 의료보험세(Medicare tax) 등 기업이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에 이를 예탁하지 않는 업체는 기금 회수를 위한 벌금(trust fund recovery penalty)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100%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였을 때 적용된다.

라. 면세단체와 자료 신고

자선, 교육, 종교, 연구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연방소득세에서 면제된다(Sec. 501(c)(3)). 면세를 받으려면 해당 단체는 주식회사, 신탁기금 또는 재단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Form 1023을 작성, 면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면세단체에 기부금을 증여하는 납세자는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지단체, 노동, 농업, 사업단체, 사회 및 오락단체 등도 면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Sec. 501(a)에 의거하여 연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단체도 매년 납세 관련 자료 신고(Form 990)를 하여야 한다(information return). 다만 종교단체, 종교단체의 초중등 교육기관, 폐병기금(Sec. 501(c)(21), 주식 보너스, 연금 및 이윤공유기금(Sec. 401, 501(c)(1)), 외국기관(Sec. 501(a)), 민간기관(Sec. 501(c)(3), 509) 등이다. 정당을 제외한 정치단체도 총수입이 2.5만달러를 넘으면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기한은 이들 단체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되는 달 15일이다. Form 990의 복사본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고도 대체할 수 있다.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매일 2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대 벌금은 총수입의 5%와 1만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이며 총수입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단체는 최대 5만달러를 한도로 매일 100달러가 부과된다.

해당 단체가 비록 면세단체일지라도 자선, 교육 등의 면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1,000달러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unrelated business income, Form 990-T).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면 분기별로 납부하고 신고일에 확인 신고하여야 한다.

6. 기업 매수·합병 및 분할

가. 기업 매수

1) 과세대상 매수

과세되는 회사 매수 행위에는 기업의 자산 매입과 주식 매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주식 매입은 지배주식(50% 이상)을 사들이는 것으로 매입 후 취득된 회사를 별도의 자회사로 유지하거나 과세되지 않는 청산을 하거나 혹은 Sec. 338(deemed sales election)에 따라 자회사 주식과 부채를 매입가격으로 환산하여 자회사 자산의 지분을 재조정할 수 있다.

가) 매수대상 회사 자산의 구입

회사 자산을 파는 기업은 개별 자산의 판매에 따른 손익을 신고하고 감가상각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전에 상각받는 부분을 환입하면 된다. 매입자는 그 대신 구입비용으로 매입자산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가상각한다(Sec. 1012). 이 때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구입하고 이자비용은 공제할 수 있는데 다른 방식의 매수는 비과세되는 대신 부채를 자금으로 조달하는 매수는 제한 혹은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자산 구입은 특정 자산과 부채만을 구입하고 이외 자산은 매입하지 않고 불확정 채무 등은 판매자의 책임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산을 판매한 회사는 청산을 하면서 판매한 자산의 손익을 신고하고 주주들에게 남은 자산을 배분하면 된다. 주주들은 배분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손실)을 신고한

다. 이에 대한 신고방식은 청산소득에서 설명한다.

나) 주식 매입

(1) 매수 후 별도의 자회사로 유지

매입한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주식을 구입하면 판매자는 해당 주식이 자본자산일 경우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을 신고한다. 만약 일부 대금이 나중에 지급되면 분할 회계방식(installment method)에 따라 양도차익 신고가 추후로 이연될 수 있다(Sec. 453(a)). 또한 일부 대금이 조건부 판매인 경우 이 부분은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되기도 한다(Sec. 197). 주식 매매에서는 자산 매매와 달리 매수대상 회사 주주만이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회사는 자산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구입자의 주식 평가액(stock basis)은 구입비용이며 매수된 회사의 자산평가액은 주식 매매로 바뀌지 않는다. 만약 감가상각의 환입(recapture)이 발생하면 이는 매입자가 책임을 지며 손실이월에 있으면 취득 이후에는 이월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매수한 회사 지분의 80% 이상을 구입한 계열그룹은 해당 회사를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통합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 매매는 판매자 입장에서 자산 매매와 달리 주식대금에 따라 회사 자산의 평가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다. 반면 구입자 입장에서는 Sec. 338에 근거한 판매를 선택하지 않으면 구입한 자산의 평가액을 구입대금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 매수 후 청산

80% 이상의 주식 매입으로 취득한 회사를 모회사로 편입하는 형태의 청산은 비과세된다(Sec. 332, 337). 비과세되는 대신 만약 자회사의 자산 평가액보다 큰 금액을 지불하였다면 그 차액은 무시되고 자회사의 자산 평가액이 모회사로 이전된다.

(3) Sec. 338(deemed sales election)

주식을 매입한 후 양도회사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청산이 이루어지면 이는 하나의 거래로 간주되어 주식매입가격을 매수자산의 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¹⁰⁴⁾. 주식을 매입한 회사가 Sec. 338을 선택하면 매수대상 회사는 모든 손익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대상 회사가 자산 매매에 따른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운영순손실이 있으면 이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Sec. 338을 선택하면 새로운 매수대상 회사(new target)가 성립하며 이 회사는 취득기간 동안의 매입주식과 매수대상 회사의 부채 등을 조정된 총주식 평가액(adjusted gross-up basis)으로 하고 별도의 회계방식과 과세연도를 선택한다(Sec. 338(b)). 새롭게 환산된 총주식 평가액은 회사 자산에 할당 배분되는데 유무형 개인자산에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Residual method, Reg. Sec. 1.338-6(a)). 한편 영업순손실 등 매수대상 회사의 과세 항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매수의 비교

가) 자산 구입을 통한 매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수한 후 회사를 청산한다고 가정하면 현금과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로 기업을 취득한 거래는 과세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고 주식 교환과 제한된 현금 및 부채를 이용하여 청산기업을 매수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입후 청산되는 기업은 청산으로 인한 손익을 신고하는데 예외적으로 주식 교환으로 기업을 파는 경우에는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외 자산(boot property)¹⁰⁵⁾을 받고 이를 주주에게 배분하지 않거나 자산평가액을 초과하

104) 단, 12개월의 취득기간 이내에 취득대상 회사 주식의 80% 이상(투표권 혹은 주식가액 기준)을 매입하여야 한다.

105) 비과세되는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받아야 하는 현금과 부채 등의 자산인데 한 예로 분할 및 합병에서 서로 교환한 채권의 액면가가 같으면 비과세되지만 다르면 차액은 과세된다.

는 예외자산 혹은 일부 매매하지 않은 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손익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거래가 과세대상이면 청산되는 기업의 주주는 주식의 포기에 따른 손익을 신고한다. 이때 양도받은 자산이 있으면 공정가격이 평가액이 된다. 비과세되는 거래인 경우 주주는 만약 예외 자산을 배분받는다면 양도차익으로 신고한다. 그러나 매수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이나 증권은 대신 포기한 주식의 평가액을 바탕으로 대체 평가한다.

자산을 취득한 양수기업은 주식 발행 및 교환으로 매수한 자산에 대해서는 손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과세가 되는 경우 자산의 매수비용이 평가액이 되며 그 대신 매수 대상 기업이 보유한 순영업손실 등은 무시되고 거래일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된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자산을 판매한 기업의 평가액이 그대로 매매기업으로부터 이전되고 순영업손실도 이월된다.

나) 주식 매입을 통한 매수

주식 매입을 위한 수단으로 현금과 부채의무 그리고 주식교환을 이용하면 과세되고 모회사의 주식만을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구입, 자회사하면 비과세된다. 청산대상 기업의 주주는 과세대상인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신고하여야 하며 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양도이익은 일반소득으로 신고한다. 모회사 주식을 대신 받은 경우 신고가 필요 없고 이들 주식의 평가액은 청산대상 기업 주식의 평가액과 같다.

과세 여부를 떠나 매수대상 자회사는 모회사가 Sec. 338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산의 평가를 바꿀 필요가 없고 여타 손실이나 공제 이월은 일정 한도 내에서 모회사가 사용할 수 있다. 계열그룹은 자회사도 통합 신고한다. 모회사도 과세 여부를 떠나 손실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과세대상인 거래에서는 매입비용으로 자산을 평가하며 비과세 거래에서는 매수대상 기업 주주의 주식 평가액이 매수가액이 된다.

나. 기업합병과 분할 등

Sec. 368(a)(1)에 근거한 사업의 재편은 7개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크게 매수거래와 분할거래로 구분된다. 매수거래는 양도기업(transferor)의 자산 또는 주식 전부 혹은 일부를 취득하는 거래로 A, B, C, D, G 유형으로 나뉘며 분할거래는 양도기업의 자산을 양도기업이나 그 주주가 지배하는 또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는 거래이다. 이 때 자산을 양도받은 양수기업(transferee)의 주식이나 증권은 자산을 양도한 기업(transferor)의 주주에게 기업 재조직의 일환으로 배분된다. D와 G 유형의 재편은 매수거래일 수도 있고 분할거래일 수도 있다.

또한 기업간 자산교환을 유발하지 않는 재편은 E와 F 유형이 있는데 E 유형은 자본 구조의 변화와 연루된 재편이며 F 유형은 법인의 형태 등을 바꾸는 재편으로 주주 지분에는 영향이 없다. 기업 개편이 특정한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내국세법과 국제청이 적용 규정을 결정한다.

1) 비과세 자격의 기본원칙

대법원은 외양보다 내용을 중요시하는 원칙에 따라 합병/분할 거래에 대하여 법적 요건 이상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이 특히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분할을 전후하여 투자자의 지분이 지속되어야 한다(continuity of interest). 따라서 합병대상 기업의 주주가 주식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이나 단기부채를 대부분 받는 거래는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Reg. Sec. 1.368-1(b)). 둘째, 자산을 매수한 기업은 상대방 기업의 기존 사업을 지속하거나 매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여야 한다(Reg. Sec. 1.368-1 (d)). 셋째, 합병 등의 거래가 선의의 사업상 목적(bona fide)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g. Sec. 1.368-1(c)). 넷째, 일련의 거래가 단순히 세금 회피를 위한 거래이면 이를 합하여 하나의 과세대상 거래로 간주한다(step transaction doctrine).

2) 과세상의 특징

가) 양도기업(transferor)

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상대방 양수기업의 주식만을 받는 거래는 손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현금이나 예외자산(boot property)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주주에게 배분하여도 마찬가지이다(Sec. 361(a), (b)). 예외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예외자산과 현금은 공정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전된 부동산 등의 감가상각 환입 가능성이나 채무 등도 손익의 인정 없이 상대방 기업에게 그대로 이전되며 다만 채무가 이전된 자산 등의 평가액을 초과하면 이에 따른 차익을 신고한다(Sec. 357(c)).

또한 기업개편의 일환으로 양도받은 주식이나 주식 매입권리 등을 주주나 채무자에게 배분할 때 손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을 제외한 예외자산이나 양도되지 않은 자산의 배분은 마치 공정가격에서의 자산 매매와 같이 신고된다(Sec. 361(c)).

나) 양수기업(transferee)

자산을 양수받은 기업도 비과세되는 기업 재편으로 주식이나 증권 대신 받은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Sec. 1032). 그러나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이나 그 주주에게 현금이 아닌 예외자산을 이전하면 신고하여야 한다(Sec. 1001). 대개 보유기간과 함께 양도한 기업의 자산 평가액이 양수기업에게 그대로 이월되는데 만약 양도기업이 자산 교환 당시 양도차익을 인정 신고하면 자산의 평가액은 그만큼 증가한다(Sec. 362(b)).

다) 주주 및 증권 보유자

기업 재편의 과정에서 자기 혹은 상대방 기업의 주식이나 증권이 교환되면 손익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Sec. 354(a)). 이외 자산의 경우에도 실제 실현된 양도차익 혹은 배분받은 자산의 공정가격과 현금 중 적은 금액을 신고하면 된다(Sec. 356(a)). 증권의 경우 포기한 증권 원금과 새로 받은 증권원금이 같아야 하고 후자가 전자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은 예외자산(boot)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Sec. 354(a)(2)).

또한 동 조항에 따르면 만약 예외자산의 취득이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으면 신고되는 차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배당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주주의 인정되는 이익과 해당 기업의 당해연도 및 초과 유보 수익(E&P)의 지분 중에서 적은 금액이며 이외 금액은 양도차익으로 신고된다(Sec. 302(b)).

양도기업의 주주나 채무자가 받은 주식과 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므로 이들 자산의 평가액은 Sec. 358에 따라 조정된 자산의 평가액에서 교환 당시 이익을 합하고 그 과정에서 받은 현금과 자산의 공정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새로운 평가액이 된다. 새로 받은 주식과 증권의 보유기간은 포기한 주식 등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

3) 기업합병

가) A 유형

A 유형은 다양한 유형의 합병(merger, consolidation, triangular merger, reverse triangular merger)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처음 두 가지 유형은 미국 주식회사 법에 의한 합병이며 나머지 두 유형은 허용된 합병이다.

우선 일반합병(merger)은 합병되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하는 회사의 주식과 증권 그리고 여타 자산(boot)과 교환하고 양도기업은 폐업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종류의 일반합병은 양수기업의 주식 등을 주고 그 대신 자산과 양도기업의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주식과 부채를 인수한 후 양도기업을 소멸한다. 한편 두 번째 합병(consolidation)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청산하고 대신 새로운 기업의 주식 등을 기존 주주와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합병은 Sec. 368(a)(1)(A)에 따라 A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와 같은 합병거래는 비과세된다. 합병의 사전 허가를 받으려면 합병시 지급하는 보수의 최소한 50%가 양수하는 기업의 주식이어야 하며 사전 허가가 필요 없으면 50% 이상도 주식 이외 현금이나 증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합병과 관련된 주정부 회사법을 지키지 않거나 양도기업이 소멸되지 않으면 A 유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불확정 채

무도 인수하여야 하며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은 현금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C 유형과 같이 양도회사의 상당한 자산을 인수할 필요는 없으며 처분해도 된다.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은 유형 A와 동일한데 다만 양수회사가 지배그룹의 자회사로서 양도받은 자산 등이 자회사에 편입된다(Sec. 368(a)(2)(D)). 이 경우 교환되는 주식은 모회사의 주식이어야 하며 다만 자회사의 현금과 채권을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부채도 대신 책임질 수 있다. 또한 자회사는 합병되는 회사의 '실질적인 모든' 자산을 인수해야 하는데 대개 총자산의 70% 이상 그리고 순자산의 90% 이상이 실질적인 모든 자산이다. 이와 같은 합병은 모회사 대신 자회사가 불확정 채무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역삼각 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은 자회사가 양도회사에 합병되고 양도회사를 모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한다

나) 다른 유형의 기업재편

B 유형의 합병은 주주가 양도기업의 주식을 양수기업의 투표권이 있는 주식과 교환하고 양도기업이 양수기업의 자회사로 남아 있는 것이다(Sec. 368(a)(1)(B)). 만약 투표권이 없는 주식을 이용하여 기업을 매수하면 양도기업의 주주는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된다. 또한 B 유형에서는 금액이 동일하면 손익에 대한 신고 없이 양수기업의 채무와 양도기업의 주주가 진 채무와 교환이 가능하다.

C 유형은 양도회사의 '실질적인 모든' 자산을 투표권이 있는 주식과 일정 한도의 여타 자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매수한다(Sec. 368(a)(1)(C)). 실질적인 모든 자산의 개념은 A 유형과 유사하다. C 유형에서는 합병되는 회사(양도회사)가 소멸할 필요는 없다. 또한 양도회사 자산의 20%는 투표권이 있는 주식이 아닌 현금 등으로 구입해도 된다. 자산은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Sec. 368(a)(2)(B)).

C 유형의 경우 합병 당시 계약에 명시된 부채만을 인수하며 A 유형과 달리 양수회사의 주주 승인이 필요 없다. 그러나 A 유형과 달리 투표권이 있는 주식의 교환이 요구되고 양도자산의 50%가 아닌 80%를 주식과 교환하여야 한다.

D 유형은 기업의 합병 혹은 분할일 수 있는데 재편 계획에 따라 양도기업의 실질적인 모든 자산을 양수기업에 인수하고 대신 주식과 증권 등을 받는 합병으로 연후 양도

기업은 주주들에게 주식 등의 자산을 배분하고 완전히 청산한다. D 유형의 특성은 자산의 양도 직후 양도된 기업의 주주가 양수받은 기업을 지배하는 데 있다(Sec. 368(a)(2)(H))¹⁰⁶⁾. 양수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양도기업의 이전된 자산 평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차익으로 신고하여야 한다(Sec. 357(c)).

D 유형은 파산 등에 따라 법원의 허가로 실질적인 모든 자산을 양수기업에 인도하고 대신 받은 주식 등의 자산을 주주와 채무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4) 기업분할

가) D 유형

기업분할에서도 기업자산을 피지배기업(controlled corporation)에게 넘기는 대신 주식과 채권·자산 등을 매수, 주주에게 배분한다. D 유형의 분할은 기업개편의 일환으로 Sec. 368(a)(1)(D)와 Sec. 355에 명시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을 말한다. 355조에 따라 지배받는 기업의 주식 배분은 양도기업이 자산을 피지배기업에 인도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지만 D 유형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산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D 유형의 분할에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 ① 기업이 피지배기업에게 일부 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주식, 현금, 증권 기타 예외자산(boot)을 받고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일부 주주에게 보유한 주식 일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모기업이 일부 주주그룹의 지분을 회수할 때 쓰인다(split off).
- ② 기업이 피지배기업에게 일부 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주식, 현금, 증권 기타 예외자산(boot)을 받고 자회사의 주식을 주주에게 지분별로 분배하고 그 대신 아무 것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한 기업의 사업부문을 나눌 때 쓰인다(spin off).
- ③ 기업이 두 개의 피지배기업에게 모든 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주식, 현금, 증권 기타 예외자산(boot)을 받고 자회사의 주식을 지분별로 모든 주주들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양도기업은 청산된다(split up).

106) 투표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 혹은 주식가액의 50% 이상을 보유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 Sec 335에 제시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첫 번째 분할(split off)은 주식회수(stock redemption)로, 두 번째 방식(spin off)은 주식배당으로 그리고 세 번째 방식(split up)은 모회사의 청산으로 간주된다.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은 대부분의 경우 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예외자산(boot property)을 받고 이를 배분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나 피지배기업이 대신 책임지는 양도기업의 채무가 이전된 자산의 조정된 평가액보다 많으면 손익을 인정한다(Sec. 357(c)(1)(B), Sec. 361(a)). 피지배기업은 주식 대신 교환받은 자산에 대하여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매수자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평가액을 그대로 이월받는데 양도기업이 신고한 차익이 있으면 그만큼 평가액을 상향조정한다(carry over basis).

주식과 증권 배분에 있어서는 법 355조가 기업분할에도 적용되어 피지배기업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기업은 손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이 아닌 예외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고 피지배기업의 부적격한 주식을 배분할 때 차익을 인정한다(손실은 아님, Sec. 361(c) (1)). 주주들도 마찬가지이다(Sec. 366(a)). 주주들의 주식 평가액은 이전의 주식 평가액에서 차익이 인정된 금액을 더하고 이외 배당받은 현금과 예외자산의 공정가격만큼 감소한다. 배분받은 예외자산¹⁰⁷⁾은 과세상 성격은 분할방식에 따라 다른데 주식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spin off)에는 배당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차익으로 간주된다(손실은 인정되지 않음). 이외 주식처분과 관계없이 차익이 배당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Sec. 302, stock redemption).

나) Sec. 355

일반 분할이나 D 유형의 분할에서 비과세받으려면 35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동법에 의하면 피지배기업의 주식을 배분기업 주주에게 배분하는 비과세 행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주식배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배분하는 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의 주식과 증권만을 배분하며 ② 배분의 주된 목적이 이들 기업의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방도가 아니며 ③ 배분 이전에 최소 5년간 충실히 수행해 왔던 사업을 이들

107) 주주가 교환한 증권도 액면금액이 같으면 비과세되지만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는 예외자산으로 구분된다(Sec. 351).

기업 모두가 충실히 수행하고 ④ 배분 이전 보유한 피지배기업의 주식과 증권 모두를 배분하며 ⑤ 배분이 실질적인 사업상의 목적이 있고(Reg. Sec. 1.355-2(b)(5)) ⑥ 배분 이전에 직·간접적으로 지배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분할 이후 최소한 한 기업에 지속적인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G 유형

G 유형은 D 유형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 아래 어떤 기업의 전부 혹은 일부 자산을 다른 기업에 인도하는 것으로 양도기업은 양수기업의 주식과 증권을 주주에게 배분한 후 자기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아니면 파산으로 청산한다.

5) 기타 유형의 기업재편

E 유형은 자산 재평가(recapitalization)에 해당하며 부채와 주식 교환을 위한 주식 발행 등의 선의적인 사업상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틀 안에서 기업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Sec. 368(a)(1)(E)). E 유형으로 인정받아 비과세되려면 주식과 주식, 주식과 부채채권, 부채채권 상호간의 교환이어야 하며 주주들이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배분받는 것 이외의 자산 변동은 없어야 한다.

주식 맞교환에서 새로 받은 주식의 공정가격이 포기한 주식의 공정가격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상황에 따라 증여, 보수, 배당, 부채상환 등으로 취급되어 과세되며 채권과 주식 교환에서는 이자상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소득으로 취급된다. 부채채권 교환에서도 액면가가 같아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F 유형은 기업의 명이나 사업지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이 때 변경전 회사의 주식과 채무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손익의 인정 없이 그대로 이전된다.

다. 합병/분할에 따른 과세와 신고

일부 제한된 항목을 제외하면 합병/분할시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의 공제나 손실 등

과세상 속성(tax attributes)은 양수하는 기업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특히 A, C, D, F 그리고 매수형 G 유형 기업재편에서는 자산을 취득하는 기업이 자산뿐만 아니라 공제 등의 과세상 속성도 인도받는다. 하지만 B와 E 유형에서는 자산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속성도 이동하지 않는다.

Sec. 381(c)에 따라 양수기업에게 인도되는 항목에는 운영업손실과 자본손실, 수익(E&P), 일반 사업공제 그리고 재고산정방식이 있다. 매수한 기업의 운영업손실 이전은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이후 2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은 단순히 손실이월 공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제가 있는 기업(loss corporation)의 주식이나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Sec. 382~4, 269).

주식(Sec. 354)이나 자산(Sec. 361)의 양도에 따른 차익을 신고하지 않으려면 기업재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지만 회사기록이나 합의서 형식이면 안전하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 등의 양도는 과세될 수 있다. 한편 합병이나 분할을 하기 이전에 당사자들은 국세청에 이에 따른 과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7. 양도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제II장 개인소득세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정규 주식회사(C 법인)의 자산 매매나 교환도 개인소득세의 규정이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다만 양도소득(capital gain)은 특별 규정이 적용되며 감가상각되는 부동산(Sec. 1250 부동산)에는 20% 감가상각 환수가 적용된다.

우선 양도차익의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순양도 차익(장기 양도차익의 단기 양도손실 초과분)이 모두 총소득에 포함되어 일반법인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일반소득세와 같이 2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양도손실을 가지고 일반소득을 상쇄할 수 없고 다만 양도차익을 공제할 수 있다. 즉, 순양도 손실의 경우 일반소득이 아닌 양도차익을 상쇄하는 데에만 이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연도에 이를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양도손실은 실

제 내용과 관계없이 단기 양도손실로 간주되어 이전 3년까지 이월, 당시 양도차익을 상쇄하는 데 우선 사용되고(carryback), 여기서 환불받지 못한 손실은 이후 5년간 단기 양도손실로 양도차익을 상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carryover)¹⁰⁸⁾.

이에 비하면 개인은 3,000달러를 한도로 양도손실을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연도에 제한 없이 다음으로 이월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경우 이전 연도의 이월은 가능하지 않다.

두 번째로 Sec. 1250 자산을 판매하여 차익을 내면 동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원래 감가상각한 부분이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을 사용하였을 때 상각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차익을 일반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Sec. 1250 depreciation recapture). 개인의 경우 나머지 차익은 자본의 양도(Sec. 1231)에 의한 차익으로 규정되어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 해당 자산이 Sec. 1250 자산이 아닌 Sec. 1245 자산(감가상각이 되는 일반 자산)으로 간주되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추가 일반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손익으로 상쇄될 수 있는 양도차익이 아니고 일반소득이다(tax benefit recapture rule, Sec. 291).

8. 파트너십(Partnership)¹⁰⁹⁾

가. 개요

1) 사업유형과 신고방식

이윤을 창출할 목적으로 두 사람(단체) 이상이 함께 사업행위를 하고 이익을 공유하면 연방소득세 과세 목적상 파트너십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Sec. 761(a)). 단,

108) 이월시 공제 적용은 이전 3년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S 주식회사는 양도손실을 이월할 수 없다.

109) 파트너십은 우리나라 동업 혹은 조합기업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합자회사는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에 해당한다.

비용을 공유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회사나 일정 요건의 투자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파트너십의 유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 파트너와 달리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파트너십의 파산시 자신의 투자액과 미리 약속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가족의 일원 등이 파트너십 파트너가 되는 경우는 첫째, 자본이 소득을 창출하는 요소로서 해당 파트너가 선의적인 거래에서 자본에 대한 지분(capital interest)을 취득하고 실제로 소유 및 지배할 수 있거나 둘째, 자본이 소득을 창출하는 요인이 아니면 파트너들이 출자한 부분에 대하여 파트너십의 이윤, 자본 및 서비스를 공유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자본의 사용으로부터 상당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본이 소득을 창출하는 요인이며 파트너십이 제공한 개인 서비스로부터 보수나 사용료 등의 소득이 창출되면 자본은 소득의 창출 요인이 아니다.

한편 유한책임회사나 유한책임 파트너십이 있는 데 전자는 기업 파산시 소유주가 유한책임을 지며 후자는 각 파트너가 자신과 자신의 감독 아래 있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들은 선택하면 과세 목적상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밖에 100명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된 대규모 파트너십으로 신고하면 세금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2) 총칙

파트너십은 납세주체가 아니며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주에게 수익을 배당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문제되지 않는다(flow-through entity). 그 대신 각 파트너가 자신에게 할당된 파트너십의 손실과 공제 등을 개인소득(혹은 법인소득)으로 신고한다. 그러나 파트너십은 국세청에 소득과 이의 배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과세연도와 회계방식도 선택하여야 한다(Form 1065).

파트너십의 과세연도는 1인 혹은 같은 과세연도를 적용하는 1인 이상의 파트너들(majority partner)이 파트너십 이윤과 자본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이들의 과세연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윤과 자본지분의 5% 이상을 소

유한 파트너(principal partner)의 동일한 과세연도를 사용하여야 한다(Sec. 706(a)).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없으면 파트너들의 소득을 최소한 적게 이연하는 과세연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파트너십은 인정될만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으면 국세청의 승인 아래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고 이외에도 법 제 444조에서 허용된 여타 과세연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앞에서 법적으로 요구된 과세연도보다 3개월 이상 늦은 연도를 선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많은 파트너들이 역년을 과세연도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과세연도가 파트너의 소득세 과세연도와 다르면 납세이연이 가능하다. 파트너십은 과세연도 이외에도 회계방식, 다양한 감가(모)상각 그리고 재고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이러한 선택은 모든 파트너에게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반면 해외소득세의 세액공제 대비 일반공제, 부채 취소에 따른 소득, 광산경비 공제 등은 각 파트너가 따로 선택한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Sec. 703(b)).

나. 출자지분과 과세상의 대우

1) 출자와 손익 처리

파트너가 현금 등의 자산을 출자하면 그 대신 지분(partner's basis of interest)을 받으며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파트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보답으로 지분을 인정받으면 서비스는 자산이 아니므로 일반소득으로 취급, 과세되어야 한다(Sec. 83).

자산의 출자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첫째, 법인화되면 투자회사로 간주되는 파트너십에 대한 출자 둘째, 출자라기보다는 판매로 간주되는 약정에 따른 소득이나 이익의 지급 이후 이루어진 출자 셋째, 파트너의 부채를 파트너십이 부담하는 조건의 출자이다(Sec. 721(a)). 특히 파트너의 부채를 회사가 책임지는 경우는 다른 파트너들이 책임지는 부분만큼 현금배당으로 간주되고 반대로 파트너가 회사부채를 책임지는 경우는 현금 출자로 취급된다. 이 때 해당 파트너가 받았다고 간주되는 현금배당은 자본의 양도차익으로 취급되어 과세된다.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분을 받은

파트너는 현금지급과 마찬가지로 지급받은 지분을 공정가격으로 평가, 소득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파트너십은 이를 다른 형태의 지급방식과 마찬가지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

또한 파트너십이 파트너의 출자 이후 현금 등 다른 자산을 지급하는 경우¹¹⁰⁾ 출자가 없었다면 이러한 지급이 없었고 파트너가 지급받을 권리가 파트너십 운영의 성공 여부와 관계가 없으면 가장된 거래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이러한 교환거래가 최소 2년 격차로 발생하면 위장된 거래로 보지 않는다.

2) 지분의 조정

파트너의 지분(basis for partnership interest)은 파트너 출자금과 파트너십의 채무, 손익 그리고 배당에 대한 일람표이다. 따라서 지분은 파트너의 배분율에 따라 이전에 지급되어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한 예로 파트너십 운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는 지분의 증대에 반영되어 나중에 파트너십이 청산하더라도 지분에 포함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각년도 초가지분의 산정(beginning basis)은 지분을 매수한 방식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며 지분은 파트너십의 운영실적, 배당 그리고 추가 출자에 따라 변한다. 자산의 출자에 따른 지분은 이미 논의되었는데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지분을 매수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으로 평가되어 지분에 포함된다¹¹¹⁾. 유산으로 얻는 지분은 공정시장가격으로 평가되며 증여는 증여자의 지분가치로 평가된다.

부채의 경우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출자한 현금으로 간주되는 사례는 첫째, 파트너십 부채의 파트너 지분이 증가한 경우 둘째,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파트너십 부채에 대한 책임을 떠맡은 경우이다. 반대로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현금을 배당한 경우로 간주되는 사례는 첫째, 파트너십 부채의 파트너 지분이 감소한 경우 둘째, 파트너십이 파트너의 부채를 대신 책임지는 경우이다.

110) 파트너는 이러한 교환거래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Form 8275).

111) 지분을 판 파트너는 판매가액과 지분의 차액을 양도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지분의 처분으로 파트너십 부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면 이 부분도 양도손익에 포함된다.

부채의 변동 이외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는 파트너가 추가로 출자한 경우 그리고 파트너십의 과세 혹은 비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그 대신 파트너십이 배당하거나 파트너십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과세상 공제되지 않은 경비¹¹²⁾가 발생한 경우(자본 경비 제외)에는 지분이 감소한다. 이러한 지분의 감소로 기존 지분이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다. 출자나 배당과 달리 나머지 경우에는 파트너의 배분율(distributive share)에 따라 지분이 증가 내지는 감소한다.

다. 과세소득과 신고방식

1) 과세소득

파트너십의 경우 첫째, 파트너는 회사 일반소득, 손실 그리고 별도 항목에 대하여 자신들의 배분율에 상당한 부분을 소득세에 신고하며 둘째, 그 대신 배당된 이익은 투자의 환수로 간주되어 비과세 되며 셋째, 파트너 지분은 이들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파트너의 지분비율만큼 조정되어야 한다.

가)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납세주체는 아니지만 과세소득과 소득 및 공제에 대한 파트너 사이의 분배비율을 신고하여야 한다. 파트너십의 과세소득은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산정된다. 그러나 내국세법 703(a)조에 따라 과세소득 산정시 파트너십은 순영업손실의 이월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순영업손실은 개인 차원에서 파트너의 사업소득이 순영업손실보다 적어야 공제된다. 또한 파트너십은 아래에서 논의되는 해외 소득세와 기부금 등을 공제할 수 없고 그 대신 파트너 차원에서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

법 702조 (a)항에 따라 과세소득 산정시 Schedule K에 별도로 기재되어야 할 항목에는 ① 단기 양도 순이익 혹은 손실 ② 장기 양도 순이익 혹은 손실 ③ Sec. 1231 손익

112) 2.5만달러를 한도로 공제 가능한 자본경비(Sec. 197)의 전액을 파트너가 공제하지 못하여도 지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④ 자선기부금 ⑤ 배당수입공제 대상 배당 ⑥ 외국 소득세 납부액 ⑦ 감·면세되는 이자가 있다. 그리고 재무성 규정에 따라 파트너십에만 적용되는 항목에는 특별할당(special allocation)¹¹³⁾이 있다(Reg. Sec. 702-1(a)(8)). 이들 항목은 파트너십이 아닌 파트너가 직접 취득한 항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파트너십 순소득과 이들 항목은 배분율에 따라 각 파트너에게 할당되고 파트너는 이를 여타 개인 소득이나 공제 등의 금액과 합하여 신고한다(separately stated items).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항목 이외의 모든 소득(손실)과 공제항목은 합쳐져서 파트너십의 순일반소득(ordinary income)을 구성하며 이와 함께 별도 기재된 항목을 합치면 파트너십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된다. 즉, 일반소득은 파트너십의 총수입에서 경비 등을 제외한 순소득과 특별대우에서 제외되는 감가상각 환입금(Sec. 1245) 등이 있고 이는 별도로 기재된 여타 소득과 공제, 세금 우대항목에 대한 조정 등과 함께 배분율에 따라 Schedule K 및 K-1에 보고된다¹¹⁴⁾. 파트너들은 자신에게 배분된 금액을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서 Schedule E에,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세 신고서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다.

나) 파트너

전술한대로 파트너십의 소득이나 손실은 파트너의 배분율(distributive share)에 따라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고 이를 파트너는 개인소득세에서 신고한다. 또한 일부 파트너는 파트너 소득에 대하여 추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파트너가 배분받은 파트너십 손실은 공제에 제한이 있다.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손실은 그러나 다음 해로 이월이 된다(Reg. Sec. 704-1(d)). 우선 비영리활동과 관련된 손실 혹은 유한책임 파트너의 손실도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과세연도 동안에 추가 출자나 현금배당 등으로 파트너 지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후 산출된 지분을 초과

113) 특별할당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별도로 기재되어 신고되어야 하는데 이는 아래 배분율(distributive share)에서 논의된다.

114) Schedule K와 K-1에는 일반소득, 별도기재 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유형과 세액공제, Sec. 179 경비(당해연도에 공제 가능한 자본경비), 보장성 지급금 등 다양한 항목이 기재된다.

하는 배당 손실은 공제가 허용된다(adjusted basis, Sec. 704(d)).

세 번째로 개인이나 비상장 주식회사가 유한책임성 부채(nonrecourse debt)를 가지고 지분을 늘이고 나중에 지분을 파트너십 손실로 상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손실로 인한 공제는 위험성이 있는 지분으로 제한된다(at-risk rule). 위험성이 있는 지분¹¹⁵⁾은 일반 지분에서 파트너가 책임이 없는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 밖에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동적 손실(passive loss)¹¹⁶⁾은 배당이나 이자수입 등 금융소득(portfolio income)이나 임금 혹은 보너스(active income)를 공제하는 데 이용될 수 없고 지금 혹은 나중의 수동적 소득을 공제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Sec. 469). 이를 위해 파트너십은 수동적 손실을 따로 보고해야 한다.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배당한 소득은 이미 과거에 파트너의 소득에서 과세되었으므로 비과세되고 다만 파트너의 지분을 초과하는 현금 등의 배당은 초과분만큼 양도차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Sec. 731). 지분을 초과하는 배당은 자본자산인 파트너십 지분매매로 간주되기 때문인데 여기 배당은 Sec. 751 자산을 제외한 현금, 현금으로 간주되는 파트너의 부채 감면 그리고 채권 등이다. 물론 파트너의 지분은 배당금액만큼 감소된다. 그러나 파트너의 지분과 외상매출 등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채권(unrealized receivables) 혹은 가격이 많이 상승한 재고성 자산과의 맞교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Sec. 751)¹¹⁷⁾.

2) 파트너십 소득의 배분율

파트너십의 소득과 손익 그리고 공제 등을 파트너들 사이에 할당하는 문제 즉, 파트너의 배분율(partner's distributive share)은 파트너십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되고 이러

115) 유한 책임성 부채란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아 담보채권을 팔아도 부채금액이 전부 회수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잔액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없는 부채를 말한다.

116)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ies)이란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한다. 조세피난처(tax shelter)나 부동산 임대를 제외한 임대로 얻은 소득이 수동적 소득에 해당하며 수동적 소득이나 손실은 다른 손익과 달리 상호간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117) 이와 같은 거래가 발생하면 파트너십은 Form 8308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 계약이 없으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각 파트너들의 회사지분¹¹⁸⁾에 따라 배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배분율은 세금신고의 목적으로 산정되며 배분율과 다르게 소득 등을 실제로 분배하여도 된다. 또한 계약상 배분율은 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각각 다른 비율을 사용해도 된다. 즉, 파트너들은 파트너십 소득 등을 임의로 배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의 배분도 일부 항목의 경우 만약 실질적 경제적 효과(substantial economic effect test)가 없으면 파트너가 정한 배분방식이 무시되고 파트너의 지분에 따라 배분율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를 특별배분(special allocation)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출자자산에 따른 할당과 기타 할당이 있다.

우선 현금 등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신 자산의 공정가격보다 낮은 지분비율을 분배 받으면 나중에 해당 자산의 매매로 발생한 이득에 대한 세금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법 704(c)조는 해당자산의 출자 이전(당시) 손익은 출자한 파트너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자후 가격 상승분은 출자 당시 공정가격을 제외한 부분으로 계산되어 각 파트너에게 배당된다.

한 예로 A가 파트너십에 1만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신 5천달러의 소유권 비중을 받고 난 후 나중에 파트너십이 1.4만달러를 받고 이 자산을 판매하였다면 출자 당시의 차익 5천달러는 A에게 할당되어 신고되며 4천달러는 A와 또 다른 파트너 B의 회사지분에 따라 배분된다.

두 번째로 출자된 자산이 아닌 경우에도 배분방식이 단지 과세상의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하며 이 조건에 맞지 않는 분배는 파트너십이 정한 방식이 아닌 파트너 지분에 따라 배분된다(Sec. 704). 실질적 효과란 과세상의 이유와 무관하게 배분방식이 파트너 지분의 소득 혹은 손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배분방식에 따라 실제로 이득을 보거나 혹은 부담을 입어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유한책임성 부채(nonrecourse debt)에 근거한 각종 배분율의 결정은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별할당 규정은 결국 파트너들 사이의 임의의 배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되며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별도로 신고된다.

118) partner's interest in partnership: 파트너십 지분은 파트너들의 상대적 출자금, 손실과 현금 흐름에 대한 파트너들의 지분 그리고 청산시 자본에 대한 권리로 결정된다.

3) 파트너십과 투자자 사이의 거래

관련자거래(Sec. 267)와 마찬가지로 파트너십과 지배파트너(controlling partner) 사이의 자산 거래로 인한 손실은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Sec. 707(b)). 이는 동일한 자가 지배 파트너인 두 파트너십 사이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추후에 자산이 매매되면 허용되지 않은 손실을 초과하는 양도차익만이 과세된다. 또한 파트너십과 이들 파트너 사이의 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은 새로운 소유주가 이를 자본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일반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한다(Sec. 707(b)(2)).

파트너십 소득과 관계없이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지불되는 보장성 지급금(guaranteed payment)은 제3자의 서비스에 대한 경비처럼 간주되어 파트너는 이를 일반소득으로 신고하고 파트너십은 이를 공제한다(Sec. 707(c)).

라. 소득신고

대규모 파트너십이 아니면 과세연도의 종료 후 네 번째 달의 15일까지 Form 1065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대개 60일 정도 신고가 연기될 수 있지만 6개월 연기도 가능하다. 전술한대로 파트너십은 소득신고만 하고 납세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정된 과세연도를 준수하지 않고 444조에 근거하여 다른 과세연도를 신청하는 파트너십은 연기된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에 1%를 더한 세율로 산정된 예탁금을 제공하여야 한다(Sec. 7519). 예탁금은 5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과거 예탁금이 현 과세연도의 연기된 소득에 대한 예탁금보다 적으면 환급이 가능하다.

파트너십은 신고서에 일반소득, 손익과 공제항목을 기재하고 Schedule K에는 일반소득과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기재한 다음 Schedule K1에는 각 파트너에게 배당된 소득과 특별배분 항목을 작성한다. 파트너들은 Schedule K1에 제시된 항목과 금액에 근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소득세나 자영업자 소득세¹¹⁹⁾를 납부한다. 파트너십 파

119) 파트너십은 특히 파트너에게 자영업자 소득세에 해당하는 수익을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소득은 일반소득과 손실, 별도 기재항목, Sec. 1231 배당, 이자, 임대료 등과 파트너

트너는 파트너십이 보고한 항목과 일관되게 신고하여야 한다(Sec. 6222).

9. S 주식회사

가. 개요

S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과세상으로는 주식회사의 단점, 특히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특히 소규모 회사에 적용된다(Subchapter S, IRC). S 주식회사는 법적으로는 주식회사로 간주되지만 과세상으로는 파트너십 대우를 받기 때문에 회사 이익 등이 주주차원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며 회사는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주주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익을 배당한다¹²⁰⁾. 그러나 S 주식회사의 경우 세법상 손익의 처리는 대개 파트너십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C 법인)의 규정을 따른다.

세법상 S 주식회사의 대우를 받으려면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단 이를 위해서는 ① 주주가 75명 이하이고 ② 주주 가운데 C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이 없으며 ③ 주주 가운데 외국인이 없으며 ④ 국내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⑤ 내국세법상 자격이 없는 주식회사가 아니며 ⑥ 두 종류 이상의 주식유형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다수의 주주가 정규 C 주식회사를 통하여 S 주식회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Sec. 1361(b)).

S 주식회사가 되면 첫째, 주주는 회사 일반소득, 손실 그리고 별도 항목에 대하여 자신들의 지분에 상당한 부분을 S 주식회사가 통보하면 이를 소득세에 신고하며 둘째, 그 대신 배당된 이익은 주식투자의 환수로 비과세되며 셋째, 주주의 지분은 이들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주주의 지분율만큼 조정되어야 한다.

십이 보증하는 수익금을 포함한다.

120) 단, S 주식회사는 주정부 법인세를 부과받는다.

나. 과세소득신고

1) 총칙

과세연도는 일반적으로 역년(calendar year)이나 사업상 필요에 따라서 선택된 연도를 택해야 한다(permitted year, Sec. 1378(a)). 또한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과세연도와 동일한 연도도 허용되며 국세청과 합의하여 정해지기도 한다. 이밖에 법 제 444조에서 허용된 여타 과세연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앞에서 법적으로 요구된 과세연도보다 3개월 이상 늦은 연도를 선택할 수 없다. 회계방식은 S 주식회사가 정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파트너십에 적용되는 규정과 유사하다.

S 주식회사의 소득은 주주 차원에서 과세되지만 초과 수동소득세, 기본이윤세 그리고 LIFO 환수세의 세 가지 특별세가 회사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들 세금은 주로 일반 주식회사(C 법인)가 S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세상의 차이를 이용한 세금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우선 초과 수동소득세(excess net passive income tax)는 회사가 총수입의 25%를 초과하는 수동적인 투자소득을 올리고 과세연도 종료시 C 주식회사상의 이윤이 발생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동적 소득과 직접 관련된 공제를 제외한 초과 순소득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Sec. 1375 tax).

기본이윤세(built-in gain tax)는 이전에 C 주식회사이었던 기업이 S 주식회사로서 신고한 이윤에 적용된다. C 주식회사가 청산하기 이전에 혹은 자산을 매매하기 이전에 S 주식회사를 선택함으로써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Sec. 1374 tax). 이외 LIFO 환수세(LIFO recapture tax)는 C 주식회사가 S 주식회사의 적용을 선택하기 이전에 LIFO 환수금을 법인세 총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세금이다(Sec. 1363(d)(3)).

2) S 주식회사 과세소득신고

S 주식회사가 과세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은 C 주식회사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유사하

여 일반소득(손실)과 별도기재 항목(separately stated items)을 신고한다. 일반소득(손실)은 총소득과 별도의 항목에 보고되지 않은 공제 등을 제외한 순소득이다. 이 밖에도 배당수입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파트너십 차원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기부금과 운영업손실 등도 S 주식회사 차원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Sec. 1371(b)).

별도 항목은 파트너십에 적용되는 항목과 유사하다(Sec. 1366(a)). 즉, ① 단기 양도 수익 또는 손실 ② 장기 양도 수익 또는 손실 ③ Sec. 1231 수익 ④ 자선기부금 ⑤ 배당수입공제 대상 배당 ⑥ 외국 소득세 납부액 ⑦ 감·면세되는 이자가 있다. 그리고 재무성 규정에 따라 S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항목은 광산개발과 자원절약 경비 및 수동적 수익(passive income)과 금융상품 소득 등이 있다(Reg. Sec. 1.702-1(a)(8)). 이들 항목은 S 주식회사가 아닌 주주가 직접 취득한 항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 주식회사는 최저한세(AMT)를 납부하지 않으며 대신 해당 항목(Sec. 57(a))을 산출, 주주에게 이월하여 개인 차원에서 자신의 최저한세를 산정한다. 특수 관계자 거래(related party)에 적용되는 비용공제의 제한은 S 주식회사에도 적용된다(Sec. 267(a)(2)). 즉, 특수 관계자들의 회계방식 차이로 인하여 이들 사이에 경비와 소득 처리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경비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특수 관계자 사이의 매매나 교환에 따른 공제에도 적용되며 다만 판매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양도손실은 매입인이 해당 자산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을 상쇄하는 데 사용된다(Sec. 267(a)(1)). 또한 주식 2% 이하를 보유한 주주/종업원에게 공여된 부가급부는 비용으로 공제처리되고 주주는 이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주식 2%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자 종업원에게 제공한 부가급부는 비용공제가 되지만 주주에게 지급한 보수로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가 적용된다.

3) 주주 과세소득신고

주주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S 주식회사의 손익과 별도기재 항목을 신고하여야 한다(pro rata share, Sec. 1366(a)). 할당비율은 주주의 날짜별 지분비율과 각 항목의 날짜별 금액(per day/per share)으로 결정되며 파트너십과 같은 임의의 특별할당은 S 주식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S 주식회사의 손실과 공제는 주주에게 이전되어 공제되는데 일정 지분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영업손실)은 개인차원에서 지분이 다시 발생하는 연도로 이월된다. 이 때 지분한도는 주주의 조정된 주식 지분과 S 주식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직접 빌린 부채의 조정액이다. 따라서 파트너십처럼 회사의 일반 부채를 지분에 포함할 수는 없다(Sec. 1366(d)(1)).

손실공제를 위한 지분 조정은 해당 과세연도의 자본 출자와 일반소득 및 별도소득(차익)만큼 지분을 증대하고 주주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배당과 공제되지 않는 비자본경비만큼 지분을 감소하면 된다. 이 밖에 일반적 지분조정은 이들 항목과 손실항목을 지분에서 제외하면 된다(Sec. 1367(a)).

D 주식회사 주주에게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항목에는 첫째, 위험성 규정(at risk rule, Sec. 465)에 따라 주주가 손실 위험에 노출된 S 주식회사의 손실 부분으로 제한되며 둘째, 수동적 손실이나 공제도 임금 등의 소득이 아닌 수동적 소득의 공제에만 적용되며 셋째, 취미활동으로 인한 손실(Sec. 183)도 해당 소득의 공제에만 활용될 수 있다.

4) 배당

과거에 C 주식회사로서 누적된 이윤이 없는 S 주식회사의 배당은 비과세되며 주주 차원에서 과세된다. 이 때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배당액 만큼 조정된 주주 지분이 감소한다. 만약 배당이 지분보다 많으면 그 차이는 주식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Sec. 1368). 만약 가격이 인상된 자산을 주주에게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인정하고 기본이윤세나 초과 수동소득세를 회사 차원에서 납부해야 할 지도 모른다(Sec 311(b)). 물론 이러한 이득은 주주에게 이월되어 다시 과세된다. 이외 C 주식회사로서 누적된 이윤이 있는 S 주식회사는 일부 현금과 자산배당을 양도차익으로 간주하는 등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Sec. 1368(e)).

다. S 주식회사 세금신고

S 주식회사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Form 2553을 작성, 주주의 동의서와 함께 제출한다. 연후 모든 S 주식회사는 S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특별세를 납부해야 하건 아니건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15일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Form 1120S). 이와 함께 주주들에게도 신고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Schedule K-1).

또한 1374조(built-in tax)나 1375조(excess net passive income tax)에 의한 특별세 추정세액이 500달러를 넘으면 C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분기별로 추정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Sec. 6655).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S 주식회사 주주들은 S 주식회사가 보고한 항목과 일관되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실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Sec. 6037(c)).

10. 배당과 청산소득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현금, 자산이나 주식을 배당하면 배분된 자산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해당 배당금은 주주에게 일반소득이나 양도차익으로 과세 혹은 비과세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도 배분에 따른 손익을 신고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를 주식회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자산배분과 청산되는 상황에서의 자산배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자산배분(non-liquidating distribution)

1) 일반원칙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자산이 배당일 경우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Sec. 301). 배당은 기업수익(earning and profit)으로부터 분배된 현금, 증권 등의 자산으로 주식배분은 대개 배당에서 제외된다(Sec. 316(a)).

기업수익을 초과하는 배당은 자본의 반환으로 간주되어 주식지분의 감소를 초래하

며 지분 이상의 배당은 주식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취급된다. 배당이 아닌 자산을 배분하는 주식회사는 기업 수익(E&P)과 과세되는 배당과 비과세되는 자산배분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Form 5452).

기업수익(E&P)은 당해연도 수익과 배당되지 않은 이전연도 축적 수익으로 구분된다. 기업수익은 과세소득에서 <표 III-10>의 방식으로 조정된다. 당해연도 수익을 올바르게 산정하려면 공제나 감가상각 방식이 과세소득 산정시 사용한 방식과 다를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주주들에게 분배한 자산이 당해연도 기업수익이나 혹은 이전 연도 축적된 수익으로부터 배분된 것으로 간주되면 이는 배당(dividend)이 되며 기업 (축적) 수익을 초과하는 자산 분배는 주주지분을 1:1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수익(E&P)이 없고 손실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자산분배는 자본의 반환으로 간주되고 지분을 초과하는 자산분배는 양도차익으로 과세된다.

<표 III-10> 당해연도 수익(E&P)의 산정에 필요한 과세소득의 조정

차감	내용
	과세소득
+	비과세 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회사가 수혜자인 생명보험 수혜금 세금공제를 받지 못한 악성부채나 공제의 회수 연방법인세 환급
+	과세소득 산정상 이연된 소득 분할판매(installment sales)로 이연된 이득
±	소득 및 공제항목의 조정 장기계약으로 인한 소득(% 완성공도 방식) 개인 및 부동산 감가상각 조기원가회수제도(MACRS나 ACRS) 자산 이외는 정액법 ACRS은 정률 ACRS법, MACRS은 대체감가상각 비용감모상각 대비 % 감모상각 초과분
+	과세소득상의 공제 배당수입공제, 운영업손실, 기부금, 손실 이월금
-	공제되지 않은 손실과 비용 연방법인세, 기업이 수혜자인 보험료, 비공제 초과양도손실 초과 기부금, 면세소득 창출경비, 관계인 판매로 인한 손실 별금 및 가산금, 정치자금 및 로비성 경비
=	당해연도 수익(혹은 손실)

자료: 「Federal Taxation 2003, Comprehensive 2003」, Prentice Hall, 2003.

2) 자산의 분배

현금은 기업의 (축적)수익으로부터 분배되는 한 그 금액이 배당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토지 혹은 재고 등을 분배하면 배분액은 당시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로서 자산과 관련된 채무는 배분액에서 제외되는데 단, 이렇게 계산된 순배분액은 영보다 커야 한다(Sec. 301(b)). 기업수익보다 적은 배분은 배당으로 간주된다. 배분된 자산에

대한 주주의 원비용(basis)도 공정시장가치인데 단, 관련 채무는 원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Sec. 301(b)). 또한 주주의 자산보유기간(holding period)은 회사의 자산보유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배분하면 해당 자산을 공정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양도차익을 인정, 신고하여야 한다(Sec. 311(a)). 다만 배분으로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입으면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의 배분시 주주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자산에 채무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결정에 필요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그러한 채무액보다 적을 수 없다(Sec. 311(b)).

배당으로 천명하지 않고 배분되는 자산은 국세청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constructive dividend). 한 예로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임금으로 포장된 배당은 주주 차원에서 과세되지만 기업 차원에서는 공제된다. 반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이 채무로 포장되면 주주 차원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에게 빌려주는 채무는 합리적인 이자가 부과되는 선의의 채무(bona fide)가 아닌 이상 위장된 배당으로 간주된다(Sec. 7872). 이외 주주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주주 자산의 임대에 대한 과도한 사용료나 주주 개인 채무를 회사가 지급하는 행위도 위장된 의제배당(constructive dividend)으로 간주된다.

3) 주식의 분배

주주의 비율적 회사지분을 변화하지 않는 일반주식(common stock)의 배분은 주식 배당으로서 과세되지 않는다(Sec. 305(a)). 그러나 일부 주주는 자산을 분배받고 다른 주주는 회사 자산이나 수익에 대한 지분율을 증대하는 권리를 분배받으면 이는 과세대상 배당이 된다. 주식을 배당받을 권리(stock right)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비과세되는 주식배당은 회사에게 과세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과세되는 주식배당이 있으면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식은 공정시장가치로 환산되며 기업수익(E&P)에서 배분되는 한 주주에게 과세되는 배당이다. 다만 주식배당은 기업의 양도손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한편 투표권이 없는 우대주식을 발행하여 배분한 후 나중에 이를 제3자에게 공정가

격에 판매한 후 양도차익(판매가격 - 우대주식에 배정된 지분)을 장기 양도차익으로 신고하고 20%의 낮은 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들은 회사 지분을 줄이지 않고 낮은 세율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preferred stock bailout). 법에 따르면 일부 이러한 우대주식은 배분 당시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주식 처리시 일반소득이나 배당으로 과세된다(Sec. 306).

4) 주식회수(stock redemption)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주식회수라고 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러한 거래가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의 매매(교환)가 될 수도 있다(Sec. 302(b)). 후자의 경우 주식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가 해당 주식을 판 것으로 간주되어 그 손익이 대개 양도차익(손실)으로 간주되어 장기 양도차익은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교환받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에서 주주의 조정된 주식 지분율을 제외한 금액이다.

주식의 매매로 간주하려면 이러한 거래로 주주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실질적인 배당이 아니어야 한다. 한 예로 주주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면 이는 주식 매매이며 아니면 배당이다. 주식의 매매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업수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당으로 인정되어 주주가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나. 기업의 청산(liquidating distribution)

1) 일반원칙

기업이 청산을 하게 될 경우에도 판매하는 자산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과세되고 주주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주식의 매매와 같이 간주되어 과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청산하면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청산된 자산의 소득이 개인소득세 차원에서 과세되며 손실은 개인소득과 상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산된 자산을 분배받은 주주는 이를 주식의 제공 대신 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현

금과 분배받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에서 주식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차익(손실)으로 신고한다. 모회사가 80% 지배 자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손익의 인정이 없이 자회사의 지분과 보유기간이 모회사로 이전된다.

청산되는 기업도 배분한 자산에 대한 손익을 마치 주주들에게 해당 자산을 판매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한다. 다만 일부 손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청산되는 회사가 주주에게 빌린 부채를 갚기 위하여 부채금액과 동일한 자산을 지급하면 주주는 손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차액이 발생하면 이는 손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 상황에서 모자회사 간의 부채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자회사의 청산으로 부채 상환을 위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한 자산에 대해서는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일반 청산규정

가) 주주

현금 등의 자산을 분배받은 주주는 이를 주식의 매매로 처리한다(Sec. 331). 신고되는 양도차익은 전술한 대로 현금과 분배받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에서 주식지분을 제외한 금액인데 만약 부채를 이전받으면 그 금액은 제외된다. 매입 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주식을 별도로 취급하여 장·단기 양도차익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Sec. 1222).

다만 개인의 경우 보유한 주식으로 발생한 손실은 일반손실(Sec. 1244)로 처리되며 휴지화된 자회사의 주식으로 법인이 입은 손실도 일반손실로 처리될 수 있다(Sec. 165(g)). 자산의 원비용(adjusted basis)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격과 같고 보유기간도 청산시점부터 시작한다(Sec. 334(a), 1231(1)).

나) 청산되는 기업

주주에게 자산을 배분하는 기업도 청산 당시 손익을 신고하여야 한다(Sec. 336(a)). 이 때 손익산정을 위한 배분금액은 공정가격이 되며 가격이 하락한 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손실 인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주주가 회사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분배되는 자산의 공정가격은 채무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Sec. 336(b)).

손실 인정이 되지 않는 자산배분에는 특수 관계자에게 제공된 자산과 세금 기피를 위하여 자산을 매매 혹은 배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외 자회사의 청산에서도 손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Sec. 332(a)). 우선 관계인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지분에 따라 손실 자산을 배분하지 않거나 Sec. 351에 정의된 자격이 없는 자산은 손실 인정이 안 된다(Sec. 336(d) (1)). Sec. 351의 경우 청산되는 기업이 단지 청산시 손실의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원래 구입된 기업이라면 손실 인정이 안 된다(Sec. 336(d)(2)).

다) 자회사의 청산

정상 상태인 자회사가 모회사로 청산(편입)될 때 모회사가 배분받은 자산은 손익이 신고되지 않고 자산이 모회사로 이전되며 자회사도 손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Sec. 332(a)). 다만 이는 모회사에게만 적용되며 청산되는 자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자회사가 파산한 경우¹²¹⁾나 모회사가 부채 회수를 위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Reg. Sec. 1.332-2(b)).

이와 같이 모회사가 청산시점에 손익을 신고하지 않으려면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투표권과 주식가액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모든 주식을 회수하며 자산의 분배가 1년 이내에 혹은 공식적인 계획에 따라 3년 스케줄로 이루어져야 한다(Sec. 332(b)(3)). 자회사가 모회사로 청산되면 자회사의 운영업손실과 수익, 이월된 자본손실과 세액공제도 청산이 종료된 시점의 금액으로 모회사로 이월된다(Sec. 381(a)).

121) 자회사가 파산하면 모회사의 주식투자 손실(Sec. 165(g)(3))이나 부채(Sec. 166)는 일반손실로 인정받는다.

3) 특별 청산항목

가) 주주

기업의 청산 이후 불확정 부채로 인하여 주주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과세상의 처리는 청산된 기업 차원에서 원래 처리했어야 할 공제 혹은 손실로 간주되지 않고 주주 입장에서 청산 당시 신고된 손익의 성격에 따라 처리된다. 따라서 주주가 이를 양도손익으로 보고하였으면 지불의무가 발생한 금액은 양도손실로 간주된다.

청산 당시 주주가 배분받은 자산이 불확실한 경우 그 손익은 해당 자산이 팔리거나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가능할 때까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open transaction doctrine).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산에는 가치가 영(0)으로 환산된다.

나) 주식회사

청산비용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산의 매매를 위하여 사용된 경비는 판매 수익금에서 상쇄된다. 감가상각되지 않은 자본비용도 공제되며 다만 사전 지급된 임대료나 보험료 등은 이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주에게 할당된다(Reg. Sec. 1.248-1(b)(3)). 청산연도에 운영손실이 있으면 과거 법인세 환급에 사용될 수 있고 이는 주주들의 양도차익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청산하는 연도에 기업이 S 주식회사 방식을 선택하면 영업손실은 주주로 이월되어 개인소득세 차원에서 처리된다. 이는 기업의 청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차익 혹은 손실에도 공히 적용된다.

4) 신고

회사 청산이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신고서 Form 966을 제출하여야 한다(Sec. 6043(a)). 또한 최소 한 명의 주주에게 주식 청산으로 600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회

사도 각각의 주주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Form 1099-DIV). 자회사 청산(Sec. 332)으로 손익을 인정받지 못한 기업도 배분받은 자산을 신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연결납세제도

가. 개요

계열그룹(consolidated group)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회사를 한 명의 주주나 주주집단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한 회사들을 의미한다. 모회사와 여타 자회사로 구성되는 계열그룹은 회사 각자가 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합신고(consolidated return)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열사간의 거래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¹²²⁾.

계열그룹은 모회사가 최소한 한 자회사의 전체 주식¹²³⁾ 가운데 80% 이상의 투표권과 주식가액을 직접 보유하고 각 자회사는 모회사와 다른 계열회사가 해당 자회사의 전체 주식 가운데 80% 이상의 투표권과 주식가액을 보유해야 한다(Sec. 1504(a))¹²⁴⁾. 과세상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면세 주식회사(Sec. 501), Sec. 801의 보험회사, 외국 주식회사, 해외판매회사, S 주식회사, 투자회사 등은 계열그룹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일반 회사(C 법인)로 과세되는 것을 선택한 파트너십나 유한책임회사는 계열그룹에 속할 수 있다.

통합신고는 한 회사의 양도손실을 비롯한 손실을 이월하지 않고 다른 계열회사의 과세소득 상쇄에 사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각종 공제가 통합되어 사용되며 최저한세도 그룹 차원에서 산정되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 계열회사 간의 배당은 무시되며 계열사간의 거래로 인한 이익도 적정 시기까지 이연되는 측면이 있다. 단점은 일단 통합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허가할 때까지 계속 통합신고를 하고 모회사와 동일한 과세연도를

122) 통합신고에 대한 과세는 국세청이 특별히 따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신고를 하는 회사는 이 규정에 동의하여야 한다(Sec. 1501~1504).

123) 주식은 투표권이 없는 우선주는 제외된다.

124) Sec. 1563에 규정된 모자회사 등 지배그룹(controlled group)은 통합신고를 할 수 없다.

사용하며 계열사간의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 손실 그리고 공제가 이연되며 한 회사의 영업 및 자본손실이 다른 회사의 공제 이용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나. 과세소득의 산정

1) 통합 과세소득(consolidated taxable income)

가) 통합 과세소득의 산정방식

계열그룹의 소득은 모회사의 소득과 계열회사가 된 기간 동안의 자회사 소득을 포함한다(Reg. Sec. 1.1502-76(b)(1)). 통합 과세소득은 우선 각 계열사가 마치 독립된 세금신고하듯이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난 후 개별적으로 각자의 과세소득에서 계열사간의 거래로 인한 손익, 계열사로부터의 배당수입 등을 제외하고 재고 조정을 한 후 통합신고에서 따로 감안되는 순영업손실, 양도차익과 손실 등을 제외한다.

<표 III-11> 통합 법인세 신고를 위한 과세소득 산정방식

주내용	방식
각 계열사 과세소득 산정	각 회사의 독립된 회계방식으로 별도 신고와 같이 산정
각 계열사 과세소득 조정	계열사간 손익 제외 (통합신고에서 인정할 때까지 이연) 재고조정 계열사로부터의 배당수입 제외 초과손실(excess loss) 조정 그룹내 기본적인 공제(built-in deduction) 이연
각 계열사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 통합신고에 따로 포함되는 손익과 공제	순영업손실 공제, 양도손익, 자선기부금 공제 Sec. 1231 손익(부동산과 감가상각자산), 상해손익 배당수입공제, % 감모상각 공제
합산된 그룹 과세소득	이와 같이 조정된 계열사 과세소득의 합산
합산된 그룹과세소득에서 다음의 항목을 별도로 감안, 공제나 포함하는 등 조정	통합 Sec 1231 순손실 공제, 통합된 상해 순손실 공제 통합된 순양도차익 포함(이월손실 감안) 통합된 자선기부금 공제, 통합된 % 감모상각 공제 통합된 순영업손실 공제액을 공제(이월 영업손실 감안) 배당수입공제액을 공제
결과	통합된 과세소득 혹은 통합 순영업손실

자료: 「Federal Taxation 2003, Comprehensive 2003」, Prentice Hall, 2003.

이렇게 조정된 각 계열사의 과세소득을 합하면 합산된 그룹 과세소득이 되는데 이를 별도로 그룹 차원에서 통합한 영업손실과 기부금 그리고 배당수입공제를 다시 공제한 후 양도차익 등을 합하면 그룹 차원에서의 과세소득이 된다. 이 금액을 법인세율에 곱하면 납세의무액이 되며 여기서 그룹 차원의 최저한세나 기타 특별세 혹은 과거에 제외된 세액공제의 환수금을 합하고 난 후 세액공제를 한 금액이 그룹의 법인세가 된다.

나) 계열사 배당수입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은 그러한 배당이 계열사 거래로 취급되어 통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가 배제되며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은 상황에 따라

70, 80, 100% 배당수입공제가 허용된다.

자산이 분배될 때에는 배당금액이 자산의 조정된 과표와 배당하는 회사가 신고하는 양도차익으로 구성되는데 대개 이는 자산의 공정가격이 된다. 이 때 양도차익은 계열사간의 거래로서 신고가 연기되고 해당 자산을 배당받은 회사가 이를 신고 즉, 감가상각할 때 통합신고에 보고된다(Reg. Sec. 1.1502-13(f)).

계열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은 일반법인세에서처럼 처리된다. 즉, 배당수입은 모두 통합되고 2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부터의 배당은 배당수입의 70%가 공제되고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의 배당은 80%가 공제된다. 8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비계열회사로부터의 배당이 통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100%가 공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우선 80% 배당수입공제 금액이 조정된 통합 과세소득의 8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연후 70% 배당수입공제 금액이 80% 공제가 제외된 과세소득의 70%를 초과하면 초과분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그러나 전체 공제금액이 순영업손실을 유발하거나 증가시키면 적용되지 않는다(Reg. Sec. 1.1502-26(a)(1)).

다) 순영업손실(NOLs)

통합신고를 하면 계열회사의 순영업손실은 이월되지 않고 다른 계열회사의 소득과 상쇄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신고된 손실은 개별신고로 이월되지 않고 통합되어 이월된다. 통합된 영업손실은 계열회사의 과세소득과 통합신고된 순양도차익을 합한 후 통합신고상의 Sec 1231 순손실, 기부공제 그리고 배당수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러한 영업손실은 이전 2년, 이후 20년간 이월이 가능하다(Reg. Sec. 1.1502-21(e)).

과세연도별로 계열그룹에 속한 회사가 달라 통합신고가 아닌 계열회사의 개별신고로 손실을 이월하면 이월방식이 문제가 된다. 특히 그룹 차원의 영업손실이 과거 계열사 과세소득을 상쇄하기 위하여 이전되면 이를 다음의 방식으로 계열사 간에 배분하여야 한다:

각 계열사에 배정되는 통합손실 =

$$\frac{\text{개별 계열사의 순영업손실}}{\text{손실이 발생한 계열사의 개별 영업손실의 합}} \times \text{통합된 영업손실}$$

한편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손실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 기업을 계열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에 별도로 신고된 영업손실을 통합신고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계열회사가 그룹에 기여한 과세소득으로 한정된다(SRLY rule)¹²⁵⁾. 또한 매매기업의 과세상 특성이 매입가격의 상당 부분과 관련이 있으면 손실 이월이 있는 기업(loss corporation)의 주식이나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가 금지될 수도 있다(Sec. 382 loss limitation)

라) 통합 기부금 공제

그룹 차원에서의 기부금은 각 계열사의 총기부금을 합하고 통합신고나 개별신고 차원에서의 이월된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통합 기부금이 된다. 그러나 공제가 되는 기부금 금액은 조정된 통합 과세소득의 10%로 제한된다.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기부금은 향후 5년간 이월된다(Reg. Sec. 1.1502-24(a)). 조정된 통합 과세소득은 배당수입공제, 순영업손실, 이월된 양도손실과 자선기부금 공제를 무시하고 산정된다.

마) 통합 양도차익(손실)

계열회사의 과세소득 산정시 양도손익, Sec. 1231 양도손익과 상해손익 등은 제외되고 그 대신 통합신고에서 함께 감안된다. 즉, 계열회사의 양도차익(손실)과 Sec. 1231의 양도차익 그리고 이월된 순양도손실은 통합신고에서 순양도차익이나 손실이 된다(Reg. Sec. 1.1502- 22(a)(1)).

이렇게 통합된 순양도차익은 과세소득으로 일반법인세 세율로 과세되며 통합된 순양도손실은 단기 양도손실로 간주되어 이전 3년, 이후 5년간 이월된다.

¹²⁵⁾ separate return limitation rule(Reg. Sec. 1.1502-21(b)).

계열사 간의 거래로 발생한 부동산 등 Sec. 1231의 양도손익은 매입회사가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일정한 사건(corresponding event)이 발생할 때까지 신고가 이연된다. 통합신고상의 Sec. 1231 순이익은 이전의 순손실로 인하여 일반소득으로 환수되지 않으면 장기 순이익으로 과세된다. 만약 순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일반 손실로 처리되어 소득에서 공제된다. 한편 이월되는 양도손실은 통합신고에서 단기 양도손실로 간주되는 등 순영업손실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Reg. Sec. 1.1502- 22(b)).

3) 계열사 간의 거래

계열사 간의 거래는 자산의 매매, 교환, 기여, 임대 혹은 서비스의 매매, 기술 제공, 금융거래 그리고 배당지급이 있다. 그러나 과세상으로는 계열회사의 거래는 자산 매수거래와 이외 기타 거래로 구분된다.

우선 자산 매수(교환)의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손익은 각 계열사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¹²⁶⁾. 그러나 통합신고의 과세소득에는 이러한 손익이 즉시 포함되지 않고 이연되어 구매자에게 일정한 사건(corresponding event)이 발생해야 소득신고에 포함된다. 한 예로 매수자산을 계열그룹 이외의 제3자에게 팔 때에는 손익이 인정되고 또는 매수자산이나 자본화된 매수 서비스가 감가(모) 상각될 때에도 공제가 인정된다. 계열회사의 분리나 독립신고도 이러한 사건에 속한다.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과 거래의 성격은 거래 당시 시점에 별도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결정된다¹²⁷⁾. 따라서 현금과 부채로 매입한 자산은 그 비용이 매수가액이 된다. 그러나 손익 등의 항목을 통합신고에 기재할 때에는 거래가 동일한 개체의 거래로 간주된다(single entity approach). 즉, 동일한 회사의 두 부서가 자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매자의 소득과 공제 등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로 취급된다(matching rule)¹²⁸⁾.

126) 그러나 주식회사 창업(Sec. 351)과 유사물품 거래(Sec. 1031)는 이러한 원칙에서 제외되어 양도손익이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127) 매매회사의 손익 등은 서비스의 매매나 제공에 따른 직간접 비용을 포함한다(Reg. Sec. 1.1502-13(b)(2)(ii)). 따라서 Sec. 263A(균일 자본화 규정)가 적용된다.

128) 거래 당사자들이 계열회사에서 이탈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는 규칙이 적용된다(acceleration

연후 해당 자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통합신고에서 거래가 신고될 때 신고가 이연된 손익을 계열그룹 차원에서 재환산하여 보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매입자의 상각과표가 매매자의 조정된 상각과표보다 같거나 적으면 매매자의 상각기간과 방식이 거래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Sec. 168(i)(7)). 반면 매입자의 과표가 매매자 과표보다 금액이 크면 초과분은 제3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처럼 처리된다(Reg. Sec. 1.1502-13(c)(7)).

자산이 아닌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거래 당시 발생한 소득, 손익 그리고 공제금액이 소득과 비용으로 인정되어 각 계열회사가 자신의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포함된다(Reg. Sec. 1.1502-13(b)). 따라서 만약 두 회사가 동일한 회계방식을 이용하면 손익 등이 서로 대비되어 상쇄된다. 그러나 계열회사는 관련자로 간주되므로 만약 두 회사가 공제와 소득을 각각 다른 통합신고 과세연도에 신고할 경우에는 매입자가 이를 소득으로 처리할 때까지 매매자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267(a)(2)).

다. 법인세 산정

법인세는 통합신고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최저한세는 그룹 차원에서 결정되며 이 때에도 통합된 과세소득을 기초로 법 55~59조의 과세방식이 적용된다.

일반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세액공제가 통합신고에서도 허용된다. 이 가운데 일반사업공제는 그룹의 잠정 최저한세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그룹의 일반법인세 납세의무액의 25%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하여 그룹의 법인세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Sec. 38(c)). 이용되지 않은 일반사업공제는 물론 이전 1년, 이후 20년까지 이월된다. 따라서 이윤을 창출한 계열회사는 다른 회사의 손실로 인하여 그룹 전체의 납세 의무액이 감소한 결과 자신의 사업공제가 줄어들고 손실을 본 계열회사는 사업공제 한도가 증가할 수 있다.

rule).

라. 신고 및 납부

통합신고를 하는 계열그룹은 모든 계열회사의 소득과 경비 등을 과세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Form 1120에 신고한다. 모회사가 추정된 납세의무액을 내고 신고연기를 신청하면 신고가 6개월간 연기된다. 신고방식은 하나의 통합된 신고서에 과세소득 산정과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계열회사별 독립된 신고서와 이를 통합하는 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다. 모회사는 과세 목적상 계열회사와 그룹을 대표한다.

모회사와 각각의 자회사는 계열그룹 전체의 세금신고에 대하여 매년 책임을 진다(Reg. Sec. 1.1502-6(a)). 따라서 한 과세연도에 며칠이라도 계열회사이었던 회사는 그 해 그룹 전체의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도 있다(several liability). 그러나 그룹에 대한 과소납부세금이 부과되기 전 주식의 매매나 교환으로 회사가 팔리면 해당 회사에 대한 과소납부액만 징수할 수도 있다.

통합신고를 하면 계열회사들은 선의의 사유 등의 이유로 국세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계속 통합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계열그룹이 해체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통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때는 신고내용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통합신고를 하는 계열회사들은 모회사의 과세연도를 사용해야 하지만 회계방식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법(Sec. 448)이 현금주의 방식을 제한하기 때문에 같은 그룹 회사들은 대개 같은 회계방식을 이용한다.

12. 이중과세방지제도

가. 개요

이중과세는 크게 경제적 개념의 이중과세와 법적 개념의 이중과세로 분류된다. 전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한 번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주식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과세항목은 동일하지만 과세 대상자는 다르다.

법적 개념의 이중과세는 이와 달리 동일한 항목과 동일한 과세대상자에게 세금이 한번 이상 부과되는 상황으로 국제조세와 같이 과세권을 가진 다수의 과세당국이 중복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자회사가 다른 국가의 모회사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과세하는 것은 이들 회사가 독립된 개체이므로 법적으로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중과세이다.

국제조세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일반적으로 거주지국이 면세를 하는 방식 등으로 국제조세협약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외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야의 이중과세 문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이자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이 있다¹²⁹⁾. 이 가운데 배당소득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이 구체적 규정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부시 행정부는 2003년에 주식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단계에서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려면 사업체 형태를 C 법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조직하거나 임금이나 이자 지급과 같은 형태로 이중과세를 일부 회피할 수 있다. 이외 배당소득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세법에서 오류 등에 의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 규정으로서 Sec. 1311~1314(Mitigation Provisions)가 있다.

나. Sec. 1311~1314(Mitigation Provisions)

1311조 등에 따라 미국에서는 불공평한 과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법정이나 유사 법정 그리고 재무성 장관 등이 결정할 경우 조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이나 공제 등에 있어서 이중과세나 이중공제를 회피하기 위한 과세상의 조정을 할 수 있다(Mitigation Provisions).

1312조(circumstances of adjustment)에 의하면 납세자가 오류로 다른 연도에 특정 항목을 총소득에 포함하거나 관련 납세자¹³⁰⁾의 소득에 해당 항목을 잘못 포함하였고

129) Daniel Mitchell, *Protecting Seniors from Double Taxation*, Heritage Foundation, 2003.

130) related taxpayer: 관련 납세자는 부부, 상속자와 피상속인, 유산 집행인과 피상속인, 파트너, 계열그룹 회사들을 의미한다(sec. 1313(c)).

이에 따라 총소득에 해당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면 이에 대한 과세상의 조정이 가능하다(제1항, double inclusion). 이는 일반 공제 및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여서 납세자가 다른 연도에 오류로 해당 항목을 공제받거나 다른 관련 납세자에게 잘못 공제된 항목도 이러한 오류의 수정시 조정이 가능하다(제2항, double allowance).

한편 납세자가 이미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사실은 다른 과세연도에 포함되어야 했었거나 혹은 관련 납세자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의 경우 법정 등에서 이 항목을 해당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배제하도록 결정이 나면 이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double exclusion, 제3항). 이외 유산기금이나 그 수혜자 혹은 그러한 관련 납세자 사이의 소득이나 공제 항목의 수정 또는 계열그룹에 속하는 관련 회사에게 관계되는 공제를 허용 혹은 불허함에 따라서 다른 계열회사의 공제를 허용 혹은 불허하는 과정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유산기금도 별도의 납세주체이므로 유산기금에 과세된 소득이 기금 수혜자에게 지급될 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Sec. 1311과는 별도로 유산기금의 경우 특별히 수혜자에게 배분되는 소득금액과 성격을 따로 결정하는 체계(DN I)¹³¹⁾를 도입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Sec. 643(a)).

다. 사업체 형태와 이중과세

일반 주식회사(C 법인)는 소득이 법인 차원에서 법인세로 과세되고 배당소득은 주주 차원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하지만 C 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체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면 주주 차원에서만 개인소득세가 납부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체가 파트너십, S 주식회사, 유한 책임회사(LLC) 등이며 미국에서 이들 기업은 대개 소규모 회사들이다. 한 예로 전술한 대로 S 주식회사는 법적으로는 주식회사로 간주되지만 과세상으로는 파트너십 대우를 받기 때문에 회사 이익 등이 주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며 회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익을 지주에게 지급한다(Subchapter S, IRC)¹³²⁾.

131) Distributable net income: 유산기금이 수혜자에게 소득지급시 공제가 가능한 금액과 수혜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외 주식회사들이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 이자 지급금 등 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소득을 종업원인 주주에게 배분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피하는 데는 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임금은 종업원이 제공한 서비스를 대가로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한다(Reg. Sec. 1.162-7(a)).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데 이는 주로 비상장 주식회사에 적용된다. 또한 성과급이 아닌 상장회사의 최고위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공제는 10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Sec. 162(m)).

두 번째로 부가급부는 과세가 이연되거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자격이 있는 연금, 이윤 공유 그리고 주식 보너스 플랜에 대한 회사의 기여금은 기여 당시가 아니라 수혜를 받을 때 과세된다. 또한 보험성 기여금은 개인 차원에서도 아예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부가급부는 가장된 의제배당(constructive dividend)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입증책임도 기업에게 있다. 이 때 국세청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임금을 다시 돌려줄 것을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데 직원이 이를 돌려주면 돌려준 연도에 자기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hedge agreement).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합의 자체가 부적절한 보수로 볼 수 있다.

1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조직의 과세상 특성

법인세는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부과한다. 1972년 당시 GDP의 2.8% 그리고 내국세의 24.3%에 이르던 연방법인세 세수는 1980년대부터 그 비중이 줄어들어 2002년이 되면 GDP의 1.8% 그리고 내국세의 16.9%에 그쳤다.

연방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C 주식회사로서 그 이외 개인회사나 파트너십 그리고 S 주식회사 등의 사업체는 회사 소득을 소유주가 개인소득세로 신고 납부한다. 반면 C 주식회사의 소득은 법인세로 그리고 배당은 주주의 소득세로 과세되어 이중과세

132) 단, S 주식회사는 주정부 법인세를 부과받는다.

된다.

이에 따라 C 주식회사와 다른 형태의 기업조직은 과세상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C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 직원으로 그 임금이 공제된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기업 조직은 유보된 소득도 개인소득세로 과세되고 자영업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외 C 주식회사의 경우 양도손실은 일반법인세로 과세되며 공제 범위에서도 다른 소득과 상쇄되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연도로 이월되어 그 당시 양도이익과 상쇄된다.

C 주식회사의 소득이 비록 이중과세되기는 하지만 배당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회사에 자금을 유보하거나 비상장 주식회사 등의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소득(passive income)을 회사 내부에 은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15%의 초과 유보세나 개인지주회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외국에 자회사(CFC)나 개인지주회사(FPHC)를 설립하고 배당을 유보하면 주주 차원에서 유보된 소득을 개인소득세로 과세한다.

파트너십이나 S 주식회사 등은 소유주 개인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 한 예로 파트너십의 소유주 즉, 파트너는 자신에게 할당된 회사의 손익과 공제를 개인소득으로 신고한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회사손익에 대한 자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파트너십의 경우 회사와 파트너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정규 C 법인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

S 주식회사는 정규 C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제도로써 특히 소규모 회사에 적용된다. 따라서 S 주식회사 요건은 주주가 75명 이하이고 C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이 주주가 아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S 주식회사가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은 파트너십과 유사하여 C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배당수입, 기부금 그리고 운영업손실의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나. 법인세

C 주식회사도 개인과 같은 납세주체이므로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 소득 및 공제 개념이 법인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최소한의 법인세 납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세소득과 세금 우대항목을 합하고 일정한 조정을 거쳐 산출된 최저한세(AMT)가 정

상적인 법인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정상 법인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유보세나 개인지주회사세 이외에도 개인서비스 회사는 35%로 일률과세되고 지배그룹의 자회사(controlled group)는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C주식회사는 분기별로 법인세를 추정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세율은 8개 구간에 걸쳐서 15~35%까지 과세되어 최저세율은 개인소득세보다 높지만 최고세율은 같다. 그러나 중간에 속하는 소득구간의 경우 38%와 39% 등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C 주식회사의 순양도이익은 개인과 달리 차등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총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양도손실을 다른 일반소득과 상쇄할 수 없으며 순양도손실은 이전 3년 그리고 이후 5년까지 이월되어 다른 연도의 양도이익과 상쇄되어야 한다. 반면 개인의 순양도손실은 3,000달러까지 일반소득과 공제되고 이전 연도 이월은 가능하지 않고 이후 연도로 제한 없이 이월된다.

C 주식회사의 경우 판매수입에서 판매비 등의 사업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과 기타 수입을 포함한 총소득에서 각종 일반공제와 운영업손실 등의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난 뒤의 순소득이 과세된다. 연후 외국세액, 지역개발, 고용, 탁아소 설립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일반사업 그리고 특정 산업에 대한 배려 등의 세액공제를 거쳐서 법인세가 확정된다. 투자세액공제는 1986년 조세법 개혁으로 적용범위가 크게 축소되어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편 비상장 주식회사를 포함한 특수 관계자 거래는 이익이 일반소득으로 간주되거나 손실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일반공제는 기부금, 임원보수, 감가상각비, 부가급부와 같이 공제제한 등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사업비용이다. 특별공제에는 배당수입과 운영업손실 공제가 있다. 배당수입 공제는 여타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삼중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계열회사 그룹은 각 회사의 손익을 통합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장점은 손실을 이월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소득과 상쇄가 가능한 등 각종 공제가 통합, 사용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계열사 간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독립된 거래(*arm's length rule*)가 아니므로 상대방 회사가 인정할 때까지 신고가 이연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열회사들은 모회사의 과세연도를 따라야 하며 일단 통합신고를 하면 국세청의 허가 없이는 별도 신고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다. 매수·합병·분할·청산

기업매수는 자산구입과 주식구입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판매기업이 자산별로 손익을 신고하고 후자는 주주가 신고한다. 매입자는 기업의 매수 이후 자회사로 유지하거나 청산 혹은 Sec. 338에 의한 매입 여부에 따라 매수자산의 장부가액 평가가 달라진다. 자산의 구입을 통한 청산에 있어서 주식교환에 의한 자산구입은 비과세되고 이외 현금과 부채를 대금으로 한 자산구입은 과세된다. 주식의 구입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는 모회사 주식을 이용한 기업 매수 및 자회사할 때 비과세된다. 조건부 매매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을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기업합병이나 분할에 있어서는 합병/분할을 전후하여 투자자의 지분이 유지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한 예로 자산의 양도 대신 상대방 기업의 주식을 받으면 양도손익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을 양도받아도 주주에게 배분되면 기업의 신고가 필요 없다. 또한 비과세 되려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의 기존 사업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고 선의의 사업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 주주의 경우 주식 교환은 신고가 필요 없고 이외 자산은 실현된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신고한다.

기업합병과 분할 등은 A~F 유형으로 구분되어 과세상 다른 대우를 받는다. 한 예로 합병시 기업의 존속 여부나 투표권이 없는 주식의 교환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기업분할에 있어서는 자산의 이전 방식에 따라 주식회수, 주식배당 혹은 일종의 청산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일부 제한된 항목을 제외하면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이후 양도된 자산의 과세상 속성 즉, 공제나 손실 등은 자산을 양도받은 기업에 이전된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과세상 속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을 매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업의 청산이 아닌 상황에서 기업 수익을 초과하는 배당은 자본의 반환으로 취급되어 주식 지분의 감소를 초래하고 지분 이상의 배당은 양도차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업의 청산이 이루어져 주주에게 자산이 분배되면 주주는 이를 주식의 매매로 간주한다. 즉, 주주는 자산의 시장가치에서 주식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장기 혹은 단기 양도손익으로 신고한다. 또한 개인의 경우 보유 주식으로 입은 손실은 일반손실로 간주할 수 있다. 청산하는 기업도 주주에게 자산을 배분할 당시 손익을 신고하여야 한다.

요컨대 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업체는 C 주식회사로서 최고세율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같다. 기본적으로 C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재 서비스의 수혜 대상이므로 따로 과세되고 있는데 그 대신 비용공제나 손실공제에 있어서 다른 사업체 혹은 개인에 비하여 별도의 규제는 받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중소 주식회사에 대하여 S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 주식회사의 이점을 살리는 대신 회사 이익은 개인 주주 차원에서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1986년 이후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초과유보세나 배당의 이중과세 등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주식 혹은 기업투자에 대하여 엄중히 과세한다. 한편 접대비는 50%만 인정하고 75달러 이상은 사용 내역을 명기하도록 한 규정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으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엄중한 과세행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기업이 주어진 조세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과세제도에 대해서도 상황적 논리로 이의를 제기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IV. 소비세

1. 미국의 소비세 체제

가. 미국 소비세 체제

전술한 대로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로 독립을 전후한 시점에 과세는 관세와 소비세가 주된 세원이었고 주별로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항목에 대한 소비세를 적용하였다. 특히 남부에서는 수출입품에 대한 소비세, 중부에서는 청년 이상 남성에게 대한 인두세와 재산세 그리고 북부 지역은 부동산세, 소비세 그리고 직업세가 세원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미국에서 소비세는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전통적 세목으로서 일반판매세와 유류를 비롯한 주류, 담배 등 기호식품에 대한 개별판매세의 형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외 유흥세, 경마세, 숙박세, 보험료세, 전기 등의 공공서비스세(public utilities) 그리고 등록세가 지방에서 과세된다.

한편 연방정부는 1993년에 폐지된 사치성 상품에 대한 세금 이외에 유류, 석탄, 총기, 낚시용품, 대형 자동차, 타이어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소매세 혹은 제조업자세(manufacturers taxes)와 항공과 수상 등의 시설 이용세, 도박세, 담배 및 주세, 외국기업의 보험상품세 그리고 환경세 등을 제한적으로 부과하며 이들 중 일부 품목은 목적세로 활용된다.

나. 판매세의 개념

미국에서 판매세(sales tax)는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세금이다. 판매세는 소매판매세(retail sales tax)를 위시하여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 혹은 turnover tax), 제조업자 소비세(manufacturer's excise tax) 그리고 판매자세(vendor tax)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 세금은 재판매용 재화 구입과 서비스 구입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와 제품의 판매가격 혹은 판매자의 총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판매자세나 총수입세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금납부의 법적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

미국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금은 일반소매판매세로서 소비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판매세는 사업용 제품 구입에도 과세된다. 따라서 미국 주정부는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입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부품 판매도 면세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업용 부품은 생산과정에서 그 물리적 형태를 유지하여야 면세가 가능하다. 이 밖에 일부 주에서는 최종 소비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용 기계나 설비 등의 구입을 비과세하기도 한다.

한편 일반판매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판매세가 제품가격에서 따로 표시되고 판매자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겠다는 광고를 금지한다. 이의 판매자가 거래 제품별로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2.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es)

가. 주별 일반판매세 비교

1) 개요

1932년 미시시피 주가 주정부 차원에서 일반판매세를 처음 도입하였고 그후 일반판매세가 대체 재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현재 알래스카, 델라웨어¹³³⁾, 몬태나, 뉴 햄프셔, 오레건의 5개 주를 제외한 45개 주에서 일반판매세 및 사용세를 과세한다. 알래스카의 경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판매세가 활용되고 있다. 이외 기초자치단체도 일반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자치단체 판매세는 주 차원의 판매세에 포

133) 그러나 델라웨어의 경우 품목에 따라 총수입의 0.019%~0.72%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월 3,000~50,000달러를 공제하고 이를 도소매세로서 징수한다.

함되어 주정부가 과세행정을 담당한다.

여타 지방정부를 제외한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은 일반판매세, 개별판매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및 기타 세가 있다. 주정부가 부과하는 이들 세목의 1인당 평균 세수는 1,853달러로 개인소득의 약 6.1%에 달한다(<표 IV-1> 참조). 이 가운데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개인소득세(34.7%) 다음으로 일반판매세(33.5%)이다.

일반판매세의 1인당 세수는 평균적으로 약 621달러에 이르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이다. 그러나 주별로 일반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편차가 심하여 하와이와 워싱턴의 경우 소득 대비 비중이 각각 4.5%, 4.1%에 이르는 반면 버몬트나 버지니아에서는 그 비중이 1.2%에 불과하다.

주정부가 일반판매세에 의존하는 정도도 편차가 심하다. 즉, 총세수 대비 일반판매세 비중으로 추정하면 워싱턴(62.6%), 테네시(60.0%), 플로리다(58.1%), 네바다(52.6%), 사우스 다코다(53.6%), 텍사스(50.8%) 등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판매세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특히 플로리다 및 네바다와 함께 하와이(47.1%) 등은 관광객 등 외부 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수출(tax exporting)을 목적으로 일반판매세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서 주세, 유류세 등 개별판매세와 일반판매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워싱턴(78.8%), 테네시(77.6%), 텍사스(82.3%), 플로리다(76.3%), 네바다(84.6%), 사우스 다코다(79.6%) 등으로 이들 주는 재원을 소비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하다.

<표 IV-1> 주정부 총세수 및 일반판매세 비중과 1인당 세수(2002)

(단위: 억달러, 달러, %)

	전체 세입			일반판매세		
	세수	1인당 세입	소득대비비중	총세입비중	1인당 세입	소득대비비중
미국 평균	5,334.3 ¹⁾	1,853	6.1	33.5	620.8	2.0
Alabama	68.8	1,533	6.3	25.4	389.4	1.6
Alaska	10.9	1,692	5.5	n.a.	n.a.	n.a.
Arizona	84.8	1,554	6.2	50.6	786.3	3.1
Arkansas	50.3	1,858	8.2	38.1	707.9	3.1
California	777.6	2,214	6.9	30.6	677.5	2.1
Colorado	69.2	1,536	4.7	27.5	422.4	1.3
Connecticut	90.3	2,620	6.2	33.7	882.9	2.1
Delaware	21.7	2,693	8.4	n.a. ²⁾	n.a.	n.a.
Florida	248.2	1,485	5.2	58.1	862.8	3.0
Georgia	137.7	1,609	5.7	35.1	564.8	2.0
Hawaii	34.2	2,748	9.6	47.1	1,294.3	4.5
Idaho	22.7	1,694	7.0	35.0	592.9	2.5
Illinois	224.6	1,782	5.4	28.6	509.7	1.5
Indiana	100.0	1,623	5.9	38.0	616.7	2.2
Iowa	50.1	1,705	6.3	34.9	595.0	2.2
Kansas	48.1	1,770	6.2	37.4	662.0	2.3
Kentucky	79.8	1,948	7.9	29.0	564.9	2.3
Louisiana	73.5	1,639	6.7	31.7	519.6	2.1
Maine	26.3	2,030	7.6	31.8	645.5	2.4
Maryland	108.2	1,983	5.7	24.9	493.8	1.4
Massachusetts	148.2	2,306	6.0	24.9	574.2	1.5
Michigan	218.6	2,176	7.3	35.6	774.7	2.3
Minnesota	218.6	2,176	7.3	35.6	744.7	2.3
Mississippi	47.3	1,647	7.6	49.5	815.4	3.8
Missouri	86.8	1,530	5.5	32.9	503.4	1.8
Montana	14.4	1,587	6.7	n.a.	n.a.	n.a.
Nebraska	29.9	1,731	6.0	35.7	617.9	2.1
Nevada	39.5	1,816	6.3	52.5	953.4	3.3
New Hampshire	18.8	1,478	4.4	n.a.	n.a.	n.a.
New Jersey	183.3	2,134	5.6	32.7	697.8	2.1
New Mexico	36.3	1,956	8.6	36.9	721.8	3.2

<표 IV-1>의 계속

(단위: 억달러, 달러, %)

	전체 세입			일반판매세		
	세수	1인당세입	소득대비비중	총세입비중	1인당 세입	소득대비비중
New York	432.6	2,258	6.3	19.9	449.3	1.3
North Carolina	155.4	1,867	6.9	20.7	386.5	1.4
North Dakota	11.2	1,762	6.8	30.0	528.6	2.0
Ohio	196.2	1,718	6.0	32.6	560.1	2.0
Oklahoma	60.5	1,732	7.0	25.3	438.2	1.8
Oregon	51.4	1,459	5.3	n.a.	n.a.	n.a.
Pennsylvania	221.4	1,795	5.9	33.1	594.1	2.0
Rhode Island	21.2	1,988	6.6	34.4	683.9	2.3
South Carolina	57.5	1,400	5.7	40.6	568.4	2.3
South Dakota	9.8	1,283	4.8	53.6	687.7	2.6
Tennessee	78.0	1,345	5.0	60.0	807	3.0
Texas	286.6	1,316	4.7	50.8	668.5	2.4
Utah	39.3	1,695	7.2	38.2	647.5	2.8
Vermont	15.3	2,486	8.8	14.0	348.0	1.2
Virginia	127.8	1,752	5.5	21.9	383.7	1.2
Washington	126.3	2,081	6.6	62.6	1,302	4.1
West Virginia	35.5	1,971	8.6	27.1	534.4	2.3
Wisconsin	118.1	2,171	7.5	31.3	679.5	2.3
Wyoming	10.9	2,193	7.5	40.7	892.6	3.1

주: 1. 평균 세수가 아닌 총세수. 2. n.a.는 일반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

자료: US Census of Bureau, Governmental Finances(www.census.gov/govs/estimate) and www.taxadmin.org/fta.

2) 과세대상

미국에서 일반판매세는 소매단계에서의 재화나 서비스 판매 혹은 사용에 대하여 과세되며 재화·서비스의 사용에 따른 과세는 따로 사용세(use tax)로 불린다. 모든 재화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서비스는 법에서 정하는 서비스(taxable service)만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판매는 임대를 포함하며 재화의 교환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용세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유형자산이나 과세대상 서비스를 역내에서 사용, 소비, 유통 혹은 저장하는 데 적용되는 세금으로 일반판매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즉, 사용세는 역내에서 구입하였다면 과세대상인 재화나 서비스를 역외에서 구입, 역내로 반입할 때나 재판매 목적이거나 비과세대상인 재화 등을 구입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 그리고 역내나 역외에서 재료를 제작 혹은 조립하여 사용 및 소비할 때 부과된다. 따라서 사용세는 불공정한 경쟁을 막고 균일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일부 주에서는 최소 구매가격에 대해서는 사용세를 면제하기도 하는데 한 예로 미네소타의 경우 연간 770달러 이하의 사용세가 부과되지 않는다(Sec 279A.14).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소매거래에 부과되므로 재판매를 위한 판매 즉, 도매거래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하와이를 제외한 여타 주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소매 판매에만 과세를 한다. 재화의 거래가 재판매를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일부 주에서는 구입자가 성실한 의도로(in good faith) 발부하는 재판매 증명서(면세 증명서)를 입수함으로써 증빙 책임이 완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에서는 주 경계를 넘나드는 상거래에 대하여 주정부 차원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리가 연방헌법 제 1조(Commerce and Due Process Clauses)에 따라 제한이 된다. 특히 1977년 대법원 판정에 따라 주 사이의 상거래에 대하여 주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부문은 거래행위가 해당 주와 실질적 연관성(substantial nexus)이 있거나 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물리적으로 입지하여야 한다(no physical presence). 이 경우 역외 판매자는 비록 우편주문이라고 하여도 해당 주 소비자로부터 사용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가) 우편주문 등 역외 판매자

연방헌법 제 1조에 제시된 상거래와 공정절차 조항(Commerce and Due Process Clauses, Sec. 8 Cl. 3., Art. I)은 주정부와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판매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이 된다. 동 조항에 따르면 주 간의 상거래와 외국과의 교역에 관한 관할권은 미국 연방의회에게 있다. 따라서 동 조항에 따라 주정부가 주 사이의 상거래

(interstate commerce)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1977년 미국 연방법원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주 간의 상거래에도 주정부의 판매세가 징수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¹³⁴⁾:

- ① 판매세가 해당 주와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활동에 적용되고
- ② 공정하게 배분되며
- ③ 주 간의 상거래에 대하여 차별적이지 않고
- ④ 해당 주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판매세의 연관성이 적절한 경우

외국교역과 관련해서는 판매세가 이와 같은 요건 이외에도 다중과세의 위험을 유발하지 않거나 혹은 연방정부가 외국정부와의 상거래 관계를 조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¹³⁵⁾.

한편 실질적 연관성(substantial nexus)과 관련해서는 어떤 주에서 개인용품을 판매하는 역외 판매자의 영업활동이 주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판매세를 판매자가 해당 주를 위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요건은 통상적으로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engaged in business or doing business)’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주 내에 사업체 직원이나 영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광고, 배달, 저장 및 유통 그리고 고장수리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편 주문판매의 경우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에서 역외 판매자들이 세금을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대법원 판결(Quill Corp.)¹³⁶⁾에서는 노스 다코다의 주정부가 주 내에 영업사원이나 매장 혹은 여타 상당한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노스 다코다 소비자에게 우편주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에게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정을 하였다. 이는 물리적으로 입지하지 않은 상태에서(no physical presence) 우편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위치한 주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는 National Bellas Hess(1967)의 판정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카탈로그 등의 우편을 송부하고 주문상품을 우편이나 공공배송으로 배달하는 행위만을 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주정부가 세금을 수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134) Complete Auto Transit, Inc v. Brady (1977 US SCt), 430 US 274, 97 SCt 1076

135) Japan line, Ltd., et al. v. County of Los Angeles, et al. (1979 US SCt), 441 US 434, 99 SCt 1813

136) Quill Corp. v. North Dakota. (1992 US SCt) 112 SCt 1904

그러나 우편주문 및 배달과 같이 보호받는 행위(protected activity)를 제외한 여타 활동을 해당 주에서 하거나 또는 홍보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우 비록 그러한 행위가 우편주문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해당 주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이들 활동들이 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세요건인 실질적인 연관성(substantial nexus)에 해당된다¹³⁷⁾.

나) 서비스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세는 유형자산의 이전이 연루된 소매거래와 일부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판매세를 부과한다(taxable service).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서비스의 판매나 제공 혹은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과세하여 서비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과세를 하기도 한다. 이 밖에 서비스는 원래 비과세되지만 유형개인자산에 한 부분을 차지하면 과세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한 경우 이 제품은 면세대상이다(resale exemption).

137) National Geographic Society v. SBE (1977 US Sct), 430 US 551

<표 IV-2>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과세기준과 기타 감면

	과세원칙	서비스 종류 면세 여부				trade-in	vending machine (식품)
		청소	교통	수선	전문 · 개인		
Alabama	○	○	○	○	○	○ ⁴⁾	×
Arizona	△	○	×	○	○	○	○
Arkansas	△	×	○	×	○	○ ⁵⁾	×
California	○	○	○	○	○	×	×
Colorado	○	○	○	○	○	○	○
Connecticut	△	×	○	×	×1)	○	○ ¹³⁾
Florida	△	○	○	○	○	×	×14)
Georgia	○	○	×	○	○	○	×
Hawaii	×	×	○	×	×	○	×
Idaho	○	○	×	○	○	○ ⁶⁾	×
Illinois	○	○	○	○	○	○	×15)
Indiana	○	○	○	○	○	○	×
Iowa	△	×	○	×	×2)	○	×
Kansas	△	×	×	×	○	○	×
Kentucky	○	○	○	○	○	○	×
Louisiana	○	×	○	×	○	○	○
Maine	△	○	○	○	○	○ ⁷⁾	○
Maryland	○	×	○	○	○	×	×16)
Massachusetts	○	○	○	○	○	○ ⁸⁾	×17)
Michigan	○	×	○	○	○	×	○ ¹⁸⁾
Minnesota	○	×	○	○	○	○	×
Mississippi	△	×	○	×	○	○	○
Missouri	○	○	×	○	○	○	×
Nebraska	○	○	○	○	○	○	×
Nevada	○	○	○	○	○	×9)	×
New Jersey	○	○	○	×	○ ³⁾	○	×
New Mexico	×	×	×	×	×	○	×
New York	△	×	○	×	○ ³⁾	○	×
North Carolina	○	×	○	○	○	×	×
North Dakota	○	○	○	○	○	○	×
Ohio	△	×	○	×	○	○ ¹⁰⁾	○
Oklahoma	△	○	×	○	○	×11)	○

<표 IV-2>의 계속

	과세원칙	서비스 종류 면세 여부				trade-in	vending machine (식품)
		청소	교통	수선	전문 · 개인		
Pennsylvania	△	×	○	×	○	○	○
Rhode Island	○	○	○	○	○	○ ¹²⁾	○
South Carolina	○	× ¹⁾	○	○	○	○	○
South Dakota	×	×	×	×	× ²⁾	○	○
Tennessee	○	×	○	×	○	○	○
Texas	△	×	×	×	○	○	○ ¹⁹⁾
Utah	△	×	×	×	○	○	○
Vermont	○	○ ¹⁾	○	○	○	○	○
Virginia	○	○	○	○	○	○	○
Washington	△	×	×	×	○	○	○
West Virginia	×	×	○	×	○	○	○
Wisconsin	△	×	○	×	○	○	×
Wyoming	○	×	×	×	○	○	○

주: 1) 대부분 전문 서비스는 면제. 2) 건강 관련 의료서비스는 면제. 3) 세탁 서비스는 면제. 4) 자동차와 트레일러, 농업용 기계에만 적용. 5) 비행기, 이동용 주택, 자동차, 트레일러에만 적용. 6) 새로 제조된 주택에만 적용. 7) 자동차, 비행기, 보트, 톱기계, 농업 트랙터 등에만 적용. 8) 자동차, 비행기, 보트, 트레일러 등에만 적용. 9) 자동차, 농업용 기계, 기구에만 감면. 10) 수송용 기구와 신제품 자동차에만 적용. 11) 부분품에 대한 감면 허용. 12) 개인 승용차에만 적용. 13) 사탕, 탄산음료는 제외(단 50센트 이하는 면세). 14) 학교 구내 판매는 면세. 15) 탄산음료와 고열 식품은 제외. 16) 스낵식품, 우유, 과일, 채소는 면세. 17) 1달러 이하 스낵과 캔디만 면세. 18) 우유, 주스, 과일, 캔디, 견과, 빵, 과자 등 면세. 19) 캔디와 껌을 제외한 판매금액의 1/2만 과세.

자료: 「2002 Master Sales and Use tax Guide」, CCH, 2002.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기준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우선 특정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에 대하여 면세하는 주는 <표 IV-2>에서 ○, 법적으로는 일부 서비스만 과세하게 되어 있지만 상당수 서비스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역은 △, 그리고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대부분 서비스에 과세하는 지역은 ×로 표시되어 있다. 대부분 서비스에 과세하는 주는 하와이, 뉴 멕시코, 사우스 다코다, 웨스트 버지니아 4개 주이고 상당수에 대하여 과세하는 주는 아리조나 등 16개주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

및 개인 서비스와 운송 서비스는 면세가 허용되며 청소와 수선 서비스는 절반 정도의 주에서 과세된다.

다) 신제품교환(Trade-in)과 자동판매기 구입

일부 산업에서는 제품 구입시 신제품과 유사한 (현)제품을 구매자가 제공하면 이에 상당한 가격을 구입가격에서 공제해 준다. 이 경우 과표 기준은 주마다 차이가 난다. 알라바마 등 대부분의 주에서 과세가격은 제품의 현금가격이 되고 그 대신 신제품과 교환된 제품을 재판매하면 판매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매릴랜드, 미시건 등 6개 주에서는 제품 교환을 무시하고 전체 가격에 판매세를 부과하고 이 제품이 재 판매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주도 있다(×).

자동판매기를 통한 영업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판매세가 부과된다. 다만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품의 판매는 아리조나, 콜로라도 등 9개 주에서 우유, 과일, 채소, 빵, 스낵 등 제한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세가 면제된다. 이외 매릴랜드 주에서는 이들 사업자의 과표를 총수입의 95.25%로 낮추어 주기도 한다.

라) 임대와 비사업자의 일시적 판매

소매 단계에서 과세되는 유형 개인자산이 임대될 때 임대 서비스에 대하여 판매세가 부과된다. 납세방식은 임대를 위한 자산 구입시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 수입을 신고할 때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자산 구입시 판매세를 납부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이 가능하다. 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판매세 이외에도 자동차의 임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표 IV-3> 임대 서비스·비정규적 판매·기계에 대한 과세 여부

	임대			비정규적 판매		제조업 기계	농업용 기계
	자동차	기타 유형자산	숙박 서비스	자동차·선박 ·비행기	기타		
Alabama	○ ¹⁾	○	× ²⁾	○ ¹⁰⁾	×	× ²³⁾	× ²³⁾
Arizona	○ ¹⁾	○	○	×	× ¹¹⁾	○	○
Arkansas	○ ⁵⁾	○ ⁴⁾	○ ²⁾	○	×	× ²⁴⁾	○
California	○	○	×	○	× ¹²⁾	× ²⁴⁾	×
Colorado	○	○	○	○	○	○	○
Connecticut	○ ³⁾	○	○	○	× ¹¹⁾	○	○
Florida	○ ³⁾	○	○ ²⁾	○	× ¹¹⁾	× ²⁵⁾	× ²³⁾
Georgia	○	○	○	× ¹⁴⁾	× ¹⁴⁾	○	○
Hawaii	○ ³⁾	○	○ ²⁾	× ¹¹⁾	× ¹¹⁾	×	×
Idaho	○	○	○ ²⁾	○	×	○	○
Illinois	× ⁵⁾	×	× ²⁾	○ ¹⁵⁾	× ¹¹⁾	○	○
Indiana	○ ⁵⁾	○	○	○	× ¹¹⁾	○	○
Iowa	○ ⁵⁾	○	○	○	×	○	○
Kansas	○ ⁵⁾	○	○	○	× ¹¹⁾	○	○
Kentucky	× ⁵⁾	○	○	○ ¹⁵⁾	× ¹²⁾	○	○
Louisiana	× ⁵⁾	○	○	○	× ¹¹⁾	×	× ²³⁾
Maine	○	○	○	○	× ¹¹⁾	○	○
Maryland	○	○	○	○ ¹³⁾	× ¹⁶⁾	○	○
Massachusetts	○ ³⁾	○	○	○	× ¹¹⁾	○	○
Michigan	○	○	○	○	× ¹¹⁾	○	○
Minnesota	○ ⁵⁾	○	○	○ ¹⁷⁾	× ¹¹⁾	×	○
Mississippi	○ ³⁾	○	○	○	×	× ²³⁽²⁴⁾	× ²³⁾
Missouri	○	○	○	○	× ^{11,18)}	○	○
Nebraska	○ ⁵⁾	○	○ ²⁾	○	×	×	○
Nevada	○	○	×	× ¹⁹⁾	× ¹²⁾	×	×
New Jersey	○	○	○	○	×	○	○
New Mexico	× ⁶⁾	○	○	○ ¹³⁾	× ¹¹⁾	×	× ²³⁾
New York	○ ⁵⁾	○	○	○	× ²⁰⁾	○	○
North Carolina	× ⁵⁾	○	○	○ ¹⁵⁾	×	× ²³⁾	× ²³⁾
North Dakota	× ⁵⁾	○	○	○ ¹³⁾	× ¹¹⁾	× ²⁴⁾	× ²³⁾
Ohio	○	○	○	○	×	○	○
Oklahoma	× ⁶⁾	○	○ ²⁾	○	○	× ²⁴⁾	○
Pennsylvania	○ ⁵⁾	○	○	○	× ¹¹⁾	○	○

<표 IV-3>의 계속

	임대			비정규적 판매		제조업 기계	농업용 기계
	자동차	기타 유형자산	숙박 서비스	자동차·선박· 비행기	기타		
Rhode Island	○ ⁷⁾	○	○ ²⁾	○	× ¹¹⁾	○	○
South Carolina	○ ³⁾	○	○	○	×	○	○
South Dakota	○ ³⁾	○	○ ²⁾	○ ¹³⁾	× ¹¹⁾	×	× ²³⁾
Tennessee	○ ³⁾	○	○	○	×	○	○
Texas	× ⁵⁾	○	× ²⁾	○ ¹³⁾	×	○	○
Utah	○ ⁵⁾	○	○	○	×	○	○
Vermont	× ⁷⁾	○ ⁸⁾	× ²⁾	○ ¹¹⁾	× ¹¹⁾	○	○
Virginia	× ⁵⁾	○	○	○ ¹³⁾	× ¹²⁾	○	○
Washington	○ ⁹⁾	○	○	○	○ ^{11,21)}	○	×
West Virginia	○	○	○	× ¹¹⁾	× ¹¹⁾	○	○
Wisconsin	○	○	○	○ ²²⁾	×	○	○
Wyoming	○ ³⁾	○	○	○	○	×	× ²⁴⁾

주: 1) 세율을 경감. 2) 별도의 숙박/관광세 부과. 3) 추가로 자동차 임대 부과금/관광세 대상. 4) 30일 이내 단기 임대는 1% 추가 과세. 5) 별도의 자동차 임대 부과금 추가. 6) 별도의 자동차 임대세나 관광세 부과. 7) 자동차 사용세 대상. 8) 가정용 가구 임대는 면세. 9) 자동차 임대세 추가 적용. 10) 별도의 세금부과. 11) 판매자가 정상 사업활동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의 판매는 비과세. 12) 판매자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판매는 비과세. 13) 자동차는 판매세가 아닌 자동차세가 부과. 14) 재판매가 아닌 사업용으로 습득한 자산은 최근 12개월간 최대 500달러 면세. 15) 자동차는 별도의 사용세 부과. 16) 1,000달러 이하. 17) 별도의 자동차세, 비행기 판매자가 아닌 개인에게 판매하면 과세. 18) 총수입이 3,000달러 이하. 19) 자동차는 세경감. 20) 거주지에서 판매로 1년간 600달러 이하의 판매. 21) 사용세 대상. 22) 가족이나 가족이 소유한 개인회사가 구입자일 때 면세. 23) 감면세를 적용. 24) 제한적 면제 25) 일부 산업에만 면제.

자료: 「2002 Master Sales and Use tax Guide」, CCH, 2002.

또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숙박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판매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 연속 임대되는 경우 그리고 병원이나 비영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부기관에게 제공하는 숙박서비스는 면제가 가능하다. 한편 호텔 등의 숙박서비스에 대하여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그 대신 숙박세(occupancy tax)를 따로 부과한다.

개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일반사업자가 아닌 개체가 이따금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 등을 제외한 판매는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대상, 금액 또는 판매기일을 제한하여 조건부로 세금이 면제된다(occasional sales). 이 밖에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의 일시적인 판매는 면세가 가능하다. 한 예로 뉴욕주에서는 집에서 하는 야드 세일의 경우 1년에 6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고 미주리는 총 3,000달러까지 면제된다. 이러한 제한 없이 과세를 하지 않는 주는 알라바마 등 15개 주가 있다. 그러나 콜로라도 등 3개 주는 이를 과세하며 워싱턴 주는 사용세를 부과한다.

자동차와 선박 그리고 비행기의 경우 아리조나를 제외한 대부분 주에서 과세되거나 조지아 등 일부 주에서 조건부로 면제된다. 판매자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는 자동차 등을 거래하지 않거나(하와이), 금액이 500달러 이하일 때(조지아) 면세를 하고 혹은 부분적인 감면을 한다(네바다). 한편 매릴랜드 등 일부 주에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세는 부과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하와이와 루지애나를 제외한 주에서는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한다. 또한 많은 주에서 제조업과 농업에 '직접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기계에 대해서도 판매세를 면제한다. 또한 제조업 기계에 대하여 판매세를 과세하더라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캘리포니아, 아칸사스, 노스 다코다, 오하이오) 혹은 제한된 감면 혹은 공제를 한다(플로리다, 매릴랜드, 미시시피, 뉴 멕시코).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연료 등 공공요금의 경우 면제가 가능하지만 면세액을 제조비용의 일정 비중으로 제한한다. 이 밖에 연료나 농업용 기계도 제조업 기계와 마찬가지로 일부만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주도 있다.

3) 비과세·감면

가) 면세

상업용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판매된 열매와 비료 등은 면제된다. 이들 제품은 궁극적으로 농산물 판매시 세금이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식료품점에서 구입하는 식품 즉 가정용 식품은 대개 사람이 소비하는 식품으로 구입장소에서 소비되지 않는 조건하에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음료품은 판매장소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판매세가 부과된다. <표 IV-4>에 가정용 식품이 면세되는 주는 ○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에 과세하는 주는 알라바마와 하와이 등 15개 주이다.

대다수 주가 의류나 신발류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데 일부 주는 유아복이나 안전복 등 특정 부류의 의복을 면세하기도 한다. 의류 및 신발류를 제한 없이 완전히 면세하는 주는 뉴저지,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로서 단 모피와 스포츠 제품 및 장식품 등은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욕 그리고 버먼트는 100달러 내외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만 제한적으로 면제한다. 한편 커네티컷, 플로리다, 아이오와, 매릴랜드, 텍사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에서는 8월 중 대략 일주일간 특정 가격 이하의 의류 매입에 대한 세금을 면세하는 tax holidays를 이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는 제조, 생산 혹은 연구에 사용되지 않는 한 과세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형자산과 비유형자산의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과세 여부와 방식이 주별로 차이가 크게 나며 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품 구매의 진정한 목적이 유형자산의 구입에 있다면 판매세가 부과되고 서비스를 얻는 데 거래의 목적이 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true object test).

<표 IV-4> 주별 판매세 면제대상 제품

	식품	의류·신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약품	
			canned	custom	download	처방약품	일반약품
Alabama				○		○	
Arizona	○			○		○	
Arkansas					○	○	
California	○			○	○	○	
Colorado	○			○		○	
Connecticut	○	○ ³⁾				○	○
Florida	○	△ ⁴⁾		○	○	○	○ ¹³⁾
Georgia	○			○	○	○	
Hawaii						○	
Idaho				○		○	
Illinois	○ ²⁾			○			
Indiana	○			○		○	
Iowa	○	△ ⁵⁾		○	○	○	
Kansas				○		○	
Kentucky	○			○		○	
Louisiana						○	
Maine	○ ¹⁾			○		○	
Maryland	○	△ ⁵⁾		○	○	○	○
Massachusetts	○	○ ⁶⁾		○	○	○	
Michigan	○			○		○	
Minnesota	○	○ ⁷⁾		○		○	○
Mississippi						○	
Missouri	○ ²⁾			○	○	○	
Nebraska	○					○	
Nevada	○			○	○	○	
New Jersey	○	○		○	○	○	○
New Mexico						○	
New York	○	○ ⁸⁾		○		○	○
North Carolina	○ ²⁾			○	○	○	
North Dakota	○			○		○	
Ohio	○					○	
Oklahoma				○	○	○	
Pennsylvania	○	○ ⁹⁾		○	○	○	○

<표 IV-4>의 계속

	식품	의류·신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약품	
			canned	custom	download	처방약품	일반약품
Rhode Island	○	○ ¹⁰⁾		○	○	○	○
South Carolina		△ ¹¹⁾			○	○	
South Dakota						○	
Tennessee						○	
Texas	○	△ ⁵⁾				○	○
Utah				○		○	
Vermont	○	○ ¹²⁾		○	○	○	○
Virginia				○	○	○	○
Washington	○			○		○	
West Virginia						○	
Wisconsin	○ ¹⁾			○		○	
Wyoming				○		○	

주: 1) 과자류는 면제 대상이 아님. 2) 식품에 대하여 감면세율을 적용함. 3) 75달러 이하 의류와 신발은 면세(tax holidays는 300달러 이하). 4) tax holidays(총 50달러). 5) tax holidays (100달러). 6) 175달러 이하의 의류와 신발류(스포츠 제품 제외). 7) 귀금속, 모피, 향수 스포츠 용품을 제외한 의류와 장식품 면제. 8) 110달러 이하 제품. 9) 모피와 액세서리 제외한 제품 면제. 10) 스포츠 용품 제외한 의류와 신발류. 11) tax holidays. 12) 스포츠용품 제외한 110달러 이하의 의류와 신발류.

자료: 「2002 Master Sales and Use tax Guide」, CCH, 2002.

사전에 제작되어 진열장에서 직접 구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prewritten or canned software)는 모든 주에서 판매세가 부과되며 구입자의 특정한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프로그램(custom software)은 37개에 이르는 주에서 판매세가 면제된다. 이외 사전 작성된 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한 경우 그러한 서비스가 따로 제시되어야 그 부분만 면세를 한다. 컴퓨터로 전송된 프로그램(downloaded program)은 주마다 과세 여부가 다르며 17개 주만이 면세를 한다.

의료서비스는 하와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판매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약품의 경우 진단서가 첨부되면 일리노이 등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판매세를 면제해주며 진단서가 없는 의약품은 커넥티컷 등 11개 주를 제외한 주에서 과세된다. 한편 의료

기구의 구입에 있어서도 상당수 주가 판매세를 면제해주지만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단서가 붙는다.

나) 산업 감면

이 밖에 일부 주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에 따라 품목이 아닌 산업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는 산업유치나 농업보호 혹은 일반 서민을 위한 정책일 수 있다. 한 예로 알라바마는 제조업 등에 대하여 기본세율 4% 대신 2%의 세율을 부과하며 하와이, 노스 캐롤라이나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 또한 농업기계·기구, 이동주택, 의료품, 연료유 등에 감면제도를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부 품목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도 한다. 한 예로 숙박 임대(아리조나, 메인, 뉴욕, 로드 아일랜드)나 주류 판매(메인, 미네소타, 노스 다코다) 등에 대해서는 조세수출이나 비가치재 소비 지양을 위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표 IV-5> 주별 판매세 경감세율과 품목·산업

	기본세율	경감세율과 품목·산업
Alabama	4.0	1.5%: 제조업, 농광산 기계·기구, 자동차, 트레일러 임대 2%: 린넨, 의복 임대, 자동차, 트레일러, 이동주택·자재 3%: 자동차판매기 식품판매 5%: 도로·교각건설 서비스
Arizona	5.0	5.5%: 숙박 3.125%: 광산
Arkansas	5.125	6.125%: 추가 세율: 유형 개인자산의 단기 임대
Connecticut	6.0	12%: 연속적인 숙박임대료(첫 30일) 5.75%: 환자간호 서비스
Florida	6.0	4%: 동전오락기계 7%: 통신, 전기·에너지 2.5%: 농업기계
Hawaii	4.0	0.5%: 제조업, 도매업자, 유형자산 판매자, 생산 중간단계에 제공된 서비스, 신체장애인의 '총소득' 1.5%: 보험업자
Illinois	6.25	1%: 식료품점과 자동차판매기 식품, 의약품, 의료기구
Indiana	5.0	4%: 자동차 임대
Maine	5.5	7%: 숙박 임대 및 주류판매 10%: 1년 이하의 자동차 임대
Michigan	6.0	4%: 가정용 공공요금
Minnesota	6.5	9%: 알콜주류 및 맥주류
Mississippi	7.0	1%: 농업용 트랙터, 전기생산을 위한 제품 1.5%: 제조업 기계 및 부품 3%: 자동차, 비행기, 트럭, 트레일러, 이동용 주택, 농축산용 부품, 비사업자의 자동차 판매
Missouri	4.225	1.225%: 식품
New York	4.0	5%: 승용차 임대 및 호텔 숙박
North Carolina	4.0	2%: 주택 건설(최고세 300달러) 3%: 비행기, 자동차, 보트(최고 1,500달러) 1%: 농업용 기계, 농업용 부품, 필름, 건설 기자재, 세탁기계, 농업·제조업·세탁업 연료, 필름 화학재료 및 기구 6%: 통신서비스
North Dakota	5.0	2%: 천연가스 3%: 이동주택, 농업기계 7%: 주류 및 담배류
Rhode Island	7.0	12%: 일시적 숙박임대
South Carolina	5.0	7%: 일시적 숙박임대
South Dakota	4.0	3%: 농업용 기계, 관개용 기구
Utah	4.75	2%: 가스, 전기, 연료유, 석탄, 가정용 연료
Vermont	5.0	4.36%: 통신서비스
Washington	6.5	5.9%: 자동차 임대
West Virginia	6.0	3%: 거주를 위한 이동용 주택
Wyoming	4.0	3%: 농업용 부품

주: 기본세율은 주정부 일반판매세 세율임.

자료: 2002 U.S. Master Sales and Use tax Guide, Fred Conklin eds, CCH.

4) 납세의무자 및 기장의무

가) 납세의무자

원칙적으로 판매세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시건, 워싱턴 등 9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판매세 세금 부담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구매자 부담을 명시하지 않는 매사추세츠, 미시건 등의 주에서도 판매자가 세금을 대신 부담한다고 광고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판매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책임은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있다. 따라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납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구매자는 판매대금과 마찬가지로 판매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판매세는 구매자의 부채로 간주된다.

한편 사용세는 역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이를 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나 역내에서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다. 이 때 납세의무는 판매자(플로리다,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재화의 사용자(텍사스) 혹은 물품(버지니아) 자체에 부과되기도 하지만 결국 사용세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이들 제품의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사용세는 물론 판매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영수증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사업자등록 및 기장의무

역내에서 판매자로서 판매활동을 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려면 주에 따라서 등록을 하거나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등록은 해당 사업자와 사업장에만 유효하며 이전될 수 없다. 일부 주에서는 사업 허가를 위해서 기탁금(bond)을 내거나 은행신용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등록증은 주에 따라 시효가 다른데 일부 주에서는 일정 기간 판매활동을 영위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사업등록을 한 업체는 각 자치단체별 판매내역을 상세히 기록, 일정 기간 보관하여

야 한다. 영업기록과 증빙서류는 과세 여부와 납세 의무액을 적정한 수준에서 판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한다. 이들 기록은 재고, 매입, 영수, 판매 및 면세판매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며 이들 기록이 없을 경우 사업자가 세무당국의 결정을 반증할 만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은 기존의 장부와 기록 그리고 서류 및 입수 가능한 여타 정보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다.

장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대부분의 주에서 세금신고 혹은 납세기한으로부터 3~4년이다. 예외적으로 아칸사스, 메인은 6년, 아이오와, 워싱턴 주는 5년이 장부보존 기간이다. 한편 이러한 보존기간은 사기 행위가 연루되거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주의 세무당국은 판매자의 회계감사 참여를 지원한다(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 멕시코, 텍사스). 동 제도는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도록 하며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업자는 회계감사 결과 고의적인 세금회피나 사위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한 벌금이나 체납액의 이자를 납부할 의무에서 면제 혹은 감면된다.

5) 일반판매세 과표

가) 과표

판매세의 과표는 주에 따라서 총수입(gross receipts), 판매대금(gross proceeds) 혹은 매입가격(purchase price), 판매가격(sales price) 등으로 정의되며 재화나 서비스의 임대도 '판매'로 간주되어 임대료 수입에 과세된다¹³⁸⁾. 판매세 과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 혹은 임대된 총소매가격을 의미하며 현물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시 대가로 지급된 혹은 지급될 현금, 차용, 약속, 대신 제공된 자산 및 서비스 등을 금액으로 환산된 가치를 말한다¹³⁹⁾. 여기서 가치란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138) 아리조나에서는 총판매수입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매업자, 식당, 유흥업소, 교통, 통신서비스, 출판업, 임대, 전기 등 공공사업 등의 경우 총수입이 아닌 총소득(gross income)에 대하여 과세한다(Sec. 42-5001(4)).

139) 매릴랜드 주의 경우 자동판매기 판매의 과표는 총수입의 95.25%이다.

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금가치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판매세에서는 총수입에서 거래된 재화의 비용, 재료, 노동비용, 운반, 이자비용 등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주에 따라서는 유사한 종류와 성격의 제품과 교환된 재화(trade-in good)의 가치는 판매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일리노이). 한편 대개의 경우 송장(invoice)에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항목 가운데 전부 혹은 일부를 총수입의 일부로 간주하기도 한다. 금액이나 구매빈도에 따른 수수료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커미션, 팁 혹은 감사료, 의무적인 유지 보수 등에 대한 과징금, 판매자 채무를 대신 갚는 의무, 판매자를 위한 혹은 대신한 서비스 제공, 조립, 수선, 세탁 등 판매행위에 수반된 서비스, 제조업자나 조기 대금 지불에 따른 할인

한편 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사용, 소비, 유통 혹은 소비나 사용을 목적으로 저장되는 재화에 대한 사용세는 대개 판매가격, 구입비용 혹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과표로 한다(플로리다주 Sec. 212.06(1)(b)).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생산 및 가공 혹은 조립된 재화도 생산비용이 과표가 된다.

<표 IV-6> 주별 판매세 세율·과표기준과 감면율(액)

(단위:달러, %)

	주	주+기초 자치단체	과표기준	자동판매기 감면 ³⁾	
				감면세율	최고/최저
평균	5.159	7.245			
Alabama	4.000	11.000	총판매수입, 판매가격	2~5	400/월
Alaska	×	7.000			
Arizona	5.000	9.600	총판매수입 혹은 총소득 ⁹⁾	1	10,000/연
Arkansas	5.125	9.875	총수입, 판매가격(사용세)	2	1,000/월
California	5.750	8.500	총수입, 소매가격		
Colorado	2.900	8.900	매입가격, 구입비용 ²⁾	3.33	
Connecticut	6.000	6.000	총수입, 판매가격		
Florida	6.000	7.500	판매가격 혹은 임대료	2.5	30/신고
Georgia	4.000	7.000	판매가격 혹은 구입비용 ²⁾	0.5~3	
Hawaii	4.000	4.000	총판매수입		
Idaho	5.000	8.000	판매가격, 자산가치 ²⁾	5)	
Illinois	6.250	9.000	총수입, 공정한 시장가치 ²⁾	1.75	5/연 ⁴⁾
Indiana	5.000	5.000	총소매가격	0.83	
Iowa	5.000	7.000	총수입, 매입가격 ²⁾		
Kansas	4.900	7.900	총수입, 매입가격 ²⁾		
Kentucky	6.000	6.000	총수입, 매입가격 ²⁾	1~1.75	
Louisiana	4.000	10.750	소매판매가격, 수수료, 비용 ²⁾	1.1	
Maine	5.500	5.500	자산 혹은 서비스의 가치	5)	
Maryland	5.000	5.000	과세판매가격 ¹⁰⁾	0.6~0.45	
Massachusetts	5.000	5.000	총수입, 판매가격 ²⁾		
Michigan	6.000	6.000	총판매수입, 매입가격 ²⁾	0.33~0.5	20,000/월 ⁶⁾
Minnesota	6.500	7.500	총수입, 판매가격 ²⁾		
Mississippi	7.000	7.250	소매 총 판매수입	2	50/월
Missouri	4.225	8.225	지불 혹은 부과가격	2	
Nebraska	5.000	6.500	총수입, 판매가격 ²⁾	0.5~2.5	
Nevada	6.500	7.250	총수입, 판매가격 ²⁾	1.25	
New Jersey	6.000	6.000	소매 총수입, 가격 ²⁾		
New Mexico	5.000	7.438	총수입, 자산의 가치 ²⁾		
New York	4.000	8.500	소매 총수입, 사용가치 ²⁾	3.5	150/분기
North Carolina	4.000	6.500	총수입		
North Dakota	5.000	7.000	총수입	1.5	85/월
Ohio	5.000	7.000	총수입, 매입가격 ²⁾	0.75	

<표 IV-6>의 계속

(단위:달러, %)

	주	주+기초 자치단체	과표기준	자동판매기 감면 ³⁾	
				감면세율	최고/최저
Oklahoma	4.500	10.500	총수입, 매입가격 ²⁾	2.25	3,300/기간
Pennsylvania	6.000	7.000	소매 구입가격	1	
Rhode Island	7.000	7.000	총수입, 판매가격 ²⁾		
South Carolina	5.000	7.000	과표	2~3	3,000/연
South Dakota	4.000	6.000	총판매수입, 매입가격, 가치 ²⁾		
Tennessee	6.000	8.750	소매판매가격, 비용 ²⁾	1.15~2	
Texas	6.250	8.250	판매가격, 임대가격 ²⁾	0.5 ⁷⁾	
Utah	4.750	8.000	총 과세판매액, 총판매, 매입액 ²⁾	1.5	
Vermont	5.000	6.000	판매가격	5)	
Virginia	3.500	4.500	총 소매판매, 총수입, 매입비용 ²⁾	2~4 ⁸⁾	
Washington	6.500	8.800	판매가격, 사용가치 ²⁾		
West Virginia	6.000	6.000	총 판매수입, 총가치, 매입가격 ²⁾		
Wisconsin	5.000	6.000	총수입, 판매가격 ²⁾	0.5	
Wyoming	4.000	6.000	판매가격 ²⁾		

주: 1) 주 및 기초자치단체 세율은 최고세율을 의미함. 2) 사용세의 경우. 3) 28개 주가 세금 감면을 하는데 일부 주에서는 감면비율이 납부세액에 따라 변함. 4) 최저 감면액을 의미하며 이외 금액은 최대 감면액임. 5) 이들 주에서는 사전에 제시된 브라킷에서 초과하는 징수액을 판매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됨. 6) 감면세율은 세금의 4%에 적용됨. 7) 일찍 신고하는 자에게는 추가로 1.25% 감세를 허용함. 8) 처음 62,500달러에 대하여 4%. 그 다음 208,000달러에는 3%, 나머지 금액에는 2%가 감면됨. 9) 소매업자, 식당, 유흥업소, 교통, 통신서비스, 출판업, 임대, 전기 등 공공사업 등에 해당. 10) 자동판매기는 총수입의 95.25%에 적용.

자료: 「New York State Tax Source Book」,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Office of Tax Policy Analysis, 2002., www.taxadmin.org/fta/rate/sales, and 「2002 U.S. Master Sales and Use tax Guide」, Fred Conklin eds, CCH.

여기서 비용이란 판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비에 대한 공제가 없는 실제 비용을 의미한다¹⁴⁰⁾. 버지니아 주의 경우 역외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6개월 이내에 버지니아

140) 다만 재화의 생산, 조립 혹은 제작을 위하여 직접 투입되는 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판매세는 비용에서 제외된다.

아로 반입, 사용세 과세대상이 되면 판매가격(sales price)이 과표이며 6개월 후 반입한 제품은 현재 시장가격이나 판매가격 중 낮은 가격이 과표가 된다(Sec. 58.1-604).

나) 주간 거래·할인·수수료의 공제

재판매를 위한 판매 즉 도매판매의 경우 판매세를 면제받는데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가 매입자로부터 면세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표 IV-7>의 첫 번째 열은 주정부 협약에 따라 다수의 주에서 공통된 면세증명서(MTC)를 인정하는 주와 주 사이의 면세증명서(BSC)를 인정하는 주를 나타낸다¹⁴¹⁾. 이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주들은 주 사이의 도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공통으로 면제하는 증명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디애나, 뉴욕 등 6개 주는 이러한 증명서를 받지 않는다(×).

운송료의 경우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제품을 운송하기 전에 구입자에게 이전되어 운송과정에서의 사고책임이 구입자에게 있으면 판매세가 운송료에 부과되지 않는다(FOB origin). 반면 배달 시점에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이전되면 판매세가 붙는다(FOB destination). 운송료를 과표에서 제외하는 주에서는 운송료를 매입가격에서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FOB origin의 경우에만 운송료를 과세하지 않는 주도 있다. 이 밖에도 커넥티컷, 델라웨어, 뉴욕 그리고 텍사스 등은 무조건 운송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한편 제품 배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거의 대부분 판매세가 부과된다.

두 번째로 제품 판매 후 구입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못 받게 되면 이러한 손금(bad debt)은 대부분의 주에서 면제가 허용된다. 면제방식은 전체 수입에서 해당 채무를 공제하든지 아니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혹은 환급을 받는다. 단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와이오밍은 이러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다.

141) MTC는 Multistate Tax Compact Uniform Multijurisdiction Exemption Certificate를 의미하고 BSC는 Border State Uniform Sales for Resale Certificate를 의미한다.

<표 IV-7> 각종 사례의 판매세 과표의 포함 여부

	도매	운배송료	악성부채의 공제	쿠폰·현금할 인	장치료	이자수수료	반품 제품
Alabama	MTC	○ ²⁾	○ ⁸⁾	쿠폰	△ ¹⁸⁾	△ ¹⁸⁾	△ ²⁴⁾
Arizona	MTC, BSC	○ ²⁾	○	○	△ ¹⁸⁾	△ ¹⁸⁾	×
Arkansas	MTC	○ ⁷⁾	○	△ ⁹⁾	△ ¹⁸⁾	△ ²⁰⁾	△ ²⁴⁾
California	MTC, BSC	○ ²⁾	○	쿠폰	×	△ ¹⁸⁾	△ ²⁴⁾
Colorado	MTC	○ ³⁾	○ ⁸⁾	△ ⁹⁾	△ ¹⁸⁾	△ ¹⁸⁾	△ ²⁴⁾
Connecticut	MTC, BSC	○	○ ⁸⁾	△	△ ¹⁸⁾	○	△ ²⁵⁾
Florida	MTC	○ ²⁾³⁾	○ ⁸⁾	△ ¹²⁾	○	△ ¹⁸⁾	△ ²⁴⁾
Georgia	MTC	○ ³⁾	○	쿠폰	△ ¹⁸⁾	△ ²⁰⁾	
Hawaii	MTC	○ ⁴⁾	○	쿠폰	○	×	△ ²⁴⁾
Idaho	MTC	○ ²⁾	○ ⁸⁾	△ ¹⁰⁾	△ ¹⁸⁾	×	△ ²⁴⁾
Illinois	MTC	○ ²⁾	○	△ ⁹⁾	△ ¹⁸⁾	△ ²²⁾	△ ²⁴⁾
Indiana	×	○ ²⁾³⁾	○	△ ⁹⁾	×	×	△ ²⁰⁾
Iowa	MTC	○ ²⁾	○ ⁸⁾	△ ⁹⁾	△ ¹⁸⁾	△ ¹⁸⁾	△ ²⁴⁾
Kansas	MTC	○	○	△ ¹¹⁾	○	△ ¹⁸⁾	△ ²⁴⁾
Kentucky	MTC	○ ²⁾	○	△ ¹¹⁾	△ ¹⁸⁾	△ ¹⁸⁾	△ ²⁴⁾
Louisiana	×	○ ²⁾	○ ⁸⁾	△ ⁹⁾	×	×	△ ²⁴⁾
Maine	MTC	○ ²⁾	○	△ ⁹⁾	△ ¹⁸⁾	△ ²⁰⁾	△ ²⁴⁾
Maryland	MTC	○ ²⁾	○ ⁸⁾	△ ¹¹⁾	△ ¹⁸⁾	△ ¹⁸⁾	△ ²⁴⁾
Massachusetts	×	○ ²⁾	○ ⁸⁾	△ ¹²⁾	×	△ ¹⁸⁾	△ ²⁵⁾
Michigan	MTC	○ ²⁾	○	△ ⁹⁾	△ ¹⁸⁾	△ ²⁰⁾	△ ²⁴⁾
Minnesota	MTC	○ ²⁾	○	△ ¹³⁾	△ ¹⁸⁾	×	△ ²⁴⁾
Mississippi	×	○ ⁵⁾	○ ⁸⁾	△ ⁹⁾	○	○ ²³⁾	△ ²⁷⁾
Missouri	MTC	○ ²⁾	○ ⁸⁾	△ ⁹⁾	○	△ ¹⁸⁾	△ ²⁴⁾
Nebraska	MTC	○	○	△ ⁹⁾	△ ¹⁸⁾	×	△ ²⁴⁾
Nevada	MTC	○ ³⁾	○ ⁸⁾	△ ¹¹⁾	△ ¹⁸⁾	△ ¹⁸⁾	△ ²⁴⁾
New Jersey	MTC	○ ²⁾	○ ⁸⁾	△ ¹¹⁾	△ ¹⁹⁾	×	○ ²⁶⁾
New Mexico	MTC, BSC	○	○	△ ¹¹⁾	×	×	△ ²⁴⁾
New York	×	○	○ ⁸⁾	△ ⁹⁾	△ ¹⁹⁾	×	△ ²⁷⁾
North Carolina	MTC	○ ³⁾	○	△ ¹⁴⁾	△ ¹⁸⁾	△ ¹⁸⁾	△ ²⁷⁾
North Dakota	MTC	○ ³⁾	○	△ ⁹⁾	△ ¹⁸⁾	△ ²⁰⁾	△ ²⁷⁾
Ohio	MTC	○ ²⁾	○	△ ¹¹⁾	△ ¹⁸⁾	△ ¹⁸⁾	△ ²⁴⁾
Oklahoma	MTC	○ ²⁾	○ ⁸⁾	△ ¹³⁾	△ ¹⁸⁾	△ ¹⁸⁾	△ ²⁴⁾
Pennsylvania	○	○	○	△ ¹⁵⁾	○	△ ¹⁸⁾	△ ²⁴⁾

<표 IV-7>의 계속

	도매	운배송료	악성부채의 공제	쿠폰·현금 할인	장치료	이자수수료	반품 제품
Rhode Island	MTC	○ ²⁾	○	△ ⁹⁾	△ ¹⁸⁾	△ ¹⁸⁾	△ ²⁵⁾
South Carolina	MTC	○ ³⁾	○ ⁸⁾	△ ⁹⁾	△ ¹⁸⁾	△ ¹⁸⁾	△ ²⁴⁾
South Dakota	MTC	○ ³⁾	○ ⁸⁾	△ ⁹⁾	△ ²⁰⁾	○	△ ²⁴⁾
Tennessee	MTC	○ ³⁾	○ ⁸⁾	쿠폰	△ ²¹⁾	△ ¹⁸⁾	△ ²⁴⁾
Texas	MTC, BSC	○	○ ⁸⁾	△ ¹⁶⁾	○	△ ¹⁸⁾	△ ²⁷⁾
Utah	MTC	○	○ ⁸⁾	△ ⁹⁾	△ ²¹⁾	△ ¹⁸⁾	△ ²⁷⁾
Vermont	MTC	○ ²⁶⁾	○ ⁸⁾	△ ⁹⁾	△ ¹⁸⁾	△ ²⁰⁾	△ ²⁷⁾
Virginia	×	○ ²⁾	○ ⁸⁾	△ ⁹⁾	△ ¹⁸⁾	○	△ ²⁴⁾
Washington	MTC	○ ³⁾	○ ⁸⁾	△ ¹⁷⁾	○	△ ¹⁸⁾	△ ²⁴⁾
West Virginia	×	○ ²⁶⁾	×	△ ¹³⁾	○	×	△ ²⁴⁾
Wisconsin	MTC	○ ²³⁾	○	△ ⁹⁾	△ ¹⁹⁾	△ ¹⁸⁾	△ ²⁴⁾
Wyoming	×	○		△ ¹³⁾	○	○	△ ²⁷⁾

주: 1) ○으로 표시되면 과표에 포함됨. 2) 따로 운송료가 표시되지 않으면 과표에 포함. 3) FOB origin 만 과표에서 제외. 4) 사용세에만 포함. 5) US 우편물은 제외. 6) 2)와 함께 US우편이나 일반우송 수단을 이용한 경우만 제외. 7) 운송자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 8) 세액공제나 환급방식이 적용. 9) 현금 및 소매업체 할인이 아닌 제조업체 할인 혹은/그리고 자동차 할인 면세. 10) 소매업체 할인이 아닌 제조업체, 현금 할인만 면세. 11) 환급 대상(reimbursed) 쿠폰 면세. 12) 제품 판매시 할인은 불인정. 13) 판매후 할인 및 제조업 쿠폰 면세. 14) 제조업 쿠폰 과 현금 할인 면세. 15) 판매후 할인 면세, 판매시 쿠폰은 따로 표시된 경우만 면세. 16) 소매, 제조업 쿠폰과 현금할인 불인정. 17) 현금할인 및 소매쿠폰 불인정. 18) 따로 명세 되지 않으면 포함. 19) 자산의 일부가 아니면 포함. 20) 구체적 조항이 없음. 21) 부동산에 대한 장치가 아니면 포함. 22) ROT나 UT basis는 불포함. 23) 제3자가 대출 연장을 하지 않으면 포함. 24) 환급해준 금액을 총수입에서 제외. 25) 90일 이내 환급된 금액만 공제 가능(로드 아일랜드는 120일). 26) 법적으로 는 공제 가능하지만 이행하지는 않음. 27) 해당 세액을 공제.

자료: 「2002 Master Sales and Use tax Guide」, CCH, 2002.

제품 판매시 가격할인을 해준 경우 할인방식에 따라 이를 세금에서 면제해 준다. 특히 현금할인을 면세하는 주는 아이다호와 노스 캐롤라이나를 제외하면 많지 않다. 판매 당시 할인도 면세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쿠폰할인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무조건 면세가 가능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제조업체가 발행한 쿠폰만 면세하든지 혹은 할인액이

따로 표기되어야 한다. 구입대금이 조기에 지불될 때 시행되는 가격할인도 면세가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등 5개 주는 장치료(installment fee)를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장치료를 따로 명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치료를 판매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외 플로리다와 하와이 등 10개 주는 장치료를 과표에 무조건 포함한다. 이자 수수료의 경우 커넥티컷, 미시시피, 버지니아 5개 주는 이자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이자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 주는 상당수가 이자 수수료를 가격에서 따로 명세할 것을 요구하며 하와이 등 11개 주가 무조건 이자 수수료를 제외한다. 제품이 반품될 경우 뉴저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반품에 따라 환급해준 금액에 대한 세금을 총수입에서 공제해주거나 해당 세액을 공제해준다. 마지막으로 연방정부 세금은 과표에서 제외되는 수가 많다.

6) 일반판매세 세율

가) 세율

판매세 세액은 세율에 과표를 곱하여 산정되는데 <표 IV-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 정부의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세율은 전체 평균이 약 5.2%에 이른다. 그러나 주별로 편차가 심하여 최저 2.9%(콜로라도)에서 최고 7%(미시시피)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30개에 이르는 대부분의 주에서 5~6% 내외의 세율을 부과한다.

일반판매세를 이용하고 있는 주에서 약 2/3의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주세의 부가세(surcharge)로서 일반판매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주정부 세율을 합치면 평균세율은 약 2.1%p 증가, 7.2%가 된다¹⁴²⁾. 알라바마(11%), 루지아나(10.75%), 오클라호마(10.5%) 등의 판매세 세율은 10%를 초과하며 이외 아리조나, 알칸사스, 일리노리 등 12개 주의 총세율이 8%를 넘는다. 반면 커넥티컷, 하와이, 인디애나 등 11개 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일반판매세를 이용하지 않아 총세율이 5~6%로 낮은

142) 같은 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판매세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수치는 평균 수치이다.

편이다.

나) 징수비용 공제

판매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판매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일반적으로 앞서 제시된 약성부채와 같은 손금, 장치료나 현금할인 등 이외에 중간단계에 대한 비용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주 사이의 협약에 따라 다른 주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가 가능하다.

판매세는 그러나 정부 대신 판매자가 세금을 수납하기 때문에 징수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조해 주기 위하여 대부분 주에서 적기에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에게는 판매세 일부를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세금징수액에 따라 0.5~3% 내외로 비율적인데 대개의 경우 최대 환급액을 정하고 있다.

한 예로 알라바마의 경우 100달러에 상당한 납부세액의 5% 즉 5달러를 우선 감면하고 그 이상의 세액에 대해서는 초과 세액의 2%를 감면해 주되, 매월 최대 400달러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버지니아의 경우 환급액이 판매액에 따라 변하는데 월별 판매액이 62,500달러 이하면 환급률이 4%이고 월별 판매액이 62,501~208,000달러면 3%, 그 이상의 판매액에는 2%의 환급률을 적용한다. 이 밖에 아칸사스의 경우 매월 납부세액의 2%와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해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버먼트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한도(prescribed bracket)를 초과하는 세금은 판매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7) 신고 및 납부

가) 신고기일 및 방식

일반판매세 세금신고기일은 주마다 다르다. 많은 경우 월별 혹은 분기별 세금신고가 원칙이며 다만 납부세액이 적을 때 분기별 혹은 반년/1년마다 세금신고를 하기도 한

다. 반대로 뉴욕 주처럼 분기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세액이 많은 판매업자에게는 월별로 신고를 요구하기도 한다. 분기별 신고는 4월, 7월, 10월 그리고 1월이며 신고 날짜는 15일, 20일, 25일 혹은 말일이 대부분이다.

한 예로 알라바마 주에서는 월별 신고세액이 200달러 이상이면 월별로 신고하고 200달러 이하이면 분기별로 하며 10달러 이하의 소액 신고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세금을 신고한다. 뉴욕 주에서는 분기별 신고가 원칙이지만 고액 납세자는 월별로 신고하고 연간 납부세액이 3,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나 세금을 징수 혹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판매자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나 매릴랜드의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 없이 분기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주도 있다.

나) 환급

과다 혹은 오류로 납부한 세금, 벌금 혹은 이자를 환급받으려면 세금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주로 3, 4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급 신청은 일부 주에서 세금신고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이용은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되기도 한다(매릴랜드 250달러).

이 때 환급신청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인 판매자만이 할 수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구매자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버몬트). 즉,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세무당국에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아이다호). 그러나 테네시나 캔자스와 같은 주는 구매자의 환급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판매자가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세금을 구매자에게 환급하였거나 환급할 예정이거나 세금을 애초에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서약되어야 한다. 이외 알라바마 같은 주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같이 환급신청을 해야 하기도 한다.

다) 세무조사 및 범칙금

주정부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조사하여 오류를 발견한 경우, 세금신고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장부나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와 여타 정보¹⁴³⁾에 기초하여 납세액을 고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혹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이 확정된다(deficient assessment). 이와 함께 세무당국은 증인 혹은 납세자 소환이나 세무조사, 청문회 등을 거쳐 세금을 확정할 수 있다. 알라바마와 같은 주에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예로 매 3년마다 1번 이상 할 수 없게 규정하기도 한다.

세금신고가 아예 없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기소시효가 없으며 다만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10개 주에서는 3~8년이 적용되기도 한다. 사기의 신고나 잘못된 세금신고는 거의 다 기소시효가 없으며 뉴멕시코(10년)와 버지니아(6년)가 예외적이다. 한편 세금신고를 하였을 때 기소시효는 대부분의 주에서 3년이며 일부 주에서 4년 혹은 5년이 적용되기도 한다.

정시에 판매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대개의 경우 동일하다. 또한 사기의 혹은 악의적인 신고 및 세금납부나 세금회피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잘못된 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특히 세금 회피를 위하여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책임이 과중된다.

범칙금은 주에 따라 다르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에서는 판매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10%가 가산되며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납부세액의 25%가 더 부과된다. 경범죄의 경우 최소 1,000달러, 최대 5,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혹은 1년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 세금회피를 위하여 고의로 잘못된 세금신고를 하였을 때 13개월간 총납세 의무액이 25,000달러 이상이면 중죄(felony)로 간주되며 그 이하는 경범죄로 취급된다.

뉴욕 주에서는 신고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30%를 한도로 신고가 늦는 매1개월마다 1%가 추가된다. 이외 세금회피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신고를 잘못할 경우 해당 세액의 50%가 부과될 수 있다(misdemeanor

143) 세무당국이 독립적으로 확보한 정보이며 뉴 멕시코와 같은 주에서는 과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자나 사업 혹은 산업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추정할 수 있다.

liability). 매릴랜드 주에서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적으로 혹은 세금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세금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누락할 경우 누락금액의 100%, 최고 5,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외 세금징수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네소타의 경우 정시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그후 최고 23%를 한도로 매30일마다 다시 5%가 추가된다(세금납부는 최고 15%). 알면서도 세금신고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경범(misdemeanor)으로 간주되며 세금회피를 위한 미신고 등은 중형으로 취급된다. 세금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오류 신고는 중형으로 50%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나. 뉴욕주의 일반판매세

1) 개요¹⁴⁴⁾

1933~4년을 제외하고 뉴욕 주에서 정식으로 일반판매세를 주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1965년이다. 1965년 당시 뉴욕주는 2%의 주정부 판매세를 도입하였고 1975년 판매세 세율은 4%로 인상되었다. 한편 주정부 차원의 일반판매세 이외 기초자치단체도 일반판매세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다만 뉴욕주정부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모든 일반판매세 세금을 걷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에게 배분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판매세 세율은 최대 3%까지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이상은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¹⁴⁵⁾. 그 결과 뉴욕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3% 이외에 ¼~1¼%를 추가로 징수하기도 한다. 한편 뉴욕시 인근 12개 카운티의 경우 ¼%의 판매세(MCTD)를 추가로 부과하며 자동차 임대서비스와 전화를 이용한 정보 및 유흥 서비스('900' 서비스)에도 5%의 판매세가 일반판매세에 더하여 부과된다.

144)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A Guide to Sales Tax in New York State」, Publication 750, 2003. 2.

145) 2003년 당시 모든 카운티 정부와 24개 시정부가 일반판매세를 징수한다.

판매세는 유형 개인자산과 일부 서비스의 소매 판매수입(retail sales receipts)에 대하여 부과된다. 또한 판매세를 보완하는 조치로서 뉴욕 주 이외 지역에서 구입한 개인 자산과 서비스에 관하여 사용세(use tax)가 부과된다. 사용세는 뉴욕 바깥 지역의 판매자를 우대하는 역차별 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부동산의 임대에는 사용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매 제품, 연방 및 뉴욕 주정부, 자선 및 종교단체, 가정용 식품 및 의약품도 면제되며 110달러 이하의 의류와 신발도 면제대상이다.

이 밖에 제조업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용구, 부분품 그리고 전기, 연료 등도 면세된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의 경우 재산 및 소득세 감면 이외에도 해당 업체가 소비 혹은 이용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하기도 하며 일부 산업 및 상업용 프로젝트의 건설, 재개발, 확대에 이용된 자재의 판매세는 공제된다(Qualified Empire Zone Enterprise).

2) 과세대상

뉴욕 주에서는 명시적으로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 한 <표 IV-8> 첫 번째 열에 제시된 재화와 용역의 판매에 대하여 세금이 과세된다. ‘판매’는 임대차, 교환, 사용 혹은 소비를 허가하는 계약을 포함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판매는 소프트웨어를 재생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소프트웨어 판매를 포함한다(Article 28).

유형 개인자산은 내용과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자산으로 그 예는 <표 I-8>의 두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는데 과세대상 자산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판매세가 부과되는 서비스는 마지막 열에 나타나 있으며 과세대상 서비스가 물론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뉴욕주 내의 승용차 임대서비스와 그 밖의 지역에서 임대되었어도 뉴욕에서 이용되는 승용차 임대서비스의 경우 임대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5%의 판매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전화나 무선전신(telegraphy)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여흥 혹은 정보서비스도 5%의 판매세가 추가된다. 이 밖에 뉴욕시 맨하탄의 주차서비스는 8%의 판매세가 더 적용되는데 일부의 경우 맨하탄 거주지는 8% 세금을 면세받을 수 있다.

<표 IV-8> 뉴욕주 과세대상 재화와 서비스의 예

과세대상 판매	유형 개인자산의 예	명시된 서비스의 예
유형 개인자산	가구, 전자용품, 소모품	특정 정보제공 서비스
명시된 서비스	기계기구, 부분품, 공구	재판매 제품이 아닌 제품의
가스/전기/냉동 및 그 서비스	컴퓨터	가공, 제작, 조립 서비스
전화기/전송기 및 그 서비스	제작된 소프트웨어	판매용이 아닌 유형 개인자산
업소용 음식료품(catering)	자동차, 보트, 요트	의 설치, 유지, 보수
가열된 식품 및 샌드위치	연료	판매용이 아닌 유형개인자산
호텔 등 숙박 임대	캔디, 생수, 소다, 맥주	의 보관 서비스
유흥 입장료 (예외 극장, 음악/연극/서커스 ¹⁾)	담배 및 관련 제품	안전보관장치 서비스
사회, 체육클럽비	화장품, 화장실 용품	부동산의 유지, 보수
(연 10달러 이상)	보석, 예술품	자동차 주차, 보관
	소장용 동전, 화폐	내부디자인, 장식서비스
	동물, 나무, 화초, 씨앗	보호, 감시서비스
	건축자재	전화 등을 이용한 여흥, 정보
	전화카드	제공 서비스

주: 1) 실제 공연인 경우. 2) 인터넷 접근 서비스와 주간, 국제전화 서비스는 제외.

자료: 「A Guide to Sales Tax in New York State」, Publication 750,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2003. 2.

한편 과세대상 기준으로 보면 사업체가 뉴욕 주에 있거나 뉴욕 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다른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 ① 재판매 목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과세대상인 물품(서비스 포함)을 구입한 후 판매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② 뉴욕 이외 지역의 사업자로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과세대상인 물품(가스와 전기 포함)을 구입, 뉴욕 주에서 사용한 경우 ③ 뉴욕 이외 지역으로 물품을 보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과세대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이를 뉴욕주에서 사용한 경우 ④ 뉴욕주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과세대상 물품을 구입한 경우 ⑤ 뉴욕 주 내 어느 한 지역에서 과세대상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세율이 높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혹은 뉴욕 주 내 각기 다른 지역에서 ③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처럼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은 자산이나 서비스를 뉴욕주에서 이용할 때 이에 대하여 사용세(user tax)가 부과된다. 사용세는 사용자가 제조, 조립 혹은 제작한 유형 개인자산으로 같은 종류의 물품을 사용자가 일반 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혹은 이러한 제품이 건물과 구조물에 부착된 경우를 비롯하여 습득한 방식과 관계없이 유형 개인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전화응답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화카드, 전기 및 가스 사용에 부과된다(Sec. 1110).

다른 지역에서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뉴욕시에서 시 관할의 4% 판매세가 부과되는 서비스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신용등급 및 신용통보 서비스, 건강 서비스, 터키탕, 사우나, 미용, 이발, 매니큐어, 마사지 등이다. 또한 일부 학교구역에서는 가스, 전기, 스팀 서비스와 전화 및 전화서비스에 판매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한다.

3) 판매세의 비과세·감면

뉴욕주에서 판매세가 비과세 혹은 감면되는 예는 제품별 그리고 면세자별로 구분되고 면세 증명이 필요한 경우로 구별될 수 있다. 면세 증명이 필요 없는 품목은 재판매 제품,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음식료품과 식이요법 음식 그리고 건강보조 제품이다. 단, 캔디와 소프트 음료, 주류, 자연산 과일주스가 70% 이하 첨가된 과일음료, 샌드위치와 가열 식품은 제외된다.

또한 110달러 이하의 의류와 신발류는 뉴욕주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판매세는 각 자치단체에 따라 면세가 허용된다. 신문, 잡지, 간행물, 안경, 보청기, 세탁, 구두수선 그리고 의약품과 의료기구도 면세된다. 단 병원 등에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구입되는 의약기구에는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표 IV-9> 뉴욕주 면세대상 재화와 서비스

제조업, 광산용 기계, 기구, 기자재	영업용 자산의 보수 서비스
연 10달러 이하 스포츠, 사교 클럽 가입비	의료기구 및 자재
비영업용 소비용 음식, 재판매 제품	뉴욕주 이외 주민에게 판매한 자동차
공연용 자산 및 서비스	가정용 연료서비스(가면)
의약품, 안경, 보청기	1년 이상의 승용차 임대
면세대상 종교, 자선, 과학, 퇴역군인, 예술단체	박물관, 유적 등 입장료
스포츠, 예술, 영화 입장료	광고 및 광고 보조품
영화, 비디오 음반 제작용 카메라, 프로젝터	방송용, 통신용 기계, 기구
주식회사, 파트너십 사이의 이전거래(일부)	거주주택에서의 자산 판매(일부)
110달러 이하의 의류, 신발류	선물, 동전
동전용 자동차 세척 서비스, 카트 판매	소프트웨어 디자인용 컴퓨터
상업용 비행기 및 부품, 연료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동차 오염 검사기구, 오염방지용 기계, 기구	재개발용 건축자재
연 10달러 이하 스포츠, 사교 클럽 가입비	농산물 및 관련 서비스
건축, 엔지니어 서비스	파이프라인, 드릴용 기구
제조업, 연구용 연료 및 전기 등 공공요금	농업용 연료, 전기요금
수산업 및 상업용 선박 및 부품, 연료, 서비스	학생용 음식, 대학교 교재
이동용 주택, 선박, 농업자산의 장치, 수선	방송, 신문, TV, 인터넷 접근 서비스
세탁, 옷수선, 신발수선 서비스	부동산 임대

자료: 「2002 U.S. Master Sales and Use tax Guide」, Fred Conklin eds, CCH.

일부 개인과 단체가 구입하는 제품에는 면세가 허용된다. 이들은 연방정부기관과 뉴욕주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 국제기구, 해외 외교단체, 자선, 종교, 교육, 과학단체, 군인단체 등으로 제품 구입시 면세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품 배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면세허가증을 제시하는 구입자에게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허가증에 면세 사유와 구입자 신원을 기록한다. 판매자는 면세허가증과 송장(invoice)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90일 이후 면세허가증을 받을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면세 사유를 증빙하는 부담을 공유하며 해당 거래가 과세대상일 경우 양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개별 거래에 대하여 면세증을 제

공받는 경우 이를 세금신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밖에 상업지역 개발을 위하여 Empire Zone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사용 혹은 소비되는 개인 유형자산과 서비스에 대하여 주정부가 일반판매세를 면제해주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자치단체의 판매세 면제를 전제로 한다. 또한 이들 상업지역의 산업 혹은 상업용 부동산을 건설 혹은 재개발, 확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된 제품은 해당 제품이 부동산의 일부분이 되는 조건 아래서 판매세가 환급 혹은 공제된다(Sec. 1119(a)).

4) 납세의무자와 기장의무

가)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 등록

뉴욕주에서 과세대상인 개인 자산(재화)과 서비스를 판매하면 사업자는 판매대금 수급시 뉴욕주와 산하의 기초자치단체의 판매 및 사용세를 매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주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된 자로서 판매자, 호텔과 보험업체의 운영자 등을 의미한다(persons required to collect taxes, Sec. 1131(1)).

이들은 부과 혹은 징수된 세금이나 징수해야 할 세금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으며 다만 판매자에게 세금을 매입자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가 판매자로부터 매입자에게 이전된다(Sec. 1131(b)). 판매세 세금은 뉴욕주의 세율과 사업자가 재화를 제공하는 지역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세율을 합하여 산정되며 각 기초자치단체의 몫에 해당하는 판매세는 주정부가 해당 자치단체에 지급한다.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면 판매자는 판매업자(vendor)¹⁴⁶⁾로 등록하고 세금징수를 위한 허가(Certificate of Authority)를 받아야 한다(Sec. 1136(a)). 이는 세금면제서류를 발급하고 제공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 예로 도매업자나 제조업자 등의 사업자가 재판매를 위하여 제품을 구입할 때 면세가 허용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등록을

146) 과세대상인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뉴욕주에 사업장을 설치한 자를 의미한다.

하여야 한다. 등록 허가 없이 영업을 하면 사업 첫날 5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그후 매일 200달러가 가산되어 최고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역외 사업자(out-of-state business)가 뉴욕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경우 뉴욕주와 충분한 연관(sufficient connection)이 있으면 사업등록을 해야 할 수 있다. 한 예로 뉴욕 이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뉴욕 소비자에게 제품을 트럭으로 배달하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며 해당 사업자는 세금을 대신 수납하여야 한다. 역외 사업자가 뉴욕주에 위치한 영업사원이나 대리인 등을 통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편주문과 공공수단을 이용한 배송 판매는 판매세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뉴욕주 소비자는 여전히 구매 제품에 대한 세금 즉, 사용세(use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사용세는 뉴욕 주민이 뉴욕주 이외 지역에서 과세대상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 목적으로 뉴욕주도 반입할 때 부과되어 판매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편 주문에 종사하는 뉴욕주 외 판매자가 사용세를 징수해야 할 책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뉴욕주 소비자에게 카탈로그, 광고전단, 편지 등의 방식으로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사용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기적이고 체계적이란 2월, 5월, 8월, 11월 마지막 날로부터 이전 1년간 뉴욕주에서의 판매액이 30만달러를 초과하고 100번 이상의 우편주문을 받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징수허가권(Certificate of Authority)은 사업자가 판매세를 징수하고 면세허가증을 발급 혹은 수리할 권리를 부여한다. 사업자는 징수허가권을 제3자에게 인도할 수 없고 폐업시 이를 주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징수허가권에는 일반·여흥·임시의 세 종류가 있다. 임시허가권은 12개월 동안 6개월의 과세기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다.

판매자는 자신이 선택한 회계방식과 관계없이 현금회계방식을 이용하여 판매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객이 세금을 지불한 사실과 상관없이 매출이 이루어진 시점에 세금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건설사업의 중간재 판매자는 예외).

뉴욕주는 뉴저지 및 커네티컷과 각각 판매세 신고협정을 맺고 있다. 동 협정에서는 뉴저지 및 커네티컷에 영업장이 없는 뉴욕 사업자가 해당 주 주민에게 제품을 판매하면 이에 대한 판매세를 이들 주정부 대신 징수할 수 있다. 동 협정은 또한 주정부들이

판매세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주정부에 모든 세금을 신고하며 신고받은 주정부가 다른 주에게 납부할 세금을 사업자 대신 보내준다.

한편 농부가 과일, 채소, 구운 음식, 젤리, 잼 등 면세 음식과 식품을 판매하면 영업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화초, 나무, 가정에서 만든 용품, 캔디를 팔거나 판매장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료품을 판매하면 영업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본의 개선을 수행하는 계약업자도 등록이 필요없다. 또한 제조업자, 가공업자, 광산업자 등은 원자재, 기계기구, 공구와 관련 서비스의 매입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서류를 이용하기 위하여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기장의무

사업등록을 한 업체는 각 자치단체별 판매내역을 상세히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면세 거래별 구입자를 면세허가증과 연계하여 기록하고 제품 매입시 발부한 면세서류도 처리결과와 함께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 기록은 세금신고일로부터 3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각 거래에 대한 지불금액과 판매세금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부한 경우 복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현금 및 신용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영업기록과 증빙서류는 각 거래의 과세여부와 세금 및 징수 사실을 판명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여야 한다.

영업장소 이외의 지역으로 제품을 배달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디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사업자는 4% 주정부 판매세와 배송지역을 관장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판매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와 보트의 경우 구매자의 거주지가 과세기준이 된다. 만약 제품을 뉴욕주 이외의 지역으로 배송하면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와 관계없이 세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어쨌든 사업자의 영업기록에는 배달장소가 명시되어야 하며 배달영수증, 선하증권, 배달인 기록 혹은 수출면장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한편 제품 구입 시에는 모든 사업 관련 구입제품의 물량, 금액, 형태 그리고 내용에 관한 기록을 상세히 보관하여야 한다.

4) 일반판매세 과표

뉴욕주에서 판매세 과표는 현물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금액으로 환산된 소매 수입(receipt)이다(Tax law Sec. 1101(b)). 수입은 자산의 판매가격 혹은 서비스 수수료로서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조기 대금 지불에 따른 공제 등 판매자에 의한 가격할인을 포함하고 운송료도 지불방식이나 운송방식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판매영수증을 고객에게 줄 때 판매세를 따로 명시되어야 한다. 서면영수증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을 포함한 개별가격을 제시하고 세금이 포함된 사실을 공지하는 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unit price method). 한편 과세대상인 제품과 아닌 제품은 그 사실이 구분되어 고객에게 전시 혹은 공지되어야 한다.

5) 판매세 세율

뉴욕주 판매세 세율은 4%이며 기초자치단체 판매세 세율은 3% 내외이다. 이 밖에 뉴욕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1/4~1/4%까지 추가의 판매세 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또한 뉴욕시 인근의 교통구역(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에 대해서는 1%의 판매세를 추가로 부과하는데 과세대상 품목은 의류와 신발류를 제외하면 일반판매세와 같다. 따라서 뉴욕주에서 판매세 세율은 최저 4%에서 최고 8.5%에 달한다. 판매세 세액은 이러한 세율을 과표에 적용하여 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적용세율은 재화와 서비스의 배달장소(point of delivery)에 따라 결정된다¹⁴⁷⁾. 따라서 세금을 환산하려면 뉴욕주 정부 차원의 판매세 세율과 배달장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판매세 세율을 합하면 된다(destination tax). 이외 동일한 세율이 부과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따로 세율을 산정할 필요가 없지만 세율이 다르면 판매세는 따로 계산되어야 한다.

자동차와 보트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자동차 구매자가 배달장소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이면 해당 자치단체의 세율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뉴욕주민

147) 자동차와 일부 보트는 배달장소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인 구입자가 배달장소가 있는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면 구입자가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뉴욕주 주민이 아닌 구입자의 경우 자동차와 보트를 뉴욕주에 등록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 신고 및 납부

가) 신고기일 및 납부

판매업자(vendor)로 등록한 사업자는 과세대상 거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Sec 1134)¹⁴⁸⁾. 판매세 신고시 사업자는 신고기간 동안의 거래로 발생한 세금을 수금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는 제품 구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금 보고를 한다(ST-130). 뉴욕 이외 지방이나 뉴욕주의 한 지역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세율이 더 높은 다른 뉴욕 지역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세금신고는 사업자에 따라 월별, 분기별, 연간 신고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는 사업등록시 분기별 신고자로 분류되며 판매세의 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분기가 종료된 달의 익월 20일이 신고일이 된다. 그러나 지난 4분기간 한 분기라도 총 과세대상 거래가 30만달러를 넘으면 매월 20일에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자와 제조업체 그리고 도매업체는 연간 신고자로 자동 분류된다. 또한 최근 4분기 동안 세금이 3,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는 연간 신고자로 재분류된다.

나) 신고방식

세금신고서에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판매내역이 구분되어야 한다. 즉, 80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뉴욕주에서 판매세를 부과하는데 이들 자치단체별로 각 지역에서의

148) 뉴욕주 내로 유입된 자동차 연료의 유통업자와 뉴욕에서 사용 혹은 판매하기 위하여 들어온 담배에 대한 세금은 사전에 납부되어야 한다(Sec 1102(a), 1103).

판매액, 매입액 그리고 판매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 사업자는 전자자금이전 시스템(EFT)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지정될 수도 있다(prompt tax). 이들 업체는 대개 연간 등록세 및 사용세 납부금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업체이거나 자동차 유류세가 연간 5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업체이다.

사업자가 적시에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면 뉴욕주 판매세의 3%, 최대 15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품/서비스 판매대금을 전부 혹은 일부 받지 못할 것이 확실할 경우, 이러한 악성부채에 대하여 기납부한 판매세의 환급이나 공제를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bad debts, Reg. sec. 534.7(b)). 이 밖에도 뉴욕 주 이외의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같은 성격의 감면을 허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g. sec. 534.7(b)). 이 경우 역외 자치단체의 세율이 낮으면 그 차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세금 환급

세금환급이나 세금공제를 돌려받으려면 납세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Sec. 1139(a)). 당국은 환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환급신청을 할 때 신청자는 돌려받을 금액을 세금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다(Sec. 1119(a)).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 세금신고서가 환급 신청의 일부로 간주되며 환급신청서를 세금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류나 위법적으로 납부한 세금이더라도 해당 세금이 구입자에게 재지급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이들 세금의 환급이 가능하다. 즉, 불법 혹은 오류로 구입자로부터 세금을 징수, 납부한 사업자는 이를 구입자에게 환불하여야 당국이 해당 세금을 환급한다. 환불 금액과 사유 및 환불 사실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Reg. Sec. 534.8).

라) 세무조사 및 범칙금

판매세 신고는 자발적 신고이므로 세금신고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면 주정부가

납세자의 장부와 기록을 조사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할 수 있다. 고지서가 발부되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 확정된다. 또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사업장부를 조사하거나 영업장소, 종업원수, 매입액 등 외부자료에 근거하여 세금을 결정할 수 있다.

세금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Sec. 1147(b)). 그러나 납세자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세금신고를 할 경우 공소시한이 없다. 같은 목적으로 면세허가증을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구입자의 경우에도 언제라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없다.

다. 판매세 간소화와 균일화를 위한 주정부 협약(SSTP)¹⁴⁹⁾

1) 개요

가) 진척 상황

SSTP(Streamlined Sales Tax Project)는 2000년 3월 미국 주정부가 판매 및 사용세의 과세행정을 간소화 및 현대화하기 위하여 시작한 프로젝트로서 원거리 판매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¹⁵⁰⁾. 2003년 8월 현재 40개주와 워싱턴 D.C.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38개주와 워싱턴 D.C.는 주의회의 위임을 받아 투표권을 갖는다. SSTP는 주정부가 인증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세금의 산정, 징수, 신고 그리고 납부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균일한 정의와 표준화된 세금조사와 과세행정을 제안하고 있다.

판매세와 관련된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주정부는 우선 균일화된 판매세법을 도입, 여타 주와 세법 간소화를 위한 협정을 맺을 수 있다. 둘째 단계에서는 협정에 참여한 모든 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세행정을 위하여 각 주는 현행 판매세법을 개정하

149) www.stremlinedsalestax.org

150) 그 이전에도 미국 주정부는 다른 주와 협약을 맺어 정보교환,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의 공제, 공동 세금조사 등을 하고 있었다(Multi-State Tax Compact).

여야 한다(Streamlined Sales and Use Tax Agreement, SSUTA)¹⁵¹⁾. 각 주는 동 협정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되게 세법과 정책, 규정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 협정에 가입할 수 없거나 제재조치를 받거나 혹은 협약에 가입한 다른 주에 의하여 협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판매자는 협약에서 제외된 주를 위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SSTP는 각 주가 자신들의 세법을 SSTP가 제안한 방식에 의하여 간소화하고 모든 판매자에게 이를 적용하기를 제안한다. 연방의회가 구체적인 결정을 할 때까지 원거리 판매 즉,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활동 혹은 실질적 연관성이 없는 판매자는 원거리 판매에 대하여 세금을 수급할 의무는 없다. 또한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판매세를 수급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로부터 법인세나 소득세 납부 의무를 유추해서는 안된다.

나) 판매·사용세 협정(SSUTA)의 주요 내용

판매·사용세 협정(Streamlined Sales and Use Tax Agreement, SSUT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세법의 균일한 정의¹⁵²⁾: 각 주정부는 과세 혹은 면세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SSTP에서 결정된 동일한 정의(SSUTA 제 3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 ② 세율 간소화: 주정부 차원에서는 일반세율 이외 음식료품과 약품 등 한정된 경우에만 상이한 세율을 부과하는 이중세율체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하나의 세율만 부과할 수 있다. 한 예로 주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는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하나의 세율로 과세하고 여타 유형자산과 서비스는 다른 세율로 과세할 수 없다.
- ③ 주정부 차원에서의 판매·사용세 과세행정: 기초자치단체별로 과세를 하던 것을 이제는 주정부 단위에서 총괄하여 판매·사용세의 징수와 배분을 담당함으로써 판매자가 각 기초자치단체에 따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다. 주정부와 기초

151) 2002년 11월 34개주와 워싱턴 D.C.는 동 협정을 승인하였다.

152) SSUTA Article I Sec. 103

자치단체의 과표는 동일해야 한다¹⁵³⁾.

- ④ 균일한 원천지 원칙(sourcing rule): 각 주는 거래 발생지의 결정에 관하여 균일하고 간단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행선지와 도착지(destination and delivery)에 기초하며 유형개인자산, 디지털 자산과 서비스에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천지 원칙을 개발한다.
- ⑤ 사용용도 및 매입자에 기준한 면세의 간소화된 행정: 판매자는 현행법의 성실한 의도 원칙(good faith)에서 제외되어 징수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입자가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주정부는 균일한 서식과 전자형식에 있어서 면세증을 제공한다.
- ⑥ 균일한 세무조사: SSTP가 개발한 판매세 징수방식 모형에 참여하는 판매자는 참여한 모형 유형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제한된 조사를 받는다. 다수의 주에 걸친 영업활동에 관해서는 주정부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⑦ 세금징수의 재정부담: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정부가 일부 모형의 비용을 부담한다.
- ⑧ 세금신고서와 면세행정의 간소화, 중앙화된 전자 등록 서비스

2) 판매·사용세 협정(SSUTA)의 세부 내용

가) 판매·사용세의 과표·세율·과세행정

동 협정에 참여하는 회원 주는 판매 및 사용세의 과세를 주정부 차원에서 집행하여야 한다(Sec. 301). 판매자는 주정부에 등록, 세금신고, 납부하며 기초자치단체에는 세금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다. 주정부 과세당국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동 협정에 등록된 판매자에 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2005년 12월 이후 기초자치단체와 주정부의 판매세 과표는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동일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그러나 자동차, 비행기, 수상운송수단, 이동형 주택 등

153) 한편 주의회 협의회(NCSL)는 SSUTA의 내용 중 동일한 과표와 균일한 tax holidays나 악성채무(bad debt) 조항을 삭제한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의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회원 주는 다른 회원 주와 협력하여 전자거래등록 시스템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판매자는 다른 회원 주에도 자동등록이 된다. 세율의 변화 시 그 효과는 통보한 날짜로부터 최소 60일이 경과한 분기부터 적용되며 주정부의 오류에 의한 자료에 근거하여 잘못 수급한 세금에 대해서는 판매자(CSP 포함)의 책임이 면제된다.

2005년 이후에는 각 주정부는 개인자산과 서비스에 대하여 이중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Sec. 308). 다만 예외적으로 음식과 그 원료 그리고 약품에 대해서는 동 협정에 근거한 법에 따라 0%를 포함한 다른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주정부 산하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판매세를 따로 부과하는 경우 세율이 동일하거나 각 자치단체별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용세와 판매세 세율은 같아야 한다. 세율에 관한 조항은 전기, 가스 파이프라인, 난방용 연료, 이동용 주택, 운송수단의 판매와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면세 · tax holidays · 과세한도

회원 주는 동 협약이 규정한 품목이 아닌 경우 품목을 기준으로 제한 없는 세금 면제조항을 도입할 수 있다. 협약에서 정의된 제품(군)의 경우 협약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예외 없이 모든 제품에 대한 면세를 하여야 한다(Sec. 316 A). 회원 주는 또한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나 사용 용도에 따른 면제조항을 제한 없이 도입할 수 있다. 협약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 정의에 근거하여 사용자나 용도에 의한 면제조항을 둘 수 있다.

제품 구매자가 면세를 요청할 경우 회원 주는 다음과 같은 행정수칙을 지켜야 한다. ① 판매자는 구매자의 신원과 면세 사유를 판매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서면 허가서를 이용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면세를 위하여 사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③ 구매자가 면세 제품의 매입시 판매자에게 ID를 제시하는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④ 회원 주는 면세허가증이나 직접 납세제(direct pay permit) 혹은 판매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자나 용도 기준에 의한 거래를 관리하여야 한다(317조 A). 회원 주는 이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는 판매자에 대하여 구매자가 부적절하게 면제조항을 이용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단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탈루할 경우나 위법적인 면세를 하도록 구매자를 유도한 경우는 예외이다.

일시적으로 면세기간을 허용하는 tax holidays를 시행할 경우 2003년 12월 이후에는 대상제품이 협약에 명시되어 있고 면세가 주 및 기초자치단체에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Sec. 322). 가격 한도를 기준으로 한 tax holidays의 경우 323조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그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가격 한도를 이용할 경우 지정된 가격 이하의 제품만이 면세대상이 되어야 하며 개별 제품의 가격 중 일부만을 면세할 수 없다(Sec. 322 B).

2005년 12월 이후에는 주정부 혹은 기초자치단체의 세율 적용이나 거래상품의 가치에 기준한 면세에 있어서 최고 혹은 최저한도를 정할 수 없다(Sec. 323). 이 조항은 자동차, 비행기, 수상용 수단, 이동 홈 혹은 행정적 부담이 판매자에게 없는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원천지 규칙(sourcing rule)

각 회원 주는 판매자에게 제 310조에 의거하여 제품 판매의 발생지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Sec. 309). 310조는 유형 개인자산,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제품 성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그러나 제품 판매에 따른 판매자의 세금 수금과 납부 의무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제품 이용에 따른 과세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다음의 제품들에 관한 판매세나 사용세에는 제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수상운송수단과 이동용 홈의 판매와 이전은 각 주 고유의 규칙에 따라 원천지를 결정 ② 자동차, 트레일러와 제 310조 D항에 정의된 비운송형 비행기의 판매 단, 이들 제품의 임대는 제 310조 C항에 따라 원천지 결정 ③ 제 315조의 통신서비스는 314조에 따라 원천지 결정

임대가 아닌 제품 판매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원천지가 결정된다(Sec. 310 A). ① 판매자의 영업장에서 매입자가 제품을 수령할 경우 판매는 영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② 구입자가 영업장에서 제품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품 수령이 이루어진

장소가 판매 장소가 된다. ③ 상기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반적 거래과정에서 영업장부에 기록된 구입자의 주소가 판매장소가 된다. ④ ③항에 제시된 원칙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지불수단 등 매매과정에서 제시된 구입자의 주소가 판매장소로 간주된다. ⑤ 이러한 제반 원칙을 모두 적용하기 어렵거나 판매자가 판매장소의 결정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제품의 발송지나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판매장소가 된다.

제 310조 C항과 D항에 적시된 제품을 제외한 유형개인자산의 임대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판매장소 즉, 원천지가 결정된다(Sec. 310 B). ① 주기적으로 사용료가 지불되는 임대에 있어서 첫 번째 사용료는 310조 A항에 적시된 판매와 같은 원칙에 따라 판매장소가 결정된다. 첫 번째를 제외한 그 다음 사용료는 각 사용기간별로 임대제품이 주로 장치된 장소(primary property location)가 판매장소가 된다. 이 장소는 정상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한 주소로 판명된다. ② 반복적인 사용료가 지불되지 않는 임대의 경우에는 310조 A항이 적용된다.

자동차, 트레일러, D항에 명기된 운송용 장비가 아닌 비행기의 임대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판매장소가 결정된다(310조 C항). ① 주기적인 임대료가 지불되는 경우는 제품의 주된 장치장 ② 주기적인 사용료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는 310조 A항의 원천지 원칙

임대를 포함한 수송용 기구의 판매는 A항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판매장소가 결정된다(Sec. 310 D). 수송용 기구는 사람과 자산의 이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차, 트럭, 트레일러, 버스 등, 비행사가 사용하는 비행기, D항에 명기된 수송용 기구에서 사용되거나 부착된 부품

제 310조에 제시된 원칙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제품, 전자적으로 배달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구입할 당시 이들 제품과 서비스가 다수의 지역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영업 목적의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매입 당시 이러한 사실을 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Sec. 312)¹⁵⁴. 이 양식은 MPU(Multiple Points of Use Exemption Form)라고 하는데 MPU 양식을 받은 판매자는 해당 세금을 수금 및 납부

154) 단, 주정부에게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direct pay permit).

할 의무에서 면제되며 그 대신 구매자가 주정부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310조에도 불구하고 직접우송을 하는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직접우성양식(Direct Mail Form: DMF)이나 직접우송이 배달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Direct mail sourcing, Sec 313). DMF가 제공되면 판매자 대신 구입자가 직접 납세방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제품 배달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배달정보에 따라 세금을 수금하며 고의가 아니면(bad faith), 판매자는 이러한 정보에 기초한 세금 이외 추가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구매자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제 310조 A⑤항에 따라 세금을 수금한다. 직접 납부허가증을 지닌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DMF나 배송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단위별 통화방식(call by call basis)¹⁵⁵⁾으로 판매되는 통신서비스는 단위별 서비스 수요가 발생 및 완료되는 지역이 원천지가 되거나 단위별 수요가 발생 혹은 종료되고 서비스 주소¹⁵⁶⁾가 있는 지역이 원천지가 된다(Sec. 314 A). 단위별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 서비스는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¹⁵⁷⁾가 원천지로 간주된다(B항).

314조 A와 B항이 적용되지 않는 통신서비스는 다음의 장소가 원천지가 된다. ① 사전에 결제된 서비스를 제외한 이동통신 서비스는 소비자의 주된 이용 장소 ② 사후 결제 서비스는 통신이 발신되는 장소 ③ 사전 결제 서비스는 제 310조에 따른 장소 ④ 개인 통신 서비스는 통화 수신지역에 따른 장소.

라) 세금신고 및 납부

판매자는 주정부에 제출하는 세금신고서로 해당 지역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금신고를 갈음한다(Sec. 318 A). 회원 주는 세금신고는 거래가 발생한 달의 익월 20

155) 이는 통화별로 가격이 부과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156) 서비스 주소란 통화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되고 통화가 발신 혹은 종료되는 통화수단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157) 주된 이용 장소는 소비자의 통신서비스가 주로 제공되는 장소, 소비자의 거주지 주소나 영업주소를 의미한다.

일보다 빨리 하도록 할 수 없다. 납부방식에 있어서 모형 1~3에 참여한 판매자에게 동 협약의 위원회가 허용하는 자료의 수준보다 간소화된 세금신고서를 허용한다. 모형 1~3에 참여하지 않은 판매자의 경우 동 협약에 등록된 판매자는 처음 등록한 달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신고서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세금신고서를 하도록 한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주는 1,000달러 이상 의 세금이 모인 경우 판매자는 익월에 세금 신고서를 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Sec. 318 D3).

회원 주는 세금신고서 이에 따른 세금납부를 여러 번으로 나누어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이전 연도에 해당 주에서 수금한 세금이 30,000달러를 초과하는 판매자에 한하여 1회의 세금신고에 대하여 1회 이상의 세금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회원 주가 판매자에게 악성부채에 대한 공제를 허용할 경우 동일한 규칙을 이용하여야 한다(Sec. 220).

회원 주는 직접 납세제도를 도입하여 허가를 받은 구매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제품과 서비스의 매입하는 대신 과세당국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Sec. 326). 이 제도의 요건과 제한조항은 회원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회원 주들이 균일한 기준으로 동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회원 주는 판매자들이 회원 주에 전자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판매자는 다른 회원 주에도 자동 등록이 된다. 등록을 통하여 판매자는 주정부 대신 판매세와 사용세를 수금 및 납부할 것에 동의한다. 등록 당시 판매자는 다음의 세 가지 모형 혹은 이외 주법에 따라 허용된 방식에 따라 수금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Sec. 403)¹⁵⁸).

첫째로, 인증된 대리인을 이용하는 방식(Certified Service Provider, CSP)은 판매자 자신이 구입한 제품에 대한 세금납부를 제외하고 이외 세금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판매자 대신 대리인(CSP)이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둘째로, 인증된 자동화 시스템(Certified Automated System, CAS)은 판매자 대신 거래별로 세금계산을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셋째로, 대형업체가 전국에 걸친 판매세 수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축한 경우 이를 CAS로 인증을 받고 이용한다(모형 3). 모형 3은 최소한 5개 주에서

¹⁵⁸) CSP나 CAS의 인증과 관련해서는 Sec. 501 이하를 참조

5억달러 이상의 매상을 갖는 판매자에게만 해당된다. 판매자는 자기 자신을 대리인으로 서면 등록할 수 있다.

3. 기타 지방정부 소비세

가. 개요: 개별 판매세

일반판매세 이외 지방정부가 특정 소비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를 미국에서는 개별 판매세(selective sales taxes)라고 부른다. 개별 판매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주세, (자동차) 유류세, 담배세, 보험료세(insurance premium), 유흥세(amusement), 전기 등 공공서비스(public utilities)에 대한 세금, 경마세(pari-mutuels), 도로 사용세(highway use taxes) 등이 있다. 이들 지방소비세 가운데 특히 주세, 담배세 그리고 유류세 등은 주정부 이외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추가로 과세하기도 한다.

개별판매세가 미국 주정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로 일반판매세(33.5%)의 절반에 이른다. 또한 평균적으로 볼 때 1인당 개별판매세 세수는 약 285달러로 소득의 약 0.94%에 달한다. 이에 비하면 상속세, 천연자원세(severance tax) 등 기타 세목의 세수비중은 9.8%이다. 이 밖에 소비세는 아니지만 주류, 유흥, 주식회사, 사냥이나 낚시, 자동차, 사업 등의 활동에 대한 등록세가 따로 부과되기도 한다.

주별로 보면 개별판매세에 대한 의존도가 큰 주는 네바다와 뉴 햄프셔(32.1%), 웨스트 버지니아(27%), 사우스 다코다(26%) 등이며 의존도가 낮은 주는 캘리포니아(8.9%), 조지아(8.6%) 그리고 와이오밍(9%) 등이다. 개별판매세에 대한 의존도는 대개의 경우 소득세 의존도와 반대로 움직이며 이외 일반판매세의 의존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밖에 등록세 등 기타 세목에 의존도가 높은 주는 알래스카(57.7%), 와이오밍(37.2%), 델라웨어(40.6%)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 주는 천연자원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다른 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예외적으로 델라웨어는 등록세 비중이 높다.

<표 IV-10> 주정부 개별판매세와 기타 세 비중과 1인당 세수(2002)

(단위: 억달러, 달러, %)

	총세입	개별판매세			기타 세		
		세입비중	1인당세입	소득비중	세입비중	1인당세입	소득비중
미국 평균	5,334.3 ¹⁾	15.4	285.3	0.94	9.8	181.6	0.60
Alabama	68.8	23.6	364.9	1.50	8.4	128.8	0.53
Alaska	10.9	13.0	220.0	0.72	57.7	976.3	3.17
Arizona	84.8	12.6	195.8	0.78	4.2	65.2	0.26
Arkansas	50.3	13.3	247.1	1.09	6.1	113.3	0.50
California	777.6	8.9	197.0	0.61	8.6	190.4	0.59
Colorado	69.2	13.5	207.4	0.63	5.9	90.6	0.28
Connecticut	90.3	16.4	429.7	1.01	7.5	196.5	0.47
Delaware	21.7	14.9	401.3	1.25	40.6	1,093.5	3.41
Florida	248.2	18.2	270.3	0.95	17.1	253.9	0.89
Georgia	137.7	8.6	138.3	0.49	4.7	75.6	0.27
Hawaii	34.2	14.8	406.7	1.42	4.0	109.9	0.38
Idaho	22.7	14.1	238.9	0.99	10.4	176.2	0.73
Illinois	224.6	20.8	370.7	1.12	10.3	183.5	0.56
Indiana	100.0	15.4	249.9	0.91	4.4	71.4	0.26
Iowa	50.1	15.8	269.4	1.00	12.2	208.0	0.77
Kansas	48.1	13.2	233.6	0.82	7.2	127.4	0.45
Kentucky	79.8	17.9	348.7	1.41	10.2	198.7	0.81
Louisiana	73.5	25.4	416.3	1.70	14.7	240.9	0.98
Maine	26.3	15.3	310.6	1.16	7.3	148.2	0.55
Maryland	108.2	18.6	368.8	1.06	7.3	144.8	0.42
Massachusetts	148.2	10.2	235.2	0.61	6.0	138.4	0.36
Michigan	218.6	10.5	228.5	0.77	7.8	169.7	0.57
Minnesota	218.6	15.7	404.6	1.24	9.1	234.5	0.72
Mississippi	47.3	17.8	293.2	1.35	7.7	126.8	0.59
Missouri	86.8	14.8	226.4	0.81	6.9	105.7	0.38
Montana	14.4	25.7	407.9	1.72	21.1	334.9	1.41
Nebraska	29.9	14.6	252.7	0.88	7.3	126.4	0.44
Nevada	39.5	32.1	582.9	2.02	12.5	227.0	0.79
New Hampshire	18.8	32.1	474.4	1.41	17.4	257.2	0.77
New Jersey	183.3	15.2	324.4	0.85	8.8	187.7	0.49

<표 IV-10>의 계속

(단위: 억달러, 달러, %)

	총세입	개별판매세			기타 세		
		세입비중	1인당세입	소득비중	세입비중	1인당세입	소득비중
New Mexico	36.3	13.4	262.1	1.15	17.8	348.2	1.53
New York	432.6	10.4	234.8	0.66	5.3	119.7	0.33
North Carolina	155.4	21.6	403.3	1.49	6.7	125.0	0.46
North Dakota	11.2	25.5	449.3	1.73	22.1	389.4	1.50
Ohio	196.2	12.3	211.3	0.74	8.6	147.7	0.52
Oklahoma	60.5	12.3	213.0	0.86	21.8	377.6	1.53
Oregon	51.4	12.7	185.3	0.67	12.0	175.1	0.64
Pennsylvania	221.4	16.3	292.6	0.96	14.5	260.3	0.86
Rhode Island	21.2	20.2	401.6	1.33	5.4	107.4	0.36
South Carolina	57.5	14.3	200.2	0.82	7.1	99.4	0.40
South Dakota	9.8	26.0	333.6	1.25	16.3	209.1	0.78
Tennessee	78.0	17.6	236.7	0.88	14.1	189.6	0.71
Texas	286.6	31.5	414.5	1.48	17.7	232.6	0.83
Utah	39.3	13.3	225.4	0.96	4.7	79.7	0.34
Vermont	15.3	20.5	509.6	1.80	7.1	176.5	0.62
Virginia	127.8	15.5	271.6	0.85	7.5	131.4	0.41
Washington	126.3	16.2	337.1	1.07	9.7	201.9	0.64
West Virginia	35.5	27.0	532.1	2.32	10.5	207.0	0.90
Wisconsin	118.1	14.7	319.1	1.10	6.8	147.6	0.51
Wyoming	10.9	9.0	197.4	0.68	37.2	815.8	2.79

주: 1) 평균 세수가 아닌 총 세수.

자료: US Census of Bureau, Governmental Finances(www.census.gov/govs/estimate) and www.taxadmin.org/fta.

한편 주정부의 전체 세수에서 가장 비중이 큰 개별판매세 세목은 (자동차) 유류세(motor fuel taxes)로 총세입의 약 5.4%에 달하고 보험료세(1.8%), 공공 서비스세(1.6%), 담배세(1.6%), 유흥세(0.7%) 그리고 주세(0.8%)의 순이다. 유류세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커서 몬태나(12.3%)와 사우스 다코다(12.4%)가 연료세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반면 뉴욕(1.1%)과 하와이(2.2%) 등은 자동차 연료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유흥세는 과세하지 않는 지역이 많아 네바다(19.0%), 루지애나(6.4%), 미시시피(3.8%) 등 일부 주에 한정된 세목이다.

<표 IV-11> 주정부 개별판매세의 세목별 비중(총세입 대비: 2001)

(단위: %)

	주세	유형세	보험료세	(자동차) 유류세	공공 서비스세	담배세	기타
미국 평균	0.75	0.68	1.84	5.42	1.61	1.55	2.29
Alabama	2.02	0.001	3.18	7.87	8.17	1.03	2.58
Alaska	0.84	0.17	2.25	2.64	0.23	3.29	-
Arizona	0.61	0.007	2.22	2.64	0.39	1.90	0.02
Arkansas	0.59	-	1.66	8.26	-	1.97	1.11
California	0.32	-	1.65	3.47	0.29	1.27	0.11
Colorado	0.40	1.16	1.91	7.54	0.12	0.90	0.08
Connecticut	0.45	3.09	1.70	4.18	2.03	1.20	1.66
Delaware	0.53	-	2.66	4.57	1.47	1.26	3.06
Florida	2.19	-	1.56	6.94	2.61	1.78	2.12
Georgia	0.98	-	1.71	4.63	-	0.57	-
Hawaii	1.08	-	2.11	2.21	3.84	1.57	5.10
Idaho	0.24	-	2.39	8.11	0.07	1.12	0.20
Illinois	0.61	2.34	1.11	5.90	6.59	2.04	1.42
Indiana	0.32	4.61	1.45	7.38	0.04	0.84	0.18
Iowa	0.24	3.14	2.45	6.86	-	1.85	0.05
Kansas	1.56	0.02	1.55	7.39	0.02	1.06	0.20
Kentucky	0.89	0.003	3.11	5.72	-	0.21	7.30
Louisiana	0.73	6.37	3.44	7.49	0.13	1.34	4.20
Maine	1.53	-	1.72	7.09	0.15	2.79	0.18
Maryland	0.24	0.11	1.77	6.37	1.34	1.91	6.30
Massachusetts	0.38	0.03	1.93	3.83	-	1.57	0.99
Michigan	0.61	0.34	0.90	4.83	0.13	2.68	0.20
Minnesota	0.45	0.42	1.37	4.48	0.00	1.35	7.37
Mississippi	0.83	3.84	2.55	8.53	0.03	1.17	0.15
Missouri	0.29	2.16	2.18	7.65	0.00	1.22	0.29
Montana	1.17	2.77	3.07	12.25	2.14	0.92	1.22
Nebraska	0.57	0.21	1.11	9.60	0.09	1.49	0.64
Nevada	0.43	19.03	3.83	6.49	0.21	1.73	0.58
New Hampshire	0.65	0.09	3.45	7.86	3.25	4.89	13.26
New Jersey	0.42	1.78	1.68	2.68	4.42	2.06	1.23
New Mexico	0.87	0.69	1.11	5.00	0.31	0.45	3.14

<표 IV-11>의 계속

(단위: %)

	주세	유흥세	보험료세	(자동차) 유류세	공공 서비스세	담배세	기타
New York	0.40	0.002	1.36	1.14	2.07	2.27	2.37
North Carolina	1.28	0.07	2.00	7.73	2.70	0.27	3.77
North Dakota	0.40	1.16	1.82	9.07	3.18	1.77	10.83
Ohio	0.41	-	1.78	6.66	3.27	1.44	0.09
Oklahoma	0.98	0.11	2.43	6.33	0.31	1.16	0.28
Oregon	0.21	0.00	1.05	6.89	0.14	3.02	0.02
Pennsylvania	0.83	0.002	2.09	3.48	3.01	1.42	4.30
Rhode Island	0.42	-	1.66	5.80	3.62	2.66	4.70
South Carolina	2.24	0.61	1.76	6.62	0.71	0.48	1.34
South Dakota	1.13	0.002	4.36	12.44	0.25	1.98	4.60
Tennessee	1.00	-	3.79	9.90	0.05	1.04	1.56
Texas	1.84	0.07	2.61	9.40	2.29	1.99	11.02
Utah	0.62	-	1.82	8.01	-	1.18	0.48
Vermont	0.99	-	1.38	4.24	0.62	1.72	11.35
Virginia	0.98	0.00	2.05	6.48	0.74	0.12	4.42
Washington	1.33	0.00	2.21	5.81	2.62	2.09	1.63
West Virginia	0.24	-	3.36	6.92	5.62	0.93	9.55
Wisconsin	0.38	0.00	0.84	7.81	2.33	2.17	0.05
Wyoming	0.12	-	1.18	5.88	0.19	0.45	0.02

자료: US Census of Bureau, Governmental Finances(www.census.gov/govs/estimate) and www.taxadmin.org/fta.

앞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별 소비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세목은 주세, 자동차 유류세 그리고 담배세이다. 본 절에서는 이들 세목에 대하여 미국 주정부 세율을 소개하고 연후 뉴욕주를 중심으로 이들 세목의 과세에 대하여 뉴욕 세법¹⁵⁹⁾을 가지고 자세히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뉴욕 주 기타 소비세에 대하여 짧게 언급함으로써 지방소비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연방소비세를 검토하고자 한다.

159) [http://caselaw.lp.findlaw.com/nycodes/c117\(New York Consolidated Law\)](http://caselaw.lp.findlaw.com/nycodes/c117(New York Consolidated Law))

나. 주세

1) 주정부 주세율

<표 IV-12>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모든 주가 알콜주류에 대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주정부가 직접 주류판매를 독점 운영한다. 후자는 특히 증류주(알라바마, 아이다호, 펜실베니아 등 16개 주)에 있어서 그러하며 포도주도 일부 주에서는 정부가 판매한다(뉴햄프셔, 펜실베니아 등 4개 주). 이 밖에 주정부 이외에 시 등 지방정부에서 따로 주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주류는 맥주, 증류주 그리고 포도주로 구분되어 종량세가 부과되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주세는 일반판매세에 추가하여 부과된다. 주세율은 주에 따라서 맥주는 1갤런당 0.06~1.07달러가 부과되는데 맥주세율은 대개 0.2~0.3달러 내외이다. 증류주의 경우 1갤런당 1.5~12.8달러가 부과되고 포도주는 0.11~2.5달러가 적용된다. 또한 맥주는 병 맥주나 생맥주·증류주는 알콜도수 그리고 포도주는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외 일반판매세의 경우 영업장 내에서의 판매 여부에 따라 과세되기도 하고 비영업장 판매와 차등적 세율이 부과되기도 한다.

2) 뉴욕주 주세규정

뉴욕주에서 판매용 알콜음료를 반입하거나 반입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자, 주류를 제조 내지는 혼합하는 자 그리고 주류창고에서 알콜음료를 반출하는 자는 알콜주류 통제법에 따라 주류 유통업자(distributor)로 등록하여야 한다(Article 18). 주정부는 세금 확보를 위하여 주류 유통업자에게 정부가 정한 액수의 예탁금(bond)을 요구할 수 있다.

<표 IV-12> 주류 관련 지방소비세 세율과 일반판매세 부과 여부

(단위:달러/갤런)

	맥주			증류주			포도주		
	세율	판매세	기타세	세율	판매세	기타세	세율	판매세	기타세
Alabama	0.53	○ ¹⁾	0.52	¹⁷⁾	○		1.70	○	
Alaska	1.07	-		12.8	-	2.50 ¹⁸⁾	2.50	-	1.07 ³⁷⁾
Arizona	0.16	○		3.00	○		0.84	○	
Arkansas	0.23	○	3%	2.50	○	3~14% ¹⁹⁾	0.75	○	3% ³⁸⁾
California	0.20	○		3.30	○	6.60 ²⁰⁾	0.20	○	0.3 ³⁹⁾
Colorado	0.08	○		2.28	○		0.277	○	
Connecticut	0.19	○	0.2~1.5 ²⁾	4.50	○	2.05 ²¹⁾	0.60	○	1.5 ⁴⁰⁾
Delaware	0.16	-		3.75	-	2.50 ²²⁾	0.97	-	
Florida	0.48	○	0.0134 ³⁾	6.50	○	0.0334 ²³⁾	2.25	○	3 ⁴¹⁾
Georgia	0.48	○	0.045 ⁶⁾	4.54	○		1.51	○	2.54 ⁴²⁾
Hawaii	0.93	○	0.54	5.98	○		1.38	○	2.12 ⁴³⁾
Idaho	0.15	○	0.45	¹⁷⁾	○		0.45	○	
Illinois	0.185	○	0.16	4.50	○	1.5~2.0	0.73	○	0.19~0.3
Indiana	0.115	○		2.68	○	0.47 ²⁴⁾	0.47	○	2.68 ⁴⁴⁾
Iowa	0.19	○		¹⁷⁾	○		1.75	○	0.19 ⁴⁵⁾
Kansas	0.18	-	7)	2.50	×	8~10% ²⁵⁾	0.30	×	8% ⁴⁶⁾
Kentucky	0.08	○ ⁴⁾	9%	1.92	○ ⁴⁾	0.25 ²⁶⁾	0.50	○ ⁴⁾	9%
Louisiana	0.32	○		2.50	○	0.32 ²⁷⁾	0.11	○	0.23 ⁴⁷⁾
Maine	0.25	○	7% ⁸⁾	1.25 ¹⁷⁾	○	1.24 ²⁸⁾	0.60	○	7% ⁴⁸⁾
Maryland	0.09	○	0.07	1.50	○		0.40	○	
Massachusetts	0.11	○ ⁴⁾	0.57% ⁹⁾	4.05	○ ⁴⁾	1.1 ²⁹⁾	0.55	○ ⁴⁾	0.70 ⁴⁹⁾
Michigan	0.20	○		¹⁷⁾	○		0.51	○	0.76 ⁵⁰⁾
Minnesota	0.15	-	10)	5.03	-	0.01 ³⁵⁾	0.30	-	0.95 ⁵¹⁾
Mississippi	0.4695	○		2.5 ¹⁷⁾	○		1.00	○	0.35 ⁵²⁾
Missouri	0.06	○		2.00	○		0.36	○	
Montana	0.14	-		¹⁷⁾	-		1.02	-	0.14 ⁵³⁾
Nebraska	0.23	○		3.00	○		0.75	○	1.35 ⁵⁴⁾
Nevada	0.09	○		2.05	○	0.4 ³⁶⁾	0.40	○	0.75 ⁵⁵⁾
New Hampsh	0.30	○ ⁵⁾		¹⁷⁾	-		¹⁷⁾	-	
New Jersey	0.12	○		4.40	○		0.70	○	
New Mexico	0.41	○		6.06	○		1.70	○	5.678 ⁵⁶⁾
New York	0.125	○	0.12	6.43	○	2.54 ³⁰⁾	0.19	○	0.38 ⁵⁷⁾
North Carolina	0.53	○	0.48	¹⁷⁾	○		0.79	○	0.91 ⁵⁸⁾
North Dakota	0.16	-	11)	2.50	-	7%	0.50	-	7% ⁵⁹⁾

<표 IV-12>의 계속

(단위:달러/갤런)

	맥주			증류주			포도주		
	세율	판매세	기타세	세율	판매세	기타세	세율	판매세	기타세
Ohio	0.18	○	¹²⁾	¹⁷⁾	○		0.32	○	1.0
Oklahoma	0.40	○	¹³⁾	5.56	○		0.72	○	1.40
Oregon	0.12	-		¹⁷⁾	-		0.67	-	0.77
Pennsylvania	0.08	○		¹⁷⁾	○		¹⁷⁾	○	
Rhode Island	0.10	○	0.04	3.75	○		0.60	○	0.75
South Carolina	0.96	○		2.72	○	5.36 ³¹⁾	0.90	○	0.45
South Dakota	0.27	○		3.93	○	0.93 ³²⁾	0.93	○	0.93
Tennessee	0.138	○	¹⁴⁾	4.40	○	15% ³³⁾	1.21	○	15%
Texas	0.19	○	¹⁵⁾	2.40	○	14% ³⁴⁾	0.20	○	0.408
Utah	0.3548	○		¹⁷⁾	○		¹⁷⁾	○	
Vermont	0.265	×	¹⁶⁾	¹⁷⁾	×		0.55	×	
Virginia	0.26	○		¹⁷⁾	○		1.51	○	0.2565
Washington	0.261	○		¹⁷⁾	○ ⁴⁾		0.87	○	1.72 ⁶⁰⁾
West Virginia	0.18	○		¹⁷⁾	○		1.00	○	
Wisconsin	0.06	○		3.25	○		0.25	○	0.45 ⁶⁰⁾
Wyoming	0.02	○		¹⁷⁾	○		¹⁷⁾	○	

주: 1) ○: 일반판매세 과세 ×: 비과세. 2) 1/4 barrel 이하 0.2\$ wine gallon, 21도 이하 still wine 0.6\$, 21도 이상 still wine과 sparkling wine 1.5\$. 3) 12 ounce 당 영업장 판매. 4) 영업장 판매단 과세. 5) 8% 음식 및 숙박세 과세. 6) 드래프트 맥주 31갤런 10\$, 병맥주 12 oz당 4.5¢. 7) 0.18~0.20\$: malt, 3.2도 이상 8% 비영업장 판매 10% 영업장 판매 3.2% 이하 5.3% 소매세. 8) 영업장 판매 9) 클럽 판매. 10) 3.2도 이하 0.077\$, 9% 판매세. 11) 0.08\$ bulk용, 7% 판매세. 12) 병맥주 12 oz당 0.14¢. 13) 0.36\$ 3.2도 이하. 14) 17% 도매세, 15% 영업장 판매. 15) 4% 이상 0.198\$, 영업장 판매 14%, 0.05\$/잔 비행기 판매. 16) 0.55\$ 6~8도, 10% 영업장 판매. 17) 정부가 주류 판매를 독점하고 세금, 수수료, 이윤의 형태로 과세. 18) 21도 이하. 19) 1\$ 21도 이하, 0.5\$ 5도 이하 3% 비영업장 14% 영업장 소매세. 20) 50도 이상 21) 7% 이하. 22) 25도 이하. 23) 17.259도 이하 2.25\$, 55.78도 이상 9.53\$, 0.334\$/oz 영업장 소매세. 24) 15도 이하. 25) 8% 비영업장 10% 영업장 판매. 26) 6도 이하 0.25\$, 9% 도매세. 27) 6도 이하 0.32\$. 28) 저알콜주. 29) 15도 이하 1.1\$, 50도 이상 5.05\$/proof gallon 0.57% 클럽용. 30) 24도 이하 2.54\$, 2도 이하 0.0379\$, 24도 이상 뉴욕시세 1\$. 31) 5.36\$/case 9% 부가세. 32) 14도 이하 0.93\$, 2% 도매세. 33) 0.15\$/case, 15% 영업장세 5도 이하 1.21\$. 34) 14% 영업장 판매, 0.05\$/잔 비행기내 판매. 35) 0.01\$/병. 36) 14도 이하 0.40\$, 22도 이하 0.75\$ 37) 0.5~7도 cider. 38) 5도 이하 0.25\$, 3% 비영업장 판매. 39) sparkling wine 0.30\$. 40) 21도 이상 및 sparkling wine. 41) 17.259도 이상 3\$, sparkling wine 3.5\$, 와인쿨러 2.25\$, cider 0.89\$. 42) 14도 이상. 43) sparkling wine 와인쿨러 0.85\$. 44) 21도 이상. 45) 5도 이하. 46) 14도 이상 0.75\$, 8% 비영업용 판매. 10% 영업용. 47) 24도 이상 및 sparkling wine 1.59\$. 48) 15.5도 이상 1.24\$. 49) sparkling wine. 50) 16도 이상. 51) 14~21도 0.95\$, 24도 이하 및 sparkling wine 1.82\$, 24도 이상 3.52\$. 52) 기타 와인. 53) 수입와인. 54) 14도 이상. 55) 14~21도, 22도 이상 2.05\$. 56) 14도 이상. 57) 3.2도 이상 cider. 58) 17도 이상. 59) 17도 이상 0.6\$, sparkling wine 1\$. 60) 14도 이상.

자료: 「All States Tax Handbook」, Thomson RIA, 2003.

주세는 주류 유통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된다. 이들은 매월 20일까지 이전 달에 판매된 주류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활한 주세 부과를 위하여 뉴욕주에 위치한 모든 주류에 대하여 납세증명이 없는 한 주세가 부과될 잠재적 대상으로 간주된다. 증류주는 송장과 납세증명서에 의하여 유통업자가 세금을 부담하며 기타 주류는 주세 규정에 따라 유통업자가 세금을 부담한다.

주류 유통업자와 제조업자는 당국이 정한 형식에 따라 모든 알콜음료의 매입과 판매에 대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자료를 주정부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1년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90리터 이하의 판매를 제외한 모든 알콜음료 판매에 대하여 판매자는 배달 날짜, 매입자, 판매자, 판매량, 납세증명서 등을 기록한 송장(invoice)을 작성하고 다른 한 부를 매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송장을 제공하지 않거나 주류를 보유한 자가 송장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유통업자가 주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Sec 427(5)).

뉴욕주에서 주세에 대한 세금은 1갤런당 맥주의 경우 12.5센트, 와인 및 와인쿨러는 18.93센트, 알콜 3.2% 이상의 사이더는 3.79센트가 부과된다. 이외 증류주의 경우 24도 이상은 갤런당 6.43달러, 2~24도 증류주는 2.53달러가 부과된다¹⁶⁰⁾.

주류 유통업자나 수입업자는 매월 20일에 전월에 판매한 판매량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외 주정부는 원활한 세금신고 및 납부를 위하여 따로 신고기일을 정할 수도 있다. 오류에 의한 세금은 공제가 가능하며 음료용이 아닌 목적(non beverage purpose)이나 종교목적으로 주류를 소비할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공제나 환급을 위한 신청은 판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주정부가 신고된 세금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일이나 납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 추징을 위한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단 세금회피를 위하여 고의로 혹은 사기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추정세금은 확정된다. 유통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담당하는 부서(division of tax appeals)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행정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연후 이러한 결정은 조세심판원(tax appeal tribunal)에서 재

160) 이 밖에 뉴욕주에서는 1백만명 이상의 시 정부는 맥주 1갤런당 12센트 그리고 증류주 1갤런당 26.4센트의 주세를 따로 부과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허용을 하고 있다(Sec. 445).

의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유통업자가 추징세금, 벌금 그리고 이자를 우선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혹은 납부하지 않은 유통업자는 총 30%를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의 10%와 납기일로부터 매월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외 사기에 의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추가로 세금의 50%와 이자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 유류세

1) 주정부 유류세 세율

한편 개별판매세에서 세수비중이 가장 큰 유류세는 주로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경유와 휘발유 등의 연료에 부과되며 난방용 석유제품인 등유 등에는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류세는 일반 소비세 이외에도 검사료, 환경부담금, 석유세의 명목으로 부가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유류세는 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갤런당 20센트 내외의 동일한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외가 알래스카(8센트)와 로드아일랜드(31센트)이다.

<표 IV-13> 주정부 (자동차) 유류세 세율(2003. 1.)

(단위: 센트/갤런)

	휘발유			경유			개소홀(Gasohol)			여타 부담금 내역
	세율	여타 부담금	총 세율	세율	여타 부담금	총 세율	세율	여타 부담금	총 세율	
Alabama ¹⁾	16	2	18	17	2	19	16	2	18	검사료
Alaska	8		8	8		8	0		0	
Arizona	18		18	18		18	18		18	3)
Arkansas	21.5		21.5	22.5		22.5	21.5		21.5	
California	18		18	18		18	18		18	판매세
Colorado	22		22	20.5		20.5	22		22	
Connecticut	25		25	26		26	24		24	
Delaware	23		23	22		22	23		23	5)
Florida ²⁾	4	10.1	14.1	16.6	10.1	26.7	4	10.1	14.1	판매세 ²⁾
Georgia	7.5		7.5	7.5		7.5	7.5		7.5	판매세
Hawaii ¹⁾	16		16	16		16	16		16	
Idaho	25	1	26	25	1	26	22.5	1	23.5	청정수 세 ⁷⁾
Illinois ¹⁾	19	0.8	19.8	21.5	0.8?	22.3	19	0.8?	19.8	환경부담금 ³⁾
Indiana	15		15	16		16	15		15	판매세 ³⁾
Iowa	20.1		20.1	22.5		22.5	19		19	
Kansas ⁸⁾	23		23	25		25	23		23	
Kentucky	15	1.4	16.4	12	1.4	13.4	15	1.4	16.4	환경부담금 ³⁴⁾
Louisiana	20		20	20		20	20		20	
Maine ⁵⁾	22		22	23		23	22		22	
Maryland	23.5		23.5	24.25		24.25	23.5		23.5	
Massachusetts	21		21	21		21	21		21	
Michigan	19		19	15		15	19		19	판매세
Minnesota	20		20	20		20	20		20	
Mississippi	18	0.4	18.4	18	0.4	18.4	18	0.4	18.4	환경부담금
Missouri	17	0.03	17.03	17	0.03	17.03	17	0.03	17.03	검사료
Montana	27		27	27.75		27.75	27		27	
Nebraska	24.6	0.9	25.5	24.6	0.9	25.5	24.6	0.9	25.5	석유부담금 ⁵⁾
Nevada ¹⁾	24		24	27		27	24		24	
New Hampshire	18	1.5	19.5	18	1.5	19.5	18	1.5	19.5	석유누출금
New Jersey	10.5	4	14.5	13.5	4	17.5	10.5	4	14.5	석유부담금
New Mexico ⁸⁾	17	1.9	18.9	18	1.9	19.9	17	1.9	18.9	석유부담금
New York	8	14.6	22.6	8	12.85	20.85	8	14.6	22.6	판매세
North Carolina	23.4	0.25	23.65	23.4	0.25	23.65	23.4	0.25	23.65	검사료 ⁴⁾
North Dakota	21		21	21		21	21		21	
Ohio	22		22	22		22	22		22	3¢ 환경부담금
Oklahoma	16	1	17	13	1	14	16	1	17	환경부담금

<표 IV-13>의 계속

(단위: ¢/갤런)

	휘발유			경유			개소홀(Gasohol)			여타 부담금 내역
	세율	여타부담금	총세율	세율	여타부담금	총세율	세율	여타부담금	총세율	
Oregon ¹⁾	24		24	24		24	24		24	
Pennsylvania	12	13.9	25.9	12	18.8	30.8	12	13.9	25.9	석유사업세
Rhode Island	30	1	31	30	1	31	30	1	31	LUST tax
South Carolina	16		16	16		16	16		16	
South Dakota ¹⁾	22		22	22		22	20		20	
Tennessee ¹⁾	20	1.4	21.4	17	1.4	18.4	20	1.4	21.4	석유세/환경세
Texas	20		20	20		20	20		20	
Utah	24.5		24.5	24.5		24.5	24.5		24.5	
Vermont	19	1	20	25	1	26	19	1	20	석유정정세
Virginia ¹⁾	17.5		17.5	16		16	17.5		17.5	⁶⁾
Washington	23		23	23		23	23		23	0.5%privilege tax
West Virginia	20.5	4.85	25.35	20.5	4.85	25.35	20.5	4.85	25.35	판매세
Wisconsin ⁵⁾	28.1		28.1	28.1		28.1	28.1		28.1	⁵⁾
Wyoming	13	1	14	13	1	14	13	1	14	등록세
Washington DC	20		20	20		20	20		20	
Federal	18.3	0.1	18.4	24.3	0.1	24.4	13	0.1	13.1	LUST tax ⁷⁾

주: 1) 일부 지방자치단체 세율은 불포함: AL 1~3¢; HI, 8 to 11.5¢; IL ,5¢ Chicago, 6¢ Cook county (휘발유); NV, 1.75~7.75¢; OR, 1~3¢; SD and TN, 1¢; and VA 2%. 2) 지방자치단체 5.5~17¢와 2.07¢ 오염세. 3) 운반수송차 부가세 AZ, 8¢; IL, 6.3¢; IN, 11¢; KY, 2%. 4) 세율은 평균도매 가격에 기초하여 분기별로 조정. 실제 세율은 KY, 9%; NC, 7%. 5) 유지비용 및 판매량에 따라 세율 조정. 6) 큰 트럭은 3.5¢ 추가. 7) 함유 에탄올에 따라 세율 조정. 8) 2003년 7월 이후 KS 24¢; NM 16¢.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www.taxadmin.org/fta/rate)

2) 뉴욕주 유류세 규정

뉴욕주에서 유류세는 경유세와 이외 등유와 원유를 제외한 가솔린, 벤졸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자동차) 연료세(motor fuel taxes)를 의미한다(Article 12-A)¹⁶¹⁾. 뉴

161) 등유나 원유의 경우에도 다른 연료와 혼합되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면 유류세가 부과된다.

육주에서 유류세가 부과되는 방식은 경유와 여타 유류가 조금 다르다. 경유의 경우 처음 판매 혹은 사용될 당시에 유류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세금이 이전에 납부되지 않았다면 경유는 주유소에 제공될 당시 혹은 엔진에 주입될 당시 유류세가 부과된다. 반면 여타 연료는 유통업자가 뉴욕주에서 사용 혹은 판매를 위하여 반입 혹은 생산될 당시에 유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는 세금 면제대상이 아닌 한 판매자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야 한다. 또한 소매단계를 제외한 유류 매입시 구입자는 유통업자가 세금을 부담 혹은 납부하고 세금을 구매자에게 전가하지 않은 유류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판매자로부터 이러한 증명을 받지 않고 유류를 구입한 자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뉴욕주에 반입되거나 뉴욕주에서 제조, 판매, 비축된 유류는 이와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과세대상인 유류로 간주된다.

뉴욕주에서 판매, 유통, 비축하려는 목적으로 유류를 반입하거나 이를 제조하는 자는 연료 유통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따로 정하지 않는 유통업자를 제외한 자는 예탁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매단계를 제외한 판매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입자는 서로 판매자가 등록된 유통업자로서 유류세의 납부책임이 있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세금이 구매자에게 전가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유류를 수입, 생산, 구입 혹은 판매하는 자는 모든 매입과 매출에 관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는 구입자가 작성한 배달증명서에도 적용된다.

유류세 세율은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갤런당 총 8센트가 적용되는데 이 가운데 유류 소비세(excise tax)는 4센트, 부가세(additional tax) 3센트, 첨가세(supplemental tax) 1센트이다. 납부할 세금은 유류세율에 판매량(갤런)을 곱하여 산출된다. 유류세는 세금신고 여부나 신고된 세금의 정확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기일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외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정부도 역내에서 판매되는 유류에 대하여 갤런당 1센트의 유류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들 지방세 징수는 주정부가 관리하고 그 대신 징수비용을 세수에서 제외한다.

유류세는 주로 도로 사용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난방이나 농업 그리고 유형자산의 생산, 가스, 전기, 스팀, 냉동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연료는 주유소나 자동차 연

료로 다시 공급될 수 있는 주유소와 유사한 장소로 배송되지 않으면 유류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 항공용 연료(kero-jet fuel)도 유류세가 면제된다. 이외 지역버스나 택시 영업자의 경우 전부 혹은 갤런당 3센트의 유류세(경유는 1센트)가 환급된다. 이들 환급대상 유류나 세금이 기납부된 유류 매입의 경우 세금신고시 공제가 가능하다.

매월 20일에 모든 유통업자는 이전 달에 뉴욕주로 유입, 판매한 물량을 포함한 세금 신고를 하고 주유소 등에 판매한 경우와 뉴욕주에 반입, 제조 혹은 판매한 기타 유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정부는 또한 원활한 세금징수를 위하여 월별 신고 이외의 신고방식을 정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분기별, 반기 혹은 연별 신고로 조정할 수도 있다(S 287). 이 밖에도 세금징수가 지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기일과 관계없이 납부세금과 과징금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jeopardy assessment S 288-a).

주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된 세금이 부정확 혹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정부는 신고일이나 납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 추징을 위한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추징 세금은 확정된다. 유통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담당하는 부서(division of tax appeals)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행정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후 이러한 결정은 조세심판원(tax appeal tribunal)에서 재의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유통업자가 추징세금, 벌금 그리고 이자를 우선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혹은 납부하지 않은 유통업자는 총 30%를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의 10%와 납기일로부터 매월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며 이에 동반하는 이자도 납부하여야 한다. 사기에 의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당국은 추가로 세금의 50%와 이자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유류를 주유소 업자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소지할 경우 해당 세금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담배세

1) 주정부 담배세율

담배세는 일반담배(cigarettes)와 시가 등 담배제품(tobacco product)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는데 일반담배에는 종량세가, 담배제품에는 종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담배의 경우 갑당 담배세가 0.03달러(켄터키)~1.51달러(매사추세츠)까지 다양하며 담배제품 세율은 도매가격의 2%(노스 캐롤라이나)~129.4%(워싱턴)에 달한다. 담배에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한 예로 뉴욕주와 뉴욕시가 각각 1.5달러의 담배세를 부과, 뉴욕주의 총세금은 3달러에 이른다.

2) 뉴욕주 담배세 규정

뉴욕주에서 담배세는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담배(cigarettes)나 담배제품(tobacco product)¹⁶²⁾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Article 20, S 471). 담배세는 일반판매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며 이 때 일반판매세는 담배세와 마찬가지로 담배 판매업자가 사전에 납부한다.

162) 일반담배는 크기나 형태와 관련 없이 전부 혹은 일부를 쥘련이나 기타 물질로 흡연을 위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하며 담배제품은 일반담배 이외 시가 등 쥘련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흡연용, 씹는 담배나 코로 소비하는 담배류를 의미한다.

<표 IV-14> 주정부 담배세 세율(2003. 1)

(단위: 센트/갑)

	세율	순위		세율	순위
Alabama ¹⁾	16.5	45	Nebraska	64	22
Alaska	100	11	Nevada	35	31
Arizona	118	9	New Hampshire	52	25
Arkansas ²⁾	34	32	New Jersey	150	2
California	87	18	New Mexico	21	38
Colorado	20	39	New York ¹⁾	150	2
Connecticut	111	10	North Carolina	5	49
Delaware	24	36	North Dakota	44	27
Florida	33.9	33	Ohio	55	24
Georgia	12	46	Oklahoma	23	37
Hawaii	120	8	Oregon	128	6
Idaho	28	35	Pennsylvania	100	11
Illinois ¹⁾	98	16	Rhode Island	132	5
Indiana	55.5	23	South Carolina	7	48
Iowa	36	29	South Dakota	33	34
Kansas ³⁾	70	20	Tennessee ^{1) 2)}	20	39
Kentucky ²⁾	3	50	Texas	41	28
Louisiana	36	29	Utah	69.5	21
Maine	100	11	Vermont	93	17
Maryland	100	11	Virginia ¹⁾	2.5	51
Massachusetts	151	1	Washington	142.5	4
Michigan	125	7	West Virginia	17	43
Minnesota	48	26	Wisconsin	77	19
Mississippi	18	41	Wyoming	12	46
Missouri ¹⁾	17	43	Dist. of Columbia	100	11
Montana	18	41	U. S. Median	48	

주: 1)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과세. 2) 판매지는 추가로 수수료 부과. 3) 2003년 7월 이후 세율 인상
KS 79센트, VT \$1.19.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www.taxadmin.org/fta/rate).

<표 IV-15> 주정부 여타 담배세 세율(2002. 1)

	세율		세율
Alabama	1.5센트~20.25센트/10cigars	Tobacco/Snuff	0.6센트~4.4센트/ounce
Alaska	75% 도매가격		
Arizona	26.3센트~\$2.60/20cigars	Tobacco/Snuff	13.3센트/ounce
Arkansas	25% 제조가격		
California (3)	48.89% 도매가격	New Hampshire	21.9% 도매가격
Colorado	20% 제조가격	New Jersey	30% 도매가격
Connecticut (5)	20% 도매가격	New Mexico	25% 제품가치
Delaware	15% 도매가격	New York	37% 도매가격
Florida	25% 도매가격		
Georgia	2.0센트/10cigars(작은 시가)	13% 도매가격	(기타 시가)
Hawaii	40% 도매가격		
Idaho	40% 도매가격	North Carolina	2% 도매가격
Indiana	15% 도매가격	Ohio	17% 도매가격
Illinois	18% 도매가격	Oregon	65% 도매가격
Iowa	22% 도매가격	Rhode Island	30% 도매가격
Kansas	10% 제조가격		
Louisiana	8%~20% 제조가격(시가)	Tobacco/Snuff	33% 제조가격
Maine	Chewing Tob./Snuff	62% 도매가격	시가 16% 도매가격
Maryland	15% 도매가격		
Massachusetts	Smokless Tobacco	75% 도매가격	시가 15% 도매가격
Michigan	20% 도매가격		
Minnesota	35% 도매가격	South Carolina	5% 제조가격
Mississippi	15% 제조가격	South Dakota	10% 도매가격
Missouri	10% 제조가격	Tennessee	6.5% 도매가격
Montana	12.5% 도매가격	Washington	129.42% 도매가격
Nebraska (6)	20% 도매가격	West Virginia	7% 도매가격
Nevada	30% 도매가격	Wisconsin	25% 제조가격
North Dakota	28% 도매가격(시가·담배)	Chewing Tob./Snuff	16센트~60센트/ounce
Oklahoma	9.0센트~30.0센트/10cigars	Tobacco/Snuff	30%~40% 생산자가격
Texas	1.0센트~15.0센트/10cigars	Tobacco/Snuff	35.213% 제조가격
Utah	35% 제조가격	Wyoming	20% 도매가격
Vermont	41% 제조가격		

주: 비교를 위하여 종량세를 10시가 혹은 온스당으로 환산.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www.taxadmin.org/fta/rate).

담배세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다만 일반담배 판매인 혹은 담배 제품의 유통업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소비자로부터 담배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담배의 경우 담배 판매인 혹은 거래인(cigarette agent or dealer)은 뉴욕주에 등록하고 담배세 납부필증(stamp)을 사전에 매입, 이를 담배에 붙여서 팔아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담배를 정부가 공시한 최소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 납부필증을 신용으로 구입하려면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타 개별 소비세가 그렇듯이 뉴욕주에서 모든 담배는 과세대상으로 간주되며 비과세임을 증명할 책임은 담배를 소지한 자에게 있다.

한편 담배제품의 경우 담배를 수입 혹은 생산하여 유통하는 자로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지정된 유통업자에게 납세 책임이 있다(S 471-b). 또한 담배제품의 중개인도 담배세를 납부한 송장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담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유통업자는 특히 매월 20일마다 이전 달에 뉴욕주로 유입된 모든 담배제품의 물량과 도매가격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무당국이 신고기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

담배 도매업자로서 등록을 하려면 최소 25,000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자로서 담배를 저장할 안전한 장소를 소유하고 있고 10,000달러의 예탁금(bond)을 제공한 후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업자의 등록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담배 판매업자도 100달러를 내고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증은 매년 갱신되며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담배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자와 도매업자 그리고 판매자는 제품 배달일, 수량, 가격, 매입자, 배송자 이름 등을 기록한 송장을 각각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담배 관련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자도 배달 후 10일이 되기까지 운송장을 주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정부는 담배 관련 제품이 판매, 장치된 장소나 관련 사업자의 장부, 송장 그리고 여타 기록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뉴욕주 담배세 세율은 20개비 한 갑당 1.5달러이며 이외 뉴욕시에서 추가로 1.5달러의 담배세를 부과한다. 일반담배 이외 시가, 파이프, 씹는 담배 등 담배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도매가격의 37%가 담배세로 부과된다. 세금신고가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주정부는 세금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단, 세금 회피를 위하여 고의적인 오류나 사기로 세금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추징의 기한은 없다. 추징통보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해 세금은 확정된다.

납세필증이 부착된 담배가 다른 주로 운송, 판매되거나 소비·판매될 수 없는 경우 담배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한 날 혹은 납부필증을 부착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하면 담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¹⁶³⁾. 환급은 납세필증을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감사관의 감사에 의거하여 현금이 교부될 수도 있다.

유통업자나 이에 해당하는 자가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총 30%의 한도 내에서 확정된 세금의 10%와 납세 만기일로부터 매1개월 1%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징된다. 이에 추가하여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7,500달러를 한도로 담배 200개당 150달러, 시가 50개 혹은 켈런 1파운드당 벌금 75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납세필증이 없는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첫 번째 위반일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5년 동안 두 번째로 법을 위반하면 3년간 면허 정지, 세 번째 위반일 때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마. 뉴욕주 기타 소비세¹⁶⁴⁾

뉴욕주의 경우 3 가지 종류의 도로 및 유류 사용세가 있는데 정부기관, 농부 그리고 가정용품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이들 세금이 모두 면제된다. 또한 버스의 경우 도로 사용세(HUT)가 면제된다. 우선 도로를 이용하는 18,000파운드 이상의 자동차는 도로 사용세(HUT 혹은 truck mileage tax TMT)를 납부하여야 한다(High Use Tax, Article 21)¹⁶⁵⁾. 도로 사용세는 뉴욕주 고속도로 주행거리와 자동차 중량에 따라 결정된다. 도로 사용세는 도로 사용을 위한 면허를 받고 세금을 내는데 이 면허를 위해서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Highway Use Permit). 면허세는 트럭 혹은 트랙터당 15달러이다.

또한 트럭, 트랙터 그리고 버스 등 26,000파운드 이상의 자동차가 뉴욕주 이외 지역

163) 이 밖에 소지한 자가 자신이 소비하기 위하여 뉴욕주로 반입한 담배는 20갑까지 면세된다.

164) Office of Tax Policy Analysis,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Handbook of New York State and local Taxes」, 2003. 7.

165) 혹은 짐이 없는 상태에서 트럭의 중량이 8,000파운드 이상, 트랙터 중량은 4,000파운드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지역 내에서 사용하면 유류 사용세(Fuel Use Tax)가 부과된다. 유류 사용세는 뉴욕 주 이외 지역에서 유류를 구입함으로써 뉴욕주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이다.

두 번째로 경마장 도박과 그 이외의 도박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자가 도박대금에서 징수한 커미션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ari-mutuel taxes). 세율은 도박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외 경마장 입장제도 있다. 또한 권투와 레슬링 공연에 대해서도 총수입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Article 19). 여기서 총수입은 입장료 이외에 방송료와 영화권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다만 입장수입과 방송료에 따른 세금은 각각 5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

이 밖에 승용자동차 임대서비스와 전화를 이용한 정보 및 유희 서비스('900' 서비스)에도 5%의 판매세가 일반판매세에 더하여 부과된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자동차 임대나 중량이 9,000파운드 이상인 자동차 혹은 탑승객이 9인 이상인 자동차에는 추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Article 18-A).

한편 뉴욕주 기초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목 중에는 공공서비스세(public utilities taxes), 호텔 숙박세, 경마 입장권세 등이 있다. 우선 뉴욕주에서 57개 시정부와 349개 기초자치단체(villages)는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지역 내 공공서비스 기업 총소득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125,000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교육자치구는 3% 이내로 과세한다. 숙박세는 약 30개 지역 정부가 과세한다. 한 예로 뉴욕시의 경우 영구 거주(180일 연속 거주로 정의)가 아닌 숙박의 경우 일일 임대료에 따라 임대료의 5~2.5%¹⁶⁶⁾를 숙박세로 징수한다¹⁶⁷⁾. 이들 지방소비세의 과세행정은 일반판매세나 개별 판매세와 달리 주정부가 수행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진행된다.

166) 일일 임대료가 10~20달러는 0.5달러, 20~30달러는 1달러, 30~40달러는 1.5달러, 40달러 이상은 2달러를 징수한다.

167) 이외 각 객실마다 일일 임대료의 5%를 추가로 징수한다.

4. 연방정부 소비세

가. 개요

연방정부 소비세는 ‘미국 국내에서 소비, 판매 혹은 제조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혹은 수입세’¹⁶⁸⁾로서 일부 스포츠, 교환거래 그리고 직업에도 부과된다. 연방소비세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목으로 1965년 소비세 감세법(Excise Tax Reduction Act)에서 상당수의 소비세를 폐지한 바 있으나 1990년과 1997년 일부 소비세가 다시 부활한 바 있다¹⁶⁹⁾.

연방소비세는 유류, 항공운송, 총기, 담배, 주류, 백신, 석탄 등의 재화와 통신, 일부 연금, 외국보험, 도박, 채권등록 등의 서비스 그리고 비과세 단체 등에 부과된다. 고가 승용차에 대한 소비세는 2002년 12월에 폐지되었다. 일부 연방소비세는 목적세로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금에 예치되어 사용된다. 한 예로 국내 석탄에 부과되는 세금은 폐병 장애신탁기금에 적립되어 사용되고 유류세는 연방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다.

연방소비세는 물품과 서비스, 초과이득, 직업 등의 다양한 과세대상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크게는 <표 IV-16>과 같이 소매세, 제조업자세,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부담금, 외국 보험 상품세, 도박세, 트럭 등 대형차세, 주류 및 담배 관련 세금, 총기류세, 환경세 그리고 등록의무 채권 부담금 등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소비세는 미국 국세청(IRS)에 연방소비세신고서(Form 720)로 신고하지만 이 가운데 총기류와 주류 및 담배는 수입 혹은 국산 여부에 따라 관세청과 알콜·담배·총기청(ATF)이 징수를 담당한다.

168) a duty or impost levied upon the manufacture, sale or consumption of commodities within the country (Code Sec. 4001~5000).

169) The Revenue Reconciliation Act of 1990 and Taxpayer Relief Act of 1997.

<표 IV-16> 연방정부 소비세 분류 및 관련 법규정

연방소비세 분류	연방소비세 세목	IRS Code and Reg.
소매세(Retail taxes)	사치품	Sec. 4001,2
	특정 유류	Sec. 4041,2, §48.4041
	자동차(중형 트럭, 트레일러, 트랙터)	Sec. 4051,2 §48.4051
제조업자세 (Manufacturers taxes)	자동차 관련 유류	Sec. 4081,2 §48.0
	타이어	Sec. 4071, §48.4071
	항공유	Sec. 4091, §48.4091
	Gas Guzzler세	Sec. 4064
	석탄	Sec. 4121, §48.4121
	스포츠 낚시용구	Sec. 4161,2
	활·화살 부품	Sec. 4161, §48.4161
	총기류 백신세(vaccines Tax)	Sec. 4181, CFR §53.91 Sec. 4132
시설 및 서비스 (Facilities and Services)	통신서비스	Sec. 4251,2,3
	항공운·수송	Sec. 4261,2,3 §49.4261 Sec. 4271,2
	수상운송(승객)	Sec. 4471,2, §43.4472
	항구유지세	Sec. 4461,2, 4293
외국 보험상품	Foreign insurance policies	Sec. 4371 §46.4371
도박 및 게임세 (Taxes on wagering and games)	도박세(excise tax on wagers)	Sec. 4401,21 §44.4401
	도박업세(wagering occupational tax)	Sec. 4411,2 §44.4412
트럭 및 버스로세	Truck and bus highway use tax	Sec. 4481,2,3 §41.4481,2
등록의무 부담금	Obligations not in registered form	Sec. 4701, 163(f)
주류 및 담배세 (Alcohol and Tobacco Taxes)	담배세	Sec. 5701~5
	주세	Sec. 7011,5081,31,41,51, Sec. 5091, 5121,5111
총기류(Firearms)		Sec. 4181,5812
환경세(Environmental taxes)	오존파괴물질세	Sec. 4681,2
	위험물질기금(폐지)	Superfund Revenue Act

<표 IV-17>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방소비세 세수를 세목별로 나타내고 있다. 2001

년 당시 약 691.7억달러를 징수하였는데 이 가운데 소매세가 약 21.1억달러, 제조업자세가 341.9억달러(휘발유 209.4억달러), 시설 및 서비스 부담금이 137.4억달러, 보험상품세 2.0억달러, 도박세 0.1억달러(2000년), 트럭/버스도로세가 9.3억달러, 환경세 0.02억달러, 주류 및 담배세가 245.8억달러, 총기류세가 2.1억달러 등이다.

<표 IV-17> 연방정부 소비세 세수실적과 대표세율

(단위: 백만달러)

	1995	1997	1999	2001	2002	대표세율
총세수 ¹⁾	59,298.0	58,690.0	72,076.0	68,241.0	69,171.0	
총세수	44,980.6	44,807.0	58,585.8	52,418.8	52,136.8	
소매세						
사치세						초과 금액의 9%(가격)
승용차	519.1	440.3	401.5	342.0	252.8	\$36,00 ¹⁹⁾
보트	0.6	--	--	0.0	0.0	\$100,000 (1993년 폐지)
비행기	0.0	0.0	--	0.0	0.0	\$250,000 (1993년 폐지)
귀금속	-0.2	0.0	--	0.0	0.0	\$10,000 (1993년 폐지)
모피	0.0	0.0	0.0	0.0	0.0	\$10,000 (1993년 폐지)
염색 경유(기차용):	207.8	152.7	170.5	167.2	147.4	\$0.044/갤런
재고	0.8	0.0	0.0	0.0	0.0	\$0.044/갤런
염색 경유(버스용)	-2.3	-4.6	2.5	2.4	1.7	\$0.074/갤런
특수 자동차연료	33.9	37.3	23.8	18.4	17.6	\$0.184/갤런
재고	0.0	0.0	0.9	0.0	0.0	\$0.043/갤런
압축 천연가스	0.9	1.0	0.9	1.0	0.9	\$0.4854/1000 c.f.
알콜연료 ²⁾	0.2	0.0	-0.4	5.5	0.4	
내륙운하용 연료	128.7	120.7	121.9	114.1	111.3	\$0.244/갤런
트럭, 트레일러, 트랙터 등	2,039.6	1,785.7	2,966.9	1,574.0	1,574.9	12%(가격)
제조업자 소비세						
Gas guzzlers ²⁾	73.5	48.2	68.3	78.2	79.7	
도로용 타이어 ²⁾	389.9	368.5	416.7	354.8	372.8	
항공용 휘발유 ³⁾	2.4	43.9	57.8	49.7	62.6	\$0.194/갤런
개소흡용 이외 휘발유:						
총세수(재고 제외)	19918.5	20836.0	21236.7	20619.2	20942.1	\$0.184/갤런
재고	3.1	-1.5	-0.1	0.0	0.0	\$0.043/갤런
등유(버스/기차용 제외)	6733.1	7160.8	7895.9	8209.0	8214.6	\$0.244/갤런
재고	0.9	0.1	0.1	0.0	0.0	\$0.244/갤런
개소흡용 휘발유:						
총세수						

<표 IV-17>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1995	1997	1999	2001	2002	대표세율
알콜 5.7~7.7%	13.8	1.4	0.0	0.0	0.0	\$0.16308/갤런
알코올 7.7~10%	20.6	4.5	13.2	4.8	4.8	\$0.15513/갤런
알콜 10%~	271.7	214.1	231.1	243.7	302.4	\$0.14555/갤런
재고	0.0	0.0	--	0.0	0.0	\$0.043/갤런
가소홀(Gasohol):						
총세수						
알콜 5.7~7.7%	203.5	107.1	81.9	297.8	406.6	\$0.15322/갤런
알콜 7.7~10%	359.6	180.6	180.0	146.2	176.1	\$0.14242/갤런
알콜 10%~	740.5	1,060.3	1,537.2	1,919.0	1,932.4	\$0.130/갤런
재고	0.0	--	--	0.0	0.0	\$0.043/갤런('93)
비상업용 항공연료:						
(휘발유 제외)						
총세수	176.5	157.9	173.1	187.3	287.7	\$0.219/갤런
재고	0.0	14.2	0.1	0.0	0.0	\$0.175/갤런
상업용 항공연료:						
(휘발유 제외)						
등유 (1998. 7. 이후)	N/A	N/A	77.7	90.3	62.9	\$0.244/갤런
석탄:						
지하석탄						
4.4% 판매가격	138.9	179.9	190.1	183.5	156.0	4.4%
\$1.10/톤	246.5	224.4	162.4	135.2	149.4	\$1.10/톤(<4.4%)
지상석탄	-	-	-	-	-	-
4.4% 판매가격	64.7	71.0	78.4	90.1	103.5	4.4%
\$0.55/톤	151.7	149.3	138.0	140.0	139.6	\$0.55/톤(<4.4%)
백신 ²⁾	176.8	174.8	169.0	152.3	161.7	\$0.75/개
납시용구	96.8	93.5	97.5	100.6	97.9	10% 판매가격
선외엔진, 음파탐지기	2.8	2.0	1.9	2.5	2.7	3% 판매가격
활·화살	20.5	20.2	19.8	19.1	20.3	11~12.4% 판매가격
시설 및 서비스세	-	-	-	-	-	-
전화 등 통신 서비스	3,825.7	4,706.8	5,249.0	5,737.0	5,803.6	3%
승객 항공운송 서비스	4,928.0	4,284.6	6,588.1	6,670.4	6,157.3	7.5%+\$2.75 ¹⁰⁾
국제관광항공시설	256.0	240.2	1,272.7	1,450.5	1,406.2	\$12/1인 ¹¹⁾
	-	-	-	-	-	\$6.1(AL, HA)
화물항공운송 서비스	334.7	295.3	371.5	400.3	372.1	6.25%
외국 보험상품세	140.3	141.2	117.6	152.2	195.6	보험료의 1, 4%

<표 IV-17>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1995	1997	1999	2001	2002	대표세율
도박관련세:	-	-	-	-	-	
일부 도박 ²⁾	15.1	20.7	13.8	N.A.	N.A.	\$0.25/도박금 2%
직업세 ²⁾	1.4	1.3	N.A.	N.A.	N.A.	\$50/\$500/1인/년
기타 소비세						
수상승객운송	17.1	19.9	25.6	27.9	31.1	\$3.00/1인
대형차 사용세 ¹⁰²⁾	694.6	934.5	849.2	867.3	899.4	\$75~\$550/년
수입원유(Superfund)	291.7	- 2.5	- 3.6	0.0	0.0	\$0.097/B('96 폐지)
환경세						
국내원유(Superfund)	291.7	- 2.5	- 3.6	0.0	0.0	\$0.097/B('96 폐지)
수입원유(Superfund)	325.3	- 0.4	1.1	0.3	0.6	\$0.097/B('96 폐지)
국내원유(기름방출기금)	1.0	- 0.9	- 0.1	0.0	0.0	\$0.05/B('96 폐지)
수입원유(기름방출기금)	--	--	0.0	-	-	\$0.05/B('96 폐지)
일부 화학제품 ²⁾	267.5	9.7	12.7	- 2.3	- 2.83	\$0.22~\$4.87/톤 ('96 폐지)
일부수입재(Superfund) ²⁾	19.0	1.2	- 0.3	- 0.5	- 0.0	('96 폐지)
오존파괴 화학품 ²⁾ :	-	-	-	-	-	
총세수	434.2	98.0	120.4	12.1	4.0	
재고	61.9	8.2	6.3	1.3	1.2	
오존파괴물 함유 수입품 ²⁾	74.6	- 24.4	- 6.2	12.0	-0.9	
개인재단 부과세						
순투자소득 ⁴⁾	191.7	297.1	502.7	720.0	490.4	1, 2%
추가 소비세 ⁵⁾	0.9	1.1	2.0	3.1	4.5	
폐병(Black Lung) 기금 ²⁾	0.3	0.1	0.0	- 0.0	- 0.0	
연금 등:	-	-	-	-	-	
최소 자금기준 이하	6.4	11.5	5.3	0.7	1.9	5, 10%
비공제 기여	2.7	5.8	3.8	12.1	12.1	10%
개인은퇴연금 초과기여	8.5	6.5	8.3	68.1	-0.0	6%
금지된 거래	9.0	6.3	-	1.1	0.2	5%
최소금액 지불 미수	N/A	N/A	N/A	N/A	N/A	
일부 초과기여	4.1	9.0	6.3	0.5	0.0	10%
연금자산 고용인 이전	20.2	27.3	22.3	2.1	0.2	20%
기타거래	N/A	N/A	N/A	N/A	N/A	-
벌금 ²⁾	7.4	8.9	3.7	4.0	1.9	
미지급 투자금						
부동산투자기금	0.7	1.3	0.3	0.2	0.0	4%
규제투자회사	5.1	5.5	5.4	6.1	1.9	4%

<표 IV-17>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1995	1997	1999	2001	2002	대표세율
국내원유 초과이익세¹⁾	- 117.5	- 10.4	0.1	-	-	'88 폐지
기타 IRS 세금 ²⁾	20.1	31.3	47.4	131.7	106.2	
분류불명 ⁶⁾	N/A	N/A	6,185.4	335.7	369.4	
관세청, 알콜·담배·총기청						
총징수액	14,317.4	13,883.0	13,490.2	15,822.2	17,034.2	
총납부의무세액 ⁷⁾	13,809.6	13,772.8	13,478.8	15,770.9	16,873.2	
증류주						
국산주	2,995.0	2,927.6	2,974.7	3,004.3	3,138.7	\$13.5/proof 갤런
수입주	652.3	687.2	758.7	892.2	901.2	\$13.5/proof 갤런
포도주						
국산주	469.1	479.7	504.0	498.5	513.6	\$1.07-13.50/갤런
수입주	119.9	159.6	154.9	168.7	193.7	\$1.07-3.4/proof 갤런
맥주						
국산주	3,174.8	3,146.5	3,168.2	3,171.4	3,236.2	\$7-18/B
수입주	192.3	241.4	321.3	383.8	414.9	\$18/B
담배제품						
국산품 ⁸⁾	5,865.9	5,819.6	5,189.7	7,120.3	7,763.7	
일반담배 ⁸⁾	5,868.2	5,898.2	5,147.4	7,013.0	7,643.2	\$19.5~40.95/천개
시거 ⁸⁾	39.1	59.8	69.5	116.4	142.1	\$1.828~48.75/천개
종이·튜브용 ⁸⁾	1.0	0.8	1.2	0.9	1.0	\$0.0122~0.0244/50개
쌌는코담배 ⁸⁾	28.6	29.2	29.9	43.7	49.4	\$0.195~0.585/파운드
파이프용담배 ⁸⁾	5.1	4.1	3.9	13.9	15.4	\$1.0969/파운드
재고	-	-	-	261.9	115.8	
수입품	44.9	53.8	114.5	252.2	404.3	
총기 및 탄약	184.3	150.8	188.0	176.0	205.0	10, 11% 판매가격
특정 직업세	111.0	106.7	104.7	103.6	101.9	\$250~ \$1,000/업자

주: 1) IRS 기준의 총 부과세액. 2) 총 징수액. 3) 휘발유세에 부가되는 세금임. 4) 비과세 자선기금 및 해외민간 기금 제외. 5) 자영거래, 법정 지급금, jeopardizing investment, 과세대상 지출 등에 대한 세금임. 6) 1998년 이후 특정 소비세로 분류되지 않고 Federal Tax Deposit System을 통하여 징수한 세금 포함. 7) 관세청이 징수한 수입품에 대한 세금 포함. 8) 과세 조정 이전의 통계임.

자료: 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Fall 2002, Pub. 1136 and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Tax Collections.

나. 연방소비세 과세행정

1) 세금신고 및 납부

대부분의 연방소비세는 4월 30일을 기점으로 분기별로 미국 국세청(신시내티)에 Form 720을 작성, 신고한다(수정신고는 Form 720X). 그러나 월별 신고가 원칙인 도박세(Form 730), 연별 신고의 도로사용세(Form 2290), 유류의 장치장과 운송자(월별 기준, Form 720-TO, CS)는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gas guzzler(Form 6197), 환경세(Form 6627)의 경우 Form 720과 함께 다른 신고서를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간 세금신고가 연기될 수 있다(Sec. 6081).

연방소비세의 경우 은행 등 지정된 기관에 납부의무가 있는 세액의 95%¹⁷⁰⁾를 사전에 예탁하여야 한다(Reg.§40.6302(c)-(f)). 신고는 분기별로 하지만 세금 예탁은 1개월에 두 번씩 하여야 한다. 만약 연간 총예탁금이 20만달러를 초과하면 전자이전기금(Electronic Fund Transfer)을 이용하여 예탁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EFTPS).

95%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는 세금 예탁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Safe Harbor Rule, §40.6302(c)-1(b)(2)(i)). 1) 현 분기에 납부한 각 예탁금이 이전 분기('look back quarter') 순 납부의무세액의 1/6 보다 적지 않고 2) 적시에 예탁되며 3) 현 분기에 부족한 금액이 세금신고일까지 납부되며 4) 이전 분기에 부과된 세금이 현 분기에 없는 경우.

예탁 의무에서 면제되는 세금은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 사치세와 gas guzzler세 그리고 분기별로 신고하는 낚시용구, 화살, 내륙 수상운송 등으로 세금신고서와 함께 납부한다. 또한 분기별 순납부세액이 2,500달러 이하이면 예탁의무가 면제된다. 사전 예탁을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월별 혹은 1개월에 두 번씩 신고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

170) 납부의무세액이란 환불이나 할인 등에 따라 조정된 세액을 의미한다. 납부의무가 발생한 주기의 세액을 계산하여 예탁할 수도 있고 해당 주기가 속한 달의 총 납부의무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예탁할 수도 있다. 통신 및 운송 연방소비세의 경우 실제 징수한 세금이 아니라 구매자에게 청구한 세금 혹은 통행권에 기초한 세금을 예탁할 수 있다.

총기류와 주류 및 담배는 수입 혹은 국산 여부에 따라 관세청과 알콜·담배·총기청(Federal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이 과세행정을 담당한다. 주류와 담배제품의 세금납부는 ATF Forms F 5630.5, 총기류는 Form 5300.26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과표, 세금공제 및 환급

소매 및 제조업자 세는 과세대상 제품이 판매 혹은 임대된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보험, 운송, 배달, 설치료 등 제품 배송과 관련되어 실제 발생한 비용은 제외된다(Reg. §48.4216(a)-2(b)). 제품의 반환, 매입자에게 제공된 할인이나 공제에 따른 가격 조정(일부는 지역 광고비도 포함)도 가능하다. 이외 농업, 비도로, 수출, 교육용 운송, 지역 공공버스용 유류는 비과세된다.

유류를 제외한 여타 항목의 가격조정은 원칙적으로 미리 예상되어 신고될 수 없다. 하지만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실제 판매 및 조정된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원래 가격과 조정에 따른 공제 혹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Sec. 6316(b)(91)(A)). 이 밖에 지방판매세도 과표에서 제외된다. 추가 공정을 위하여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 제품을 매입한 생산자는 판매가격 혹은 해당제품의 첫 생산자에게 지불한 금액 즉,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Sec. 4223(b)(2)). 단 이 경우 제품 반환을 제외하면 가격조정을 할 수 없다.

과다납부된 세금은 Form 720을 통하여 이자와 함께 세금공제를 받거나 Form 8849 혹은 Form 843을 통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나 환급은 세금신고 후 3년 혹은 세금납부 후 2년 중 늦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Sec. 6511(a)). 과다세금이 제3자로부터 징수한 것이라면 해당 세금을 환불해준 사실이 서약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할인 등의 가격조정, 반품 등의 사유로 인한 세금공제나 환급도 가능하다(Sec. 6416(b)(1)(A)).

3) 세금징수 및 조사

연방소비세는 세금신고서를 기초한 과세를 통하여 징수된다. 신고의 결함, 체납, 벌금, 이자 등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assessment)는 일단 적정 과세(prima facie correct)로 간주되며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부담은 납세자에게 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년간 신고에 대한 오류를 과세할 수 있다. 단, 신고해야 할 세금을 누락하고 그 금액이 신고세액의 25%를 초과하면 기소시효는 6년으로 늘어난다(Sec. 6501(a),(c),(e)).

납세자나 납세의무자는 세금신고서에 납세 의무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산정, 납부하는데 만약 납세자가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고 통지일로부터 30일까지 세금납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30-days letter, Sec. 6331(d)).

통지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납세자는 IR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절차는 관련 세액에 따라 정식 서면항의(1만달러 이상), 약식 서면이의(2,500~1만달러) 그리고 구두이의(2,500달러 이하)로 나뉘어진다. IRS의 행정이의 절차를 원하지 않는 자는 조세심판소에 직접 제소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세금의 과세 및 징수를 국세청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세금통지가 된 시점에서 즉각 납부하여야 한다(Jeopardy assessment, Sec. 6862(a)). 이 때 납세자는 납세 의무액에 상당한 보증금(bond)을 제출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세금납부나 보증금 제출을 거부하면 국세청은 압수 등의 방법으로 세금징수를 강제할 수 있다(levy, Sec. 6331(b)). 만약 세금부담 의무가 있는 구매자가 세금납부를 거부할 경우 판매자 등 납세자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을 구매자에게 과세를 할 수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이 정확한 금액의 세금이 납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한 장부 등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기소시효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과세대상 물품을 추가 공정을 위하여 여타 제조업자에게 세전 가격으로 판매한 납세자는 구입자로부터 면세 증명서류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4) 처벌과 과징금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25%를 한도로 납부할 세액의 5%가 매월 벌금으로 가산된다(Sec. 6651(a)). 단,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벌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고의적인 신고 기피의 경우 벌금은 5%가 아니라 75%를 한도로 매월 15%가 된다.

이자는 과세 결정이나 통지 없이도 붙기 시작한다(Sec. 6601(a)). 과소납부에 의한 체납액에 대한 이자는 3개월 정부채권(TB)의 이자율에 3%가 합산된 이자율과 같다. 주식회사의 체납액이 상당할 때에는 이자율이 연방 단기이자율에 5%의 금리를 합한 것과 같다(Sec. 6621(c)). 이자 이외에 합리적 사유가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가 이루어질 때까지 총 25%를 한도로 매월 체납세금의 1/2에 상당한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Sec. 6651(a)).

세금 예탁을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은 예탁을 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변하는데 이 기간이 5일을 넘지 않으면 세금의 2%, 5~15일은 5% 그리고 15일 이상은 10%이다(Sec. 6656(b)). 그러나 체납통지서 날짜로부터 10일 혹은 지체 없는 납부(jeopardy)를 요구한 날이 경과한 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은 15%로 증가한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받지 않거나 혹은 회피하는 자 등은 해당 세금의 10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Sec. 6672(a)). 여기서 의도적(willfully)란 자발적, 의식적 그리고 고의적임을 의미한다. 벌금이 부과된 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벌금의 1/2에 상당한 보증금을 제공하고 다음의 행동을 취하면 벌금이 유예된다. 환불소송을 제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환불 요청이 거부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밖에 형사처벌로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자는 중죄(felony)로 간주되어 여타 벌금과 함께 유죄 판정시 소송비용 이외 10만달러(주식회사는 50만달러) 혹은 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Sec. 7201). 또한 고의적으로 세금을 받지 않거나 책입하지 않는 자는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Sec. 7202). 이 밖에 고의적으로 세금 신고를 오류로 하거나 이를 도운 자와 과세대상 물품을 국세청으로부터 은폐한 자 등도 소송비용 이외 10만달러(주식회사는 50만달러) 혹은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Sec. 7206).

다. 소매세(Retail Taxes)

1) 사치세(Luxury Taxes)

원래 사치세는 1990년 당시 고급 승용차, 보트, 비행기 그리고 귀금속과 모피 판매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 처음에는 일정 한도의 초과 금액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부과되었다¹⁷¹⁾. 세금부과 한도는 자동차 3만달러, 보트 10만달러, 비행기 25만달러, 귀금속과 모피는 1만달러 이상의 제품으로 정부가 구입한 자동차와 보트 그리고 영업용 비행기는 면제되었다. 원래 과세기한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였으나 1993년 당시 승용차를 제외한 다른 제품에 대한 사치세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구입 지연이 있어 기업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는 2002년 12월 31일에 사치세 과세가 폐지되었다.

<표 IV-18> 미국 사치세(Luxury Taxes) 연도별 과세액

(단위: 백만달러)

세목	1991~1998	1991~1993	1994~1998
총합	2,948.7	887.2	2061.6
고급승용차 (2003년 폐지)	2,872.9	807.1	2,065.7
보트 (1993년 폐지)	34.2	35.9	-1.7
비행기 (1993년 폐지)	0.9	0.9	-0.02
귀금속 (1993년 폐지)	39.4	41.6	-2.2
모피 (1993년 폐지)	1.5	1.7	-0.2

주: 음의 값을 갖는 과세액은 정산후 환급액을 의미함.

자료: ECO/WKP(2001)39, OECD.

승용차를 제외한 사치품목 중 1993년에 폐지되기까지 세수실적을 보면 1991년부터 3년간 총 8.9억달러 중 승용차가 약 8.1억달러로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트 36백

171) The Revenue Reconciliation Act of 1990.

만달러, 귀금속 42백만달러에 달하였다. 그후 승용차에 대한 세수는 연간 약 3~4억달러에 이르렀다.

1993년 이후 2002년까지 유지된 고가 승용차 사치세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이 된 일정 금액 이상의 자동차 판매가격에 부과되며 임대도 판매로 간주된다(Sec. 4002). 과세대상은 6,000 파운드 이하의 4륜 승용차나 트럭, 밴이며 리무진은 중량과 관계없이 사치세가 부과된다(Sec. 4001). 그러나 사업용이나 택시와 같은 운송용으로만 쓰이는 승용차, 경찰, 화재예방, 공공 안전 등 정부 구입 자동차와 구급용 자동차는 면제되며 장애자를 위한 부품도 면제된다.

2002년 말에 폐지된 승용차 사치세는 판매자가 세금을 연방소비세신고서(Form 720)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한다. 과표는 일반적 상거래에서의 소매가격으로 승용차 사용을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는 모두 포함되며 그 대신 지방정부의 일반판매세는 면제된다. 또한 구형차의 물물교환(trade-in)은 과세가격 결정시 고려되지 않는다.

사치세 세율은 1996년 9%에서 매년 1%씩 하향 조정되고 2002년 12월에 폐지될 예정이다. 과세대상 자동차는 1990년 당시 30,000달러 이상의 자동차로서 그후 누적된 물가상승률에 따라 2,000달러 단위로 인상되어 종료 예정인 2002년에는 40,000달러 이상의 차에 대하여 3%가 과세되었다.

청정연료나 전기자동차의 경우 이들 부품의 비용은 과세대상 가격에서 공제된다(Sec. 4001(a)(2)). 환급대상 구입자는 판매자에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신 판매자는 Form 843을 작성, 신고함으로써 환급을 받는데 환급신고 기간은 세금납부일로부터 2년 혹은 신고일로부터 3년 중 더 늦은 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Sec 6416).

2) 특정 유류세(Special Fuels Tax)

연방도로의 건설과 유지를 위하여 6개의 소비세(Highway Trust Fund Excise Taxes)가 부과되는데 이 중 하나가 특정 유류소비세이다. 이외 3개 소비세는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며 나머지는 대형 운송차, 타이어, 대형 운송차에 부과되는 사용세이다.

특정 유류세는 Sec. 4081에 근거하여 제조업자 단계에서 과세되는 제품으로 환급 혹은 공제가 없을 경우에만 부과된다. 한 예로 휘발유는 유류세가 아닌 제조업자세로 과

세되는 데 비하여 다른 유제품은 제조업자세가 부과되지 않을 때 특정 유류세가 부과된다(Sec. 4041(a)(1)(B)). 따라서 특정 유류세와 제조업자세의 유류 과세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액화 석유가스를 제외한 특정 자동차 연료(special motor fuels)와 휘발유, 항공유 그리고 경유에는 유류세에 추가하여 지하저장탱크 누출기금(LUST, Leaking Underground Storage Tank)으로 0.1센트/갤런의 세금이 부과된다(Super Fund Act of 1986). 이 기금은 저장탱크 밖으로 유출되었지만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유제품의 정화를 위하여 사용된다(Sec. 4041). 2005년에 이 기금은 폐지될 예정이다.

IRS Code 4041조에 따라 다음의 특정 유제품에는 연방소비세가 적용된다. 경유 및 등유, 휘발유 대체 자동차 연료, 압축 천연가스, 비상업용 항공유, 일부 유류 혼합제 그리고 내륙 수상운송용 연료. 이들 유제품은 판매자가 자동차나 항공기 탱크에 공급될 당시 과세대상 판매로 간주된다. 또한 대량 저장소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과세대상 유류라는 사실을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면 해당 제품은 과세대상으로 간주된다. 만약 구매자가 이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구매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제품은 면세된다. 1) 비도로 상업용¹⁷²⁾ 2) 농업용 3) 선박이나 항공기용 4) 수출용 5) 정부 및 비영리 교육단체용 6) 지방 공공버스용 등. 일반적으로 면세가 허용되려면 구입자로부터 면세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경유, 등유, 휘발유 대체품, 비휘발유 항공유에 최소한 알콜 10%를 혼합하면 소비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Sec. 4041(k)). 여기서 알콜은 재생산되는 원료(예, biomass)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에서 채취되지 않은 메탄올이나 에탄올 등을 의미하며 경감세율은 제품에 따라 다르다.

특정 유류세의 과세장소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유제품 비축지(terminal)나 정제공장에서 반출될 때 혹은 수입 당시 세금이 부과된다. 다음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 대비하여 구매자에게 세금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신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유류세와 관련하여 IRS에 등록이 필요한 업자는 1) 휘발유 이외 항공연료의 제조자, 수입자, 도매업자 2) 상업용 항공연료 구매자 3) 유제품 비축장소(terminal) 이외 장소

172) 즉 사업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Sec. 4041(b)(1)(A)).

에서 유제품을 혼합하는 자 4) 유제품 정제업자, 비축업자, 휘발유 구매 산업 5) 경유용 버스, 기차 운영자 6) 정부 및 농업용 비염색(undyed) 경유나 등유의 최종 판매자 7) 대규모 등유 최종 판매자. 판매자는 비과세 판매, 구입자 이름과 구입날짜, 구입량 등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가) 경유 및 등유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유용 자동차나 기차의 소유주, 임차인 혹은 운영자에게 판매 혹은 사용되는 등유와 경유에는 24.3센트/갤런의 세금이 부과된다. 물론 제조단계에서 제조업자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특정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승객 20명 이상의 시내버스는 7.4센트/갤런(2005년 4.3센트/갤런)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대중교통용 도시간 버스와 학교용 버스는 유류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 세금이 면제되는 경유나 등유는 과세대상 제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염색(dyed)되어야 한다. 또한 염색된 유류가 과세대상 목적으로 사용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g. §48-4802-4(a)(1))¹⁷³⁾. 이외 공제나 환급 혹은 세금을 내지 않은 제품이 공급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된다(back-up taxes). 이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영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판매자도 해당제품이 과세용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특정 유류세는 유제품 비축장소(terminal)나 정제공장에서 반출될 때 혹은 수입 당시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유는 운송용 연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경유용 자동차나 기차의 소유주, 임차인 혹은 운영자에게 판매되는 휘발유를 제외한 어떠한 액체물질로 정의가 확대된 바 있다(Sec. 4041(a)(1)(A)(i)).

나) 특수 자동차 연료(Special motor fuels)

휘발유 대체재로 알려진 벤젠, 나프타, 액화 석유가스, 천연가스 등 특정 유류가 연

173) 염색된 유류를 과세대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0달러와 갤런당 10달러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Sec. 6715(b)(1)).

료용으로 자동차나 모터보트의 소유주 등에게 판매되면 이를 특수 자동차 연료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18.3센트/갤런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이 밖에 경유용 차나 기차에 판매될 때는 24.3센트/갤런 그리고 경유용 항공기는 21.8센트/갤런이 부과된다(2007년 4.3센트/갤런).

특수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은 이전에 과세되지 않은 제품이 처음 사용 혹은 판매될 때 부과된다. 따라서 과거 휘발유나 경유 등으로 과세된 제품에는 공제나 환급이 없는 한 특정 연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품 구입시 얼마큼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지 모르면 판매자는 이를 과세 제품으로 판매하는 대신 구매자가 나중에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반면 구매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것임을 구입 이전에 판매자에게 제시하면 판매자가 전량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연료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세금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

다) 압축 천연가스

1993년 이후 압축천연가스(CNG)도 자동차나 모터보트에 공급될 때 유류세가 부과되며 판매용이 아니면 해당 자동차의 운영자에게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 자동차 등에 공급되지 않은 대량 판매는 구입자가 연료용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판매자가 인지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시할 때 판매자에게 유류세가 부과된다.

압축용 가스에 대한 세율은 1천 큐빅피트(MCF)당 48.74센트이며 이전에 휘발유, 경유 혹은 항공용 연료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가스가 사용 혹은 판매될 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시내운송 및 학교버스용 가스는 면세된다. 이외 상업용 어선의 연료로 이용되는 가스도 면세되는데 면세를 위해서는 구입자가 면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비상업용 항공유

비상업용 비행¹⁷⁴⁾을 위하여 항공기 소유주 등에게 판매된 연료(휘발유 제외)에도 유류세가 부과된다(Sec. 4041(c)1)). 이외 Sec. 4091에 의하여 항공용 연료로 과세된

경우를 제외한 연료의 사용도 과세된다.

휘발유를 제외한 항공유는 21.8센트/갤런이 부과되는데 2007년 이후에는 해당 세금이 폐지될 예정이다. 다른 용도로 과세된 이후 항공용 연료로 사용되고 과세 당시 세금이 항공유 유류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세금으로 추가로 부과되어야 한다 (Sec. 4041(e)).

마) 내륙 수상연료

특정 수상항로에서 상업용 운송에서 사용되는 선박의 액체연료¹⁷⁵⁾도 유류세가 부과된다(Sec. 4042(a)).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선박을 운영하는 자가 사용자로 간주되어 Form 720(Quarterly Federal Excise Tax Return)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g. §48.4042-1(a)).

수상 운송 유류세는 선박에 연료가 공급될 때가 아닌 실제 사용되었을 때 과세된다 (§48-4042-1(e)). 뉘시용, 해양용, 승객용 그리고 지방정부 소속 선박에는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륙 수상세 20센트/갤런과 적자재정 감축세 5.3센트/갤런을 합한 세율이 적용된다(Sec. 4042(b)(1)). 과세대상 선박의 운영자는 사용된 연료량과 구입날짜, 항해일정과 항로 등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3) 대형 자동차(Heavy Trucks, Trailers and Tractors)

완전 적재를 기준으로 중량이 33,000파운드 이상인 트럭, 26,000파운드 이상의 차와 함께 사용되는 트레일러 그리고 트레일러와 함께 도로운송에 이용되는 트랙터의 판매(혹은 사용)시 판매가격의 12%가 소매세로 부과된다(Sec. 4051(a))¹⁷⁶⁾.

174) 비상업용 항공이란 운송을 위하여 고용된 경우(hired transportation)를 제외한 비행기 사용으로 어떤 업체가 농부에게 고용되어 비행기로 비료를 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175) 선박의 액체연료에는 경유, B-C유, 특정 유류, 휘발유 등을 포함한다.

176) 판매 당시 함께 구입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도 마찬가지로 소매세가 적용된다. 자동차 운전이나 외형에 필수적인 부품이 결합된 판매는 청구방식이나 배달시점과 관계없이 이들 부품의 소매 판매에 세금이 적용된다(§48-4061(a)-4(b)).

이 밖에 과세대상 자동차가 사용된 후 6개월 이내에 교환품이 아닌 부품이나 부속품(accessories)이 설치되면 부품비용과 설치료도 소매세 대상이다(Sec. 4051(b)(1)). 단, 6개월간 총 부품 설치비용이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매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형 자동차에 대한 소매세는 2005년 10월 폐지될 예정이다.

판매자는 당해 세금을 Form 720으로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부품 설치를 하는 업자도 납세의무자이다. 임대도 임대기간과 관계없이 판매(1년 이상 임대)나 사용(1년 이하 임대)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에게 소매세가 부과된다(Sec. 4052(a)). 승용차나 트럭에 부착되는 가정용, 농업용 트레일러, 응급차, 콘크리트 배합차, 쓰레기차, 철도 트레일러 등은 소매세가 면제된다(Sec. 4053).

이들 자동차의 과표는 자동차 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단, 적정한 수준의 가산금(mark-up)이 명기된 송장이 없거나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중개업자가 개입한 경우 그리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혹은 관계인(related person)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과 가산금이 합친 금액이 과표가 된다(presumed retail sales price, Sec. 4052(b)(3)(A)). 여기서 가산금은 판매대금에 가산율(트럭, 트랙터는 4%, 트레일러는 0%)을 곱한 금액이다(presumed markup percentage). 또한 과표에는 현금 이외 서비스나 기타 방식으로 제공된 반대급부도 포함한다. 제조업자 등에 의한 임대의 경우 판매가격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거래되는 가격(constructive sales price)과 가산금이 과표가 된다.

라. 제조업자 세(Manufacturers Taxes)

1) 과세대상과 과표

가) 납세의무

과세대상 물품을 직·간접적으로 판매, 사용 혹은 임대¹⁷⁷⁾할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

177) 임대, 분할납부 또는 조건부 판매 등의 경우 세금은 임대료 등에 당시 세율을 곱하는 비율 분할 방식으로 부과된다(Sec. 4216(c)), §48.0-2(b)(2)). 따라서 제조업자는 첫 임대시 모

자는 제조업자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품 업자도 이들 부품들을 조립하면 과세대상 물품이 될 경우 제조업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Knockdown condition, §48.0-2(a)(4)). 제조업자의 사망 혹은 채권으로 과세대상 물품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소유주가 제조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Sec. 4219).

제조업자 세는 판매된 과세 물품이 구입자에게 이전 혹은 배달될 때 부과된다 (§48.0-2(b)(1)). 수입업자의 경우 판매에 앞서서 수입 당시 세금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는데 단, 이 경우 첫째, 도매가격이 과표가 되며 둘째, 사전 납부방식을 모든 수입품에 적용하여야 하며 셋째, 수입업자는 정확한 장부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조업자 등은 Form 720(Quarterly Federal Excise Tax Return)을 작성, 신고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납부는 1개월마다 하지만 납부세액이 상당할 경우 전자전송방식(EFTPS)을 이용한 세금납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나) 면세대상

과세대상 제품이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구입되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자 세가 면제된다(Sec. 4221). 1) 추가적인 제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¹⁷⁸⁾ 판매되는 물품(sold for use in further manufacture) 2) 직·간접적으로 판매된 수출용 물품 3) 선박이나 항공기 공급품 4) 정부 사용품 5) 비영리 교육단체 물품 6) 공중교통 버스의 타이어 구입. 단, 이러한 예외가 모든 제조업자 세의 대상물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면세단체나 용도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다(<표 IV-19> 참조).

든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일정 기간 총납세액이 납부의무세액을 넘지 않을 때까지만 세금을 납부한다. 여기서 납부의무세액은 첫 임대 당시 같은 물품이 소매단계에서 판매될 경우 부과되는 세액을 의미한다(Sec. 4217(b)).

178) 1차 구입자가 제조생산에 직접 사용한 경우나 재구매자의 제조 생산에 사용할 물품을 1차 구입자(중개업자)가 구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 IV-19> 연방정부 소비세 면세단체·용도 및 면세 제외 품목

면세단체·용도	면세 제외 품목
비영리 교육단체	gas guzzler, 석탄, 유류제품, 항공유, 백신, 사치세 트럭, 트레일러 등의 소매세, 타이어(2005년 이후)
제조생산	석탄, 유류제품, 항공유, 사치세 트럭, 트레일러 등의 소매세
수출	유류제품, 항공유, 수출된 석탄
선박, 항공기	유류제품, 항공유, 백신, 사치세 트럭, 트레일러 등의 소매세

주: 시내버스와 학교버스가 구입한 타이어는 제조세가 면세: 시내버스는 승객 20인 이상으로 정기적인 운행을 하는 버스를 의미함.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면세를 위해서는 제조업자와 해당 면세 구입자가 Form 637을 작성하여 IRS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Sec. 4222(a)). 등록 요건에서 면제되는 자는 정부기관,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구매자 그리고 면세증명서를 작성하는 선박이나 비행기 공급물품의 매입자이다.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합리적인 노력으로 해당 물품이 면세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reasonable diligence). 즉, 구입자가 IRS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이나 면세증명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자 등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48.4221-1(b)(3)).

제조 생산시 사용되는 면세품(sold for use in further manufacture)이란 또 다른 과세대상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부분품을 의미하며 생산시 소비되어 물리적인 부분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ec. 4221(d)). 한편 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된 물품은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생산 용도임을 증명하는 서한이 원제조업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제조업자에게 세금납부 의무가 부과된다(Sec. 4221(b)). 그러나 구매자가 면세품을 과세대상의 목적으로 나중에 사용하면 구매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Sec. 4223).

제조생산이나 수출 용도에 따른 면세는 6개월간 세금납부가 유예된 것을 의미하며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는 면세품이 수출되었거나 재생산을 위해 판매되었음을 확인하는 서한을 받아야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반대로 이 서한을 확보하지 못하면 납세의무

가 제조자에게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2차 구매자에게 발부한 송장에 추가 제조 용도임을 확인하고 구매자들의 등록번호를 명시하는 것으로 증빙이 가능하다.

수출품의 경우 원제조업자가 공제를 받거나 원제조업자 혹은 수출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물품을 수출할 때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원제조업자의 판매 이후 6개월 이내에 수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가 제공되어야 제조업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이러한 증명은 수출면장, 수출 운송사나 혹은 수입국 세관의 증빙서류 등이다.

선박 혹은 항공기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는 중개인을 통하지 않은 제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물품으로 제한되며 다만 중개인을 통한 판매품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사용되면 제조업자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Sec. 6416(b)(2)). 면세를 위해서는 판매 이전에 제조업자가 선박 혹은 항공기의 소유주 등으로부터 면세증명서를 입수하여야 한다(§48.4221-4(d)(2)).

다) 과표

제조업자 세의 과표는 총판매가격으로서 대가로 지불된 현금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소매단계에서 판매되거나 위탁 판매된 물품 혹은 공정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정된 가격(constructive sales price)이 적용된다. 한 예로 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된 물품(retail sales)의 경우 실제 판매가격 혹은 정상거래에서 도매업자에게 판매된 가격 중에서 최고가격 중 낮은 가격이 과표가 된다(Sec. 4216(b)(1)).

보증 수수료의 경우 제조업자가 물품 구입을 위하여 요구하는 일반적 보증 수수료는 과표에 포함되고 이외 구매자가 따로 요청한 보증에 대한 수수료는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48.4216(a)). 도매단계 판매에서 구입한 물품과 동일한 품목을 보너스로 제공할 경우 이는 선물(gift)이 아닌 가격할인으로 간주되어 전체 거래에 대한 실제 청구금액이 과표가 된다. 한편 과세대상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이 하나의 가격으로 판매되면 비과세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또한 수입업자가 과세대상 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지불한 관세, 운송비 그리고 기타 비용은 과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매자에게 제품 배달을 위하여 지출한 수송, 보험, 설치 및 기타 수수료는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Sec. 4216(a)).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다. 구입자가 아닌 중개인 등 제3자에게 지불된 커미션이나 가격할인은 공제되지 않으며 확실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가격할인이 이행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가격할인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한편 일반 할인의 경우 가격조정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일단 원래 가격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이후 신고에서 할인 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는다. 반품된 물품에 대한 세금을 구입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해당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구매자(도소매업자)가 지출한 지역 광고비는 이를 제조업자가 환급해 줄 경우 그 비용이 판매가격의 5%를 넘지 않는 한 과표에서 제외된다(Sec. 4216(e)(1)).

2) 자동차 관련 품목

제조업자 세가 부과되는 품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목은 1) 정제공장이나 비축 및 유통장소(terminal)에서 반출되거나 2) 수입되거나 3) Sec. 4101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는 업자에게 판매되는 과세대상 연료이다.

과세대상 연료는 휘발유, 경유, 등유로서 휘발유는 가소홀과 첨가제를 포함한다. 휘발유는 또한 옥탄가가 75도 이상인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가솔린으로 정의된다(Reg. §48.4081-1(b)). 특정 유류세가 원래 부과되지 않는 휘발유를 제외하면 이들 유류에 대한 제조업자세는 특정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을 때 적용된다.

<표 IV-20> 과세대상 연료와 세율 및 특성

(단위: 켈런)

과세대상 연료	세율	비고
휘발유	18.3센트	특수연료 생산용은 면세
가소홀	가소홀: 13.2, 14.396, 15.436센트 휘발유: 14.667, 15.579, 16.369센트	가소홀 생산용
경유	24.3센트	기차용(4.4센트), 시내버스용(7.4센트)
등유	24.3센트	1998년 이후 과세
항공유	21.9센트	8.6센트(알콜함유량 10% 이상)

주: 1) 0.1센트/켈런의 지하저장유출기금(LUST)이 2005년까지 추가로 부과됨. 2) 가소홀은 알콜 농도(10%, 7.7%, 5.7%)가 높을수록 세율이 낮음. 3) 이들 연료의 2005년 기본세율은 4.3센트로 인하 예정. 4) 알콜 함유에 따른 감면세율은 2007년 폐지 예정.

가) 휘발유

휘발유가 터미널이나 정제공장에서 반출될 때 제조업자 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휘발유를 비축한 장소, 즉 터미널(terminal) 운영자와 비축 계약을 한 자(position holder)인데 만약 휘발유 비축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자가 아니면 터미널 운영자에게도 세금납부에 공동 책임이 있다. 또한 정제공장에서의 반출시에는 대개 정제공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이 밖의 경우에는 휘발유 소유주에게 그리고 미등록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휘발유를 파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세금은 여타 유류 제품과 마찬가지로 Form 720으로 신고하는데 일반적으로 ½개월마다 Form 8109를 사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예탁하거나 전자 예탁한다. 휘발유에 대한 세율은 18.3센트/켈런이며 2005년 9월부터는 기본세율이 4.3센트/켈런이 될 예정이다(Sec. 4081(a)(2)). 전술한 바 제조업자 세가 면세되는 일반적 규정 이외에도 특수연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휘발유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면세대상자에게 직접 휘발유를 파는 유통업자가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휘발유를 공급받고 면세가격으로 이를 판매하면 납부된 세금을 환급 내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나 구입자로부터 면세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유통업자가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휘발유를 구매하거나 면세대상 사용자에게 휘발유를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세금을 납부한 공급자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면세대상 구매자도 직접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휘발유 소비세는 여타 연료에 대한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연방도로기금으로 투입되어 도로와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건설 및 유지보수에 이용된다. 또한 1990년대에는 일부 세수가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산으로 쓰여지기도 하였다 (Omnibus Budget Revenue Reconciliation Act of 1990, Omnibus Reconciliation Act of 1993)¹⁷⁹⁾. 1933년 처음 도입된 이래 세율은 약 18배, 세수는 170배 증가한 바 있고 휘발유 소비세는 2002년 당시 총세수가 약 209억달러로 연방도로기금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다.

179) 1990년에는 2.5센트/갤런, 1993년에는 6.8센트/갤런이 적자재정에 충당되었으나 1997년 법 개정으로 모든 휘발유 세수는 다시 연방도로기금에 투입된다(Taxpayer Relief act of 1997).

<표 IV-21> 휘발유 소비세 세수와 세율(1933~2002)

(단위: 백만달러)

	세수	세액/갤런		세수	세액/갤런
1933	125	1.0	1968	3,031	4.0
1934	203	1.0	1969	3,284	4.0
1935	162	1.0	1970	3,430	4.0
1936	177	1.0	1971	3,548	4.0
1937	197	1.0	1972	3,741	4.0
1938	204	1.0	1973	3,928	4.0
1939	207	1.0	1974	4,088	4.0
1940	226	1.0	1975	3,980	4.0
1941	343	1.5	1976	4,181	4.0
1942	370	1.5	1977	4,322	4.0
1943	289	1.5	1978	4,444	4.0
1944	271	1.5	1979	4,525	4.0
1945	406	1.5	1980	4,218	4.0
1946	406	1.5	1981	4,008	4.0
1947	434	1.5	1982	4,214	4.0
1948	479	1.5	1983	4,905	4.0
1949	504	1.5	1984	9,022	9.0
1950	527	1.5	1985	9,062	9.0
1951	569	1.5	1986	8,855	9.0
1952	713	2.0	1987	8,925	9.0
1953	891	2.0	1988	9,167	9.1
1954	836	2.0	1989	9,725	9.1
1955	953	2.0	1990	9,466	9.1
1956	1,030	2.0	1991	14,469	14.1
1957	1,458	3.0	1992	14,759	14.1
1958	1,637	3.0	1993	14,753	14.1
1959	1,700	3.0	1994	19,794	18.4
1960	2,016	4.0	1995	19,919	18.4
1961	2,370	4.0	1996	19,654	18.3
1962	2,406	4.0	1997	20,836	18.4
1963	2,497	4.0	1998	20,645	18.4
1964	2,618	4.0	1999	21,237	18.4
1965	2,687	4.0	2000	21,041	18.4
1966	2,824	4.0	2001	20,619	18.4
1967	2,933	4.0	2002	20,942	18.4

자료: Brian Francis, 「Gasoline Excise Taxes 1933-2000」, SOI, IRS.

나) 가소홀(Gasohol)

일반적으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이 가소홀에도 적용된다. 다만 화석연료의 소비 절약을 위하여 가소홀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가소홀은 휘발유와 석유, 석탄이나 가스로 생산되지 않은 메탄올이나 에탄올 등의 알콜을 농도규정¹⁸⁰⁾에 따라 혼합한 연료를 의미한다($\S 48.4081-6(b)(1)$).

알콜 함유량에 따라 가소홀 세율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알콜 10% 이상의 가소홀은 13.2센트/갤런, 알콜 7.7% 이상은 14.396센트/갤런 그리고 5.7% 이상은 15.436센트/갤런이 적용된다. 또한 가소홀 생산을 위한 휘발유에는 생산된 가소홀 알콜 농도에 따라 각각 14.667, 15.579, 16.369센트/갤런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감면세율은 그러나 2007년에 폐지될 예정이며 기본세율도 2005년에 4.3센트/갤런이 될 예정이다. 한편 등유나 경유의 경우에도 알콜 함유량이 10% 이상이고 에탄올이 아닌 알콜을 혼합하면 18.3센트/갤런의 감면세율을 적용받는다.

감면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납세의무자가 가소홀 혼합제조자로 등록된 자로서 휘발유를 반출한 후 24시간 이내에 가소홀을 생산하거나 혹은 납세의무자가 등록된 자로서 구입자로부터 이에 대한 증명서¹⁸¹⁾를 제공받아야 한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휘발유를 알콜과 혼합하지 않을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면세율을 적용받은 이후 알콜을 다시 분리하면 정제업자로 간주되어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Sec. 4081(c)(7)). 휘발유가 판매된 경우에는 반출과 관련된 구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판매되지 않고 반출된 경우에는 반출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이 경우 부가세가 적용되는데 부가세 세율은 알콜 농도에 따라 3.845센트/갤런(10% 이상), 2.887센트/갤런(7.7%) 그리고 2.092센트/갤런(5.7%)이다.

180) 각각 알콜 함유량이 10%, 7.7%, 또는 5.7% 이상 포함된 연료이어야 한다.

181) 휘발유 구입후 구매자가 24시간 이내에 가소홀을 생산한다는 증명서를 말한다($\S 48.4081-6(c)(2)$).

다) 경유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터미널이나 정제공장에서 반출 혹은 수입하는 당시 경유에도 24.3센트/갤런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경유란 휘발유를 제외한 액체연료로 추가 제조 혼합 없이 경유 자동차나 기차에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액체유류를 말한다. 기차용 경유에는 4.3센트/갤런, 일부 시내버스에는 7.3센트/갤런의 감면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경유에 대한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면 두 번째 세금(second tax)은 환급이 가능하다.

등유나 경유에 대한 과세방식도 휘발유와 마찬가지로이지만 휘발유와 달리 면세 경유는 염색(dyed)되어 반출되면 과세되지 않는다¹⁸²⁾. 면세를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IRS에 등록된 자로서 반출 터미널이 사전 승인된 장소이고 염색 등의 표시요건이 준수되어야 한다(Sec. 4082). 이 밖에도 면세를 신청하는 자는 거래에 따른 면세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용으로 사용한 염색 유류에는 제조업자 세가 다시 부과되는데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나 기차의 운영자이며 판매자도 과세 목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 공동 책임이 있다. 이 밖에 염색된 유제품을 과세대상 목적으로 사용 혹은 판매하는 자는 첫 번째 위법의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나 갤런당 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법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추가된다(Sec. 6715).

라) 등유

1997년 Taxpayer Relief Act에 근거하여 등유도 1998년 이후 과세대상 유류에 포함되었다. 세율은 경유와 마찬가지로 24.3센트/갤런이며 항공유에 사용되는 등유는 항공유 세율을 부과받는다. 등유도 경유와 마찬가지로 염색(dyed)되어 반출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등유연료 자동차나 기차에 맞지 않는 펌프(block pump)에서 판매된 등유나 난방용 기름과 혼합되어 사용된 등유에 대한 세금은 등록된 판매자가 신청하면 환급된다(Sec.

182) Clean Air Act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과 장소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염색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48.4082-5(c)).

6427(1)(5)(B)).

마) 타이어

2005년까지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전부 혹은 일부 고무로 만든 타이어에 대하여 제조자나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에게 제조업자 세가 부과된다(재생품은 제외, Sec. 4071). 납세의무는 생산자나 수입 타이어를 판매 당시가 아닌 소매상에 배달할 때 발생한다(Sec. 4071(b)). 세율은 타이어 중량에 따라 누진 과세된다. 전술한 바 일반적인 면세 규정이 타이어에도 적용되는데 면세를 위해서는 제조업자와 판매자가 모두 등록을 하고 송장에 등록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표 IV-22> 타이어 제조세

(단위: 파운드)

중량	세율
~40	무세
40~70	15센트/파운드(40파운드 초과분)
70~90	\$4.5+30센트/파운드(70파운드 초과분)
90~	\$10.5+50센트/파운드(90파운드 초과분)

바) 항공연료세(Aviation fuels)

생산자¹⁸³⁾나 수입자에 의한 항공유 판매에는 21.8센트/갤런의 세금이 부과된다(Sec. 4091)¹⁸⁴⁾. 항공유는 등유와 Sec. 4081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유류 이외 항공기 연료로 적당한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항공유에 알콜 10% 이상을 혼합할 경우 세율은 8.6센트/갤런으로 경감된다. 상업용 항공연료의 경우에도 경감된 세율 4.3센트/갤런이

183) 생산자는 정제업자 이외에도 도매업자와 중개업자를 포함한다(Sec. 4093(b)(1)).

184) 기본세율은 다른 유류와 달리 2005년이 아닌 2007년에 4.3센트/갤런이 될 예정이다.

적용된다(Sec. 4092(b)).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항공유를 판매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임원, 종업원 혹은 중개인이 의도적으로 이를 방치할 때 이들도 공동 책임이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세금납부를 하지 않도록 원인 제공한 자도 마찬가지로(Sec. 4103).

농업용, 군사용이나 지방정부용 항공연료 그리고 외국행 국내 항공사 연료는 면세되며 외국 항공사도 당해 국가가 미국 항공사에게도 면세를 허용하면 세금이 면세된다(reciprocal privileges). 면세를 허용받으려면 면세자의 주소, 이름, 납세 ID, 등록번호(해당되는 경우) 등을 기재한 면세증명서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 Gas Guzzler Tax

환경안전청(EPA)이 규정한 연비기준(fuel economy)을 충족하지 않는 자동차(automobile)를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Sec. 4064(a), (b)). 여기서 자동차란 적재량이 없는 상태에서 중량이 6,000파운드 이하인 도로용 휘발유 혹은 경유차를 의미한다(Sec. 4064(b)(1)(A)). gas guzzler tax의 면세가 허용되는 경우는 해당 제품이 자동차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로서 응급차, 경찰, 화재 예방차 그리고 승객용이 아닌 자동차이다(Sec. 4064(b)(1)(B), (C), 49 CFR 523.5).

<표 IV-23> Gas Guzzler Tax 세율

(단위: 마일/갤런)

연비	세율	연비	세율
~22.5	0	16.5~17.5	3,000
21.5~22.5	1,000	15.5~16.5	3,700
20.5~21.5	1,300	14.5~15.5	4,500
19.5~20.5	1,700	13.5~14.5	5,400
18.5~19.5	2,100	12.5~13.5	6,400
17.5~18.5	2,600	~12.5	7,700

자동차 임대도 판매로 간주되며 이 때 납부할 세금은 전체 가격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gas guzzler tax에서 납부의무가 있는 총세금을 곱한 금액이다(Sec. 4217(e)). 임대된 자동차가 세금을 완전히 납부하기 전에 판매되면 그 차액은 제조업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3) 기타 제조업자세 대상품목

가) 석탄(Coal)

생산자가 탄광에서 채굴한 석탄이 판매될 때 과세된다(Sec. 4121(a)). 이로 인한 세수는 장애기금(Black Lung Disability Benefit Trust)에 적립되어 광부를 위하여 사용된다. 석탄세 세율은 채굴장소에 따라 다른데 지하탄광 석탄은 톤당 1.1달러와 판매가격의 4.4%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지표면 채굴 석탄은 톤당 0.55달러와 판매가격의 4.4% 가운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Sec. 4121(b)). 단, 지하탄광 석탄 톤당 25달러 이하 그리고 지표면 석탄은 톤당 12.5달러 이하로 판매되면 종가세(4.4%)가 적용된다.

나) 스포츠 낚시기구(Sport Fishing Equipment)

제조업자,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스포츠 낚시도구에는 판매가격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Sec. 4161(a)). 낚시용구와 함께 판매되는 부품이나 부속품(액세서리)도 해당 제품의 사용이나 외형에 필수적인 부품이면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Reg. §48.4161(a)). 이 밖에 전기 선외 보트모터와 어류를 찾는 데 사용되는 음파탐지기도 판매가격의 3%(음파탐지기는 30달러 한도)를 세금으로 내야한다(Sec. 4161(a)(2)(A)).

세금은 유류와 같이 예탁하지 않고 연방소비세 신고서인 Form 720을 작성할 때 납부한다. 즉, 매 4분기 이후 첫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다) 활 및 화살 부품(Bows and Arrow Components)

제조업자,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10파운드 이상의 활과 과세대상인 화살의 부품 및 부속품¹⁸⁵⁾에는 판매가격의 1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Sec. 4161(b)). 한편 18인치 이상의 화살을 구성하는 화살대, 축, 우관 등에는 12.4%의 세금이 추가로 적용된다.

라) 총기류(Firearms)

제조업자,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권총에는 판매가격의 10% 그리고 탄약과 탄창 및 장총 등 기타 총기류에 11%의 세금이 적용된다(Sec. 4181). 보증수수료나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등도 과세대상이며 단, 배송료, 보험료나 설치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해 세금은 총기류를 판매하는 제작자나 수입업자 혹은 생산자에게 부과된다. 1990년 이후 총기류세는 알콜, 담배 및 총기청(ATF)이 관장하며 납세자는 Publication 5300.26을 작성, 신고한다(27 CFR Part 53). 연방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모든 총기류는 연방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National Firearms registration and Transfer Record). 납부해야 할 세금이 분기별로 2,000달러를 초과하면 Form 5300.27과 함께 세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총기류를 제작 혹은 수입하는 자에게는 직업세가, 총기류를 남에게 양도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마) 백신세(Vaccines Tax)

인간에게 투약되는 과세대상 백신의 경우 미국 국내에서 판매되면 1회 분량에 대하여 75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Sec. 4132). 백신세는 백신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기금으로 사용된다.

185) 10파운드 이상의 활과 화살, 그 부품 그리고 화살통 등을 말한다.

마. 시설 및 서비스(Facilities and Services)

1) 통신(communications)

통신 관련 세금은 2001년 당시 약 57.4억달러로 연방소비세 수입의 약 8.4%를 차지한다. 1898년 미·스페인간의 전쟁재정법(War Revenue Act)에서 처음 부과된 이 세금은 사치세의 역할을 하였고 1901년에 폐지된 후 1917년 부활하였다가 1932년 재정법(Revenue Act)으로 영구히 도입되었다.

지역전화, 장거리 전화(toll telephone service)¹⁸⁶⁾ 그리고 전신타자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지불된 현금과 서비스 등 대금에는 3%의 세금이 부과된다(Sec. 4251). 1997년부터 전화카드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카드 판매자에게 카드를 매매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 과표는 전화카드 액면가액이며 카드 매매업자는 세금을 서비스 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Sec. 4251(d)).

장치료는 과표에서 제외되지만 이들 기구의 보수나 대체에 따른 수수료는 포함된다(Sec. 4253(g)). 동전전화기와 전화를 이용한 보안시스템 서비스도 면제된다. 언론기관과 라디오 뉴스 및 스포츠 중계 서비스는 언론기관이 면세를 확인하면 장거리 전화 세에서 면제된다(Sec. 4253(b)). 그러나 특정 집단을 위한 특정 정보 제공 서비스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지역정부와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병원, 교육단체 기부단체도 세금이 면제된다.

서비스를 받는 자가 세금을 낼 의무가 있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통신세를 징수, Form 720으로 신고한다(§49-4251-2(c)). 서비스업자가 의도적으로 세금징수를 방기하면 100%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비스업자는 분기의 첫 2개월 중 한 달 납부 의무액이 100달러를 초과하면 이를 예탁해야 하며 3개월째 세금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만약 소비자가 통신세 납부를 거부할 경우 통신세 징수를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벌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그 대신 체불자의 이름과

186) toll telephone service는 거리와 통화시간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가 변하는 전화서비스로 미국 내에서 대금이 지불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Sec. 4252(b)(1)).

주소를 재무성에 보고해야 하고 재무성이 밀린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2) 항공운송(Air Transportation)

항공운송에 있어서는 FAN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당하는 공항 및 항공로 기금(Airport and Airway Trust Fund)을 위하여 별도의 소비세가 부과되는데 2007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 세금은 국내 상업용 승객운송과 국제승객 운송 그리고 화물운송을 위한 세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세금은 비행기 종류나 공공 혹은 민간공항을 이용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

우선 상업용 승객운송의 경우 일반적인 국내항공에서는 승객 1인당 항공권의 7.5%에 해당하는 정률세와 구역당 3달러의 국내편세(domestic segment tax)¹⁸⁷⁾가 추가로 부과된다(Sec. 4261(b)). 이에 추가하여 공항은 최고 4.5달러에 달하는 여객장료(Passenger Facility Charge)를 부과할 수 있다. 2003년부터는 국내편세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된다. 국내편세는 일부 농업지역 공항에서의 출발이나 도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권 구입시 구매자가 항공료에 포함된 세금을 낼 의무가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하며 2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할 세금을 예탁한다. 이 밖에 ICC에 등록된 여행사도 단순히 항공사의 중개인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세금을 징수,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로 국제 여객항공은 도착 혹은 출발당 12.8달러의 물가연동 세금이 부과된다¹⁸⁸⁾. 국제운송은 국제여행과 연계된 순수한 일부 국내운송을 포함한다. 동 세금은 국내편 승객운송에 적용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내-국제 운송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 미국 내에서 한 지역에서의 경과시간(stopover)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제여행에 필수적인 별도의 국내 비행편에 탑승한 여객은 국내 여객세에서 면제된다.

국내 및 국제항공 관련 세금은 경비가 지불된 운송에만 적용되므로 보너스

187) 비행편은 한 차례의 출항과 도착이 있는 운송을 의미하며 따라서 중간 기착은 2번의 비행편으로 간주된다.

188) 단, 미국 본토와 하와이, 알래스카 그리고 미국 주변 캐나다·멕시코 225마일 구역('225-mile zone') 사이의 운행은 감면세금 6.6달러를 적용받는다(Sec. 4261(c)).

(frequent flyer) 프로그램에 의한 무료비행이나 항공사 사원의 비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료 혹은 할인 여행을 위해 현금이나 물품을 지불한 비행은 7.5%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외 국내편세나 국제 항공세는 내지 않는다. 이러한 세금은 여행료 지불로 얻은 탑승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만약 직접 구매되었다면 국내 혹은 국제항공 여객세가 부과되었을 여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면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지불된 비행료에도 적용된다.

세 번째로 물품 운송에 있어서는 과세대상 운송료에 대하여 6.25%의 항공세를 납부하여야 한다(air freight tax, Sec. 4271). 동 세금은 미국 국내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운송에만 적용되며 외국행 혹은 외국발 운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Sec. 4272(a)). 총중량이 6,000파운드 이하인 소형 비행기가 비정기적으로 하는 수송은 세금이 면제되며 항공운송에만 의존하는 수출입 물품도 면제된다(Sec. 4281, §49.4271-1(c)(1)).

이 세금은 항공편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운송업자(freight forwarder or express company)가 지불하는 항공 운송료에 세금이 부과되며 하주가 운송업자에게 내는 수수료는 상관없다(§49-4271-1(b)). 다만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업자가 한다.

3) 수상운송(Water Transportation)

일부 수상운송에도 여객선 출발 혹은 도착 당시 승객 1인당 3달러의 세금이 한번 부과된다. 그 대상은 1일 이상이 소요되는 상업용 여객선이나 미국에서 출발 혹은 도착하는 도박장을 갖춘 상업용 국제 여객선이다(Sec. 4471,2). 여객선은 16인 이상의 침실을 갖춘 선박을 의미한다. 미국, 주,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12시간 이내로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선박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4) 항만유지세(Harbor Maintenance Tax)

특정 미국 항만을 이용하여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대부분 상업용 화물은 전체

상업화물 가치의 0.125%를 소비세(HMT)로 납부한다(Sec. 4461(c)). 여기서 화물은 승객을 포함하며 이 경우 화물가치는 탑승료에 해당한다(Sec. 4462(a)(3)(A)). 항만세로부터의 수입은 항만유지기금(Harbor Maintenance trust Fund)에 적립되어 다양한 연방항만과 수상 프로젝트를 위하여 사용된다.

항만세는 화물을 선적할 당시 부과된다. 수출입자가 항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하주(shipper)에게 책임이 있다¹⁸⁹⁾. 항만세 과세행정은 관세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이 관장하며 따로 명기되지 않는 한 관세법이 정한 규정이 항만세에도 적용된다(Sec. 4462(f)(1)). 화주는 분기별로 Customs Form 349에 항만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19 CFR §24.24).

항만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1) 해외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기부된 화물 2) 개인 소유물 3) 알래스카, 하와이 및 미국 지역 사이의 화물 4) 육지로 도착한 적이 없는 수산물 4)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ferries) 5) 내륙 수상연료세(inland waterway tax)가 부과되는 선박의 화물이다.

바. 주류 및 담배세(Alcohol and Tobacco Taxes)

담배와 주류의 생산자, 판매자 및 수입자 그리고 이들 제품의 생산도구 제작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들은 Form 5630.5를 작성, 등록하고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한다(Sec. 7011(a)). 1990년 재무성은 주세와 담배세 관련 행정을 알콜·담배·총기청(ATF)으로 이관한 바 있다(Treasury order 120-03)¹⁹⁰⁾.

1) 주세

주류에 대한 세금은 증류주와 포도주 그리고 맥주에 부과되는 소비세와 주류 생산자, 도소매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직업세가 있다. 또한 주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세금

189) 그러나 수출품에 대한 항만세는 항만을 직접 이용하는 자가 아닌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항만 이용에 따른 비용과 연관이 없는 등의 이유로 수출품에 대한 과세를 금지하는 헌법 1조 5항 5절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190) www.atf.treas.gov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보증금(bond) 예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우선 주세의 경우 종량세로서 납세의무는 주류가 생산되거나 수입될 때 발생하지만 현재 보세 제조장 체제에서는 세금의 납부는 생산된 제조장에서 주류가 출고될 때 이루어진다. 수입품은 미국내 창고에서 처음 출고될 때 과세되지만 미국내에서 보틀링이 이루어지면 국산품처럼 과세가 이루어진다. 과실증류주의 경우 세금 감면으로 실질세율이 포도주 세율 수준과 유사하다. 포도주는 특정 과일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거나 색깔과 맛에 대한 제한은 없다¹⁹¹⁾. 이외 증류주에 일정한 맛이 첨부된 경우 증류주 세율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표 IV-24> 미국 연방소비세 주세율

과세대상	세율	세법 규정
증류주	\$13.50/proof gallon ¹⁾	5001(a)(1)
포도주:		
~14%	\$1.07/wine gallon ¹⁾	5041(b)(1)
14~21%	\$1.57/wine gallon	5041(b)(2)
21~24%	\$3.15/wine gallon	5041(b)(3)
24%~	증류주 세율 적용	5001(a)(3)
사과주	\$0.226/wine gallon	5041(b)(6)
삼페인과 자연산 스파클링 포도주	\$3.40/wine gallon	5041(b)(4)
인공 카본 포도주	\$3.30/wine gallon	5041(b)(5)
맥주	\$18/배럴(31 gallons) ²⁾	5051(a)(1)

주: 1) a proof gallon은 50% 알콜을 함유한 1 US 갤런을 의미하며 a wine gallon은 알콜 함유량과 관계없는 1 US 갤런임. 2) \$18/배럴은 대략 갤런당 58센트인데 매년 200만 배럴 이하를 생산하는 국내업체에는 처음 6만 배럴에는 \$7/배럴이 적용됨(5051(a)(1)). 이러한 감면규정은 GATT에서 이의대상임.

191) 25만갤런 이하의 국내 포도주 생산자는 삼페인과 스파클링 포도주를 제외한 제품의 출하시 첫 10만갤런의 와인에 대하여 90센트/갤런의 세금이 면세되며 추가 생산시에는 1천갤런당 1센트가 감세된다(Sec 5041(c)). 이로 인하여 실질세금은 0.17달러까지 인하된다. 같은 규모의 국내 사과주 생산자도 생산된 1갤런당 5.6센트가 면세된다.

포장하지 않고 대량 수입된 자연산 포도주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세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는 수입업자가 아닌 보세장에게 있다(Sec. 5364). 이외 매년 1만 proof 갤런 이하의 증류주를 생산, 연료로 사용하는 업체에는 직업세가 면제된다(Sec. 5181(c)(4)).

주류 제조자, 도소매업자, 맥주 수입업자, 증류주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업체 그리고 보세장치소 등에는 다음의 영업세(occupational taxes)가 매년 부과된다. 증류주를 이용, 의약품, 음식, 향료나 향수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매년 500달러의 영업세를 납부하는 대신 갤런당 12.5달러의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Sec. 5131(b)). 환급신청은 월 혹은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증류주 사용 분기 이후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주류 관련 직업세를 납부해야 할 업체가 의도적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5,000달러 이하의 세금 혹은 2년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Sec. 5191(a)). 이외 세금 회피나 유기 등에 대한 처벌은 다른 소비세 등과 유사하다.

<표 IV-25> 주류 관련 영업세

(단위:달러)

과세대상	세율(연간)	세법규정
주류 생산자, 포도주 보세장	1000 ¹⁾	5081, 5091(a)
도매업자와 증류주 비음주용 업체	500	5081, 5091(b), 5111(b)
소매업자와 증류주 산업용 사용 업체	250	5121(a), (b), 5276(a)

주: 1) 전년도 총수입이 50만달러 이하인 업체의 세율은 제조장당 500달러이며 일부 소규모 알콜연료 제조자(에탄올 등)는 면세됨.

2) 담배세

담배·시가 등 담배제품, 담배용지나 튜브의 생산(출하)과 수입시 제조업자에게 연방소비세가 부과된다(Sec. 5701). 이들 제품이 보세장으로 이동될 때에는 이를 양수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Sec. 5703(a)). 이들 제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세 상태로 이전할 수 있고 수입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에서 환수되거나 파기된 담배는 해당 조치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고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이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Sec. 5705(b)). 연간 세금이 50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익년에 연방은행에 세금을 예탁하여야 한다(Sec. 5703(b)(3)).

담배세와 관련한 IRS 규정 사항을 행하지 않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면 1,000달러와 세금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Sec. 5761(a)). 이러한 행위는 수출용 담배를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형사처벌로는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 세금 회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불법적으로 과세대상 담배제품을 팔거나 사는 경우 그리고 담배에 부착한 표지 등을 파괴하는 경우 1만달러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표 IV-26> 각종 담배 관련 제품 연방소비세 세율

(단위: 개)

과세대상	세율	세법규정
담배:		
작은 담배 ¹⁾	\$19.5/1,000 ²⁾	Sec. 5701(b)(1)
큰 담배	\$40.95/1,000	Sec. 5701(b)(2)
시가:		
작은 시가 ³⁾	\$1.828/1,000	Sec. 5701(a)(1)
큰 시가	20.719% (단, \$48.75/1,000 이하)	Sec. 5701(a)(2)
연기없는 담배제품		
코담배	\$0.585/파운드	Sec. 5701(e)(1)
씹는 담배	\$0.195/파운드	Sec. 5701(e)(2)
파이프담배와 말아 피는 담배	\$1.0969/파운드	Sec. 5701(f),(g)
담배용 제지	\$0.0122/pkg: 50장당 or 부분품	Sec. 5701(c)
담배 튜브	\$0.0244/pkg:50장당 or 부분품	Sec. 5701(d)

주: 1) 작은 일반담배는 1000개비당 3파운드 이하의 담배를 의미하며 큰 담배는 3파운드 이상을 의미하는데 6.5인치 이상 길이의 큰 담배는 2.75인치(혹은 그 일부)를 작은 담배 1개비로 간주, 작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이 적용됨. 2) 20개비당 39센트에 해당 3) 시가도 3파운드 중량으로 구분됨.

이외에도 주류와 마찬가지로 담배와 담배용지 등의 생산자와 수출업자는 영업장당 연간 1,000달러의 세금을 직업세로 납부하여야 한다(Sec. 5731). 단, 전년도 총수입이 50만달러 이하인 업체에는 연 500달러의 영업세가 적용된다. 직업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는 주류 직업세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 환경세(Environmental Taxes)

연방소비세 가운데 환경세는 유해물질 제거 및 관리를 위한 유해물질기금과 오존파괴 화학품에 대한 세금,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전자는 폐지된 상태이다. 유해물질기금은 주기적으로 생산, 수입자 혹은 사용자와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영구적 세금이 아니다.

1) 유해물질기금(Hazardous Substance Superfund)

즉, 1980년 일부 환경오염지역의 정리를 위하여 원유와 화학제품에 세금을 부과, 환경청이 관장하는 연방기금에 적립한 기금(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을 필두로 하여 1995년에 폐지된 유류 누출 손해기금(Oil Spill Liability Trust Fund)은 0.05달러/배럴의 세금으로 오일 누출과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 적이 있다. 동 기금이 폐지되기 이전인 1990년대 기금의 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V-27> 미국 환경 관련 소비세의 과세액

(단위: 백만달러)

세목	1981~1998	1981~1995	1996~1998
총합	11,266.2	11,044.3	221.9
Superfund(~1. 1996.):			
국산 및 수입원유	9,008.6	8,867.7	140.9
특정 화학제품	1,087.3	1,013.3	74.0
특정 수입물품	69.8	63.2	6.6
Oil Spill Liability Trust Fund	1,100.5	1,100.2	0.4

자료: ECO/WKP(2001)39, OECD.

유해물질기금은 화학물질 저장과 유해물질 누출의 정화비용 지출을 위하여 유해물질 대응 기금에 이어 1986년에 창립되었다. 동 기금은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14.7센트/배럴의 석유세(Sec. 4611(a)), 0.28~4.87센트/톤의 화학원료세(Sec. 4661(a)), 수입 화학품세(Sec. 4671) 등의 세입으로 충당되었다. 화학원료세의 경우 과세대상인 여타 화학제품에 투입되는 원료, 비료의 원료, 자동차 연료 원료, 수출품에 투입된 제품 등에 대한 세금은 환급되었다. 수입 화학품세는 화학원료세를 보완하는 세금으로서 과세대상인 특정 수입품에 원료로 투입된 화학물질에 대한 세금으로 세율은 화학 원료세와 같다.

2) 오존파괴 화학품세(Ozone-depleting chemicals excise tax)

제조자, 생산자나 수입자가 CFC 등 오존파괴물질을 판매 혹은 사용할 때 그리고 과세대상인 오존파괴물질이 사용된 제품의 수입시 해당 수입품에 대하여 과세한다(Sec. 4681. 2). 오존파괴물질이 상업활동이나 소득창출에 고용되거나 혹은 제품 생산에 투입, 변환, 대기에 누출되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52.4681-1(c)(7)).

재활용되는 물질과 다른 화학제품의 생산에 완전히 소비되는 물질, 그리고 특정한 조건 아래서 추가공정에 쓰이는 물질은 면세된다. 수출량 중 일정 비율의 오존파괴물질도 면세되는데 이 경우 판매자와 매입자가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세금은 오존파괴물질의 중량에 기본세액과 오존파괴계수를 곱한 것과 같다. 기본세액은 1995년 5.35달러에서 매년 45센트/파운드 증가하여 2003년 당시 8.95달러/파운드에 달한다. 오존파괴계수는 1kg의 CFC-11이 잠정적으로 파괴하는 오존량 대비 여타 제품의 오존파괴량으로 산출된다. 만약 수입업자가 과세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입 시점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물질가액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납세지는 Form 720과 Form 6627을 작성, 신고한다.

미국에서 제조되었다면 과세대상인 원료를 사용하였을 수입품에 대해서도 해당 원료에 적용되는 세금이 과세된다(Sec. 4681(b)(2)(A)). 이 경우 납세자가 다른 제조과정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똑같은 화학제품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생산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적용된다. 최소한의 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수입품은 해당물질이 냉동이나 냉각의 목적 또는 에어솔이나 foam, 전자부품의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de minimis amount, Sec. 4682(c)(2)).

아. 기타세

1) 외국 보험상품

외국보험회사로부터 구입, 연장 혹은 갱신하는 상해보험과 변상, 보증채권 그리고 생명, 의료, 사고보험 및 개인에게 발급된 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가 부과된다

(Sec. 4371)¹⁹²). 단 이들 보험은 미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국내회사나 거주민이 피보험자이거나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회사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¹⁹³).

이 세금은 보험양식의 형태와 관계없이 국내업체가 보증하지 않는 모든 보험에 적용된다. 세율은 상해보험과 변상채권 등에는 보험료 1달러(혹은 나머지)당 4센트, 생명보험, 의료보험 등과 재보험에는 1센트가 적용된다. 한 예로 10.10달러 보험료에 대한 세금은 0.44달러이다.

당해 세금은 보험료를 외국회사 등에 지불할 당시 지불 당사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당사자란 보험계약을 한 자나 보험 수혜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급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을 판매한 외국회사에게 신고 책임이 있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세금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sec. 7270). 이 밖에도 조세협약에 따른 세금면제가 가능한 국가의 보험사는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Sec. 6114, Form 8833).

2) 도박 및 게임세(Tax on Wagering and Games)

도박 관련 세금에는 도박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Sec. 4401)과 4401항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도박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직업상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Sec. 4411), 두 종류가 있다. 도박에 적용되는 세율은 주법이 허가한 도박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허가된 도박에는 과세대상 도박금의 0.25%, 허가되지 않은 도박에는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자의 경우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관련된 개인 도박, 이윤을 목적으로 한 공동의 도박방식 그리고 이윤 목적의 복권 도박에 적용된다(Sec. 4421).

모든 게임 참여자 앞에서 내기가 성립하고 결과가 결정되며 상금이 수여되는 성격의 도박은 세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빙고, 카드게임, 주사위임,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자선단체 등의 도박도 면제된다. 또한 주법에서 허가된 경마 등(pari-mutuel wagering)과 동전용 도박도 면제된다.

192) 수출품에 대한 보험은 면제된다.

193) 한 예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보험이 화물의 하역 즉시 만료되면 보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박대금을 받고 경기결과에 따라 손익의 위험을 입는 사람은 도박업자로서 등록을 하고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직접 도박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며 제3자나 종업원을 통한 도박금 수령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발생한다(\$44.4401-2(a)(1)). 납세의무는 신용으로 도박금을 지불한 것과 관계없이 도박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박금을 수령할 때 발생한다(\$44.4401-3). 세금은 다른 연방소비세와 달리 매월 Form 730(Tax on Wagering)을 직접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신고한다.

도박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도박업자와 도박업자를 대리하여 도박금을 수령하는 자는 Form 11-C와 함께 매년 50달러를 도박업세로 납부하여야 한다(Sec. 4411(a)). 주법에서 허가되지 않은 도박업에는 500달러가 적용된다. 도박업자는 사업개시 전 IRS에 등록을 하고 그 대리인도 등록을 하여야 한다(Sec. 4901).

3) 트럭/버스 도로사용세(Truck and Bus Highway Use Tax)

중량이 55,000파운드 이상인 대형 트럭, 트럭 트랙터와 버스 등에는 매년 도로 사용세가 부과된다(밴과 픽업트럭은 제외). 재목벌채 트럭은 벌채 목적으로만 사용되면 세율이 25% 감면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등록하고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차도 마찬가지로 감면된다. 당해 세금은 2005년 10월 이전의 사용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세율이 75% 감면된다(Sec. 4482(d)).

<표 IV-28> 트럭 및 버스 도로 사용세

(단위: 파운드)

과세대상 총중량	세율
~55,000	무세
55,000~75,000	100달러+22달러/1000파운드(55000 파운드 초과분)
75,000~	550달러

경유용 버스(transit type)나 비도로 운송이나 운송목적이 아닌 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세기간 동안 5,000마일 이하로 운행하는 차는 허가를 받으면 그리고 농산물 운송용 차는 75,000마일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송차 등록자는 Form 2290을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는데 일부 경우에는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41.6156-1).

4) 기타(obligation not in registered form)

등록된 양식이 아닌 형태로 등록이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채권금액(원금 기준)의 1%를 만기 기간(연 단위)으로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Sec. 4701(a)). 등록이 요구되는 채권이란 자연인이 발생한 채권,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 채권, 1년 이상의 만기 채권 혹은 외국인에게만 발부되는 채권을 제외한 채권을 의미한다.

5) 폐지된 연방소비세

<표 IV-29>은 1933년 당시 연방소비세의 주요 세목과 세수를 나타낸 표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휘발유가 전체 세수의 약 50%를 차지하여 가장 주요한 세목이기는 하지만 이 밖에도 전기(11.5%), 윤활유(6.5%), 타이어(6.1%)와 자동차(5.1%) 등에 대한 세금도 상당하다. 특히 그 당시에는 화장실 변기용품, 모피, 귀금속, 성냥, 라디오, 냉장고, 카메라, 캔디, 탄산음료수 등의 사치용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 이들 세목으로부터의 세입이 전체 세수의 약 14.5%에 달하는 등 연방소비세가 사치세의 성격이 강하였다. 1993년 폐지되기 이전 사치세는 기준가격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부과되었는데, 기준가격은 자동차 3만달러, 보트 10만달러, 비행기 25만달러, 모피와 보석은 1만달러였다.

이 밖에 1998년 폐지되었지만 원유 초과이익세(Windfall Profit Tax)는 Crude Oil Windfall Profit Tax Act of 1980에 근거하여 국제 원유가격의 인상과 국내원유가격

통제의 폐지에 따른 원유회사의 초과이윤을 과세하고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생산 원유의 분류(tier)에 따라 초과이득의 30~70%까지 과세한 바 있다. 여기서 초과이윤은 판매가격 대비 통제가격의 차이를 의미하였다.

<표 IV-29> 1993년 연방소비세와 2001년 당시 존폐 여부

(단위: 백만달러)

세목	세수	2001 현황
총세수	247.8	
휘발유	124.9	존속
전기	28.6	폐지
유탄유	16.2	폐지
타이어	15.0	존속 ¹⁾
자동차 등 ¹⁾	12.6	존속 ²⁾
화장실 변기용구	9.6	폐지
모피	7.5	폐지
맥주 맥아정, 포도주스 원액 등	5.7	폐지
탄산 음료수	4.2	폐지
사탕, 껌	4.2	폐지
자동차 액세서리 등	3.6	폐지
귀금속	3.1	폐지
성냥	2.9	폐지
스포츠용품 ²⁾	2.7	존속 ³⁾
라디오 등	2.2	폐지
냉장고	2.1	폐지
트럭 ³⁾	1.7	존속 ⁴⁾
총기류제품	0.9	존속
카메라 및 렌즈	0.2	폐지

주: 1) 사치용 자동차. 2) 화살 및 화살대, 낚시도구. 3) 중형 트럭 및 트레일러.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소비세의 종류

미국 소비세는 연방소비세와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세수의 대부분은 지방정부 소비세이다. 지방소비세는 일반판매세와 주류, 담배, 유류에 대한 개별판매세 그리고 유흥세, 경마세, 숙박세, 보험료세, 공공서비스세(public utilities) 등이 있다. 2002년 당시 지방소비세는 3,335억달러로 GDP 대비 3.2%(소득의 6.1%)에 이르며 재산세(GDP의 2.6%)나 소득세(1.9%)보다 더 중요한 세목이다. 지방정부 소비세는 각 지방의 전통과 특성에 따라 부과되므로 지방별로 세부담의 편차나 비과세 범위의 차이가 크다.

연방소비세는 소매세(유류 및 자동차), 제조업자세(유류, 타이어, 석탄, 스포츠용품, 활과 총기류, 백신), 시설 및 서비스 이용료(통신, 항공, 수상운송), 화학제품에 부과되는 환경세 그리고 도박, 대형 운송차, 주류 및 담배, 외국 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이 가운데 유류나 석탄, 항공운송, 항만유지 등 일부 소비세는 기금용 목적세이다. 연방소비세 순세수는 2002년 당시 약 521억달러로 GDP의 0.5%에 불과하다.

연방정부는 과거 일정 금액 이상의 사치품 즉, 자동차(1990년 가격 기준: 3만달러), 보트(10만달러), 비행기(25만달러), 귀금속과 모피(1만달러)에 대하여 과세하였는데 1993년에 고급 자동차를 제외한 사치세는 폐지되었고 2002년 말에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도 폐지된 바 있다.

나. 지방정부 소비세

주로 주정부 차원에서 과세되는 일반판매세는 소매단계에서 재화 및 특정 서비스를 구입 혹은 사용하는 데 대하여 일률 과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재판매용 제품 구입이나 부품 매입 혹은 사업용 기계·설비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사용세는 역내에서 구입하였다면 과세대상인 제품 혹은 재판매용 제품을 사용(임대)할 때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 판매세에서 문제가 되는 거래는 우편주문 등의 역외 사업자가 역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과 실질적 연관성(substantial nexus)이 있는 거래, 한 예로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면 해당 지역

의 판매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서비스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 유지, 보수, 보관, 청소, 임대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전문·개인서비스는 대개 비과세한다. 자동차, 숙박 그리고 유형자산의 임대도 과세되며 개인이 사용하던 구형제품을 판매하면 일정 금액 이하 등을 조건으로 면세한다.

진단서가 있는 의약품, 가정용 식품은 대부분 면세되고 일부 주에서는 의류나 신발, 특히 유아용 제품을 면세하기도 하고 컴퓨터로 전송되는 소프트웨어도 주에 따라 서비스로 취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르다. 나아가 각 지방은 산업유치나 농업보호 등을 위하여 세율 감면을 하기도 하며 일부 주에서는 조세수출(tax exporting)을 위하여 혹은 비가치재 소비를 지양하기 위하여 고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일반판매세 세율은 주에 따라 2.9~7%까지 부과되지만 대개 5% 혹은 6%가 일반적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도 일반판매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합치면 평균세율은 7.2%가 된다. 판매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사업비용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판매자의 납세순응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주는 일정 한도 내에서 판매세 일부를 환급해주기도 한다.

미국 주정부들은 협약을 통하여 조세경쟁을 지양하고 과세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SSTP)을 개시한 바 있다. 동 프로그램에는 2003년 당시 40개 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약 내용 준수에 대한 강제성도 있다. 판매세 간소화를 위한 협약(SSUTA)은 조세법의 균일한 정의, 세율 간소화, 표준화된 면세 및 과세행정, 균일한 원천지 규칙과 세무조사 등을 지향한다. 특히 동 협정은 이중 세율을 지양하고 다만 식료품과 의약품 등 극히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차등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정부는 특정 제품에 대한 개별판매세를 부과한다. 개별판매세 세수는 일반판매세의 약 절반에 이르고 이 가운데 유류세의 비중이 가장 크며 보험료, 공공 서비스, 담배, 유흥 및 주세의 순으로 세수 비중이 큰 편이다. 주류는 모든 주가 과세를 하거나 정부가 직접 주류를 독점 판매한다. 주류는 증류주와 포도주 그리고 맥주로 구분되어 종량세가 부과된다. 맥주는 병맥주·생맥주, 증류주는 알콜도수 그리고 포도주는 종류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주류, 유류 그리고 담배는 비가치재로서 혹은 주요 세목으로서 과세행정상 특별 관리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 밖에 지방에 따라 도로사용세, 역외 지역에서 구입한 유류에 대한 사용세, 도박세 혹은 연예나 스포츠 공연에 대하여 따로 과세가 되기도 한다. 서비스의 경우 호텔 숙박 또는 전화 등의 통신을 이용한 정보 혹은 유흥 서비스가 과세된다.

다. 연방정부 소비세

관세를 제외한 연방소비세는 국내에서 소비 혹은 제조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으로 일부 서비스와 시설 및 직업 등에도 부과된다. 세금이 부과되는 재화에는 유류, 항공연료, 타이어, 총기, 담배, 주류, 트럭 등의 대형 자동차, 연비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자동차(gas guzzler), 스포츠 낚시기구, 활과 화살대, 백신, 화학제품 그리고 석탄 등이 있고 통신, 외국보험, 도박, 채권등록 등의 서비스 그리고 항공 및 수상시설에 시설세로 부과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총기와 주류 그리고 담배는 알콜·담배·총기청(ATF)이 징수를 담당한다.

연방소비세 중 일부는 목적세로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금에 예치되어 사용되고 환경세로 부과되기도 된다. 한 예로 국내 석탄에 부과되는 세금은 폐병 장애신탁기금에 적립되어 사용되고 유류세는 연방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다. 사치세는 1996년까지 고급 자동차 가격의 9%가 과세되었으나 2002년 말 폐지되었다.

주로 재화에 부과되는 제조업자 세에서 추가 공정 물품, 직·간접적으로 판매되는 수출품, 운송용품 그리고 비영리 교육단체용 물품은 면세된다. 유류, 항공유, 백신, 수상운송시설 이용, 주류, 담배, 오존파괴 화학품 그리고 외국보험회사로부터 구입하는 보험 등에는 종량세로 세금이 부과되며 대형 트럭 등에는 도로사용세로 매년 종량세가 부과된다. 이 밖의 연방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조업 제품, 통신 서비스(3%) 향만 유지(화물가액의 0.125%), 도박(0.25%) 등에는 종가세가 부과되며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권 가격에 7.5%, 비행편에 3달러의 종량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류, 담배 그리고 도박업에 종사하는 업체나 개인에게도 일정 금액의 영업세가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소비세는 거의 대부분 지방정부 세목이다. 이는 경제적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특히 연방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과세권의

범위 논쟁이나 조세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를 지양하고 과세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주정부 차원에서 상당 수준 진척을 본 바 있다(SSTP).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도입 문제도 이러한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제도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연방정부 소비세는 다양한 제품에 부과되지만 세수비중은 GDP의 약 0.5%에 불과하다. 이들 세금은 기금이나 환경세 명목으로 부과되기도 하여 국가정책상 필요한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이용된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다양하고 복잡다기한 여러 소비세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위한 세금은 극히 제한적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목적세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목적세는 예산정책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일부 계층의 기득권적 이익에만 충실한 정책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V. 미국의 유산 제세와 관련 소득세

1. 서언

가. 유산 관련 제세 개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생존시 혹은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산세 및 증여세 혹은 세대생략세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주정부 차원에서 상속세(inheritance tax)가 부과되며 일부 주에서는 증여세도 부과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연방정부 유산세와 세대생략세는 2001년 법개정으로 그후 세율과 면세범위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면서 2010년에 한시적으로 폐지되는데 의회의 결의가 없으면 2011년에 다시 2001년 이전 상태로 법이 복귀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상속세가 1862~1870년 사이에, 유산세는 1898~1902년 사이에 세수 목적으로 도입된 바 있으나 항구적인 세금은 아니었고 현재의 유산세는 1916년에 도입되었다. 증여세는 1924~1925년에 일시적으로 과세되었고 1932년에 영구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1976년 증여를 통한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와 유산세의 세율과 면세범위가 통일되었다(Tax Reform Act of 1976). 이후 1981년에 최고세율이 70%에서 50%로 인하되었고 면세범위도 확대되었다.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유산세(estate tax)는 사망자로부터 재산이 이전되는 특권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주정부 세금(state death tax)인 상속세는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tax on receipt)이다. 또한 1976년 이후 유산세는 증여세와 세대생략세와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전반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는 데 비하여 상속세는 개별 상속에 대하여 과세하는 차이가 있다. 유산세는 사망 당시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tax on transfer)으로 재산 자체(not on property)에 대한 세금은 아니다. 두 가지 세금의 공통점은 대개 누진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외 상속세는 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이고 가장 가까운 친족일 수록 세율이 낮다.

증여세(gift tax)는 개인 간에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양도에 대하여 선물의 시장가치를 과표로 하여 부과된다(Sec. 2501). 증여자가 증여 사실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혜자(beneficiaries)는 소득세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또한 증여자의 생존시(inter vivos) 일정 금액 이하로 재산을 양도하면 사망할 때까지 증여에 대한 납세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생애에 누적된 증여세가 제한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외 누적된 과세대상 증여는 총유산에 포함되고 그 대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된다.

한편 세대생략세(GST)는 세대를 뛰어넘어 상속되는 유산신탁기금(trust)¹⁹⁴에 대하여 권리나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다음 세대에게 재산을 양도하지 않고 차차기 세대에게 이전할 때 일종의 통과료(toll charge)로 부과된다. 세대생략세는 세대간 자산 양도시 부과되는 유산세 등 상속 관련 세금을 기피하기 위하여 유산기금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세대생략세는 중간 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하여 최고세율로 과세하고 소득배분을 과세함으로써 기금을 이용한 세금회피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유산세는 사망 당시 보유 재산의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부과된다(Sec. 2001). 과표 즉, 총유산(gross estate)은 사망자 재산에서 장례비, 부채, 자선단체 기부금, 생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자산(marital deduction)을 제외하고 1976년 이후 증여된 과세대상 증여(lifetime gift)를 합한 금액이다.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에는 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유산이 배우자에게 양도되면 실질적으로 유산세가 면세된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는 재산 자체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증여자의 사망 후 자산분배에 이를 때까지 발생하는 상속자산의 소득에 대하여 자산 관리인(fiduciaries)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194) 유산신탁기금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제3자(trustee)가 보유하는 대리인 관계로서 서면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며 유산이나 유산기금에 대한 세금신고할 의무가 있다. inter vivos trust는 유산기금을 설립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유산기금이며 사후 유지에 의하여 설립된 유산기금은 testamentary trust라고 한다.

2003년의 경우 유산은 700,000달러까지 비과세되며 세율은 18~50%에 이른다. 이때 과거 증여한 금액이 유산에 포함되는 대신 기납부한 증여세와 지방정부 상속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의 생명보험, 연부금(annuities), 공동재산과 피상속인을 결정해야 하는 권리에 따라 분배되는 재산(power of appointment)은 별개의 규정에 따라 총유산에 포함된다. 예전에 양도하였지만 사망자가 권리나 이해관계를 유지한 재산도 총유산에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증여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선물 양도를 포함하며 증여받는 사람 1인당 매년 1.1만달러의 선물은 면세된다. 부부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같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부부는 매년 1인당 2.2만달러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제한되지 않은 수의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다(Sec 2503). 면세금액은 1999년 이후 물가에 연동되어 있다. 학자금과 의료비 그리고 기부금은 증여세가 없으며 생일, 졸업, 결혼이나 금혼식 선물 등도 면세된다. 주정부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다.

이 밖에도 면세대상이 아닌 증여가 이루어질 때 납세자는 증여세 납부를 연기하기 위하여 통합 증여 세액공제(unified transfers credit)를 이용할 수 있다(Sec. 2505). 이 규정은 증여와 상속에 있어서 평생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 및 상속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 당시 면세액은 1백만달러이고 2004년 1.5백만달러, 2009년 3.5백만달러이다. 유산세와 달리 증여세는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과표에 적용되어 사후 상속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양도소득의 과세 목적상 가격이 오른 자산(appreciated asset)의 과표는 사망 당시 시장가격으로 상향 조정(steppe-up)된다. 즉, 피증여자가 자산을 매매한다면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은 고인 생존시 자산이 증여될 때의 평가금액이다.

나. 유산 관련 제세의 통계

1) 유산세 세수규모 및 비중

각 세목별 신고건수와 세금납부액 규모는 <표 V-1>과 <표 V-2>에 제시되어 있

다¹⁹⁵⁾. 우선 <표 V-1>에서 보면 유산세의 경우 신고건수가 1975년 약 226천건에서 2001년 122천건으로 줄었다. 이는 물론 법 개정¹⁹⁵⁾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 등의 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유산/유산신탁기금 등을 통하여 상속을 피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유산 및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그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신고하는 건수는 1975년 1,564천건에서 2001년 3,919천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면제액이 2001년의 경우 675천달러에 달하므로 유산신고를 하여도 그 중에서 유산세를 실제 납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한 예로 2001년 당시 신고건수는 108.1천건이지만 납세건수는 51.8천건으로 약 47.9%만이 세금을 납부하였다. 한편 증여세의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1975~2001년 사이에 큰 변화 없이 27~30천건을 유지한다.

195) 통계가 역년(calendar year) 기준인지 혹은 재정연도(fiscal year) 기준인가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 2001년 fiscal year는 2000년 calendar year로 볼 수 있다.

<표 V-1> 연도별 각종 세목의 제출된 신고서 및 제반 양식 규모
(제출 예정 포함, 1975~2002 Calendar Years 기준)

(단위: 천개, %)

신고서 및 양식 종류	신고서 및 양식 개수 (역년)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r]
개인소득세	84,027	93,196	99,704	112,596	116,467	123,050	125,390	127,657	130,094	131,248
Forms 1040, 1040A, 1040EZ, and 1040PC	(99.86)	(99.85)	(99.82)	(99.74)	(99.65)	(99.59)	(99.60)	(99.56)	(99.50)	(99.53)
서면신고	(99.86)	(99.85)	(99.82)	(96.01)	(89.51)	(79.62)	(76.21)	(71.83)	(68.59)	(63.87)
전자신고	N/A	N/A	N/A	(3.73)	(10.14)	(19.98)	(23.39)	(27.73)	(30.91)	(35.65)
영업신고	(11.99)	(12.24)	(14.18)	(14.36)	(15.51)	(15.47)	(15.29)	(15.16)	(15.12)	(15.34)
Schedule C or C-EZ	(8.85)	(9.60)	(11.80)	(12.57)	(13.87)	(13.96)	(13.86)	(13.76)	(13.76)	(14.01)
Schedule F	(3.13)	(2.64)	(2.38)	(1.80)	(1.63)	(1.50)	(1.43)	(1.39)	(1.35)	(1.33)
비영업신고	(87.88)	(87.61)	(85.65)	(85.38)	(84.15)	(84.13)	(84.31)	(84.40)	(84.39)	(84.19)
Forms 1040C, 1040NR, 1040PR, and 1040SS	(0.14)	(0.15)	(0.18)	(0.26)	(0.35)	(0.41)	(0.40)	(0.44)	(0.50)	(0.47)
법인소득세	2,133	2,676	3,437	4,320	4,818	5,241	5,398	5,470	5,561	5,717
Form 1120	(82.66)	(79.06)	(70.76)	(54.05)	(45.60)	(42.12)	(40.80)	(39.52)	(38.28)	(37.10)
Form 1120A	N/A	N/A	(5.81)	(7.69)	(6.62)	(5.20)	(4.83)	(4.49)	(4.24)	(3.95)
Form 1120S	(17.22)	(19.74)	(21.44)	(35.56)	(44.85)	(49.60)	(51.26)	(52.78)	(54.35)	(55.80)
기타	(0.12)	(1.20)	(1.99)	(2.70)	(2.92)	(3.08)	(3.11)	(3.20)	(3.13)	(3.14)
파트너십 Forms 1065 and 1065B	1,133	1,402	1,755	1,751	1,580	1,861	1,975	2,067	2,165	2,258
유산/유산신탁기금 소득세, Forms 1041 and 1041S	1,564	1,882	2,125	2,681	3,191	3,398	3,403	3,529	3,919	3,711
유산세, Forms 706, 706NA, 706GS(D), and 706GS(T)	226	147	81	61	81	110	116	124	122	125
증여세, Form 709	273	215	98	148	216	261	292	309	304	255
면세단체	404	443	454	487	572	618	731	699	724	749
Forms 990 and 990EZ	(85.83)	(81.92)	(80.49)	(73.80)	(70.97)	(66.63)	(62.69)	(66.04)	(66.42)	(66.12)
Form 990-PF	(7.33)	(7.48)	(7.05)	(9.17)	(8.96)	(10.00)	(8.88)	(10.01)	(10.12)	(10.10)
Form 990-T	(4.88)	(5.31)	(5.77)	(8.02)	(8.70)	(8.12)	(8.59)	(7.52)	(6.66)	(6.56)
Forms 990C, 4720, and 5227	(1.96)	(5.29)	(6.69)	(9.01)	(11.37)	(15.25)	(14.60)	(16.44)	(16.80)	(17.23)
고용세	24,738	26,387	27,409	28,911	28,655	29,106	28,974	28,841	28,936	29,053
Forms 940, 940EZ, 940PR	(16.78)	(17.82)	(17.56)	(18.57)	(19.13)	(18.84)	(18.91)	(18.94)	(19.16)	(18.91)
Forms 941, 941PR/SS/M	(68.82)	(71.45)	(74.08)	(74.82)	(77.54)	(79.36)	(79.33)	(79.37)	(79.21)	(79.51)
Forms 943, 943PR	(1.85)	(1.60)	(1.46)	(1.33)	(1.24)	(1.14)	(1.09)	(1.06)	(1.01)	(0.97)
기타	(12.55)	(9.13)	(6.91)	(5.28)	(2.09)	(0.67)	(0.67)	(0.63)	(0.62)	(0.60)
소비세	865	875	1,161	852	789	822	822	853	815	851
Form 2290	(50.59)	(50.74)	(61.11)	(51.73)	(62.17)	(68.44)	(70.27)	(71.65)	(72.22)	(73.79)
Form 720	(36.27)	(41.83)	(35.86)	(39.80)	(28.57)	(23.60)	(22.35)	(20.49)	(20.23)	(19.09)
기타	(13.14)	(7.43)	(3.02)	(8.47)	(9.26)	(7.96)	(7.38)	(7.87)	(7.55)	(77.12)

자료: 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Fall 2002 Pub. 1136.

<표 V-2> 내국세 세목별 징수액과 GDP 대비 비중(Fiscal Years 1972~2001)

(단위: 억달러, %)

	전체 내국세 징수액 [1,2]	소득세			고용세 [4]	유산증여세	소비세 [1]
		총징수액	법인소득세 [2]	개인소득세 [3]			
	(1)	(2)	(3)	(4)	(5)	(6)	(7)
1972	2,098.6 (16.9)	1,438.0 (11.6)	349.3 (2.8)	1,088.8 (8.8)	437.1 (3.5)	54.9 (0.4)	168.5 (1.4)
1973	2,377.9 (17.2)	1,641.6 (11.8)	390.5 (2.8)	1,251.1 (9.0)	520.8 (3.8)	49.8 (0.4)	165.7 (1.2)
1974	2,689.5 (17.9)	1,846.5 (12.3)	417.4 (2.8)	1,429.0 (9.5)	620.9 (4.1)	51.0 (0.3)	171.1 (1.1)
1975	2,938.2 (18.0)	2,021.5 (12.4)	457.5 (2.8)	1,564.0 (9.6)	701.4 (4.3)	46.9 (0.3)	168.5 (1.0)
1976	3,025.2 (16.6)	2,057.5 (11.3)	467.8 (2.6)	1,589.7 (8.7)	742.0 (4.1)	53.1 (0.3)	174.0 (1.0)
1976[5]	754.6 (3.7)	495.7 (2.4)	98.1 (0.5)	397.6 (2.0)	198.9 (1.0)	14.9 (0.1)	45.2 (0.2)
1977	3,581.4 (15.6)	2,468.1 (10.7)	600.5 (2.6)	1,867.6 (8.1)	860.8 (3.7)	74.3 (0.3)	178.3 (0.8)
1978	3,997.8 (15.6)	2,784.4 (10.8)	653.8 (2.5)	2,130.6 (8.3)	972.9 (3.8)	53.8 (0.2)	186.6 (0.7)
1979	4,604.1 (16.5)	3,229.9 (11.6)	714.5 (2.6)	2,515.5 (9.0)	1,128.5 (4.0)	55.2 (0.2)	190.5 (0.7)
1980	5,193.8 (16.6)	3,599.3 (11.5)	723.8 (2.3)	2,875.5 (9.2)	1,283.3 (4.1)	65.0 (0.2)	246.2 (0.8)
1981	6,068.0 (18.6)	4,065.8 (12.5)	737.3 (2.3)	3,328.5 (10.2)	1,528.9 (4.7)	69.1 (0.2)	404.2 (1.2)
1982	6,322.4 (17.9)	4,186.0 (11.8)	659.9 (1.9)	3,526.1 (10.0)	1,687.2 (4.8)	81.4 (0.2)	367.8 (1.0)
1983	6,272.5 (15.9)	4,114.1 (10.5)	617.8 (1.6)	3,496.3 (8.9)	1,738.5 (4.4)	62.3 (0.2)	357.7 (0.9)
1984	6,804.8 (16.2)	4,370.7 (10.4)	741.8 (1.8)	3,628.9 (8.6)	1,992.1 (4.7)	61.8 (0.1)	380.2 (0.9)
1985	7,428.7 (16.7)	4,740.7 (10.6)	774.1 (1.7)	3,966.6 (8.9)	2,252.1 (5.1)	65.8 (0.1)	370.0 (0.8)
1986	7,822.5 (16.5)	4,974.1 (10.5)	804.4 (1.7)	4,169.6 (8.8)	2,439.8 (5.1)	71.9 (0.2)	336.7 (0.7)
1987	8,862.9 (17.3)	5,683.1 (11.1)	1,028.6 (2.0)	4,654.5 (9.1)	2,770.0 (5.4)	76.7 (0.2)	333.1 (0.7)
1988	9,351.1 (17.0)	5,833.5 (10.6)	1,096.8 (2.0)	4,736.7 (8.6)	3,180.4 (5.8)	77.8 (0.1)	259.3 (0.5)
1989	10,133.2 (17.5)	6,327.5 (10.9)	1,170.1 (2.0)	5,157.3 (8.9)	3,456.3 (6.0)	89.7 (0.2)	259.8 (0.4)
1990	10,563.7 (17.6)	6,502.4 (10.9)	1,100.2 (1.8)	5,402.3 (9.0)	3,672.2 (6.1)	117.6 (0.2)	271.4 (0.5)
1991	10,868.5 (17.2)	6,604.8 (10.5)	1,136.0 (1.8)	5,468.8 (8.7)	3,844.5 (6.1)	114.7 (0.2)	304.5 (0.5)
1992	11,208.0 (16.9)	6,756.7 (10.2)	1,179.5 (1.8)	5,577.2 (8.4)	4,000.8 (6.0)	114.8 (0.2)	335.7 (0.5)
1993	11,766.9 (16.7)	7,173.2 (10.2)	1,315.5 (1.9)	5,857.7 (8.3)	4,115.1 (5.8)	128.9 (0.2)	349.6 (0.5)
1994	12,764.7 (17.2)	7,740.2 (10.5)	1,542.0 (2.1)	6,198.2 (8.4)	4,438.3 (6.0)	156.1 (0.2)	430.0 (0.6)
1995	13,757.3 (17.6)	8.5 (0.0)	1,744.2 (2.2)	6,757.8 (8.6)	4,654.1 (6.0)	151.4 (0.2)	449.8 (0.6)
1996	14,865.5 (17.9)	9,343.7 (11.2)	1,890.5 (2.3)	7,453.1 (9.0)	4,923.7 (5.9)	175.9 (0.2)	422.2 (0.5)
1997	16,232.7 (18.5)	10.3 (0.0)	2,044.9 (2.3)	8,250.2 (9.4)	5,286.0 (6.0)	203.6 (0.2)	448.1 (0.5)
1998	17,694.1 (19.1)	11,413.4 (12.3)	2,132.7 (2.3)	9,280.7 (10.0)	5,578.0 (6.0)	246.3 (0.3)	456.4 (0.5)
1999	19,041.5 (19.4)	12,185.1 (12.4)	2,163.2 (2.2)	10,021.9 (10.2)	5,986.7 (6.1)	283.9 (0.3)	585.9 (0.6)
2000	20,969.2 (20.8)	13,727.3 (13.6)	2,356.5 (2.3)	11,370.8 (11.3)	6,396.5 (6.3)	297.2 (0.3)	548.1 (0.5)
2001	21,288.3 (20.4)	13,649.4 (13.1)	1,867.3 (1.8)	11,782.1 (11.3)	6,822.2 (6.5)	292.5 (0.3)	524.2 (0.5)

주: ()안의 수치는 GDP 대비 비율임.

[1] 1988년(알콜 및 담배세)과 1991년(총기류세)부터는 이들 세는 제외(알콜, 담배 총기 및 관세 청이 담당. [2] 면세대상 영업소득세 포함. [3] 유산 및 유산신탁기금 소득세 포함. [4] 노년자, 생존배우자, 상해 및 의료보험(OSADHI) 세금과 실업보험세, 철도연금세 등 포함.

자료: IRS Data Book, FY 2001, Publication 55b.

유산/증여세의 GDP 대비 비중은 0.2~0.3%에 달하는데 이에 비하면 개인소득세의 GDP 비중은 2000년 당시 약 11%에 달한다. 따라서 세수를 기준으로 하면 유산증여세는 그다지 중요한 세목이 아니다. 즉, 유산/증여세가 총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2년 당시 2.62%에 달하였으나 그후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76년 1.60%, 1980년 1.25% 그리고 2001년 1.37%로 1970년대 중반 이후 세수 비중이 1%를 약간 상회한다.

한편 이 중에서도 증여세가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작아서 2001년의 경우 그 세수규모는 약 39억달러로 유산세 253억달러의 15.4%에 달하며 전체 세수에서는 0.2%에 불과하다. 이는 물론 증여세는 부부의 경우 2.2만달러까지 면세되고 또한 2002년의 경우 34만 5,800달러 이하의 누적된 증여세를 유산상속까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V-3> 유산세와 증여세 징수액과 비중(1998~2001 fiscal year)

(단위: 십억달러, %)

		1998	1999	2000	2001
미국 전체 세목	총징수액	1,769.4	1904.2	2096.9	2128.8
	환급액	152.4	18.7	196.6	253.9
	순징수액	1617.0	1716.8	1900.3	1902.1
	비율	100.0	100.0	100.0	100.0
유산 및 증여세	총징수액	24.6	28.4	29.7	29.2
	환급액	0.6	0.7	0.7	0.2
	순징수액	24.1	27.7	28.9	28.3
	비율	1.5	1.6	1.5	1.5
유산세	총징수액	21.3	23.6	25.6	25.3
	환급액	0.5	0.6	0.7	0.8
	순징수액	20.8	23.0	24.9	24.4
	비율	1.3	1.3	1.3	1.3
증여세	총징수액	3.3	4.8	4.1	4.0
	환급액	0.0	0.1	0.1	0.1
	순징수액	3.3	4.7	4.0	3.9
	비율	0.2	0.3	0.2	0.2

자료: IRS.

2) 유산세 신고내역

유산세의 경우 신고자 수와 과세대상 신고건수가 지난 약 15년간 약 2배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산세 납세 의무액도 1987년 63.6억달러에서 2000년 당시 244억달러로 증가하였다(역년 기준). 이외 건당 납세액은 1987년 약 30만달러에서 2000년 약 47만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V-4> 유산세 신고인, 건 및 납세 의무액과 비중(1975~2000)

(단위: 건, 백만달러, %)

	신고자수	과세대상 신고건수	유산세 납세의무액	건당 납세액	연방 총수입	유산세 비중
1987	45,113	21,335	6,358	0.298	854,353	0.74
1988	43,683	18,948	6,299	0.332	909,303	0.69
1989	45,695	20,695	7,487	0.362	991,190	0.75
1990	50,367	23,104	8,999	0.389	1,031,969	0.87
1991	53,575	24,781	9,100	0.367	1,055,041	0.86
1992	59,176	27,397	10,109	0.369	1,091,279	0.93
1993	60,207	27,506	10,335	0.376	1,154,401	0.90
1994	68,595	31,918	12,391	0.388	1,258,627	0.98
1995	69,755	31,563	11,841	0.375	1,351,830	0.88
1996	79,321	37,711	14,456	0.383	1,453,062	0.99
1997	90,006	42,902	16,637	0.388	1,579,292	1.05
1998	97,856	47,475	20,350	0.429	1,721,798	1.18
1999	103,979	49,863	22,915	0.460	1,827,454	1.25
2000	108,322	52,000	24,399	0.469	2,025,218	1.20

자료: Federal Estate Tax Return(1998~2000), SOI, IRS.

또한 1934년 이후 경향을 보면 우선 사망자 가운데 유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의 비율은 1934년 약 0.9%에서 점차 증가, 1999년 당시 약 2.3%의 사망자가 유산세를 납부하였다. 이외에도 총유산에서 유산세가 차지하는 비중, 실효세율은 7%에서 18~19%로 점차 증가해 왔다.

<표 V-5> 유산세 과세대상 신고인 비율과 실효세율(1934~1999)

(단위: 천명, 명, 백만달러, %)

	사망자수	과세대상 신고				
		신고자수	신고자 비율	총유산	유산세	실효세율
1934	984.0	8,655	0.88	2,197.9	153.8	7.00
1936	1,257.3	12,010	0.96	2,561.9	305.8	11.9
1940	1,237.2	13,336	1.08	2,578.3	291.8	11.3
1946	1,239.7	18,232	1.47	3,993.3	622.0	15.6
1950	1,304.3	18,941	1.45	4,655.9	577.4	12.4
1956	1,289.2	32,131	2.49	8,903.6	1,176.7	13.2
1960	1,426.1	45,439	3.19	12,733.5	1,618.5	12.7
1965	1,578.8	67,404	4.27	18,820.1	2,414.3	12.8
1969	1,796.1	93,424	5.20	23,459.5	3,000.0	12.8
1972	1,854.1	120,761	6.51	33,293.6	4,153.3	12.5
1976	1,819.1	139,115	7.65	40,578.4	4,979.1	12.3
1982	1,897.8	34,426	1.81	31,903.8	4,937.2	15.5
1983	1,945.9	34,899	1.79	33,434.5	5,073.8	15.2
1984	1,968.1	30,436	1.55	34,201.6	5,012.8	14.7
1985	2,015.1	22,326	1.11	35,168.8	6,044.3	17.2
1986	2,033.9	21,923	1.08	37,799.3	6,276.8	16.6
1987	2,053.1	18,157	0.88	40,907.2	6,393.0	15.6
1988	2,096.7	20,864	1.00	43,413.1	7,432.4	17.1
1989	2,079.0	23,096	1.11	51,063.0	8,953.2	17.5
1990	2,079.0	24,647	1.19	53,698.0	9,217.5	17.2
1991	2,101.7	26,680	1.27	55,363.7	9,617.3	17.4
1992	2,111.6	27,235	1.29	59,707.1	10,474.9	17.5
1993	2,204.4	32,062	1.45	72,047.4	12,559.8	17.4
1994	2,216.7	32,565	1.47	69,492.8	12,312.4	17.7
1995	2,252.5	36,651	1.63	78,756.3	14,259.0	18.1
1996	2,314.3	41,714	1.80	95,003.3	16,336.3	17.2
1997	2,258.4	47,800	2.12	104,860.6	19,957.7	19.0
1998	2,282.1	49,913	2.19	117,965.3	22,676.2	19.2
1999	2,336.8	53,819	2.30	135,076.4	24,809.8	18.4

자료: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Fall 2002, IRS.

2001년 기준으로 보면 약 108천건의 신고 가운데 47.9%가 과세대상이었고 나머지는 비과세되었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유산 2,156억달러에서 과세대상 유산의 비중은 57.5%에 달하며 나머지 42.5%가 유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유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특히 배우자에 대한 상속으로 비과세된 경우가 약 503억달러로 전체 비과세분의 54.9%에 이른다. 총유산에서 장례비와 부채와 각종 세액공제를 제하고 난 순유산세는 약 23.5억달러로 실효세율은 19.0%에 이른다.

<표 V-6> 2001년 유산세 과세 결정 내역

(단위: 건, 백만달러)

	총신고		과세대상 신고		비과세대상 신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유산	108,112	215,649	51,841	123,940	56,271	91,709
장례비용	95,575	692	49,709	351	45,869	341
유산집행비용	36,642	1,632	29,028	1,415	7,614	217
변호사비	67,510	1,301	44,704	1,012	22,806	290
기타비용	68,159	1,082	44,375	923	23,784	159
부채	80,890	7,643	45,762	4,508	35,129	3,585
생존배우자상속	44,738	63,186	4,774	12,886	39,965	50,300
기부금	18,711	16,150	10,492	8,815	8,219	7,335
총공제	108,097	92,547	51,833	29,805	56,283	62,742
과세대상유산	102,353	123,190	51,840	94,135	50,513	29,055
조정된 증여금	102,609	129,095	51,841	99,036	50,767	30,059
잠정유산세	102,606	52,097	51,841	42,330	50,765	9,767
증여세	2,886	1,221	2,258	1,077	627	144
세액공제	108,112	23,692	51,841	11,371	56,271	12,320
주상속세 공제	57,739	6,321	50,619	6,232	7,120	89
기타공제	1,451	142	-	-	-	-
순유산세	51,841	23,533	51,841	23,533	-	-
세대생략세	282	81	-	-	-	-
공동자산	12,829	42,539	888	5,795	11,941	36,564
생애이전	37,937	63,488	18,126	39,064	19,811	24,424

자료: IRS, Unpublished data, Aug. 2003.

유산이 상속되는 방식을 보면 주식이 전체 금액의 35.9%로 가장 많고 부동산(11.9%), 지방정부 채권(9.6%), 연금(8.5%), 개인주택(8.3%), 현금(7.1%) 등이다. 이 밖에 연방정부 채권, 관리 예금, 보험, 회사채, 예술품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표 V-7> 유산형태별 신고건수와 금액(2001)

(단위: 건, 백만달러)

	총신고		과세대상 신고		비과세대상 신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유산	108,112	215,649	51,841	123,940	56,271	91,709
개인주택	67,035	17,904	29,772	9,131	37,263	8,722
부동산	58,671	23,612	25,696	10,645	32,975	12,967
부동산(파트너십)	3,416	1,974	1,373	941	2,043	1,033
비공개주식	10,242	9,845	3,728	5,749	6,514	4,096
공개주식	86,626	67,498	41,875	45,110	44,751	22,388
지방정부채권	52,453	20,706	27,758	13,401	24,695	7,305
연방정부저축채권	16,704	1,069	8,514	630	8,190	439
기타연방정부채권	26,802	5,468	14,536	3,455	12,266	2,013
회사및외국채권	26,686	2,510	13,274	1,638	13,412	871
채권기금	11,155	671	5,802	366	5,353	304
분류불명	25,674	1,768	11,471	927	14,203	842
현금	104,367	15,398	50,487	9,832	53,880	5,566
현금관리예금	75,082	8,570	37,056	5,154	38,026	3,416
보험: 액면금액	60,228	6,257	25,383	2,301	34,485	3,956
보험: 상품대출	5,787	197	1,486	96	4,321	101
농업자산	6,739	1,082	2,602	400	4,137	682
유한파트너십	10,549	2,776	5,174	1,892	5,375	884
기타 비주식회사	6,717	2,112	2,458	1,269	4,259	844
주택담보채권	20,131	3,802	9,429	2,145	10,702	1,657
연금	58,664	18,398	23,768	6,698	34,896	11,700
무형자산	4,647	451	2,236	268	2,412	182
예술품	2,627	960	1,257	450	1,359	510
기타 자산	91,651	3,020	43,504	1,639	48,147	1,381

자료: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Fall 2002, IRS.

2. 유산세(Estate tax)

가. 개요

유산세는 증여세 및 세대생략세와 함께 부의 이전에 대한 일관된 과세기능을 수행하였다. 2001년 의회는 법개정을 통하여 유산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2009년까지 45%로 하향 조정하고 면세액도 2001년 1백만달러에서 2009년 3.5백만달러까지 인상하였다(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EGTRRA). 또한 2010년에는 유산세와 세대생략세의 일시적 폐지를 결의하고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35%로 하되, 만약 의회의 결의가 없다면 2011년에는 이들 유산 관련법이 2001년 이전법이 다시 적용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¹⁹⁶⁾.

나. 총칙

1) 신고 및 납세의무

2002년 당시 사망한 자의 유산 집행인(executor)은 총유산과 과세대상 증여 및 기타 면세액의 사망 당시 가치가 1백만달러를 초과하면 유산신고를 하여야 한다(Form 706). 유산 집행인은 유언에 따라 지명된 자로서 상속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산의 배분 이전에 상속자산을 관리하며 상속세를 납부하고 자산을 배분하는 책임이 있다(Sec. 2002). 만약 집행인 혹은 관리인(유언이 없을 때)이 없으면 고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6) 이러한 단서조항은 1974년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때문에 일몰규정을 둔 것이다.

2) 유산세 과세대상

가) 과표

총유산(gross estate)은 사망 당시 고인이 소유한 권리의 한도 내에서 국내외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Sec. 2033)¹⁹⁷⁾. 즉, 소득세에서 소득의 정의(Sec. 61)와 같이 포괄적으로 유산도 정의된다. 총유산은 따라서 그 규모와 상관없이 미국내외 물적, 인적, 유무형 재산과 공유 및 공동 자산(joint and community property)과 연부금, 일부 보험 수혜까지 포함한다¹⁹⁸⁾. 과세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재산의 이전(transfer)에 적용되므로 면세대상인 재산도 유산 과표에 포함된다. 단 유산신탁기금(trust)에 신탁된 자산은 포함되지 않고 1976년 12월 이후 제공된 증여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자산이 공정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되면 실재가치에서 매입액을 제외한 부분은 유산에 포함된다(Sec. 2043).

나) 가족사업 등의 특별 공·면제

소유자이자 경영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세 부담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업의 운영 혹은 소유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 소유의 사업은 특별공제로 유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즉, 199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자의 유산에서 자격이 되면 다음 중 적은 금액이 고인의 유산에서 제외된다. 1) 고인의 보유한 가족 소유 사업의 권리 혹은 2) 1.3백만달러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재산에 적용되는 공제를 제외한 금액(Sec. 2057, 2010).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고인의 가족 소유 사업권이 조정된 총유산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유산 집행인은 유산에 대하여 권리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recapture

197) the value of all property to the extent of the interest therein of the decedent at time of death(catch-all provision)

198) 결혼 후 부부가 취득한 모든 재산은 공동재산(communitiy property)으로 간주된다. 단 증여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각각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한다. 결혼 이후에도 각자의 소득이나 유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취급한다.

agreement). 이러한 사업공제는 증여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자 총유산의 35% 이상이 농장의 권리나 개인사업, 파트너십 혹은 비공개 주식 회사의 주식과 같이 비공개 사업의 권리라면 일단 기일에 맞추어 유산세 신고를 하고 이자를 제외한 유산세를 5년간 연기하면 그후 10년간 정기적인 분할불입 방식으로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Sec. 6166)¹⁹⁹. 이외 이들 유산은 시장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다만 마지막 이자 납부기한이 최초의 세금납부기한과 같으므로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이 아니라 14년이다. 해당되는 유산의 첫 100만달러에는 특별히 2%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과소납세한 세금에 부과되는 이자의 45%가 적용된다. 이외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Sec. 6601(i)). 한편 과세대상 재산의 50% 이상이 처분되면 납세기한도 빨라질 수 있다(Sec. 6166(g)).

다) 권리의 성격

가족 간의 권리 양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되는데 한 예로 배우자에게 생존시 유산으로부터의 소득권리, 즉 종신물권(life estate)이 주어지고 자녀에게 잔여 유산 처분권(remainder)이 주어질 수 있다. 이 때 각각의 유산은 IRS의 기준표(Unisex Treasury Tables)를 이용한 실제가치로 평가된다(Sec. 7520). 권리 양도의 형태에 따라 유산세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A가 B에게 B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자산에서 창출되는 소득 권리를 이전한 경우 B는 종신물권(life estate)을 갖는다. B가 C에게 이 권리를 매매하면 B가 살아있는 동안 C가 종신물권을 갖는다. 하지만 B가 사망하면 그 자산이 A나 A의 상속자에게 해당 자산이 다시 회수된다(reversion). 이 경우 B의 사망시 권리(소득권)가 소멸되므로 B에게 유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A가 B보다 먼저 사망하면 해당 자산에서 종신물권의 실제 가치를 제외한 금액이 A의 유산으로 처리된다.

199) 이외에도 조건부(reversionary)나 잔여 유산(remainder interest)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유산세의 연기가 가능하다(Sec. 6163).

거꾸로 A가 자산을 B에게 양도하지만 A가 살아있는 동안 A가 그로부터의 소득을 가지고 보유할 권리를 유지하면 A가 종신물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B는 잔여유산(remainder)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자산의 100%가 A의 유산으로 처리된다. 만약 B가 A보다 먼저 사망하면 잔여유산(remainder)이 과세된다. 반대로 A가 먼저 사망하면 B가 자산을 소유하게 된다.

A가 B에게 B가 생존할 동안 자산을 양도하고 이후 C에게 그 자산을 양도하면 C가 잔여유산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 A의 유산에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지 않고 C가 B보다 먼저 사망하는지 여부에 따라 잔여유산(vested remainder)을 갖거나 소유한 것으로 처리된다. 즉, C가 B보다 먼저 사망하면 C의 유산 상속자가 소유권을 받게 된다. 단 A의 자산이전은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

A가 B에게 B가 살아있는 동안 자산을 양도하고 만약 C가 B보다 오래 살면 C에게 자산을 양도한다. 이 경우 B는 종신물권을 가지며 C는 조건부 잔여유산(contingent remainder)을 갖는다. 또한 B가 C보다 먼저 사망하면 A나 A의 상속자가 자산 회수권을 갖는다. B의 유산은 변화가 없으며 C가 B보다 더 오래 살면 그 자산의 100%가 C의 유산에 포함된다. A가 사망하기 이전에 B가 C보다 먼저 사망하면 A의 유산에는 그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A가 B와 C보다 먼저 사망하면 당해 자산에서 B의 종신물권을 제외한 금액×(B가 C보다 먼저 사망할 확률)이 A의 유산에 포함된다.

A가 B에게 B의 생존시 자산을 양도하고 C가 B보다 오래 살면 C에게 해당 자산이 상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D에게 상속된다. B는 종신물권을 갖고 C는 조건부 잔여유산을, D는 집행권리(executive interest)를 갖는다. A의 유산에는 그 자산이 포함되지 않고 B의 유산에도 영향이 없다. C가 B보다 오래 살면 C의 유산에는 그 자산이 포함된다. D의 경우 D가 B와 C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B가 C보다 먼저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D의 유산에 해당자산에서 A의 종신물권을 제외한 금액×(B가 C보다 먼저 사망할 확률)이 포함된다.

라) 사망 이전 증여(gift within 3 years of death)

사망하기 이전에 직접 증여된 자산(outright gift)은 일반적으로 총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Sec. 2035(d)(1)). 그 대신 과세대상인 부분만이 유산과표에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adjusted taxable gift)로 포함되는데 사망 이전 3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우선 고인이나 고인의 유산으로 납부된 증여세는 총유산에 포함된다(Sec. 2036(c)). 그 대신 유산으로 납부된 경우 이에 대한 부채 공제가 허용되며 증여세 세액공제도 허용된다. 조건부 증여도 3년 안에 그 조건이 위배되고 또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유산에 포함될 수 있는 증여(includible gift)'라면 유산에 포함된다(Sec. 2035(d)(2)). 이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유산에 포함되었을 종신물권(life estate, Sec. 2036), 회수물권(reversion, Sec. 2037, 2038), 생명보험 수혜 등에 대한 권리가 포기되면 그 자산은 유산에 포함된다.

한 예로 고인의 사망 3년 이내에 고인의 생명에 대한 생명보험을 양도하는 경우 유산에 당해 생명보험이 포함될 수도 있다(Sec. 2035(b)(2), (d)(2)). 또한 사망하기 전 3년 이전에 양도되고 피보험자(insured)가 최종 3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총유산에는 생명보험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료는 유산에 포함된다. 사망 3년 전 이내에 보험이 양도되고 피보험자가 수수료를 내면 보험료가 아닌 보험 수혜가 유산에 포함된다. 같은 경우 다만 최종 3년간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가 지불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 수혜가 유산에 포함된다.

마) 존속 종신물권(retained life estate)과 회수, 취소

두 번째로 사망전 유산신탁기금(trust) 등을 통하여 고인이 양도하였지만 만약 고인이 생존시 혹은 사망 전에 기간 제한 없이 실제 보유한 자산(retained)은 총유산에 포함된다(Sec. 2036). 실제 보유한 사실은 1) 양도된 자산을 고인이 이용, 점유, 향유하거나 그로부터의 소득을 갖거나 2) 고인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고인이 생존하고 있을 동안 그 자산을 이용 혹은 보유할 사람을 지정할 권리를 계속 유지한 상태를 의미한다(Reg. §20.2036-1(a)).

양도된 자산을 이용 혹은 보유할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양도자와 피양도자

간의 이해나 암묵적인 동의일 수 있으며 이 때 법적 소유권은 의미가 없다. 한편 자산의 양도는 증여에 해당하며 따라서 증여시 자산의 적정한 시장가치에서 보유한 종신물권의 가치를 제외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가족 파트너십은 소득 등을 다른 가족에게 이전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특별히 제재를 받는다(Sec. 704(e)). 즉, 양도자이며 파트너인 당사자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많은 경영권을 갖고 이를 행사하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고인이 생존할 당시 유산 신탁기금을 통하여 양도한 자산은 총유산에 포함된다(자산 양도의 회수: reversion, Sec. 2037). 1) 재산의 점유나 이용은 소유권 행사를 통하여 고인이 사망한 후 피양도자가 생존해야 가능하며 2) 고인이 자산 양도시 회수물권(reversionary interest)을 유지하고 3) 고인의 사망 직전 회수물권의 가치가 전체 자산가치의 5%를 초과할 경우(가치산정은 사용가치 평가법(Special Use Valuation Method)을 기준으로 함).

네 번째로 고인이 생애에 유산 신탁기금을 통하여 양도한 자산에 대한 권리는 고인의 사망시 고인의 의지에 따라 종료, 수정, 변경, 취소될 수 있다면 총유산에 포함된다(취소 가능 양도: revocable transfer, Sec. 2038, Reg. §20-2038-1(a)). 이는 고인이나 제3자에 의하여 어느 정도 혹은 어느 때 권리가 행사되는가와 상관없다. 이와 같은 양도자산이 총유산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유산 신탁기금을 종료 또는 수정할 권한이 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1997년 8월 5일 이후 사망한 자의 유산과 관련하여 고인의 취소 가능한 유산신탁기금에서 고인 사망 전 3년 동안 양도된 자산이나 사망하기 3년 전 이내에 취소할 권리를 포기한 자산은 총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연부금(annuities)

상업연금(commercial annuities)은 수혜자가 일생 동안 일정 금액을 매년 받기 위하여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 라는 비교매매기준(comparable sales)에 따라 연금의 가치가 결정된다. 연금에서 한 사람의 생애에만 지불되는 연금(straight line annuities)은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존자 조항(survivor feature)이 있고 만약 고인이나

고용자가 연금 매입에 기여하였다면 고인 사망 후 생존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현재가치가 유산에 포함된다(Sec. 2039(b)).

단, 생존자가 지불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연금 형태에는 공동 및 생존자 연금(joint and survivor annuities: 어느 한 쪽이 생존하는 한 연금 지불), (self and survivor annuities, 매입자의 사망 후 수혜자에게 연금 지불), (minimum guarantee annuities, 연금 대상자가 최소한의 기한을 생존하지 않으면 일 시불로 지급되는 연금)이 있다.

한편 가족 간의 계약에 의하여 가족 한 쪽이 지급하는 연금은 사적 연금(private annuities)이라고 불리는데 이 때에도 생존자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의 현재가치(수혜자의 기대생명 연수×고인의 연금 기여액)가 유산에 포함된다(Sec. 2039(b)). 한 예로 부모인 A와 B가 자식에게 채권을 팔고 생존 배우자에게 연간 3,000달러를 지급하도록 약속하였다고 하자. 만약 A가 채권금액의 80%를 지불하였다면 A의 사망시 연금가치는 B의 나이에 기초한 IRS 표(Sec. 7520)에 따라 연간 1달러 연금의 현재가치는 10.54달러이며 따라서 전체 연금 가치는 25,290달러가 된다($3000 \times 10.54 \times 0.8$).

이에 비하여 퇴직연금과 이윤공유(pension and profit sharing plan)는 수혜자가 지명된 경우를 포함하여 연금 지급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유산에서 이들 항목이 제외되지 않는다(Sec. 2039(a), (b)). 이 밖에도 IRA나 Keogh plan도 전액이 유산에 포함된다.

사) 공동 소유자산

일반 소유권(tenancies in common)은 생존자 조항(survivorship feature)이 없으므로 유산에 전부 포함된다. 이에 비하면 생존자 규정과 함께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자산(married joint tenancies)²⁰⁰이나 완전 공동자산(tenancy by the entirety)의 경우 누가 그 자산 매입을 위해 지불하였는지 상관없이 자산의 절반이 처음 사망한 배우자의

200) 캘리포니아 등 8개 주가 도입하고 있는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의 개념은 주정부가 부부 간의 평등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부부가 취득한 자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산의 1/2이 처음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이 된다.

유산에 포함되며 생존한 배우자가 그 자산의 단독 소유자로서 생존 배우자의 유산이 된다. 부모와 자식 등이 공동 소유한 재산(unmarried joint tenancies)은 한 쪽 소유권자가 사망할 때 생존한 소유권자가 자산 매입을 위하여 기여한 금액을 증빙할 수 없으면 자산의 전부가 유산에 포함되고 증빙이 되면 그 한도 이외의 자산이 유산에 포함된다(Sec. 2040(a)).

아) 생명보험

고인의 생명보험 지급금은 다음의 세 가지 상황에서 유산에 포함된다(Sec. 2042). 1) 고인의 선택으로 유산 혹은 유산신탁 기금을 지급금의 수혜자로 지명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수혜자로 지명된 자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하고 제2의 수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을 때 2) 고인이 최소한 1번이라도 보험을 소유한 경우(own): 사망할 때까지 고인이 보험을 소유한 경우나 양도한 경우에도 수혜자를 변경할 권한, 보험을 담보로 이용하거나 돈을 빌릴 경우나 보험을 취소할 권한 혹은 5% 이상의 회수권을 보유한 경우 3) 보험자의 사망 이전 3년 안에 회수권이 없이 완전히 양도된 경우.

따라서 사망하기 3년 이전에 양도된 자산은 유산에서 배제된다(Sec. 2035(d)(2)). 이러한 규정은 고인의 생명에 대한 보험에 적용되며 배우자 등의 생명을 위한 보험을 고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보험의 지급금이 아닌 그 가치가 고인의 유산에 포함된다(Sec. 2033). 여기서 보험의 가치는 고인 사망시 같은 보험을 팔 때의 가치(대체비용)를 의미한다.

자) 지명권한(power of appointment)

자산이 유산 신탁기금에 양도되면 유산에는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상당한 수준에서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신탁기금의 수혜자는 다음의 권리와 권한을 갖는다(Sec. 2041(b)(1), (2)). 1) 유산의 소멸까지 유산에서 창출되는 모든 소득을 받을 권리 2) 수혜자의 건강, 교육, 부양 등과 관련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한도 내에서 유산 신탁기금을 인출할 권한 3) 매년 자산가치의 5% 혹은 5천달러 중 큰 금액을 인

출할 권한 4) 자신과 유산 혹은 양쪽의 채권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생존시 혹은 유언으로 자산의 전부나 일부를 지명할 권한 5) 신탁기금의 운영자(trustee)가 될 권한. 이러한 권한 행사는 자산에 유산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없으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 세대 생략세(GST)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이 증여를 통하여 자산을 양도하고 통제 권한(life estate, reversion, revocable transfer)을 유지하면 그 자산은 유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수혜자인 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혜자가 소유하지 않았던 자산을 지명할 권한(power to appoint)을 받으면 이러한 권한은 일반지명권한(general power of appointment)으로 유산에 포함된다.

고인이 일반지명권한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고인이 자산을 자신이나 유산 혹은 이의 채권자에게 생존시나 유언으로 지명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Sec. 2041(b)(1), (2)). 일반지명권한의 보유권자가 생존할 당시 권한이 행사, 기권(release) 혹은 소멸(lapse, 조건 없는 양도)되면 과세대상 증여가 되고 고인이 이를 행사하면 고인의 유산에 포함된다(Sec. 2514). 한 예로 A가 B의 생존 동안 신탁기금으로 자산을 양도하면 B는 그 자산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고 자식에게 양도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자산은 B의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일반지명권한이 아닌 제한된 지명권한(즉, 여타 수혜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동의가 필요한 권한, special power)의 경우 신탁기금에 포함된 자산의 일부만이 수혜자의 유산이 된다. 한 예로 A가 배우자인 B에게 신탁기금으로 자산을 양도하되 자산의 처분을 딸인 C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경우 자산의 절반만이 배우자인 B의 유산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A가 유산 신탁기금에 대하여 일반지명권한을 부여받은 후 절반은 자신을 위하여 행사하고 절반은 손자를 위하여 행사하면 A의 사망시 자신에게 아직 존재하는 자산의 절반이 A의 유산이 되며 손자에게 행사한 자산의 절반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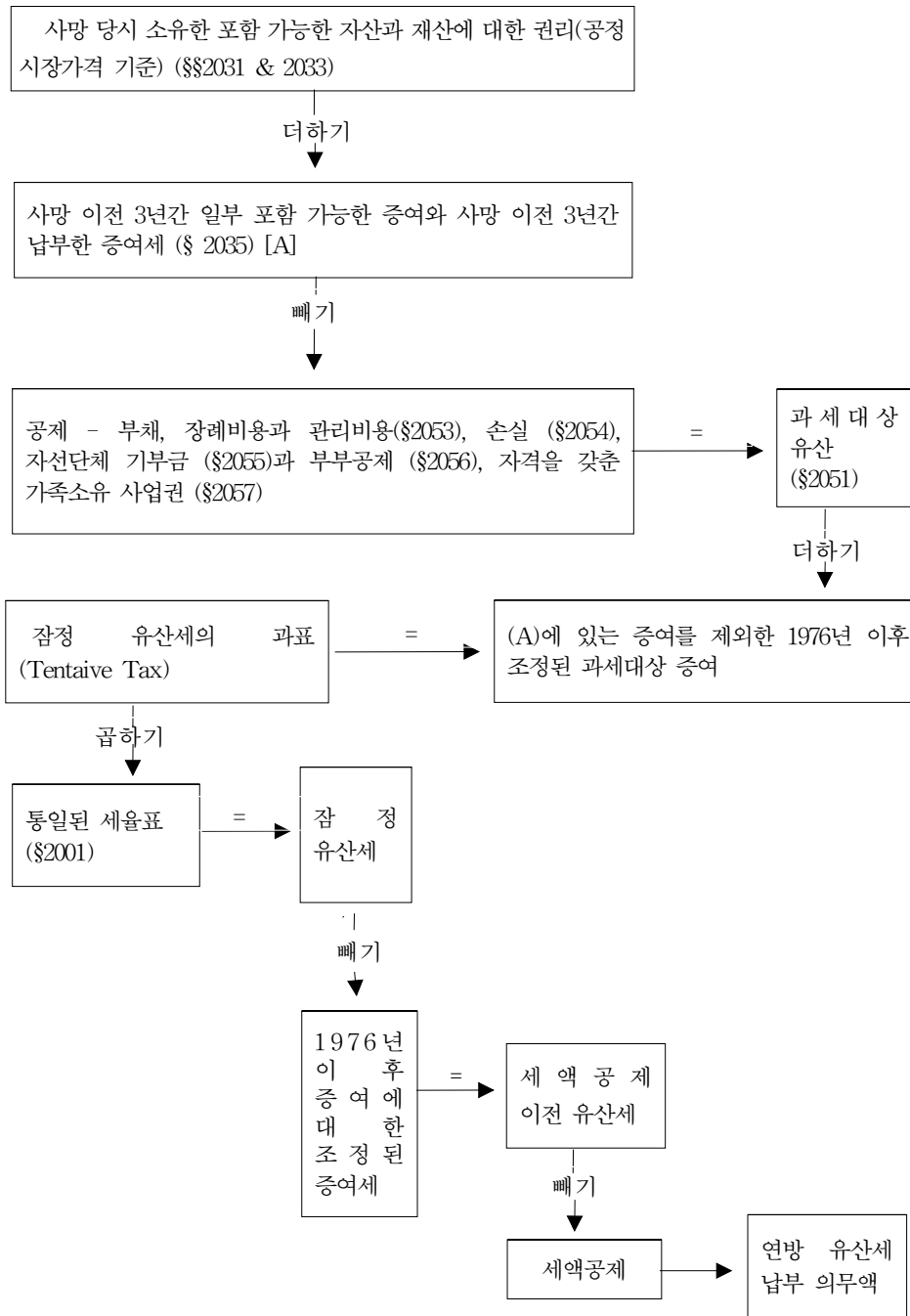
다. 과세방식 및 세율

1) 유산세 과세방식

[그림 V-1]에서 보듯이 연방유산세에서 유산세 납부액은 다음의 순으로 산출된다.

1. 총유산
2. 조정된 총유산: 총유산에서 과표공제(부채, 장례 및 관리비용)
3. 과세대상 유산: 조정된 총유산에서 생존 배우자(marital deduction)와 자선기부금에 대한 재산 양도 공제
4. 유산세 과표(estate tax base): 과세대상 유산+조정된 과세대상 증여(1976년 이후 증여)
5. 잠정 유산세(tentative tax): 유산세율표로부터 산정
6. 과세액: 잠정 유산세 - 유산세 과표에 포함된 증여세 납부액 - 표준 세액공제(applicable tax credit)
7. 순과세액(과세액이 0보다 크면): 과세액 - 기타 세액공제(주정부 상속세액, 사전 양도(prior transfer credit)와 해외세액공제 등)
8. 납세액=순과세액+세대생략 이전세(GST).

[그림 V-1] 유산세 세금 산출



특히 과세대상 유산은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를 합하여 유산세 과표가 되는데 여기서 증여는 총유산에 포함된 증여를 제외한 1976년 이후 제공된 모든 증여를 누적하여 포함한다(Sec. 2001(b)). 단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 대신 잠정 유산세에서 해당 증여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산세는 증여세와 연계되어 전체 부의 이전에 대한 일관된 과세를 하게 된다. 그러나 증여 당시와 사망 당시 적용세율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공제되는 증여세액이 사망 당시 세율을 증여금액에 곱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사망할 당시보다 더 높은 한계세율로 증여세를 사전에 납부한 사람에게는 이 방식이 불리하다.

2) 유산세 및 증여세 세율

1976년 이후 지급된 증여와 그후 사망한 자의 유산에 대해서는 공통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생애 누적된 증여와 사망시 양도를 기준으로 누진적이다. <표 V-8>는 2001년 법개정 이전에 유산세 과표에 적용되는 세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표에 따라 16개 구간에 걸쳐서 18~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세율이 과세표준액에 적용됨으로써 산출된 잠정 유산세에 또 다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유산세가 산정되므로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다.

2001년 세법 개정으로 이러한 최고세율은 2003년부터 매년 1%씩 인하되어 2007년에 45%로 하향 조정된다(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그러나 전술한 대로 2010년까지 의회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2011년에는 유산세가 2001년 당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표 V-8> 미국 유산·증여 관련 잠정세(tentative tax) 세율구조(2002)

(단위:달러, %)

최소 과세표준액(A)	최대 과세표준액 ¹⁾	A에 대한 세금	A 이상 과표에 대한 세율
0	10,000	0	18
10,000	20,000	1,800	20
20,000	40,000	3,800	22
40,000	60,000	8,200	24
60,000	80,000	13,000	26
80,000	100,000	18,200	28
100,000	150,000	23,800	30
150,000	250,000	38,800	32
250,000	500,000	70,800	34
500,000	750,000	155,800	37
750,000	1,000,000	248,300	39
1,000,000	1,250,000	345,800	41
1,250,000	1,500,000	448,300	43
1,500,000	2,000,000	555,800	45
2,000,000	2,500,000	780,800	49
2,500,000	2,500,000	1,025,800	50

주: 과세표준액은 Form 706의 column 5: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에서 조정된 증여를 포함하며 잠정세는 세액공제를 하기 이전의 유산세로 실제 납부세액이 아님.

자료: Instructions for Form 706, 709, IRS, 2003.

3) 과표 면·공제

가) 표준세액공제(applicable tax credit)

유산세와 증여세에서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Sec. 2010, 2505).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산 및 증여로서 1976년 처음 합동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Taxpayer Relief Act of 1997에서 조정되었다. 2003년 공제금액은 345,800달러이며 이 금액이 납세자의 유산 및 증여세에서 제외된다. 특히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액이 나중에 유산과표에 포함되므로 증여세에서 사용된 세액공제는 유산세에서도 세액공제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총 1백만달러에 이르는 유산과 증여는 상

속 관련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유산 등의 금액이 그 이상이면 유산세는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사망시 이용할 수 있는 표준세액공제액은 비록 일부가 사망 이전에 증여세를 상쇄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어도 감소하지 않는다. 한 예로 사망 전 2001년에 증여한 사람은 220,050달러의 세액공제로 증여세가 없다. 연후 사망시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으면 675,000달러가 유산과표가 되며 이에 따라 잠정 유산세도 220,050달러이지만 이는 또 다시 세액공제되므로 유산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처럼 2001년의 경우 675,000달러 이하의 유산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유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매우 적은 편이며 유산세가 있다하더라도 결혼공제로 배우자가 생존하는 한 납세가 대부분의 경우 연기된다.

<표 V-9> 미국 유산·증여세의 연도별 세액공제 및 면세액

(단위:달러)

	표준세액공제 금액	실질 면세액
1982	62,800	225,000
1983	79,300	275,000
1984	96,300	325,000
1985	121,800	400,000
1986	155,800	500,000
1987~1997	192,800	600,000
1998	202,050	625,000
1999	211,300	650,000
2000~2001	220,550	675,000
2002~2003	345,800	1,000,000
2004~2005	555,800	1,500,000
2006~2008	780,800	2,000,000
2009년 이후	1,455,800	3,500,000

자료: Thomas R. Pope (eds), *Prentice Hall's Federal taxation 2003*, NJ 2003.

이와 같은 유산세 규정에 따라 유산 내역과 이에 따른 세액 결정을 한 예로 살펴보면 다음 <표 V-10>과 같다.

<표 V-10> 유산 내역과 유산세의 결정의 예

(단위:달러)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예금	94,250	연금	240,000
공동토지자산(0.5×400,000)	200,000	기부금	10,000
생명보험	200,000	총공제(B)	1,176,700
자기주택	325,000	과세대상 유산(C=A-B)	485,200
주식	600,000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D):	
연금	240,000	1978년 증여	200,000
1998년 증여세	2,650	1998년 증여	480,000
총유산(A)	1,661,900	유산세 과표(C+D)	1,165,200
부채	31,700	잠정 유산세(E) ¹⁾	413, 532
장례비	15,000	기납부 증여세(F)	30,650
관리비	70,000	표준세액공제(G) ²⁾	220,550
부부공제:		주정부 세액공제(H)	9,526
주택	325,000	유산세 납부의무액(E-F-G-H)	152,806
예금	85,000		
QTIP Trust	200,000		
토지	200,000		

주: 1) 345,800달러에 1백만달러 초과분 165,200달러의 41%를 곱한 금액임.

2) 표준세액공제는 2001년 기준임.

자료: 「Prentice Hall's Federal taxation 2003」, Thomas R. Pope eds, NJ 2003.

나) 부부공제

부부공제(marital deduction)는 고인의 유산이 생존한 배우자에게 이전(passing)되었거나 될 때 총유산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산을 유산세 과표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Sec. 2056). 이러한 부부공제에는 일부 종신물권(life estate)나 연부금

등 시한부 권리(terminal interest)를 제외하고는 한도가 없다. 단, 배우자는 고인의 사망시 결혼한 상태이어야 한다(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 포함).

부부공제가 되려면 양도된 권리가 일시적이지 않거나 혹은 기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non-terminal interest). 시한부 권리는 1) 시간의 경과나 조건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고 2) 권리가 증여로 제3자에게 이전되며 3)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그후 자산을 보유, 사용할 때를 의미한다. 이러한 예로는 종신물권, 조건부 권리나 일부 연부금이 있다(Sec. 2056(b)(1), (3)). 따라서 A가 어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배우자가 생존한 동안 받도록 하고 배우자 사망시 그 자산이 다른 가족에게 양도되면 이러한 생존시 소득에 대한 권리는 부부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공제를 위하여 생존 배우자가 반드시 유산의 소유권을 물려받을 필요는 없다. 즉, 생존시 권리와 일반지명권리(general power of appointment)가 부여되면 생존 배우자가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실질적 소유권이 있을 때 즉, 자산이 존재하는 한 최소 매년 그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배우자가 받을 권한이 있거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전체 자산에 대하여 일반지명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 행사가 생존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나 사후 유서로 할 수 있으면 부부공제가 허용된다(Sec. 2056(b)(5)).

이 밖에도 부부공제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시한부 권리를 증여나 유산세상의 부부공제를 위하여 공제허용 시한부 권리(QTIP, qualified terminal property interest)로 변경할 수도 있다(Sec. 2056(b)(7), 2523(f)). QTIP의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수혜 배우자가 평생 동안 유산으로부터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2) 소득은 최소 매년 지불될 수 있고 3) 수혜 배우자는 수혜자나 그의 유산을 위하여 자산 권리에 대한 지명권이 있고 4) 이러한 권리는 수혜자인 배우자가 어떤 경우에도 단독으로 행사하며 5) 수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자산의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지명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Sec. 2523(t)). QTIP를 선택하면 그 당시에는 증여세가 없으나 수혜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살아서 혹은 유서로 처분할 때 그 재산은 증여세나 유산세가 과세된다(Sec. 2044, 2519).

다) 일반공제

유산과표(taxable estate)를 구할 때 장례비용, 유산정리비용, 부채, 미납 세금과 이자, 상해손실, 사법수수료, 자선 기부금 그리고 부부공제(marital deduction)는 금액의 제한 없이 총유산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외 자격을 갖춘 가족 소유사업 권리도 특별 공제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장례비용은 지방정부가 법으로 허용하는 한,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도 공제된다(Reg.§20.2053-1(a)(1)). 유산 집행인 비용 등 유산정리비용은 1) 비용은 관할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비용이며 2) 자산의 수집, 부채 정리 및 자산분배 등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실제 지불한 비용(Reg.§20.2053-3(a))이면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산 수혜자의 편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한 예로 주택매매비용은 매매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하여도 되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유산에 대한 부채 중에서 법이 허용하는 모든 부채를 갚는 데 지출한 비용과 고인의 사망까지의 이자, 유산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미납액도 공제된다(Reg.§20.2053-6). 이 때 채권의무(liabilities)가 발생하였어야 하며 따라서 친구나 친척에게 선물로 제공된 IOUs는 구속력이 있고 실제 지불되었어도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

관련 비용과 부채는 지불 시기와 관련 없이 공제 가능하다. 즉,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확인 가능하고 지불될 예정이면 공제가 된다. 다만 공제액은 유산세 신고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지불되지 않으면 유언상의 검인된 자산(probate estate)보다 많을 수 없다(Sec. 2053(c)(1), (2), Reg.§20.2053-1(b) (3)). 검인되지 않은 유산(non-probate asset), 즉 단지 과세를 위하여 총유산에 포함된 자산과 관련된 비용공제는 공소기한 이내(유산세 신고일로부터 3년)에 지불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없으며 추정액수를 공제해도 된다.

화재, 절도 등 급작스런 상해로 인한 유산 손실도 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Sec. 2054). 고인의 사망 이전에 입은 손실은 고인의 소득세 신고에서 그리고 자산의 분배 이후 발생한 손실은 수혜자가 공제한다. 소득세 공제와 달리 유산세 손실공제는 비율적이지 않고 유산세 금액에 따라 공제된다.

이외 유산관리비용과 손실은 유산신탁기금(trust)이나 유산의 소득세 신고(fiduciary, Form 1041)에서 공제하거나 유산세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고 항목별로 결정할 수도 있다(Reg. §1.642(g)-2). 그런데 유산세에서 표준세액공제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에서 비용공제를 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다.

과표공제에서 자선기부금도 공제된다. 소득세에서의 기부금 공제와 유산세에서의 기부금 공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총유산에 포함된 모든 기부 증여의 유산세는 제한 없이 공제되며 공립·사립 자선단체와 관계없이 100% 공제된다. 또한 사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기부는 소득세에서 공제되며 총유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기부하는 사람이 현재 기부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소득과 통제권한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며 사후 배우자 혹은 자녀가 유산을 일부 소유하기를 원하면 잔여 유산의 기부가 가능하다(remainder to charity). 이 때 기부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기부자는 잔여 자산의 가치를 현재 소득공제할 수 있고 유산세 공제도 가능하다. 이 때 공제 가능한 금액은 자산 가치에서 사망률 표(mortality table)에 근거하여 산정된 존속된 권리의 현재가치를 제외한 금액이다. 존속된 권리는 본인이나 배우자/자녀의 종신물권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혹은 기한을 정할 수도 있다(Sec. 2055(e)(2)(A)). 기부된 자산에서 본인이나 피상속인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자산의 일정액(pooled income funds)이나 일정 비율(charitable remainder annuity (un)trusts)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수준에는 제한이 있다(Sec. 642(c)(5))²⁰¹⁾.

라) 기타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이외에도 외국정부나 주정부에 납부한 유산세나 단기 상속에 따른 과도한 유산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우선 주정부 상속세의 경우 고인의 유산에 포함된 재산에 대한 세금(주정부 유산세 포함)은 세액공제된다. 이 때 공제 가능한 액수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이외에 실제 납부한 세금과 같다. 우선 최대 공제액은 제한이 있

201) 자선기부에 있어서 문제점은 주식을 투표권이 있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나누어 전자는 가족이 보유하고 후자는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유산세를 회피함으로써 자산은 포기하지 않는 대신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은 포기할 수 있다.

는데 이는 유산세 과표에서 60,000달러를 제외한 액수에 주정부 유산세 세액공제 테이블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총유산세에서 표준세액공제(applicable credit)를 제외한 액수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Sec. 2011).

두 번째로 외국 유산세의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이외에도 외국정부의 유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양국이 과세한 재산에 부과된 세금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러한 재산에 부과된 미국의 유산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단기의 빈번한 상속에 따른 유산세 공제가 있다. 이 조항은 단기간에 걸쳐서 똑같은 유산에 과도한 유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최대 10년 이내에 사망한 자가 현재의 고인에게 물려준 유산이나 현재의 고인이 사망한 후 2년 이내 다른 사람이 물려준 유산에 대해서는 납부된 유산세의 전체 혹은 일부가 세액공제된다(Reg. §20.2013-1). 이러한 공제는 그러나 현재의 고인이 그 유산을 상속받지 않았다면 발생할 공제액보다는 많을 수 없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 유산가치의 평가

1) 일반규칙

유산가치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사망 당시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나 대체평가방식(alternate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야 한다(Sec. 2031, 2). 이 밖에도 예외적인 경우 사용가치 평가방식(special use valuation)으로 유산을 평가할 수도 있다. 유산에 포함된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란 어떤 자산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갖춘 매입자와 매매자가 그 자산을 기꺼이 거래할 때 성립하는 가격을 말한다(Reg. §20.2031-1(b)).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공정가격은 해당 자산이나 유사한 자산이 특정 지역에서 매매될 때의 가격이다.

유산의 집행인이 대체평가방식을 선택하면 모든 자산은 사후 6개월이 되는 날이나 자산의 처분이 먼저 발생하면 처분한 날 평가될 수 있다. 단 모든 자산이 같은 방식(혹

은 날짜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고인의 사망 이전에 양도된 자산도 제한규정 등으로 유산에 포함된다면 다른 유산과 함께 같은 방식(날짜)으로 평가된다.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던지 대부분의 재산에서 유산세 과표가 소득세 과표가 된다(Sec. 1014(a)). 또한 장기간 보유에 대해서도 법이 이를 고려한다(Sec. 1223(11)).

2) 유산별 평가방식

일부 자산의 경우 일반적인 평가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산별로 보다 구체화된 평가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부동산은 각각 특색이 있으므로 법규정으로 일정한 평가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Reg. §20.2031-1(b)). 따라서 이 경우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 유사부동산 매매(comparable sale), 시장평가(market assessment), 최근의 주택저당 대부금, 자본화 수입(capitalization of earnings), 재생산비용(reproduction cost)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개인 소장품(personal effect)은 구매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공정가격이다(Reg. §20.2031-6(a)). 만약 소장품의 전체 가치가 3천달러를 초과하면 유산신고서에 평가서(appraisal)와 귀금속, 모피, 그림, 동전이나 우표수집 등의 상세한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생명보험은 보험의 지급금이나 대체가치로 평가된다. 즉, 보험기일이 만료되고 사망으로 지급되어야 하면 유산에 포함된 생명보험의 과표는 지급금액이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이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산으로 과세되면 보험기일이 만료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유산 과표는 액면가치가 아닌 대체비용이다(Reg. §20.2031-8).

네 번째로 각종 조건부 유산이 있다(life estate, remainder interests, term certain interests, reversionary interests). 이들은 해당 자산의 소유권보다 낮은 가치를 갖는 제한된 권리를 의미하므로 IRS가 마련한 평가표를 이용한다(Sec. 7520). 이와 같은 실제 가치 평가(actuarial valuation system)에서는 평가가 필요한 달의 연방정부 이자율(federal midterm rate, AFR)에서 산출된 이자율을 사용하여 제한된 권리의 가치를 평가한다. 특히 매년 복리로 산출된 AFR의 120%를 이자율로 한다.

다섯 번째로 투자신탁(mutual fund)의 지분은 연방법에 따라 지분 소유자가 신탁을 발행한 사람에게만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다. 이 가격을 환매 혹은 입찰가격(redemption or bid price)이라고 하며 특정 날짜에 신탁이 보유한 자산의 순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유산세 과세상 고인이 소유한 투자신탁 지분은 고인의 사망한 날 혹은 대체 평가일의 환매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판정한 바 있다(D.B. Cartwright, 73-1 USTC ¶112,926, 411 U.S. 546, 93 S.Ct. 1713(1973), Reg.§20.2031-8(b)).

여섯 번째로 상장증권의 경우 고인의 주식과 채권은 유산에 포함되며 사망한 날짜나 혹은 6개월 후 평가된다(Sec. 2033). 후자의 경우 그 이전에 주식 등이 배분되면 주식 배분이 이루어진 날짜가 평가일이 된다(Reg.§20.2032-1(c)(2)). 마찬가지로 해당 자산을 6개월이 되기 이전에 팔면 매매일이 평가일이 된다. 유산세 과표가 되는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의 공정가격은 해당되는 (다른 사람 소유의)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가 평가일에 주식시장에서 혹은 over-the-counter listing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날 인용된 매매가격의 최고 및 최저가격의 평균이 공정가격이 된다(Reg.§20.2031-2(b)).

만약 평가일에 거래는 없었지만 평가일을 전후한 합리적인 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면 ① 평가일에서 가장 근접한 이전 거래날짜의 최고 및 최저 매매가격의 평균과 ② 평가일에서 가장 근접한 이후 거래날짜의 최고 및 최저 매매가격의 평균을 가중평균하여 공정가격으로 한다. 이 때 가중치는 사망한 날짜와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 사이의 거래날짜(trading days 즉, 주말 제외) 수를 거꾸로 적용한다(Reg.§20.2031-2(b), Reg.§25.2512-2(b)). 한 예로 포항제철 주식을 보유한 A가 11월 5일 사망하고 그 날짜에 포항제철 주식이 거래되지 않은 반면 2일 거래일 이전(11월 2일)에 평균가격 50원에 거래되었고 3일 거래일 이전(11월 10일)에 평균가격 40원에 거래되었다면 공정가격은 $((3 \times 50) + (2 \times 40)) / 5 = 46$ 원이다.

이 밖에도 납세자가 상당 규모의 증권을 매매할 경우 이로 인하여 매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blockage). 이 경우 고인의 사망시 거래가 있었어도 공정가격은 대규모 거래로 인한 가격 하락 효과를 감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Reg.§20.2031-2(e), Reg.§25.2512-2(e), Rev. Rul. 59-60, 1959-1 CB237).

일곱 번째로 비상장 주식(closely held stock)은 시장에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시기의 가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유산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대개 평가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에 발생한 주식거래가 주식가치에 대한 훌륭한 지표가 된다(Reg.§20.2031-2). 단 공정가격은 강요된 매매가격이나 일상적으로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시장 이외의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되면 안 된다(Reg.§20.2031-1(b)). 만약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면 독립적인 평가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매매, 입찰 혹은 요청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없는 주식회사 주식과 채권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상장회사의 주식(증권)가치와 함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Sec. 2031(b)). 따라서 채권의 경우 건전성, 이자수익률, 만료일 등이 고려된다.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의 순자산, 예상 수익, 배당 지불능력과 함께 유형무형 자산의 공정가치와 증명된 사업수익 창출 능력 등 기타 적절한 요인을 고려한다(Reg.§20.2031-2(f), 20.2031-3, 20.2031-6(b)).

유용한 금융정보 이외에도 IRS는 다음의 요인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v. Rul. 59-60, 1959-1 CB237). ① 사업성격과 연혁 ② 경제일반 전망과 산업조건과 전망 ③ 주식 book value와 사업 재무조건 ④ 회사의 수익능력 ⑤ 배당 지불능력 ⑥ 무형자산과 영업권(goodwill) 보유 여부 ⑦ 주식매매와 평가대상 주식 유산규모 ⑧ 동일 혹은 유사사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주식의 시장가격

여덟 번째로 매매약정(buy-sell agreements)의 경우 사업주(파트너, 주주)의 사망, 은퇴 혹은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사업주에게 권리를 팔거나(cross-purchase agreement) 환매계약으로 사업체에 권리를 팔도록(redemption agreement) 약정이 되었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양측에게 구속력이 있고 가격(고정 가격 혹은 공식에 의한 가격과 상관없이)이 공정하면, 유산의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

3) 사용가치 평가방식(Special use valuation method)

상속인은 비상장 사업이나 가족농장으로 구성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가치 평가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공정 시장가격(최고 및 최선의 사용가치) 대신 현재 사용가치를 대체하여 평가한다. 단 2001년 당시 이 방식을 이용하여 허가된 재산의 가치를 줄일 수 있는 최대금액(공정가격과 사용가치의 차액)은 80만달러이다(물가상승

률에 연동).

이 방식을 이용하려면 조정된 유산의 최소 50%가 농장/비상장사업에서 이용되는 부동산 혹은 개인 재산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 최소 25%가 부동산이어야 한다(Sec. 2032A). 또한 낮게 평가된 유산세 과표가 소득과표가 되므로 만약 상황의 변화로 유산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면 과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Sec. 1016(c)).

사용가치 평가에 의한 혜택을 입으려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실제 이용 가치가 '최선의(best)' 가능한 이용가치보다 낮아야 한다. 한 예로 농장으로서의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분할, 개발된 토지의 이용보다 가치가 낮은 경우 2) 실제 이용(자격을 갖춘 이용)은 고인이나 그 가족이 고인의 사망한 날짜부터 이전 8년 중 최소 5년간 소유자로서 사용한 경우. 3)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은 고인의 가족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자격이 없는 용도로 전환하면 유산세를 내어야 하는 경우.

마. 신고와 납부

전술한 대로 2002년의 경우 유산 집행인은 총유산과 과세대상 증여 및 기타 면제액의 사망 당시 가치가 1백만달러를 초과하면 유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산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사망후 9개월 이내에 유산세 신고(Form 706)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Sec. 6161, 6075(a)). 단, 유산 집행인(executor)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최대 12개월간 납세를 연기할 수 있다(Sec. 6161(a)).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유산 신고나 유산세 납부를 만기일보다 늦게 내면 벌금이 부과된다(Sec. 6651). 또한 유산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valuation understatement)로 인하여 유산세를 과소납부하는 경우 평가액이 실제 금액의 25~50%이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20%가 벌금으로 과세된다. 단, 평가액이 실제 금액의 50% 이상이거나 과소납부액이 5,000달러 이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Sec. 6652). 또한 유산의 실제 가치보다 25% 이하로 저평가되어 신고하면 과도한 저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40%로 증가한다.

이 밖에 기소시효는 신고일이나 신고기일 중 나중의 날에서 3년이다. 그러나 신고되

지 않는 유산(혹은 증여)의 금액이 신고액의 25%를 초과하면 기소시효는 6년으로 늘어난다. 증여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시효가 없다.

3. 증여세(Gift tax)

가. 개요

증여제도 유산세와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지만 면제범위가 약간 더 복잡하고 세금은 1932년 이후 이루어진 전체 증여를 대상으로 과세된다. 2009년까지는 세율과 표준 공제의 조정이 유산세 이외에도 증여세에도 적용되지만 2010년이 되면 유산세는 1년간 폐지되는 반면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소득세와 같은 35%로 유지될 예정이며 만약 의회가 다른 결정을 하지 않으면 2011년에는 다시 2001년의 세법이 적용된다.

특정 연도에 납부할 증여세는 그 해에 이루어진 증여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이며 표준 세액공제가 증여세에 우선 적용되고 그후 그 사람의 유산에 다시 적용된다. 또한 유산세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제공된 증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부의 경우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부부가 반반씩 증여한 것으로 처리된다.

증여세와 유산세의 중요한 차이점은 피증여자 1인당 매년 11,000달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정부에 제공된 재산(사망전 3년 동안 제공된 증여에 대한 세금은 예외)은 증여세 과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반면 이러한 재산은 유산과표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세금상으로 유산세보다 유리하다. 이외에도 배우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유산을 분리함으로써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나. 총칙

1) 신고 및 납부의무

연방증여세는 한 개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완전하고 적절한(full and adequate)

보상보다 낮은 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권리에 대하여 증여 당시 공정한 시장가격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증여세는 자산이 아닌 권리에 대한 세금이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금은 아니다. 즉, 보상 없이 이루어진 서비스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Sec. 2501(a)(1)). 또한 미국시민과 영주권자의 경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하는 사람에게 있지만(Sec. 2502(d)),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수혜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Sec. 6324(b)).

증여세는 직·간접적으로 혹은 유산 신탁기금의 형태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혜자에게 증여된 물적, 인적 그리고 유무형 재산에 적용된다(Sec. 2511(a)). 이는 자산의 무상양도뿐만 아니라 매매나 교환의 실제가치보다 낮은 교환비율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상업활동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매매와 교환에도 해당된다.

이외에도 증여세는 신탁기금을 통한 양도, 부채의 감면, 부채 이자율 감면, 보험 수혜, 현금, 정부채권의 양도, 일부 이혼시 자산 배분과 연부금에도 적용된다(Reg. §25.2511-1(a)). 나아가 주식회사 등 기업에 대한 가족간 권리 이전(Sec. 2701, 2)이나 투표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에 따른) 소멸(lapse)도 증여가 될 수 있다(Sec. 2704).

증여는 증여하는 사람이 자산의 지배권과 통제권을 상실하고 자신 혹은 제3자의 혜택을 위하여 그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할 때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Reg. §25.2511-2(b)). 증여는 증여자가 이를 취소할 수 없거나 명의를 더 이상 자신에게 되돌릴 수 없거나 수혜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없을 때 효력이 발효된다(Rev. Rul. 67-396).

배우자에게 증여된 자산은 증여세 신고가 필요 없고 제3자에게 1,100달러 이하에 상당한 현재 권리(present interest)를 증여하면 신고가 필요없다. 단, 미래의 권리(future interest)를 이전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과표: 증여의 성격

현재의 권리는 즉각적인 자산의 사용, 점유, 향유 혹은 종속물권, 한시권리 등 그로부터의 소득을 제한 없이 사용,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Reg. §25.2503-3(b)).

미래의 권리는 회수물권(reversion), 잔여 유산권(remainder), 기타 권리나 유산 등 조건부건 아니건 미래에 점유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채권이나 생명보험 등 미래에 지급되는 이자 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권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g. §25.2503-3(a)).

미래의 권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증여의 가치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 미성년자에게 주어진 증여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현재의 증여로 간주된다. 1) 증여자산과 그 소득이 미성년자가 21세가 되기 이전에 미성년자인 본인에 의하여 혹은 본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2) 나머지 증여자산이 21세가 될 때 본인에게 이전되며 3) 21세가 되기 전 본인이 사망하면 증여자산이 미성년자 본인의 유산으로 처리되거나 미성년자가 일반 지명권리(general power of appointment)에 의하여 지명한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이외 지명권한(power of appointment)은 유산세에서 논의되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반지명권한을 보유하고 권한 보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 그 권한을 행사 혹은 이전 소멸되면 증여로 간주된다(Sec. 2514). 다만 제한 조건이 있는 특별권한(special power)이나 수혜자의 건강, 교육, 부양 등 확실한 기준으로 제한된 권한이나 매년 자산가치의 5% 혹은 5,000달러 이내에서 지명할 수 있는 권한도 특별권한으로 증여가 아니다(Sec. 2514(c)(1), (3)).

A가 배우자인 B에게 존속 유산 신탁기금과 지명권한을 양도하고 B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명권을 행사하면 증여가 된다. 반면 A가 이전한 지명권한에서 B, B의 유산 혹은 양측의 채권자를 제외한 자에게만 지명하도록 하였다면 B가 자녀에게 지명권을 행사하면 증여가 아니다. 이외 제3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지명권도 그러한 지명권의 행사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 과세방식 및 증여세 세율

1) 과세방식

총증여금액에서 각종 면제와 공제를 제외하면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adjusted

taxable gift)가 된다. 또한 345,800달러의 표준세액공제(2002년)²⁰²⁾가 적용되므로 1백만달러 이하의 증여는 실제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가 고인의 사후 총유산에 포함되며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세액공제는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산 양도에 따른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효과가 있다.

증여세 산출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²⁰³⁾. 1.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영구적 권리 양도를 제외한 모든 증여 2. 증여의 부분분할 3. 매년 수혜자 1인당 1,100달러에 상당한 현재 권리를 제외 4. 자선단체 기부공제 = 과세대상 증여(a) 5. 금년도 과세대상 증여(a)+이전 연도까지의 과세대상 증여(b)=총 증여(c) 6. 과세표로부터 잠정 증여세액 산정(c-b)= d 7. 잠정 세액-\$345,800 = 증여세 납부액.

증여세는 증여한 자가 납부하고 연후 이를 양도받은 자 즉, 수혜자(beneficiary)는 소득세를 납부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된 자산의 소득세 과표는 증여한 자의 과표와 같다. 다만 수혜자가 그 자산을 손익을 입고 매대한 경우 과표가 달라지는데 1976년 이후 증여된 자산의 경우 매매이익에 따른 수혜자의 소득세 과표는 증여자의 조정된 과표에 증여할 때까지 발생한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부과되는 증여세를 합한 금액이다(단, 증여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 즉, (자산의 가치-증여자 과표)/(자산의 가치-연간 면제액)을 증여세로 곱하면 된다(Sec. 2503(b)). 손실에 대한 과표는 이익에 의한 과표와 증여시 공정가치 중 적은 금액이다(Sec. 1015(a), (d)(6)).

한 예로 A가 신탁기금을 통하여 증여한 주식이 원래 A에게 15,000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증여할 때 8,000달러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자. 만약 증여할 당시 그 자산의 가치가 60,000달러라면 신탁기금의 소득세 과표는 22,200달러가 된다. 왜냐하면 증여자의 조정된 과표(15,000달러)와 재산 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7,200달러 = $45,000/50,000 \times 8,000$)가 수혜자의 소득세 과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손실로 인한 과표도 같은 이유로 22,200달러가 된다. 이러한 조정은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로 인하여 수혜자의 과표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202) applicable tax credit 혹은 unified tax credit이라고 불리운다.

203) 여기서 각종 면제나 한도액은 물가와 연동되어 매년 조종된다.

2) 증여세 세율

전술한 대로 1976년 이후에 발생한 증여와 그후 사망한 자의 유산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유산세에서 공통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생애 누적된 증여와 사망시 양도를 기준으로 누진적이다. 즉, 증여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은 해당 연도의 증여와 그 이전 과세대상 증여를 합하여 산정된 금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표 V-11>은 2002년 당시 증여 및 유산액에 대한 누진적 명목세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고 2.5백만달러까지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결정되는 16개 구간의 유산에 관하여 18~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표준 세액공제 이외 일반공제와 부부공제 등으로 유산에 대한 실질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표 V-11> 미국 유산·증여 관련 잠정세(tentative tax) 세율구조(2002)

(단위:달러, %)

최소 과세표준액(A)	최대 과세표준액 ¹⁾	A에 대한 세금	A 이상 과표에 대한 세율
0	10,000	0	18
10,000	20,000	1,800	20
20,000	40,000	3,800	22
40,000	60,000	8,200	24
60,000	80,000	13,000	26
80,000	100,000	18,200	28
100,000	150,000	23,800	30
150,000	250,000	38,800	32
250,000	500,000	70,800	34
500,000	750,000	155,800	37
750,000	1,000,000	248,300	39
1,000,000	1,250,000	345,800	41
1,250,000	1,500,000	448,300	43
1,500,000	2,000,000	555,800	45
2,000,000	2,500,000	780,800	49
2,500,000	2,500,000	1,025,800	50

주: 과세표준액은 Form 706의 column 5: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에서 조정된 증여를 포함하며 잠정세는 세액공제를 하기 이전의 유산세로 실제 납부세액이 아님.

자료: Instructions for Form 706, 709, IRS, 2003.

한편 2001년 법개정으로 이러한 증여세 세율은 2003년부터 매년 1%씩 인하되어 2009년에는 최고세율이 45%로 하락하며 표준공제도 점차 증가, 2009년 약 1,455,800달러가 되면서 실질 면세액은 3.5백만달러가 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물론 유산세에도 공히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밖에 2010년 당시에는 5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액에 대한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표 V-12> 2002년 이후 유산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표준공제 및 면세액

(단위:달러, %)

	최고세율	적용금액	표준세액공제	실질 면세액
2002	50	2,000,000	345,800	1,000,000
2003	49	2,000,000	345,800	1,000,000
2004	48	2,000,000	555,800	1,500,000
2005	47	2,000,000	555,800	1,500,000
2006	46	2,000,000	780,800	2,000,000
2007	45	1,500,000	780,800	2,000,000
2008	45	1,500,000	780,800	2,000,000
2009	45	1,500,000	1,455,800	3,500,000

3) 과표공제

1982년 이후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과 공동재산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증여를 할 수 있다(marital deduction, Sec. 2523(a)). 그러나 종속물 권이나 기타 한시적 권리의 증여는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한 일시적 증여로서 허용된 한시권리자산(QTIP)이 있다(Sec. 2523(c)).

전술한 대로 QTIP의 적용을 받으려면 수혜를 받는 배우자에게 최소 매년 소득이 분배되어야 하고 수혜 배우자 생존시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자산의 원금이나 소득의 일부를 지명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Sec. 2523(e), (t)). QTIP를 선택하면 당시에는 증여세가 없으나 수혜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살아서 혹은 유서로 처분할 때 그 재산은 증여세나 유산세가 과세된다. 이외에도 이혼에 따른 서면합의로 상대방의 재산권이나 자녀부양을 위해 양도되는 재산은 이혼 후 혹은 한시적인 권리 양도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Sec. 2516).

다음의 단체에게 혹은 그 단체를 위하여 증여된 자산은 공제가 가능하다(자선단체 기부금). 1) 미국 정부(완전히 공공의 목적을 위한 기증이어야 함) 2) 완전히 종교, 자선, 과학, 교육, 예술 혹은 미성년자나 동물보호를 위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자선단체

(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사적주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운영의 상당 부분이 선전이나 정치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단체) 3) 증여 자산을 2)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친목, 연합단체 4) 퇴역군인단체(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사적주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 단체)(Reg. §25.2522(a)-1(a)). 1997년 이후에는 기부된 자산 전체가 증여세 공제대상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만 그러하면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매입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기여를 하였으면 그 차이가 증여로 간주된다. 취소 가능한 공동 소유권(공동은행계좌, 미국정부 저축채권)은 어느 한 쪽이 자신이 기여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할 때에 증여가 된다. 한 예로 A가 B와 함께 공동 예금계좌(혹은 B의 동의 없이 유산 신탁기금 전부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유사한 소유권)를 개설한 후 B가 계좌로부터 자신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 A가 B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며 증여한 금액은 A에게 되갚을 의무가 없이 인출한 금액이 된다. 이와 A가 매입한 자산을 B와 공동 소유(joint tenancy)²⁰⁴ 하고 생존자의 권리(survivorship right)가 적용되면 A는 B에게 그 자산의 반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밖에 보험상품의 수혜자로 지명하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라. 평가방식

증여자산의 평가는 유산의 평가방식과 차이가 없이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공정한 시장가격(FMV)으로 평가된다. 즉, 적절한 정보를 가진 매매자와 매입자가 자발적으로 자산을 기꺼이 거래할 때 성립되는 가격이다. 한 예로 주식이나 채권은 증여일에 거래된 최고 및 최저가격의 평균으로 평가된다. 다만 유산세와 달리 증여에는 대체 평가방식이나 사용가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204) 공동소유(joint tenancy)는 대개 소유권자 중 일부가 제3자에게 권리를 이양함으로써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완전 공동소유(tenancy by entirety)는 부부의 소유권과 같이 생존 시 두 사람의 합의하에서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공동재산(communitary property)은 부부가 같이 소유한 재산으로 이로부터의 소득을 각각 똑같이 공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마. 비과세 및 감면

1) 과표 면제

1년에 수혜자 1명당 현재의 권리²⁰⁵⁾로 1,100달러 이하(부부분할의 경우 2,200달러)로 증여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Sec. 6019(a)). 수혜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러한 면제조항에 따라 지급된 증여는 유산세 산정을 위한 유산 과표에 포함되지 않고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만이 유산에 포함된다.

정치단체와 교육 및 의료단체에 대한 증여로 면제되며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Sec. 2503(e)). 교육에서 면제되는 증여는 제3자를 위하여 교육단체에 직접 지불한 등록금이 그 대상이며 여타 교육비용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의료 증여도 환자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의료단체에 직접 지불한 금액과 의료보험료면 금액의 제한 없이 면제된다²⁰⁶⁾. 증여자와 수혜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도 교육 및 의료 면제가 허용된다(Reg. §25.2503-6).

부부가 동의하면 어느 한 쪽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자산은 부부가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부가 각자의 증여세 신고를 같이 보고할 수 있다(부부 증여분할, gift splitting, Sec. 2513(a)(2)). 부부가 한 신고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봉투에 각자의 신고서를 동봉한다. 단 증여시 부부가 결혼한 상태이거나 증여한 이후 이혼을 하였다면 증여한 연도에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의 권리에 대하여 일반지명권리를 주지 않았어야 한다. 배우자와 제3자에게 각각 일부를 증여한 자산은 증여시 제3자에게 이전한 권리가 구분될 수 있어야 부부 사이에 증여 분할이 가능하다.

부부분할은 면제액이 2배로 증가하는 이점과 함께 배우자 유산의 규모가 차이가 있으면 유산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증여액의 절반만이 증여한

205) 현재의 권리는 수혜자가 자산과 이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용, 소유,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미래의 권리는 그러한 사용이나 소유권리가 미래의 한 시점 이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서 조건부 증여(reversion)나 잔여분 증여(remainders) 혹은 이와 유사한 권리나 유산을 의미한다.

206) Sec. 213(소득세 규정)에 면제 가능한 의료비가 명시되어 있다.

배우자 유산에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증여하지 않은 배우자는 낮은 증여세 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용하지 않은 세액공제를 가질 수 있다.

2) 특별 공·면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무상의 양도는 1) 정치단체에 대한 양도(Sec. 2501(a)(5), 단 가치 상승분은 증여자의 소득임(Sec. 84) 2) 사업상의 양도(자본증식을 위한 양도) 3) 취소 가능한 양도: 취소 조건부 유산신탁기금(revocable trust), 공동계좌 3) 관계없는 사이의 할인 4) 서비스 증여 5) 가족 최소 생활비용 이내의 부양금 6) 허용되는 증여 거부권의 행사(증여 후 9개월 이내 서면 제시, Sec. 2518) 7) 고용 관련 증여(보너스).

바. 신고 및 납부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하는 사람에게 있지만(Sec. 2502(d)),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수혜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Sec. 6324(b)). 부부가 증여를 하거나 공동재산을 증여하면 배우자도 절반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각각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개인밖에 할 수가 없으며 신탁기금이나 파트너십 혹은 주식회사 등 단체가 행하는 증여는 개별 수혜자나 파트너, 주주가 증여인(grantor)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매년 1월 1일에서 4월 15일 이전에 다음의 상황이 적용되면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증여인이 최소 수혜자 1인에게 1만 1천달러 이상의 금액을 현재 권리(present interest)로 증여한 경우 2) 증여인이 액수와 관계없이 잔여유산 등 미래의 권리를 증여한 경우 3) 증여에 대하여 부부분할을 원할 경우(Sec. 6019(a), 6075(b)).

연방소득세 신고를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증여세 신고 연기가 가능하지만 증여세 납부 연기는 이로써 가능하지 않고 따로 신청하여야 한다(Reg. §25.6161-1).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신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을 늦게 내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세금회피를 위하여 증여자산을 낮게 평가하거나, 고의적인 신고회피 그리고 기소시효 등 유산세에 부과되는 규정이 증여세에도 적용된다.

4.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GST) Tax)

가. 개요

1976년 미국 의회는 자산양도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전되건 아니면 신탁기금의 설립(trust)을 이용하여 세대를 뛰어넘어 이전되건 양쪽이 모두 유사한 세금 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세대생략세(GST tax)를 도입하였다.

1976년 이전에는 자녀 세대를 생략한 유산 신탁기금으로 자녀가 생존한 동안 소득을 지불하고 자녀의 사망시 손자녀에게 기금의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이 자주 이용되었다. 이 경우 자녀가 신탁기금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입었지만 자녀의 사망시 유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다. 한 예로 유산기금을 통하여 손자녀까지도 수혜자이고 이후 유산이 배분될 경우 2세대에 걸쳐서 2번의 유산세와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세대생략세는 자녀가 유산을 직접 상속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유산세와 유사한 정도의 세금을 자녀의 사망시 신탁기금에 부과하도록 하였다. 19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은 자녀생략세를 단순화하였지만 아직도 복잡하고 다양한 조세 회피가 가능한 실정이다.

나. 총칙

1) 과세대상

현재의 세대생략세는 모든 현존하는 조건부 취소 유산신탁기금(revocable trust)과 유언 그리고 생존할 당시의 자산양도(1985년 9월 이후)에 적용된다(Sec. 1433(a)). 세대생략세는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2613(a)에 정의된 세대를 생략한 채 차차기 세대로 자산이 양도될 때 적용된다(skip a person). 이외 손자녀가 이해관계

를 지닌 회사나 사업체에도 적용된다. 부부는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세대이며 자녀 등 직계 후손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자의 나이와 관련 당사자의 나이를 비교하여 세대가 결정된다. 양도자의 생일로부터 매25년이 한 세대가 된다(Sec. 2651(d)).

현행 법 아래서는 과세대상 종료, 과세대상 배분 그리고 직접적인 세대 생략의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세대생략세가 발동한다. 과세대상인 권리의 종료(taxable termination)는 기금 자산에 대한 첫 세대(non-skip person)의 권리가 종료되면 손자녀 등 차차기 세대(skip person)만이 그 권리를 부여받는 상황이다(Sec. 2612(a)(1)). 신탁기금에 대한 권리(interest)는 기금으로부터의 소득과 장부가액을 받을 현재의 권한(present right)을 말한다(Sec. 2652(c)(1)). 물론 다음 세대에게 이전되는 자산이 유산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면 과세대상 종료도 아니다. 혹은 Sec. 2503(e)나 의료 및 등록금 면제를 위한 양도 종료도 마찬가지다(Sec. 2611(b)(1), (2)).

과세대상 배분(taxable distribution)은 신탁기금으로부터 차차 세대로의 자산 배분(원금과 소득)이다(Sec. 2612(b)). 임의적인 소득배분으로 인한 세대생략세는 수혜자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Sec. 164(a)(5)). 직접적인 세대 생략(direct skip)에서 기금을 우회한 손자녀 세대로의 자산 양도는 그러한 자산 이전이 유산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면 세대를 생략한 양도로 간주된다(Sec. 2612(c)(1)). 예외적으로 부모가 사망한 손자녀에 대한 양도는 세대생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ec. 2612(c)(2)). 1997년 이후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사람이 직계 후손이 없다는 가정 아래 방계 피상속인에게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다.

2) 과세산정 방식과 납세의무자

세대생략세에 있어서 과세산정 방식은 유산세 등과 같은데 과세대상 종료나 배분 혹은 직접적인 세대생략이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다. 과세대상 분배에 있어서 세대생략세가 적용되는 금액은 수혜자가 받은 금액에서 세대 생략세의 결정, 징수와 환급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수혜자가 생략세를 납부한다. 유산 신탁기금 집행인이 생략세를 납부하면 이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배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종료의 경우 권리가 종료된 자산가치가 과세대상이며 비용과 해당 자산에 대한 부채

및 세금이 공제된다. 이 경우에는 기금 집행인이 세금을 납부한다. 직접적인 세대생략 양도에서는 수혜자가 받은 재산가치가 과세대상이며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자가 살아 있는 동안 직접 이전된 자산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금액과 세대생략세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된다.

유산 신탁기금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증여된 자산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 양도에 따른 증여세 납부시 세대생략세를 신고한다. 이외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당사자의 과세연도로부터 4.5개월이 만기가 된다(Sec. 2603, 2662). 직접적인 세대생략 증여를 제외하고 세대를 생략한 자산 양도가 개인의 사망시 그리고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면 주정부에 납부한 세대생략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단, 그러한 증여로 부과된 연방 세대생략세의 5%가 최대 공제한도이다. 비용, 부채와 세금은 유산세와 마찬가지로 공제된다(Sec. 2604, 2622(b)).

다. 세대생략세 세율

세대생략세의 세율은 유산세 최고세율을 산입비율(inclusion ratio)로 곱한 균등세율로 과세된다. 산입비율은 1-적용비율(applicable ratio)과 같다. 적용비율은 신탁기금과 직접적인 세대생략 양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다음의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분모는 직접적인 세대생략으로 양도된 자산이나 유산 신탁기금에 배당된 GST 면제액이다. 분자는 직접적인 세대생략이나 신탁기금으로 이전된 자산가치에서 기금으로부터 되찾은 재산에 해당하는 유산세와 Sec. 2055(2522)에 따라 허용된 자선단체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러한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면제액으로 인한 가치 상승을 세대생략세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Sec. 2641, 2642).

$$\text{적용비율} = \frac{\text{기금이나 재산에 배당된 세대생략세 면제액}}{\text{양도된 자산의 가치} - (\text{연방 및 주정부 유산세} + \text{자선단체 기부금})}$$

한 예로 A가 신탁기금을 통하여 자녀인 B에게 그 당시 4백만달러의 자산을 양도하고 잔여 유산은 손녀인 C에게 양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1.1백만달러가 면제되었는데 B

의 사망 당시 기금의 자산이 8백만달러이다. 유산세나 공제가 없다는 가정 아래 이 경우 적용비율은 $1.1/4=0.275$ 이며 산입비율은 $1 - 0.275=0.725$ 이다. 따라서 $0.725 \times 0.5=0.3625$ 가 세대 생략세의 세율이며 납세액은 0.3625×8 백만달러와 같다.

라. 과표 면·공제조항

세대생략세(GST)에서 면제되는 항목에는 우선 일반면제로서 세대를 생략하고 자산을 양도하는 사람 1인당 1.1백만달러가 있다(부부 분할은 2.2백만달러, Sec. 2631). 일반면제는 일단 이루어지면 취소될 수 없다(Sec. 2362). 두 번째로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는 피증여자 1인당 연간 1,100달러가 일반증여와 마찬가지로 면제된다. 사용되지 않은 면제액은 차례대로 생존시 이루어진 직접적인 세대 생략, 유언에 의한 세대 생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 세대를 생략한 신탁기금으로부터의 과세대상 이전에 적용된다(Sec. 2362).

전술한 대로 세대생략세에 있어서 과세산정 방식은 유산세 등과 같다. 과세대상 종료의 경우 권리가 종료된 자산가치가 과세대상이며 이에 따라 비용과 해당 자산에 대한 부채 및 세금이 공제된다(Sec. 2604, 2622(b)). 직접적인 세대생략 증여를 제외하고 세대를 생략한 자산 양도가 개인의 사망시 그리고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면 주정부에 납부한 세대 생략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단, 그러한 증여로 부과된 연방 세대생략세의 5%가 최대 공제한도이다.

5. 유산과 유산신탁기금 소득세(Estate and Trust Income Tax)

가. 총칙

국내 유산(estate) 혹은 유산신탁기금(trust)의 관리자는 유산/신탁기금에 축적되거나 혹은 배분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Form 1041로서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유산/기금은 연방소득세 규정상 별개의 법적 실체로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고 개인과 유사하게 과세된다. 다만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피하기 위하

여 유산/기금의 경우 수혜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을 유산/기금의 소득에서 공제 (schedule B)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수혜자가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pass through entity).

유산의 집행인은 고인이나 고인의 유산에 대하여 납세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집행인은 추정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그 대신 유산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신탁기금의 집행인은 유산의 경우와 달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총소득이 600달러 이상인 유산 혹은 신탁기금은 유산소득세 신고(Form 1041, U.S. Fiduciary Income Tax Return)를 해야 한다. 유산에 있어서 인적공제는 600달러이며 마지막 소득세 신고에서는 인적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Sec. 642(b), Reg.§1.642(b)-1). 그러나 만약 그 수혜자가 비영주 외국인이거나 납세대상인 소득이 있으면 총소득이 600달러를 넘지 않아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Sec. 6012(a), Reg.§1.6012-3). 유산신탁기금에서 simple trust는 인적공제가 300달러이며 complex trust의 인적공제는 100달러이다. 유산/신탁기금의 집행인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원칙 중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선택된 원칙을 다음 연도 신고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

나. 과세방식과 세율

1) 이중과세와 분배 가능한 소득(DNI)

유산과 신탁기금은 소득세를 납세하는 실체이므로 이들에게 과세된 소득이 수혜자에게 배분될 때 또 다시 과세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배분된 소득과 신탁기금 등이 배분하지 않은 소득 규모와 성격을 알아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IRS는 분배 가능한 순소득(distributable net income, DNI)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분배 가능한 순소득은 분배된 혹은 분배되지 않은 소득과 그 성격을 파악하고 세법상 특별대우를 받는 양도소득 등을 추적하기 위하여 개발된 개념이다(conduit principle). 분배 가능한 소득은 유산/신탁기금의 소득 분배에 따른 공제와 수혜자의 소

득 과세를 제한하고 그 성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DNI는 수혜자에게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기금/유산이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따라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측정하고 이는 수혜자의 총소득에 포함되는 금액(과세되는 소득)을 결정한다. 한 예로 schedule B Line 9의 '현재 분배되어야 하는 소득'²⁰⁷⁾이 DNI보다 적으면 이 금액(first tier distribution)을 기금이 공제할 수 있다.

simple trust의 경우 IRS Code 643(a)와 651(a)는 각각 최고 소득(income ceiling), 최고공제(deduction ceiling) DNI를 정의하고 이들을 법정소득(state law income)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유산신탁기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금의 소득세로 과세한다. 연후 수혜자에게 배분된 소득을 수혜자 소득세로서 과세한다. 따라서 유산/신탁기금과 수혜자 사이의 소득배분이 핵심이다. complex trust도 simple trust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지만 내용이 더 복잡하다. complex trust에서는 현재 배분되어야 하는 소득과 이외 배분소득(배분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축적된 소득과 원금)으로 구분되어 현재 배분소득과 DNI의 관계에 따라 기타 배분소득의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2) 세율

유산소득세 세율은 신탁기금 소득세와 동일하다. 이외에도 만약 최저한세(AMT)가 일반소득세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은 유산 혹은 기금의 소득세에 추가된다. 유산/금 소득세 세율은 15~38.6%로 1,859달러에서 9,200달러까지 5개 소득구간에 적용된다. 이를 개인소득세 세율과 비교해보면 우선 개인소득세는 세율이 10%(0~6,000달러), 15%(6,000~27,950달러)에서 38.6%까지 있어 유산소득세의 과세소득이 개인소득세보다 매우 낮고 세율도 10%가 아닌 15%에서 시작되는 특성이 있다.

207) income required to be distributed: 그러나 실제로 분배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라 유언과 지역법에 따라 다르다.

<표 V-13> 유산기금과 유산소득세의 한계세율과 과세구간

(단위:달러, %)

과세대상소득	소득세 = A+한계세율×B		B
	A	한계세율	
2001:			
0~1,800	0	15	0
1,800~4,250	270	28	1,800
4,250~6,500	956	32	4,250
6,500~8,900	1,653.5	36	6,500
8,900 이상	2,517.5	39.6	8,900
2002:			
0~1,850	0	15	0
1,850~4,400	277.5	27	1,850
4,400~6,750	966	30	4,400
6,750~9,200	1,671	35	6,750
9,200 이상	2,528.5	38.6	9,200

주: 1991년 이후 세율로 유산/신탁기금은 개인소득세 세율표를 사용할 수 없음.

다. 과표 면·공제

유산과 유산신탁기금에 같이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유산/신탁기금의 과세 대상 소득은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산출된다. 한 예로 유산/기금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수혜자에게 분배되더라도 과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금의 소득세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즉, 기금 등이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자산을 보유하면 이를 신탁기금과 피상속인 등이 각각의 배분소득에 따라 나누어 공제받는다(Reg.§1.167(h)-1(c), 1.611-1(c)(5), 1.167(h)-(1)(b), 1.611-1(e)). 이 밖에도 신탁기금/유산의 소득세는 일반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AMT)의 적용을 받는다(Sec. 59(c))²⁰⁸).

208) 유산/신탁기금의 경우 AMT 과세소득에서 22,500달러의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75,000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이 있으면 1달러당 75센트로 면제금액이 줄어든다(Sec.

노령자 공제와 EITC를 제외하면 신탁기금/유산도 일반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Sec. 642(a)(2), (b)). 다만 기금/유산과 수혜자에게 할당되는 세액공제는 법정소득(state law income) 대비 분배소득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 최고 2% 기타 공제도 기금/유산에 적용되는데 이 때 2% 한도는 배분된 소득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집행인 수수료 등 기금/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합리적인 비용은 유산세(Form 706)에서 공제되므로 유산의 소득세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만약 소득세에서 이러한 비용을 공제하려면 집행인은 이를 유산세 공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Sec. 642(g), Reg. §1.642(g)-1)

일반적으로 신탁기금이 분배 가능한 순소득(DNI)을 갖고 있는 한 유산/기금의 배분은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만약 기금/유산의 약조에 따라 적절하게 지불되고 회계 처리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Sec. 663(a)). 이 경우 유산/기금은 이를 공제할 수 없지만 수혜자도 소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 면세된다(Sec. 102). 즉, 기금 원금(gift of corpus)의 배분은 과세대상이 아닌바, 기금 약조에 따라 특정 금액이나 재산을 3번 이내에 걸쳐서 정액으로 지불되는 배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Sec. 663(a)).

현금이 아닌 재산(in-kind distribution)이 배분될 경우 자산 관리인은 손익 혹은 과표이연(carry-over basis)을 선택할 수 있다(Sec. 643(e)). 전자의 경우 신탁기금 등이 마치 공정 시장가격에 재산을 수혜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다만 이 때 자산은 매매에 따른 손실을 자산과 수혜자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Sec. 643(e)(3)(iii), 267(b)(6)). 같은 이유로 감가상각되는 재산을 분배할 때 양도차익을 기금이 공제할 수 없다(Sec. 1239). 구체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손익이 인정되지 않지만 신탁기금/자산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수혜자의 소득(DNI 배분)은 유형 재화의 공정 시장가격과 과표 중 적은 금액이 된다(Sec. 643(e)(3)). 그 결과 수혜자는 과표의 이연이 가능하다.

55(d)(10(C)(ii)).

라. 유산과세(estate²⁰⁹) taxation)

1) 기본원칙

개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해에 소득세 납부나 환급을 위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Reg.§1.6012-3(b)(1)). 사망한 해에는 부부합산 신고(joint return)도 가능하지만 고인의 소득은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만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날짜와 관계없이 표준공제나 면제는 모두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사망하면 고인의 유산은 자동적으로 독립된 소득세의 과세실체로 간주된다. 고인의 과세연도는 사망날짜에 종료되고 그 다음 날로부터 유산의 과세연도가 시작되며 유산이 완전히 배분될 때까지 존속한다(Reg.§1.691(b)-1). 유산의 존속기간은 수탁인 혹은 집행인(fiduciary)²¹⁰이 일반적인 유산의 관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다. 수탁인은 고인의 자산을 모으고 부채를 정리하며 자산을 피상속인에게 배분할 의무가 있으며 유산의 수탁인은 집행인(executor)이라고 한다. 집행인은 고인이나 고인의 유산에 대하여 납세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총소득이 연 600달러 이상인 유산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Form 1041), 유산에 있어서 인적공제는 600달러이며 마지막 소득세 신고에서는 인적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Sec. 642(b), Reg.§1.642(b)-1). 다만 집행인이 개인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고 세금은 유산으로부터 지불된다(Sec. 6903, Reg.§301.6903-1).

2) 소득의 정의와 회계원칙

생존시 고인이 이용하던 회계원칙이 고인의 소득과 공제비용을 결정한다. 즉 과세 목적상 발생주의 원칙(accrual basis)이 사용되었다면 사망한 날짜까지 발생한 소득과 비

209) 개인이 사망하면 고인의 재산을 피상속인에게 배분할 때까지 유산이 존속하며 이후 법에 의하여 유산이 해체된다.

210) 수탁인(fiduciary)은 유산신탁기금이나 유산의 관리인(trustee, executor)으로 법적 합의에 따라 유산의 수혜자를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유언에 의한 사람은 집행인(executor), 법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은 관리인(administrator)라고 한다.

용이 고인의 마지막 소득신고(Form 1040)에 포함되며 단지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과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Sec. 451(b), Reg.§1.451-1(b)). 반면 대개 그러하듯이 고인이 평소에 현금주의 원칙을 이용하였다면 사망한 날까지 실제로 들어온 소득과 비용이 고인의 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며 발생은 이전에 하였어도 그후 (유산이나 신탁기금) 받은 소득과 지불한 비용은 유산에 포함된다(Sec. 691(a), Reg.§1.691(b)-1,2).

예외적으로 유산으로 지불한 고인의 의료비용은 고인 사망 후 1년 안에 지불되는 한 의료비를 고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Sec. 213(c), Reg.§1.213-1(d)). 또한 생존한 배우자가 이를 지불하면 지불한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산 집행인이 지불한 의료비는 사망 후 1년 이내에 지불되는 한 유산신고에서 공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인의 소득신고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 금액의 제한이 없는 반면 후자는 소득의 7.5%라는 제한이 적용된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현금주의 원칙 등으로 고인의 마지막 소득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은 고인 관련 소득(IRD, income in respect of the decedent)으로 간주된다. 고인 관련 소득은 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실제로 받은 유산이나 수혜자의 소득신고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예에는 다음의 소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현금주의 원칙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다. 1) 고인의 소득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 2) 미국 저축채권(US saving bonds)에서 발생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 3) 사망 이전에 발표된 그러나 지불되지 않은 주식배당 4) 사망한 날짜까지의 정기예금 이자 5) 사망한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유산이 신고하는 사망관련소득(IRD)은 마치 고인이 생존하였다면 신고할 성격의 소득으로 간주된다(Sec. 691(a)(3), Reg.§1.691(a)-3). 즉, 유산이나 수혜자가 자신의 소득신고에 포함하는 사망 관련 소득에 대하여 유산 등은 납부된 유산세를 제한 없이 상세 공제할 수 있다(itemized deduction). 이는 사망 관련 소득이 고인의 유산세 신고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Sec. 691(c)).

3) 과표공제

고인의 생존시 공제 가능한 비용 등이 발생하였지만 고인의 소득신고에 포함되지 않

은 비용은 유산이나 수혜자가 이를 지불한 연도에 자신의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인 관련 공제 DRD, deduction respect of the decedent, Reg.§1.691(b)-1). 따라서 이 공제는 유산신고(Form 706)와 소득신고(Form 1041)에서 두 번 공제된다. 또한 고인에 의하여 사망 이전에 발생한 사업과 자본손실은 고인의 마지막 소득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후로 신고가 연기될 수 없다. 그러나 신고된 손실을 운영업손실에 의한 환불(net operating loss carry back)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전 연도의 소득세 신고에도 적용되어 환불될 수 있다.

마. 유산 신탁기금 과세(trust²¹¹⁾ taxation)

신탁기금은 재산을 유지하고 있는 법적 실체로서 집행인은 기금 설립 당시 합의에 따라 운영된다. 유산/기금의 소득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산과 마찬가지로 신탁기금도 과세대상 실체로 수혜자에게 소득을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할 수 있으며 그 대신 분배된 소득은 수혜자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유산은 고인의 사망시 자동적으로 존재하는 데 비하여 기금은 설립되어야 한다. 기금은 생존할 당시 기금 혹은 유언에 의한 기금, 위자료, 보험, 기부금 기금 등 다양한 기금이 있고 단순한 소득분배인지 아니면 기부금이 있는지에 따라 simple trust와 complex trust로 구분된다.

simple trust는 현재 발생하는 모든 법정 소득(state law income)을 수혜자에게 배분하여야 하고 기부금이 없으며 신탁기금의 원금(corpus)은 분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Sec. 651(a)(1), (2), Reg.§1.651(a)-1). 이에 비하여 complex trust는 simple trust가 아닌 기금으로 원금이나 누적된 소득을 분배하고 기부를 하기도 한다. 기금의 수혜자는 소득의 수혜자와 잔여 유산 수혜자로 구분되며 후자는 소득권리가 소멸된 이후 기금의 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다.

211) 유산신탁기금은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법적 실체로서 집행인은 유언이나 증여자의 생존시 일반 규정과 기금 합의서에 따라 관리인이 기금의 수혜자를 위하여 재산을 운영한다. A trust is an arrangement created either by will or by an inter vivos declaration by which trustees take title to property for purpose of protecting or conserving it for the beneficiaries under the ordinary rules applied in chancery or probate court.

유산 신탁기금을 설립하는 이유에는 과세 관련 이유가 있고 기타 이유가 있다. 기금은 미성년자와 같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립되기도 하고 또는 신탁기금을 통하여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자산의 투자와 운영에 대하여 사후에도 통제할 수 있다. 기금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기금은 별개의 납세주체이므로 누진 과세적 소득세 성격을 고려할 때 기금 혹은 수혜자에게 자산의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즉, 자산의 양도자가 신탁기금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연방소득세 규정상 자산의 양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grantor trust).

바. 신고 및 납부

유산에 있어서 신고기일은 유산의 과세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가 완료된다(혹은 4월 15일: calendar year trust). 집행인은 12개월이 아니더라도 유산의 첫 번째 과세연도를 연중에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첫 번째 과세연도가 선택되면 그후 과세연도는 IRS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종료된다. 유산 신탁기금의 과세기한도 기금의 과세연도가 종료되고 45개월이 되는 날이다(혹은 4월 15일: calendar year trust).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산과 신탁기금의 소득세 신고는 연기될 수 있지만 유산소득세는 일반적인 만료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유산/신탁기금의 집행인은 기금의 소득을 분배받은 각각의 수혜자에 대하여 매년 Schedule K-1, Form 1041을 제출하여야 하고 복사본을 수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혜자는 그 대신 Schedule K-1과 일관된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과세 여부는 전체 유산에서 수혜자 각자가 다른 유형의 소득을 분배받은 지분에 따라 결정된다(Sec. 652(b), 662(b)).

유산과 신탁기금은 관리기간의 종료와 자산의 배분으로 해체된다. 유산/기금이 해체되는 과세연도에는 운영업손실, 자본손실이나 초과공제를 수혜자가 넘겨받아 자신의 소득세 신고에 포함할 수 있다.

사. 유산과 유산 신탁기금을 이용한 세금회피

신탁기금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우선 한 개인이 같은 수혜자나 여러 수혜자들을 위하여 다중유산 신탁기금(multiple trust)을 설립하여 다수의 인적공제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1) 각각의 유산 신탁기금을 설립하는 독립적인 목적이 없고 2) 기금의 설립자가 같으며 수혜자들은 유사하며 3) 누진과세나 최저한세(AMT)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 유산 신탁기금이 설립된 것으로 보이면 이들 신탁기금은 하나의 기금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Sec. 643(e)).

증여자 유산 신탁기금(grantor trust)은 과세상 적절하게 설립되지 않은 신탁기금(not properly constituted)으로 이러한 기금의 소득은 기금 혹은 수혜자에게 과세되지 않고 증여자에게 과세된다. 증여자 신탁기금은 증여자가 기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기금으로 한 예로 증여자나 그 배우자가 어느 한 때 기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기금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갖는 상황을 의미한다. 만약 합리적인 수준에서 증여자나 그 배우자에게 언제든지 신탁기금의 자산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러한 회수 가능 유산 신탁기금(reversionary trust)도 증여자 신탁기금처럼 처리된다. 다만 증여자의 직계가족인 수혜자의 사망시 신탁기금의 자산이 증여자 등에게 되돌아가는 경우 혹은 증여자가 신탁기금의 원금에 대하여 5% 이하의 회수권을 갖는 경우는 예외이다. 증여자가 기금을 해체할 권리(revocable trust)를 갖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Sec. 676(a)).

이외에도 증여자 의사에 따라 신탁기금의 소득이 현재 혹은 미래에 증여자에게 분배될 수 있으면 기금 소득이 증여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며(Sec. 677) 신탁기금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Sec. 674(b)). 또한 신탁기금으로부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받는 등 증여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기금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유산 신탁기금을 이용하여 자산/소득의 실제 소유자를 숨기고 위장거래를 할 수 있다. 기금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개인 비용을 공제받거나 거래 및 소유권을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유산 신탁기금 남용(abusive trust)에

연관된 자는 민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Notice 97-24, 1997-1 C.B. 409).

이에 따라서 한 개인이 전 생애에 상속과 증여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누진 및 누적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이용된다(accessions tax) 즉, 특정 연도의 세금은 전체 취득재산의 세금에서 이미 취득한 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연간 면제와 전생애 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유산 관련 세금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나 유산세 혹은 세대생략세(GST)가 부과된다. 유산세는 사망으로 인한 자산 이전에 대한 세금이며 증여세는 생존 당시 자산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한편 세대생략세는 유산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기금을 이용하여 중간 세대를 생략하고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이다.

자산을 증여하는 납세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년 1인당 11,000달러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자산 이전은 증여 당시 공정 시장가격으로 과세되거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납세를 연기한다. 한편 일생 동안 기증한 과세대상 초과 증여자산과 유산은 납세자 사망 후 통합되어 과세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이때 세액공제를 받는다(accessions tax).

납세자는 일생 동안 345,800달러(2003년 기준)에 이르는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약 1백만달러에 이르는 과세대상 초과 증여와 유산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 내지는 상속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여와 유산은 통합 관리되며 유산(증여) 규모에 따라 16개 구간에 걸쳐서 18~49%에 이르는 세율로 누진과세되는 것이 미국 상속세 제도의 특징이다.

2001년 미국 의회는 유산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2009년까지 45%로 하향 조정하고 면세액도 2009년까지 3.5백만달러로 인상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증여세를 제외한 유산세와 세대생략세의 한시적 폐지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만약 의회가 다른 법률도

입하지 않으면 2011년 이후 유산세와 세대 생략세는 2001년 규정이 다시 적용될 예정이다.

사망자 가운데 유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비율은 1934년 약 0.9%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9년 당시 약 2.3%에 달한다. 총유산 대비 유산세 즉, 실효세율도 약 7%에서 18~19%로 점차 증가해 왔다. 이외 상속되는 자산은株式이 전체 금액의 35.9%로 가장 많고 부동산(11.9%), 지방정부 채권(9.6%), 연금(8.5%), 개인주택(8.3%), 현금(7.1%) 등이다.

최근 상속세의 GDP 대비 비중은 0.2~0.3%에 달한다. 또한 유산 및 증여세가 총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2년 당시 약 2.6%에서 2001년에는 1.4%로 감소하였다. 그 중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산세의 15.4%에 불과한데 이는 증여세가 부부의 경우 증여받은 사람 1인당 2.2만달러까지 면세되고 표준세액공제로 일생동안 345,800달러에 이르는 증여세를 유산상속 때까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유산세

유산세는 사망 당시 재산의 공정 시장가격을 기준하여 부과된다. 총유산은 사망 당시 고인이 소유한 권리로서 국내외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즉, 유산도 소득세에서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국내외 물적, 인적, 유무형 재산과 공유 및 공동 자산 등을 포함한다. 만약 자산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되면 실제가치에서 매입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유산에 포함된다. 이외 종신물권(life estate)과 잔여물권(remainder), 사망 3년전 증여, 연금, 생명보험금 그리고 지명권은 내용 혹은 권리의 성격에 따라 유산에 포함된다.

유산 집행인은 총유산 등이 면세금액(2003년, 1백만달러)을 초과하면 고인의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유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산에 대한 낮은 가치 평가로 유산세를 과소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총유산에서 장례비, 부채, 기부금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인 초과 증여를 합한 금액이 과세대상 유산인데 이를 유산세 세율과 곱하면 잠정 유산세가 된다. 잠정 유산세에서 기 납부한 증여세와 표준세액공제를 제하면 순유산세이며 여기에 혹시 있을 세대 생략

세를 합한 세금을 납부한다. 이처럼 상속 관련 세금은 서로 연계되어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일관된 과세를 한다.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부공제를 통하여 유산세가 면제된다. 단, 부부공제가 되려면 양도된 권리가 일시적이지 않거나 혹은 기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non-terminal interest). 그러나 부부공제를 위하여 생존 배우자가 반드시 유산의 소유권을 물려받을 필요는 없다.

유산은 고인 사망 당시 공정한 시장가격이나 대체평가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사용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공정 시장가격은 해당 자산에 관한 필요한 정보에 지닌 매입자와 매매자가 그 자산을 기꺼이 거래할 때 성립하는 가격을 말한다. 각종 조건부 유산은 국세청이 마련한 평가표를 이용한다. 이외 비상장 주식은 주식거래 가격, 수익 및 배당, 유사 업종의 증권가격 등을 고려하고 가치를 평가한다.

다. 증여세

증여세는 납세자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하고 적절한 보상보다 낮은 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권리에 대하여 증여 당시 공정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보상이 제공된 서비스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한시적 권리를 제외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부의 경우 제3자에게 증여한 자산은 부부가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처리된다.

증여는 자산의 지배권과 처분권이 완전히 이전되어야 완성된다. 또한 회수물권이나 잔여물권 등 현재의 권리가 아닌 미래의 권리를 증여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의 권리는 즉각적인 자산의 사용, 종속물권 혹은 한시물권 등 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을 제한 없이 사용 혹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증여세도 유산세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며 다만 면세 범위가 약간 더 복잡하다. 증여가 연간 면세한도(증여받는 사람 1인당 11,000달러)를 초과하면 자산을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1백만달러에 이르는 증여는 세금납부를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그 대신 과세대상 초과 증여는 나중에 총유산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부부 증여, 기부금 그리고 1.1만달러의 면세를 제외한 과세대상 증여에 이전 연도 증여를 합한 총증여로부터 잠정 증여세를 산정하고 여기서 표준세액공제를 빼면 증여세가 된다. 학자금과 의료비 그리고 기부금은 증여세가 없으며 생일, 졸업, 결혼이나 금혼식 선물 등도 면세된다. 만약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라. 세대생략세와 유산 소득세

고인의 자녀가 유산기금으로부터 소득을 분배받고 자녀 사망시 손자녀에게 신탁기금의 자산을 상속받으면 유산세를 회피할 수 있다. 1976년 이후 세대를 뛰어 넘는 상속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세대생략세를 도입하고 있다.

세대생략세는 유산 신탁기금(trust)을 이용하거나 중간 세대를 생략한 직접 상속에 적용된다. 후자의 경우 신탁기금의 권리가 자녀로부터 손자녀에게 이전되거나 신탁기금에 속한 자산이 손자녀에게 배분되면 세대생략세가 발동한다. 세대생략세는 유산세의 최고세율과 세대를 생략한 상속자산의 가치 상승을 감안한 적용비율을 상속자산에 곱하여 결정된다. 자산을 양도하는 사람 1인당 면세액은 1.1백만달러(부부 2.2백만달러)이다.

유산 혹은 신탁기금의 집행인은 유산에서 창출된 소득 혹은 유산으로부터 자녀 등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산 혹은 신탁기금이 배분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유산/기금의 소득세 세율은 일반 개인소득세와 같은데 다만 이러한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1,850~9,200달러로 개인소득세 소득구간에 비하여 훨씬 낮다. 유산기금을 이용한 상속 관련 세금 기피가 상당하므로 미국에서는 유산신탁기금의 설립과 이를 통한 자산 처분과 소득 관리 등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에서는 유산세와 증여세 그리고 세대생략세가 서로 연계되어 관리됨으로써 상속 관련 제반 세금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특히 증여세에서는 일생 동안 기증한 증여자산이 사후 통합되어 과세됨으로써 증여나 유산의 형태로 재산이 상속되는 데 왜곡이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 유산 관련 세금에서 특이한 점은 세대생략세로서 손자녀

나 그 이후 세대에게 자산이 이전됨으로써 자녀에게 부과되는 유산세를 회피하려는 동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유산은 소득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정의됨으로써 왜곡된 형태의 유산상속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특히 자산의 평가는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자주 문제시되는 평가의 왜곡 논란이 적은 편이다. 이외 2010년 한시적으로 유산세가 폐지되는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VI. 재산세

1. 개요

가. 기본 절차

재산세는 재산의 이용 권리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자체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직접세이다. 미국에서 재산세는 중앙정부의 세원이 아니라 지방정부, 그 중에서도 카운티나 시, 학교구역 등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부과하여 공공교육 등에 지출한다. 또한 주법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학교구역 혹은 경찰, 소방 등 특별 과세구역 등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개 해당 자산에 대한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율과 재산의 과세가액(taxable value)에 따라 결정된다. 과세가액은 해당 자산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감정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과세가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재산의 소유자는 평가된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수입이므로 재산세 세율은 전체 과세가액과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기초자치단체가 재산을 감정할 때 유사한 가치를 지닌 재산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²¹²⁾. 따라서 많은 경우 주나 지방정부의 심사위원회(equalization board)가 평가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가액을 심의, 최종 확정한다. 즉, 대부분의 재산세 행정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담당하지만 같은 주 내에 있는 유사한 재산은 균일하게 과세해야 하므로 주정부가 평가와 과세과정을 감독 및 규제하고 나아가 주정부가 직접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공기업(public utilities)이나 무형자산, 광산 등 천연자원

212) 감정(appraisal)은 추정된 평가액을 평가액(assessment)은 재산세 목적상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의미한다.

혹은 기업 재고는 대개 주정부가 평가를 수행한다.

재산세 과세행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지역감정관(local assessor)은 선출되거나 지명된 공무원인데 이들은 해당 자치단체에 위치한 재산을 추적, 평가하고 모든 과세대상 재산을 평가대장(local assessment roll)에 수록한다. 이렇게 작성된 평가대장은 그 자치단체의 총과세가액으로 주정부 등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equalization board)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동 위원회는 과세가액, 등급, 면제 여부 등 평가의 오류를 심의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심사기관이기도 하다. 위원회가 대장을 확정하면 이를 해당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가진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며 실제 재산세는 이들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나.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에 있고 그 소유주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소유주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주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된 재산세는 평가표준일(assessment(lien) date)을 기준으로 1순위의 채권을 부여받는다. 개인재산의 경우 보통 평가표준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연체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세금이 징수된다.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어떤 재산이 과세대상인지와 과세되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재산의 소유 및 사용 형태와 시장 조건이 과세 여부와 과세가액 그리고 과세 의무자를 결정한다. 해당 자치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동 가능한 재산이나 건축중인 재산은 예외가 될 수 있다.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특별히 면제가 되지 않는 모든 재산을 과세하거나 아니면 과세대상 재산을 열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동산과 유·무형 개인 재산이다. 부동산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토지, 토지에 영구히 귀착된 건물 등과 이에 대한 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권을 포함한다. 개인재산은 부동산 이외에 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자산의 구분은 주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과 각종 재산의 세율이 다르므로 해당 재산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계 있다. 한 예로 기계나 장치

는 건물 등의 부동산에 부착되거나 부동산과 같이 이용되면 이를 개인자산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에 포함된 부착재산(fixtures)²¹³⁾으로 본다. 이러한 재산의 구분은 과세 여부와 과세가액뿐만 아니라 세율, 평가 표준일, 과세권이 있는 자치단체의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유형 개인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의 경우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뉴햄프셔, 뉴욕 및 펜실베이니아주의 6개주에서 과세가 면제되고 이외 주에서는 과세된다. 또한 개인자산에서도 과세되는 범위는 모든 개인자산에서 상업용 개인자산 혹은 특별한 유형의 상업용 개인자산까지 주마다 차이가 있다. 이 밖에도 <표 VI-1>에서 보듯이 아이오와처럼 일부 개인자산을 부동산으로 간주하거나 매릴랜드,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등 10개 주처럼 일부 상업용, 공기업용 자산만 과세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자산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주도 개인 용도 혹은 가정이나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재산은 완전히 혹은 일부 면제하므로 실제 재산세가 부과되는 개인자산은 상업이나 산업용 자산이다.

213) 부착재산은 1) 그러한 자산이 해당 부동산을 손상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지 2) 해당 부동산의 부속품인지 아니면 그 부동산에서 영업중인 특정 상업행위의 부속품인지 3) 그 자산이 영구히 해당 부동산에 부착될 목적으로 물리적으로 붙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표 VI-1> 부동산 이외 주별 재산세 과세 재산의 유형

	유형개인자산			무형개인자산	기업채고 (assessment ratio)
	과세 여부	특정 재산의 면제	개인·가족용 재산의 면제 등		
Alabama	○	×	개인용	일부 채권 등	제품 ×
Alaska	○	×	개인용과 가구	×	하위정부(100%)
Arizona	○	×	가족용	×	×
Arkansas	○	×	주택용	×	○(20%)
California	○	×	가족및주택용	×	×
Colorado	○	×	가족용과 \$2,500	×	×
Connecticut	○	×	일부가족, 개인용	×	×
Delaware	×		captive보험 과세	×	×
District of Col	○	×	상업용만 과세	×	×
Florida	○	×	가족, 개인용	따로 부과	×
Georgia	○	×	가족,개인용,\$700	따로 부과	하위정부(40%)
Hawaii	×			×	×
Idaho	○	×	가족, 개인용	×	×
Illinois	×			×	×
Indiana	○	×	가족용	×	○(과세가액)
Iowa	△		일부 부동산 간주	신용조합,투자사	×
Kansas	○	×	가족용 및 채고	×	×
Kentucky	○	×	가족용	채권,구좌,어음	○(100%)
Louisiana	○	×	주택용	은행주식및기타	○(15%)
Maine	○	×	가족및기타,\$1,000	×	×
Maryland	△		상업용 과세	×	개인보유:×
Massachusetts	○	×	일부가족, 개인용	×	×
Michigan	○	×	captive보험 과세	×	×
Minnesota	△		상업용만 과세	×	×
Mississippi	○	×	일부 가족용	최고이자율채무	○(15%)
Missouri	○	×	가족용	×	×
Montana	○	×	가족용 및 가구	×	×
Nebraska	△		상각및상업용과세	×	×
Nevada	○	×	가족용 및 가구	×	×
New Hampshire	×			×	×
New Jersey	△		일부 상업용	×	×
New Mexico	△		일부 과세	×	×

<표 VI-1>의 계속

	유형개인자산			무형개인자산	재고 (assessment ratio)
	과세 여부	특정 재산의 면제	개인·가족용 재산의 면제		
New York	×			×	×
North Carolina	○	×	비상업용	×	×
North Dakota	△		일부 과세	×	×
Ohio	△		상업용과세:1만\$	무형자산덜러	×
Oklahoma	○	×	가족용:1천\$ 이하	×	×
Oregon	△		상업용	×	×
Pennsylvania	×			일부	×
Rhode Island	○	×	가족용 및 가구	×	×(진행중)
South Carolina	○	×	가족용 및 가구등	×	×
South Dakota	△		일부 공공용 과세	×	×
Tennessee	△		상업용 과세	보험,투자,채권사	사업세 개인:×
Texas	△		소득창출재산과세	보험,투자,채권사	○(100%)
Utah	○	×	가족용	×	×
Vermont	○	×	개인용 및 가구	×	하위정부(100%)
Virginia	○	×	가족 및 개인용	×	하위정부
Washington	○	×	가족 및 개인용	×	×
West Virginia	○	×	가족,개인용, 기타	×	×
Wisconsin	○	×	가족 및 개인용	×	○
Wyoming	○	×	가족 및 개인용	×	×

자료: Fred Conklin, 2003 US Master Property Tax Guide, CCH Incorporated, 2003, US.

과세되는 무형 개인자산은 유형자산보다 더 제한적이어서 알라바마, 아이오와, 켄터키, 루지애나, 텍사스 등 일부 주만이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 한 예로 알라바마에서는 가맹권(franchise)과 국내 주식회사의 주식 등을 과세하고 플로리다는 주식, 채권, 노트 등을 그리고 아이오와, 테네시와 텍사스에서는 투자 혹은 채권사 등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 밖에도 일부 주에서 기업의 재고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가 주 영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 임시로 저장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기도 한다(free port

storage).

과세권은 평가 표준일 당시 재산의 위치(situs)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여러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부동산은 자기 구역에 있는 부분만 각 자치단체가 과세하면 된다. 그러나 유형 개인자산의 경우 과거 소유자의 거주지가 과세권을 결정하였지만(mobilia sequuntur personam) 최근에는 개인자산이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대개 그 자산을 소유한 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이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한다.

주의회는 연방 및 주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면세하고 세액공제나 감면 혹은 평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재산의 소유주(정부, 비영리단체, 노인, 장애인, 퇴역군인 등)에 따라 감면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산의 용도가 감면 여부에 영향을 준다. 한 예로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농업재산, 제조업재산 혹은 환경보존 및 에너지용 자산이나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자산에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감면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소유주가 평가절차가 시작하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 자산의 평가

1) 평가 현황

대부분의 주에서 감정관은 평가 표준일을 기점으로 특정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평가 혹은 감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평가 표준일(assessment(lien) date)은 재산세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자산평가가 이루어지는 기준일이 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평가일은 1월 1일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3, 4월 혹은 7월, 12월을 평가 표준일로 하기도 한다. 재산세는 매년 징수되지만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주에서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한다. 한 예로 일리노이의 경우 매 4년마다 자산 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플로리다는 매 3년 실시한다.

공정한 시장가치는 주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완전하고 진정한 가치’, ‘실제 가치’, ‘정당한 가치’ 혹은 ‘공정한 현금가치’ 등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사용가치(루이지애나:

일부 재산, 뉴욕)나 목록가치(버몬트)를 평가기준으로 하는 주도 있다.

공정한 시장가치란 보통 매도자가 정상적인 시장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자산을 기꺼이 구입하고자 하는 매입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현금가격을 의미하며 이 때 매매 당사자들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산은 객관적으로 결정된 최고 및 최선의 이용가치(highest and best use)에 기준하며 예외적으로 농업토지, 산림, 역사유물 등이 현재의 실제가치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감정관은 다음과 같은 평가방식을 각각 사용하거나 혼용할 수 있다. 1) 해당 자산을 대체하거나 건설할 때 드는 비용을 분석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cost approach) 2) 해당 자산이 폐기될 때까지 발생하는 기대소득을 자본화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income approach) 3) 최근의 근접한 유사 자산의 정상 매매를 분석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자료 혹은 유사매매 방식(market data approach).

평가의 균일화에 따른 조정을 제외하면 특정 재산의 공정한 시장가치의 전부 혹은 일부가 과세가액이 된다. 자산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이에 대하여 100% 과세하는 주가 28개 주가 있고 나머지 주에서는 자산가치의 일부만을 과세하는데 그 비율을 평가과세율(assessment ratio)이라고 한다. 한 예로 코네티컷에서는 완전하고 실제가치의 70%가 과세되고 인디애나와 아이오와에서는 평가과세율(assessment ratio)이 33 1/3%이다.

<표 VI-2> 주별 재산세 각종 과세기일과 평가방식

	각종 과세날짜				재산의 평가기준(assessment ratio)
	평가 표준	개인재산 신고	납세		
			기한	체납	
Alabama	10.1	1.1	10.1	1.1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일정비율
Alaska	1.1	개별	개별		완전·진정한 가치(full and true value)
Arizona	1.1	4.1	10, 3.1		- 현금가치나 제한된 자산가치의 일정비율
Arkansas	1.1	3.31	10.10		- 진정한 시장 혹은 실제가치의 20% 이하
California	1.1	4.1	11, 2.1	12,4.10	완전한 현금가치
Colorado	1.1	4.15	2. 4		실제가치의 일정비율(비거주용 29%)
Connecticut	10.1	11.1	7.1 등	다음달	완전·실제가치의 70%
Delaware	개별		개별	9.30	진정한 현금가치
District of Col	1.1	7.31	3, 9		- 부동산은 추정 시장가치
Florida	1.1	4.1	11.1	4.1	정당한 가치
Georgia	1.1	개별	12.20		공정한 시장가치의 일정비율(보통 40%)
Hawaii	1.1		8, 2.20		공정한 시장가치
Idaho	1.1	3.15	12, 7		시장가치
Illinois	1.1		개별		공정한 현금가치의 33⅓%
Indiana	3.1	4.15	5, 11		진정한 과세가치
Iowa	1.1		9, 3.1	10, 4.1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가치의 100%
Kansas	1.1	3.15	12, 6		현금으로 환산된 공정한 시장가치
Kentucky	1.1	5.15	개별		공정한 현금가치
Louisiana	1.1	4.1 예외	12.31	2.1	공정시장가치의 일정비율(일부:사용가치)
Maine	4.1	개별	개별		공정가치=현재시장가치의 100%
Maryland	1.1	4.15	7.1	9.30	완전한 현금가치의 일정비율
Massachusetts	1.1	3.1	7.1		완전한 현금가치의 일정비율
Michigan	12.31	2.20	2.14	2.15	진정한 현금가치의 50%
Minnesota	1.2		5, 10		시장가치의 일정비율
Mississippi	1.1	4.1	2.1		진정한 가치의 일정비율
Missouri	1.1	개별	12.31		진정한 현금가치의 일정비율
Montana	1.1	30일후	11, 5		시장가치의 100%
Nebraska	1.1	5.1	12.31		부동산: 실제가치, 개인자산: 순장부가치
Nevada	7.1	7.31	8 Mon		비용, 소득, 시장방식의 실제가치
New Hampshire	4.1		12.1		완전, 진정한 현금가치
New Jersey	10.1		분기별		진정한 가치
New Mexico	1.1	2.28	11, 4		시장가치의 33⅓%

<표 VI-2>의 계속

	각종 과세날짜				재산의 평가기준(assessment ratio)
	평가 표준	개인재 산신고	납세		
			기한	체납	
New York	1.1		1.31		현재 사용중인 자산가치
North Carolina	1.1	1	9.1	1.6	진정한 현금가치
North Dakota	2.1		1.1		완전 및 진정한 가치의 일정비율
Ohio	1.1	4.30	자산별		진정한 현금가치의 일정비율
Oklahoma	1.1	3.15	11.1		공정한 현금가치의 일정비율
Oregon	1.1	3.1	11.15		실제시장가치의 100%
Pennsylvania	개별		개별		실제가치
Rhode Island	12.31	3.15	개별		완전 및 진정한 현금가치
South Carolina	12.31	4.30	개별		진정한 현금가치의 일정비율
South Dakota	11.1		1.1	5.1	완전 및 진정한 현금가치
Tennessee	1.1	3.1	개별		감정된 혹은 시장가치의 일정비율
Texas	1.1	4.15	1.31		공정한 현금시장가치
Utah	1.1	30일후	11.30		공정한 시장가치의 일정비율
Vermont	4.1	4.20	개별		목록가치의 1%
Virginia	1.1	5.1	개별		공정한 시장가치
Washington	1.1	4.30	2, 4		공정 및 진정한 가치의 100%
West Virginia	7.1	10.1	9, 3.1	10, 4.1	진정한 실제가치
Wisconsin	1.1	3.1	1.31		완전한 현금가치
Wyoming	1.1	3.1	11, 5		공정시장가치의 일정비율

주: 1. 개별은 각 하위정부가 결정하며 자산평가에 있어서 개인자산의 경우 미시시피에서는 3.1, 뉴저지는 1.1(상업용 개인자산), 뉴욕은 3.1이지만 가액은 1.1일자 기준. 2. 납세기한은 상당수의 주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므로 상기 표의 일자와 다를 수 있음.

자료: Fred Conklin, 2003, *US Master Property Tax Guide*, CCH Incorporated, 2003, US.

이 밖에도 각종 재산을 해당 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에 따라 몇 개의 부류로 분류하고 각 부류의 재산에 다른 평가 과세율이나 세율을 적용한다. 사용용도는 주거, 상업 그리고 산업, 농업 및 공공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 예로 뉴욕시는 부동산을 주거용(class 1), 임대빌딩 등 이외 주거용(class 2), 공기업용(class 3)와 호텔, 창고 등 상

업용(class 4)으로 구분한다. 뉴욕시와 마찬가지로 매사추세츠 주도 부동산을 주거용과 자연 그 상태의 토지, 상업용과 산업용 부동산으로 나누어 과세하는 반면 매릴랜드 주에서는 부동산의 등급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개인자산은 감가상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상되는 가용기간 동안 재산가치가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비율방식(rate good)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산업별 평가기준을 이용하기도 한다.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가 균일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각 주는 평가심사위원회를 두고 감정관들의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2) 평가방식

과세대상인 자산을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그 자체가 큰 작업이고 특히 자주 거래되지 않는 자산의 평가나 특정 용도의 구역 지정(zoning), 임대료 제한 등의 각종 규제가 자산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은 논란이 되기 쉽다.

자산의 평가방식은 전술한 대로 비용방식, 소득방식 그리고 시장자료 방식이 있다. 완전한 시장에서는 비용방식에 따른 가격이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이 되며 매입자는 평가대상 자산의 소득창출 능력과 이자율을 고려하여 최고 매입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치 등의 고유한 특성 혹은 다양한 평가방식의 차이가 평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각의 방식이 갖는 원천적 문제점도 있으므로 서로 보완하여 사용함으로써 각기 방식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세 가지 평가방식을 차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비용방식(cost approach)

비용방식은 평가대상 자산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현재 비용에서 자산의 노후화나 경제적 기능 손실 등의 실제 감가상각을 제외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비용방식에 있어서는 건물 등 자산의 노후화 등에 따른 감가상각의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용방식을 선택하면 다음의 다섯 단계 가격 산정을 거쳐서 가격을 결정한다. ① 토지가격(공지, vacant land) ② 건물 재생산 혹은 대체 비용(현재가격) ③ 이유를 불문한 감가상각 가치 ④ 건물가격에서 감가상각 공제 ⑤ 토지가격과 조정된 건물가격의 합.

나) 소득방식(income approach)

소득방식은 상업적 임대가 이루어지는 가상 상황에서 자산의 소득창출 가능성을 가지고 자산을 평가한다. 특히 평가대상 자산이 폐기될 때까지 발생하는 기대소득을 자본화하여 가치를 평가한다. 이 경우 문제는 임대료 이외에 일반적이지 않은 임대조건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지난 몇 년간 대상 자산 그리고 유사 자산의 임대료와 공실률(vacancy rate) 자료를 구하여 평가대상 자산이 창출할 수 있는 기대소득의 추세를 구한다. ② 마찬가지로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 자산의 각종 경비에 대한 자료로 기대 경비를 산정한다. ③ 또한 평가대상 자산의 기대수명을 산정하거나 재판매 이전의 소유기간을 추정한다. ④ 마지막으로 적절한 자본화 방식을 선택하고 순소득 산출을 위한 할인율을 정한다.

다) 시장자료방식(market data approach)

시장자료 방식은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하고 근접한 자산으로 최근의 정상 혹은 독립적인 매매를 분석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시장자료 방식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쳐서 가격을 평가한다:

① 판매가격이나 공지가격 혹은 임대료 등 자료가 있는 유사자산의 추적 ② 판매조건과 가격 그리고 선의적 거래(bona fide transaction) 여부 등을 확인 ③ 유사자산의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 특성과 거래 시점 그리고 위치 등을 비교 검토 ④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자산의 차이점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⑤ 이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자

산과 유사자산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자산의 부분별로 비교하여 상대가격을 결정.

라. 재산세 세율과 신고/납부

과세가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담당 부서가 재산세를 과세 및 징수한다. 재산세 신고시(statement) 평가표준일 당시 재산의 위치와 재산유형 등을 보고해야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년 신고가 필요없다. 그 대신 평가작업이 종료되고 세율이 결정되면 자치단체로부터 자산 소유주에게 재산세가 통지된다. 많은 주에서 재산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연체된 세금에는 벌과금과 이자가 붙는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재산세는 잔여세(residual tax)로서 다른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예산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즉, 예산에서 기타 수입을 뺀 부족예산을 과세가액으로 나누면 실질적인 재산세 세율이 된다. 이 때 주 헌법이나 법에서 규정된 세율인상의 한도 규제가 작용할 수도 있다. 세율은 보통 1,000달러당 달러 과세금액으로 표현되므로 천분 과세율(millage rate)로 불린다. 일반재산세 이외에도 상하수도나 도로정비 등으로 혜택을 입는 자산에 대하여 그 재산 가치와 관계없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특별 부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special assessment).

<표 VI-3> 주별 부동산 재산세 최고·최저세율 및 부동산 평가기준

(단위:달러)

	재산세 분포(\$): (\$1,000당)	재산의 평가기준
Alabama	도시 5.0~40.5 카운티 8.5~20.5	공정·합리적 시장가치 일정비율
Alaska	5.0~20.286	완전·진정한 가치(full/true value)
Arizona	9.25~19.25	현금 혹은 제한된 가치 일정비율
Arkansas	31.1~68.0	진정한 시장/실제가치의 20% 이하
California	.00~.795	완전한 현금가치
Colorado	41.09~89.7	실제가치 일정비율(비거주용 29%)
Connecticut	14.78~62.4	완전·실제가치의 70%
Delaware	1.2955~1.3395	진정한 현금가치
D. C.	cl. 1: 9.60, cl. 2: 18.50 ³⁾	부동산은 추정 시장가치
Florida	2.49~9.50	정당한 가치
Georgia	도시 21.3~47.9 카운티 18.6~39.9	공정한 시장가치 일정비율(40%)
Hawaii	빌딩: 3.63~9.96, 토지: 3.65~9.96	공정한 시장가치
Idaho	8.23~27.75	시장가치
Illinois	0.0411~0.17102	공정한 현금가치의 33⅓%
Indiana	6.88~29.52	진정한 과세가치
Iowa	25.61~44.67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가치의 100%
Kansas	0.63~1.68	현금으로 환산된 공정한 시장가치
Kentucky	도시 0.58~8.0, 카운티 1.16~4.64	공정한 현금가치
Louisiana	55.9~174.7(평균 millage)	공정가치 일정비율(일부;사용가치)
Maine	14.90~28.55	공정가치=현재시장가치의 100%
Maryland	카운티 0.73~23.3 이외 0.08~0.87	완전한 현금가치의 일정비율
Massachusetts	주거 1.77~22.98 상업 1.77~37.24	완전한 현금가치의 일정비율
Michigan	28.38~67.18	진정한 현금가치의 50%
Minnesota	82.44~177.75	시장가치의 일정비율
Mississippi	0.056~0.12072	진정한 가치의 일정비율
Missouri	0.15~7.10(도시: 평균 millage)	진정한 현금가치의 일정비율
Montana	2.42~8.07	시장가치의 100%
Nebraska	0.00~5.16258	부동산 실제가, 개인자산 순장부가
Nevada	19.13~36.40	비용, 소득, 시장방식의 실제가치
New Hamp.	9.56~46.48	완전, 진정한 현금가치
New Jersey	0.62~108.92	진정한 가치
New Mexico	주거 15.53~35 비주거 15.5~41.42	시장가치의 33⅓%

<표 VI-3>의 계속

(단위:달러)

	재산세 분포(\$): (\$1,000당)	재산의 평가기준
New York	도시 6.62~211.50	현재 사용중인 자산가치
North Carolina	도시 2.40~8.0, 카운티 4.2~11.0	진정한 현금가치
North Dakota	4.1141~5.5180	완전 및 진정한 가치의 일정비율
Ohio	46.0~131.1	진정한 현금가치의 일정비율
Oklahoma	62.58~118.02	공정한 현금가치의 일정비율
Oregon	카운티 0.0107~13.66337	실제시장가치의 100%
Pennsylvania	도시 2.6~222.0, 보로 2.2~6.16.4	실제가치
Rhode Island	7.01~40.20	완전 및 진정한 현금가치
South Carolina	도시 0.41~1.93 카운티 1.76~4.07	진정한 현금가치의 일정비율
South Dakota	평균 15.5~33.9 기타 13.4~28.8	완전 및 진정한 현금가치
Tennessee	8.10~57.90	감정된 혹은 시장가치의 일정비율
Texas	도시: 2.10~8.68	공정한 현금시장가치
Utah	0.010295~0.016596	공정한 시장가치의 일정비율
Vermont	23.10~32.54	목록가치의 1%
Virginia	도시 5.4~14.4 카운티 4.0~13.6	공정한 시장가치
Washington	8.35~15.97	공정 및 진정한 가치의 100%
West Virginia	10.1~18.8(I), 20.1~75.0(II, III)	진정한 실제가치
Wisconsin	세울 73.6~105.0 실질 14.8~29.0	완전한 현금가치
Wyoming	59.02~101.24	공정시장가치의 일정비율

주: 1. 세율은 평가액 1,000달러 기준으로 2000과 2001년도 자료임. 2. 최고세율 제한: 워싱턴: 평가액의 1%, 아이다호: 시장 가액의 1%, 뉴멕시코: 카운티 \$11.85/\$1,000 순과세가액, 기타 \$7.65/\$1,000, 켄터키: 13.5센트/\$100, 매사추세츠: 현금가액의 2.5%, 캘리포니아: 현금가액의 1%, 미시간: 평가액의 15 mills/\$. 3. cl 1.은 주거용이고 cl 2.는 상업용과 빈 건물임.

자료: 「All States Tax Handbook」, Thomson RIA, NY, 2003, US. 「2003 US Master Property Tax Guide」, Fred Conklin, CCH Incorporated, 2003, US.

<표 VI-3>은 2000년 혹은 2001년 당시 각 주별 부동산 재산세의 최고 및 최저 세 부담(평가액 1,000달러당 달러규모)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각 주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초자치단체와 학교구역 등의 세부담을 모두 합한 수치이다. 보다시피 주별로 그리고 같은 주에서도 도시나 이외 지역인가 혹은 주거용인가 아니면 상업용인

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나아가 같은 주의 같은 도시라도 지역별로 세부담의 차이가 난다.

물론 각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데 이 밖에도 각 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용도별 혹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러한 세부담은 부동산의 평가가 실제 시장가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표 VI-3>으로는 재산세 실제 세부담과 지역별 차이를 짐작하기 어렵고 특정 주를 대상으로 세율을 보다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이의신청

보통 감정관들은 평가 표준일의 4~6개월 이내에 지정된 날짜까지 평가를 마쳐야 한다. 자산의 평가가 완료되면 감정관은 재산의 소유주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소유주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과세액을 통지받기 몇 달 전에 잠정적인 과세 의무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첫 번째 이의 제기는 많은 경우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서면요청이 필요없는 비공식적인 절차이다(일부 주에서는 감정관에게 직접 요구). 주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평가의 경우 주정부의 심의위원회가 첫 번째 이의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때 입증책임은 재산의 소유주에게 있다. 즉 감정관의 평가결과가 올바르다는 인식에 반해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이 해당 지역의 유사한 재산보다 과대 평가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자산 소유주나 감정관은 상위의 행정기관 혹은 법정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판정 이전에 납세기일이 도래하면 일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바. 연도별 및 주별 재정규모와 재산세 비중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당시 전체 세입 8,944억달러 중 2,947억달러로 약 31.8%에 이른다. 이는 1989년의 비중 29.6%에 비하

면 약간 증가한 것인데 경제가 활황이었던 1990년 후반에도 재산세 비중은 약 28~29%에 이르렀다. 전술한 대로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주된 수입원으로 잔여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세목의 수입이 크면 그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표 VI-4> 연도별 지방정부 세입과 각 세목 비중 (1988~2002)

(단위: 억달러, %)

	총세입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재산세	일반 판매세	유류세	담배세	주세	자동차 등록세	기타
1980	2,234.6	420.8	133.2	685.0	-	-	-	-	-	-
1988	4,397.0	900.2	246.9	1,300.8	1,094.6	180.4	50.1	33.7	102.5	488.1
1989	4,818.8	1,015.4	251.7	1,459.4	1,191.4	191.4	55.1	34.2	109.1	511.1
1990	5,076.8	1,064.2	230.0	1,583.8	1,233.0	206.7	60.1	35.8	114.2	549.0
1991	5,307.7	1,105.4	229.3	1,707.2	1,238.0	219.1	62.1	37.5	119.6	589.7
1992	5,690.3	1,181.8	242.1	1,808.2	1,350.4	236.3	61.7	38.0	126.3	646.3
1993	5,779.1	1,204.2	244.2	1,832.1	1,369.8	239.2	62.0	38.6	141.4	647.8
1994	6,157.7	1,275.0	289.8	1,936.1	1,446.2	258.2	68.8	38.9	141.7	702.8
1995	6,475.6	1,331.8	310.3	1,985.4	1,603.9	263.2	71.7	38.9	152.2	718.4
1996	6,963.7	1,487.1	321.9	2,105.9	1,711.5	273.6	75.7	39.8	154.7	793.5
1997	7,344.1	1,610.1	337.8	2,191.6	1,796.1	280.1	77.4	40.0	157.7	853.3
1998	7,740.5	1,799.2	345.6	2,256.4	1,919.2	287.9	81.5	40.9	159.3	850.5
1999	8,127.1	1,913.8	352.6	2,375.0	2,055.4	299.0	78.4	42.6	164.8	845.5
2000	8,753.9	2,195.0	375.1	2,474.6	2,228.6	308.9	84.6	44.3	177.9	887.7
2001	8,920.9	1,964.9	314.0	2,610.7	2,244.9	322.2	85.0	45.4	174.8	917.0
2002	8,944.4	1,949.3	300.3	2,847.1	2,264.7	330.0	97.5	46.0	180.1	929.6

주: 지방정부는 state and local government.

자료: US Census of Bureau, Governmental Finances(www.census.gov/govs/estimate).

<표 VI-5> 지방정부 세입과 세목별 구성(state · local government 2000)

(단위: 억달러, %)

	총세입	재산세	일반 판매세	개별 판매세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기타
미국 평균	8,723.5	28.6	24.7	10.8	24.3	4.1	7.6
Alabama	94.2	14.2	30.5	18.2	22.9	2.6	11.5
Alaska	23.1	32.9	4.6	7.6	n.a.	19.0	35.8
Arizona	133.3	29.3	36.4	9.1	17.2	3.9	4.1
Arkansas	59.6	16.2	36.9	12.5	24.7	4.0	5.7
California	1200.7	21.6	25.4	7.7	33.0	5.5	6.6
Colorado	132.2	27.8	28.6	8.1	27.5	2.5	5.4
Connecticut	156.5	34.6	21.9	10.4	25.4	2.7	5.0
Delaware	26.2	14.6	n.a.	11.4	29.6	9.2	35.3
District of Col	32.2	21.5	19.9	11.2	33.5	8.1	5.7
Florida	419.4	33.6	37.1	16.0	n.a.	2.8	10.5
Georgia	232.5	25.5	32.4	7.6	27.4	3.1	4.1
Hawaii	41.0	14.7	37.5	14.7	25.9	1.8	5.3
Idaho	32.9	26.3	22.7	9.8	29.3	3.8	8.1
Illinois	402.6	36.0	18.1	15.2	19.0	5.6	6.1
Indiana	163.6	33.9	21.9	9.4	26.1	5.7	3.1
Iowa	80.9	32.1	23.4	9.9	23.8	2.7	8.0
Kansas	76.2	28.5	29.0	8.9	24.4	3.6	5.6
Kentucky	101.7	16.9	21.3	14.9	33.9	3.0	9.9
Louisiana	108.9	16.0	39.7	17.5	14.5	2.0	10.2
Maine	42.6	37.5	19.9	8.2	25.3	3.5	5.7
Maryland	182.9	26.3	13.7	11.6	39.1	2.4	7.0
Massachusetts	240.4	31.8	14.8	6.6	37.6	5.4	3.7
Michigan	314.7	30.2	24.4	7.1	24.6	7.6	6.2
Minnesota	181.7	25.1	20.7	11.8	30.5	4.4	7.4
Mississippi	63.0	23.2	37.0	13.8	16.0	3.6	6.4
Missouri	143.1	23.8	28.7	12.1	26.9	1.9	6.7
Montana	21.3	42.6	n.a.	16.2	24.2	4.7	12.3
Nebraska	49.7	31.1	24.5	9.5	23.6	2.8	8.5
Nevada	58.3	24.7	35.4	26.2	n.a.	n.a.	13.8
New Hampshire	32.8	61.9	n.a.	16.9	2.0	9.5	9.7
New Jersey	328.4	44.0	16.8	8.3	22.0	4.1	4.8
New Mexico	48.0	12.9	38.9	11.8	18.3	3.3	14.7

<표 VI-5>의 계속

(단위: 억달러, %)

	총세입	재산세	일반 판매세	개별 판매세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기타
New York	868.7	29.0	19.0	6.9	33.0	7.0	5.2
North Carolina	214.4	21.5	21.1	12.5	33.6	5.6	5.7
North Dakota	17.7	29.8	21.6	18.8	11.2	4.4	14.1
Ohio	342.4	27.9	21.7	8.5	33.4	1.8	6.6
Oklahoma	82.5	15.8	29.1	10.1	25.9	2.4	16.8
Oregon	94.1	29.6	n.a.	9.7	43.5	4.3	12.8
Pennsylvania	365.8	27.5	19.7	9.9	25.4	4.6	12.8
Rhode Island	34.1	39.8	18.2	11.2	24.3	2.2	4.2
South Carolina	95.4	28.1	26.8	9.7	25.6	2.4	7.4
South Dakota	17.4	36.4	36.1	14.2	n.a.	2.6	10.6
Tennessee	124.3	23.2	45.9	13.0	1.5	4.9	11.5
Texas	522.3	37.9	33.2	17.7	n.a.	n.a.	11.2
Utah	58.7	22.2	31.4	10.0	28.1	3.0	5.4
Vermont	18.8	41.7	11.5	14.4	23.0	2.4	7.1
Virginia	210.8	28.4	15.2	13.1	32.4	2.7	8.2
Washington	187.3	29.3	47.6	13.7	n.a.	n.a.	9.4
West Virginia	43.6	19.6	21.0	21.1	22.1	5.0	11.2
Wisconsin	185.5	30.7	19.9	8.8	32.1	3.1	5.4
Wyoming	15.1	34.1	30.8	7.9	n.a.	n.a.	27.1

주: 개별 판매세는 자동차 연료세, 주세, 담배세 그리고 공공수수료(public utilities) 등이며 기타는 자동차등록세 등 포함.

자료: US Census of Bureau, Governmental Finances(www.census.gov/govs/estimate).

재산세가 주정부와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다양해서 약 13~44%까지 주별로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 재산세 비중은 20~30%로 미국 평균 약 29%가 재산세이다. 재산세 비중이 높은 주는 뉴저지(44%), 몬태나(42.6%), 버몬트(41.7%)가 있고 뉴멕시코(12.9%), 알라바마(14.2%), 델라웨어(14.6%), 하와이(14.7%)는 재산세 비중이 낮다.

2. 뉴욕시 재산세²¹⁴⁾

가. 서론

뉴욕주에서 재산세는 부동산에 한정된다(Sec 300, Real property Tax Law). 이에 따라 뉴욕시는 전체 부동산을 4개 등급으로 나누어 매년 평가하고 각각의 등급에 대하여 다른 세율과 평가비율을 적용한다. 평가원칙은 시장가격이지만 과세하기 이전에 과세등급에 따라 상이한 평가비율을 적용한다. 2002년 당시 493,098개 부동산이 100% 과세대상이었는데 이들 부동산의 과세 가능한 평가액은 약 1,587억달러에 이르렀다. 감면 부동산은 442,351개, 288억달러이었고 완전 면세 부동산은 35,355개, 637억달러이었다.

뉴욕시 부동산의 가치와 평가액 및 실질 세율에 관한 지표는 아래 <표 VI-6>에 제시되어 있다. 2002년 당시 뉴욕시 정부가 부동산세를 통하여 과세한 세금은 약 92억 7천만달러에 이르는데 이를 과세대상인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하면 실질 세율은 평가액 100달러당 9.51달러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세대상 평가액은 실제 부동산 가치의 약 24.8%에 이르므로 실제 부동산세 부담은 시장가치 100달러당 2.4달러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세부담은 평균치이며 주거용 주택의 경우 평가비율이 8%인 데 비하여 기타 부동산의 평가비율은 45%이므로 실제 세금은 상업용 부동산과 빌딩형 집단주택 등이 약 5배 정도 더 부담한다.

연도별로 보면 1994년 이후 부동산의 실제 시장가치에 대비한 평가액은 약 26%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평가액 100달러 대비 세율은 1980년대 말 약 8.3달러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10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후 2000년대에는 다시 9달러 선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 세부담도 1994년 당시 부동산 시장가액 100달러당 2.7달러에서 2002년 2.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14) Taxpayer Guide to Real property Taxes and Related Changes, Department of Finance, The City of New York, 1998 and www.nyc.gov/finance.

<표 VI-6> 뉴욕시 부동산 시장가치와 과세평가액 및 세율(2002)

(단위: 백만달러, %,달러)

연도	시장가치(a)	실제평가액(b)	평가비중 (b/a)	과세액(c)	실질세율 (c/b)	실질세부담 (c/a)
1988	-	67,500	-	5,586.0	8.28	-
1990	-	85,847	-	6,872.4	8.01	-
1992	-	83,611	-	8,318.8	9.95	-
1994	300,284	79,297	26.4	8,113.2	10.23	2.70
1996	294,070	77,424	26.3	7,871.4	10.17	2.68
1998	298,357	78,770	26.4	7,890.4	10.02	2.64
1999	311,369	82,155	26.4	8,099.3	9.86	2.60
2000	326,922	85,868	26.3	8,374.3	9.75	2.56
2001	354,348	90,570	25.6	8,730.3	9.64	2.46
2002	392,348	97,486	24.8	9,271.2	9.51	2.36

주: 세율은 평가액 100달러당, 실질 세부담은 시장가치 100달러당 달러 금액임.

자료: Annual Report, the New York City Property Tax FY 2002, The City of New York.

나. 총칙규정

1) 납세의무자

부동산세는 부동산에 과세되므로 세금을 연체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동된다(Sec. 304(1), Real property Tax Law). 따라서 납세의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있다. 12개월 이상 해당 부동산을 임대 혹은 임차한 사람에게도 부동산세의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항이 물론 그 부동산의 소유주가 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Sec. 304(1),(2) Real property Tax Law). 공공토지에 개설된 부착물에 대한 부동산세는 그 소유주에게 과세되며 임대물일 경우 임차인에게 과세된다.

2) 과세대상

법으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동산세는 소유주의 거주지와 관련 없이 뉴욕 시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과세된다(Sec 304(1), Real property Tax Law). 뉴욕시 각 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은 시 재무부(Finance Department)에 의하여 과세등급이 매겨지며 매년 각 등급에 적용되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과 기타 부착물, 철도, 전화선, 기타 전기선, 파이프, 탱크, 보일러, 엘리베이터, 전기, 열, 개스기구, 트레일러 등이다. 또한 무형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전기선 등을 설치할 권리도 부동산에 포함된다(Sec 102(12)(a)-(h), Real property Tax Law).

건축중인 비상업용 건물의 경우 건축이 1월 5일 이후 개시되고 그 다음 해 1월 5일까지 입주하지 않았으면 과세되지 않고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3년간 적용될 수 있다(Sec. 11-209, NYC Adm. Code).

다. 과표, 과세등급(tax class) 및 세율

1) 재산세 과표

뉴욕시 재무부는 부동산을 1월 5일 기준으로 현재 시장에서의 매매가(market sales value)로 평가한다. 이렇게 산출된 부동산 가격에 용도별 등급에 따라 상이한 평가비율(assessment ratio)을 곱하여 실제 부동산 평가액(actual assessed value)을 산출한다. 평가비율은 일반 주거용 주택 즉, 1등급의 경우 8%이고 빌딩형 집단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등 이외 등급은 45%를 적용한다. 이 때 주정부 차원에서 평가액의 인상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평가결과가 재조정될 수도 있다. 연후 감면 여부와 감면금액을 부동산 평가액에서 빼면 과세대상 평가액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세 세율을 곱하면 과세액이 나오는데 세율은 매년 시장과 시의회가 결정한다.

뉴욕주에서는 과세등급에 따라 매년 인상 가능한 평가액에 대하여 상한선을 두고 있다. 10가구 이하의 1등급 부동산의 경우 평가액이 매년 6% 이상 오를 수 없고 5년 동안 20%를 초과할 수 없다(Sec. 1805, Real Property Tax law). 10가구 이하의 2등급

부동산에서는 매년 8%, 5년간 30%를 초과할 수 없다. 10가구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과 2, 3등급의 부동산은 이러한 상한선이 없는 대신 매5년을 주기로 실제 평가액을 반영하는 잠정평가액을 적용하여 급격한 평가의 변화를 조정한다. 이러한 상한선은 건물의 개축과 개선에 따른 인상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과세등급과 재산세 세율

뉴욕시는 부동산을 4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한다(Sec. 1802(1), Real Property Tax law). <표 VI-7>에서 보듯이 1 등급은 거주용 주택과 이와 유사한 부동산이며 2등급은 임대용 및 빌딩형 집단주택, 3등급은 전화, 전기 등 공기업(utility)의 부동산, 4등급은 상업용 부동산이다. 과세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평가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실질 세부담이 등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과세연도가 시작하는 7월 1일 이전에 매년 4개 등급의 부동산에 대한 세율이 결정된다. 뉴욕시가 6월경 보내는 재산세 납부통지서는 전년도 세율에 근거한 세액이며 11월에 확정된 통지서를 보낸다.

<표 VI-7> 뉴욕시 부동산세 과세등급과 세율(2003)

(단위:달러)	
과세등급	세율(\$100당)
1등급: 3단위 이하 주택단지와 콘도, 3층 이하의 주거용 콘도, 공동소유 토지의 가족주택, 일부 주거용의 빈 토지	14.160
2등급: 아파트, 임대 빌딩, 1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주거용 부동산	12.517
3등급: 공기업(utility) 부동산	12.565
4등급: 가게, 창고, 호텔 등 사업용과 1~3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공지	11.580

주: 세율은 평가액 100달러당 달러금액 세금임.
 자료: www.nyc.gov/html/dif/html/taxrates.html.

연도별 뉴욕시의 부동산세 세율은 아래 <표 VI-8>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1982년 당시에는 과세등급과 관련 없이 세율이 일정하였으나 그후 각 등급이 약간씩 세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시가가 올라 재산세가 인상됨과 동시에 부동산 세 세율도 일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20년간 12.9~15.8% 정도 상승하였다.

<표 VI-8> 연도별 뉴욕시 부동산세율(1982~2003)

(단위:달러)

연도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2003	14.160	12.517	12.565	11.580
2002	11.609	10.792	10.541	9.712
2001	11.255	10.847	10.540	9.768
2000	11.167	10.851	9.398	9.989
1999	10.961	10.739	8.800	10.236
1998	10.849	11.046	8.282	10.164
1995	10.694	10.552	7.702	10.608
1990	9.452	9.229	12.903	9.539
1985	9.100	9.150	9.051	9.460
1982	8.950	8.950	8.950	8.950

주: 부동산 평가액 100달러당 금액임.

자료: www.nyc.gov/html/dif/html/taxrates.html

이렇게 징수된 부동산세 가운데 일정액이 교육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²¹⁵⁾. 한 예로 1998년의 경우 1등급 세율 10.849달러 가운데 일반예산으로 가용한 부분은 4.696달러이고 교육용 예산에 쓰여야 할 부분은 6.153달러이었다. 이에 비하면 3등급에는 이러한 제약조건이 없었고 4등급은 각각 4.355달러, 5.809달러로 용도가 제약되었다.

부동산세 세율은 주거용이 부동산 평가액 100달러당 14.16달러로 상업용(10.2달러)이나 임대용 부동산(12.517달러)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표 VI-9>에서 보듯이 평가비율을

215) 이 밖에도 시정부 운영비용은 5년간 과세대상 부동산의 평균시가의 2.5%를 넘지 못하게 뉴욕주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감안할 경우 실질 세부담은 1등급이 100달러 평가액당 1.13달러(14.16×0.08)이고 2, 3, 4 등급은 각각 5.63달러(12.517×0.45), 5.65달러(12.565×0.45), 5.21달러(11.580×0.45)이다. 따라서 일반 주택의 실제 세부담은 상업용 주택이나 빌딩형 집단주택에 비하여 약 20% 이하이다.

<표 VI-9> 뉴욕시 부동산 시장가치와 과세평가액 및 세율(2002)

(단위: 백만달러, %, 달러)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부동산 시장가치(a)	180,722	85,930	14,536	111,159
실제과세평가액	10,097	33,654	6,531	47,205
과세가능평가액(b)	10,097	29,675	6,531	41,987
과세액(c)	1,265.2	3,239.7	688.4	4,077.9
과세비중	13.65	34.94	7.43	43.98
명목세율	14.16	12.517	12.565	11.580
실질세율(c/b)	11.609	10.792	10.541	9.712
실질세부담(c/a)	0.7	3.77	4.74	3.67

주: 1. 과세가능평가액은 실제과세평가액에서 등급 3,4의 연간 평가조정을 거칠 금액임.

2. 세율은 평가액 100달러당, 실질 세부담은 시장가치 100달러당 달러금액임.

자료: Annual Report, the New York City Property Tax FY 2002, The City of New York.

나아가 등급별 세부담을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1등급이 부담한 부동산세는 대략 13%이고 2등급은 약 34~35%, 3등급은 7% 그리고 4등급이 약 44~45%를 부담한다. 따라서 주거용 일반주택보다는 상업용 건물과 임대 및 집단주택의 세부담이 크다. 이는 물론 뉴욕시의 건물구조와도 관련이 있지만 1등급 건물의 평가비율이 겨우 8%로 다른 등급의 평가비율에 비하여 약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 VI-10> 연도별 뉴욕시 부동산세 총과세액과 등급별 비중(1988~2002)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총과세액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1988	5,586.0	12.19	25.46	15.72	46.63
1990	6,872.4	11.12	25.74	13.83	49.31
1992	8,318.8	11.46	28.00	7.80	52.74
1994	8,113.2	11.56	30.78	5.76	51.90
1996	7,871.4	12.19	32.61	6.18	49.01
1998	7,890.4	12.73	33.92	6.87	46.48
1999	8,099.3	12.96	33.22	7.08	46.74
2000	8,374.3	13.26	34.08	7.43	45.23
2001	8,730.3	13.50	34.50	7.63	44.37
2002	9,271.2	13.65	34.94	7.43	43.98

주: 괄호안은 시장가액 대비 평가액임.

자료: Annual Report, the New York City Property Tax FY 2002, The City of New York.

라. 재산의 평가

1) 평가비율(assessment ratio)

뉴욕시 재무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동산이 공개시장에 매매를 위하여 제공될 때의 매매가격으로 부동산을 평가한다. 그러나 뉴욕주 법정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최고 및 최선의 사용가치가 아닌 현재 이용가치로 규정하고 있다²¹⁶⁾. 따라서 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부동산 평가액(actual assessed value)은 과세등급에 따라 상이한 평가비율을 현재가격으로 추정된 부동산 가치에 곱하여 산출된다.

평가비율(assessment ratio)은 같은 과세등급에 속하는 부동산이 공통으로 부여받는 평균적 평가비율로서 1등급의 경우 8%이고 이외 등급은 45%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 평가조정 등을 거치고 나면 실제 평가비율은 1등급은 약 6~7%, 2등급은 36~

216) 농토의 경우 농업에서의 이용가치로 평가된다(Sec. 481, Real Property Tax Law).

39%, 3등급은 45% 그리고 4등급은 42~43%에 달한다. 한편 총 평가액에서 각 과세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신·개축과 용도 변경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1등급은 약 10~11%, 2등급은 30~34%, 3등급은 7~8%, 4등급은 48~50%이다.

<표 VI-11> 뉴욕시 부동산 총평가액과 등급별 비중 및 시장가치 대비 비중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총평가액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1988	67,500 (-)	10.7	27.2	13.1	49.1
1990	85,847 (-)	9.3	28.4	8.6	53.7
1992	83,611 (-)	10.4	30.3	5.9	53.4
1994	79,297 (26.4)	10.7 (6.7)	30.8 (36.8)	8.0 (44.9)	50.5 (43.1)
1996	77,424 (26.3)	11.5 (6.9)	31.4 (38.1)	7.9 (44.9)	49.2 (43.1)
1998	78,770 (26.4)	11.6 (7.0)	32.2 (39.1)	8.3 (44.9)	47.9 (42.9)
1999	82,155 (26.4)	11.2 (6.8)	32.5 (39.3)	7.9 (44.9)	48.3 (42.8)
2000	85,868 (26.3)	11.0 (6.6)	33.2 (39.4)	7.7 (44.9)	48.1 (42.8)
2001	90,570 (25.6)	10.8 (6.2)	33.8 (39.2)	7.0 (44.9)	48.4 (42.5)
2002	97,486 (24.8)	10.4 (5.6)	34.5 (39.2)	6.7 (44.9)	48.4 (42.5)

주: 괄호안은 시장가액 대비 평가액임.

자료: Annual Report, the New York City Property Tax FY 2002, The City of New York.

1등급의 경우 유사한 주택의 최근 매매가격을 기초로 평가하며 3등급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비용방식에 입각하여 평가된다. 다른 부류의 부동산은 실제 혹은 잠재적인 임대소득과 정상적인 관리비용을 바탕으로 평가액을 추정한다(income capitalization). 일부 부동산의 경우 개선된 부분은 재건축비용이 기준이 된다. 평가액은 주정부가 정한 인상 한도가 있으므로 시장 매매가격보다 낮을 수 있고 몇 년에 걸쳐서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뉴욕시 재무부는 평가를 균일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Sec. 11-212, NYC Adm. Code)

뉴욕시는 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임대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과 경비에 대한 자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Real Property Income and Expense forms,

RPIE). 원칙적으로 이 규정은 모든 임대부동산에 적용되지만 평가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 없는 일부 부동산은 예외이다(Sec. 11-208.1, Administrative Code). 이러한 예외에는 2002년 당시 평가액이 80,000달러 이하인 부동산과 10단위(unit) 이하로 구성된 전용 주택단지, 6개의 아파트와 1개 이하의 가게로 구성된 주거주 부동산, 개인 콘도, 소유자 거주 주택 등이다.

2) 주기

과세 목적상 뉴욕시 부동산은 매년 뉴욕시 공무원인 감정관이 평가를 담당한다. 평가는 매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시장상황, 용도 그리고 당시 소유주를 이루어진다. 모든 부동산의 잠정평가액(assessment roll)은 1월 15일에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최종 결과는 5월 25일에 공개된다.

마. 비과세 · 감면

정부 등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면 부동산세가 면제되는 대상에는 노인층과 퇴역군인, 불구가 된 주택보유자, 범죄희생자와 선행자, 교육 부동산세 감면(STAR), 각종 비영리단체, 산업 및 상업용 감면과 부동산 이전 및 고용 보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착물 등이 있다.

<표 VI-12> 뉴욕시 부동산세 감면 프로그램과 감면규모(2002)

(단위: 개, %, 백만달러)

대상	면제수 (비중)	면제금액 (비중)
기관면제:	14,293 (2.5)	10,719 (15.2)
묘지	183 (0.03)	391 (0.6)
자선단체	1,600 (0.3)	883 (1.3)
문화단체	339 (0.06)	495 (0.7)
교육기관	929 (0.2)	2,087 (3.0)
의료기관	1,233 (0.2)	3,159 (4.5)
종교단체	9,646 (1.7)	3,473 (4.9)
이익단체	363 (0.06)	232 (0.3)
주택 면제:	51,043 (8.8)	5,664 (8.0)
주택개발기금	278 (0.05)	380 (0.5)
J-51 면제	7,112 (1.2)	611 (0.9)
신 집단거주(421a, b)	33,653 (5.8)	1,331 (4.8)
재개발회사	403 (0.07)	521 (0.7)
주정부 지원	69 (0.01)	153 (0.2)
도시개발운동 프로젝트	8,011 (1.4)	127 (0.2)
기타	2,004 (0.3)	2,541 (0.7)
상업/산업 면제:	4,180 (0.7)	2177 (3.1)
환경보호	7 (0.0)	0.1 (0.0)
상업/산업 지원위원회	151 (0.03)	35.4 (0.05)
상업/산업 지원프로그램	3,880 (0.7)	1,948 (2.8)
산업폐기물 facility	19 (0.0)	11 (0.02)
자마이카 용수공급	121 (0.02)	91 (0.1)
기타	2 (0.0)	91 (0.1)
개인보조	487,535 (84.4)	1,514 (2.2)
범죄 피해자	1 (0.0)	0 (0.0)
불구 자가주택 보유자	294 (0.05)	2 (0.0)
학교 재산세 감면(STAR)	387,736 (67.2)	989 (1.4)
노령자 주택 공제	32,063 (5.6)	247 (0.4)
퇴역군인 주택 공제	67,441 (11.7)	276 (0.4)
민간 부동산	557,051 (96.5)	20,074 (28.5)
정부 보유	11,355 (2.0)	32,642 (46.4)
공공기관 보유	8,946 (1.6)	17,716 (25.2)
공공 부동산	20,301 (3.5)	50,358 (71.5)
총계	577,352 (100)	70,431 (100)

자료: Annual Report, the New York City Property Tax FY 2002, The City of New York.

2002년의 경우 전체 감면액 704억달러 가운데 공공기관의 감면이 약 504억달러로 71.5%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가 민간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200.7억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문화, 종교, 의료 및 교육 등 기관 감면이 약 107억달러로 전체 민간부문 감면의 약 53.3%를 차지하며 부동산 재개발이나 주택 개발이 56.6억달러(28.2%)이다. 이에 비하면 상업과 산업활동 유치를 위한 감면은 21.8억달러에 불과하고 노령층이나 퇴역군인 그리고 학교 부동산세 감면 등 개인에 대한 감면은 15.1억달러로 전체 민간부문 감면액의 7.5%에 불과하다.

1) 노령자 주택 공제(SCHE)

65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29,900달러 이하인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주지에 대하여 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Sec. 11-245.3, NYC Adm. Code)²¹⁷⁾. 단 해당 부동산은 주택, 콘도 혹은 아파트이어야 하고 3월 1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표 VI-13> 뉴욕시 노령자 부동산세 감면 기준(65세 이상, 1998)

(단위:달러, %)

소득	부동산 평가액 감면비율	소득	부동산 평가액 감면비율
~18,500	50	~22,400	25
~19,500	45	~23,300	20
~20,500	40	~24,200	15
~21,500	35	~25,100	10
~22,400	30	26,000~	5

자료: www.dat.state.md.us/sdatweb/rtc.html

해당 주택의 소유주 총소득이 29,900달러 이하일 때 부동산세 공제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감면 금액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50%까지 감

217) Sec. 467, the New York State Real Property Tax Law

면이 가능하다. 일단 공제가 허용되면 시정부가 매년 보내는 갱신 통지서를 작성, 제출하면 공제가 지속될 수 있다.

2) 교육 부동산세 감면(STAR: School Tax Relief)

일부 자격이 되는 자가주택 거주자는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재산세에서 교육분 재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²¹⁸⁾. 감면대상은 거주용 건물로 소유자의 주거주지이어야 하며 1월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대상 부동산은 1~3가구 이하의 주택, 콘도, 농장주택, 아파트 등으로 신청자의 주거주지이어야 한다(Basic STAR). 이외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주가 65세 이상으로 모든 소유주의 총소득이 6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enhanced STAR). 일단 신청을 한 사람은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시정부가 통지하며 혜택 규모는 시정부가 결정한다.

3) 기타 주거용 감면

퇴역군인과 그 배우자 및 자택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생존자녀는 자격이 되면 해당 자택에 대하여 교육분 부동산세를 제외한 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이 되는 퇴역군인 소유의 부동산은 거주용 주택이나 콘도나 아파트이어야 한다. 퇴역군인 가운데 자격은 전쟁에 참여하였거나 불구가 된 퇴역군인으로 1998년의 경우 각각 1,980달러의 재산세나 평가액의 15%와 6,600달러 혹은 평가액×불구비율 가운데 적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면제액 가운데 교육용의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2002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29,900달러 이하로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는 불구자는 3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부동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Sec. 11-245.4, NYC Adm. Code). 이외 범죄의 피해자나 선행으로 불구가 된 사람도 불구와 관련된 주택의 용도 개선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피해자가 거주하면 된다. 일단 공제가 허용되면 시정부가 매년 보내

218) 2003년 12월 이전에 65세 이상의 노인층으로 연간 소득이 62,100달러 이하인 주택 소유자는 추가의 감면이 가능하다(enhanced STAR).

는 갱신통지서를 작성, 제출하면 공제가 지속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축하는 경우 부동산세의 감면이 가능하다(Sec. 421-A, B). 3가구 이상의 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Sec. 421-A)에는 전체 면적의 12% 이하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3가구 이하의 주택을 신·개축할 때(Sec. 421-B)는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건물을 거주용으로 전용하여야 한다. 건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평가액으로 부동산세가 과세되므로 일정 기간 동안 신·개축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 위치 등에 따라 혜택이 10~25년간 주어지며 후자는 8년간 감면이 허용되는데 종료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그 규모는 점차 감소한다.

이와 유사하게 3가구 이상의 1등급 거주주택을 전면 보수하거나 비거주용 건물을 다가구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제와 조세지원을 하기도 한다(Section J-51, RPTL). 지원자가 개·보수를 하기 45일 이전에 신청하면 개·보수된 부분에 대하여 14년간 부동산세가 감면된다. 나중 4년간은 감면 혜택이 20%씩 축소된다.

4) 비영리단체 감면

각종 종교, 아동, 여성 비영리단체, 도서관, 의료단체, 공공유원지, 묘지운영업체 등도 부동산을 면제가 허용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부동산세가 완전 면제된다. 해당 부동산은 비영리단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이들 기관의 종업원이나 회원은 기관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서비스를 위한 보수 이외 기관의 운영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며 기관이 종업원이나 회원의 영리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면제되는 부동산은 기관의 목적에 전용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거나 민간에게 임대된 부동산은 과세되는데 다만 건설중이거나 사용이 예정된 부동산도 위장된 것이 아니면 면제가 가능하다. 신축을 위한 모금이 시작되거나 건축설계사를 고용한 경우 건물 신축허가가 제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 정부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도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 신청은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5) 산업/상업용 부동산세 감면(ICIP)

뉴욕시는 건설, 확장 혹은 보수된 산업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자격이 되면 최대 25년간 부동산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세금을 감면하여 준다(Industrial and Commercial Incentive Program)²¹⁹⁾. 이러한 지원은 최소 25%의 건물 면적을 산업활동에 이용하면 가능하다(이전에는 75%). 최소한의 경비지출 기준(minimum required expenditure, MRE)을 충족하면 일반 공제(10% MRE)가 허용되고 그 기준을 초과하면 세액공제(25% MRE)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혜택 범위는 해당 부동산에서 보수가 이루어진 부문이다. 25%의 최소비용기준을 충족한 산업용 건물은 처음 4년간 부동산세의 50%가 감면되며 이후 4년에 걸쳐서 매2년 감면비율이 10%씩 떨어진다. 이외 산업용 건물은 처음 16년간 평가액의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9년은 10%씩 공제범위가 축소된다. 상업용 건물에서도 보수가 이루어진 부분은 처음 11년간 평가액 공제가 허용되고 이후 4년간은 매년 20%씩 감면이 축소된다. 나아가 특별히 지정된 상업용 건물은 산업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16년간 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이후 9년간 매년 10%씩 감면이 감소한다. 이 프로그램은 1984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나 2003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노후 건물의 보수를 위한 지원방안에는 상업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후 건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아래 임차인은 최소 5~10년간 그 건물을 사무실, 도매 등 상업용으로 임차하고 임대인은 1제곱 피트당 5~35달러를 투입하여 건물을 보수하면 5년 동안 부동산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Commercial Revitalization Program). 이 경우 첫 3년간 1제곱피트당 2.5달러를 한도로 부동산세의 50%가 세액공제되고 이후 2년간은 공제액이 1/3씩 감소한다.

이와 유사하게 뉴욕 외부에서나 뉴욕 맨하탄으로부터 다른 뉴욕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체는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뉴욕시 사업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ocation and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REAP). 이를 위해서는 사업체가 이전하기 이전에 최소 2년간 영업을 하였고 시 정부나 ICIP의 적용 대상

219) Title 11, Chapter 2, Part 4 of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인 건물로 이전하여야 하고 해당 건물을 수선하여야 한다. 2000년 이후 자격을 인정받은 업체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한 종업원 1명당 3,0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제는 최고 12년간 가능한데 이전 후 일단 5년간 공제가 지속된다.

바. 신고와 납부

매년 1월에 과세통지서를 보내는 주소로 평가통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가 신고를 할 필요 없다. 단, 40,000달러 이상의 임대부동산 소유주는 매년 9월 1일 까지 소득과 비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평가액의 3~5%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낼 수 있다(Sec. 11-208.1, NYC Administrative Code).

과세통지서가 은행으로 발송될 경우에도 평가통지서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발송된다. 따라서 이들 통지서를 받으려면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시 중앙등록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 대부가 끝난 사람이나 새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 주소가 바뀐 사람들도 등록하여야 한다.

평가액이 40,000달러 이하인 1, 2 등급 부동산은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부동산세금을 납부하며 이외 부동산은 7월 1일과 1월 1일, 2번 세금을 납부한다. 6월 경 발부되는 납부통지서는 전년도 세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므로 1월에 확정된 재산세를 통보 받고 정산한다. 또한 평가액이 40,000달러 이하이며 부동산세가 은행이나 대부회사에서 적립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15일간 이자가 면제되므로 납부기한은 한 예로 7월 15일이 될 수 있다.

만약 부동산세를 적시에 납부할 수 없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정주택과 콘도 등은 재산세의 10%와 이자, 이외 1, 2등급 부동산은 15%와 이자를 먼저 납부하면 최대 32번(8년) 분할납부할 수 있다. 3, 4등급 부동산은 재산세의 15%를 납부하고 20번(5년)에 걸쳐서 분할납부한다. foreclose 대상인 부동산도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그 조건은 해당 부동산에 따라 다르다.

만약 부동산세가 늦게 납부되면 이자부담이 발생하며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의회가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체납한 세액이 2,750달러 이상이면 연 15%, 그 이하면 연 7%로 다르다. 체납통지서가 발부된 후에도 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 정부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 처리할 수 있다(rem proceedings). 주거용 건물의 경우 연간 미납액이 2,750달러 이하이고 3년이 넘게 체납한 부동산세가 있으면 그리고 기타 부동산은 최소 1년이 넘게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매각한다.

이밖에도 뉴욕 시정부는 체납된 부동산세를 해당 재산으로부터 징수할 권한(tax lien)을 개인이 아닌 제3자(lienholder)에게 팔 수도 있다. 시 정부는 체납 부동산의 매매 가능성과 재정적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를 구입한 제3자는 법적 소송을 통하여 체납한 세금과 벌과금 그리고 5%의 관리비용을 체납된 부동산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고 해당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다.

사. 이의신청

부동산 평가결과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뉴욕시 과세위원회(Tax Commission)에 1월 15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Sec. 163(b), NYC Charter). 단 입증 부담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있다. 과세위원회는 평가를 담당하는 재무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평가결과와 과세등급 그리고 감면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등급(3월 17일)을 제외한 여타 부동산의 소유주는 3월 3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위원회가 평가결과를 심의한다. 부동산 소유주가 제공하는 정보는 재무부에도 통보되며 재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평가조정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150,000달러 이하의 자가주택 소유주가 불균등하거나 과도한 평가액에 대하여 뉴욕시 과세위원회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받지 못하면 법정에서 소액평가 심의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 단 동 위원회로부터 행정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고 소액평가심의를 받으면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Sec. 736, Real property Tax law). 여타 부동산 소유주는 정식으로 10월 25일 이전에 법정 심의(judicial review)를 요청하여 재판을 받는다(Sec. 11-231(b), NYC Administrative Code).

3. 매릴랜드주 재산세

가. 총칙규정

1) 납세의무자

부동산의 경우 매릴랜드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정부가 부동산을 평가하면 8~9월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통지한다. 이에 비하여 사업용 개인재산은 사업자가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하고 추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한다(Sec. 11-101, Prop. tax Art.).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주된 수입원으로 카운티와 도시의 전체 예산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대략 30%, 35%에 이른다. 주정부의 경우 재산세 비중은 10% 이하이다.

2) 과세대상

주법에 의하면 특별히 따로 면제되지 않은 부동산을 제외하면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과세한다(Sec. 6-101, Prop. tax Art.). 개인재산의 경우 주 재산세에서는 면제되지만 전기, 전화, 철도 등 공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개인사업 등의 사업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카운티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한다(Sec. 7-301, 9-101). 모든 재산은 그 재산이 위치한 장소에서 과세되며 사업재산은 사업이 거래되는 곳에서 과세된다(Sec. 8-104).

토지나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여하간의 권리, 소유권과 임대권 등을 포함한 모든 제한된 권리를 말한다(Sec. 1-101). 고정물(fixture)은 부동산(realty)에 부착되어 있고 부동산의 이용과 부합하며 영구히 부착된 것을 말한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개인재산에는 가구, 고정 부착물, 사무 및 산업용구, 기계, 도구, 재고와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산을 포함하는데 일부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유형이 면제된다.

건축중인 부동산의 경우 최소한 50,000달러 이상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는 실질적인 건축이 이루어지면 재평가된다(Sec. 8-104). 이러한 재평가는 실질적 건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분기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1) 99년의 임차권 2) 영구히 재계약이 가능한 임차권 3) 영리 목적을 위한 일부 정부 소유 부동산의 임차권은 재산세가 부과된다(Sec. 6-102, 7-211).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산 채굴권(Sec. 8-222)도 토지와 따로 평가되며 무형개인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Sec. 6-101). 나아가 외국수입품으로 이루어진 사업자산도 수입 당시의 포장 상태로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다(Sec. 7-507).

나. 과표, 과세등급 및 세율

1) 재산세 과표

매릴랜드에서는 시장가치 대비 실제 평가액 즉, 평가비율(assessment ratio)이 이용되지 않는다. 즉, 부동산은 매3년 평가가 이루어지는 첫 해의 1월 1일 완전한 현금가격으로 평가된다(Sec. 1-101, 8-104). 평가가 3년 주기로 이루어지므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 평가금액은 매년 증가분의 1/3씩 증가한다(phase-in value, Sec. 8-103(c)).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지 않으면 가장 최근의 평가액이 기준이 된다. 이에 비하여 개인 재산은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액의 100% 금액으로 평가되며 다만 재고는 공정한 평균가액(평가기준일 월평균)으로 평가된다(Sec. 9-107).

한편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농토와 산림, 자격이 있는 클럽, 주택의 손상부분, 에너지 절약 구조물, 임대부동산, 이동주택 등은 평가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한 예로 자격이 있는 농장과 산림은 사용가치의 50%로 평가된다(Sec. 8-209, 210).

2) 과세등급과 재산세 세율

매릴랜드에서는 과세등급을 따로 나누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세 세금은 평가액과 재산세 세율로 결정된다. 주정부의 세제/평가실이 수행하는 재산 가치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비하여 세율은 주정부와 카운티 그리고 시정부에 의하여 각각 따로 결정된다.

재산세 세율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르며 주정부 차원에서 최고 세율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1977년 제정된 세법은 부동산의 평가가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세 인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Constant Yield Tax Rate process). 이 법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는 일정한 재산세 세입(constant yield)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때 이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정부 세제/평가실이 일정한 세입 세율(constant tax yield rate)²²⁰⁾을 산정 및 제공하고 있다. 만약 지방정부가 이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려면 이를 공표하고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표 VI-14>에 제시된 전체 세율은 주정부와 카운티 그리고 일부의 경우 하위정부의 통합세율로서 평가액 100달러에 대하여 세액이 정해진다. 즉 어떤 부동산의 평가액이 100,000달러이고 세율이 1.08달러이면 재산세 세금은 1,080달러이다.

220) 새로운 자산 평가가 있을 때 그러한 평가액에 적용하면 전년도와 같은 재산세 세입을 유발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표 VI-14> 매릴랜드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세율(100달러당)과 평가비율

(단위:달러, %)

	부동산 세액	개인재산 세액	평가비율	
			부동산	평균
주정부	0.084	0.21	90	92
Allegany county	0.9838	2.4595	98	92
Anne Arundel county	0.950	2.375	90	89
Baltimore City	2.328	5.82	94	95
Baltimore county	1.1150	2.7875	90	95
Calvert county	0.892	2.23	91	84
Caroline county	0.952	2.380	91	99
Carroll county	1.048	2.620	92	92
Cecil county	0.980	2.450	92	92
Charles county	1.016	2.54	92	92
Dorchester county	0.880	2.200	91	82
Frederick county	1.000	2.500	89	95
Garett county	1.036	2.590	94	92
Harford county	1.092	2.730	91	81
Howard county	1.044	2.610	92	93
Kent county	1.012	2.53	92	92
Montgmoery county	0.754	1.885	86	96
Prince George county	0.962	2.404	91	91
Queen Anne county	0.976	2.44	94	92
St. Mary county	0.908	2.270	92	99
Somerset county	1.010	2.535	95	92
Talibot county	0.553	1.380	87	71
Washington county	0.948	2.37	91	97
Wicomico county	1.047	2.617	93	89
Worchester county	0.73	1.825	92	92

주: 1) 각 카운티의 세액은 카운티 정부와 소속 기초자치단체 세액을 합한 세액으로서 평가액 100달러 당 금액임.

2) 개인재산은 상업용 개인재산과 공기업 및 철도의 부동산/개인재산임.

3) 평가비율은 중간 매매가격 대비 주정부 평가가치임.

자료: www.dat.state.md.us/sdatweb/htc.html

다. 재산의 평가

1) 평가근거

매릴랜드에서는 평가의 균일성을 위하여 주정부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평가한다(Sec. 8-104, Prop. tax Art.). 매릴랜드주 의회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부동산의 평가를 시장가치의 100%로 하도록 법을 수정한 바 있다(Chapter 80 of the laws of 2000, Sec. 1-101, Prop. tax Art.).

과거에는 자산의 평가를 시장가치의 40%(사용가치는 50%)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대신 재산세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실제 세부담은 변화가 없도록 하였다. 한 예로 예전에는 100달러당 0.21달러의 주 재산세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0.084달러가 부과된다. 이러한 변화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고 세부담을 다른 주와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매릴랜드 주에서 재산의 평가는 공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경우 시장가치를 추정하여 평가한다. 부동산 매매를 추적 및 분석함과 동시에 감정관은 건물 등에 대하여 대체건설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매릴랜드 평가매뉴얼(maryland assessment manual)을 이용한다. 임대자산을 포함한 상업 및 산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순소득의 자본화 접근방식을 이용한다(Sec. 8-105). 이렇게 평가된 결과는 각 카운티와 기타 기초자치단체에 과세를 위하여 제공된다. 평가의 정확성을 위하여 주정부의 세제/평가실(Department of assessment and taxation)은 매년 평가비율 즉, 평가액과 실제 매매가를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재평가를 명한다(Sec. 2-204).

2) 주기(Triennial Assessment cycle)

매릴랜드에서는 주정부가 직접 매 3년 주기적으로 부동산을 재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그 소유자에게 통보된다. 이는 매년 전체 자산의 약 1/3이 다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된 자산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에 비하면 개인재산의 경우 매년 재평가된다. 개인자산의 경우 2002년 223,601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그 중 약 절반이 재산평가를 의뢰하였다. 10월 1일까지 신고된 재산의 경우 12월 1일까지 98%에 대하여 평가가 완성되었고 과표액이 115.04억달러에 달한다.

3) 평가방식

매릴랜드 주헌법 15조에 의하면 모든 자산은 균일하게 평가되고 과세되어야 한다. 특히 주법은 모든 과세대상 자산이 공정한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관은 표준의 평가방식을 이용하여 자산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공정한 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접근방식에는 첫째, 매매방식 둘째, 비용방식 셋째, 소득방식이 있다. 매3년마다 이루어지는 평가에서 주거용 자산의 경우매매와 비용방식이 이용되며 소득방식은 임대 등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적용될 수 있다.

매매방식은 평가 대상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격을 해당 자산의 가치로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유사성과 충분한 자료의 존재 여부이다. 비용방식은 유사한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산의 상태와 건립연도에 따른 감가상각과 토지비용을 고려한다. 매릴랜드에서는 주거용 자산을 평가할 때 토지가액은 근접한 그리고 같은 용도의 토지매매가격으로 평가하고 건물 등은 비용방식을 이용하되, 유사한 건물의 매매가격을 참조한다. 자산의 소유자는 지방평가사무소에서 자신의 자산평가액에 대한 근거와 설명을 서류(worksheet)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비율은 토지규모와 위치 그리고 구역(zoning)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구역법(zoning)에 따라 건물을 짓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토지규모(minimum building lot size)보다 규모가 큰 건물 토지는 이중의 비율이 적용되는데 우선 최소한의 토지규모에는 기본적인 가치 산출을 위해 기준토지비율(primary land rate)²²¹⁾이 적용되고 나머지 여분의 토지에는 초과토지비율(excess land rate)이 적용된다. 초과토지비율은 기준비율보다 일반적으로 낮는데 시장조사에 따르면 이러

221) 달러금액으로 표시되며 이 비율을 토지규모에 곱하면 토지가액이 나온다. 이 비율은 유사한 토지의 매매자료로부터 산출된다.

한 여분의 토지가 갖는 가치는 건물을 짓기 위하여 법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토지 매매가보다 낮기 때문이다.

건물 자체의 경우 설립연도, 상태, 규모와 침실, 텍(deck), 연로 등 건물 내용 혹은 부속물에 따라 평가가 달리된다. 평당 평가비율이나 혹은 건물의 내용물에 대하여 고정된 금액이 평가시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감가상각이 고려된다. 이외에도 건설비용을 현재가치와 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비용지수(cost index)와 함께 현재의 시장 상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지수를 적용한다(MVI, market value index).

예외적으로 농지 혹은 삼림으로 실제 활용(actively used)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시장가치가 아니라 농지/삼림으로서의 사용가치에 따라 평가되는데 평가금액도 사용가치의 50%로 한정된다²²²⁾. 사용가치에 대한 평가는 토지 자체에 적용되며 그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로서 사용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농지로 활용하여 평균적으로 매년 2,500달러 이상 농산품 매출이 있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동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농지가 최소 3에이커는 되어야 하며 주거지로 이용되는 토지(1에이커)는 사용가치에 따른 평가에서 제외된다.

사업용 개인재산의 경우 재고를 제외하면 매입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되는데 재산세 목적상 허용되는 감가상각은 최대 75%이다. 재고는 공정한 비용 혹은 시장가치 중 낮은 가치로 평가된다. 감가상각률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7개의 다른 비율이 적용되는데 대개 10%가 적용된다. 1에서 감가상각률을 뺀 수치를 감가상각 요인(혹은 percent good)라고 하는데 이 비율을 개인재산 원가에 곱하면 평가액이 된다.

4) 농지/삼림 양도세(Agricultural Property Tax)

농지/삼림으로 인정받아 사용가치에 따른 자산 평가를 받던 토지가 소유 이전되면

²²²⁾ Tax-Property article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 Section 8-209.

농지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농지에 대하여 시가 평가 대신 사용가치 평가를 하는 이유는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농지가 개발을 위하여 매매되면 이러한 우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 매입자가 5년간 계속 해당 토지를 농지로 사용한다고 약속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declaration of intent).

농지/삼림 양도세는 등기권 deed에 부과되며 카운티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이전에 세금이 납부되어야 한다²²³⁾. 세금은 토지 소유권에 부과되므로 누가 납부하는가 여부는 매입자나 매도자 사이에서 협상이 가능하다. 다만 매도자는 매입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세 부과 가능성을 통보하고 매매계약의 일부로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입자가 결국 납세의무자가 된다.

농지/삼림 양도세는 농지나 삼림으로서 사용가치로 평가된 토지의 공정한 시장가격(매매가격)에 부과되며 세율은 토지규모에 따라 다르다. 매매되는 토지의 크기가 20 acres 이상이면 5%, 그 이하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외 토지 규모가 20 acres이고 건물이나 우물 등 부속물이 있으면 3%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토지에 아무런 부속물이 없으면 세율이 적용되는 가액은 실제 매매가격(actual consideration paid)이지만 부속물이 있으면 그 부속물에 대한 평가액을 제외한 매매가격이다.

라. 비과세·감면

1) 자가주택 세액공제(Homeowners' tax credit)

대부분의 주에서 그러하듯이 매릴랜드주에서도 1975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개인 및 거주가족(household)의 각종 공제 이전의 총소득(gross income)과 재산세를 비교하여 총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과도한 재산세는 주택 보유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주정부 차원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다(circuit breaker, Sec. 9-104).

이 제도는 재산세 감면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으로서 평균 17명의 주택 보유자 가운데 1명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2003년의 경우 68,946건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223) Tax-Property article of the Code of Maryland Section 13-301~13-308.

52,583건이 1인당 평균 755.8달러의 공제를 받았다(총액 약 39.5백만달러).

신청자 자격은 해당 자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이 주거주지이며 주택을 제외한 신청자의 순자산이 200,0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이 밖에도 자택의 평가액이 150,000달러를 밑도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대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거나 주택의 일부가 상업용으로 이용되면 주거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의 규모는 가족의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표 VI-15>). 즉, 가족의 총소득 가운데 처음 4,000달러 부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세는 면제이며 그 다음 4,000달러에는 1%의 재산세, 그 다음 4,000달러는 6.5%, 그리고 16,000달러 이상의 소득에는 9%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매 1,000달러 소득당 납부해야 하는 최대 재산세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재산세 부과액이 이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된다.

<표 VI-15> 매릴랜드주 거주주택 소득별 재산세 한도

(단위:달러)

가족 총소득	최대 재산세	가족 총소득	최대 재산세	가족 총소득	최대 재산세
1~4,000	0	14,000	350	24,000	1,200
5,000	10	15,000	415	25,000	1,290
6,000	20	16,000	480	26,000	1,380
7,000	30	17,000	570	27,000	1,470
8,000	40	18,000	660	28,000	1,560
9,000	85	19,000	750	29,000	1,650
10,000	130	20,000	840	30,000	1,740
11,000	175	21,000	930	30,000~	주 참조
12,000	220	22,000	1,020		
13,000	285	23,000	1,110		

주: 30,000달러 이상의 총소득에서는 1,000달러 소득당 1,740달러에 90달러를 합하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한도가 된다.

자료: www.dat.state.md.us/sdatweb/htc.html

노인층 및 임차인 감면 등 모든 개인 감면은 매년 9월 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5월

1일 이전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7월 1일 재산세 징수에서 감면금액이 직접 공제된다. 이외 9월 1일까지 신청하는 사람은 재산세 납부시 사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 증명서를 받는다.

이 밖에도 전년도에 비하여 저택의 평가액이 10% 이상 증가하면 이에 대하여 주정부가 세액공제로서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상쇄해준다(Homestead Tax Credit Program or Assessment Cap).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이 용도나 구역변경이 없었고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어야 하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7월 1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6개월간 살아온 주거주지이어야 한다.

2) 임차인 세액공제(Renters' tax credit)

자가주택과 유사하게 주택을 임대하여 사는 사람도 소득에 비하여 과도하게 재산세를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Sec. 9-102). 주정부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통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임대료의 15%로 간주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차인도 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간접적으로 부담한다는 뜻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만약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일정한 조건 아래 임차인은 최대 600달러까지 주정부로부터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VI-16> 매릴랜드주 임차인 재산세 세액공제 지침(60세 이상과 불구자)

(단위:달러)

가족총소득 (A)	월임대료 (B)	가족총소득 (A)	월임대료 (B)	가족총소득 (A)	월임대료 (B)
1~5,000	14	10,000	117	15,000	303
6,000	28	11,000	147	20,000	544
7,000	42	12,000	178	25,000	794
8,000	56	13,000	219	30,000	1,044
9,000	86	14,000	261		

주: 임대료에서 전기, 수도, 난방비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자료: www.dat.state.md.us/sdatweb/rtc.html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은 최소 6개월간 살았던 주거주지로서 개인 집의 아파트이거나 아파트 빌딩, 콘도 등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60세 이상의 모든 임차인과 완전히 불구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경우 <표 VI-16>에 제시된 가족의 총소득(A)을 기준으로 (B)행에 제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면 세액공제를 신청하도록 주정부가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금액은 정부가 신청서를 기초로 결정한다.

60세 이하의 임차인은 동거하는 18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최소 1명이 있고 다른 주택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면 임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수에 비하여 <표 VI-17>에 제시된 총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임차인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주정부는 임대료와 소득을 비교하여 공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은 9월 1일 마감된다.

<표 VI-17> 매릴랜드주 임차인 재산세 세액공제 지침(60세 이하)

(단위: 명,달러)

가족수	총소득	가족수	총소득
2	11,869	6	23,528
3	13,738	7	26,754
4	17,603	8	29,701
5	20,819	9	35,060

자료: www.dat.state.md.us/sdatweb/rtc.html

세액공제 액수는 임대료에 포함된 재산세에서 소득 대비 납부 가능한 재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전자의 경우 임대료 가운데 15%가 재산세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납부 가능한 재산세는 아래 <표 VI-18>에 의하여 산출된다.

한 예로 소득이 1,100달러이고 월 임대료가 300달러인 가구의 경우 부담할 수 있는 최대 재산세는 265달러($0+0.025 \times 4,000+0.055 \times 3,000$)이며 추정된 재산세 납부액은 540달러($3,600 \times 0.15$)이므로 그 차액 275달러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매릴랜드주는 2002년의 경우 15,574건의 신청을 받아 12,031건에 대하여 평균 270.9달러를 공제해 주었다

(총액 약 3.3백만달러).

<표 VI-18> 매릴랜드주 소득 대비 납부 가능한 재산세

(단위:달러)

소득	추정임대료	가족수	총소득
첫 4,000달러	0	그 다음 4,000달러	$0.075 \times 4,000$
그 다음 4,000달러	$0.025 \times 4,000$	16,000달러 이상 초과소득(a)	$a \times 0.09$
그 다음 4,000달러	$0.055 \times 4,000$		

자료: www.dat.state.md.us/sdatweb/rtc.html

3) 감면재산

개인재산 유형별로 주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대상에는 등록된 자동차(Sec. 7-230), 비행기와 공공용 활주로(Sec. 7-220, 303), 농축수산물 등의 재산(Sec. 7-223), 묘지(Sec. 7-201), 에너지 관련 기구(50% 면제), 납세자 주택에 설치된 탁아소(Sec. 7-227(b)), 비사업용 재산, 100피트 이상으로 매릴랜드 주 밖에서 정기적으로 이용되는 대형선박(Sec. 7-231),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재산, 무형자산, 일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또한 상업 및 제조업 재고는 Wicimico 카운티를 제외하면 재산세가 면제된다(Sec. 7-222).

정부 보유자산 이외에도 종교, 교육 그리고 자선단체 기관과 완전히 불구가 된 퇴역군인, 생존 배우자, 맹인 및 묘지, 공공기관 등은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개인과 자선단체를 제외한 기관은 9월 1일까지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면 요건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상기관이 부동산을 소유 및 전용하여야 한다(Sec. 7-202). 한 예로 종교단체를 해당되는 부동산을 순전히 공공의 종교행사에 이용하여야 하며 종교단체 직원의 주택으로 이용되는 부동산은 면제되지 않는다(Sec. 7-204). 자선단체의 경우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교육단

체는 일반대중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재산에 대해서만 면제가 허용된다.

맹인과 그 배우자의 경우 6,000달러까지 평가공제가 이루어지며(Sec. 7-207) 불구가 된 퇴역군인 혹은 유가족은 자기주택에 대하여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Sec. 7-208). 이 밖에도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일부 지명된 기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이 허용된다. 일단 감면 허가를 받으면 그 자격은 정부가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가족단위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주거주지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자동차를 제외한 원래 재산비용(original cost)이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개인재산에 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 이외 삼림의 소유주가 정부와 협의하여 최소 15년간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 삼림의 평가액을 동결할 수도 있다(Sec. 8-211).

부동산과 개인재산을 모두 포함하면 매년 약 2,000건에 달하는 면제 요청이 접수된다. 2002년의 경우 약 123.7억달러에 이르는 자산이 재산세 감면을 받았는데 1.15달러(평가액 1,000달러당)의 세금을 가정하면 약 142.3백만달러의 감면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 헌법은 ‘지방정부의 과세기반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미국 내국세법(IRS Code 501(c)(3))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비영리단체의 재무기록을 포함한 신청서를 꼼꼼히 살피고 해당되는 재산이 ‘실제로 그리고 전부가 미국 일반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면제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주정부는 균일한 면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그 과정을 중앙에서 통제하며 영리 목적으로 일부가 이용되거나 특정 그룹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받을 수 없게 사용된 재산이 부당하게 면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지역개발 세액공제(Enterprise Zone Tax Credit)

개인재산의 경우 낙후지역에 공장 등을 세우거나 확장하면 재산세의 공제가 가능하다(Sec. 9-103). 새로이 일정수의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최소한도의 신규투자를 하는 기업은 처음 5년간 증가된 자산 평가액의 80%를 세액공제받고 이후 5년간은 70%에서 30%까지 점차 감소하는 비율로 공제를 받는다. 주정부는 이로 말미암아 기초자치단체

가 받지 못하는 재산세의 절반을 각 자치단체에 제공한다. 2003년의 경우 531개 업체가 약 9.7억달러를 투자하여 2004년에 약 4.9백만달러의 공제를 받게 된다.

마. 신고와 납부

부동산의 경우 각 개인이 재산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8~9월에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통지한다. 재산세 기일은 7월 1일이지만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면 이자나 벌금이 없다. 단, 은행이나 주택대부회사가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납세 만기일이 다를 수 있다. 이들은 고지서를 받은 날, 첫 만기일, 충분한 재산세를 거둔 시점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Sec. 7-107).

자가 주택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는 7월과 12월, 2번에 걸친 분할납부방안을 선택할 권한을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Sec. 10-243.3).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최소한 5년간 계속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불구가 된 사람은 재산세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의 자산 소유자는 재산세가 인상되면 인상분의 납세를 연기할 수 있다. 단 이렇게 연기된 재산세에는 이자가 붙으며 해당 주택의 채권이 된다.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 파트너십, 부동산투자회사는 재산의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재산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와 일반 파트너십은 과세가 되는 사업용 개인재산이 있거나 사업증이 필요하면 신고해야 한다(Sec. 11-101). 신고기일은 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4월 15일이다. 500백만달러 이상의 임대건물 소유주는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Sec. 8-105).

개인재산을 신고하면 이를 기초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납세사업자에게 통보된다. 연후 각 기초자치단체가 평가 결과를 인증하고 과세액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사업자에게 발부한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기일을 어길 경우 카운티정부 평가액의 0.1%에 해당하는 벌과금과 함께 신고 마감일로부터 매30일마다 벌과금의 2%에 해당하는 추가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벌과금에는 최소 및 최대 금액 제한을 두고 있다(Sec. 14-704).

이와 함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재산평가액의 2배까지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다. 연속 2년 혹은 기초자치단체 법에 의하여 연체된 재산세가 있으면 해당 부동산을 정부가 매각할 수 있다(Sec. 14-808).

바. 이의신청

법원에서의 이의신청을 제외하면 매릴랜드 주에서는 재산평가에 대하여 3단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평가감독관 차원에서 가정 먼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재산세 이의심의 위원회(PTAAB)와 매릴랜드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릴랜드 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산 보유자를 위한 권리헌장(Bill of Rights)을 제정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약 24,749건의 이의가 첫 번째 단계에서 접수되었고 재평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3.6%가 다시 상위기관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정기적인 평가통지서는 12월말에 발송되며 이 밖에도 자산의 용도 변화나 신개축 혹은 구역 변경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자산의 소유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4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Sec. 14-502). 이 밖에도 이의를 제기할 시한을 넘기거나 주기적인 평가기간 사이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재심(review)을 요구할 수 있고 새로이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재산세의 납부나 징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Sec. 14-514). 다만 개인재산의 경우 납세자가 보증금을 제공하면 징세를 유예할 수 있다.

자산의 소유자는 일차로 평가 감독관(supervisor of assessment)에게 전화나 면담 혹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자산 가치에서 대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연후 최종 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면 자산의 소유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세 이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동 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추천하고 주지사가 임명한 3명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다. 감정관과 자산의 소유자는 위원회에서 직접 혹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관과 자산 소유자는 매릴랜드주 조세심판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Sec. 14-512). 심판원은 주지사가 임명한 독립기관으로서 행정심의를 하는데 그 방식은 심의위원회와 같다. 조세심판원에서의

심의회가 행정절차로는 마지막 단계이며 그후에는 고등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평가결과에 대하여 법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가. 기본원칙

미국에서 재산세는 재산 자체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직접세로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며 이외 주정부나 교육자치단체 등이 일부 과세를 하기도 한다. 각 지방 정부는 역내에 위치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일률 과세하는데 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되기도 하고 평가기준이 다르기도 하며 또한 세율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재산세 세율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2002년 당시 재산세 세수는 약 2,847억달러로 전체 지방정부 세수액 32% 그리고 GDP 대비 비중은 2.8%에 달한다.

재산세 납부액은 자산의 평가액에 따라 변하므로 재산세에서는 자산 평가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사 자산은 비슷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과세행정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더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평가 및 과세과정을 감독 및 심사하고 주민이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평가의 균일성).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유·무형 개인자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자산도 부동산에 부착된 경우 이를 부동산에 포함 된 자산으로 본다. 유형 개인자산의 경우 6개 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과세되며 주로 상업 혹은 산업용 자산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영업권과 증권 등 무형 개인자산은 일부 주에서 제한적으로 과세된다. 이들 개인자산은 소유주의 거주지에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일부에서는 자산의 위치가 과세권을 결정하기도 한다. 감·면세는 노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소유주를 기준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주로 농업, 제조업, 환경 보존용 등 사용 용도가 기준이 된다.

3~4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산평가는 평가 기준일 당시 해당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감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공정 시장가격은 '완전하고 진정한 가치', '실제가치', 혹은 '공정한 현금가치'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일부 지

역에서는 사용가치나 장부가치를 이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자산평가는 객관적으로 결정된 최고 및 최선의 이용가치(highest and best use)를 기준하며 예외적으로 농업토지, 산림, 역사유물 등이 현재의 실제가치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자산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가 소유주에게 통보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입증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다.

평가방식은 비용방식, 소득방식 그리고 유사매매 방식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평가비율(assessment ratio)에 따라 자산가치의 일부만을 과세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세율을 조정하는 대신 평가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추세이다. 이외 자산은 주거, 산업, 상업 혹은 농업 등의 용도에 따라 평가비율과 세율이 다를 수 있다.

나. 지방정부 사례

뉴욕주에서 재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부동산을 일반 주거용, 임대 및 집단 주거용, 공기업용 그리고 상업용의 네 가지 과세등급으로 나누어 상이한 세율과 평가비율을 적용한다. 한편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매년 인상 가능한 평가액에 대하여 상한선이 있다.

일반 주거용은 유사 매매 방식, 공기업용은 비용 방식 그리고 이외 부동산은 소득방식으로 평가한다. 평가비율까지 감안한 세부담은 일반 주거용이 평가액 100달러당 1.13달러로 가장 낮고 나머지 등급은 대략 5~6달러의 평균 세부담을 적용받는다. 물론 평가액은 시장가치의 30%를 밑돌기 때문에 실질세율은 이보다 낮다.

의료, 자선,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함께 노인, 불구자 등의 인적 감면, 노후건물 보수 그리고 산업(상업) 유치 등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이 있다.

매릴랜드 주에서는 부동산과 함께 개인 사업용 자산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매3년 한번씩 현금가격(시장가치)으로 평가되며 과세가격은 가치 변화분의 1/3씩 매년 조정된다. 원칙적으로 평가액의 100% 금액이 과세되지만 농장과 삼림 등은 사용가치의 50%로 평가되기도 한다. 부동산 평가는 주로 비용방식을 참고한 유사 매매 방식을 이용하지만 임대용 및 산업(상업용) 자산은 소득방식을 사용한다.

매릴랜드는 용도에 따라 과세등급을 달리하지 않는다. 또한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세 부담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릴랜드에서는 일정 수준의 세입이 유지되는 세율을 공표하고 자치단체가 이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려면 공청회 등 일정 단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 재산세가 자가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의 소득에 비하여 과도하면 재산세의 일정 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 2003년의 경우 자가 주택 보유자 17명 가운데 1명이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나아가 임차인도 간접적으로 재산세를 부담한다는 뜻에서 재산세에 해당하는 임대료(임대료의 15%)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최대 600달러까지 감면해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재산세의 중요성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 재산세 제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미국의 경우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과거에는 실제 가치에 비하여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과세의 투명성을 위하여 세율을 낮추는 대신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평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주거용 혹은 상업용 등 자산의 용도에 따라 평가방식이 다르고 세부담도 다르다. 이 밖에도 재산세는 주로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이지만 균일한 과세를 위하여 주정부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주에서는 소득에 따라 재산세의 상한선을 두고 있고 재산세 일부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재산세 일부를 소득이 낮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줄 수도 한다.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과세를 무겁게 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재산세 경감제도로 우리나라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외 노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와 지역개발을 위한 재산세 감면 등이 있다.

VII. 국제조세

1. 개요

미국은 미국 국민,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역외 지역에서 발생한 거래로 인한 소득이라도 과세한다. 외국 회사와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국 내에서 수행된 거래 혹은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effectively connected) 또는 사업 관련 소득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발생한 고정적이고 확정 가능한 주기적 소득(FDAP)에 대하여 과세한다.

2. 미국인 등에 대한 해외소득 과세

가. 기본원칙

미국인 혹은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창출한 임금과 이외 외국에서 얻은 기타 소득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미국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또한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일지라도 만약 미국에서 한 해 동안 31일 이상 머무르고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있으면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미국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substantial presence test).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소득 가운데 8만달러까지 비과세될 수 있고 소득 중 일부는 주택비용으로 공제하거나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공제나 비과세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외국을 납세지국(tax home)으로 하고 그 곳에서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외소득에 대한 신고방식과 이에 따른 면세와 공제 등은 국내소득신고와 다르지 않다. 다만 해외 근로소득이나 주택비용을 면세 받으면 이 항목과 관련된 비용이나 외국

납부세액 등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외 미국과 국제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일하는 미국인 등은 협약에 따른 감면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국 정부가 원천징수를 하면 해외소득에 대한 미국 과세에서는 비록 고용주가 미국기업이라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나. 사회보장세와 자영업자 고용세

외국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얻은 임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교통수단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보장에 대한 국제협약²²⁴⁾이 있는 국가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미국 업체에 고용이 되었으면 사회보장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영업자도 자영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사회보장세에 해당하는 자영업고용세(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양자간 사회보장협약(Bi-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을 맺은 국가에서 일하는 미국인 등의 경우 거주국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한다.

다. 이중과세 방지규정

1) 해외소득의 비과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미국인 등은 2002년 8만달러에 이르는 해외소득과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택비용 등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Sec. 911(a)(1)). 해외 근로소득은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제공한 개인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임금과 수수료, 비금전적 보상 등을 의미한다. 만약 납세자가 자본을 투입한 사업자이면 근로소득은 사업 수익의 30%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이 인정된다(Sec. 911(d)(2)(B)). 이외 파트너십이나 개인회사도 납세자의 개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소

224) 서부 유럽국가와 한국과 칠레 등이 협약국으로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한다.

득만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면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당 근로자의 납세지국(tax home)²²⁵⁾이 외국이며 이 곳에서 미국 시민이 선의의 거주(bona fide residence)²²⁶⁾나 물리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²²⁷⁾. 영주권자의 경우 물리적인 거주가 요건이며 다만 조세협약으로 비차별적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국민이면 선의적 거주 요건의 적용이 허용될 수 있다.

면세가 가능한 해외 근로소득은 1) 해외 근로소득에서 납세자가 비과세 신청한 주택비용(Sec. 911(a)(2))을 제외한 금액 혹은 2) 8만달러를 365일 중 외국에 실제 거주한 기간의 비율로 곱한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주택비용 면세를 신청하면 면세되는 해외 근로소득은 8만달러와 해외소득에서 주택 면세금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다. 즉, 해외소득 면세분과 주택비용 면세분은 납세자의 총해외 근로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

해외근로소득 혹은 주택비용 면세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Form 2555를 작성하고 일반소득신고서(Form 1040)와 함께 제출한다. 해외 근로소득(또는 주택비용)을 비과세 받으려면 해외 소득세 세액공제를 비롯하여 해외소득과 관련된 손실과 비용 등의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신청할 수 없다.

2)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외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반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면세받은 해외소득이나 주택비용 등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세액공제가 절세에 더 도움이 되지만 해외소득이 국내소득보다 상당히 적고 외국세율이 높으면 일반공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한도가 있다. 즉, 납세자가 외국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25) 납세지국은 가족의 거주장소와 관계없이 정상적이거나 주된 사업장소를 뜻하며 주된 사업장소가 없으면 납세자의 주소가 납세지국이다. 그러나 납세자 주소가 미국이면 주된 사업장소가 외국일 수 없다.

226) 선의의 거주는 납세자의 의도, 여행목적 그리고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청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227) 외국 정부에 비거주 신청을 하고 소득세 면세를 받으면 선의적 거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에 330일 이상 거주할 때 물리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본다.

총과세소득에서 해외 과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미국 소득세에 곱한 금액이 된다. 일반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미국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 소득세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부동산세도 일반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자산세는 사업이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경비이어야 공제된다.

3) 조세협약

미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거주하며 소득을 창출한 미국인 등은 다양한 감면세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예에는 개인서비스 소득과 투자소득에 대한 감면세, 연부금에 대한 면세, 교육자와 학생에 대한 면세 그리고 자본세액공제가 있다.

라. 기타 면·공제

1) 주택비용 비과세

외국에서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비용의 일부가 비과세되거나 공제될 수 있다. 주택비용은 임대료, 보험료, 전기 등 공공 서비스료 그리고 주차비 등의 합리적 비용으로 총주택비용에서 기본금액(base amount)을 제외한 금액이 비과세된다. 기본금액은 연방공무원 GS 14 급여의 16%로 2003년을 기준하면 연 11,233달러 그리고 일 30.77달러이다. 고용된 납세자는 주택비용을 총소득에서 제외하고 자영업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2) 기타 공제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등도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처럼 모든 공제가 가능하지만 만약 해외소득을 총소득에서 제외하면 해외소득에 할당되어야 하는 공제나 손실을 신청할 수 없다. 한 예로 해외소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과세받으면 이사비용 중에서 면세된 해외소득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가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은 해외소득과 명백히

관련이 있는 비용에 적용되며 위자료, 자선기부금, 의료비, 주택부채 이자비용 그리고 부동산 세금 등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비거주 외국인(회사)

가. 기본원칙

비거주자의 소득은 미국 국내원천소득(US source income)으로서 실질적 연관성(effective connection) 여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우선 미국 국내 거래나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소득은 비거주 외국인²²⁸⁾이나 외국회사의 소득이라도 일부 공제를 한 후 미국인(업체)과 같은 일반세율로 누진과세된다²²⁹⁾.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미국에서 사업이나 거래를 수행하면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없는 미국 소득은 누진과세되지 않고 총소득의 30%가 일률 세율로 원천징수되거나 또는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30% 세율은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액수가 고정적이거나 확정 가능한 주기적 소득(FDAP, fixed and determinable periodic income)에 부과된다. 비거주자가 받은 사회보장 수혜금의 85%도 이러한 범주에 해당된다(Sec. 871(a)(3))

고정적이거나 확정 가능한 주기적 소득(FDAP)은 개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 배당, 이자, 연부금, 위자료, 부동산 소득, 로열티, 장학금, 상금, 커미션, 또는 파트너십이나 기금 등의 분배한 상기 부류의 소득을 의미한다(Sec. 871(a), 881). 그러나 부동산이나 개인자산의 매매로 얻은 이익이나 일반과세에서 총소득에서 배제되는 소득은 주기적 소득에서 제외된다. 이외 보험회사 수혜금, 계약 보너스, 임차인이 대신 지불한 보험료, 세금 등도 주기적 소득에 포함된다.

228) 비거주 외국인도 해당 과세연도 이후 연도에 상당한 거주요건(substantial presence)을 충족하고 31일 이상 미국에 있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Sec. 7701(b)(4)).

229) 외국 유학생이나 교환교수의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과세대상일 경우 일반과세되며(14% 원천징수) 다만 외국인 고용주로부터 받은 소득은 면세된다(Sec. 117, 871(c), 872(b), 1441(b)).

나. 미국소득과 실질적 연관성

비거주자 소득세 과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첫째,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둘째, 미국 국내 거래 혹은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이어야 한다. 우선 미국소득인지 여부는 소득 성격과 발생 장소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미국 국내사업이나 거래는 미국에서 개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단, 중개인을 통하여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내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사업활동이나 자산 활용이 소득 실현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어야 실질적 연관성이 성립한다

1) 발생지 원칙(국내 원천소득, US source income)

일반적으로 미국인이나 미국회사 그리고 미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지급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이다(income from US sources). 소득을 창출한 자산이 미국에 있거나 해당 서비스가 미국에서 제공되면 원칙적으로 이들도 미국소득이다. 또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 수수료가 지급되는 등 소득의 발생지가 불분명하면 일단 미국 소득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외 미국 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의 성격과 발생지에 관한 일련의 기술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Sec. 861).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제공된 개인서비스 등의 보수와 임금은 지급장소나 지급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다만 자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의 소득은 다르게 간주될 수도 있다. 이외 미국 국내외 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날짜 기준으로 소득을 배분하여 신고한다.

미국에서 출발하여 미국에 도착하는 운송 관련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다(Sec. 863(c)). 그러나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외국 선박이나 비행기 등 교통 관련 소득에서 상대국이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적용하면 미국도 이들 국가의 선박 등의 소득은 면세한다(Sec. 883).

이자소득의 경우 채무자의 거주지가 소득 발생지이다. 즉, 지급장소나 방식과 관계없이 미국인, 미국기업 그리고 미국에서 거래나 사업을 영위한 외국기업이 지급한 이

자는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 3년간 80% 이상의 총소득을 미국 이외 지역에서 창출한 미국기업 등이 지급한 이자, 상업은행의 외국지사 계좌에 지급한 이자 등은 예외이다. 배당소득의 경우 외국기업이 지급한 배당은 역외소득으로 비과세되지만 기업의 지난 3년간 총소득 가운데 25% 이상이 미국사업이나 거래와 실질적인 연관이 있으면 배당 가운데 일부는 과세된다.

<표 VII-1> 소득의 성격과 발생지 기준

소득의 성격	발생지 기준
임금 및 보수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
사업소득	
개인 서비스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
재고판매(매입)	판매된 장소
재고판매(매출)	분배
이자소득	지급자의 거주지
배당소득	미국 혹은 외국기업: 외국기업도 미국내 사업과 관련 있으면 예외
임대료, 부동산 매매	자산의 위치
로열티	
천연자원	자산의 위치
특허저작권	자산의 사용장소
개인자산의 매매	판매자의 납세지(예외 존재)
연금	연금소득을 창출한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
천연자원 판매	수출지에서의 공정가격으로 분배(Sec. 1.863-1(b))

자료: 「US Tax Guide for Aliens」, Pub. 519, IRS, 2004.

미국에 위치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료나 로열티는 미국 소득이며 미국에서 사용하는 무형자산의 사용료 등도 미국소득이다. 부동산 소득도 국내 자산은 미국 소득이며 미국 이외 지역에 위치한 광산, 농장, 원유매장, 목재 등도 국내에서 판매되면 일부가 과세된다. 재고는 구매장소와 관계없이 판매장소에 따라 소득 발생지가 결정되지만 미국에서 생산, 해외에서 판매한 재고는 일부를 국내 소득으로 본다.

개인자산의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판매자이면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비거주자에 의한 판매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역외지역의 소득으로 간주

된다(Sec. 865). 한 예로 기구나 기계 등 개인자산의 경우 납세지(tax home)²³⁰가 미국이면 미국 소득이다.

이외 미국이 납세지가 아니지만 미국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자산의 판매수익은 미국 소득이다. 그러나 미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하며 외국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판매는 미국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지가 미국이면 외국 사업장에서 판매된 자산의 경우 외국에서 판매수익의 10% 이하를 과세하면 미국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채고, 감가상각 자산, 무형자산 제외).

미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되는 무형 개인자산에 대한 로열티 혹은 미국 국내 금융활동으로 발생한 배당과 이자 등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foreign source income)이라도 다음의 상황에서는 미국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첫째, 관련 소득이 사실상 미국 국내 사업장의 소득으로 귀착되는 경우 둘째, 미국 사업장이 소득 창출에 실질적 요인이 된 경우, 셋째, 미국 사업장의 일반 사업활동으로 창출된 경우.

2) 실질적 연관성(effective connection)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국내 사업이나 거래를 영위하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창출한 소득과 손실은 주기적 소득이 아니면 미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소득으로 취급된다. 주기적 소득(FDAP)은 예외적으로 자산 활용이나 사업활동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실질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고 실질적 연관이 없으면 30% 원천징수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업활동을 통하여 직접 창출된 소득이 아니면 미국 사업을 위하여 사용 혹은 이를 위하여 보유한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인지를 검토한다(asset use test). 연후 미국 사업활동이 해당 소득의 실현에 실질적인 요인이었는지를 고려한다(material factor test). 이 때 해당 자산이나 소득이 미국 사업상의 장부에서 따로 기록이 되는지를 고려하지만 그 자체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Sec. 864(c)(2)).

미국에서 개인서비스를 제공한 외국인도 미국 사업이나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

230) 납세지는 가족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주된 사업 혹은 고용장소를 말한다. 주된 사업장이 없으면 가족의 거주지가 납세지이다.

되지만 90일 이내에 미국에 있고 외국기업 등에 제공한 보수가 3,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중개인이 아니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거래한 주식 혹은 증권 등의 투자거래는 실질적 연관성이 없는 사업이다.

조세기피용으로 미국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 연관성 요건은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유지하고 해당 소득이 그 사업장에 귀착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적용된다. 대상이 되는 소득은 1) 등록사업의 활동에서 받은 임대료와 로열티 2) 금융 및 유사사업으로부터 받은 이자, 배당, 양도소득 3) 미국 이외 지역의 일반적 상거래에서 판매용으로 보유한 자산, 재고 등을 미국 업소를 통하여 매매나 교환한 소득 (Sec. 864(c)(4)).

미국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부동산 투자로 소득을 얻으면 이를 실질적 연관성으로 간주하여 일반과세의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Sec. 871(d), 882(d)). 즉, 천연자원을 포함한 미국 부동산 지분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은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 897).

미국 국내회사 지분의 처분도 부동산 지분으로 처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회사 지분의 처분은 해당 회사가 소유한 미국 부동산의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신 회사 청산과 관계없이 가격이 인상된 미국 부동산 지분을 분배할 때 지분의 공정시장 가격이 조정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외국회사에 대하여 과세한다. 외국 회사 등이 파트너십이나 신탁기금 등의 지분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과 자산 등은 미국 부동산의 지분과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득으로 과세된다. 미국 부동산 지분에 투자한 외국인 등이 지분의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도록 지분을 양도받은 사람은 이익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Sec. 1445).

이외 외국인의 미국 사무소가 증권 취득에 필요한 활동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면 이러한 증권으로부터 얻은 배당 및 이자 소득 그리고 양도차익은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비과세소득

미국 국내 사업이나 거래와 연관이 없는 그러나 미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은행

이나 보험사 이자소득이면 비과세된다(일부 채권투자 이자 포함). 그리고 실질적 연관성이 없는 주기적 양도소득도 납세자가 183일 이내로 미국에 거주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등록된 유가증권 이자소득(portfolio interest)도 마찬가지로 이다.

외국 고용주가 지급한 개인서비스에 대한 보수도 다음의 경우 면제된다. 첫째,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기업이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한 보수로 미국에 90일 이내 일시 체류하는 동안 3,000달러 이상 지급된 보수, 일시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선박 등의 승무원 보수, 외국기업이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된 보수. 주택의 경우 독신은 25만 달러, 부부는 50만달러까지 판매이익이 면제된다.

라. 원천징수

1)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2001년 이후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특정 미국 소득은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된다(Notice 99-25). 그러나 외국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로 인한 소득으로 미국내 사업과 실질적 연관이 있고 대금을 받는 이들 업체의 총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W-8ECD)를 받으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미국 국내 사업이나 거래와 실질적 연관이 없는 고정적이거나 확정 가능한 주기적 소득 혹은 연간 소득(FDAP)은 외국인 등에게 지급될 경우 세금납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고 30%의 세금을 납부한다(Sec. 1441, 1442). 그러나 종업원의 임금은 미국인 소득세에 대한 일반 원천징수와 같이 누진세율 방식이 적용된다. 이외 외국 파트너에게 배분될 수 있는 실질적 연관이 있는 파트너십 소득(최고세율로 원천징수), 미국 부동산 지분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10%) 그리고 개인 지주회사로 분류될 수 있는 주식회사 소득은 원천징수된다.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는 원천징수 대리인(withholding agent)에게 있는데 단, 외국인이 자격이 있는 대리인이나 미국 지점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책임지거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으면 대리인이 원천징수를 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은 조세협약에서 따로 언급한 경우와 개인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를 제외하면 30%가 적용된다. 단, 장학금 등에 대해서는 14%가 적용된다.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임금과 사회보장세 그리고 특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원천징수를 한 대리인은 매년 Form 1042를 작성,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2) 30% 원천징수 대상 소득

전술한 대로 미국 사업이나 거래와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미국에서 발생한 고정적인 또는 확정 가능한 주기적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원천징수된다(Sec. 871, 881). 반면 실질적 연관성이 있으면 일반과세된다. 이외 목재나 광산의 처분 혹은 특허, 저작권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의 매매나 교환에 의한 이익도 원천징수된다.

비과세되는 비거주자의 소득은 물론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미국에서의 도박으로 인한 비사업용 소득도 마찬가지이다. 할인 채권(OID)의 매매나 이자 지급은 30%가 원천징수되는데 이 때 할인금액이 고려될 수 있다(Sec. 871(a)). 유가증권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portfolio interest)은 외국인에게만 판매되고 외국에서만 이자가 지급되는 등록되지 않은 채권일 경우 30%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고 등록된 채권도 외국인이 수혜자임이 증명되면 원천징수되지 않는다(Sec. 871(h)). 한편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없는 은행 예금의 이자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Sec. 871(i)).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배당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30%의 지점 이윤세(branch profit tax)를 법인세 이외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Sec. 884(a)). 배당금에 상당한 금액(dividend equivalent amount)이란 외국 지점이 미국 자회사이었다면 배당되었을 금액으로 외국기업의 미국 사업 관련 세후 소득으로 과세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업에 재투자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일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외국과의 조세협약을 이유로 지점 이윤세에서 면제될 수 없다(Sec. 884(e)).

양도소득의 경우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이 있으면 미국 소득으로 일반과세된다. 그러나 실질적 연관이 없는 주기적 양도소득은 납세자가 183일 이내로 미국에 거주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반대로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실질적 연관이 없는 양도소

득은 30% 원천징수되거나 조세협약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다(Sec. 871(a)(2)). 외국 기업 양도소득도 실질적 연관성이 있으면 일반 과세되지만 고정적이거나 확정 가능한 주기적 소득이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Sec. 881, 882). 광산 등의 사용료 혹은 임대료 그리고 목재나 석탄 등의 판매로 얻은 이익은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간주할 수 있다.

<표 VII-2> 원천징수세율

소득의 성격	원천징수 세율
일반 원천징수 대상 소득	30%
미국 부동산 지분의 처분에 의한 소득	10%
외국 파트너에 배분된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소득(상장된 파트너십)	38.6%
파트너십의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소득중 외국 파트너 지분	38.6%
외국인 종업원 임금	일반 누진과세
개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부금 지급	일반 누진과세
외국 민간기금의 총 투자소득	4%
과세대상 미국 장학금과 지원금	14%

자료: 「US Tax Guide for Aliens」, Pub. 519, IRS, 2004.

마. 신고방식과 공제

비거주 외국인²³¹⁾은 Form 1040NR로 그리고 외국회사는 Form 1120F로 일반적인 납세신고를 한다. 그리고 임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외국인과 미국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는 과세연도의 종료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적공제(2002년 3,000달러)는 본인만 가능하며 다만 조세협약으로 캐나다나 멕시코 주민은 배우자 그리고 한국과 일본 주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와 자녀

231) 당해 과세연도에 183일 이내 동안만 미국에 있었고 외국을 세금 납세장소(tax home)로 하며 미국보다 납세지인 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비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

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도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세공제의 경우 실질적 연관성이 있으면 거주 외국인과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조정된 소득이 137,300달러보다 많으면 공제가 제한된다. 이외 개인납세자는 미국 자산에 대한 절도와 손상 공제도 가능하다(Sec. 873, 882). 한편 세액공제의 경우 미국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이 있고 미국 이외 지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며 자녀 관리비, 퇴직연금 등도 세액공제된다.

전술한 대로 미국에서 사업이나 거래를 하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소득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에서의 사업으로 발생한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비는 미국 사업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공제된다. 그러나 자선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연관성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또한 미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금신고시 세액공제된다. 이러한 외국 소득은 전술한 바 조세기피 가능성이 있는 배당, 임대, 이자 소득 등이다(Sec. 906). 그러나 외국 판매회사(FSC)의 해외 거래소득과 관련된 소득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4.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제도

이전가격은 관련자(related parties) 사이의 거래에 대한 평가체계를 의미한다. 잘못된 이전가격의 산정은 부정확한 이윤 산정, 국가간의 인위적 소득 전가 그리고 조세기피를 유발할 수 있다. 이전가격은 특히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국세청은 부정확한 과세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자들의 납세 의무액을 재조정할 수 있다. 미국과 외국 자회사를 포함한 관련자는 원칙적으로 독립자간의 거래(arm's length basis)에 기초하여 가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Sec. 482). 특히 국세청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에 따른 최선방식 규정(best method rule)의 준수를 추천하고 있으며 독립가격, 재판매 가격 또는 이윤 분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최선 방식 아래서는 독립거래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비교, 자료 검토 그리고 가격 조정의 정당성과 방식을 고려한다.

이 밖에도 이전가격에 대하여 비교이윤 방식(comparable profit method)이 적용될 수 있다. 비교이윤 방식에서는 특정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요소만을 고려하지 않고 이윤이 발생하는 전체적인 구조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산업의 유사한 독립 기업과 신고된 해당기업의 이윤을 비교하며 이 때 이윤의 지표로 영업마진, 영업비용 대비 총이윤(Berry ratio) 그리고 운영자산이나 자본에 대한 수익을 이용한다.

이전가격 규정은 특히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엄격히 적용되며 규정에 따라 이전가격이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포괄적 자료의 비치의 의무화하고 규정 위반시 상당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사전에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조세협약에서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자간의 조정에 대한 규정을 제공한다.

5.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과세제도

주식회사의 경우 배당은 (이중)과세되는 반면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로 인하여 부채를 이용한 자금 조달을 선호할 수 있다. 또한 배당과 이자소득이 다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거나 면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국제간의 거래에서는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본이 아닌 부채를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숨겨진 자본화(thin capitalization)를 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부채비율이 존재하면 부채에 대한 이자가 자본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독립된 제3자가 과연 같은 조건의 부채를 대여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도한 부채에 해당하는 이자를 채무자의 과세대상 이익으로 간주한다(arm's length approach). 물론 이러한 기준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여타 사실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부채라고 지칭된 채무가 부채보다는 자본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경우 국세청이 이를 주식으로 재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비용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자 및 원금 지급은 관련자(related parties)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다(Sec. 385). 특히 사내에 유보된 이윤의 한도 내에서 이자비용이 배당으로 취급되고 추가 비용은 자본의 반환과 양도소득으로 처리된다.

이 밖에도 지배받는 미국회사(controlled corporation)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외국의 관련자가 제공 혹은 보장한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공제가 제한된다. 특히 이자를 지급하는 미국 회사의 부채-자본비율이 1.5:1을 초과하면 '과도한 이자비용'은 현재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연도로 이연되어 아래 50% 요건에서 공제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그러나 그 이하의 부채비율에서는 현재 공제가 가능하다. 과도한 이자비용은 대략 조정된 과세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이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과소자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형식보다는 각각의 상황과 사실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substance over form). 기존 판례에 의하면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칭, 만기기간의 유무, 대여 조건, 이자 지급자금의 성격, 채권자의 경영 참여, 관련자들의 의도, 부채-자본비율, 채권자와 주주의 이해관계, 제3자로부터의 주식회사 부채확보 능력 등을 고려한다. 이 가운데 부채-자본비율의 경우 국세청이 일률적인 지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3~4:1의 비율이 용납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6. 국제조세협약

가. 개요

전술한 대로 외국업체나 외국인인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반 과세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주기적 소득에 대하여 30% 원천징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이중과세와 조세 기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과 국제조세 협약을 맺은 국가의 경우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세될 수 있다(Sec. 6114). 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는 조세협약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첫째, 상대방 국가가 해당 외국인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소득이고 둘째, 미국 업체 등이 외국인에게 배분한 소득 항목에 대하여 외국이 과세를 하지 않고 셋째, 파트너십을 통하여 창출된 소득 항목에 대하여 조세협약의 언급이 없으면 파트너십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된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Sec. 894(c)).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업체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과 실질적 연관

이 있는 소득은 미국업체와 마찬가지로 순이익에 대하여 일반과세된다. 하지만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국업체가 미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유지하여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고정사업장에 기인하는 소득만이 과세된다.

조세협약상의 혜택은 대개 상호적이므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받는 감면 혜택은 조약 체결국에서도 미국 국민에 대하여 적용된다. 조세협약은 또한 협약국 국민에 대한 비차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1996년 미국 모델협약²³²⁾

1981년 협약을 개정한 1996년 미국 모델 조세협약은 주로 미국이 외국과 조세협약을 맺을 때 표준모형으로 사용된다. 미국 모델협약은 OECD 모델협약과 유사하지만 이를 대체하지는 않으며 규정상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하다.

OECD와 미국 모델협약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협약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의 국내법에 따라 납세자가 향유하는 혜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1조, preservation clause). 2) 지방정부의 조세는 조세협약에서 제외된다(2조). 3) 거주지국 국내법에는 없어도 부동산 소득의 경우 고정사업장에서의 순소득에 기초하여 과세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납세자가 갖는다(6조). 4) 사업체가 유형자산의 임대나 개인서비스 제공으로 창출한 소득은 사업이윤으로 간주하고 국가간 운송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체의 거주지국이 과세한다(7, 8조). 5)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감면 요건을 25%의 주식 지분에서 10%로 인하한다(10조).

이 밖에 6) 이자 소득은 거주지국만이 과세하며 관련자나 채권자가 연루된 조건부 이자소득은 발생지국의 협약상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11조). 7) 개인 혹은 파트너십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발생지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기인하는 부분의 소득으로 한정된다(14조). 8) 상대국 국민의 세부담이 더 많지 않은 이상 같은 상황에 있는 상대국 국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세법상 대우가 반드시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24조). 9) 은행기밀법 등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료 등의 정보교환이 보장되어야 하고 상대국 납세

232)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ation Convention of September 20, 1996

자의 장부 조사나 면접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26조).

다. 조세협약 혜택의 적용

국제조세 협약에 의한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혹은 단체(원천징수 대리인)에게 감면세 자격에 대한 정보를 담은 W-8BEN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 기업의 경우 일정 비율의 소유주가 미국이나 조약 체결국 국민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이외 자영업자는 Form 8233을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세금신고에서 감면세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Form 8833을 동봉하여야 한다. 만약 Form 8833을 작성하지 않고 혜택을 받으면 개인의 경우 1,000달러, 주식회사는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서 제공한 개인서비스로 인한 보수는 일부 요건이 충족되면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고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표 VII-3> 참조). 한편 자영업자와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 여부에 따라 이러한 감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라도 해당 외국인이 고정사업장을 미국에 유지하고 있는지(자영업자의 경우) 혹은 미국에서 얼마 동안 체류하였는가에 따라 감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요건은 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의 경우 미국에서 183일 이내로 체류하거나 고정사업장을 유지하면 면세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자영업자의 경우 서비스 계약 상대자에 대한 제약이 일반적으로 없지만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 고용회사가 대개 외국업체이어야 면세가 가능하다. 캐나다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주가 미국회사라도 면세된다. 세 번째로 면세금액은 대부분 제약이 없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한도가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3,000달러의 보수만이 면세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또한 종업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인 고용주(외국업체)가 미국에 유지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해당 임금을 부담하지 않아야 감면세가 가능하다. 이 밖에 연예인 등은 일반적으로 감면 소득에 한도가 있으며 교육 분야도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 예로 외국인 교수가 미국에서 2~3년간 연구나 강의를 하고 보수를 받으면 소득세 면세가

가능하다.

<표 VII-3> 미국에서 제공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미국 소득세와 원천징수 면세 요건

(단위: %)

	자영업자			종업원		
	최장 미국거주	계약/ 지급인	최대 면세액	최장 미국거주	고용주	최대면세 액
호주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오스트리아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바바도스	89일	외국인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5,000달러
벨기에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2일	벨기에인	제한없음
캐나다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제한없음	1만달러
중국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사이프러스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2일	외국인	제한없음
체코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덴마크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이집트	89일	외국인	제한 없음	89일	이집트인	제한없음
에스토니아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핀란드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프랑스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독일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그리스	183일	그리스인	제한 없음	183일	그리스인	제한없음
헝가리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아이슬랜드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2일	아이슬랜드인	제한없음
인도	89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인도네시아	119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19일	외국인	제한없음
아일랜드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이스라엘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2일	이스라엘인	제한없음
이탈리아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자마이카	89일	외국인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5,000달러
일본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일본인	제한없음
카자스탄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한국	182일	제한 없음	3,000달러	182일	한국인	3,000달러
라트비아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리투아니아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룩셈부르크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멕시코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모로코	182일	제한 없음	5,000달러	182일	모로코인	제한없음

<표 VII-3>의 계속

(단위: %)

	자영업자			종업원		
	최장 미국거주	계약/ 지급인	최대 면세액	최장 미국거주	고용주	최대면세액
네덜란드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뉴질랜드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노르웨이	182일	거주인	제한 없음	182일	노르웨이인	제한없음
파키스탄	183일	파키스탄인	제한 없음	183일	파키스탄인	제한없음
필리핀	89일	외국인	제한 없음	89일	필리핀인	제한없음
폴란드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2일	외국인	제한없음
포르투갈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루마니아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2일	로마니아인	제한없음
러시아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슬로바키아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슬로베니아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남아공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스페인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스웨덴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스위스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태국	89일	미국인	10,000달러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토바고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튀니시아	183일	미국인	7,000달러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터키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우크라이나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영국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베네주엘라	제한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없음

주: 국가별로 상기 면세 요건에 추가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자료: 「US Tax Treaties」, Pub 901, IRS.

우리나라 거주민이 미국 대학 등에서 일시적으로 공부, 연구 또는 전문훈련을 수행하면서 받은 지원금, 상금 등은 최고 5년간 면세되고 매년 개인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2,000달러도 5년간 면세된다. 이외 우리나라 업체의 직원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으로부터 직업훈련 등을 받거나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얻은 소득은 5,000달러까지 면세된다(미국 정부가 소개한 프로그램은 10,000달러까지 면세).

두 번째로 <표 VII-4>은 노동 소득을 제외한 여타 소득에 있어서 조세협약상의 감면세율을 나라별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득은 3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조세협약으로 인하여 감면된 세금을 납부한다.

우리나라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대개 12%의 감면세율을 적용받고 산업체 로열티는 15%, 배당과 저작권은 10% 그리고 자본 양도이익과 연부금은 0%를 적용받는다. 이에 비하면 일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10% 그리고 산업체 로열티로 10%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많은 유럽 국가의 경우 배당과 부동산 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0%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 VII-4> 개인서비스를 제외한 소득의 조세협약 (원천징수) 세율(2003)

(단위: %)

	일반이 자소득	부동산 부채 이자	CFC에 지급한 이자	배당		자본양 도이익	산업체 로열티	저작권		부동산 소득	연부금
				미국 주식회 사지급	직접 배당 비율			영화, TV	기타		
호주	10	10	10	15	15	30	10	10	10	30	0
오스트리아	0	0	0	15	5	0	0	10	0	30	0
바바도스	5	5	5	15	5	0	5	5	5	30	0
벨기에	15	15	15	15	50	0	0	0	0	30	0
캐나다	10	10	10	15	5	30	0	10	0	30	15
중국	10	10	10	10	10	30	10	10	10	30	0
사이프러스	10	10	10	15	5	0	0	0	0	30	0
체코	0	0	0	15	5	0	10	0	0	30	0
덴마크	0	0	0	15	5	0	0	0	0	30	30
이집트	15	30	15	15	5	0	0	0	15	30	0
에스토니아	10	10	10	15	5	0	5	10	10	30	0
핀란드	0	0	0	15	5	0	5	0	0	30	0
프랑스	0	0	0	15	5	0	5	0	0	30	0
독일	0	0	0	15	5	0	0	0	0	30	0
그리스	0	0	30	30	30	30	0	30	0	30	0
헝가리	0	0	0	15	5	0	0	0	0	30	0
아이슬랜드	0	0	0	15	5	0	0	30	0	30	0
인도	15	15	15	25	15	30	10	15	15	30	0
인도네시아	10	10	10	15	15	10	10	10	10	30	15
아일랜드	0	0	0	15	5	0		0	0	30	0
이스라엘	17½	17½	17½	25	12½	0	15	10	10	30	0
이탈리아	15	15	15	15	5	0	10	8	5	30	0
자마이카	12½	12½	12½	15	10	0	10	10	10	30	0
일본	10	10	10	15	10	0	10	10	10	30	0
카자스탄	10	10	10	15	5	0	10	10	10	30	0
한국	12	12	12	15	10	0	15	10	10	30	0
라트비아	10	10	10	15	5	0	5	10	10	30	0
리투아니아	10	10	10	15	5	0	5	10	10	30	0
룩셈부르크	0	0	0	15	5	0	0	0	0	30	0
멕시코	15	15	15	10	5	0	10	10	10	30	0

<표 VII-4>의 계속

(단위: %)

	일반이 자소득	부동산 부채 이자	CFC에 지급한 이자	배당		자본양 도이익	산업체 로열티	로열티		부동산 소득	연부금
				미국 주식회 사지급	직접배 당비율			영화, TV	기타		
모로코	15	15	15	15	10	0	10	10	10	30	0
네덜란드	0	0	0	15	5	0	0	0	0	30	0
뉴질랜드	10	10	10	15	15	0	10	10	10	30	0
노르웨이	0	0	0	15	15	0	0	0	0	30	0
파키스탄	30	30	30	30	15	30	0	30	0	30	0
필리핀	15	15	15	25	20	0	15	15	15	30	30
폴란드	0	0	0	15	5	0	10	10	10	30	30
포르투갈	10	10	10	15	5	0	10	10	10	30	0
루마니아	10	10	10	10	10	0	15	10	10	30	0
러시아	0	0	0	10	5	0	0	0	0	30	0
슬로바키아	0	0	0	15	5	0	10	0	0	30	0
슬로베니아	5	5	5	15	5	0	5	5	5	30	0
남아공	0	0	0	15	5	0	0	0	0	30	15
스페인	10	10	10	15	10	0	8	8	5	30	0
스웨덴	0	0	0	15	5	0	0	0	0	30	0
스위스	0	0	0	15	5	0	0	0	0	30	0
태국	15	15	15	15	10	30	8	5	15	30	0
토바고	30	30	30	30	30	30	15	30	0	30	0
튀니시아	15	15	15	20	14	0	10	15	15	30	0
터키	15	15	15	20	15	0	5	10	10	30	0
우크라이나	0	0	0	15	5	0	10	10	10	30	0
영국	0	0	0	15	5	30	0	0	0	30	0
베네주엘라	10	10	10	15	5	0	5	10	10	30	0
기타 국가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주: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이 없는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은행 등의 금융기관 계좌와 일부 보험회사
가 소장한 계좌로부터 지급된 이자소득은 면세됨.

자료: 「US Tax Treaties」, Pub 901, IRS.

7. 기타

가. 외국 지배기업(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지급될 때 납세자의 거주지국이 과세를 한다. 따라서 세금이 낮은 국가에 있는 제3의 개체가 소득을 지급받으면 추후에 소득이 납세자는 세금을 이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외국에서 발생한 이윤이 배당되지 않았어도 이에 대한 세금을 국내 주주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CFC rules)을 도입한 바 있다. 또한 외국업체에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외국소득에 감·면세를 할 때 이 규정이 필요하다.

미국 주주가 30일 이상 외국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해당 주주들은 이러한 지배기업의 배당뿐만 아니라 내부 유보자금에 대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미국 주주는 투표권이 있는 해당 외국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실질적으로(constructively) 소유한 미국인과 미국 기업을 말한다. 이외 외국 지배기업(CFC)은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미국인 등이 투표권이 있는 지분이나 기업가치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를 의미한다(Sec. 951, 957, 958).

미국 주주는 다음의 항목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subpart F income(Sec. 951(a)(1)(A)) 2) Sec. 956상의 미국자산에 투자한 소득(Sec. 951(a)(1)(B)). 단 외국 판매회사(FSC)의 수출과 관련된 소득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외 외국 주식회사의 투표권 주식이나 주식 가액의 10%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는 매년 국세청에 자료 신고(Form 5471)를 하여야 한다(Sec. 6046).

외국 지배기업의 subpart F 소득은 다음의 소득을 의미한다. 1) Sec. 953의 보험소득 2) Sec. 954의 회사 소득(foreign base company income) 3) 외국 지배기업의 소득(미국 총소득에 포함된 소득은 제외)을 국제 불매비율(international boycott factor)로 곱한 금액(Sec. 999) 4) 외국 공무원에게 지급된 불법 뇌물(Foreign Corrupt Act of 1977). 특히 subpart F 소득은 Sec. 954에 따라 외국 개인회사 소득(주로 배당 등 투자 소득, passive income), 제3국에서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한 소득, 미국자산에 투자한 소득 등을 포함한다. 개별 미국 주주는 외국 지배기업이 배당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같은 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외국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Sec. 951(d)).

나. 해외판매 주식회사(Foreign Sales Corporation)

외국에 설립된 미국기업의 해외거래 소득(foreign trade income) 중 일부는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Sec. 921~927).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2000년 WTO의 보조금 협정(수출지원 금지)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아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미국 의회는 일부 해외 거래소득에 해당하는 역외소득을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Extraterritorial income exclusion)을 신설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위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총소득에서 배제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득은 배제될 경우 외국 거래소득의 15%, 외국 거래 총수입의 1.2% 그리고 외국 판매 및 임대수입의 30%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금액을 의미한다(Sec. 114).

한편 국제거래를 하는 중소기업(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의 경우 법인세가 면세되고 주주 차원에서는 과세를 연기받을 수 있다. 즉, 자격이 있는 수출품 대금 중 1천만달러나 그 이하의 금액에 기인하는 주주의 소득은 과세가 이연될 수 있는데 다만 연기된 세금의 이자는 일반신고시 납부하여야 한다(Sec. 995(f)).

외국판매회사(FSC)는 외국에 설립된 회사로 주주가 25명 이하이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이들 기업의 외국 거래소득은 면세된다. 해외 거래소득은 외국에서의 거래 수입에 기인하는 총소득을 의미한다(Sec. 923). 해외거래 수입에는 수출품²³³⁾ 매매나 처분,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한 수출품 임대 그리고 해외에서의 엔지니어링과 건축 서비스 등이 있다.

이외 해외거래 수입으로 간주되려면 회사 경영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일정 부분의 거래 관측과정이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이러한 면세가 가능하다(Sec. 924(d))²³⁴⁾. 또한 외국판매회사(FSC)가 외국에서 거래의 판매과정에 참여하고 해외에서 지출한 직

233) 수출품이란 외국판매회사가 아닌 제3자가 미국에서 생산하여 수출되고 수입된 부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이어야 한다(Sec. 927(a)(1)).

234) 해외거래 수입이 5백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해외판매회사(small FSC)에게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 안된다.

접비용의 50%(85%) 이상을 외국 판매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foreign economic process rules).

다. 외국 개인지주 기업(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외국 개인지주 기업(FPHC)의 소득은 배분된 소득뿐만 아니라 배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된다(Sec. 551). 배분되지 않은 소득은 미국 국민과 국내 기업 등의 차원에서 마치 주주들에게 배분된 소득인 것처럼 간주되어 과세된다. 외국 기업은 기업 총소득의 60% 이상이 배당, 이자, 로열티, 연금, 임대료, 주식 양도이익, 개인서비스 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기업 주식이나 주식 가액의 50% 이상을 5명 이하의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개인지주회사(FPHC)로 간주된다(Sec. 552, 553). 외국 개인지주회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나 그 관리자는 매년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Form 5471).

8.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미국인과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거주하며 창출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미국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외국을 납세지국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8만달러 이하의 해외소득과 주택비용은 비과세될 수 있다. 또한 국제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도 감면이 가능하다. 이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세액공제도 허용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즉,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창출한 소득은 다음의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 국내거래나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소득은 미국인의 소득처럼 일반 과세된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본인 이외 인적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표준공제도 안되며 비용공제는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 허용된다.

이외 고정적인 주기적 소득은 30%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단,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협정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투자소득 그리고 장학금 등이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개인자산의 매매로 얻은 이익은 일반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인이나 미국회사가 지급한 보수나 대금 등은 미국소득이며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이 미국에 있거나 서비스가 미국에서 제공되면 이로 인한 소득은 미국 소득이다. 이자소득은 지급자의 거주지가 개인 자산은 판매자의 거주지가 소득 발생지이다.

미국과 외국 자회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 거래는 독립거래에 기초하여 이전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른 최선방식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이외 비교이윤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자금 조달을 할 때 해당 채권이 주식으로 재분류되고 이에 따라 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관련자에 대한 이자지급도 배당 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에서 과소자본의 정의는 일정한 규정이 없고 각각의 상황과 사실에 따라 판정되며 일반적으로 3~4:1 이하의 부채-자본비율은 용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납세자들이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자회사(CFC)나 개인지주회사(FPHC)가 배당을 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 주주가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 판매 주식회사의 경우 해외거래 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고 주주의 소득도 납세가 이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내·외국인은 거주국가 소득세로부터 감·면세를 받을 수 있다. 감면 내용은 개별 협약에 따라 다른데 대개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나 고정사업장을 유지한 기간이 183일 이내이면 근로소득세에서 면제가 가능하다. 단, 고용주나 면세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투자소득에 있어서도 30% 원천징수 세율이 아닌 감면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외 국제조세협약에서는 이중과세와 조세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환과 조사권 등의 규정이 있다.

VIII. 결론

1. 미국의 조세체계

미국은 연방주의에 기초한 국가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된 과세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방정부는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와 유산 및 증여세 그리고 일부 제한된 소비세를 과세하며 지방정부는 소비세(판매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기타 잡다한 항목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 결과 미국 조세체계는 상당히 복잡다기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2002년 당시 총정부수입은 국내총생산의 27.5%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개인소득세 관련 비중이 약 38.7%, 소비세 등 간접 상업세가 27.9%, 사회보장세가 26% 그리고 법인세는 7.4%에 이른다. 한편 연방정부 내국세 징수액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5%이며 자영업자 고용세를 합치면 그 비중은 85.6%로 늘어난다. 지방정부의 경우 판매세 세수 비중은 35.5%이고 재산세와 개인소득세 비중은 각각 31.4%, 21.8%에 달한다. 개인소득세는 특히 개인소득과 함께 C 주식회사를 제외한 파트너십, 개인회사 소유주와 그리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미국은 2002년 고급 자동차에 대한 과세를 마지막으로 1993년 당시 대부분의 사치세를 폐지하였고 유산세와 세대 생략세는 과표와 세율을 점차 줄어가면서 2010년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35%로 일치시키고 증여세 세율도 장기적으로는 35%로 인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 세금신고는 자산가치의 평가가 필요한 재산세를 제외하면 자발적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신고납부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납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외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체도 각종 자료와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신고를 늦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잘못 신고하는 데 대하여 가산세와 벌금을 엄중하게 부과함으로써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

그 대신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면담내용을 녹취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2. 세목별 특성

미국에서 소득 혹은 유산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에서 명시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불법소득까지도 신고되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불로소득도 부모의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성 경비는 제한 없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가 가능한 투자성 경비와 일부 개인경비는 상세공제에서 소득의 일부 등으로 제한된다. 단, 선물은 25달러 이내에서 공제되며 접대비는 50%만 공제 가능한데 75달러 이상의 접대비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개인경비 공제나 세액공제는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허용되는데 특히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각종 공제로 고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한세(AMT)가 소득세나 법인세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자본투자에 의한 이익은 양도소득세로 8~20%로 저율 과세된다. 이 밖에 장기 보유나 저소득층의 양도 이익은 우대를 받는다. 나아가 10~35%로 과세되는 소득세 및 과세구간은 물가와 연동되어 변한다.

법인세가 적용되는 사업체는 C 주식회사로서 이들은 법인 소득에 따라 15~35%로 과세된다. 이 경우 배당소득은 주주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과세되어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회사에 불필요한 자금을 유보하거나 회사 설립을 통하여 투자소득을 은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초과유보세나 개인지주회사세(15%)가 있고 외국 자회사 등의 배당하지 않은 소득을 주주 차원에서 과세할 수도 있다. 이 밖에 개인 서비스 회사는 35%로 일률 과세된다.

주식회사 공제도 지역개발, 고용, 특정 산업 배려 혹은 탁아소 건립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데 1986년 조세개혁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는 거의 폐지되고 감가상각 공제도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또한 양도소득은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되며 개인과 달리 일반소득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소득 신고에서 별도의 조항이 적용되기도 한다. 계열그룹에 속한 회사는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기업의 매수, 합병, 분할 그리고 청산시 과세 여부는 자산 구입과 주식 구입 그리고 대금 지급방식 등 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르게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양도 자산의 과세상 속성은 그대로 이전되지만 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매수는 금지된다.

소비세는 주로 지방정부가 판매세의 형태로 과세하지만 연방정부도 일부 재화나 서비스 혹은 시설 이용에 대하여 과세한다. 오존과피 화학품, 석탄 그리고 유류 등에 대한 연방소비세는 기금성 목적세로 활용되기도 한다. 지방정부 판매세는 일반 재화 및 일부 서비스에 부과되는 일반판매세와 주류, 담배 그리고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판매세 그리고 지방 특성에 따라 유흥세, 경마세, 숙박세, 보험료세, 공연세, 도박세, 도로 사용세, 취득 및 등록세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판매세는 대개 소매단계에서 일률 과세되며 따라서 재판매용, 부품용 그리고 사업용 기계설비는 면세된다. 소비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편 등의 역외거래로서 일반적 원칙은 실질적 연관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주정부 차원의 일반판매세 세율은 주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보통 5~6%로 소매가격에 부과되며 가정용 식품과 의약품은 면세되고 의류 등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비과세되기도 한다(tax holidays).

지방소비세는 조세경쟁과 주마다 상이한 과세행정이 문제인데 최근 40개 주가 판매세 간소화를 위한 협약(SSTP)을 체결하여 조세법의 균일한 정의, 세율 간소화, 표준화된 과세행정과 균일한 원천지 규칙에 관한 강제성이 있는 합의 도출에 노력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양도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생전에는 증여세, 사후에는 유산세가 부과되고 자녀 세대를 뛰어 넘고 손자녀에게 제공되는 유산 등에는 세대생략세가 부과된다. 이 가운데 유산세와 세대생략세는 2010년 1년간 일시적으로 폐지되고 2011년에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 원래 제도로 복귀할 예정이다.

증여세와 유산세는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생 동안 100만달러(2003년 기준)를 세금납부 없이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증여받는 사람 1인당 연간 11,000달러까지 추가로 면세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산신탁기금 등을 이용, 중간 세대에게 직접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경우 세대생략세가 부과되며 유산과 유산 신탁

기금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으로 자산평가 방식에 따라 재산세가 변한다. 따라서 유사 재산은 비슷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평가의 균일성 원칙이 중요하며 상위 정부가 평가과정을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한다. 평가 결과는 자산의 소유주에게 통보되며 소유주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평가방식은 소득, 비용 그리고 유사 매매 비교방식이 있는데 자가주택은 유사매매 방식이 그리고 임대나 상업용 부동산에는 소득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거주용 혹은 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세율과 과표를 달리하기도 한다. 특히 평가액의 일부만을 과세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과세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평가액 전부를 과세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자가주택 소유주의 경우 소득에 비하여 재산세가 과도하면 재산세 일부를 경감해주고 임차인에게도 재산세의 전가를 고려하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재산세를 환급해 준다.

미국은 미국인 등의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일정 요건이 되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자산의 위치, 서비스 제공 장소 혹은 지급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거주지에 따라 변한다.

미국 국내 거래나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소득은 개인소득세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과세되는데 이 때 인적공제는 제한되고 표준공제의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고정적인 주기적 소득(주로 투자소득)은 30%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다만 국제조세 협약이 적용되는 국가의 거주자는 협약 내용에 따라 감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이전가격은 독립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최선의 방식을 따르고 과소 자본의 경우 채권 관계가 주식 관계로 재분류되어 이자비용 공제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외국 자회사(CFC)나 개인지주회사(FPHC)를 이용한 조세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업체의 배당되지 않은 소득도 과세될 수 있다.

3. 중요 시사점

미국 조세제도의 근간은 자발적 신고와 성실 납부에 있다. 세금납부는 미국 국민으로서 성실한 법 준수가 엄중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며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당위성 이외에도 미국 정부가 공평하고도 철저한 과세행정을 유지해온 성과에 기인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예외없이 과세하는 원칙 아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즉,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 신고제, 거래 정보 신고제(information return), 포상금 제도, 엄격한 법집행 등을 추진함으로써 과세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며 탈루가 결국에는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성공적으로 정착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성실납부 정신의 안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합리적 조세정책의 수립이다. 소득세에서의 다양한 공면제의 폐지,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실질적 폐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의 동일화, 지방정부 소비세 징수의 협력체계 마련 움직임(SSTP), 재산평가의 투명화, 과세항목의 물가 연동화, 목적세의 지양, S 주식회사의 도입 등 미국에서의 합리적인 조세체계에 대한 꾸준한 노력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성실 납부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도 연방제 체제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간의 소비세 과세행정에 있어서 다양한 협력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세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세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유산세와 증여세 그리고 세대생략세가 서로 연계되어 관리됨으로써 상속 관련 세금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유산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자산의 평가는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외 미국에서는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과세의 투명성을 위하여 세율을 낮추는 대신 시장가격에 따른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임차인에 대한 재산세 전가의 보전 등도 우리나라 정책에 참고가 될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부의 재분배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의 이러한 재산 관련 조세제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 Barry Johnson and Jacob Mikow, 「Federal Estate Tax Returns, 1998-2000」, pp. 133~186,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Pub. 1136, IRS, Spring 2002.
- Brian Francis, 「Federal Excise Taxes, Including the Slow Death of Expired Taxes」, 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Pub. 1136, Spring, 2000.
- _____, 「Telephone Excise Tax」, 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Pub. 1136, Summer, 1999.
- CCH, 「2002 U.S. Master Sales and Use tax Guide」, Fred Conklin eds, CCH Incorporated, Chicago, 2002.
- _____, 「2002 CCH Federal Taxation Basic Principle」, Fred Conklin Ephraim P Smith eds., CCH Incorporated, Chicago, 2001.
- _____, 「U.S. Master Excise tax Guide」, K. Heslop and D. Wagner eds, 3rd edition, CCH Incorporated, Chicago, 2002.
-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USA, 2002.
- Faith Russel, *Individual Income Tax Provision in the States*, State of Wisconsin, Legislative Fiscal Bureau, 2001.
- Financial Management Service, 「Annual Report to Congress: US Government Debt Collection Activities of Federal Agencies」, Department of Treasury, 1999.
- IRS, 「2002 1040 Instructions」, 2003(www.irs.gov).
- _____, 「Business Expenses」, Publication 535, 2003.
- _____, 「Bankruptcy Tax Guide」, Publication 908, 2003.
- _____, 「Certification for reduced Rates in Tax Treaty Countries」, Publication 686, 2003.
- _____, 「Corporations, For use in preparing 2003 Returns」, Publication 542, 2003.

- _____, 「Circular E, Employer's Tax Guide」, Publication 15, 2003.
- _____, 「Examination of returns, Appeal Rights and Claims for Refund」, Publication 556, 2002.
- _____, 「Excise Taxes for 2003」, Publication 510, 2003.
- _____, 「Filing Information Returns Electronically」, Publication 3609, 2003.
- _____,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Publication 514, 2003.
- _____, 「Highlights of 2002 Tax Changes」, Publication 553, 2003.
- _____, 「Instruction for Forms 1120 and 1120-AS」, 2003.
- _____, 「Instruction for Forms 8615, Tax for Children Under Age 14 With Investment Income of More Than \$1,500」, 2003.
- _____, 「Introduction to Estate and Gift Taxes」, Publication 950, 2003.
- _____, 「Partnerships, For use in preparing 2003 Returns」, Publication 541, 2003.
- _____, 「Self-Employment Tax」, Publication 533, 2003.
- _____, 「Starting a Business and Keeping Records」, Publication 583, 2003.
- _____, 「Taxable and Nontaxable Income」, Publication 525, 2003.
- _____, 「Tax Guide for Small Business」, Publication 334, 2003.
- _____, 「Tax Rules for Children and Dependents」, Publication 929, 2003.
- _____,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es」, Publication 505, 2003.
- _____, 「The Examination process」, Publication 3498, 2003.
- _____, 「The IRS Collection Process」, Publication 594, 2003.
- _____, 「Understanding Federal Tax Deposit, Resource Guide」, Miemo, 2003.
- _____, 「US Tax Treaties」, Publication 901, 2003.
- _____, 「Withholding of Tax on Nonresident Aliens and Foreign Entities」, Publication 515, 2003.
- _____, 「Your Federal Income Tax, For Individual」, Publication 17, 2003.
- _____, 「Your Rights as a Taxpayer」, Publication 1, 2000.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Property Assessment Valuation」, 2nd Edition, Chicago, 1996.

- Jerome R. Hellerstein and Water Hellerstein, *State and Local Taxation Cases and Materials*, WestGroup, 2001.
- Joel Slemrod and Jon Bakija, *Taxing Ourselves: a Citizen's Guide to the Greatest Debate over Tax Reform*, MIT, 1996.
- Joseph A. Pechman, *Federal Tax Policy*, 5th Edition, Brookings Institute, Washington DC, 1987.
- Leonard E. Burman and William G. Gale, 「The Estate Tax Is Down But Not Out」, *Tax Policy Issues and Options* No 2., The Urban Institute, Washington DC, Nov. 2001.
- Mitchell, Daniel J., *Protecting Seniors from Double Taxation*, The Heritage Foundation March 2003.
- Massachusetts Department of Finance, Property Tax Bureau, 「Information Guideline Release」, March 2003.
- New York City Department of Finance, 「The NYC Tax Guide」, 1997. 6.
-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A Guide to Sales Tax in New York State」, Publication 750, 2003. 2.
- _____, 「New York State Tax Guide for New Business」, Publication 20, 2003. 7.
- _____, Office of Tax Policy Analysis, 「New York State Tax Source Book」, 2002.
- Office of Tax Policy Analysis,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Handbook of New York State and local Taxes」, 2003. 7.
- Prentice Hall, *Federal Taxation 2003 Comprehensive*, Thomas P Pope eds., Prentice Hall, NJ, 2003.
- Phillip F. Postlewaite, *International Taxation: Case, Materials, and Problem*, Anderson Publishing Company, Cincinnati, 1999.
- Richard Herd and Chiara Brobchi, 「Increasing Efficiency and Reducing Complexity in the Tax System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No. 313, ECO/WKP(2001)39, OECD, 2001.
- Robert A. Wilson, 「Personal Exemptions and Individual Income Tax Rates 1913~

- 2002」, pp. 216~225, SOI Bulletin, IRS, 2003.
- Robert K. Miller Jr, and Stephen J. McNamee eds., *Inheritance and Wealth in America*, Plenum Press, New York, 1998.
- Roy Rohatgi, *Basic International Tax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New York, 2002.
- Sara E Nutter, 「Statistics of Income Studies of International Income and Taxes」, pp. 151~177, SOI Bulletin, IRS, 2001.
- The 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Finance, Office of Tax Policy, 「Annual Report, The New City Property Tax FY 2002」, 2003.
- The State Department of Assessment and Taxation, Maryland, 「2003 Department of Assessment and Taxation Annual Report」, www.dat.state.md.us/sdatweb.
- _____, 「General Duties and Powers of the Department of Assessment and Taxation」, www.dat.state.md.us/sdatweb.
- _____, 「What is the Homeowners' Property Tax credit Program?」, www.dat.state.md.us/sdatweb.
- Tom Petska, Mike Strudler and Ryan Petska, 「New Estimates of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Income and Taxes」, Miemo, IRS, 2003.
- Thomson RIA, 「All States Tax Handbook」, New York, 2003.
- US Census of Bureau, 「Government Finances 1999~2000」, Jan. 2003.
- _____, 「Statistical Abstract of United States」, 각 연도.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3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03.
- _____, 「Study of the Overall State of the Federal Tax System and Recommendations for Simplification」, Prepared by the Staff of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2001.

<http://caselaw.lp.findlaw.com/nycodes/c117>(New York Consolidated Law)

<http://www.heritage.org/research/taxes>

<http://www.socialsecurity.gov>

<http://www.taxadmin.org/fta/rate>

<http://www.tax.cchgroup.com>

<http://www.tax.state.ny.us>

<著者略歷>

장근호

미국 Maryland大 경제학과 졸업
미국 Chicago大 경제학과 졸업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현,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

2004年 6月 25日 印刷
2004年 6月 30日 發行

著者 장근호
發行人 최용선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18-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 : 2186-2114(代), 팩시밀리 : 2186-2179

登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印刷 상 일 인 쇄

© 韓國租稅研究院 2004

ISBN 89-8191-267-X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20,000 원